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295-10

대한민국 외교문서요약집

(구 외교사료해제집)

1993(Ⅱ)

외 교 부

| 일러두기 |

1. 본 책자는 공개된 외교문서의 내용을 요약 수록한 것으로, 책자의 성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책자의 제목을 「외교사료해제집」에서 「외교문서요약집」으로 변경하였다.
2. 본 책자는 2024년에 공개된 1993년도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문서철별 내용을 요약·기술하고 해당 문서철에 대한 최대한의 기본정보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였다.
3. 요약문은 각 외교문서철의 주제순(분류번호순)으로 수록하였으며, 각 요약문 첫머리에 문서철 제목, 생산연도, 생산과와 함께 마이크로필름(MF) 번호 및 면수 등의 정보를 표기하였다.
4. 문서철 제목은 생산 당시 사용했던 국가명, 용어 등을 그대로 표기하였고, 요약문은 현재 시점의 국가명으로 변경, 표기하였다.
 - 단, 요약문에서 문서철에 수록된 자료 언급 시에는 당시 자료 제목을 그대로 표기
5. 본 책자는 목차, 본문, 부록(1993년 외교일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도

1164	UNDRO(유엔재해구호본부) 활동	1231
1165	소말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조정회의	1232
1166	유고 난민 구호 지원	1233
1167	유엔의 인도적 긴급지원 활동	1234
1168	유엔의 이라크 내 난민구호 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1235
1169	한국의 대체르노빌 원전사고 피해 복구지원 참여	1236
117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보고서(제2차 보고서). 전2권 (V.1 1989-92)	1237
117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보고서(제2차 보고서). 전2권 (V.2 1993)	1238
1172	Mongella, Gertrude I. 제4차 세계여성회의 사무총장 방한, 1993.10.9.-13.	1239
1173	여성 정상회담. Geneva, 1992.2.25.-26.	1240
1174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New York, 1993.5.10.-21.	1241
1175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제36차. Vienna, 1993.3.29.-4.7.	1242
1176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제36차(속개). Vienna, 1993.12.16.-17.	1243
1177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HONLEA), 제18차. 서울, 1993.9.13.-17.	1244
1178	한·일본 마약류 대책회의, 제9차. 서울, 1993.3.19.	1245
1179	마약 관련 국내 유관기관 회의	1246
1180	CCPCJ(유엔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 제2차. Vienna(오스트리아), 1993.4.13.-23.	1247
1181	IPCC(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회의	1248
1182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총회, 제18차. Rome, 1993.10.20.-22.	1250
1183	IOE(국제수역국) 총회, 제61차. Paris, 1993.5.24.-28.	1251
1184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서태평양 소위원회 회의, 제2차. Bangkok(태국), 1993.1.25.-29.	1252
1185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 제17차. Paris, 1993.2.25.-3.11. 전2권 (V.1 기본문서)	1253
1186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 제17차. Paris, 1993.2.25.-3.11. 전2권 (V.2 집행이사국 진출)	1254
1187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회의 및 관련 동향	1255
1188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총회, 제30차. Bali(인도네시아), 1993.11.8.-14.	1256
1189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총회, 제9차. Paris, 1993.10.5.-8.	1257
1190	APT(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회의	1258
1191	WTO(세계관광기구) 집행이사회, 제45차. Madrid(스페인), 1993.5.18.-20.	1259
1192	WTO(세계관광기구) 제10차 총회 및 제46-47차 집행이사회. Bali(인도네시아), 1993.9.30.-10.9.	1260
1193	WTO(세계관광기구) 회의	1261
1194	1993년도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연수·훈련 참가	1262
1195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특별개발기금 설치 추진	1263
1196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총회, 제11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93.2.8.-12.	1264
1197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일반	1265
1198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총회, 제13차. Madrid(스페인), 1993.11.8.-12.	1266
1199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5차. 교토(일본), 1993.5.10.-14. 전3권 (V.1 사전준비)	1267
1200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5차. 교토(일본), 1993.5.10.-14. 전3권 (V.2 회의결과)	1268
1201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5차. 교토(일본), 1993.5.10.-14. 전3권 (V.3 자료)	1269
1202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총회, 제20차. Geneva, 1993.6.28.-7.7.	1270
1203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회의	1271
1204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일반. 전2권 (V.1 사무국 관련)	1272
1205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일반. 전2권 (V.2 산하 작업반 회의 보고서)	1273
1206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총회, 제12차. Hobart(호주), 1993.10.25.-11.5. 전2권 (V.1 사전준비) ..	1274
1207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총회, 제12차. Hobart(호주), 1993.10.25.-11.5. 전2권 (V.2 회의결과) ..	1275
1208	IOM(국제이주기구) 제84-85차 집행위원회 및 제66-67차 이사회. Geneva. 전2권 (V.1 기본문서)	1276
1209	IOM(국제이주기구) 제84-85차 집행위원회 및 제66-67차 이사회. Geneva. 전2권 (V.2 선거 및 지지 요청)	1277

1210	APPU(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 이사회, 제53차. Manila(필리핀), 1993.3.8.-11.	1278
1211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89-90차. 전2권 (V.1 제89차. New Delhi(인도), 4.12.-17.)	1279
1212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89-90차. 전2권 (V.2 제90차. Canberra(호주), 9.13.-18.)	1280
1213	민주자유당(민자당)의 IDU(국제민주연합) 가입. 전2권 (V.1 1983-89)	1281
1214	민주자유당(민자당)의 IDU(국제민주연합) 가입. 전2권 (V.2 1990-93)	1282
1215	A.I.(국제사면위원회) 북한 인권보고서	1283
1216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아시아지역회의, 제12차. Ulaanbaatar(몽골), 1993.7.28.-8.1.	1284
1217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62차. Aruba(네덜란드), 1993.9.29.-10.5.	1285
1218	ASOSAI(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구) 교통감사 세미나. 서울, 1993.8.31.-9.9.	1286
1219	ASOSAI(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구) 이사회, 제19차. Sydney(호주), 1993.5.23.-28.	1287
1220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총회, 제15차. Tehran(이란), 1993.11.1.-7.	1288
1221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 제11차. 상하이, 1993.5.13.-16.	1289
1222	Botho Prinz zu Sayn-Wittgenstein 국제적십자 상치위원장 방한, 1993.5.19.-22.	1290
1223	대한적십자사 창시자 선정 문제	1291
1224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V.1 1990-91)	1292
1225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V.2 1992.1-2월)	1293
1226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V.3 1992.3월)	1294
1227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V.4 1992.4.1.-20.)	1295
1228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V.5 1992.4.21.-5월)	1296
1229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V.6 1992.6월)	1297
1230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V.7 1992.7-12월)	1298
1231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V.8 1993)	1299
1232	한-미국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 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전14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1호) (V.11 1992)	1300
1233	한-미국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 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전14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1호) (V.14 1993.7-11월)	1301
1234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V.1 1991)	1302
1235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V.2 1992.1-3월)	1303
1236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V.3 1992.4월-1993)	1304
1237	한-몽골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협정, 1993.7.28. Ulaanbaatar에서 서명: 1993.8.27. 발효(조약 제1185호)	1305
1238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정 연장	1306
1239	한-미얀마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1993.2.15. Yangon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64호)	1307
1240	한-몽골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7.9. Ulaanbaatar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83호) (V.1 1992.1-7월)	1308

1241	한·몽골 간의 대몽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7.9. Ulaanbaatar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83호) (V.2 1992.8월-1993)	1309
1242	한·파키스탄 간의 대파키스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1993.2.4. Islamabad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62호)	1310
1243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3권. 1993.2.11. Warsaw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63호) (V.1 1991)	1311
1244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3권. 1993.2.11. Warsaw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63호) (V.2 1992.1-11월)	1312
1245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3권. 1993.2.11. Warsaw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63호) (V.3 1992.12월-1993)	1313
1246	한·루마니아 간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2.7. Bucharest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205호) (V.1 1991.6-93.2월)	1314
1247	한·루마니아 간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2.7. Bucharest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205호) (V.2 1993.3-12월)	1315
1248	한·리투아니아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3.9.24. 서울에서 서명: 1993.11.9. 발효(조약 제1197호)	1316
1249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2.22. Asuncion에서 서명: 1993.8.6. 발효(조약 제1188호) (V.1 1976-91)	1318
1250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2.22. Asuncion에서 서명: 1993.8.6. 발효(조약 제1188호) (V.2 1992.1-9월)	1319
1251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2.22. Asuncion에서 서명: 1993.8.6. 발효(조약 제1188호) (V.3 1992.10월-1993)	1320
1252	한·베트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1993.9.4. 발효(조약 제1186호) (V.1 1992-93.3월)	1321
1253	한·베트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1993.9.4. 발효(조약 제1186호) (V.2 1993.4-8월)	1322
1254	한·호주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993.9.16. Canberra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230호)	1323
1255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협정 부속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992.12.28. 및 1993.2.11. 서울에서 각서교환: 1993.2.11. 발효(외무부고시 제221호)	1324
1256	한·일본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993.4.20. 동경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222호)	1325
1257	한·뉴질랜드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0. 서울에서 서명: 1993.8.20. 발효(조약 제1189호) (V.1 1976-92)	1326
1258	한·뉴질랜드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0. 서울에서 서명: 1993.8.20. 발효(조약 제1189호) (V.2 1993)	1327
1259	한·베트남 간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1993.6.14. 발효(조약 제1179호) (V.1 1992-93.2월)	1328
1260	한·베트남 간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1993.6.14. 발효(조약 제1179호) (V.2 1993.3-7월)	1329
1261	한·중국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27. 서울에서 서명: 1993.6.26. 발효(조약 제1175호) (V.1 1992.5-9월)	1330
1262	한·중국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27. 서울에서 서명: 1993.6.26. 발효(조약 제1175호) (V.2 1992.10월-1993)	1331
1263	한·중국 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93.7.24. 북경에서 서명: 1993.8.23. 발효(조약 제1184호)	1333
1264	한·자메이카 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1993.10.28. 서울에서 서명: 1993.11.27. 발효(조약 제1198호)	1334
1265	한·모로코 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8.2. Rabat에서 서명: 1993.9.1. 발효(조약 제1187호) (V.1 1981-92)	1335

1266	한·모로코 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8.2. Rabat에서 서명: 1993.9.1. 발효(조약 제1187호) (V.2 1993)	1336
1267	한·몰타 간의 입국사증 상호면제 교환각서. 1993.9.23. Valleta에서 각서교환: 1993.10.23. 발효(조약 제1195호)	1337
1268	한·폴란드 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1.24. Warsaw에서 각서교환: 1993.12.24. 발효(조약 제1201호) (V.1 1990-92)	1338
1269	한·폴란드 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1.24. Warsaw에서 각서교환: 1993.12.24. 발효(조약 제1201호) (V.2 1993)	1339
1270	한·루마니아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1993.11.12. 서울에서 각서교환: 1993.12.12. 발효(조약 제1200호)	1340
1271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V.1 1988-92.3월)	1341
1272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V.2 1992.4-7월)	1342
1273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V.3 법무부장관 호주 방문)	1343
1274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V.4 1992.8월-1993)	1344
1275	한·인도 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 1993.9.10. 서울에서 서명: 1993.10.10. 발효(조약 제1191호)	1345
1276	한·중국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10.28. 북경에서 서명: 1993.11.27. 발효(조약 제1199호) (V.1 1991-93.6월)	1346
1277	한·중국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10.28. 북경에서 서명: 1993.11.27. 발효(조약 제1199호) (V.2 1993.7-11월)	1347
1278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6.29.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180호) (V.1 1987-92)	1348
1279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6.29.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180호) (V.2 1993)	1349
1280	체육·청소년 관련 기관 간 약정	1350
1281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 관련 합의의사록 갱신, 1993.10.1.	1351
1282	기관 간 약정: 상공부	1352
1283	한·리투아니아 간의 무역협정. 1993.9.24. 서울에서 서명: 1993.11.9. 발효(조약 제1196호)	1353
1284	한·베트남 간의 무역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1993.6.12. 발효(조약 제1174호) (V.1 1992-93.3월)	1354
1285	한·베트남 간의 무역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1993.6.12. 발효(조약 제1174호) (V.2 1993.4-6월)	1355
1286	한·미국 간의 쌍무 섬유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1.8. 및 11.30. 서울에서 각서교환: 1993.11.30. 발효(외무부고시 제231호) (V.1 7-9월)	1356
1287	한·미국 간의 쌍무 섬유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1.8. 및 11.30. 서울에서 각서교환: 1993.11.30. 발효(외무부고시 제231호) (V.2 10-12월)	1357
1288	과학·산업기술·통신 관련 약정	1358
1289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 교환각서. 전3권. 1993.9.20. Paris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92호) (V.1 1978)	1359
1290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 교환각서. 전3권. 1993.9.20. Paris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92호) (V.2 1979-90)	1360
1291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 교환각서. 전3권. 1993.9.20. Paris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92호) (V.3 1993)	1361
1292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동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가입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5.24.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72호) (V.1 1991-92)	1362

1293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동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가입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5.24.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72호) (V.2 1993)	1363
1294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V.3 1988.6-7월)	1364
1295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V.4 1988.8-9월)	1366
1296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V.5 1988.10-12월)	1368
1297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V.6 1989)	1369
1298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V.7 1990-91.7월)	1370
1299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V.8 1991.8월-12.15.)	1371
1300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V.9 1991.12.16.-1993)	1372
1301	한·베트남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3.2.2. 서울에서 서명: 1993.3.4. 발효(조약 제1161호)	1373
1302	한·중국 간의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993.1.8. 북경에서 서명: 1993.2.7. 발효(조약 제1123호) ..	1374
1303	한국 건설부·중국 수리부 간의 수자원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1993.12.4. 서명: 발효(외무부고시 제232호)	1375
1304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V.1 1974-83)	1376
1305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V.2 1984-85.8월)	1377
1306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V.3 1985.9월-1988)	1378
1307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V.4 1989-91)	1379
1308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V.5 1992-93)	1380
130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7항에 대한 유보철회 한국 가입, 1993.1.21.(조약 제1122호) ..	1381
1310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 개정 수락	1382
1311	전쟁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Geneva(스위스), 1993.8.30.-9.1. 전2권 (V.1 4월-8.13.)	1383
1312	전쟁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Geneva(스위스), 1993.8.30.-9.1. 전2권 (V.2 8.14.-10월)	1384
1313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73호 및 권고 제180호 국회 제출	1385
1314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73호, 제81호 및 제122호 한국 가입. 전2권 (V.1 1992.2-10월)	1386
1315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73호, 제81호 및 제122호 한국 가입. 전2권 (V.2 1992.11월-1993)	1387
1316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 의정서 한국 가입, 1993.5.17.	1388
1317	1977년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협약 의정서 채택에 관한 국제회의. Torremolinos(스페인), 1993.3.22.-4.2.	1389
1318	도로 및 철도운송에 관한 협약 가입 검토	1390
1319	UNESCO 전시문화재보호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검토	1391
1320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연장회의 관련 동향	1392
1321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연장회의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 제1차. New York, 1993.5.10.-14. 전4권 (V.1 사전준비 I)	1393
1322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연장회의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 제1차. New York, 1993.5.10.-14. 전4권 (V.2 사전준비 II)	1394
1323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연장회의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 제1차. New York, 1993.5.10.-14. 전4권 (V.3 회의 보고)	1395
1324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연장회의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 제1차. New York, 1993.5.10.-14. 전4권 (V.4 결과보고서)	1396
1325	PTBT(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체약국 간 특별 비공식 회의. New York, 1993.8.10.	1397
1326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 제7-8차. Vienna	1398
1327	원자력 안전협약에 관한 전문가 회의, 제3-6차. Vienna	1399

1328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비준검토 및 후속조치	1400
1329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ITTA) 개정회의	1401
1330	1992년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1993.4.15.	1402
1331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1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93.3.22.-4.2.	1403
1332	유엔해양법협약 개정에 관한 비공식 협의. 전2권 (V.1 1-4월)	1404
1333	유엔해양법협약 개정에 관한 비공식 협의. 전2권 (V.2 7-12월)	1405
1334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박투자가 등록 신청. 전2권 (V.1 5-10월)	1406
1335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박투자가 등록 신청. 전2권 (V.2 11-12월)	1407
1336	북서대서양 다자 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2.21. 전3권 (V.1 1989-93.7월)	1408
1337	북서대서양 다자 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2.21. 전3권 (V.2 1993.8-9월)	1409
1338	북서대서양 다자 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2.21. 전3권 (V.3 1993.10-12월)	1410
1339	기후변화협약 정부 간 협상회의(INC), 제7차. New York, 1993.3.15.-20.	1411
1340	기후변화협약 정부 간 협상회의(INC), 제8차. Geneva, 1993.8.16.-27.	1412
134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개정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10.	1413
1342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 가입, 1993.3.8. 전2권 (V.1 1991-92.6월)	1415
1343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 가입, 1993.3.8. 전2권 (V.2 1992.7월-1993) ..	1416
1344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8.	1417
1345	바젤협약 가입국 회의, 제1차. Piriapolis(우루과이), 1992.11.30.-12.4.	1418
1346	바젤협약 관련 국가 간 기술협력 및 동향	1419
1347	바젤협약 기술실무회의, 제4-5차. Geneva	1420
1348	바젤협약 배상책임의정서 작성회의, 제1차. Geneva, 1993.9.13.-17.	1421
1349	바젤협약 이행 특별위원회, 제1차. Geneva, 1993.10.26.-28.	1422
1350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1 1972-73)	1423
1351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2 1974)	1424
1352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3 1979-88)	1425
1353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4 1989-91)	1426
1354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5 1992)	1427
1355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6 1993.1-4월)	1428
1356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7 1993.5월)	1429
1357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8 1993.6-7월)	1430
1358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9 1993.8-10월) ..	1431
1359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제1차. New York, 1993.4.19.-23. 전3권 (V.1 개최결의, 1992) ...	1432
1360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제1차. New York, 1993.4.19.-23. 전3권 (V.2 기본문서)	1433
1361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제1차. New York, 1993.4.19.-23. 전3권 (V.3 각국 입장)	1434
1362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제2차. New York, 1993.7.12.-30. 전2권 (V.1 사전준비)	1435
1363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제2차. New York, 1993.7.12.-30. 전2권 (V.2 결과보고)	1437
1364	카타르·바레인 간 영토분쟁	1438
1365	벨리즈·과테말라 간의 영유권 분쟁	1439
1366	ICJ(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선거. 전2권 (V.1 1992-93.6월)	1440
1367	ICJ(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선거. 전2권 (V.2 1993.7-12월)	1441
1368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회의, 제236-239차. New Delhi	1442
1369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32차. Kampala(우간다), 1993.2.1.-6. 전2권 (V.1 기본문서)	1443
1370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32차. Kampala(우간다), 1993.2.1.-6. 전2권 (V.2 자료)	1444
1371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본회의, 제26차. Vienna, 1993.7.5.-23.	1445
1372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분담금	1446
1373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이사국 임후보 지지 교섭 및 한국 파선. 전3권 (V.1 1990-93.8월)	1447
1374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이사국 임후보 지지 교섭 및 한국 파선. 전3권 (V.2 1993.9-10월)	1448

1375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및 한국 파선. 전3권 (V.3 1993.11-12월)	1449
1376	유고전범재판소 설치 및 판사 선출. 전2권 (V.1 1-8월)	1450
1377	유고전범재판소 설치 및 판사 선출. 전2권 (V.2 9-12월)	1451
1378	제3국 간 해양경계분쟁	1452
1379	북한·러시아 간 해양경계확정	1453
1380	베트남 난민 처리 문제. 전2권 (V.1 1991-92)	1454
1381	베트남 난민 처리 문제. 전2권 (V.2 1993)	1455
1382	남극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전문가 회의. Heidelberg(독일), 1993.11.18.-20.	1456
1383	남극조약 이행관련 활동	1458
1384	COPUOS(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	1460
1385	외교 특권·면제의 포기 관련 검토	1461
1386	외교·영사관계 국제법 해석	1462
1387	조약 및 승계 관련 국제법적 검토	1463
1388	문화외교 및 홍보 강화 방안	1464
1389	한·중국 수교 계기 해외홍보사업	1465
1390	한·중국 언론자국 설치 및 상주 특파원 교류	1466
1391	주한 미국문화원(부산) 관련 제문제	1467
1392	한·이탈리아 문화공동위원회, 제6차. 서울, 1993.8.5.	1468
1393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회의, 제5차. 서울, 1993.7.14.-16. 전3권 (V.1 기본문서)	1469
1394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회의, 제5차. 서울, 1993.7.14.-16. 전3권 (V.2 결과보고)	1470
1395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회의, 제5차. 서울, 1993.7.14.-16. 전3권 (V.3 자료)	1471
1396	한·영국 문화훈성위원회, 제5차. 서울, 1992.12.1.-2. 전2권 (V.1 기본문서)	1472
1397	한·영국 문화훈성위원회, 제5차. 서울, 1992.12.1.-2. 전2권 (V.2 회의자료)	1473
1398	외무부·한국국제교류재단 간 정책 협의	1474
1399	중국 내 고구려 유적 보존·관리	1475
1400	한·중국 문화교류	1476
1401	한·중국 수교 1주년 기념 공연	1477
1402	한·이집트 문화·과학·기술협정 시행	1478
1403	한·프랑스 문화교류 일반	1479
1404	한·헝가리 수교 100주년 기념 사업 지원	1480
1405	한·인도 문화협정 시행	1481
1406	한·일본 도·시 간 자매결연	1482
1407	한·일본 문화교류 일반	1483
1408	한·일본 문화교류기금	1484
1409	한·요르단 문화협정 시행	1485
1410	서울시·Mexico City시(멕시코) 간 자매결연	1486
1411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개관 기념행사	1487
1412	한·튀니지 문화교류	1488
1413	한·터키 문화·체육교류	1489
1414	한·미국 도·시 간 자매결연	1490
1415	한국문화예술 해외선양계획	1491
1416	동북아시아지역의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국제회의. 동경, 1993.11.4.-5.	1492
1417	해외 소재 유적 현황 조사	1493
1418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부스기념관 내 한국전시장 설치	1494
1419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 호주 방문, 1993.10.26.-30.	1495
1420	Broadbent, Edward 국제인권·민주발전센터 이사장 방한, 1993.10.14.-16.	1496
1421	Emilio PEREZ 볼리비아 'Presencia'지 기자 방한, 1993.9.6.-11.	1497
1422	Mohammad HASHEMI 이란 국영방송 'IRIB' 이사장 방한, 1993.7.5.-8.	1498

1423	George S. Hawatmet 요르단 Jordan Times 편집국장 방한, 1993.11.14.-19.	1499
1424	Yambot Isagani 필리핀 'Philippin Inquirer'지 발행인 방한, 1993.4.12.-17.	1500
1425	Juan P. Castro 페루 'El Comercio'지 정치부장 방한, 1992.10.13.-18.	1501
1426	R. Bogdan 루마니아 Nine O'clock 발행인 방한, 1993.6.14.-20.	1502
1427	EDMUND Ranasinghe 스리랑카 'The Island'지 편집국장 방한, 1993.8.23.-28.	1503
1428	Alwin S. Chow 트리니다드토바고 'Guardian'지 편집장 방한, 1993.9.13.-18.	1504
1429	Reginald Mavunika MHANGO 탄자니아 'Daily News' 부편집장 방한, 1993.4.25.-30.	1505
1430	미국 언론인 방한	1506
1431	외무부 출입기자단 일본 방문	1507
1432	AKSE(구주한국학회), 제16차. Berlin, 1993.4.16.-20.	1508
1433	미시간 주립대학 국제한국학 회의. East Lansing(미국), 1993.7.7.-11.	1509
1434	콜롬비아대학 한국학 토론회	1510
1435	한국문학 번역에 관한 국제회의	1511
1436	중국 소재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중심 협조 사업	1512
1437	페루 카톨릭대학 한국학연구센터 연구지원	1513
1438	미국내 한국학·한국어 강좌 및 학술회의 지원	1514
1439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	1515
1440	한국관 오류 시정사업 관련 자료 수집. 전4권 (V.1 1991.1-10월)	1516
1441	한국관 오류 시정사업 관련 자료 수집. 전4권 (V.2 1991.11-12월)	1517
1442	한국관 오류 시정사업 관련 자료 수집. 전4권 (V.3 1992)	1518
1443	한국관 오류 시정사업 관련 자료 수집. 전4권 (V.4 1993)	1519
1444	한국관 시정사업: 러시아 교과서 관계자 초청 세미나, 1993.9.20.	1520
1445	한국관 시정사업: 미국 내 한국 관련 문헌 수집 및 분석	1521
1446	한·러시아 국제학술회의, 제3차. 서울, 1993.11.29.-30.	1522
1447	한·러시아 외교사료 발굴 추진	1523
1448	중국 조선족 학교 국어교사 방한 연수 추진	1524
1449	James H. Billington 미국 의회 도서관장 방한, 1993.5.18.-25.	1525
1450	한·중국 대학 간 자매결연	1526
1451	한·자메이카 대학 간 교류사업 추진	1527
1452	러시아 한민족대학 설립 문제	1528
1453	2000년도 하계올림픽 유치도시 선정 관련 각국 관계 및 협조 요청	1529
1454	1993년도 제1회 상하이 동아시아경기대회, 1993.5.9.-18.	1530
1455	태권도 사범 자메이카 파견	1531
1456	한·일본 외무부 간 청소년 교류 사업	1532
1457	한·일본 청년교류 사업	1533
1458	동북아 4개국 청소년 교류	1534
1459	한·카타르 체육협력	1535
1460	미국 Asia Society 후원 국제회의. 동경, 1993.5.12.-14.	1536
1461	미국 Asia Society	1537
1462	미국 Korea Society. 전2권 (V.1 1-7월)	1538
1463	미국 Korea Society. 전2권 (V.2 8-12월)	1539
1464	SUKHUM, Navapan 한·태국 친선협회장 방한, 1993.9.27.-10.2.	1540
1465	시카고 외교협회	1541
1466	한·일본 친선협회	1542
1467	EC(구주공동체) 주재 공관 경제담당관 회의. Brussels(벨기에)	1543
1468	대중국 경제진출 전략회의, 1993.1.19.	1544
1469	대일본 경제협력 정책	1545
1470	쿠웨이트 전후 복구사업 참여	1546

1471	대아프리카 경제 진출 현황	1547
1472	중국 경제 동향	1548
1473	서구의 대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지원	1549
1474	유럽통화제도(EMS) 체제 개편 동향	1550
1475	일본 경제 동향	1551
1476	일본의 불공정 무역보고서 발표	1552
1477	일본의 수입확대 및 건설시장 개방 동향	1553
1478	멕시코 경제 동향	1554
1479	구소련연방 외채 승계 및 상환 문제. 전2권 (V.1 1-6월)	1555
1480	구소련연방 외채 승계 및 상환 문제. 전2권 (V.2 7-12월)	1556
1481	러시아 경제 동향	1557
1482	미국 Clinton 행정부 통상정책 전망. 전2권 (V.1 1992.9월-11.10.)	1558
1483	미국 Clinton 행정부 통상정책 전망. 전2권 (V.2 1992.11.11.-93.4월)	1559
1484	미국의 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 동향	1560
1485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전3권 (V.1 1991.8-92.10월)	1561
1486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전3권 (V.2 1992.11-93.3월)	1562
1487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전3권 (V.3 1993.4-12월)	1563
1488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1564
1489	한·방글라데시 경제협력	1565
1490	한·브라질 경제협력	1566
1491	한·볼리비아 경제·통상협력. 전2권 (V.1 1987-89)	1567
1492	한·볼리비아 경제·통상협력. 전2권 (V.2 1992-93)	1568
1493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1569
1494	한·칠레 경제·통상협력	1570
1495	한·콜롬비아 경제·통상협력	1571
1496	한·캐나다 경제통상관계 일반	1572
1497	한·코스타리카 경제·통상협력	1573
1498	중국 내 한국공업단지 건설	1574
1499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전3권 (V.1 1-4월)	1575
1500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전3권 (V.2 5-8월)	1576
1501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전3권 (V.3 9-12월)	1577
1502	한·에콰도르 경제협력	1578
1503	한·에티오피아 경제협력	1579
1504	EC(구주공동체)의 대한민국 보고서 채택	1580
1505	한·EC(구주공동체) 경제	1581
1506	한·프랑스 경제·통상협력	1582
1507	한·헝가리 경제·통상협력	1583
1508	한·인도네시아 경제·통상협력	1584
1509	한·이란 경제·통상협력	1585
1510	한·이란 노동협력	1586
1511	한·일본 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 전2권 (V.1 기본문서)	1587
1512	한·일본 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 전2권 (V.2 사업현황 및 예산)	1588
1513	한·쿠웨이트 경제협력	1589
1514	한·리비아 경제협력	1590
1515	한·말리 경제협력	1591
1516	한·모로코 경제협력	1592
1517	한·멕시코 경제·통상협력	1593
1518	한·오만 경제협력	1594

1519	한·파키스탄 경제·통상협력	1595
1520	한·폴란드 경제협력	1596
1521	한·파라과이 경제·통상협력	1597
1522	한·페루 경제·통상협력. 전2권 (V.1 1-8월)	1598
1523	한·페루 경제·통상협력. 전2권 (V.2 9-12월)	1599
1524	러시아 군수산업 민수화 참여	1600
1525	한·러시아 경제협력	1601
1526	한·루마니아 경제협력	1602
1527	한·사우디아라비아 경제·통상협력	1603
1528	한·스웨덴 경제·통상협력	1604
1529	한·튀니지 경제·통상협력	1605
1530	한·터키 경제·통상협력	1606
1531	한·우간다 경제·통상협력	1607
1532	한·미국 기업환경 개선방안(PEI) 합의사항 이행(국내법령 개정)	1608
1533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PEI) 이행점검 및 후속대화 문제 협의. 전4권 (V.1 1-5월)	1609
1534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PEI) 이행점검 및 후속대화 문제 협의. 전4권 (V.2 6월)	1610
1535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PEI) 이행점검 및 후속대화 문제 협의. 전4권 (V.3 이행보고서 검토 I, 3월)	1611
1536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PEI) 이행점검 및 후속대화 문제 협의. 전4권 (V.4 이행보고서 검토 II, 4-6월)	1612
1537	한·베트남 경제·통상협력	1613
1538	한·베네수엘라 경제·통상협력	1614
1539	한·중남미 국가 경제·통상협력	1615
1540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제9차. 서울, 1993.11.12. 전4권 (V.1 사전준비)	1617
1541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제9차. 서울, 1993.11.12. 전4권 (V.2 의제 및 실무회의)	1618
1542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제9차. 서울, 1993.11.12. 전4권 (V.3 결과 및 후속조치)	1619
1543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제9차. 서울, 1993.11.12. 전4권 (V.4 자료)	1621
1544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8차. Brussels, 1992.11.10.-12. 전4권 (V.1 사전준비)	1622
1545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8차. Brussels, 1992.11.10.-12. 전4권 (V.2 결과 및 후속 조치)	1623
1546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8차. Brussels, 1992.11.10.-12. 전4권 (V.3 자료 I)	1624
1547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8차. Brussels, 1992.11.10.-12. 전4권 (V.4 자료 II)	1625
1548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11차. 서울, 1993.6.24. 전2권 (V.1 기본문서)	1626
1549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11차. 서울, 1993.6.24. 전2권 (V.2 자료)	1627
1550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장관 회의, 제13차. Teheran(이란), 1993.4.21.-23.	1628
1551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 제4차. Brussels, 1993.6.29.-30. 전2권 (V.1 사전준비)	1629
1552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 제4차. Brussels, 1993.6.29.-30. 전2권 (V.2 결과 및 후속조치)	1630
1553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1차. Washington D.C., 1993.9.7.-8. 전5권 (V.1 사전준비)	1631
1554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1차. Washington D.C., 1993.9.7.-8. 전5권 (V.2 결과 및 후속조치)	1632
1555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1차. Washington D.C., 1993.9.7.-8. 전5권 (V.3 협의의제 검토)	1633
1556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1차. Washington D.C., 1993.9.7.-8. 전5권 (V.4 사례 및 제도 조사)	1634
1557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1차. Washington D.C., 1993.9.7.-8. 전5권 (V.5 회의자료)	1635
1558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2차. 서울, 1993.10.20.-21. 전3권 (V.1 기본문서)	1636
1559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2차. 서울, 1993.10.20.-21. 전3권 (V.2 관계부처 자료)	1637
1560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2차. 서울, 1993.10.20.-21. 전3권 (V.3 회의자료)	1638
1561	한·호주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1993.12.17.	1639
1562	한·중국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북경, 1992.12.16.-18. 전2권 (V.1 사전준비)	1641
1563	한·중국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북경, 1992.12.16.-18. 전2권 (V.2 결과 및 후속조치)	1642
1564	한·중국 경제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93.10.4.-5. 전2권 (V.1 기본문서)	1643
1565	한·중국 경제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93.10.4.-5. 전2권 (V.2 자료)	1644
1566	한·가봉 혼성위원회 개최계획	1645

1567	한·일본 원조정책협의회, 제1차. 서울, 1993.5.4. 전2권 (V.1 기본문서)	1646
1568	한·일본 원조정책협의회, 제1차. 서울, 1993.5.4. 전2권 (V.2 회의자료)	1647
1569	한·멕시코 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92.10.29.-30. 전2권 (V.1 기본문서)	1648
1570	한·멕시코 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92.10.29.-30. 전2권 (V.2 의제 및 자료)	1650
1571	한·러시아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1651
1572	한·수단 공동위 후속조치: 무역의정서 체결 교섭	1652
1573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12차. 서울, 1993.10.7.-8.	1653
1574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Hanoi, 1993.9.20.-21. 전2권 (V.1 기본문서)	1654
1575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Hanoi, 1993.9.20.-21. 전2권 (V.2 의제 및 자료)	1655
1576	한·아세안 민간 경제협력위원회(AKBC)	1656
1577	한·중국 민간경제협의회	1657
1578	한·홍콩 기업인 원탁회의. Hong Kong, 1993.12.1.-3.	1658
1579	한·일본 민간합동 경제위원회, 제25회. 경주, 1993.4.15.-17.	1659
1580	한·미국 재계 회의, 제6차. Washington D.C., 1993.6.13.-15.	1660
1581	한·일본 경제인 포럼. 전2권 (V.1 1-6월)	1661
1582	한·일본 경제인 포럼. 전2권 (V.2 7-12월)	1662
1583	엘살바도르 경제·통상사절단 방한, 1993.10.28.-31.	1663
1584	자메이카 투자사절단 방한, 1993.3.7.-13.	1664
1585	튀니지 투자사절단 방한, 1993.3.28.-4.2.	1665
1586	미국 경제·통상사절단 방한	1666
1587	중국경제 관계 인사 방한	1667
1588	후첩(候捷) 중국 건설부장 방한, 1993.4.14.-21.	1668
1589	Tavar, Teofilo Quico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 방한, 1993.6.7.-11.	1669
1590	Jacinto Soares VELOSO 모잠비크 협력장관 방한, 1993.9.13.-17.	1670
1591	Kracun, Davorin 슬로베니아 부총리 겸 경제담당 장관 방한, 1993.10.9.-12.	1671
1592	국제금융기관 및 미국의 대베트남 지원 문제	1672
1593	대러시아 경제협력차관 연체이자 알루미늄 상황	1673
1594	대러시아 경제협력차관. 전3권 (V.1 1-6월)	1674
1595	대러시아 경제협력차관. 전3권 (V.2 7-8월)	1675
1596	대러시아 경제협력차관. 전3권 (V.3 9-12월)	1676
1597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	1677
1598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 차관협약 개정	1678
1599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인출기한 연장 및 대상사업 협의	1679
1600	대수리남 전대차관 공여	1680
1601	한·리비아 건설협력	1681
1602	Oversea사 에티오피아 진출 문제	1682
1603	대부룬디 차관공여 사업 추진	1683
1604	카자흐스탄 의료 지원	1684
1605	한국의 대아프가니스탄 무상원조	1685
1606	한국의 대몽골 원조	1686
1607	한국의 대니카라과 원조(무상원조)	1687
1608	남부아프리카 한발피해 지원	1688
1609	한국의 대코트디부아르 원조(무상원조)	1689
1610	한국의 대소말리아 지원	1690
1611	아프리카 관련 다자 간 원조회의	1691
1612	캄보디아 재건 국제위원회, 제1차. Paris, 1993.9.8.-9.	1692
1613	인도네시아 원조자문그룹 회의, 제2차. Paris, 1993.6.29.-30. 전2권 (V.1 기본문서)	1693
1614	인도네시아 원조자문그룹 회의, 제2차. Paris, 1993.6.29.-30. 전2권 (V.2 회의자료)	1694

1615	세계은행/일본 주관 몽골 원조공여국 회의, 제3차. 동경, 1993.9.13.-14.	1695
1616	파푸아뉴기니 자문그룹 회의, 제6차. Hong Kong, 1993.6.1.-2.	1696
1617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 제1차. Paris, 1993.11.9.-10. 전2권 (V.1 기본문서)	1697
1618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 제1차. Paris, 1993.11.9.-10. 전2권 (V.2 회의자료)	1698
1619	중동평화 지원을 위한 다자회의	1699
1620	아프리카 개발 동경회의. 동경, 1993.10.5.-6.	1700
1621	인도지나 종합개발포럼 예비회의. 동경, 1993.12.9.-10.	1701
1622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및 자원개선	1703
1623	대피지(Ba/Sigatoka 가교 및 접근도로 건설)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1705
1624	대몽골 판유리공장 건설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1706
1625	대가이아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검토	1707
1626	대불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추진	1708
1627	대체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검토	1709
1628	대리투아니아(신발공장사업 및 피혁가공공장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검토	1710
1629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검토	1711
1630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1712
1631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PMC(계획관리위원회), 제3차. 평양, 1993.5.9.-10. 전2권 (V.1 사전준비)	1713
1632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PMC(계획관리위원회), 제3차. 평양, 1993.5.9.-10. 전2권 (V.2 결과 및 자료)	1714
1633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법·금융분야 회의, 제1차. New York, 1993.2.22.-24.	1715
1634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법·금융·제도 실무회의, 제2차. 북경, 1993.9.20.-24.	1716
1635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산업분야 워크숍. 서울, 1993.11.8.-10.	1717
1636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수송 분야 회의. 북경, 1993.3.30.-4.2.	1719
1637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자원·산업 및 환경 분야 회의. Helsinki(핀란드), 1993.3.16.-19.	1720
1638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통신전문가 회의	1721
1639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전2권 (V.1 1-5월)	1722
1640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전2권 (V.2 6-12월)	1723
1641	KOICA(한국국제협력단) 규정지침. 전2권 (V.1 1992.2-4월)	1724
1642	KOICA(한국국제협력단) 규정지침. 전2권 (V.2 1992.5월-1993)	1725
1643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전2권 (V.1 국제협력 의료요원 확보 대책)	1726
1644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전2권 (V.2 법률 제정)	1727
1645	KOICA(한국국제협력단) 운영	1728
1646	한국의 TCDC(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사업 참여	1729
1647	1993년도 말레이시아 산업기술 훈련생 현장 연수	1730
1648	한·중국 자원협력	1731
1649	한·러시아 자원협력	1732
1650	한·베트남 자원협력	1733
1651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제11차. Canberra, 1993.7.20.-21.	1734
1652	한·러시아 자원협력위원회 사전전문가 회의. 서울, 1993.3.25.-26.	1735
1653	나미비아 광업 투자회의. Windhoek(나미비아), 1993.3.17.-19.	1736
1654	해외자원개발심의회	1737
1655	McKnight, Bill 캐나다 에너지광업자원부 장관 방한, 1993.3.5.-9.	1738
1656	Abdullah Bin Hamad AL-ATTIYAH 카타르 동력산업장관 방한, 1993.5.20.-23.	1739
1657	Kostyunin, V. N. 러시아 연료에너지부 제1차관 방한, 1993.11.3.-10.	1740
1658	러시아 사하공화국 내 야쿠티아 천연가스 개발사업 및 가스 수송관 건설 추진	1741
1659	한국의 원자력 현황	1742
1660	한·호주 원자력 정책협의회, 제3차. Canberra(호주), 1993.6.2.-4.	1743
1661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제11차. 서울, 1993.10.28.-29.	1744
1662	Guizard, Claude 프랑스 원자력 안전위원회 사무총장 방한, 1993.12.1.-6.	1745

1663	한·프랑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제9차. Paris, 1993.5.3.-7.	1746
1664	한·일본 원자력협의회, 제3차. 서울, 1993.1.19.-20.	1747
1665	스웨덴의 영광 원자력발전소 4호기 연료 도입 관련 확인 요청	1748
1666	한·터키 원자력협력	1749
1667	한·영국 원자력협의회, 제2차. 서울, 1993.4.20.-21.	1750
1668	한·미국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제14차. Washington D.C., 1992.11.18.-20.	1751
1669	Las Palmas를 기지로 한 대서양 어장 조업	1752
1670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관할 수역 내 조업 문제. 전2권 (V.1 관할수역 내 조업규제)	1753
1671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관할 수역 내 조업 문제. 전2권 (V.2 어업교섭단 파견)	1754
1672	오호츠크 공해 조업 문제. 전5권 (V.1 1-4월)	1755
1673	오호츠크 공해 조업 문제. 전5권 (V.2 5월)	1756
1674	오호츠크 공해 조업 문제. 전5권 (V.3 6-7월)	1757
1675	오호츠크 공해 조업 문제. 전5권 (V.4 8-9월)	1758
1676	오호츠크 공해 조업 문제. 전5권 (V.5 10-12월)	1760
1677	한·인도네시아 어업협력	1761
1678	1993년도 한·일본 어업실무자회의, 제1-2차	1762
1679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27차. 서울, 1993.4.6.-7.	1763
1680	일본·러시아 어업관계	1764
1681	한·멕시코 어업협력	1765
1682	한·노르웨이 어업협력	1767
1683	한·뉴질랜드 어업협력	1768
1684	한·러시아 어업위원회, 제3차. 서울, 1993.11.15.-20.	1769
1685	한·러시아 어업협력	1770
1686	한·중국 농업협력	1771
1687	IMF(국제통화기금)/World Bank(세계은행) 총회, 제48차. Washington D.C., 1993.9.26.-30.	1772
1688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일반 동향	1773
1689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제26차. Manila, 1993.5.4.-6.	1774
1690	CABEI(중미경제통합은행)	1775
1691	IDB(미주개발은행) 총회, 제34차. Hamburg, 1993.3.29.-31.	1776
1692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총회, 제2차. London, 1993.4.26.-27.	1778
1693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 제28-29차	1779
1694	AfDF(아프리카개발기금) 제7차 재원보충 실무회의, 제2-3차	1780
1695	아프리카 수출입은행 참여 검토	1781
1696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자 간 조선 협상. 전2권 (V.1 1-7월)	1782
1697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자 간 조선 협상. 전2권 (V.2 8-12월)	1783
1698	타니구치 마코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 방한, 1993.6.15.-17.	1784
1699	[OECD/DAC] Tidewater 회의, 제28차. Mexicocity(멕시코), 1993.7.19.-20.	1785
170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위원회 회의. 전2권 (V.1 무역·환경 합동위)	1786
170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위원회 회의. 전2권 (V.2 기타 회의)	1787
170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공업위원회 옵서버 참가	1788
170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철강위원회, 제43차. Paris, 1993.10.25.-27.	1789
170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위원회 및 교육연구혁신센터 옵서버 참가	1790
1705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회의	1791
1706	Sutherland, Peter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선임, 1993.6.9.	1792
1707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상. 전5권 (V.1 1-8월)	1793
1708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상. 전5권 (V.2 9월)	1794
1709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상. 전5권 (V.3 10월)	1795
1710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상. 전5권 (V.4 11월)	1796

1711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상. 전5권 (V.5 12월)	1797
1712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협상. 전3권 (V.1 1-7월)	1798
1713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협상. 전3권 (V.2 8월-11.15.)	1799
1714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협상. 전3권 (V.3 11.16.-12월)	1800
1715	UR(우루과이라운드)/제도 분야 협상. 전2권 (V.1 1월-11.15.)	1801
1716	UR(우루과이라운드)/제도 분야 협상. 전2권 (V.2 11.16.-12월)	1802
1717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전5권 (V.1 1-4월)	1803
1718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전5권 (V.2 5월-7.13.)	1804
1719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전5권 (V.3 7.14.-9월)	1805
1720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전5권 (V.4 10월-12.6.)	1806
1721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전5권 (V.5 12.7.-27.(12.15. 협상 종결))	1807
172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808
172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국별 TPRM(무역정책검토제도)	1810
172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BT(무역기술장벽)위원회	1811
172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1812
172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반덤핑위원회	1813
172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관세양허위원회 및 관세평가위원회	1814
172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1815
172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무역과 환경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전3권 (V.1 1-3월)	1816
173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무역과 환경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전3권 (V.2 4-7월)	1817
173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무역과 환경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전3권 (V.3 8-12월)	1818
173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옵서버 지위 관련 비공식 협의	1819
173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주요인사 방한	1820
1734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정 운영	1821
1735	CCC(관세협력이사회) 각종 회의. 전2권 (V.1 1-5월)	1822
1736	CCC(관세협력이사회) 각종 회의. 전2권 (V.2 6-12월)	1823
1737	BIE(국제박람회기구). 전3권 (V.1 1991-92)	1824
1738	BIE(국제박람회기구). 전3권 (V.2 1993.1-6월)	1825
1739	BIE(국제박람회기구). 전3권 (V.3 1993.7-12월)	1826
1740	ITTO(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 제15차. 요코하마, 1993.11.10.-17.	1827
1741	ITTO(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 제12-14차	1828
1742	관세심의위원회	1829
1743	수입관세 운용	1830
1744	통상 관련 국내법령 개정안 검토	1831
1745	한·이스라엘 간 교역통계 발표 문제	1832
1746	USTR(미국통상대표부)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1833
1747	미국 의회 통상 관련 입법 동향	1834
1748	미국의 대외통상 정책 일반	1835
1749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교역국의 문제제기	1836
1750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1837
1751	칠레산 과일 수입 문제	1838
1752	대중국 자동차 수출	1839
1753	한·EC(구주공동체) 자동차 교역 동향	1840
1754	한·EC(구주공동체) 철강 협의체 구성	1841
1755	한·홍콩 경제·통상협력	1842
1756	대이라크 수출 관련, 유엔 이라크재재위원회의 수출승인	1843
1757	대일본 무역역조 개선대책	1844
1758	일본산 성숙바나나 수입 규제	1845

1759	한·몽골 경제통상 및 기술협력	1847
1760	담배소비세율 인상 관련 대미국 협의	1848
1761	대미국 경제통상 홍보. 전2권 (V.1 경제통상 홍보활동)	1849
1762	대미국 경제통상 홍보. 전2권 (V.2 품질한국(Korea for Quality) 홍보행사)	1850
1763	미국산 수입 밀 농약검출 문제	1851
1764	외국 화장품 부정 수입 문제	1852
1765	한·미국 금융협력. 전2권 (V.1 1-5월)	1853
1766	한·미국 금융협력. 전2권 (V.2 6-12월)	1854
1767	한·미국 동식물 검역·위생 문제	1855
1768	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전4권 (V.1 제1-2차 협상, 1992)	1856
1769	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전4권 (V.2 제3차 협상, 1993.2.11.-13.)	1858
1770	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전4권 (V.3 제4차 협상, 1993.4.13.-22.)	1859
1771	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전4권 (V.4 제5차 협상, 1993.6.22.-26.)	1860
1772	한·미국 수산물 수입 문제	1861
1773	한·미국 통관 문제	1862
1774	한·미국 통상관계 일반. 전2권 (V.1 1-5월)	1863
1775	한·미국 통상관계 일반. 전2권 (V.2 6-12월)	1864
1776	한·호주 세관협력회의, 제3차. 서울, 1993.9.13.-17.	1865
1777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제19차. 서울, 1993.9.17.	1866
1778	한·캐나다 섬유협상	1867
1779	한·중국 무역실무회의, 제1차. 북경, 1993.4.28.-29. 전2권 (V.1 2월-4.20.)	1868
1780	한·중국 무역실무회의, 제1차. 북경, 1993.4.28.-29. 전2권 (V.2 4.21.-6월)	1869
1781	한·중국 통상장관회담, 제1차. 북경, 1993.9.3.	1870
1782	1993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동경, 1993.6.17.-18.	1871
1783	한·일본 [외무부] 다자통상협의회	1872
1784	한·일본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제3차. 동경, 1993.5.17.-18. 전3권 (V.1 기본문서)	1873
1785	한·일본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제3차. 동경, 1993.5.17.-18. 전3권 (V.2 회의자료)	1874
1786	한·일본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제3차. 동경, 1993.5.17.-18. 전3권 (V.3 유관부처 자료)	1875
1787	한·일본 통상장관회담, 제2차. 서울, 1993.8.30.	1876
1788	한·뉴질랜드 세관협력회의, 제1-2차	1877
1789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제17차. 서울, 1993.8.23.	1878
1790	한·러시아 세관협력회의, 제2차. 서울, 1993.5.19.-26.	1879
1791	한·러시아 표준협력회의, 제1-2차	1880
1792	한·태국 통상장관회담, 제10차. 서울, 1993.8.10.-11.	1881
1793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14차. Washington D.C., 1993.3.16.-19. 전2권 (V.1 기본문서)	1882
1794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14차. Washington D.C., 1993.3.16.-19. 전2권 (V.2 자료)	1883
1795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15차. 서울, 1993.10.14.-16. 전2권 (V.1 사전준비)	1884
1796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15차. 서울, 1993.10.14.-16. 전2권 (V.2 회의결과 및 자료)	1885
1797	한·미국 무역통계회의, 제5-6차	1886
1798	한·미국 세관협력회의, 제8차. 서울, 1993.11.2.-3.	1887
1799	한·미국 식물검역 및 식품안전 전문가회의. Washington D.C., 1993.3.24.-26.	1888
1800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19차. 전4권 (V.1 제15-16차)	1889
1801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19차. 전4권 (V.2 제17차)	1890
1802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19차. 전4권 (V.3 제18차)	1891
1803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19차. 전4권 (V.4 제19차)	1892
1804	대일본 수출촉진단 일본 방문	1893
1805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 일본 방문, 1993.9.6.-15. 전2권 (V.1 기본문서)	1894
1806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 일본 방문, 1993.9.6.-15. 전2권 (V.2 자료)	1895

1807	이집트 EXPO 사절단 방한, 1993.10.22.-27.	1896
1808	경제·통상 주요인사 미국 방문	1897
1809	김철수 상공부장관 미국 방문, 1993.4.12.-19.	1898
1810	Joao Celestino DIAS 앙골라 상무장관 방한, 1993.6.19.-23.	1899
1811	Vieira, Jose Eduardo 브라질 상공관광장관 방한 초청 계획, 1993.10.5.-7.	1900
1812	Santos, Manuel Calderon 콜롬비아 대외무역부장관 방한, 1993.5.2.-5.	1901
1813	이남청(李嵐淸) 중국 무역 담당 부총리 방한, 1993.9.27.-10.2.	1902
1814	Sulaiman Abdulaziz AL-SOLAIM 사우디아라비아 상무장관 방한, 1993.8.5.-7.	1903
1815	Richard KAIJUKA 우간다 상공장관 방한	1904
1816	Cassidy, Robert USTR(미국무역대표부) 아태담당 대표보 방한, 1993.5.24.-27.	1905
1817	현대자동차 캐나다 공장 조업 중단	1906
1818	EC(구주공동체)의 한국산 CDP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문제	1907
1819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전4권 (V.1 1991.4-8월)	1908
1820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전4권 (V.2 1991.9-12월)	1909
1821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전4권 (V.3 1992.1-9월)	1910
1822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전4권 (V.4 1992.10-93.5월)	1911
1823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전5권 (V.1 1992.1-6월)	1912
1824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전5권 (V.2 1992.7월)	1913
1825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전5권 (V.3 1992.8-12월)	1914
1826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전5권 (V.4 1993.1-2월)	1915
1827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전5권 (V.5 1993.3-8월)	1916
1828	미국의 한국산 DRAM 반도체 덤핑 제소. 전2권 (V.1 1991-92)	1918
1829	미국의 한국산 DRAM 반도체 덤핑 제소. 전2권 (V.2 1993)	1919
1830	미국의 한국상품 덤핑 조사	1920
1831	한·미국 간 상사분쟁	1921
1832	한·호주 항공협력	1922
1833	한·일본 항공협력	1923
1834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후속조치: 화물청사 건립 문제. 전2권 (V.1 1991.6-12월)	1925
1835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후속조치: 화물청사 건립 문제. 전2권 (V.2 1992-93)	1926
1836	한·미국 항공협력	1927
1837	한·미국 해운협력	1928
1838	한·중화민국 해운위원회, 제8차. Taipei, 1992.4.15.-16.	1929
1839	한·캐나다 항공회담. Ottawa, 1993.12.15.-16.	1930
1840	한·EC(구주공동체) 해운회담, 제5차. Brussels, 1993.6.17.	1931
1841	한·러시아 해운회담, 제5차. Moscow, 1993.7.21.-23.	1932
1842	한·미국 항공 실무대책반 회의	1933
1843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개최 준비. 전6권 (V.1 정부대표 임명)	1934
1844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개최 준비. 전6권 (V.2 정부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1935
1845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개최 준비. 전6권 (V.3 위원총회)	1936
1846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개최 준비. 전6권 (V.4 참가대표단에 대한 특권·면제 부여문제)	1937
1847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개최 준비. 전6권 (V.5 자원봉사자 및 도우미)	1938
1848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개최 준비. 전6권 (V.6 기타)	1939
1849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문화행사. 전2권 (V.1 문화행사 I)	1940
1850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문화행사. 전2권 (V.2 문화행사 II)	1941
1851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외빈 방한. 전3권 (V.1 총괄)	1942
1852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외빈 방한. 전3권 (V.2 아주지역)	1943
1853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외빈 방한. 전3권 (V.3 미주지역 및 국제기구)	1945
1854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구주지역). 전8권 (V.1 서구 I)	1946

1855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구주지역). 전8권 (V.2 서구 II)	1947
1856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구주지역). 전8권 (V.3 중구 I)	1948
1857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구주지역). 전8권 (V.4 중구 II)	1949
1858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구주지역). 전8권 (V.5 발트3국)	1950
1859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구주지역). 전8권 (V.6 러시아)	1951
1860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구주지역). 전8권 (V.7 CIS I, 1991-92)	1952
1861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구주지역). 전8권 (V.8 CIS II, 1993)	1953
1862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국제기구). 전5권 (V.1 유엔 I, 1991-92.4월)	1954
1863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국제기구). 전5권 (V.2 유엔 II, 1992.5-93.5월)	1955
1864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국제기구). 전5권 (V.3 유엔 III, 1993.6-8월)	1956
1865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국제기구). 전5권 (V.4 유엔 전문·산하기구 참가)	1957
1866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국제기구). 전5권 (V.5 기타 국제기구)	1958
1867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1 미국 I, 1991-92.1월)	1959
1868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2 미국 II, 1992.2-4월)	1960
1869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3 미국 III, 1992.5-9월)	1961
1870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4 미국 IV, 1992.10월-1993)	1962
1871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5 캐나다 및 멕시코)	1963
1872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6 카리브)	1964
1873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7 중미)	1965
1874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8 남미 I)	1966
1875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9 남미 II)	1967
1876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주지역). 전6권 (V.1 동북아 I)	1968
1877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주지역). 전6권 (V.3 동남아 I)	1969
1878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주지역). 전6권 (V.4 동남아 II)	1970
1879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주지역). 전6권 (V.5 서남아)	1971
1880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주지역). 전6권 (V.6 대양주)	1972
1881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프리카지역). 전4권 (V.1 북서아프리카 I)	1973
1882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프리카지역). 전4권 (V.2 북서아프리카 II)	1974
1883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프리카지역). 전4권 (V.3 남동아프리카 I)	1975
1884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프리카지역). 전4권 (V.4 남동아프리카 II)	1976
1885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중동지역). 전4권 (V.1 중동 I)	1977
1886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중동지역). 전4권 (V.2 중동 II)	1978
1887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중동지역). 전4권 (V.3 중동 III)	1979
1888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중동지역). 전4권 (V.4 중동 IV)	1980
1889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1 홍보 I: 협의회 구성·운영 및 명예홍보위원 위촉) ...	1981
1890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2 홍보 II: 해외홍보실무협의회)	1982
1891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3 홍보 III: 홍보활동, 1992.12-93.6월)	1983
1892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4 홍보 IV: 홍보활동, 1993.7월)	1984
1893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5 홍보 V: 홍보활동, 1993.8.2.-15.)	1985
1894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6 홍보 VI: 홍보활동, 1993.8.16.-10월)	1986
1895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7 홍보 VII: 홍보활동, 1993.11-12월)	1987
1896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8 홍보 VIII: 제작·취재 협조)	1988
1897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9 홍보 IX: 해외유치단 활동)	1989
1898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10 홍보 X: 관람단(참관단) 유치)	1990
1899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정부대표자 및 기술전문가 회의. 대전	1991
1900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정부대표자회의, 제1차. 서울, 1992.3.3.-5. 전4권 (V.1 1991.11-92.1월)	1992

1901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정부대표자회의, 제1차. 서울, 1992.3.3.-5. 전4권 (V.2 1992.2.3.-20.)	1993
1902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정부대표자회의, 제1차. 서울, 1992.3.3.-5. 전4권 (V.3 1992.2.21.-5월)	1994
1903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정부대표자회의, 제1차. 서울, 1992.3.3.-5. 전4권 (V.4 리셉션, 1992.3.2.)	1995
1904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정부대표자회의, 제2차. 서울 및 대전, 1992.10.20.-22. 전2권 (V.1 8월-10.13.)	1996
1905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정부대표자회의, 제2차. 서울 및 대전, 1992.10.20.-22. 전2권 (V.2 10.14.-11월)	1997
1906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 유치를 위한 정보수집, 1990-91)	1998
1907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2 초청장 송부 I, 1990-91.3.8.)	1999
1908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3 초청장 송부 II, 1991.3.11.-92.2월)	2000
1909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4 참가국 공한 발송 및 회신, 1992)	2001
1910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5 유치 교섭지시 및 현황, 1991-93)	2002
1911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6 해외유치교섭단 파견, 1992)	2003
1912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7 참가 통보 및 수락서, 1991-92.4월)	2004
1913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8 참가신청서 및 계약서, 1991-93)	2005
1914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9 참가국 실무기관 파악, 1993)	2006
1915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0 개도국 참가지원(공동관), 1991-93)	2007
1916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1 개도국 공동관 지원 스펙서, 1991-92)	2008
1917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2 개도국 공동관 유치 출장 I, 1992-93.3월)	2009
1918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3 개도국 공동관 유치 출장 II, 1993.4-5월)	2010
1919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4 단독관 기본계획서)	2011
1920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5 전시계획서 제출 요청 및 승인, 1992-93)	2012
1921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6 지역별 전시계획서 제출 I)	2013
1922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7 지역별 전시계획서 제출 II)	2014
1923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8 전시품 수송계획서)	2015
1924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9 운영요원)	2016
1925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20 참가준비 및 안내자료, 1993)	2017
1926	1993년도 바르셀로나(스페인) 한국상품전시회, 1993.5.17.-28.	2018
1927	77그룹 회의	2019
1928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 77그룹 의장직 수임 및 제16차 의장단 회의	2020
1929	77그룹 ECDC(개도국간경제협력)/IFCC(정부간후속조치및조정위원회) 회의, 제8차. Panama City(파나마), 1993.8.30.-9.4.	2021
1930	77그룹 TCDC(개도국간기술협력) 고위급위원회 회의, 제8차. New York, 1993.5.25.-28.	2022
1931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9차. 동경, 1993.7.7.-9. 전2권 (V.1 1월-6.23.)	2023
1932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9차. 동경, 1993.7.7.-9. 전2권 (V.2 6.24.-9월)	2024
1933	콜롬볼랜(Colombo Plan) 분담금	2025
1934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5차. Seattle, 1993.11.17.-19. 전4권 (V.1 사전준비)	2026
1935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5차. Seattle, 1993.11.17.-19. 전4권 (V.2 결과 및 자료)	2027
1936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5차. Seattle, 1993.11.17.-19. 전4권 (V.3 APEC/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 선언)	2028
1937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5차. Seattle, 1993.11.17.-19. 전4권 (V.4 APEC 각료회의의 계기 양자회담)	2029
1938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2차. Williamsburg, 1993.3.30.-4.1.	2030
1939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3차. Seattle, 1993.6.30.-7.2.	2031

1940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4차. Honolulu, 1993.9.22.-24. 전2권 (V.1 기본문서)	2032
1941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4차. Honolulu, 1993.9.22.-24. 전2권 (V.2 결과 및 자료)	2033
1942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5차. Seattle, 1993.11.14.-16.	2034
1943	APEC(아태경제협력체) 협력사업 간사국 회의. 전2권 (V.1 Washington D.C., 2.18.-19.)	2035
1944	APEC(아태경제협력체) 협력사업 간사국 회의. 전2권 (V.2 Singapore, 8.25.-27.)	2036
1945	APEC(아태경제협력체)/EWG(에너지실무그룹) 회의, 제6-7차	2037
1946	APEC(아태경제협력체)/WGT(전기통신실무그룹) 회의, 제7-8차	2039
1947	APEC(아태경제협력체)/FWG(수산물무그룹) 회의, 제3-4차. 전2권 (V.1 제3차. Bangkok, 2.10.-12.)	2040
1948	APEC(아태경제협력체)/FWG(수산물무그룹) 회의, 제3-4차. 전2권 (V.2 제4차. Wellington(뉴질랜드), 10.11.-13.)	2041
1949	APEC(아태경제협력체)/MRC(해양자원보존) 실무그룹회의, 제5차. Seattle, 1993.5.18.-21. 전2권 (V.1 3-5월)	2042
1950	APEC(아태경제협력체)/MRC(해양자원보존) 실무그룹회의, 제5차. Seattle, 1993.5.18.-21. 전2권 (V.2 8-11월)	2043
1951	APEC(아태경제협력체)/TWG(관광실무그룹) 회의, 제3-4차. 전2권 (V.1 제3차. Queensland(호주), 3.24.-25.)	2044
1952	APEC(아태경제협력체)/TWG(관광실무그룹) 회의, 제3-4차. 전2권 (V.2 제4차. Pattaya(태국), 9.27.-30.)	2046
1953	APEC(아태경제협력체)/TWG(수송실무그룹) 회의, 제4차. Seattle, 1993.7.20.-23.	2047
1954	APEC(아태경제협력체)/RTL(역내무역자유화) 회의. 전4권 (V.1 그룹회의. Williamsburg, 3.29.-30.)	2048
1955	APEC(아태경제협력체)/RTL(역내무역자유화) 회의. 전4권 (V.2 관세 및 무역전문가회의. Singapore, 5.16.-19.)	2050
1956	APEC(아태경제협력체)/RTL(역내무역자유화) 회의. 전4권 (V.3 그룹회의. Seattle, 6.28.-29.: 기본문서)	2051
1957	APEC(아태경제협력체)/RTL(역내무역자유화) 회의. 전4권 (V.4 그룹회의. Seattle, 6.28.-29.: 자료)	2053
1958	APEC(아태경제협력체)/TID(교역 및 투자데이터) 검토 실무그룹회의, 제4차. Singapore, 1993.5.27.-28.	2054
1959	APEC(아태경제협력체)/TIF(무역·투자기본문서) 선언 채택. 전2권 (V.1 1-4월)	2056
1960	APEC(아태경제협력체)/TIF(무역·투자기본문서) 선언 채택. 전2권 (V.2 5-11월)	2057
1961	APEC(아태경제협력체)/TPWG(무역진흥실무그룹) 회의, 제5차. Victoria(캐나다), 1993.6.24.-25.	2059
1962	APEC(아태경제협력체)/투자 및 기술이전 실무그룹회의, 제4차. 서울, 1993.5.18.-20.	2060
1963	APEC(아태경제협력체)/HRD(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 제7차. 동경, 1993.1.26.-27.	2061
1964	APEC(아태경제협력체)/HRD(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 제8차. Honolulu, 1993.5.25.-26. 전2권 (V.1 기본문서) ..	2062
1965	APEC(아태경제협력체)/HRD(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 제8차. Honolulu, 1993.5.25.-26. 전2권 (V.2 회의자료) ..	2063
1966	APEC(아태경제협력체)/EPG(저명인사그룹) 회의. 전2권 (V.1 제1-3차 회의)	2064
1967	APEC(아태경제협력체)/EPG(저명인사그룹) 회의. 전2권 (V.2 저명인사그룹 보고서)	2065
1968	APEC(아태경제협력체)/ETI(경제동향 및 현안그룹) 회의. Honolulu, 1993.9.19.-20.	2066
1969	APEC(아태경제협력체) 사무국 개설 및 운영	2067
1970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2068
1971	PBEC(태평양경제협력회) 총회, 제26차. 서울, 1993.5.24.-26. 전3권 (V.1 기본문서)	2069
1972	PBEC(태평양경제협력회) 총회, 제26차. 서울, 1993.5.24.-26. 전3권 (V.2 연설문)	2070
1973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의체)	2071
1974	AFTA(아시아자유무역지대) 추진	2072
1975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전3권 (V.1 1-5월)	2073
1976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전3권 (V.2 6-10월)	2074
1977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전3권 (V.3 11-12월)	2075
1978	MERCOSUR(남미공동시장)	2076
1979	CARICOM(카리브공동시장) 동향	2077
1980	EEA(유럽경제지역) 창설. 전2권 (V.1 1988-91)	2078
1981	EEA(유럽경제지역) 창설. 전2권 (V.2 1992-93)	2079
1982	OPEC(석유수출국기구)	2080
1983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관련 국내법규	2081

1984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상임위원회, 제29차. Washington D.C., 1993.3.1.-5.	2082
1985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발효 후속조치 및 이행준비	2083
1986	WWF(세계야생동물기금) 코볼소 보존 청원문제 및 대책. 전2권 (V.1 미국정부 공청회)	2084
1987	WWF(세계야생동물기금) 코볼소 보존 청원문제 및 대책. 전2권 (V.2 결과 및 대책)	2085
1988	WWF(세계야생동물기금) 코볼소 불 보존협의 및 관련 인사 방한	2086
1989	지구환경 관계장관 대책회의	2087
1990	지구환경대책기획단 회의, 제1-14차	2088
1991	한·일본 환경문제 Task force 합동회의, 제2회. 서울, 1993.2.8.-9.	2089
1992	GEF(지구환경금융) 참가국 회의, 제5차. 북경, 1993.5.26.-28.	2090
1993	GEF(지구환경금융) 최종회의. Cartagena(콜롬비아), 1993.12.8.-10.	2091
1994	GEF(지구환경금융) 특별회의	2092
1995	UNEP(유엔환경계획) 코볼소 보존 재원조달에 관한 회의. Nairobi(케냐). 전2권 (V.1 예비회의, 1992.12.16.-18.)	2093
1996	UNEP(유엔환경계획) 코볼소 보존 재원조달에 관한 회의. Nairobi(케냐). 전2권 (V.2 본회의, 1993.6.28.-7.1.)	2094
1997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 회의	2095
1998	Northern Forum	2097
1999	미국의 대아시아 환경협력 구상	2098
2000	환경 관련 국제회의 및 세미나	2099
2001	한·일본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6차. 동경, 1993.2.2.-3. 전2권 (V.1 기본문서)	2100
2002	한·일본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6차. 동경, 1993.2.2.-3. 전2권 (V.2 의제 및 자료)	2101
2003	한·말레이시아 기술협력회의, 제6차. 서울, 1993.7.5. 전2권 (V.1 1992.12-93.6월)	2102
2004	한·말레이시아 기술협력회의, 제6차. 서울, 1993.7.5. 전2권 (V.2 1993.7월)	2103
2005	한·러시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제3차. 서울, 1993.5.29.-6.3.	2104
2006	한·미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93.12.9.-10. 전2권 (V.1 기본문서)	2105
2007	한·미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93.12.9.-10. 전2권 (V.2 자료)	2106
2008	한·미국 과학기술협력포럼, 제1차. Washington D.C., 1993.1.11.-14.	2107
2009	한·미국 기술실무위원회, 제2차. Washington D.C., 1993.6.16.	2108
2010	과학기술협력 관련 주요인사 국제회의 참석 및 교류	2109
2011	한·호주 과학기술협력	2110
2012	한·캐나다 과학기술협력	2111
2013	한·중국 과학기술협력	2112
2014	한·쿠웨이트 과학기술협력	2114
2015	한·러시아 과학기술협력	2115
2016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전8권 (V.1 제1차 협상)	2116
2017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전8권 (V.2 제2차 협상)	2117
2018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전8권 (V.3 제3차 협상)	2118
2019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전8권 (V.4 제4차 협상)	2119
2020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전8권 (V.5 제5차 협상)	2120
2021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전8권 (V.6 제6차 협상)	2121
2022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전8권 (V.7 비공식 협상)	2122
2023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전8권 (V.8 제7차 협상)	2123
2024	한·스위스 지적재산권 협의	2124
2025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1 1.4.-26.)	2126
2026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2 1.27.-2.9.)	2127
2027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3 2.10.-18.)	2128
2028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4 2.19.-3.20.)	2129
2029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5 3.22.-4.15.)	2130
2030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6 4.16.-5월)	2131
2031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7 6-12월)	2132

2032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8 IPR 단속실적 I)	2133
2033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9 IPR 단속실적 II)	2134
2034	U Soe Tha 미얀마 체신장관 방한, 1993.1.25.-30.	2135
2035	한·중국 통신분야 협력	2136
2036	한·EC(구주공동체) 통신 협의	2137
2037	한·이란 통신협력위원회, 제2차. 서울, 1993.10.5.-6.	2138
2038	한·미국 통신 협의. 전3권 (V.1 1992.11월-93.3.24.)	2139
2039	한·미국 통신 협의. 전3권 (V.2 1993.3.25.-6월)	2140
2040	한·미국 통신 협의. 전3권 (V.3 1993.7-12월)	2141
2041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세	2142
2042	아프가니스탄 정세	2143
2043	알제리 정세	2144
2044	앙골라 사태. 전2권 (V.1 앙골라 동향)	2145
2045	앙골라 사태. 전2권 (V.2 유엔안보리 동향)	2146
2046	알바니아 정세	2147
2047	아르헨티나 정세	2148
2048	서부사하라 문제	2149
2049	호주 정세	2150
2050	방글라데시 총선 및 민주화 시위 사태	2151
2051	불가리아 정세	2152
2052	미얀마 정세, 1992	2153
2053	미얀마 정세, 1993	2155
2054	브라질 정세	2157
2055	브루나이 정세	2158
2056	볼리비아 정세	2159
2057	캄보디아 정세. 전2권 (V.1 1.1.-6.10.)	2160
2058	캄보디아 정세. 전2권 (V.2 6.11.-12.20.)	2161
2059	대만 정세	2162
2060	중국·대만(양안) 관계	2163
2061	칠레 정세	2164
2062	콜롬비아 정세	2165
2063	캐나다·미국 관계	2166
2064	코스타리카 정세	2168
2065	중국 정세. 전2권 (V.1 1-4월)	2169
2066	중국 정세. 전2권 (V.2 5-12월)	2170
2067	중국·일본 관계	2171
2068	중국·러시아 관계	2172
2069	중국·미국 관계. 전2권 (V.1 1-8월)	2173
2070	중국·미국 관계. 전2권 (V.2 9-12월)	2174
2071	중국·아주지역 국가 관계	2175
2072	중국·구주지역 국가 관계	2177
2073	중국·미주지역 국가 관계	2178
207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세	2179
2075	쿠바 정세	2180
2076	CIS(독립국가연합) 정세	2181
2077	사이프러스 정세	2183
2078	체코 및 슬로바키아 정세. 전2권 (V.1 1-5월)	2184
2079	체코 및 슬로바키아 정세. 전2권 (V.2 6-12월)	2185

2080	지부티 정세	2187
2081	덴마크 정세	2188
2082	도미니카공화국 정세	2189
2083	에콰도르 정세	2190
2084	이집트 정세	2191
2085	에리트리아 정세	2192
2086	엘살바도르 정세	2193
2087	에티오피아 정세	2194
2088	프랑스 정세. 전3권 (V.1 국내정세)	2195
2089	프랑스 정세. 전3권 (V.2 대외관계(1-5월))	2196
2090	프랑스 정세. 전3권 (V.3 대외관계(6-12월))	2197
2091	독일 정세. 전2권 (V.1 1-6월)	2198
2092	독일 정세. 전2권 (V.2 7-12월)	2200
2093	그루지야 정세	2201
2094	가나 정세	2202
2095	그리스 정세	2203
2096	과테말라 정세. 전2권 (V.1 1-5월)	2204
2097	과테말라 정세. 전2권 (V.2 6-12월)	2205
2098	가이아나 정세	2206
2099	헝가리 정세	2207
2100	홍콩 장래문제 및 정세	2208
2101	온두라스 정세	2209
2102	아이티 정세	2210
2103	아이슬란드 정세	2211
2104	인도 정세	2212
2105	인도·파키스탄 관계	2213
2106	인도네시아 정세	2214
2107	이라크 정세	2216
2108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 전3권 (V.1 1.6.-15.)	2217
2109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 전3권 (V.2 1.16.-31.)	2218
2110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 전3권 (V.3 2-8월)	2219
2111	이란 정세	2220
2112	이스라엘 정세	2221
2113	이스라엘 점령지 내 팔레스타인인 문제	2222
2114	이탈리아 정세	2223
2115	일본 정세	2224
2116	일본 총선 및 호소카와(細川護熙) 내각 연립정부 출범	2225
2117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	2226
2118	일본·러시아 관계	2227
2119	미국·일본 관계. 전2권 (V.1 1-4월)	2228
2120	미국·일본 관계. 전2권 (V.2 5-12월)	2229
2121	일본의 대중남미 외교정책	2230
2122	자메이카 정세	2231
2123	요르단 정세	2232
2124	케냐 정세	2234
2125	쿠웨이트 정세	2236
2126	레바논 정세	2237
2127	라이베리아 정세	2238

2128	리투아니아 정세	2239
2129	라오스 정세	2240
2130	라트비아 정세	2241
2131	말레이시아 정세	2242
2132	모로코 정세	2243
2133	말라위 정세	2244
2134	멕시코 정세	2245
2135	나이지리아 정세	2247
2136	네팔 정세	2248
2137	노르웨이 정세	2249
2138	니카라과 정세	2250
2139	니제르 정세	2251
2140	뉴질랜드 정세	2252
2141	오만 정세	2253
2142	파키스탄 정세	2254
2143	파라과이 정세	2255
2144	필리핀 정세	2256
2145	파나마 정세	2257
2146	포르투갈 정세	2258
2147	페루 정세	2259
2148	카타르 정세	2260
2149	러시아 국내정세. 전6권 (V.1 1-3월)	2261
2150	러시아 국내정세. 전6권 (V.2 4-8월)	2262
2151	러시아 국내정세. 전6권 (V.3 9월)	2263
2152	러시아 국내정세. 전6권 (V.4 10월)	2264
2153	러시아 국내정세. 전6권 (V.5 11월)	2265
2154	러시아 국내정세. 전6권 (V.6 12월)	2266
2155	러시아 대외관계. 전2권 (V.1 1-6월)	2267
2156	러시아 대외관계. 전2권 (V.2 7-12월)	2268
2157	러시아·미국 관계	2269
2158	루마니아 정세	2271
2159	르완다 정세	2272
2160	스웨덴 정세	2273
2161	싱가포르 정세	2274
2162	세네갈 정세	2275
2163	소말리아 사태. 전3권 (V.1 소말리아 동향)	2276
2164	소말리아 사태. 전3권 (V.2 안보리 동향)	2277
2165	소말리아 사태. 전3권 (V.3 보고 및 자료)	2278
2166	수단 정세	2280
2167	수리남 정세	2281
2168	슬로베니아 정세	2282
2169	스위스 정세	2283
2170	토고 정세	2284
2171	태국 정세	2285
2172	튀니지 정세	2286
2173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세	2287
2174	우크라이나 정세. 전2권 (V.1 1-7월)	2288
2175	우크라이나 정세. 전2권 (V.2 8-12월)	2289

2176	우간다 정세	2290
2177	영국 정세	2291
2178	Clinton 미국 대통령 후보 및 진영 주요인사 인적사항	2292
2179	미국 Clinton 신 행정부 조직개편 및 고위직 임명. 전3권 (V.1 1992)	2293
2180	미국 Clinton 신 행정부 조직개편 및 고위직 임명. 전3권 (V.2 1993.1월)	2294
2181	미국 Clinton 신 행정부 조직개편 및 고위직 임명. 전3권 (V.3 1993.2-12월)	2295
2182	미국 의회 동향	2296
2183	미국 의회 청문회 개최 동향	2297
2184	미국 정세. 전2권 (V.1 1992.7-93.5월)	2298
2185	미국 정세. 전2권 (V.2 1993.6-12월)	2299
2186	미국 주요인사 연설 및 정책 건의	2300
2187	미국·베트남 관계	2301
2188	베트남 정세	2302
2189	베네수엘라 정세	2304
2190	아프리카 민주화 동향	2305
2191	중동평화협상. 전4권 (V.1 1-4월)	2306
2192	중동평화협상. 전4권 (V.2 5-8월)	2308
2193	중동평화협상. 전4권 (V.3 9월)	2309
2194	중동평화협상. 전4권 (V.4 10-12월)	2310
2195	구주 의회 정세	2311
2196	서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2312
2197	신유고연방 정세. 전3권 (V.1 1-4월)	2313
2198	신유고연방 정세. 전3권 (V.2 5-7월)	2314
2199	신유고연방 정세. 전3권 (V.3 8-12월)	2315
2200	예멘 정세	2316
2201	자이르 정세	2317
2202	한·자이르 관계	2318
2203	공산권 거주 동포 국적 처리 문제	2319
2204	재외국민정책 방향 수립	2320
2205	제2차 세계 한민족 대표자 회의(사전준비)	2321
2206	재외국민 정책심의위원회	2322
2207	중국지역 독립유공자(신규식 외 5인) 유해 봉환. 전2권 (V.1 1992-93.6월)	2323
2208	중국지역 독립유공자(신규식 외 5인) 유해 봉환. 전2권 (V.2 1993.7-12월)	2324
2209	세계 한민족 축전. 전2권 (V.1 2-4월)	2325
2210	세계 한민족 축전. 전2권 (V.2 5-9월)	2326
2211	해외 한민족 대표자 회의, 제4회. 서울, 1993.5.11.-13.	2327
2212	재일본 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	2328
2213	미국(Los Angeles시) 흑인 폭동 재발방지 대책	2329
2214	대중국 동포정책	2330
2215	타지키스탄 내전에 따른 한인난민 지원	2331
2216	러시아 거주 무국적자의 영주귀국 신청	2332
2217	재사할린 무연고 동포 영주귀국	2333
2218	재러시아 한인의 강제이주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	2334
2219	CIS(독립국가연합) 거주 동포 모국 방문	2335
2220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경제자치구 설립 추진문제	2336
2221	재중앙아프리카공화국 한인회	2337
2222	해외이주정책 관련 자료	2338
2223	김포공항 경유 제3국인의 캐나다 불법 입국 방지	2339

2224	재독일 한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문제	2340
2225	제아르헨티나 동포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문제	2341
2226	여권 업무 개선(반납·훼손·재발급)	2342
2227	여권 업무 실무편람 개정	2343
2228	여권발급 취급기관 확대	2344
2229	1993년도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전2권 (V.1 1992)	2345
2230	1993년도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전2권 (V.2 1993)	2346
2231	주블라디보스톡(러시아)총영사관 관저 및 직원주택 신축 검토	2347
2232	주태국대사관 신축 청사 및 관저 입주	2348
2233	주Toronto(캐나다)총영사관 청사 매입	2349
2234	주독일대사관 청사 매입 검토	2350
2235	주스웨덴대사관 청사 매입	2351
2236	주스리랑카대사관 매입 청사 수리	2352
2237	주유엔대표부 청사 신축 부지 매입	2353
2238	주콜롬비아대사관 관저 매입	2354
2239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저 이전. 전2권 (V.1 1990-91)	2355
2240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저 이전. 전2권 (V.2 1992-93)	2356
2241	주고오베(일본)총영사관 관저 기부채납	2357
2242	주모리타니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 부지 매각	2358
2243	주말라위대사관 관저 매각	2359
2244	해양법 대책위원회 규정 제정, 1976.12.30.	2360
2245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유엔안보리 대책 및 조치, 전6권 (V.2 1988.2.5.-12.)	2361
2246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국제법적 검토 및 외교적 대응방안	2362
2247	미국 Bush 신정부 수립에 따른 대책	2363
2248	미국 관련 주요사항 청와대 보고서	2364
2249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1988.10.17.-21. 전9권 (V.4 한미 정상회담)	2366
2250	전두환 전 대통령 미국 방문, 1988.3.22.-4.10.	2367
2251	미국의 대북한 제재 완화 조치	2368
2252	남북대화 관련 계기별 자료	2369
2253	한·미국 간의 안보협력 관련 고위실무자회의	2370
2254	Taft, William H. 미국 국방부 부장관 방한, 1988.5.10.-11.	2371
2255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대북한 지원사업	2372
2256	유엔 인권위원회 고문문제 관계	2373
2257	해양법대책위원회 회의	2374
2258	한·캐나다 간의 원자력협정에 따른 기속정보 지정문제	2375
2259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제6차. Ottawa(캐나다), 1988.6.2.-3.	2376
부 록		2377

UNDRO(유엔재해구호본부) 활동

생산연도 1985-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과학환경과

MF번호 2023-73 / 2 / 1-233

1985~93년 중 UNDRO(유엔재해구호본부)의 긴급구호기금 요청 및 동 기구 주관 세미나 개최 현황임.

1. 긴급구조 요청

- 1986.2.28. UNDRO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자금의 자발적 기여 요청
- 12.6. 1989년도 UNDRO 신탁기금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공여 요청
- 12.12. 아르메니아 지진피해 구호상황 설명회 개최
- 1989.5.30. 베트남 태풍피해 관련 긴급원조 요청

2. 지진연수 세미나(1991.10.9.~19., 모스크바)

- UNDRO, UNDP(유엔개발계획) 및 소련 정부 공동 주관
 - 지진재해 발생 가능한 개도국 전문가 25명 참석
 - 지진에 관한 토의 및 지진현장 답사
- 김상조 중앙기상대 기좌 참석

3. 재해관리계획 훈련 세미나(1991.10.28.~11.1., 모스크바)

- 정홍수 내무부 민방위본부 방재과장 참석

4. 천연재해 감소 10년대 국별위원회 책임자 회의 개최 예정

- 일시 및 장소: 1994.5.23.~27., 요코하마
- 유엔 인도조정국 주관
- 회의 전 국별 보고서를 1993년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

1231

대한민국 국제연합기구

소말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조정회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3 / 3 / 1-278

1. 대소말리아 인도적 지원 조정회의

- 제1차 회의(1992.10.12.~13., 제네바)
- 제2차 회의(1992.12.3.~5., 아디스아바바)
- 제3차 회의(1993.3.11.~13., 아디스아바바)
- 제4차 회의(1993.11.29.~12.1., 아디스아바바)

2. 주요 토의내용

- 긴급 행동을 요구하는 구호 및 재건 영역의 우선순위 선정
- 정착, 사회서비스, 생산 및 교역에 있어서 중장기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긴급조치와 전략
- 재건을 위한 경제적, 제도적 주요 정책 이슈
- 안전 확보를 위한 소말리아의 책임과 각국의 노력

3. 대소말리아 인도적 지원현황(1992~93년)

- 정부 지원
 - 제1차(3만 달러), 제2차(5만 달러), 제3차(10만 달러)
- 민간 지원
 - 선명회: 582,500달러
 - 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본부: 10만 달러
 - 대한적십자사: 38,500달러
 -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 쌀 500톤
 - 국내 문화예술인협회: 3만 달러

유고 난민 구호 지원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동구2과

MF번호 2023-73 / 4 / 1-237

1991~93년 중 유고 난민 구호 지원 관련 내용임.

1. UNHCR(유엔난민기구) 유고 사태 관련 각료회의(1992.7.29., 제네바)

- 참가자
 -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중국, 구유고 내 공화국, 인접 난민 접수국 등 주요국 각료급 인사
- 주요 의제
 - 유고 난민 및 실향민의 보호, 귀환 문제 등의 긴급 또는 항구적 해결방안 강구
 - 동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
- 회의 결과
 - 회의는 주로 서구 국가들이 사태의 종합적 해결방안을 위한 자리였는바, 이후 회의 참가국들을 중심으로 해결노력이 적극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으로서는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측면에서 기여 증대를 고려해야 함.

2. 유엔안보리의 보스니아 사태 관련 결의 채택

- 결의 채택
 - 유엔안보리는 1992.8.13.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태 관련, 구호물자 운송에 필요한 모든 조치 촉구 및 분쟁당사국의 국제 인도법 준수 촉구를 골자로 하는 2개의 결의를 별도로 채택
- 평가 및 전망
 - 동 결의는 사태의 해결보다는 구호물자 운송 확보가 목표
 - 결의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고위급회의 개최 예상

1233

대한민국 국제법률사 어휘집

유엔의 인도적 긴급지원 활동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3 / 5 / 1-175



1. 타지키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

- 주제네바대표부는 1993.1.15. 유엔인권국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요청 공한을 외무부에 송부함.
- 외무부는 2.5. 전년도 한국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적을 주유엔 및 주제네바 대표부에 통보함.
 - 1993년에도 1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양자 차원)을 추진 중이며, 타지키스탄 정부 측의 요청에 맞추어 현금 또는 의약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

1234

2. 에리트레아 지원 서약회의(1993.7.6.)

- 한국 측 참여 요청
 - 주제네바대사는 1993.6.21. 유엔이 에리트레아의 난민 귀환과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립 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에 대한 각국의 지원을 서약받기 위해 인도적 문제 담당 사무차장이 한국의 참가를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 동 회의 시, 한국 측 대표 주요 언급내용
 - 에리트레아 지원 회의에서 김삼훈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한국이 1992.4월 에리트레아 국민투표 지원을 위해 기여금과 물자를 제공하였음을 상기하고, 난민 귀환 및 정착을 통한 국가재건 지원프로그램을 위해 추가적인 기여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
 -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 한국의 지원 금액은 밝히지 않음.

3. 라이베리아, 앙골라 및 수단에 대한 지원

- 주유엔대사는 1993.4.28. 유엔사무총장이 라이베리아, 앙골라, 수단 3개국에 대한 인도적인 긴급구호 지원을 결의한데 대한 회원국들의 지원 실적을 7.15.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7.15. 3개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실적을 주유엔대표부에 통보함.

유엔의 이라크 내 난민구호 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73 / 6 / 1-180

1992~93년 중 유엔의 이라크 내 난민구호 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관련 내용임.

1. 유엔, 이라크 내 난민구호 활동계획에 대한 지원 요청

- 유엔은 이라크 내 쿠르드족 난민구호를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동 이행을 위한 각국 정부의 지원 요청
 - 1992.7.1.~93.3.31. 쿠르드족 등 이라크 내 소수민족 구호를 위한 지원활동에 소요예산 2억 5천 6백만 달러 확보 추진
 - 1992.10월 현재 각국의 원조 약속액은 6천 2백만 달러
- 한국에도 주유엔대사 및 주제네바대사를 통해 지원 요청

2. 한국 정부 조치

- 1993.11월 이라크 난민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10만 달러 지원을 결정함.

1235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번호

한국의 대체르노빌 원전사고 피해 복구지원 참여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3 / 7 / 1-240

1990~93년 중 한국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피해복구 지원 참여 관련 내용임.

1. 체르노빌 청소년 하계 휴양지 제공 캠페인 참여

- 1990.5월 벨라루스 유네스코 집행위원 및 주유네스코 소련대사는 한국의 지원을 요청
 - 7월 주유네스코대사 및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총재에게 하계 휴가지 제공 참여를 요청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총재는 1991.8월 한국 세계잼버리대회에 104명 초청의사 표명
 - 소련 국영 TV는 한국 세계잼버리대회 및 체르노빌 청소년 체재 현황 등 취재 의사 전달

2. 체르노빌 사고 피해 지원기금 마련 서약회의

- 1990.12.21.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 기금 마련 서약회의가 1991.9.20. 개최
 - 목표액은 6억 4,648만 달러로, 유엔 산하기구 및 전문기구 주관 하에 131개 사업 추진
 - 한국 정부는 주유엔대사가 그림 전달식 및 서약회의에 참석하고 5만 달러 서약

3. 한국의 여타 지원

- 1990.4.25. 소련 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의 진출기업에게 부상자 치료 자선사업 참여 요청
 - 현대는 5월 초 10만 달러 지원, 럭키금성은 10만 달러 지원 추진
 - 삼성은 10만 달러 상당 초음파 진단기 지원 추진
-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소요예산 80만 달러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업 참여 추진
 - 1991~93년간 IAEA 주관 체르노빌 국제연구센터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보고서(제2차 보고서). 전2권 (V.1 1989-92)

생산연도 1989-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3 / 8 / 1-156

1. 한국 정부,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에 따른 제2차 국별 보고서 제출

- 1989.12월 비엔나 소재 CSDHA(유엔사회개발및인권문제센터)에 제출
 - 한국은 1984.12.27.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에 가입하고, 동 당사국으로서 1986.3월 제1차 국별 보고서 제출
 - 4년 주기 국별 보고서 제출 규정에 따라 제2차 보고서(한국여성개발원 작성) 제출

2. 한국의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

- 제12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개최기간 중인 1993.1.28. 실시 예정
 - 한국 정부는 제1차 보고서 심의 당시 질의 및 여타국 보고서 심의 시 제기사항 등을 중심으로 동 심의에 대비

1237

대한민국 여성발전기본법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한국보고서(제2차 보고서). 전2권 (V.2 1993)

생산연도 1989-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3 / 9 / 1-306

1238

1. '여성차별 철폐 협약' 관련 한국의 제2차 보고서 심의

- 1993.1.28. 비엔나 소재 유엔 인권센터에서 개최
 - 한국 측 참가자: 정무2장관실, 보건사회부, 주비엔나대표부, 여성개발원 담당관 등
- 심의 시 주요 질의 또는 지적사항
 - 협약 유보조항 추가 철회 계획 여부
 - 보고서 내용 관련 체계적인 통계자료 미흡
 - 여성들의 정치 참여 부진
 - 근로 여성을 위한 보호대책(노동법 규정)
 - 여성 관련 기구 간의 효율성

2. 주오스트리아대사 건의사항

- 동 심의 시 대체적인 분위기가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상응하여 여성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각별히 유의하고, 통계자료 미비가 지적된 만큼 제3차 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시정 필요
- 심의위원들이 각국의 여성문제 저명 전문가들인 만큼 이에 상응한 조치 필요성
 - 중장기적으로 국내 여성문제 전문가 양성, 향후 국제여성회의 대표단 구성 시 지속성 유지 등

Mongella, Gertrude I. 제4차 세계여성회의 사무총장 방한, 1993.10.9.-1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3 / 10 / 1-42

Gertrude Mongella 제4차 세계여성회의 사무총장이 1993.10.9.~13.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 경위
 - 정무2장관실이 Gertrude Mongella 사무총장 초청
- 목적
 - 제4차 세계여성회의 홍보 및 한국 정부에 자발적 기여금 제공 요청

2. 주요 일정

- 정무2장관, 과기처장관, 외무부차관 등 면담, UNDP(유엔개발계획) 서울사무소, 여성개발원 등 방문

3. 외무부차관 면담(10.11.) 시 주요 언급내용

- 제4차 세계여성회의(1995년, 베이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기대
 - 특히 개도국의 동 회의 참석 지원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금 제공 기대
 - 세계여성회의 개최 관련 세계여성회의 사무국에 대한 한국 측의 인력지원 문제 적극 검토 요망

1239

대한민국 여성민사위원회

여성 정상회담. Geneva, 1992.2.25.-26.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3 / 11 / 1-293

1992.2.25.~26. 제네바에서 개최된 여성 정상회담 관련 내용임.

1. 여성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아태지역 세미나(1991.9.15.~2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1992.2월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인 농촌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여성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회의
- 수석대표: 황인자 제2장관실 정책담당관
- 각국의 경험,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지역 프로젝트, 기타 국제기구, 금융기관, NGO 등 경험을 바탕으로 5개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짐.

1240

2. 여성 정상회담 개최 배경

- IFAD가 제안하고, 1991.7.19.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결의 채택
 - 목적: 농촌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적 지지 확산
- 콜롬비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세네갈,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등 준비를 위한 핵심그룹 결성
 - 아태지역은 말레이시아가 간사 역할 수행

3. 여성 정상회담(1992.2.25.~26., 제네바)

- 참가자
 - 벨기에 왕비 및 핵심그룹 6개국 등 64명의 영부인과 다수 국제기구 대표
- 주요 결과
 - 농촌 여성을 위한 제네바 선언 채택

4. 후속조치

- ISC(국제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아프리카, 아랍, 아·태, 구주·북미, 남미·카리브 등 5개 지역 각 3명의 대표 영부인으로 구성
 - 매 2년 제네바 선언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회의는 1994.2.25.~26. 브뤼셀에서 개최 예정
 - ISC 개최 이전에 5개 지역별 회의 및 ISC 대표자 회의 개최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New York, 1993.5.10.-21.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3 / 12 / 1-271

1993.5.10.~21.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준비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132개국 대표, 전문기구(FAO(유엔식량농업기구), IMF(국제통화기금)) 및 정부 간 기구 대표

2. 회의 목적

- 인구문제를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폭넓은 맥락에서 파악하여 포괄적인 해결방안 모색

3. 회의 결과

- 준비위원회 의장단 선출: 의장(가나인) 및 부의장 10명
- 인구와 개발에 관한 회의의 실질 의제 토의 방향 결정
 - 인구와 발전, 환경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지역 간 다양성과 각국의 특수상황을 감안한 해결방안 강구
 - 빈곤 완화, 고용 창출, 인권보장, 보건교육, 주거개선, 여성에 대한 불평등 제거 및 경제적 기회 증대 등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이 최대 목표
 - 국내적·국제적 인구이동 문제,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증오현상 등 해결을 위한 선진·개도국 간 협력 강화
-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채택할 최종문서의 체제 및 개요 결정

1241

대한민국 국제연합사 영사관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제36차. Vienna, 1993.3.29.-4.7.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4 / 1 / 1-221

정부는 1993.3.29.~4.7.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6차 UNCND(유엔마약위원회) 회의에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신석우 보건사회부 약정국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49개 위원국, 51개 옵서버국, 33개 국제기구

1242

2. 참가 목적

- 마약의 불법유통 관련 세계 상황을 파악하고, 국제적 및 지역적 차원의 협력 강화
- 각국의 마약남용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고, 국별 정책 및 제도 등 정보와 자료 수집
- 제18차 아·태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협력 요청 등

3. 주요 회의 동향

- 마약의 중개지로 이용되고 있는 국가들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 분석 및 대처방안 강구
- 마약남용 퇴치를 위한 수요 감축 전략의 중요성, 마약류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구체적 조치 이행 등 강조
- 결의안 채택
 - 상업용 운송수단이 불법 마약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CCC(관세협력이사회)와의 협력 강화
 - 해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협력 촉구
 - 몰수한 마약사범의 불법수익 일부를 유엔에 기여하도록 촉구
 - 돈세탁 방지를 위한 국내 입법 추진 등

4. 한국대표단 활동

- 마약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1993.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HONLEA(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준비 상황 설명
- 개별회의에서 비의료용 마약사용의 합법화 제안에 반대의견 표명, UNDCP(유엔마약통제계획)와의 협력 강화 의지, 마약친선대사 활동 및 성과 평가
- 마약남용 퇴치를 위한 균형된 수요 감축계획(L.6), 사회개발정상회의(L.13), 유엔체제 내 행동계획(SWAP) 이행(L.17), 마약류의 비의료용 사용 불승인(L.21), 1971년 협약상의 스케줄 III 및 IV 해당물질 전용방지 조치(L.22), GPA 등 국제협력 강화(L.24) 등 6개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제36차(속개). Vienna, 1993.12.16.-1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4 / 2 / 1-160

1993.12.16.~17.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6차 UNCND(유엔마약위원회) 속개회의 관련 내용임.

1. 논의 동향

- 1992~93년 수정예산을 추인하고, 1994~95년 예산안 승인
- 실제 예상되는 지출액 추정치를 기초로 예산안이 작성된 것을 높이 평가
- UNDCP(유엔마약통제계획) 기금 활용을 위한 건전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환영
- UNDCP 기금 고갈 전망, 소수 회원국의 기여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에 대한 우려 표명
- 일부 회원국은 기여금 증액 의사 표명

2. 주요 결과

- 본 회의는 Giacomelli UNDCP 사무처장이 제출한 UNDCP 기금의 1992~93년도 최종예산안 및 1994~95년도 최초예산안을 승인하는 결의안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
 - 1994.1월 말경 회원국 간 비공식 협의 추진계획
 - 기승인된 1992~93년 예산이 1억 5,890만 달러로 조정
 - 1994~95년 예산은 1억 8,800만 달러로 책정
- 대부분의 대표단은 동 예산안이 실제 예상되는 지출액 추정치를 기초로 작성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UNDCP 기금 활용을 위한 건전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환영함.
- 중남미 국가들은 마약통제 및 공급축소에서 수요축소로 중점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점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일부 국가는 마약 관련 활동에서의 UNDCP의 조정역할 강화 필요성과 UNDCP가 대체작물 개발계획을 예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
- 1994~95년 중 UNDCP 기금 잔액이 바닥이 날 것이라는 일부 국가의 우려 표명이 있었으며, UNDCP 예산이 소수의 공여국 기여금에 의존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소지역별 협력, 특히 동남아, 중근동, 중앙아시아 및 동구에서 UNDCP의 활동 강화 필요성 제기

1243

대한민국 국제연합사 어항전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HONLEA), 제18차. 서울, 1993.9.13.-17.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4 / 3 / 1-284

정부는 1993.9.13.~17. 서울에서 개최된 제18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에 주경식 보건사회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정회원국과 준회원국의 마약법 집행기관장(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사회부, 외무부 등)
- 역외국가는 옵서버 참가 가능

1244

2. 참가 목적

- 역내 마약 문제 관련 단속기관 상호 간의 협조관계 구축 및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교환함으로써 마약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지역협력 강화
- 1988년 유엔마약류불법거래방지협약의 가입 및 시행과 관련한 각국 입장 및 제반 정보와 자료 수집
- 아태지역 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마약퇴치를 위한 한국의 국제협력 의지 과시

3. 추진 경과

- 제15차 회의(1990.10월, 베이징): 한국의 유치 의사 표명
- 제16차 회의(1991.11월, 캔버라): 유치 신청
 - 1991.11.1. 제18차 회의 서울 개최 확정
- 제18차 회의(1993.9.13.~17., 서울)

한·일본 마약류 대책회의, 제9차. 서울, 1993.3.1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74 / 4 / 1-172

1993.3.19.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일 마약대책회의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추규호 외무부 동북아1과장
- 일본 측: 무토 외무성 북동아과장

2. 회의 결과

- 한·일본 양국 간 마약 및 각성제 문제의 현황에 관한 정보 교환
- 마약 퇴치를 위한 수사에 긴밀한 협력 합의
- 차기 회의는 1994년 초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1245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

마약 관련 국내 유관기관 회의

생산연도 1987-1992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4 / 5 / 1-100

1987~92년 중 마약 관련 국내 유관기관 회의 내용임.

1. 마약대책 유관부처 실무자회의(1991.4.18.)

- 1991년 1/4분기 마약류 사범 심사분석 결과
- '세계 마약류 퇴치의 날' 관련 제반 행사 계획
- 나이지리아인 헤로인 밀반입 실태 및 단속대책 관련 유관부처 협조 문제

1246

2. 마약 관계 실무자 대책회의(1992.4.8.)

- 제35차 유엔마약위원회 참석 결과 토의
- 1993년 아태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회의 개최 준비
- 1988년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거래방지협약 가입 준비
- 제5회 '세계 마약류 퇴치의 날' 관련 행사 협의

3. 한국 대검찰청 주최 국제회의(1992.6.12.~13.)

- 참가국: 한국, 일본, 미국, 대만(구 중화민국), 필리핀 등 5개국
- 회의 결과
 - 결정체 메스암페타민의 생산지(대만), 밀 반입지(대만, 중국, 하와이 등), 관련 범죄 국적자 등 관련 정보 교환
 - 헤로인 밀매 경유지, 코카인, LSD 등 관련 남미 국가들과의 협조 체제 구축 필요성 등 논의
 - 미국은 하와이주 검찰청이 주관하는 마약류 전담검사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각국 검사 파견 권유
 - 메스암페타민 및 그 원료의 주공급지로 밝혀진 중국이 참석하는 비공식 대책회의의 필요성 공감 및 중국에 협력 촉구 서한을 보내기로 함.
 - 결정체 메스암페타민의 확산에 대한 우려 표명, 유엔 마약류 퇴치 10개년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조치 요청 등을 담은 제주 선언문 채택

CCPCJ(유엔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 제2차. Vienna(오스트리아), 1993.4.13.-2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 조약과

MF번호 2023-74 / 6 / 1-242

정부는 1993.4.13.~23.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차 CCPCJ(유엔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 회의에 조창범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국제범죄, 경제범죄, 환경보호를 위한 형법의 역할
- 도시범죄 예방
- 개도국의 형사사법제도 개선
- 국제적 차원의 범죄진압을 위한 기술협력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활동에 관한 유엔 규범
- 제9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죠편 처우에 관한 회의 준비

2. 대표단 건의사항

- 동 분야 전문가 양성 필요성
 - 일본의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제도 참고
- 국제형사법원 설립 문제, Foundation 설치 문제 등 국제형사사법 분야 현안에 대한 기본입장 수립을 통한 정책적 일관성 견지 필요성
- 동 위원회가 기타 유엔기구와의 활동 조정 및 협력 강화 역점을 두는 추세인 만큼, 국내 유관 부처들 간 협조체제 강화, 체계적·종합적 대책 추진 등에 주력할 필요
- 1994년 하반기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자금세탁에 관한 회의' 및 '조직범죄 대처를 위한 각료급 회의' 관련 심도 있는 준비 필요

1247

대한민국 국제법률정보

IPCC(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회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74 / 7 / 1-148

1992~93년 중 개최된 IPCC(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회의 관련 내용임.

1. Working Group II 회의(1993.2.8.~12., 제네바)

- 참가국: 103개국 및 국제기구
- 주요 의제: 온실가스 저감기술 통계 작성 문제
- 정부 훈령
 - 온실가스 저감기술 목록과 대개도국 이전기술 목록 작성 시 가능한 한 광범위한 기술목록이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
- 회의 결과
 - 작업반 연구계획 관련 한국은 작업반 II 및 III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등 상호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작업반 III 토론에 온실가스 방출 시나리오와 관련한 작업반 II 연구 결과를 포함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는 요지 발언
 - 기술목록 작성 관련 인도 등 개도국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체계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일본 등 반대로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포함하기로 합의함.

2. Working Group III 회의(1993.5.3.~7., 몬트리올)

- 참가국: IPCC 회원국 중 63개국 및 UNEP(유엔환경계획), WMO(세계기상기구), IAEA(국제원자력기구), GEF(지구환경자금제도) 등 관련 국제기구
- 주요 의제
 - 기후변화 대응수단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평가
- 회의 결과
 - WG III 연구계획 확정: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수단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의 평가 및 개발
- 한국대표단 활동
 - WG III 의장직의 원활한 수행
 - 국제적 전문가와의 교류 확대
 - 각국의 대응정책 및 관련 기술개발 동향 파악
 - 화석연료 과다 의존국 및 에너지 집약형 경제의 특수 상황 강조



- 관찰 및 평가
 -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수단의 평가에 관한 기상학적·거시경제적 차원의 전문적·기술적 논의에 치중
 - WG Ⅲ의 연구계획으로 확정된 기후변화 대응수단과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평가보고서는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한 부속의정서 협상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 수준 설정의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

3. 제9차 IPCC 회의(1993.6.29.~30., 제네바)

- 주요 의제: Working Group 2, 3 향후 작업계획
- 회의 결과
 - IPCC 제2차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을 확정하고, INC(정부간협상위원회)와 IPCC 간의 역할 조정 논의

4. World Coast 93 회의(1993.11.1.~5., 헤이그)

- 주요 의제: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의 결과에 대한 정보 교환

1249

대한민국
외교부의
역사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총회, 제18차. Rome, 1993.10.20.-2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4 / 8 / 1-31

정부는 1993.10.20.~22.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18차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에 장경호 문화재연구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한국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존복구 정책 홍보

2. 참가자

- 59개국 대표
 - 북한은 윤송림 주FAO(유엔식량농업기구)대사대리 참석

3. 주요 결과

- ICCROM 정관 및 총회 내규 개정
- 1994/95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확정
- 24개 이사국 선출
- ICCROM 활동 방향 논의

IOE(국제수역국) 총회, 제61차. Paris, 1993.5.24.-28.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4 / 9 / 1-90

정부는 1993.5.24.~28. 파리에서 개최된 제61차 IOE(국제수역국) 총회에 이갑일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IOE 총회 참석
- 가축방역 정책 자료 수집

2. 주요 의제

- 가축위생 자료수집체계 및 정보 관리방안
- 국제 간 동물수송에 따른 전염병 관련사항 및 스트레스 방지대책
- 회원국의 가축위생 및 전염병 방역 상황 논의

3. 정부 훈령

- 능동적인 자세로 회의에 참석하여 회원국 상호 간의 이해증진 및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선진국의 가축위생 분야 최신자료 및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의 가축방역 분야의 기술향상 및 정책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1251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서태평양 소위원회 회의, 제2차. Bangkok(태국), 1993.1.25.-2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74 / 10 / 1-20

정부는 1993.1.25.~29.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차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WESTPAC(서태평양소위원회) 회의에 박주석 국립수산진흥원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목적

- 해양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증진
- 1993년도 서부태평양지역 협력과제 및 활동계획 심의·확정

1252

2. 정부 훈령

- WESTPAC 활동이 해양과학기술 외교에 일익을 담당하는 만큼 각국 대표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중국 및 러시아 대표들과도 활발히 접촉하여 한국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
- WESTPAC의 한반도 주변해역 연구(유독성 적조연구) 관련 자료 수집

3. 회의 경과

- 지역사무소 설치(방콕), 직원, 운영비 등 재정 문제 협의
- 종전에 미국, 호주 등이 재정지원을 크게 했으나, 미국의 관심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임.
- 미국, 러시아 등의 참여가 저조한 반면, 중국 일본 등이 적극적 활동
- 한국의 관심사항인 연안 오염, 적조 피해 등 사업과제 채택 노력 예정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 제17차. Paris, 1993.2.25.-3.11.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74 / 11 / 1-268

정부는 1993.2.25.~3.11. 파리에서 개최된 제17차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에 박상식 주유네스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제17차 IOC 총회 집행이사국 진출
- 국제 해양과학협력 사업에 관한 동향 파악 및 한국 정책 홍보

2. 회의 결과

- 의장단 선출 및 20개 결의안 채택
- 차기 IOC 집행위(1994.10.20.~30.), 총회(1995.6.20.~7.5.) 일정 및 장소 결정
- 한국 집행이사국에 최초 진출
 - 박병권 한국해양연구소장이 집행이사직 수행
- IOC 사무국에 한국 주재원 1인 파견 결정

3. 한국대표단 활동

- IOC를 중심으로 한 국제 해양과학협력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 정립, 집행이사국 진출
- 한국이 국제적인 해양 R&D 수행에 필요한 선행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서 그 핵심 기술 역량이나 전문 인력 측면에서 국제적 수준 및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
-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IOC, WMO(세계기상기구), UNEP(유엔환경계획) 등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GOOS(전세계해양관측망구축사업), 교육훈련 및 상호 지원 등의 주요 사업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의사 개진에 주력

1253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술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 제17차. Paris, 1993.2.25.-3.11. 전2권 (V.2 집행이사국 진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74 / 12 / 1-290

한국은 1993.2.25.~3.11. 파리에서 개최된 제17차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집행이사국에 선출됨.

1. IOC 개요

- 설립: 1960년 제10차 유네스코 총회 결의에 의거 설치, 유네스코와는 기능적 독립을 유지하는 정부 간 기구로 회원국은 121개국, 한국은 1960년 창립 시부터 회원국으로 활동
- 집행이사국 수 및 지역별 의석: 약 30개국, 지역별 6개 그룹으로 안배(지역별 이사국 수)
 - 서구 및 북미(10), 동구(3), 중남미(7), 아시아태평양(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3), 중동 및 북아프리카(3)

2. 한국의 IOC 집행이사국 진출

- 한국의 집행이사국 진출 필요성
 - 국제 해양과학 협력 수행에 필요한 해양과학 능력 보유
 - IOC의 모든 실질적 정책은 집행이사회에서 결정
 - 중국, 일본, 호주 등 아·태지역 주요 국가들이 집행이사국에 수차례 진출
- 아·태그룹 집행이사국 입후보 현황
 - 현 집행이사국 외에 한국, 태국, 미얀마, 베트남 추가 입후보
- 집행이사국 피선(1993.3.5.)
 - 한국은 집행이사국에 처음 입후보하여 83개 유효투표 중 69표를 획득하여 선출됨.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회의 및 관련 동향

생산연도 1989-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74 / 13 / 1-262

1989~93년 중 유네스코 산하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관련 내용임.

1. 1990년도 표류부이 협력위원회

- 국립수산진흥원이 작성한 아래 요지의 국가보고서 제출
 - 한국 원양어선 160척에 1990.4월 ARGOS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전 세계 해양학자 및 해양 기상학자에게 도움 제공
 - 1990.5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 표층 해류조사 계획위원회 회의 및 1991년 이후 한국의 계획
 - 국제 표류부이 협력위원회 한국연락관 지정 등 통보

2. 제13차 쓰나미 경보체제 국제조정그룹회의(1991.9.10.~13., 멕시코 엔세나다)

- 김상조 기상청 예보국 관측과 기상기좌 참석

3. 제5차 해양·기후위원회 회의(1992.3.5.~7., 파리)

- 추진 중인 해양과 기후연구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의 활성화 방안 논의
- 석문식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참석

4. 제25차 집행이사회 참석 문제

- 유네스코는 1992.3월 개최되는 동 집행이사회에 한국 정부가 옵서버로 참석할 것을 요청
 - 외무부는 한국이 집행이사국은 아니지만, 1992.6월 개최 예정인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각국의 입장 파악을 위해 동 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
- 과학기술처, 한국해양연구소 등은 사정상 전문가 파견이 어려워 불참하고, 주유네스코대표부 관계관이 참석

5. 1992년도 국가해양계획 IOC에 제출

- IOC의 각국 국가지정 해양조사계획(DNPs) 및 국가해양조사계획(NOPs) 제출 요청에 대하여, 국립수산진흥원은 1992.4.9. 국내 해양 관련 기관의 1992년도 해양조사계획을 IOC에 송부함.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총회, 제30차. Bali(인도네시아), 1993.11.8.-14.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지구과

MF번호 2023-74 / 14 / 1-133

정부는 1993.11.8.~14.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30차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 공동탐사조정위원회) 총회에 정영구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1개 회원국 중 9개국(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및 CCOP 사무국

2. 참가 목적

- 각국의 기술발전 자료를 입수하여 한국의 향후 해저광물자원 및 해안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

3. 주요 의제 및 협의내용

- 사무국의 지원사업 보고
 - 에너지 분야
 - 광물 분야
 - 해안선 지역관리 보존 분야
- 지원국의 기술자문
 - 노르웨이와 영국은 석유자원 평가 사업에 계속적인 지원 약속
 - 일본의 연안 광물자원 데이터베이스 작업 지원 약속
 -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는 해안선 지역환경보존 분야 지원 약속
- 회원국과 지원국 간의 공동협의회 개최
- 최종 연차보고서 채택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총회, 제9차. Paris, 1993.10.5.-8.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4 / 15 / 1-55

정부는 1993.10.5.~8. 파리에서 개최된 제9차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총회에 서영길 체신부 부이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총 71개 회원국 중 55개국 대표 167명

2. 회의 결과

- 의장단(의장 1인, 부의장 3인) 선출
 - 한국이 부의장국으로 선출
- 협약 비준
- 규제 완화 촉구
- INMARSAT 이사회 보고 심의
 - 이동위성 주파수 확보, Project 21 추진 현황, 초과이익금 처분, 우주 부문 사용요금 인하 촉구, 새로운 임시작업반 설치
- 총회 작업반 보고서 검토(지식재산권, 개정 절차, 공공서비스, 재무구조 등)
- 협약 제8조(타우주 부문 사용) 절차 신속화
- 지역 대표로 중국,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선출

3. 주요 관찰

- 1980년대 말 위성통신 이용량의 급증으로 INMARSAT 중요도 증대와 향후 사업확장을 위한 각국 그룹 투자배분을 문제 등으로 미국중심 그룹과 유럽중심 그룹 간의 의견 차이 표출
- 초과이익 처분을 개도국 통신개방에 활용할 것인지, 투자국에 상환 배분하고 위성회선 사용요금을 대폭 인하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
- 위성통신, 이동통신의 비약적 발전, INMARSAT 고수익 사업으로 전망되므로 동 기구에 대한 투자율을 가능한 증가시키고 관련 회의에 적극적 참여 필요

1257

대한민국 국제기구과

APT(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회) 회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5 / 1 / 1-161

1993년 중 APT(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회) 회의 참가 관련 내용임.

1. APT 개요

- 1979.5월 아·태지역 내 전기통신망 개발 촉진과 운용 효율 도모를 위해 설립
- 24개 정회원국 및 2개 준회원국으로 구성, 사무국은 방콕 소재
- 총회는 매 3년, 운영위원회는 매년 개최

1258

2. APT 운영위원회 특별회의(1993.4.5., 태국 방콕)

- 한국대표단: 조병하 체신부 통신위성과장 외 1명
- 회의 목적
 - APT 사무차장 선출
- 회의 결과
 - 인도네시아, 몰디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출신 4명이 입후보
 - 한국은 유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CSD(지속개발위원회)에서 긴밀히 협력 중인 방글라데시 출신 후보 지지
 - 선거 결과, 몰디브 후보 선출

3. 제6차 APT 총회 및 제17차 운영위원회(1993.11.22.~30., 인도네시아 발리)

- 한국대표단
 - 대표단: 임정재 체신부 통신협력단장 외 체신부 및 관련 기업 관계자 8명
- 주요 의제
 - 1994년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 진출 사전교섭 및 ITU 직원 파견 협의
- 주요 결과
 - 총회: 의장단 선출 및 정책, 예산, APT 구조개편 등 결정
 - 운영위원회: 의장단 선출 및 활동, 예산, 사업계획 등 결정

WTO(세계관광기구) 집행이사회, 제45차. Madrid(스페인), 1993.5.18.-2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5 / 2 / 1-202

정부는 1993.5.18.~20.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45차 UNWTO(세계관광기구) 집행이사회에 이차환 교통부 관광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이사국 22개국(52명), 비이사국 13개국(18명), 지역위원회 의장국 4개 지역(6명) 등 총 80명

2. 정부 훈령

-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1993년 대전 엑스포, 1994년 한국 방문의 해 및 PATA 4대 행사 개최 계획을 적극 홍보할 것

3. 주요 결과

- 사무총장 선거
 - 제10차 총회(1993.9.30., 발리)에서 최종 선출예정인 차기 사무총장 지명 추천 관련 21개 이사국 중 17개국의 지지를 얻은 Antonio Enriquez 현 사무총장(멕시코)이 단일후보로 지명됨.
- UNWTO 법적지위 문제
 - 현 정부 간 국제기구인 WTP를 유엔 전문기구 또는 비정부 간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 등 논의
- 지역사무소 개설문제
 - 현 북미지역 사무소(몬트리올) 외에 여타지역에도 지역사무소 개설 추진

4. 한국대표단 활동

- 1993 대전 엑스포, 1994년 한국 방문의 해 등에 관해 각국 대표에게 홍보 및 관련 자료 배포
- Enriquez 사무총장 면담, 한국 정부의 기술세미나 협약서 전달
- UNWTO 북한대표부에 한국에서 개최될 UNWTO 기술세미나 초청장을 전달하고, 북한도 적극 참가해 줄 것을 요청

1259

대한민국 지역발전 기여

WTO(세계관광기구) 제10차 총회 및 제46-47차 집행이사회. Bali(인도네시아), 1993.9.30.-10.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5 / 3 / 1-184

정부는 1993.9.30.~10.9.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0차 UNWTO(세계관광기구) 총회와 제46~47차 집행이사회에 정중환 교통부 관광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정회원 88개국, 찬조회원 54개 기관, 국제기구 8개 등

1260

2. 정부 훈령

-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1993년 대전 엑스포, 1994년 한국 방문의 해 및 PATA 4대 행사 개최계획을 적극 홍보할 것

3. 제46~47차 집행이사회(1993.10.1. 및 10.8.)

- 총회 토의 사항에 대한 전반 검토
- 집행이사회 의장국 선출
 - 의장국(그리스), 부의장국(모로코, 튀니지), 재무위원회 의장국(독일) 선출
 - 제48차 집행이사회 1994.5월 튀니지 개최 결정

4. 제10차 총회(1993.10.4.~8.)

- 총회 의장단 선출
 - 의장은 관례에 따라 총회 개최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석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
 - 부의장으로 알제리, 브라질, 캐나다,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스리랑카, 시리아 등 선출
- 신임장위원회, 총회 실무위원회 의장 및 간사국 선출
- 사무총장 보고, 집행이사회 보고, 찬조회원 활동사항, 92/93 사업계획 집행현황 보고, 행정·재정 현황 보고, 94/95 사업계획·예산 및 UNWTO가 체결한 협정 등 심의 또는 의결
 - 분담금 배분, UNWTO의 장래(유엔시스템과의 관계 및 법적지위 향상)에 관한 방침 결정, 1994~95년 '세계 관광의 날' 주제 선정, 1994~97년 사무총장 임명, 1994~97년 집행이사국 이사국 선출, 제11차 총회를 1995년 이집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한국대표단 활동
 - 일본, 중국, 체코 대표단과 관광교류 증진 협의
 - 1994년 '한국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한 홍보 리플렛 2종을 각국 대표단에 배포

WTO(세계관광기구) 회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5 / 4 / 1-72

1993.2.18.~19.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4차 UNWTO(세계관광기구) 동·아태지역위원회 및 기술세미나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정회원: 한국, 중국, 북한,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 준회원: 마카오
- 찬조회원: 홍콩, 호주, JNTO(일본정부관광국)
- 비회원: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태국
- 국제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 ESCAP(아태경제사회위원회), UNDP(유엔개발계획), NWTO(세계관광기구) 등 관계자
 - 한국은 최정호 교통부 국제관광과 사무관 참석

2. 주요 내용 및 결과

- 동아태지역위원회
 - 1992년도 세계관광 동향과 1992~93년도 수행사업 개관 및 1994~95년도 사업 관련 사무총장의 보고
 - 1980~92년간 세계 및 지역별 여행자 수와 여행 수입, 주요 관광국의 여행 목적지 등 분석
 - 통계숫자에 의한 단순한 현상 개관 외에 여행자 수, 여행 목적지 등 주요 변동요인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
 - 1992~96년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향후 EC(구주공동체) 및 일본과 협의할 것임을 보고
 - 1993년 남아시아의 해와 1994년 동아시아의 해를 1994년과 1996년으로 연기하는 문제는 제25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기술세미나
 - 기술협력, 교육훈련, 환경, 통계 및 시장조사, 무역자유화·건강·안전, 출판사업 등 6개 분야 사업 추진 합의
 - 한국 등 7개국이 자국의 관광정책 발표

1261

대한민국 지역발전사업

1993년도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연수·훈련 참가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5 / 5 / 1-148

1992~93년 중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연수·훈련 참가 관련 내용임.

1. AARRO 사무국은 1992.7.15.자 공한으로 1993년도 이집트 국제농업센터에서 실시 예정인 농업 관련 훈련 과정 참가 후보자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함.

- 농촌진흥청은 9월 채소·가금 생산과정(2명, 농촌지도사 및 가축위생연구사), 토지개량 및 목화생산 기술과정(2명, 농업연구사), 병해충 관리과정(1명, 농업연구사) 추천

1262

2. AARRO 사무국은 동 기구 주관의 농촌산업화에 관한 국제워크숍(1993.4.19.~23., 인도)에 한국 공무원 1명의 참가를 요청함.

- 농림수산부는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명 추천

3. AARRO 사무국은 1993.4.23. 아래 연수 과정에 한국 후보자 추천을 요청함.

- Income-Generation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for Rural Youth and Women (1993.6.28.~7.25., 인도 방갈로)
 - 농림수산부는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1명 추천
- 중소기업 분야 10개 연수과정에 2명의 연수생 초청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특별개발기금 설치 추진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5 / 6 / 1-65

1991~93년 중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특별개발기금 설치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제10차 AARRO 총회(1990.3월, 가나)
 - 공동개발기금(Development Fund) 설립에 대한 원칙적 합의 후 사무국에 초안 마련 지시
- 사무국 회람(1990.10.4.)을 통해 설립기금에 대한 초안 발표
- 제17차 연락관 회의(1990.11.20., 뉴델리)
 - 공동기금 설립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무국 초안 논의와 설립기금의 개요 수립
- 사무국 회람(1990.12.19)을 통해 연락관 회의 토의 결과 통보
- 제11차 AARRO 총회(1993.2월, 쿠알라룸푸르)
 - 동 기구 사무국이 기금의 설치 목적, 용도, 조성 방안 등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여 차기 집행위에 최종 승인을 얻도록 결정

2. 기금 목적

- 회원국 농촌사업 지원을 통한 회원국 간 협력 강화

3. 한국 입장

- 기금 신설에 대한 적극적 반대 의사 표명 곤란
- 기금 신설 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기금액 규모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1263

대한민국 외교부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총회, 제11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93.2.8.-1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5 / 7 / 1-102

정부는 1993.2.8.~12.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1차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총회에 김종민 주말레이시아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한국대표단 활동

- 기조연설을 통해 AARRO의 역할 증대 노력 당부
- 의제별 한국 입장 반영을 위한 활동 전개
- 한국의 AARRO 사업 참여 노력 적극 홍보

1264

2. 회의 결과

- 지역사무소 추가 설치 문제, 헌장 및 운영규정 수정 문제 등에 대한 논의와 차기 집행위원국 선거 실시
- 집행위원국 선거(1993.2.9.)에서 한국은 일본, 인도 등과 함께 집행위원국으로 피선

3. 건의사항

- AARRO와의 협력가능 사업 발굴 노력 필요
- AARRO 발전기금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일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75 / 8 / 1-39

1993년 중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 참가 및 분담금 납부 관련 내용임.

1. 제35차 APO 이사회(1993.6.8.~1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제1차 아시아 생산성 원탁회의(1959.3월, 도쿄)에서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설립 결정
- 수석대표
 - 문희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산업기술 발전에 필요한 훈련 및 기술개발 사업 유치 시도

2. APO 분담금 납부

- 1992년도
 - 1992.12.24. 351,250달러 납부
- 1993년도
 - 1992.12.1. APO 사무국은 분담금 40만 달러 납부 요청
 - 1993.8.25. 20만 달러를 우선 납부
- 1994년도
 - 1993.12.1. APO 사무국은 분담금 46만 달러 납부 요청

1265

대한민국 외교부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총회, 제13차. Madrid(스페인), 1993.11.8.-1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75 / 9 / 1-182

1993.11.8.~12.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3차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총회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 22개국

2. 한국대표단 기본입장

- 어족자원 관리방향이 ICCAT 본연의 목적 범위를 이탈할 우려
- 한국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회원국 어선의 조업에 대한 규제에 신중
- 참다랑어 수출 시 관련서류 제출 의무가 무역장벽 요인으로 남용 및 확대 우려

3. 회의 결과

- 어종별 어획관리 수준 조정
- 비회원국에 대한 관리조치 준수 협조 유도 논의
- CITES(생물다양성협약)의 새로운 규제대상 기준 설정
- 대형 유자망어업 금지 이행 강화 추진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5차. 교토(일본), 1993.5.10.-14.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75 / 10 / 1-194

1993.5.10.~14.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45차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참가자

- 외무부, 국립수산진흥원 등 담당관

2. 주요 의제

- 상업 포경 재개를 위한 수정관리방식 채택 문제(제34차 총회 시 1982~86년간 상업 포경 금지 결정 및 1992년 IWC 과학위원회가 수정관리방식을 상정하였으나, 반포경 국가들의 반대로 모라토리엄 유지)
- 고래자원 보호구역 설치 문제
- 인도적 포획 방법 등

3. IWC 총회 시 상업 포경 논의에 앞서 일본 측의 협조 요청

- 국가별 입장
 - 포경 국가: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반포경 국가: 미국, 영국, 호주 등 대부분 국가
 - 한국은 IWC 결의에 따라 상업 포경 금지에 동참 중
-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면담(1993.3.17.)
 - IWC 총회 대책 일환으로 상업 포경에 대한 일본 측 입장 지지 요청
- 일본 농림수산성 고문,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면담(4.1.)
 - 남반구 고래자원 보호구역 설치 반대, 밍크고래 연안 소규모 조업 등 관련 일본 측 입장 지지 요청

1267

대한민국 어업관리청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5차. 교토(일본), 1993.5.10.-14. 전3권 (V.2 회의결과)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75 / 11 / 1-148

1993.5.10.~14.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45차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관련 결과 내용임.

1. 주요 의제 및 결과

- 남반구 포경 금지구역 설치 문제
 - 동 설치 관련 법적·생태학적 문제를 검토한 후 내년 총회에서 재거론하기로 결정
- 일본의 연안 소규모 포경 긴급구제 쿼터 요구
 - 밍크고래에 대해 수정관리방식 실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부결됨.
- 과학조사를 위한 특별허가
 - 일본, 노르웨이 측의 동 제의에 대해 비포획방식에 의한 조사 선호가 대다수인 가운데 부결됨.
- 고래 관광
 - 관련 실무그룹을 차기 총회 이전에 개최하기로 함.
- 수정관리 방식
 - IWC 과학위원회가 완성하였으나, 구체적 계획 미비로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

2. 한국 입장

- 32개 참가국 가운데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15개국 이상의 반포경 국가들은 어떠한 형태의 포경 재개 움직임에도 반대를 고수
- 반면 일본, 노르웨이가 포경 재개를 적극 주장한 가운데, 한국대표단은 공동 이해당사국 관점에서 주요 이슈(남반구 포경 금지구역 설정, 과학조사를 위한 특별허가, 수정관리방식 시행 등)에 대해 이들 국가 입장 지지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5차. 교토(일본), 1993.5.10.-14.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75 / 12 / 1-368

1993.5.10.~14.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45차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관련 자료임.

1. 제45차 IWC 총회 자료

- 고래 조업 선박의 국제 등록
- 원주민 생계 차원 고래조업소위원회 보고서
- 소규모 고래 조업의 사회경제적 의미에 관한 실무그룹 보고서
- 소형고래 보전 메카니즘에 관한 실무그룹 보고서
- 인도적 고래 포획에 관한 실무그룹 보고서
- 남반구 고래 보호지대에 관한 실무그룹 보고서
- 고래 관광산업
- 남극고래 보호구역 설정 관련 프랑스 제안

2. 제45차 IWC 과학위원회 보고서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총회, 제20차. Geneva, 1993.6.28.-7.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5 / 13 / 1-133

정부는 1993.6.28.~7.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0차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 정상원 농림수산부 표준가공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국내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각국의 가공식품 수입화 대책방안에 관한 동향 파악
- UR(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시 CODEX 식품규격 제정이 한국의 식품교역 및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 향후 관련 대책수립에 활용

1270

2. 주요 결과

- 의장에는 인도네시아 Winarno가 만장일치로 연임되었으나, 부의장(3명)에는 태국, 노르웨이, 영국, 브라질, 호주가 경합하여 태국, 호주, 노르웨이가 피선
 - 한국은 호주, 영국, 브라질 지지
- 식품 규격화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 소비자 단체 참여
 - IOCU(국제소비자연맹)에서 CODEX 활동에 IOCU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참가국들은 소비자단체 활동을 국가 내 활동을 통하여 CODEX 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업무상 연계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의
- CODEX 식품 중 동물약품 잔류 분과위원회
 - 동물성장호르몬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려는 미국 의견은 잔류 허용기준 설정을 반대하는 유럽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함.
- CODEX 식품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
 - 동 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타 분과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인준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일반원칙에 대해 불명확한 표현이 많고 각국의 의견이 수렴되어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차기 총회에 제출하도록 함.
- CODEX 열대 신선채류 분과위원회
 - 파인애플, 파파야, 망고의 규격안 제8단계 승인
 - 열대 과채류의 운송 및 포장 규격안 제5단계 승인
- CODEX 우유 및 유제품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뉴질랜드를 분과위원회 주최국으로 선정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5 / 14 / 1-111

1. 제25차 농약잔류위원회(1993.4.19.~26., 하바나)

- 정부대표: 박병원 농림수산부 식물방역과장, 송병훈 농업진흥청 농약연구소 연구관
- 참가 목적
 - 농약잔류 허용량 설정 또는 규제에 대한 문제점 파악
 -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기준 제정에 적극 참여
 - 한국의 농약관리제도 발전에 기여
 - 각국의 농약잔류 규제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수집, 한국의 동 분야 발전에 참고

2. 제2차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 회의 (1993.11.29.~12.3., 캔버라)

- 수석대표: 이재관 보건사회부 식품유통과장
- 참가 목적
 - 각 회원국의 식품 수출입에 따른 검사제도와 인증제도 및 기타 관련 정보, 자료를 적극 수집
 - 한국의 동 제도 관련 업무 개선 및 발전에 활용

1271

대한민국 의약품사 어의전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일반. 전2권 (V.1 사무국 관련)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75 / 15 / 1-145

1993년 중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관련 내용임.

1. CCAMLR의 국제 과학적 감시계획

- 주호주대사관은 1993.3.16. List of Questions and Statements에 대한 국립수산진흥원 번역 중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발견하고 CCAMLR 사무국 관계관과의 의견 교환을 거쳐 재번역하여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하면서, 동 문서 사본을 수산청 및 국립수산진흥원에 전달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1272

2. CCAMLR 과학위원회/생태계 감시계획 작업반회의 개최

- 외무부는 1992.5.4. CCAMLR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과학위원회 산하 '생태계 감시계획 작업반' 의장은 동 작업반의 1993년도 회의를 한국이 주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문의하여 왔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처 및 수산청에 검토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
- 동 작업반 의장은 '생태계 감시계획 작업반' 작업이 '크릴에 관한 작업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1993년도 크릴에 관한 작업반 회의를 일본이 주최할 예정이므로 생태계 작업반 회의는 한국이 주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3. CCAMLR 사무총장 방한

- 외무부는 1993.7.24. 해양연구소 주관으로 1993.8.16.~23. 개최되는 생태계 감시계획 작업반 회의 참석차 De Salas CCAMLR 사무총장이 방한 예정이며, 방한 시 한국 정부 내 CCAMLR 담당 고위간부 면담 대상자 등을 외무부에 통보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처 및 수산청에 요청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일반. 전2권 (V.2 산하 작업반 회의 보고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75 / 16 / 1-198

1993년 중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산하 작업반 회의 보고서 관련 내용임.

1. 제5차 크릴 전문가회의(1993.8.4.~12., 도쿄)

- 참가자: 12개국 과학자(34명)
- 한국대표단: 한국해양연구소, 김수암 극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주요 토의내용
 - 크릴어업 시 부수적으로 어획되는 어류 자치어 및 미성어에 대한 보고
 - 트롤어망을 통과해 나가는 크릴의 사망률에 대한 연구
 - 대서양 측 남극해에서 해류의 유속과 크릴의 이동에 대한 정보 등
- 회의 결과
 - 각국의 어획 활동의 보고 및 향후 계획 협의
 - 크릴 군집의 크기에 대한 추정
 - 크릴어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2. 제8차 생태계 관측 전문가회의(1993.8.16.~23., 서울)

- 참가자: 13개국 28명
- 한국대표단: 한국해양연구소, 김수암 극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외 5명
- 주요 토의내용
 - 회원국 활동 보고
 - 관측 방법
 - 생태계적 접근 평가법 등
- 회의 결과
 - 각 회원국들의 CEMP 관련 활동의 진전 상황 요약
 - 포식자와 피식자, 환경에 대한 관측 방법과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점 토의 등

1273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총회, 제12차. Hobart(호주), 1993.10.25.-11.5.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76 / 1 / 1-304

1993.10.25.~11.5.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제12차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총회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과학위원회(1993.10.25.~29.)
 - 김수암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양원석 국립수산진흥원 수산연구관(교체수석대표)
- 본 위원회(1993.11.1.~5.)
 - 전용덕 주호주대사관 참사관

1274

2. 총회 대비 제출자료

- 협약수역 내에서의 회원국 활동 상황 보고서
- 남극해양생물자원의 우발적 사망에 대한 평가 및 방지에 관한 보고서
- CCAMLR 검사체계에 의거 수행한 검사 실적에 관한 보고서
- CCAMLR 국제과학적감시제도에 따라 시행된 과학적 감시에 관한 보고서
- 기타 위원회, 과학위원회, 작업반 등에 제출하는 실무 및 배경 문서 등

3. 정부 훈령

-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수역 내 한국의 활동 상황 설명
- 남극해양생물자원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 보존조치 채택 시 한국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4.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무국의 1993년도 분담금 통보에 따른 조치 결과

- 정규분담금: 59,720호주달러(일본 및 러시아를 제외한 기타국 공통)
- 특별분담금: 5,146호주달러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총회, 제12차. Hobart(호주), 1993.10.25.-11.5. 전2권 (V.2 회의결과)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76 / 2 / 1-151

1993.10.25.~11.5.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제12차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총회 결과 내용임.

1. 참가국

- 정회원 중 인도를 제외한 20개국, 그리스 등 옵서버 4개국, FAO(유엔식량농업기구), IWC(국제포경이사회) 등 국제기구

2. 주요 토의내용

- 회계감사 결과 및 회원국 분담금 등 재정 및 행정 사항 승인
- 과학위원회 보고
- 남극해양생물자원의 우발적 사망에 대한 평가 및 방지 관련 토의
 - 해양폐기물 정기 조사, 해양폐기물에 의한 포착 및 사망의 양태, 어로행위 중 우발적 사망 관련 감시 및 검사 활동, 신종 및 시험조업, 보존조치
- SCAR(남극연구과학위원회) 등 남극조약 체제 중 기타 부문과의 협력
- 타국제기구와의 협력
 - FAO,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IWC 등
- 경계왕래 어족 및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 위원회 부의장 선출 및 차기 회의 결정
- 1948.3월 소해역에서의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보존조치
 - 1993/94 어기에 조업계획을 갖는 한국, 칠레,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5개국에 대한 총 어획량 및 조업 시기 조정

1275

대한민국 해양수산위원회

IOM(국제이주기구) 제84-85차 집행위원회 및 제66-67차 이사회. Geneva.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2023-76 / 3 / 1-121

1993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4~85차 IOM(국제이주기구) 집행위원회 및 제66~67차 이사회 관련 내용임.

1. 제65차 IOM 이사회(1993.5.26.)

- Purcell 현 사무총장 재선
- 사무차장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2/3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1993.11월 재선거 결정

1276

2. 제85차 IOM 집행위원회 및 제67차 이사회(1993.11.22.~24.)

- 대표단(수석대표): 박창일 주제네바 차석대사
- 기본 훈령
 - 질서 있는 국제이민 교류를 위한 한국의 해외이주 정책 홍보
 - IOM 사무국과의 원활한 업무관계 구축을 통한 한국 국민의 해외이주 진출 기반 확대
 - IOM 회원국 대표들과의 접촉 및 교류를 통한 해외이주 확대 노력
- 주요 의제
 - 제65~66차 이사회 보고서 검토
 - 익년도 사업예산 검토
 - IOM 분담금 전반적 조정
- 회의 결과
 - 사무차장 선출 연기
 - 분담금 조정: 유엔분담금 기준으로 재조정 합의
 - 신임회원국 가입 등 IOM 조직개편

IOM(국제이주기구) 제84-85차 집행위원회 및 제66-67차 이사회. Geneva. 전2권 (V.2 선거 및 지지 요청)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2023-76 / 4 / 1-156

1993년 중 IOM(국제이주기구) 사무국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거 동향임.

1. 사무총장 선거(1993.5.26.)

- 주한 미국대사관, 자국민인 James Purcell 현 IOM 사무총장의 재선 지지 요청
 - 한국 측, 동 후보 지지 입장 표명

2. 사무차장 선거(1993.11.23.~24.)

- 필리핀 외무부, Escaler 주유엔 필리핀대사 입후보 통보 및 지지 요청
- 한국 입장
 - Charry Samper 현 사무차장의 재선을 지지하나, 2차 투표 시 아시아지역 단결차원에서 필리핀 후보 지지 입장
- Samper 현 사무차장의 재선 입후보 철회
- 이후 코스타리카, 우간다, 폴란드, 에콰도르 정부도 입후보하고, 한국의 지지 요청

1277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물

93-1210

**APPU(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 이사회, 제53차.
Manila(필리핀), 1993.3.8.-1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6 / 5 / 1-22

1993.3.8.~11.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53차 APPU(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 이사회에 참석하는
한국대표단을 위한 공항, 호텔 관련 협조사항이 수록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89-90차. 전2권 (V.1 제89차. New Delhi(인도), 4.12.-1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6 / 6 / 1-226

정부는 1993.4.12.~17.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89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박정수 민자당 의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세계적 무기등록체계를 통해 무기거래의 투명성 확보
- 민주주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교육 및 문화정책
-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정세 논의

2. 주요 결과

- 2개 결의 채택
 - 범세계적인 무기등록을 통한 무기거래의 투명성 제고 결의
 - 민주주의 가치 고양을 위한 교육문화 정책의 이행 결의
- 차기 회의 결정
 - 1993.9.13.~18., 호주 캔버라

3. 한국대표단 활동

- 단장 기조연설 및 의제별 토의 시 발언
- 전 아태지역 대표단장 초청 오찬 주최
- 뉴델리 주재 진출기업 오찬 간담회 주최
- 뉴델리 주재 교민, 상사원, 공관원 초청 격려 만찬 주최

4. 특이사항

- 북한은 이몽호 최고인민회의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5명) 참석
 - 각종 기회에 핵 문제에 대한 북한 입장 설명

1279

대한민국 의회도서관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89-90차. 전2권 (V.2 제90차. Canberra(호주), 9.13.-18.)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6 / 7 / 1-225

정부는 1993.9.13.~18.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90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박정수 민자당 의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국제 인도주의법 준수 및 무력분쟁지역에서의 인도주의 활동 지원
-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정세 논의

1280

2. 주요 결과

- 4개 결의 채택
 - 국제인권법 존중 및 무력 분쟁 시 인도적 행위 지원 촉구
 - 연로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 촉구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분쟁 및 기타 내란에 따른 난민지원과 인권탄압 방지 촉구
 -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이스라엘 간 화해 지지
- 차기 회의 결정
 - 1994.3.21.~26., 프랑스 파리

3. 한국대표단 활동

- 박정수 단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 핵 문제 및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촉구
- 정영훈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조순승 의원은 한국 노인복지 문제 등 언급

4. 특이사항

- 이몽호 북한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성의 있는 협조를 촉구
 - 여타 북한 측 참가자들도 의제별 토의에서 유사 발언

민주자유당(민자당)의 IDU(국제민주연합) 가입. 전2권 (V.1 1983-89)

생산연도 1983-1993

생 산 과 서구2과/동북아1과

MF번호 2023-76 / 8 / 1-186

민주자유당(민자당)의 IDU(국제민주연합) 가입 관련 문서임.

1. 한국 정당의 국제 정당연합체 가입 문제

- 1983.5~7월 주오스트리아, 주영국, 주일본대사관은 국제 정당연합체 동향 보고
 - 국제 정당연합체: IDU, CDI(국제기민연합), S.I.(국제사회주의연맹) 등 3개
- 1987.6~8월 외무부는 한국 정당의 국제 정당연합체 가입을 검토함.
- 1989.2월 외무부는 민주정의당(민정당)의 국제 정당연합체 참여 문제를 제기함.
 - 주일본대사는 1.30. 노태우 대통령 특보 앞 서한을 통해 제4차 IDU 총회(1989.9월, 도쿄) 시 노태우 대통령이 Special Guest로 참석, 또는 박준규 민정당 대표위원의 옵서버 참석을 검토할 것을 건의
 -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2월 스웨덴 방문 중 칼손 수상(S.I. 부의장) 면담 시, S.I. 총회(1989.6월, 스톡홀름)에 옵서버로 참석을 요청, 이탈리아 방문 중 비폴리 하원의원(CDI 회장) 면담 시에는 CDI에 옵서버로 참여를 요청
 - 주이탈리아대사는 박준규 민정당 대표위원 앞 전보를 통해 민정당의 CDI 옵서버 참여 검토를 건의함.

2. IDU 당수회의(1989.9.21.~23., 도쿄)

- 참가자
 - 대처 영국 수상, 퀘일 미국 부통령, 시라크 프랑스 전 수상, 가이후 일본 총리 등 총 27개 정당 당수 등 100여 명
- 한국대표단(단장)
 - 김윤환 민자당 의원
- 한국대표단 주요 활동
 - IDU 집행위원회 회의(1989.9.23.)에서 박정수 의원 연설

3. 관련 검토자료

- 민정당의 IDU 가입 검토
- 민정당의 국제 정당연합체 참여 문제
- IDU 당수회의 참가 및 IDU 임원 방한 초청 결과 보고

민주자유당(민자당)의 IDU(국제민주연합) 가입. 전2권 (V.2 1990-93)

생산연도 1983-1993

생 산 과 서구2과/동북아1과

MF번호 2023-76 / 9 / 1-223

민주자유당(민자당)의 IDU(국제민주연합) 가입 관련 문서임.

1. PDU/IDU 회의(1991.4.10.~13., 뉴질랜드)

- 참가자: 정재문 의원, 이종률 민자당 서초 갑 지구당위원장, 이우각 민자당 국제국장
- 정재문 의원 기초연설, IDU 정회원 가입 정식 신청
- 차기 PDU 총회를 11월 경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 1990.7.30. 민자당 PDU 가입
 - 1991.11월 PDU 총회 서울 개최를 추진하였으나 참가 정당 수 저조로 개최 연기
 - 1992년 말 민자당 IDU 정식 가입 예정

2. IDU 외교위원회 회의(1991.12.10., 스톡홀름)

- 참가자: 도영심 민자당 의원
- 참가 목적: 민자당은 1992년 중 IDU 가입을 추진 중에 있는바, IDU 가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본 회의에 참가함.
- 참가국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12개 회원국
 - 헝가리, 한국 2개 옵서버국
- 주요 의제
 - 국제교역, 마약, 아프리카 개발, 북한 핵 문제 등
- 회의 참석 성과
 - 민자당의 IDU 가입 문제: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평소 한국의 IDU 가입에 방관적이던 회원국 대표들로부터 1992.1월 말 집행위원회 개최 시 가입되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 받음.
 - PDU 회의 한국 개최: 1992.1월 말 집행위원회 개최 시, 1992년 영수회담 일정 확정 후 PDU 한국 개최 일정을 결정하도록 여타 회원국들과 구두 합의함.

3. IDU 집행위원회(1992.1.31.~2.1., 아테네)

- 참가자: 도영심 민자당 의원, 이우각 민자당 국제국장
- 민자당의 IDU 정회원 가입 원칙 결정: 10월 마드리드 당수회의에서 가입 수락 행사 예정

A.I.(국제사면위원회) 북한 인권보고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특수정책과

MF번호 2023-76 / 10 / 1-78

1993년 중 A.I.(국제사면위원회) 북한 인권보고서 관련 내용임.

1. A.I.의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1993.10.14.)

- 주영국대사관은 1993.10.15.자 공문으로 외무부에 사본 송부
- A.I.는 발표에 앞서 동 보고서를 북한 당국에 사전에 배포하여 북한 측 반응을 타진하였으며, 북한 측은 10.13. 주제네바대사 명의의 A.I. 앞 서한을 통해 북한 당국의 입장을 밝힘.

2. 인권보고서 주요 내용

- 북한에는 현재 수만 명의 양심수가 불법 구금되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공정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구금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가해지고 있음.
- 북한 당국자는 사형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I.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사형이 빈번히 집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경제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경우는 공개처형도 자행되고 있음.
- 북한은 국제인권규약 가입 당사국이나, 동 규약내용과 일부 북한의 헌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간에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며, 양자 간 충돌이 생길 경우 인권보호장치가 미비함.

1283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인권사
의위원회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아시아지역회의, 제12차. Ulaanbaatar(몽골), 1993.7.28.-8.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6 / 11 / 1-65

정부는 1993.7.28.~8.1.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12차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아시아지역회의에 유정근 경찰청 외사2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 목적

-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의 기본입장 표명 및 한국 입장 적극 반영
- 범죄수사에 있어 국제협력 강화

1284

2. 참가자

- INTERPOL 아시아지역 회원국 25개국 대표 67명, INTERPOL 사무총장 등 관계관 9명
- UNDCP(유엔마약통제계획),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 국제기구 옵서버 6명

3. 주요 의제

- 불법마약 거래, 국제테러 등 강력범죄, 경제범죄, 통화위조, 문화예술품 관련 범죄, 아동대상 범죄 등 아시아에서의 범죄 상황, 범죄예방
- 텔레콤시스템 도입 등 지역 활동 현대화
- 아시아지역의 경찰협력, 지역 마약훈련센터 건립 추진

4. 한국대표단 활동

- 1992년도 한국에서의 마약류 관련 범죄 현황 및 대책 소개, 마약범죄 퇴치를 위한 회원국 협조요청
- 상기 의제 개별 토의 후 권고안 채택
- 동 권고안에서 회원국 정부는 마약불법거래 감소를 위한 긴급 조치, 돈세탁 범죄 최우선 퇴치, 위험 폐기물 거래 등 환경범죄를 포함한 국제범죄 정보 교류 등 권고
- 중국 등 각 회원국 대표단 접촉, 경찰협력 제고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62차. Aruba(네덜란드), 1993.9.29.-10.5.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6 / 12 / 1-224

정부는 1993.9.29.~10.5. 네덜란드 아루바에서 개최된 제62차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에 유정근 경찰청 외사과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131개 회원국, 7개 국제기구, 신규가입 신청 7개국

2. 분야별 회의

- 국가 중앙사무국장 회의
- 아시아지역 국가 회의
- 국제 경제범죄위원회 회의
- 조직범죄위원회 회의
- 컴퓨터화 및 텔레콤위원회 회의

3. 주요 결과

- 유고연방의 인터폴 지위에 관한 결의안 채택
- 신규가입 신청 승인으로 회원국은 7개국 증가
- 집행위원회 위원 선출
- 재정 관련 경과보고
- 차기 회의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4. 인터폴 집행위원회 선출 교섭

- 13명으로 구성
 - 총재 1명, 부총재 3명, 집행위원 9명(지역안배 준수)
- 선출 결과
 - 아시아 부총재(파키스탄), 아프리카 부총재(탄자니아), 유럽 집행위원(독일), 아시아 집행위원(이스라엘), 아메리카 집행위원(칠레 및 바하마)

1285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ASOSAI(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구) 교통감사 세미나. 서울, 1993.8.31.-9.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6 / 13 / 1-175

1993.8.31.~9.7. 서울에서 개최된 ASOSAI(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구) 교통 분야 감사에 관한 세미나 관련 외무부의 지원에 관한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90.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ASOSAI 이사회 결과, 감사원에서 상기 세미나 개최계획 발표
 - 1991.5월 ASOSAI 제5차 총회 및 제17차 이사회(베이징 개최) 결과, 동 세미나 개최 승인
- 동 세미나 주제를 '교통 감사'로 결정
- 1993.5월 총 23개국(회원국 21개국, 비회원국 2개국)에 세미나 초청장 발송

2. 참가자

- 24개국 28명

3. 주요 의제

- 교통 감사
- 대도시 교통 정책 감사 및 도로건설 사업 투자 감사

4. 개최 목적

- 교통 행정 및 시설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연구
- 아시아지역 감사원 간 감사 경험 및 의견 교환
- 사이프러스 등 미수교국과의 유대 강화 도모

5. 외무부 지원

- 1993.3.13. 감사원은 동 세미나에 사이프러스 및 이스라엘 대표의 참석 관련 외무부의 의견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3.26. 아래와 같이 회신함.
 - 사이프러스가 현재 한국과 미수교 상태이나 양국 간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가 꾸준히 증진되고 있고, 세미나 개최 목적이 교통 감사 관련 정보교류인 점을 감안, 사이프러스 대표 초청 무방함.
 - 이스라엘 대표의 참석 시 아랍 국가들의 단체 행동에 의한 적대감정 표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회교권 참가자들의 세미나 참석 거부 등 원만한 진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 있음.
- 5.12. ASOSAI 회원국 주재 공관을 통해 교통 감사 세미나 초청장 송부
- 8.9. 동 세미나 참가 대표단 항공권 및 감사원장 서신 전달

ASOSAI(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구) 이사회, 제19차. Sydney(호주), 1993.5.23.-28.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6 / 14 / 1-32

정부는 1993.5.23.~28.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9차 ASOSAI(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구) 이사회에 김종철 감사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이사국: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7개국
- 감사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 특별고문국: 호주

2. 주요 의제

- 제18차 이사회 이후 활동에 대한 의장 및 사무총장 보고
- 제6차 총회 준비 보고
- ASOSIA 워크숍 개최 일자 및 장소
- 컴퓨터 자문단 설치 등

3. 회의 결과

- 인도 감사원장이 1994년도 제6차 총회 및 제5차 세미나 준비상황 보고
- 일본 회계 감사원장은 1994.6월 도쿄에서 ASOSIA 워크숍을 후원할 것을 제의하였고, 모든 회원국이 이에 동의함.
- 컴퓨터 자문단 설치 문제 관련 참가국들은 자문단 설립을 찬성하고 사무총장국(일본)으로 하여금 경비지원 문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기로 합의

1287

대한민국 국제법률 연구회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총회, 제15차. Tehran(이란), 1993.11.1.-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6 / 15 / 1-35

정부는 1993.11.1.~7.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5차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총회에 박해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일정

- 제15차 총회
- 제40차 EROPA 이사회
- 행정발전세미나

1288

2. 주요 내용 및 결의사항

- EROPA 발전관리센터 활동 보고
- 사무총장 및 이사회 임원 선출
- 신규 회원 가입 인준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 제11차. 상하이, 1993.5.13.-16.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76 / 16 / 1-204

제11차 IAC(전직정부수반협의회) 회의가 1993.5.13.~16.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됨.

1. 주요 의제

- 세계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상황, 소련의 해체 결과 등

2. 회의 일정

- IAC의 회장을 맡고 있는 슈미트 전 서독 수상의 보고서 발표 예정
 - 보고서: 독일 통일 과정이 한국에 주는 교훈
 - 동 보고서는 1993.2.17.~18. 파리 개최 IAC 고위급회의 시 토의내용임.
- 상하이에서 회의를 마친 뒤 특별기로 베이징으로 이동, 중국지도부 만남 및 시찰 예정

3. IAC, 노태우 전 대통령 정회원 위촉

- 슈미트 IAC 회장은 서울 개최 제8차 IAC 총회 시 한국 측의 지원에 감사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정회원으로 위촉
 - 이에 따라 1개국 1회원 원칙으로 신현확 전 총리는 정회원에서 특별게스트가 됨.

4. 주요 결과

- 24명의 회원과 키신저 등 특별초청 인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어 최종성명 채택
 - 한반도 문제 관련 후쿠다 전 일본 수상은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인한 정세 우려 표명
 - '독일 통일 과정이 한국에게 주는 교훈' 제하의 보고서 채택
 - 중국 문제, 구소련의 몰락, 아프리카 지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촉구, 인구조와 환경 관련 의견 제시
- 슈미트 회장은 1993.5.28.자 김영삼 대통령 앞 서한을 발송, 최종성명과 '독일 통일 과정이 한국에 주는 교훈' 제하의 보고서 등 송부

Botho Prinz zu Sayn-Wittgenstein 국제적십자 상치위원장 방한, 1993.5.19.-2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6 / 17 / 1-33

Botho Prinz Zu Sayn-Wittgenstein IRC(국제적십자사) 상처위원장의 1993.5.19.~22.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아태지역 적십자회의(1993.5.24.~29., 베이징) 참석 계기 대한적십자사의 초청

2. 주요 일정

- 김영삼 대통령 예방
- 외무부장관 예방, 보사부장관 면담
- 대한적십자사(무궁화장 수여, 한적사업 소개) 및 중앙혈액원 방문
- 판문점 시찰

3. 외무부장관 면담 요지

- 북한 핵 문제
 - 동 위원장은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관련 한국의 남북고위급회담 제의 배경과 입장을 문의한바, 한국 측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모든 회원국이 대북 설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미·북한 및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의하였고, 금주 중 미·북한 간 차관보급 접촉이 있을 것이라 언급함.
- 차기 적십자 총회
 - 동 위원장이 제26차 적십자 총회가 무산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1995년 적십자 총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한국의 지지를 요청한바, 한국 측은 차기 총회 개최를 적극 지지 할 것임을 밝힘.
- 이산가족 상봉 문제
 - 한국 측이 1천 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바, 동 위원장은 동서독 간 이산가족 재회 문제 해결의 예를 들면서 이는 상이한 정치체제하에서도 인도적 대의를 위해서는 협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예라 말하고 국제적십자사도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을 약속함.

대한적십자사 창시자 선정 문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77 / 1 / 1-88

1.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기여금 증액 검토(1992.1.23.)

- 5만 달러 증가한 20만 달러로 증액함을 ICRC 총재 앞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으로 통보

2. ICRC, 사실조사위원회(International Fact Finding Commission) 참가 검토(1992.12.9.)

3. 대한적십자사 창시자 선정

-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 가입 9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적십자사 창시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주요국 사례 조사를 외무부에 부탁해 왔으며, 이에 따라 외무부는 주요국 사례조사 및 의견을 제공

4. 제4차 아태지역 적십자사 회의(1993.5.24.~29.) 대표단 대책회의(1993.5.15.)

- 1977.3월 인도 뉴델리 창립회의 이래 4년마다 개최
- 26개국 회원국 적십자사, IFRC(국제적십자사연맹), ICRC(국제적십자사위원회) 및 기타 국제기구 (UNHCR(유엔난민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등) 참가
 - 한국은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수석대표로 총 4인 참석
- 주요 의제
 - 재해대책, 발전 및 건강 등 3개 소위원회로 구성, 위원회별로 토론 후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

1291

대한적십자사 창시자 선정 문제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V.1 1990-91)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동구1과 / 조약과

MF번호 2023-77 / 3 / 1-166

1990~91년 중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1. 고르바초프, 프랑스 방문(1990.10.28.~29.)

- 주프랑스대사는 1990.10.31. 고르바초프의 프랑스 방문 관련 프랑스 전문가들의 분석 및 주프랑스대사관의 평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고르바초프는 유럽 순방 중 스페인에서 15억 달러, 프랑스에서 20억 달러의 원조를 획득하여 시급한 경제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소련 국민에 대한 자신의 국제적인 역량 과시로 정권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프랑스·소련 우호협력조약은 1891년 프랑스·소련 동맹의 의지가 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 내용 중 프랑스로 하여금 안보, 협력 문제에 있어 소련의 각 공화국과 직접 협의를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은 하나의 특징임.
 - 동 방문은 고르바초프의 의도와 거대한 독일 출현을 계기로 대소련 협력 강화를 필요로 하는 프랑스와 기본적인 이해가 합치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2. 한·소련 선린협력조약

- 외무부 구주국은 1991.4.23. 한·소련 선린협력조약에 대한 아래 검토 결과를 각실·국 및 외교 안보연구원장에게 송부함.
 - 소련이 한국 측에 제의한 조약의 성격이 구주 국가와 체결한 조약과 유사할 경우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가능하겠으나, 소련의 의도가 비록 '모스크바 선언'의 조약화이더라도 정치적 선언의 조약화가 상징하는 문제점, 미·일 등 기존 우방의 불필요한 오해, 남·북한 관계, 대중국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모스크바 선언'에 기초를 두고 조약화는 신중히 대처함.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V.2 1992.1-2월)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동구1과 / 조약과

MF번호 2023-77 / 4 / 1-184

1992.1~2월 중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1. 핀란드·러시아 간의 기본조약 체결

- 주핀란드대사는 1992.1.21. 핀란드와 러시아가 1.20. 헬싱키에서 Aho 핀란드 수상과 Burbulis 러시아 부수상 간에 핀란드·러시아 간 기본조약에 서명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양국 외무장관 간 각서교환으로 핀란드·소련 간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폐기하였다고 보고함.
- 기본조약 주요 내용: 체약당사국은 분쟁 발생 시 유엔헌장과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최종의 정서에 따라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자국의 영토가 상대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타방체약국이 침략의 대상이 될 경우 일방체약국은 침략국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원조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 Burbulis 부수상은 주재국이 EC(구주공동체) 가입을 신청할 경우 러시아는 주재국의 가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주재국이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함.

2.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검토 추진계획

- 외무부 구주국은 1992.2.17. 주러시아대사관이 2.13. 접수한 러시아 정부의 “한·러시아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 안 관련, 아래와 같이 동 조약 체결 문제를 검토, 추진하고자 하니 재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문서를 외무부장관에게 상신함.
- 주요 내용
 - 조약 명칭을 1991.4월 제주도 정상회담 시 제의한 것(한·소련 선린협력조약)과는 달리 “관계의 기본이 되는 조약”으로 함.

1293

대한민국 외교부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V.3 1992.3월)**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동구1과 / 조약과

MF번호 2023-77 / 5 / 1-237

1992.3월 중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 영국·러시아 간 우호조약 체결 추진
 - 주영국대사는 1992.3.20. 영·러 우호조약 체결을 위해 영국 외무성 내부가 의견조정 단계에 있으며, 5월 중 주재국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양국 간 실무교섭 타결 후 동년 하반기 열린 러시아 대통령의 영국 방문 시 또는 그 전후로 조약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 주재국 외무성에서 초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영·러시아 양국관계의 기본원칙(인간의 존엄성, 환경보호, 국제법 존중, 민주적 제도 및 가치 존중), 인권·민주주의·법치 존중, 영·러시아 양국 국민 간 교류 증진, 경제협력 증진 등임.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V.4 1992.4.1.-20.)**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동구1과 / 조약과

MF번호 2023-77 / 6 / 1-217

1992.4월 중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 주러시아대사는 1992.4.7. Havel 체코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1992.3.31.~4.1.)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Havel 대통령은 약 30명의 대표단과 러시아를 방문하여 열친 러시아 대통령, 하즈볼라토프 최고회의 의장 및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등을 면담함.
 - 양국은 친선협력조약 및 체코 주둔 구소련군의 재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 체코에 주둔하던 구소련연방 군대는 1991.6월 실질적으로 모두 철수하였으며, 현재 일부 전문가들이 군부대 시설 및 기타 군 재산을 체코 정부에 인도하는 문제 협의로 잔류하고 있음.
 - 열친 대통령은 Havel 대통령에게 1968년 체코 사태 시 구소련군의 체코 침공에 관한 문서(약 5kg 분량)를 전달함.
 - 체코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구동구 사회주의국가 중 최초로 러시아와 양자 기본관계를 체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러시아가 서방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에만 주력하고, 구동구 국가들과의 관계에는 소원하다는 일부의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둘러 체코 대통령의 방문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V.5 1992.4.21.-5월)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동구1과 / 조약과

MF번호 2023-77 / 7 / 1-182

1992.4.21.~5월 중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국 측 기본입장

- 외무부는 1992.4.21. 주러시아대사관에 아래와 같은 기본입장에 따라 한국 측 대안 작성을 지시함.
 - 러시아 측 안의 기본골격 및 러시아 측 제의내용 등은 가능한 한 존중
 -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양국관계의 기본토대 설정
 -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 소지 제거
 - 기본 우방국가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 배제
 - 제반 협력규정은 간소화하되, 향후 양국 간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러시아 측 협력 의도는 최대한 수용
 - 일반적인 조약 체결 관례 존중
- 한국 측 대안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상부 보고 후 5월 초 대사관에 송부 예정

2. 조약 체결 의의 및 추진 방향

- 의의
 - 1884년 러시아와 최초로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이 외압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었음에 비해 금번 조약은 한국의 국력 신장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대등한 우호협력 발전을 마련한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음.
 - 한·러시아 조약 체결은 1990년 이래 3차의 한·소련 정상회담 등 6공화국이 그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북방외교의 값진 결실임.
- 추진 방향
 - 상기와 같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미·일 등 기존 우방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V.6 1992.6월)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동구1과 / 조약과

MF번호 2023-77 / 8 / 1-246

1992.6월 중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러시아 조약 교섭단 파견

- 외무부 구주국은 1992.6.4. 러시아 측과 한·러 우호협력조약(가칭) 1차 교섭을 위해 아래와 같이 조약교섭 대표단을 임명하고, 별첨과 같이 훈령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외무부장관에게 상신
- 기간 및 장소: 1992.6.22.~26. 모스크바
-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함명철 외무부 조약심의관
 - 대표: 심성한 주러시아대사관 1등서기관, 최석인 외무부 동구1과 서기관, 김영석 외무부 조약과 사무관 등

2. 한·러시아 우호협력조약(가칭) 체결 관련 한국 입장

-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1992.6.16.)
 - 러시아 측 대안 검토
- 러시아 측 대안 평가
 - 러시아 측 대안은 한국 측 안을 기초로 그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후, 부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작성함.

3. 한·러시아 기본조약 체결 교섭 회담

- 한·러시아 양측 대표단은 1992.6.26. 미결 조항 문안에 합의함으로써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안을 채택함.
- 양측은 동 조약안의 한글본과 러시아어본을 빠른 시일 내 주러시아대사관을 통해 교환하여 상호 점검한 후 확정하기로 함.

1297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V.7 1992.7-12월)**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동구1과 / 조약과

MF번호 2023-77 / 9 / 1-211

1992.7~12월 중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1.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방한 취소

- 경위
 - 열친 러시아 대통령 방한 관련, 1992.8.21.~26. 방한 예정이었던 쿠나제 외무차관 일행은 아프간 사태의 악화에 따른 동 차관의 국내 일정 관계로 방한을 취소함.
- 조치사항
 - 한·러시아 기본조약 가서명: 주한 러시아대사가 본국의 정식 훈령을 받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 가서명 추진
 - 가서명권자: 외무부차관과 주한 러시아대사 간 가서명
 - 한·러시아 공동성명 문안 협의: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모스크바에서 주러시아대사관과 러시아 외무부 간에 시행할 것을 제의해 옴에 따라 모스크바에서 시행하도록 함.

2. 한·러시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가서명

- 1992.8.26. 노창희 외무부차관과 알렉산드르 파노프 주한 러시아대사 간에 동 조약이 가서명됨.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V.8 1993)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동구1과 / 조약과

MF번호 2023-77 / 10 / 1-197

1993년 중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91.4월 소련 측,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제주도 방문 시 한·소련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제의
- 1992.2월 러시아 측, 한·러시아 기본관계조약 초안 제시
- 1992.11.19.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 간 서명

2. 주요 내용

- 양국 간에 평화와 우호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역사상 불행했던 시기의 잔재를 극복할 것을 다짐하며 양국관계를 자유, 민주주의, 인권존중 및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발전
- 양국은 주권, 평등,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등 제원칙과 기타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호관계 발전
- 계약당사국은 양국관계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며, 양국 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
- 계약당사국은 국제문제 및 지역문제 등 상호 관심사항과 양국관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원수, 외무장관, 정부각료 또는 의회 및 지방정부 간에 협의를 가지고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간의 광범위한 상호협력을 증진·발전
- 계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한국계 또는 러시아계 국민의 고유문화 향유, 종교 신봉, 고유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

3. 동 조약은 1992.11.19. 서울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 간에 서명되어, 1993.6.7. 모스크바에서 비준서를 교환, 1993.7.7.자로 발효됨(조약 제1178호).

1299

대한민국-러시아간 조약

한·미국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 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전14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1호) (V.11 1992)

생산연도 1987-1993

생 산 과 북미2과 / 조약과

MF번호 2023-78 / 11 / 1-198

1992년 중 한·미국 간의 PSA(군사특허비밀보호협정)의 시행 절차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진전사항(1992년)

- 1.6.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D. Gregg 주한 미국대사 간 PSA 서명
- 11.11. 국회 비준 동의 가결
- 11.25.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한국 측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
 - 한·미 PSA는 미국 측 절차 완료 통보 접수 30일 후 발효

2. 참고사항

- 1992.1.6. 한·미 양측은 오타를 수정한 한·미 과기협정의 부속서에 가서명
 - 장기호 주미국대사관 참사관과 J. Boright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간 가서명

한·미국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 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전14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1호) (V.14 1993.7-11월)

생산연도 1987-1993

생 산 과 북미2과 / 조약과

MF번호 2023-79 / 1 / 1-176

한·미국 간의 PSA(군사특허 비밀보호협정)의 시행 절차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동 각서안은 국방 관련 발명의 양국 간 특허출원을 촉진하여 미국의 군사 분야 첨단기술 정보의 획득 및 활용을 통한 한국 국방과학기술의 향상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

2. 주요 내용

- 양국에서 생산된 비밀의 특허출원 절차를 규정함.
- 생산국 정부는 비밀해제 시 6주 전에 접수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며,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국 정부는 비밀조치 유지의 적절성에 관하여 협의함.
- 양국 정부는 특허비밀보호협정 및 시행 절차와 관련한 제반 문제의 협의를 위해 기술위원회를 구성함.

3. 동 협정은 1992.1.6.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도널드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 간에 서명 되어,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고함으로써 1993.7.29.자 발효됨(조약 제1181호).

1301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관리함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V.1 1991)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조약과

MF번호 2023-79 / 3 / 1-167

1991년 중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관련 내용임.

1. 교섭 개시 및 초안 제시

- 1991.6.10. 주한 몽골대사는 동년 10월 말로 예정된 오치르바트 몽골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동 협정 및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제의
 - 또한, 김종휘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1991.7.15.~18. 몽골 방문 계기 몽골 측은 자국 대통령 방한 시 항공협정, 사증면제협정과 함께 동 협정 체결을 제의해온바, 일단 실무선 간의 조속한 문안합의를 강조함.
- 7.31. 재무부는 동년 10월 본서명은 실무회담, 국무회의 상정 등 필수적 소요 절차를 감안할 때 어려운 상황임을 들어 1992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의
 - 몽골 대통령 방한 시 서명은 어렵더라도 교섭 개시를 위해 1991.8월 재무부가 작성한 초안을 몽골 측에 전달

2. 협약안 교섭

- 주한 몽골대사는 1991.8.22. 몽골 측 대안을 수교하고 동년 10월 말 몽골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서명을 위해 실무회담 개최를 희망함.
- 8.28. 주한 몽골대사는 동 문안에 대한 가서명을 위한 실무교섭을 동년 10월에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나, 한국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표준문안에 기초한 것인데 비해 몽골안은 유엔모형을 제시하여 양측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한국 측은 익년 2월경 실무회의 개최를 제의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V.2 1992.1-3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조약과

MF번호 2023-79 / 4 / 1-247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해 한·몽골 이중과세방지협약 실무회의가 1992.2.24.~27. 서울에서 개최됨.

1.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영섭 재무부 세제심의관
- 몽골 측: M. Batnasan 재무부 재정계획국장

2. 정부 훈령

- 한국기업의 대몽골 진출에 대비해 원천지국 과세보다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견지해 교섭
- 한·몽골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몽골을 통한 향후 북한 및 중국과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몽골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교섭
- 문안 합의 시 가서명 추진

3. 문안 합의 및 가서명

- 1992.2.27. 양국 간 문안 합의 및 양측 수석대표 간 가서명

4. 주요 내용

- 투자소득을 원천지국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
-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 면제
-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인원에 대한 급여 면세
- 이중과세방지 방안으로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방식 채택 등

1303

대한민국-외국간 조약목록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V.3 1992.4월-1993)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조약과

MF번호 2023-79 / 5 / 1-356

1992~93년 중 한·몽골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92.4.17. 양국 외무장관 간 서명
- 1992.11.11. 한국 국회 비준 동의
- 1993.3.6. 몽골 국회 비준 동의

1304

2. 협정 의의

- 양국 간 교역 시 이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며 양국 간 경제, 과학기술, 문화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함.

3. 동 협정은 1992.4.17.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체렌필린 고펜수렌 몽골 외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1993.5.7. 서울에서 신효헌 외무부 조약국장과 우르친 훈데브 주한 몽골대사 간에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1993.6.6.자로 발효됨(조약 제1173호).

한·몽골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협정, 1993.7.28. Ulaanbaatar에서 서명: 1993.8.27. 발효(조약 제1185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1과

MF번호 2023-79 / 6 / 1-190

1992~93년 중 한·몽골 간의 세관협력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92.11월 관세청, 세관협력협정 초안을 몽골 측에 송부
- 1993.6월 몽골 측, 한국 측 안에 최종 동의

2. 주요 내용

-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와 관세 산정 등에 있어 양 세관 당국 간 상호 지원하며, 기타 관세 분야에서의 새로운 절차, 제도 등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협력함.
- 세관직원 및 관련 전문가의 교류와 기타 세관 분야에서의 정보, 경험 및 전문적 자료를 교환함.

3. 체결 의의

- 양 세관 당국 간 협조체제 기반이 마련되어 관세범죄 예방 효과 증대는 물론 상호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하여 한·몽골 양국 간 교역확대 및 인적 교류 증대

4. 동 협정은 1993.7.28.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김경태 관세청장과 Amarsaikhan 몽골 관세청 차장 간에 서명되어, 1993.8.27.자로 발효됨(조약 제1185호).

1305

대한민국-외국법정-외국법정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정 연장

생산연도 1990-1991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79 / 7 / 1-31

1990~91년 중 한·스웨덴 양국은 1981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 중 Matching Credit Regulation 조항이 1990년 말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동 조항을 10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함.

1. 연장 합의 경위

- 스웨덴 SE 은행 측은 1990.9.11.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2조 4항이 금년 말 효력 정지될 예정임을 지적하면서, 한·스웨덴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동 조항의 연장을 희망함.
- 주스웨덴대사관 측은 1990.9월 주재국 재무부와 접촉한바, 동 조항은 한국 측 요청으로 삽입된 것으로 한국 측이 연장을 요청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함.
- 주스웨덴대사관 측은 1991.1.7. 주재국 재무부를 방문,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2조 4항을 10년간 연장할 것을 요청함. 이에 스웨덴 측은 동 조항 연장에 이의가 없으며 주재국 내 협의 및 결정 후 국회 동의 절차로 시일이 소요될 것이나 효력은 금년 1.1.자로 소급 적용되므로 실질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달함.

2. 한·스웨덴 조세조약 중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제22조 4항)

- 현행 규정
 - 한국에서 납부된 조세는 일반외국세액공제를 허용
 -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의 20%를 납부된 세액으로 간주
 - 협약이 효력을 가지는 10년간 적용(1990년 말 종료)
 - 권한 있는 당국은 적용기간 연장 여부에 관하여 상호 합의 가능
- 특징
 - 스웨덴만이 간주외국세액공제를 허용하여 한국은 세수일실이 없는 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의 차입 등이 가능함.
 - Bank Loan,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 조감법상 면세로 규정되어 스웨덴 은행은 한국에서의 조세부담이 없는 반면 스웨덴에서는 20%의 세액공제가 가능
 -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배당소득 등: 조세조약상 10%, 15%의 제한세율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20%의 세액공제가 가능
 - 결국, 스웨덴은 한국에 대한 자금공여, 투자 등이 타국의 경우보다 유리하여 보다 좋은 조건의 제시가 가능함.

한·미얀마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1993.2.15. Yangon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64호)

생산연도 1989-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조약과 /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79 / 8 / 1-310

1989~93년 중 한·미얀마 간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대미얀마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제공

- 추진 내역
 - 전기통신망 확충사업: 7백 5십만 달러
- 추진 경위
 - 1989.11월 미얀마, 기금 지원 요청
 - 1990.5월 미얀마 정부의 정정 불안으로 잠정 보류
 - 1991.2월 주미얀마대사, 미얀마 지원 재개 요청
 - 1991.5월 수출입은행 실사단 파견
 - 1991.9월 미국, 미얀마 인권상황을 이유로 동 지원 중단 요청
 - 1991.11월 외무부, 동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약속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
- 지원 내용
 - 미얀마 체신청에 57억 원화 차관을 제공하여 전기통신망 확충사업 추진
- 1992.11.12. 양측은 EDCF 공여를 위한 정부 간 협정 문안에 합의

2. 동 협정은 1993.2.15. 주미얀마대사와 미얀마 외무장관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164호).

1307

대한민국-미얀마-경제협력기금

한·몽골 간의 대몽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7.9. Ulaanbaatar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83호) (V.1 1992.1-7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조약과

MF번호 2023-79 / 9 / 1-333

1992년 중 한·몽골 간의 대몽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91.10월 한·몽골 정상회담 시 천만 달러 상당의 EDCF 지원 약속
- 몽골 정부는 1992.2월 아래 3개 사업에 대해 총 1,500만 달러의 EDCF 차관 지원 요청
 - 일회용 주사기 및 바늘 생산설비 사업: 5백만 달러
 - 창유리 생산설비 사업: 8백만 달러
 - 봉제공장 현대화 사업: 2백만 달러

2. 교섭 과정

- EDCF 관계부처 실무회의(1992.4.22.)
 - 10개 기관 참석(안기부,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등)
 - 몽골 요청 사업 중 주사기 공장 및 판유리 공장 건설 사업에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추후 정부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
- 한국 정부조사단 및 수출입은행심사단, 몽골 파견
 - 정부조사단(1992.6.1.~3.): 재무부 과장을 단장으로 외무부, 상공부 실무자 각 1명
 - 수출입은행심사단(1992.5.26.~6.8.): 수출입은행 1차장 및 심사역

한·몽골 간의 대몽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7.9. Ulaanbaatar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83호) (V.2 1992.8월-199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조약과

MF번호 2023-79 / 10 / 1-134

1992~93년 중 한·몽골 간의 대몽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교환각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이유

- 몽골의 일회용 주사기 공장 건설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몽골의 경제개발에 협력하고, 한국기업의 몽골 진출을 확대하여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를 강화함.

2. 주요 내용

- 차관 한도: 520만 달러
- 차관 조건: 이자율 연 3.5%, 20년 상환(거치기간 5년 포함)

3. 동 협정은 1993.7.9.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주몽골대사와 몽골 상공부장관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183호).

1309

대한민국-외국간서약서

한·파키스탄 간의 대파키스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1993.2.4. Islamabad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62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3-79 / 11 / 1-90

1993년 중 한·파키스탄 간의 대파키스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89.8월 파키스탄 정부, 기금 지원 요청
- 1990.9월 한국 정부조사단 파견
- 1991.6월 기금운용위원회 지원방침 결정
- 1992.8월 각서안 최종 합의

2. 체결 의의

- 파키스탄 정부의 산업 설비 대여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파키스탄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한국기업의 파키스탄 진출에 기여함.

3. 주요 내용

- 천만 달러 상당의 차관 제공
- 공여 조건: 이자율 연 3.5%, 상환기간 17년(5년 거치)

4. 동 협정은 1993.2.4.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주파키스탄대사와 파키스탄 재무경제부 수석 차관 간에 서명 및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162호).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3권. 1993.2.11. Warsaw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63호) (V.1 1991)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조약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79 / 12 / 1-144

1991년 중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을 위한 추진 동향임.

1. 지원 사업 및 규모

- Opole주 통신망 현대화 사업(113,000회선), 5천만 달러 상당

2. 추진 경위

- 1989.11월 한·폴란드 수교 시 5천만 달러 차관공여 약속
- 1991.9월 폴란드 정부, 동 사업에 대한 차관공여 공식 요청
- 1991.11월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 시 공여 추진 결정
- 1991.12월 정부조사단 및 수출입은행 심사단 파견

3. 정부조사단 협의 결과: 차관공여 조건 원칙 합의

- 차주: 폴란드 체신공사(폴란드 재무부 보증)
- 차관공여액: 5천만 달러 상당의 원화
- 차관조건: 연 4.2%, 5년 거치 20년 상환
- 기자재 구매조건: 구매 적격국을 한국 및 폴란드로 제한

4. 예상 기대효과

- TDX(한국형 전자교환기)의 유럽 수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1311

대한민국-외국간 무역협정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3권. 1993.2.11. Warsaw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63호) (V.2 1992.1-11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조약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79 / 13 / 1-234

1992년 중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을 위한 추진 동향임.

1.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대폴란드 EDCF 사업 범위(5천만 달러 규모 통신망 현대화 사업) 일부 변경을 아래와 같이 희망함.

- 대상지역을 폴란드 Opole주 남부지역에서 남부 및 북부지역으로 확대
- 당초 한국에서 구입하기로 하였던 Cable(1,300만 달러 상당)을 폴란드 국내에서 조달하는 대신 동 금액에 상당하는 37,000회선의 TDX(전전자교환기)를 한국으로부터 구입하여 Opole주 북부 지역에 추가 설치

2. 외무부는 1992.11.20.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폴란드 측의 사업 범위 변경요청에 대해 수용을 결정함.

- 사업 범위 변경으로 인하여 기금 지원 규모 및 지원조건에 변경이 없으며 본 사업의 범위 변경 시 한국은 한국산 TDX의 보급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폴란드는 전화 회선수 증가로 사업능력을 대폭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 지원이라는 EDCF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폴란드 측 요청을 수용함이 타당함.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3권. 1993.2.11. Warsaw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63호) (V.3 1992.12월-1993)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조약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80 / 1 / 1-115

1992~93년 중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폴란드 정부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폴란드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한국기업의 폴란드 진출에 이바지함.

2. 주요 내용

- 폴란드 통신망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해 381억 7,300만원 한도의 EDCF 차관 제공
- 차관의 인출조건은 공여조건(연 4.2%, 5년 거치 20년 상환)을 포함시킨 수출입은행과 폴란드 체신공사 간에 체결될 차관계약 규정에 의하여 규율
- 차관은 적격구매 대상국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자에 대한 지불대금으로 사용
- 폴란드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 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않음.
- 차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공과금 및 세금은 폴란드 체신공사가 부담

3. 동 각서는 1993.2.11. 바르샤바에서 최웅 주폴란드대사와 Skubiszewski 폴란드 외상 간의 서명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163호).

1313

대한민국-외국간서약

한·루마니아 간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2.7. Bucharest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205호) (V.1 1991.6-93.2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조약과

MF번호 2023-80 / 2 / 1-201

한·루마니아 간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협의를 위한 1991.6~93.2월 중 정부의
교섭 추진 내용임.

1. EDCF 차관공여 대상 사업

- 사업명: 루마니아 Prahova주 통신망 현대화 사업
 - 사업기관: 루마니아 Rom Telecom
- 사업내용: TDX-1B(전전자 전화교환기) 설치를 통한 통신시설 현대화
 - 총 사업비 7천 5백만 달러 소요

1314

2. EDCF 차관공여 사업 신청 및 심사 결과

- 1991.12.31. 루마니아 외무부는 Prahova주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신청
 - 연 3.5%,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총 사업비 중 5천만 달러 지원을 요청
- 1992.4.22. 재무부 주관 관계부처 실무회의는 지원 추진을 결정
 - 8.24.~27. 정부조사단 루마니아 파견
- 1993.2.28. 관계부처 서면 의결로 지원 방침 결정
 - 연 4.2%,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5천만 달러 지원
 - 루마니아의 상환능력 및 투자수익성, 국산 기자재 수출 효과 등을 고려

한·루마니아 간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2.7. Bucharest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205호) (V.2 1993.3-12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조약과

MF번호 2023-80 / 3 / 1-191

정부는 1993.12.7. 한·루마니아 간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에 서명함.

1. 의의

- 루마니아 경제개혁 과정에서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낙후된 통신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교환기의 수출효과는 물론 한국의 대루마니아 경제협력 기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 내용

- 한국 정부는 루마니아의 Prahova 통신망 현대화 사업지원에 394억 6천 8백만원 한도의 EDCF 차관을 제공함.
- 차관의 공여조건은 연 4.2%, 상환기간 20년(거치기간 5년 포함)으로 하며, 인출기간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루마니아의 국영 통신공사 Rom Telecom R.A. 간에 별도로 체결되는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42개월 또는 합의하는 기간으로 함.
- 차관은 구매대상 적격국(한국)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자에 대한 지불대금으로 사용됨.

3. 국내 절차

- 1993.10.18. 외무부가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요청
 - 루마니아 정부와 협의 후 법제처 검토를 거쳐 문안 확정
- 1993.10.30.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93.11.11. 국무회의가 동 교환각서 체결을 심의, 의결

4. 동 협정은 1993.11.11.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1993.12.7. 부큐레슈티에서 박종상 주루마니아대사와 테오도르 엘레스카누 루마니아 외무장관이 교환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205호).

- 12.14. 관보 게재
- 1994.3.4. 루마니아 부큐레슈티에서 김영빈 한국 수출입은행장과 루마니아 Rom Telecom 사장은 EDCF 차관공여 계약에 서명함.

1315

대한민국-루마니아

한·리투아니아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3.9.24. 서울에서 서명: 1993.11.9. 발효(조약 제1197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조약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80 / 4 / 1-217

정부는 1993.9.24. 한·리투아니아 간의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함.

1. 경위

- 1991.10월 외무부장관은 리투아니아 총리 방한 시, 경제 분야 협정 체결 제안
-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 1991.12.24. 리투아니아 총리는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협의 개시를 제의
- 1992.2.20. 주덴마크대사는 검임국 리투아니아 출장 시 한국 측 투자보장협정 초안 전달

2. 의의

- 한국과 리투아니아는 금번 2개의 협정 체결로써 양국 간 교역확대 및 민간투자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또한 이를 통해 한국기업의 리투아니아 진출 촉진 등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함.

3. 주요 골자

- 한·리투아니아 무역협정
 - 양국 정부는 관세부과, 무역대금 결제 등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며, 특히 타방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수입의 경우 수량제한, 수입허가 등에 있어 무차별 대우를 부여함.
 -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타방국 영역 안에서의 상업활동과 관련,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향유함.
- 한·리투아니아 투자보장협정
 - 양국 정부는 타방국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 안의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자국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용함.
 - 양국 정부는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

4. 국내 절차

- 1993.9.7. 외무부가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요청
- 1993.9.10.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93.9.16. 국무회의가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협정 체결

- 1993.9.24. 리투아니아 총리 방한 계기에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체결
 - 한·리투아니아 무역협정도 함께 체결
- 1993.10.21.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
- 1993.11.9. 주덴마크대사관이 리투아니아 측에 한국 내 절차 완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정 발효

6. 동 협정은 1993.9.1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3.9.24. 서울에서 홍순영 외무부차관(장관대리)과 Klimasauskas 리투아니아 상공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11.9.자로 발효됨(조약 제1197호).

- 11.23. 관보 게재

1317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2.22. Asuncion에서 서명: 1993.8.6. 발효 (조약 제1188호) (V.1 1976-91)

생산연도 1976-1993

생 산 과 조약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80 / 5 / 1-180

1976~91년 중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추진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6.10.13. 한·파라과이 혼성위원회는 투자 및 통상협정 체결에 관하여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파라과이 측에서 초안을 재검토하여 차기 회의 시 한국 측에 제시할 예정
- 1977.2.21. 한·파라과이 혼성위원회에서 통상을 분리하여 투자협정으로 추진 협의
- 1977.4월 파라과이 측이 협정 영문본 초안을 한국 측에 제시
- 1981.5월 파라과이 외무성은 Nogue 파라과이 외상의 공식 방한 관련 양국 간 투자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협정 초안 제시

2. 협정 검토

- 1981.6월 경제기획원 및 상공부는 상기 초안에 대해 이견 없음 통보
- 재무부는 투자보장에 관한 규정 추가와 함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는 별도 협약을 체결하는 제안 제시
- 8월 외무부 조약국은 동 협정 초안 문안 검토 및 조정안 제시

3. 협정안 교섭

- 1981.8월 한국 측 수정안, 파라과이 측에 송부
- 1982.7.5. 파라과이 측의 한국 측 수정안에 대한 의견 통보 지연으로 주파라과이대사는 교섭 중지를 건의
- 1988.6.24. 한·파라과이 외무장관회담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조속 검토하기를 희망
- 로드리게스 파라과이 대통령의 1990.6.20.~22. 공식 방한 계기로 개최된 한·파라과이 외무장관 회담에서 조속한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노력 합의
- 1991.9.20. 파라과이 측, 한국 측 초안(1981년 제시)에 대한 대안 제시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2.22. Asuncion에서 서명: 1993.8.6. 발효 (조약 제1188호) (V.2 1992.1-9월)

생산연도 1976-1993

생 산 과 조약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80 / 6 / 1-150

1992년 중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문안 교섭

- 1992.1.24. 외무부는 기존 교섭 문안이 오래되고 투자보장협정의 골자인 투자위험예방과 분쟁 해결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지 않아 현재 한국이 타국과 체결하고 있는 투자보장협정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정 문안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주파라과이대사에게 현재 한국의 투자보장협정 표준안을 파라과이 측에 제시하고 협정 문안 교섭을 지시
- 3월 파라과이 측은 한국 측 초안에 대해 2개항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가능하면 파라과이 외무 장관 방한 시(1992.4.9.~12.) 가서명을 희망
 - 외무부는 파라과이 측의 수정제안에 대한 조정안 수락조건으로 가서명 추진 수락
- 3.25. 주파라과이대사, 파라과이 외무차관 면담 시 한국 측의 제안을 설명하고 추후 관계부처 의견 반영 및 조정으로 최종 문안 확정

2. 문안 가서명

- 1992.4.10. 바에스켄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 시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와 Cabello 파라과이 외무차관 간 협정 문안 가서명

3. 협정 체결 준비

- 1992.7.2. 법제처 심사 요청
 - 7.23. 법제처 회신, 국회동의 불요 판정
- 외무부는 주파라과이대사와 파라과이 외무장관 간 서명으로 체결 추진
 - 파라과이 측은 이에 이의 없음을 회보

1319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2.22. Asuncion에서 서명: 1993.8.6. 발효
(조약 제1188호) (V.3 1992.10월-1993)

생산연도 1976-1993

생 산 과 조약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80 / 7 / 1-231

1992~93년 중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2.2월 한국 측 안 제시
- 1992.3월 파라과이 측, 한국 측 안 수락
- 1992.4.10. 가서명(서울)

1320

2. 체결 의의

- 상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양국 정부의 타방 국민 및 회사의 투자에 대해 내국민 및 최혜국대우 부여
- 투자 수익에 대해 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국외송금 보장
- 타방 국민 및 회사의 투자 수용 및 국유화 시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유효 및 적절한 보상 제공 등

4. 동 협정은 1992.12.22.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경창헌 주파라과이대사와 바에스켄 파라과이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8.6.자로 발효됨(조약 제1188호).

- 8.22. 관보 게재

한·베트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1993.9.4. 발효(조약 제1186호) (V.1 1992-93.3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조약과

MF번호 2023-80 / 8 / 1-159

1992~93년 중 한·베트남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2.4월 양국 간 연락대표부 설치 합의 시 작성된 토의기록(Record of Discussion)에서 연락 대표부 설치 후 아래 경제 관련 협정 체결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음.
 - 무역협정(베트남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국이 아님)
 -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 이중과세방지협정
 - 항공협정
 - 해운협정

2. 체결 교섭

- 외무부는 1992.10.27. 한·베트남 간 경제 관련 협정의 한국 측 초안(협정별 2부)을 주베트남 대표부에 송부하면서 이를 베트남 측에 제시하도록 지시함.
 -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한·베트남 간 경제교류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보장협정과 무역협정 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며, 또한 양국 간 수교 시 동 협정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베트남 측과 교섭에 임하고 진전사항을 수시 보고하도록 지시
 - 또한 금후 각 협정별 교섭 진전사항에 대한 외무부 보고 시 원본은 주관국에, 사본은 아주국에 배포되도록 조치 요망

3. 베트남 측 제안 접수

- 주베트남대표부는 1993.2.16. 한국 측 투자보장협정(안)에 대한 베트남 측 제안을 송부함.
 - 베트남과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와의 투자보장협정문을 참고로 송부
 - 또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관련 참고자료로 베트남·호주 간 협정문을 추가 송부

한·베트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1993.9.4. 발효(조약 제1186호) (V.2 1993.4-8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조약과

MF번호 2023-80 / 9 / 1-265

1993년 중 한·베트남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92.10월 한국 측 초안 제시
- 1993.4월 최종문안 합의

2. 체결 이유

- 한·베트남 간의 민간투자 장려 및 상호보호를 통하여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촉진 등 양국 경제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

3. 주요 내용(전문 및 본문 12개조)

- 양국 정부는 타방국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 안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자국 법령에 따라 투자 허용(제2조)
- 양국 정부는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국 투자자의 투자수익 및 동 투자의 관리사용에 있어 최혜국 대우 부여(제3조)
- 양국 정부는 공공목적으로 타방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수용 또는 국유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적법 절차에 따른 신속·적절·유효한 보상 제공(제5조)
- 양국 정부는 타방국 투자자의 투자수익 등에 대해 자유 호환성 통화에 의한 국외송금 보장(제6조)

4. 동 협정은 1993.5.13. 서울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웬만 컴 베트남 외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9.4.자로 발효됨(조약 제1186호).

- 8.14. 관보 게재

한·호주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993.9.16. Canberra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230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3-80 / 10 / 1-94

1993년 중 한·호주 간의 항공협정(1993.4.22.)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호주 간 항공회담(1993.4.21.~22., 서울)

- 노선구조 및 운수권
 - 한국 측: 호주 내 운항지점에 브리즈번과 추후 1지점 추가(현행 시드니 1지점)
 - 호주 측: 중간지점에 뉴질랜드 1지점과 추후 1지점을 추가
- 운항횟수
 - 1995.11월까지 B747 기준 주5회로 증편(현행 주2회)
- 이원권
 - 호주 측의 반대로 미합의, 추후 재협의 예정

2. 한·호주 항공협정 부속서 개정(1993.9.16.)

- 1993.4월 항공회담 결과에 따라 한·호주 항공협정 부속서상의 노선구조 변경
 - 한국 측: 호주 내 운항지점에 2지점 추가
 - 호주 측: 중간지점에 2지점 추가

3. 동 협정은 1993.9.16. 호주 캔버라에서 이창범 주호주대사와 밥 콜린스 호주 교통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30호).

1323

대한민국-호주-외교관계사-외항편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협정 부속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992.12.28. 및 1993.2.11. 서울에서 각서교환: 1993.2.11. 발효(외무부고시 제221호)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 조약과

MF번호 2023-80 / 11 / 1-280

한·독일 간 항공운수협정 부속서 개정을 위한 1990~93년 중 정부의 교섭 추진 내용임.

1. 1990년 대한항공 구주노선의 시베리아노선 운항 문제

- 대한항공의 시베리아노선 운항 관련, 서독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이유로 불허 입장 고수

2. 한·독일 간 항공회담 개최

- 일시 및 장소: 1990.4.23.~24. 서독 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현석 교통부 항공국장
 - 독일 측: Bartkowski 교통성 항공교통국장
- 협상 결과
 - 양국 간 항공수요 전망에 인식을 같이 함.
 - 1989.11월 양국 항공사가 합의한 증편 내용을 확인함.
 - 시베리아항로, 아시아항로 운항 건은 추후 협의하기로 함.

3. 대한항공과 서독항공 간 회의(1990.10.5.) 개최

- 양 사 시베리아 영공 통과에 합의

4. 1990.10.26. 항공사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양국 항공 당국 간 노선 구조 개정에 합의

- 현행 노선 구조에 중국, 시베리아 통과 노선 2개 추가

5. 동 협정은 1992.12.28. 이상옥 외무부장관이 제안각서를 송부하고, 1993.2.11. 디터 지메스 주한 독일대사가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21호).

- 3.5. 관보 게재

한·일본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993.4.20. 동경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222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1과

MF번호 2023-80 / 12 / 1-109

1992~93년 중 한·일본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과

- 주일본대사관은 1992.12.8. 서울-도야마 노선 관련, 일본 외무성 측은 동 노선 취항 여부가 구체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측 요구와 같이 연내 동 협정 개정보다는 금후 동 노선의 취항계획이 구체화된 후 개정 절차를 취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외무부 입장을 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12.14. 한국 측은 한·일본 항공협정 부표 2항(거)와 (주-2)를 삭제하여 4.20. 각서교환 시 12.31.까지는 (거)항을 “한국 내 제지점-도야마”로 하여 양국 간 각서를 교환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삭제요청에 대한 한국 측 수락 조건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고 하면서, 일본 내 16번째 출입 지점으로 도야마를 지정한 이상,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협정 개정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확신함.

2. 한·일본 항공협정 일부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 한·일본 양국은 1991.6월 도쿄에서 개최된 항공회담에서 합의된 한·일본 간 4개 신규 노선 중 1개 노선을 “한국 내 제지점-도야마” 노선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한·일본 항공협정 (1967.5월) 개정을 위해 각서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 한·일본 항공협정 기본 골격에는 변함없이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성격으로, 조약 체결 관례상 고시류 조약에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함.
 - 주일본대사 명의의 제안각서를 송부하고, 이를 확인하는 일본 외상 명의 회답각서를 접수함.
 - 동 각서 발효일자에 외무부고시로 관보에 게재함.

3. 동 협정은 1993.4.20. 오재희 주일본대사 명의 제안각서와 무토 일본 외상의 회답각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22호).

1325

대한민국-외국간 항공협정

한·뉴질랜드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0. 서울에서 서명: 1993.8.20. 발효 (조약 제1189호) (V.1 1976-92)

생산연도 1976-1993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1과

MF번호 2023-80 / 13 / 1-289

1976~92년 중 한·뉴질랜드 항공협정 체결 협상 관련 문서임.

1. 추진 배경

- 1970년대 한국은 항공망 확대 차원에서 뉴질랜드와 항공협정 체결 추진을 검토
 - 뉴질랜드는 항공수요 미흡으로 미온적 입장 견지
- 1980년대 후반, 뉴질랜드는 기 구축한 항공망을 한국으로 확대 희망을 지속 표명
 - 1988년 이래 한국과 항공협정 체결을 제안하여 뉴질랜드-도쿄 노선 확장을 추진

1326

2. 한국 측 입장

- 항공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뉴질랜드 이전 중간지점을 확보하지 못해 소극적 입장 견지
 - 호주 시드니를 통과하는 이원권 확보가 관건
- 양국 항공사 간 협의가 선행되고, 양국 간 외교관계 강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 협정 본문만 체결하고 운항에 관한 구체사항은 점진적으로 협의

3. 한·뉴질랜드 간 최초 항공회담 개최

- 일시 및 장소: 1992.7.7.~8.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규 외무부 통상국장
 - 뉴질랜드 측: John Bradbury 교통부 항공국장
- 항공협정 본문 합의 및 합의의사록 서명
 - 양국 간 상호 취항권 부여
 - 복수 항공사 지정
 - 노선구조 등 운항 관련사항은 추후 협의

한·뉴질랜드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0. 서울에서 서명: 1993.8.20. 발효 (조약 제1189호) (V.2 1993)

생산연도 1976-1993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1과

MF번호 2023-81 / 1 / 1-291

1993년 중 한·뉴질랜드 간 항공협정 부속서 협상 관련 문서임.

1. 추진 배경

- 1992.7월 제1차 항공회담에서 항공협정 본문 합의
 - 핵심 부분인 운항에 관한 부속서는 미합의
- 뉴질랜드 측은 1993.5월 뉴질랜드 총리 방한 시 항공협정 및 부속서 체결 희망

2. 후속 항공회담 개최

- 일시 및 장소: 1993.4.26.~27. 뉴질랜드 퀸스타운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규선 교통부 국제협력심의관
 - 뉴질랜드 측: John Bradbury 교통부 항공국장
- 주요 합의사항
 - 중간지점 및 목적지점(이원지점은 추후 협의)
 - 여객 및 화물 구분 없이 주2회 취항
 - 운수권 행사 시점은 양국 항공사 간 추후 합의

3. 동 협정은 1993.5.10. 서울에서 황인성 국무총리와 제임스 볼저 뉴질랜드 총리 간에 서명되어 1993.8.20.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발효됨.

- 1993.11.3. 대한항공 취항 개시
- 1994.1.20. 한·뉴질랜드 항공협정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록

한·베트남 간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1993.6.14. 발효 (조약 제1179호) (V.1 1992-93.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1과

MF번호 2023-81 / 2 / 1-242

한·베트남 간 항공협정 체결을 위해 1993.1.27.~29.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항공회담을 개최함.

1. 교섭 경위

- 1992.4월 베트남은 양국 간 기본 양해각서 체결 시 합의한 항공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한국 측에 제기하고, 한국 측이 동 협정 초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
 - 양국 간 인적 및 경제 교류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항공교통 수요 대응 필요
- 1992.10.26. 한국 측은 초안을 작성하여 베트남 측에 제시
 - 한국 측은 베트남 측의 초안을 면밀히 분석, 쟁점별 입장 및 대안 준비
- 1993.1.27.~29.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항공회담 개최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베트남 측: 다오 만 누옹 민간항공청 부청장

3. 정부 훈령

- 한국 측 문안을 기본으로 교섭하되, 실질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은 베트남 측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용
- 지정항공사, 노선구조, 운항 횟수(가급적 최대 확보), 기종, 5자유운수권 교환 등 세부안 준비

4. 회담 결과

- 문안교섭 결과 항공협정 및 부속문서에 관한 문안이 타결되어, 1993.1.28. 하노이에서 양측 수석대표 간 가서명
- 영역의 정의, 공급력 규제, 분쟁 해결 절차조항의 경미한 수정을 제외하고는 전 조항에서 한국 측 초안 채택

한·베트남 간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1993.6.14. 발효 (조약 제1179호) (V.2 1993.3-7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1과

MF번호 2023-81 / 3 / 1-258

1993년 중 한·베트남 간의 항공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한·베트남 간에 항공망을 개설함으로써 양국 간의 인적·경제적 및 문화적 교류의 확대와 우호 협력관계 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 내용

- 양국의 지정 민간항공사는 통상적인 항공 운수권 행사
- 양측 지정항공사가 운항하게 될 노선구조
 - 출발지점(한국 내 제지점)-중간지점(추후 지정될 2개 지점)-목적지점(하노이, 호치민)-이원지점(추후 지정될 3개 지점)
 - 출발지점(베트남 내 제지점)-중간지점(추후 지정될 2개 지점)-목적지점(서울, 부산)-이원지점(추후 지정될 3개 지점)
 -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 지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 간 합의에 따름.

3. 동 협정은 1993.5.13. 서울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Nguyen Manh Cam 베트남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6.14.자로 발효됨(조약 제1179호).

1329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기록

한·중국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27. 서울에서 서명: 1993.6.26. 발효(조약 제1175호) (V.1 1992.5-9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1과 / 조약과

MF번호 2023-81 / 4 / 1-291

1330

1. 한·중국 해운회담 개최 추진

- 광복년 주한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1992.5.30. 해운항만청 해운국장을 면담하여 한·중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1992.7월 중 베이징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
 - 한국 측은 동 제안을 환영하나, 회담 개최시기는 기 확정 일정 등을 이유로 9월 이후 희망
- 9.3. 중국 측은 대통령 방중 기간 중 한·중 해운협정 서명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해운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중국 측 협정초안을 전달
 - 한국 정부는 1992.9.16. 해운회담 개최를 목표로 한국 측 수정안을 중국 측에 9.14. 전달하였으나, 일부 사안에 있어서 양국 간 입장차가 커서 양국은 대통령 방중 이후인 1992.11월 해운회담을 개최하기로 조율

2. 양국 간 주요 쟁점

- 선박에 대한 내국민대우 적용 문제
 - 중국은 최혜국대우 주장
- 영업상의 내국민대우
 - 한국선사의 자유로운 중국 내 영업을 위해 포함되어야 하나 중국은 반대 입장
- 공평적취 문제
 - 양국 해운산업 현황(중국 측 선사의 높은 가격경쟁력)을 감안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안
- 협의기구 상설화
 - 중국 측은 임의기구화를 선호하나, 공평적취, 중국의 외국선박에 대한 차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설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

한·중국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27. 서울에서 서명: 1993.6.26. 발효(조약 제1175호) (V.2 1992.10월-199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1과 / 조약과

MF번호 2023-81 / 5 / 1-239

1. 제1차 한·중 해운회담(1992.11.12.~13., 베이징)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중국 측: 한문경 교통부 운수관리국장
- 주요 결과
 - 최대 쟁점사항인 공평적취 조항의 협정 문안 삽입 등 조항 대부분에 합의
 - 항구 내에서 상대국 선박에 대한 대우 및 상대국 내 선박회사 지사의 영업활동상 대우 수준 이견
 - 한국은 내국민대우, 중국은 최혜국대우 주장
 - 1992.11.13.부터 부정기선 자유취항 합의
 - 중국 측의 신규 노선 개설 제의에 대해 한국 측 입장 추후 통보 예정

2. 제2차 한·중 해운회담(1993.2.16.,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제1차 회담과 동일
- 주요 결과
 - 제1차 회의 미타결 사항인 정기선 항로 화물적취 문제 및 항만 내 상대국 선박에 대한 대우 문제 등에 대해 합의하고 협정문안 최종 타결
 - 2.17. 오후 양국 수석대표 간 가서명
 - 해운협의회 연 1회 정례 개최 합의

3. 주요 골자

- 양국 정부는 타방국 선박의 자국 내 자유기항은 물론 양국 간 및 자국과 제3국 간 항로의 여객 및 화물운송에의 참여를 허용하며, 특히 양국 간 정기선 교역 및 여객운송에 있어 호혜평등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함.
- 양국 정부는 타방국 선박의 자국 항구 내 제반구역 및 시설 이용에 있어, 그리고 양국 합작선사를 포함한 타방국 선사의 자국 내 영업활동에 있어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 양국 간 해상운송과 관련된 제반사항 논의를 위하여 해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4. 의의

- 금번 해운협정 체결로 여객·화물 등의 정기선 교역을 포함한 한·중국 간 해상운송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게 되어,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증가 및 이를 통한 실질 협력관계 증대가 기대됨.



5. 국내절차

- 1993.3.15. 외무부가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요청
- 1993.3.29.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93.4.8. 국무회의가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6. 동 협정은 1993.4.8.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1993.5.27. 서울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간에 서명되어, 1993.6.26.자로 발효됨(조약 제1175호).

한·중국 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93.7.24. 북경에서 서명: 1993.8.23. 발효(조약 제1184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조약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81 / 7 / 1-296

1992~93년 중 한·중국 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3.2월 한·중국 통신실무협의회 시 양국 간 협정 체결 추진 합의
- 1993.4월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협정 문안 완성
- 1993.5월 외무부 검토 및 중국 측과 협의 요청
- 1993.6월 중국 측과 협정 문안 협의

2. 제1차 한·중국 통신장관회담(1993.7.23., 베이징)

- 양국 간 교환기 등 통신 분야 협력사업 증진 합의
- 중국의 통신망 현대화 계획에 대한 한국 업체의 참여 확대방안 협의
- 한·중국 간 해저 광케이블 조기 건설에 합의

3. 체결 의의

- 양국 간 통신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우편 및 전기통신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이 양국 간 무역 및 인적 교류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 양국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양국 간 우편 및 전기통신의 발전을 촉진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 및 기타 관련 기관 간의 직접접촉 및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함.
- 양국은 상호 간의 항공우편물, 선편우편물 및 기타 특급우편·전자우편·국제우편환 등의 우편 서비스의 직접교환에 합의함.
- 양국은 위성 및 광케이블 등을 이용한 고품질 서비스의 사용을 장려함.
- 서명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10년간 유효,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6월 전의 서면통보가 없는 그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연장됨.

5. 동 협정은 1993.7.24. 베이징에서 윤동운 체신부장관과 오기전 중국 우전부장 간에 서명되어, 1993.8.23.자로 발효됨(조약 제1184호).

1333

대한민국-중국-한국

한·자메이카 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1993.10.28. 서울에서 서명: 1993.11.27. 발효(조약 1198호)

생산연도 1978-1993

생 산 과 조약과 / 영사과

MF번호 2023-81 / 8 / 1-211

1978~93년 중 한·자메이카 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90.2월 한국 측 초안 제시
- 1993.10.9. 문안 최종 합의

2. 체결 목적

- 인적 교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양국 간 관계 강화에 기여

3. 주요 내용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일방국의 국민은 90일간 사증 없이 타방국에 입국할 수 있음.
- 90일을 초과하여 타방국에 체류하거나 영리 행위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증 발급을 요함.
-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일방국의 국민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공공질서, 안전 및 공중보건을 이유로 한 협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잠정 정지 가능함.

4. 동 협정은 1993.10.28. 서울에서 홍순영 외무부차관과 Paul Robertson 자메이카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11.27.자로 발효됨(조약 제1198호).

**한·모로코 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8.2.
Rabat에서 서명: 1993.9.1. 발효(조약 제1187호)
(V.1 1981-92)**

생산연도 1981-1993

생 산 과 영사과 / 조약과

MF번호 2023-81 / 9 / 1-126

1981~92년 중 한·모로코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관련 추진 경위임.

- 1991.4.21.~26. 모로코 외무부 양자협력국장 방한,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 원칙적 합의
- 1991.5.19. 사증면제협정의 한국 측 표준문안을 주모로코대사에게 송부, 문안 교섭 지시
- 1992.6.30. 모로코 측 안 영문본 접수
- 1992.7.23. 한국 측 초안 송부
- 1992.9.18. 모로코 측, 협정 문안 송부
- 1992.10.12. 한국 측 최종안 송부
- 1992.12.31. 모로코 측, '해석상 상위시 영문본 우선' 규정 삭제 희망

1335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과

한·모로코 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8.2. Rabat에서 서명: 1993.9.1. 발효(조약 제1187호) (V.2 1993)

생산연도 1981-1993

생 산 과 영사과 / 조약과

MF번호 2023-81 / 10 / 1-138

1993년 중 한·모로코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양국 간 인적교류 촉진을 통하여 기존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무역·통상 등 실질 협력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함.

2. 주요 내용

- 유효한 여권을 지닌 양국의 국민은 체류 목적이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함에 있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양국 간 영역을 여행할 수 있음.
- 선원수첩을 소지한 일반 체약당사국의 선원은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15일간 체류할 수 있음.
- 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에의 입국이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공공질서·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음.

3. 동 협정은 1993.8.2. 라바트에서 허리훈 주모로코대사와 아메드 체르코우이 모로코 외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1993.9.1.자로 발효됨(조약 제1187호).

한·몰타 간의 입국사증 상호면제 교환각서. 1993.9.23. Valleta에서 각서교환: 1993.10.23. 발효(조약 제1195호)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조약과 / 영사과 / 서구2과

MF번호 2023-81 / 11 / 1-241

1990~93년 중 한·몰타 간 입국사증 상호면제 각서교환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목적

-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양국 간 관계 강화에 기여

2. 추진 경과

- 1993.10.26. 양국 간 문안 합의

3. 주요 내용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행위에 종사할 목적이 아니며,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사증 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입국함.
- 90일을 초과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체류하거나, 영리 행위에 종사할 때에는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 타방 체약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일반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목적지 국가에서 시행되는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함.

4. 동 협정은 1993.9.23. 몰타 발레타에서 이기주 주이탈리아대사와 빅토르 캐미레리 몰타 외교부 차관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1993.10.23.자로 발효됨(조약 제1195호).

1337

대한민국-외국면제-여권교환

한·폴란드 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1.24. Warsaw에서 각서교환: 1993.12.24.
발효(조약 제1201호) (V.1 1990-92)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조약과 / 영사과

MF번호 2023-82 / 1 / 1-184

1990~92년 중 한·폴란드 간 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 관련 교섭 경위임.

- 1990.6월 주폴란드대사, 사증 발급의 불평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최소한 정부 관계자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초보적인 수준의 사증면제협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7월 관계기관 협의 결과,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가 30일 내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사증면제협정 체결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한국 측 초안 마련
 - 7월, 폴란드 측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초안 접수
- 1990.11.20.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한국 측 초안 제시
- 1991.5.6. 폴란드 측 수정 제안 접수
- 1991.6.20.~22. 폴란드 총리 방한 중 일반비자면제협정 체결 제의
 - 기존 추진협정은 그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므로 양국 간 우호 증진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
- 1992.9.2. 한국 측은 폴란드 측 입장을 수용하여 일반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한국 측 초안 제시
- 1992.11.9. 폴란드 측은 일반사증면제협정에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별도 규정 등을 포함시키는 안 제의
- 1992.12.30. 폴란드 측 의견을 반영한 한국 측 수정안 제시
- 1993.5.19. 폴란드 측은 한국 측 수정안에 동의함을 통보

한·폴란드 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1.24. Warsaw에서 각서교환: 1993.12.24.
발효(조약 제1201호) (V.2 1993)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조약과 / 영사과

MF번호 2023-82 / 2 / 1-150

1993년 중 한·폴란드 간 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한·폴란드 양국 국민의 여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함.

2. 주요 내용

- 대상자: 일반여권, 외교관 및 관용여권
- 사증 면제 기간
 - 90일 이내 체류
 - 주재 공관원 및 그 가족 재임 기간
- 사증 필요: 90일 이상 체류
- 협정 정지: 공공질서, 안보 및 보건 등 필요시 협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잠정 정지 가능
- 효력: 각서교환 30일 후 발효, 서면 통고 60일 후 종료

3. 동 협정은 1993.11.24.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주폴란드대사와 폴란드 외무장관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서명 30일 후인 1993.12.24.자로 발효됨(조약 제1201호).

1339

대한민국-외국면접-여권면접

한·루마니아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1993.11.12. 서울에서 각서교환: 1993.12.12. 발효(조약 제1200호)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영사과 / 조약과

MF번호 2023-82 / 3 / 1-238

1990~93년 중 한·루마니아 간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관련 내용임.

1. 체결 목적

- 양국 간의 인적 교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양국 간 관계 강화에 기여

2. 추진 경위

- 1992.11.23. 양국 간 문안 가서명

3. 주요 내용

-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소지한 일방국가의 국민은 90일간 사증 없이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음.
- 타방국가 내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가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가 영토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음.
- 이 협정의 대상자들은 그들의 특권과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동안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음.

4. 동 협정은 1993.11.12. 서울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이지도르 우리안 주한 루마니아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1993.12.12.자로 발효됨(조약 제1200호).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V.1 1988-92.3월)**

생산연도 1988-199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3-82 / 4 / 1-182

1988~92년 중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추진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한·호주 간 범죄인인도조약(1990.9월 체결) 교섭 시 양측 대표단은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함.
- 한국 측, 1992.1.10. 조약을 위한 교섭회담 공식 제의
- 호주 측, 1992.2.11. 교섭회담 재개에 동의 표명
- 양측, 한국 측 희망대로 1993.4.27.~29. 호주에서 교섭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

2. 대표단 구성

- 한국 측
 - 이창호 외무부 조약국장(수석대표), 외무부, 법무부 등 실무자 4~5명
- 호주 측
 - 지오프리 뎀 법무부 검찰국장(수석대표), 외무부, 법무부 등 실무자 4~5명

1341

대한민국 외교부서·외교통상부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V.2 1992.4-7월)

생산연도 1988-199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3-82 / 5 / 1-212

1992.4.27.~29.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을 위한 교섭회담이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창호 외무부 조약국장
- 호주 측: 지오프리 뎀 법무부 제1차관보(검찰총국장)

1342

2. 회담 결과

- 양측은 총 22개조의 조약 문안에 합의
- 1992.4.28. 이창호 외무부 조약국장과 지오프리 뎀 호주 법무부 제1차관보 간 가서명

3. 주요 내용

- 수사, 기소 및 공판 단계에서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 증거수집 및 관련자의 증언 채취, 조사 작성 대행(청구국 수사관의 직접심문권 불인정)
 - 형사사건 관련자나 증인의 소재 파악
 -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시행
 - 피의자, 피고인, 증인에 대한 서류 송달 등 형사사건에 관한 협력 제공
- 공조의 청구경로는 외교경로 또는 양국 법무부 간에 직접접촉으로 함.
- 정치적 성격의 범죄와 순수 군사범죄 및 양국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 등에 대하여는 공조 거부 가능
- 피청구국은 국내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자국 관할권 내의 범죄 과실에 대하여 거래제한 또는 몰수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청구국의 몰수 집행 명령서의 자국 내 이행 효력은 인정하지 않음.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V.3 법무부장관 호주 방문)

생산연도 1988-199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3-82 / 6 / 1-83

한·호주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관련 김기춘 법무부장관의 1992.8.22.~27. 호주 방문 내용임.

1. 초청 경위

- 1990.9월 초 Duffy 호주 법무부장관 방한 시 한·호주 범죄인인도조약에 서명한 이후 한·호주 간 긴밀한 사법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호주 정부,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 및 범무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1990년 Duffy 장관의 방한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김기춘 법무부장관의 호주 방문을 초청함.

2. 출장 목적

- 한·호주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
- 한·호주 간 범무장관회담 개최

3. 주요 일정

- 주시드니총영사관 관저 만찬
- 교민대표 및 교포 언론인 오찬 간담회, 호주 법률사무소 대표 접견, 뉴사우스웨일즈주 법무부장관 예방
- 전쟁기념관 헌화, 한·호주 범무장관회담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
- Duffy 장관 주최 만찬
- 호주 대법원장 및 총독 예방, 주호주대사관 관저 만찬

4. 한·호주 간 범무장관회담

- 한·호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에 이어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으로 양국 간 사법공조체제의 기틀 마련
- 한·호주 법무부 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
- 한국 교민에 대한 지속적 관심 증대

5. 방문 성과

- 한·호주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로 양국 간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 완결
- 호주 법조책임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이해증진 및 양국 법조인의 상호 교류 합의
- 호주 정부의 한국에 대한 적극적 우호 분위기 조성

134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V.4 1992.8월-1993)**

생산연도 1988-199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3-82 / 7 / 1-191

1992~93년 중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이유

- 한·호주 간 형사사건에서의 협조와 상호 공조를 통하여 범죄 예방 및 진압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

2. 주요 내용

- 양국은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에 있어 서로 공조함.
- 형사사건에서의 공조는 증거 수집·증언 청취·서류 등 문서의 제공, 증거물의 대여를 포함한 물건의 인도, 사람의 소재 및 신원파악,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집행, 기타 피요청국의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공조 등을 그 내용으로 하되 범죄인의 인도, 피요청국의 법 및 이 조약에서 허용된 범위 외에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은 포함하지 않음.
- 피요청국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및 피요청국의 일반형법에서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군법에만 위반되는 범죄의 소추·처벌에 관계된 경우, 피요청국이 공조에 응하는 것이 피요청국의 주권·안전 보장 또는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음.
-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요구하는 경우 공조사실, 공조요청서 및 부속서류의 내용, 공조 허락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함.

3. 동 조약은 1992.8.25. 호주 캔버라에서 김기춘 법무부장관과 Duffy 호주 법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12.19.자로 발효됨(조약 제1207호).

한·인도 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 1993.9.10. 서울에서 서명: 1993.10.10. 발효(조약 제1191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 조약과

MF번호 2023-82 / 8 / 1-217

정부는 1993.9.10. 인도와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

1. 경위

- 1992.6월 인도 관광성 국무상의 한국 방문 시 노건일 교통부장관과 양국 간 관광협력협정 체결에 원칙 합의
- 1993.2월 인도 측, 초안 제시
- 1993.7월 한국 측, 수정 제의
- 1993.8월 최종문안 합의
- 1993.9.9.~11. 라오 인도 총리 방한 계기에 서명

2. 주요 내용

- 호텔 및 관련 시설 건축 및 운영 협조를 통하여 양국 간 관광 촉진
- 대형 휴양설비 공동개발
- 국제관광기구에서의 활동을 통한 상호 협조
- 관광 홍보물 수입 편의제공
- 동 협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양국관계부처 간 비정기적 협의

3. 국내 절차

- 1993.8.20. 외무부, 법제처의 검토의견 요청
- 1993.8.24. 외무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 의뢰
- 1993.9.2. 국무회의, 동 협정안 심의, 의결

4. 동 협정은 1993.9.2.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1993.9.10.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살만 쿠르시드 인도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10.10.자로 발효됨(조약 제1191호).

- 9.20. 관보 게재

한·중국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10.28. 북경에서 서명: 1993.11.27. 발효(조약 제1199호) (V.1 1991-93.6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조약과 /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82 / 9 / 1-188

1991~93.6월 중 한·중국 환경협력협정 체결 추진 및 문안교섭에 관한 내용임.

1. 추진 경위

- 제1차 지구환경 관계장관 대책회의(1992.8.31.)에서 양자 간 환경협력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합의한바, 중국, 몽골, 러시아, 미국 및 캐나다를 협정 체결 우선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협정의 표준문안 준비 및 협의 착수
 - 외무부는 1992.9.28. 경제기획원 및 환경처 등 관계부처의 검토의견 송부를 요청함.
- 1993.1.13. 주중국대사관은 중국 국가환경보호국 측과 한·중국 간 환경협정 체결 타진 및 실무 사전교섭단 파견 건의
- 1993.1.30. 외무부는 한국 측 초안을 중국 측에 전달

2. 문안 교섭

- 1993.3.6. 주중국대사관 측의 중국 국가환경보호국 외사판공실 주임 접촉 시, 중국 측은 한국 측의 초안에 대하여 원칙적인 동의 반응
 - 양국 간 실무협의를 제안, 동년 4월 중순 실무급 대표단 파견 요청
- 5월 중국 측은 한국 측의 협정 초안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준비 중이며, 6월 말 한국 실무대표단 방중 시 협의하여 문안 확정 및 가서명하기를 희망
 - 동 협정이 정부 간 협정으로 되는 경우 국내절차의 복잡성을 고려, 기관 간 약정으로 추진할 것을 타진해온 데 대해 외무부는 양국 간 포괄적 협력형태를 고려하여 정부 간 협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중국 측에 전달
- 6.8. 중국 측의 대안 제시에 대하여 한국 측의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필요에 관한 의견을 중국 측에 전달
 -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임무 및 회의주기에 관한 한국 측 초안 제4조를 중국 환경보호국과 한국의 환경처 간 협력규정으로 수정 등
 - 중국 측은 동 공동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집행기관으로 한국의 환경처와 중국의 국가 환경보호국으로 명시 희망하고 매년 정기 개최보다 업무상 필요시 개최 등 탄력적 개최 주기 제시

한·중국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10.28. 북경에서 서명: 1993.11.27. 발효(조약 제1199호) (V.2 1993.7-11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조약과 /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82 / 10 / 1-246

1993.7~11월 한·중국 환경협력협정의 문안교섭 및 체결에 관한 내용임.

1. 1993.7.5. 외무부의 중국 측 대안 검토 결과 타전 및 교섭결과

- 환경처 등의 검토 의견을 받아 중국 측이 제안한 수질오염물질의 총량 관리, 농약규제 및 고형폐기물 관리, 유해고형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및 처리, 독성화학물질의 관리 등 수정안 동의 표명
- 공동위원회 구성 및 개최 주기에 관해 융통성을 부여해 교섭 추진
- 외무부는 한·중국 경제무역기술공동위원회(1993.8월, 서울) 의제에 양국 간 환경협력을 포함해 교섭하는 방안을 중국 측에 제시
- 중국 측은 한국 측 협정초안을 대부분 수락하고, 특히 제4조의 공동위원회 설치,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의 교대 개최를 규정한 재수정안 제시, 상호 협의한 결과 지속개발 및 생물다양성 보호 포함 여부 등 일부 표현상의 차이 이외 문안 거의 합의
- 8월 중 협정문안 최종확정, 9월 중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추진 및 10월 말 외무부장관 방중 시 서명 일정으로 추진

2. 문안 타결 및 국내절차

- 1993.9.23. 주중국대사관을 통해 최종문안에 합의, 외무부는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착수
- 1993.10.13. 법제처는 동 협정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 조약으로 체결 가능 판단
- 1993.10.21. 국무회의가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3. 동 협정은 1993.10.21.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3.10.28. 중국 베이징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 간에 서명되어, 1993.11.27.자로 발효됨(조약 제1199호).

- 11.27. 관보 게재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6.29.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180호) (V.1 1987-92)

생산연도 1987-1993

생 산 과 조약과 / 과학환경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3-82 / 11 / 1-294

1987~92년 중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교섭 관련 내용임.

1. 한·일본 간 철새보호조약 체결 추진 경위

-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 1987.2.26. 산림청을 방문하여 철새보호조약 체결 의사 표명 및 한국 측 입장과 준비 상황에 관해 의견 교환
- 산림청, 1987.3.25. 외무부에 한·일본 간 철새보호조약 체결에 관한 의견 조회
- 외무부, 1987.4.25. 산림청에 한·일본 간 철새보호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 입장 통보
- 외무부 아주국, '한·일본 간 철새 및 멸종위기에 있는 조류와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조약' 체결 추진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협정 체결 추진에 동의를 표명하고 기술·전문적 사항에 대한 산림청과의 협의 및 영토조항에 대해 일본·소련 간의 사례를 참조하도록 권고

2. 한·일본 환경협력협정 체결 추진(문안 협의)

- 1992.1월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인 환경 분야 협력사업 실천방안으로 한국 측 협정(안)을 제시
- 1992.6월 제2차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시 한국 측 협정 초안 제시
- 1992.7~93.5월 양국 간 문안 협의 교섭 및 국내 관계부처(경제기획원, 환경처, 상공자원부, 과학기술처) 간 협의
- 1993.5.17.~18. 제3차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 협정문안 최종 합의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6.29.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1180호) (V.2 1993)

생산연도 1987-1993

생 산 과 조약과 / 과학환경과 / 동북아1과

MF번호 2023-82 / 12 / 1-215

1987~92년 중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주요 골자

- 전문 및 본문 10개조로 구성
- 협력의 목적: 평등과 상호호혜의 기초 위에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 유지 및 증진
- 협력의 형태
 - 환경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환, 과학자, 기술요원 및 전문가 교환
 - 공동세미나 및 회의, 합의된 협력사업 이행
- 한·일 환경협력공동위 설치
 - 협력활동의 조정 목적, 매년 한국과 일본 교대로 개최
 - 협정 이행 관련 문제 협의, 협정 이행 상황 검토, 구체적 조치 양국 정부에 제언 등 기능
- 협력 분야
 - 대기,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오염 저감 및 규제, 생태계와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
 - 기후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개입 방지, 상호 협의하는 환경보호 및 개선의 기타 영역
- 시행약정 체결
 -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또는 기관 간 약정 체결
- 타방국가 국민에 대해 협력활동 수행 시 편의제공
- 양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행
- 과학기술정보의 공개 및 공업소유권
- 본 협정의 양국 간 타 약정 및 장래 약정에 불영향
- 발효(서명 시), 유효기간(2년), 종료(6개월 전 서면통보) 및 연장(2년 자동)

2. 동 협정은 1993.6.29. 서울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무토 카분 일본 외무대신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180호).

체육·청소년 관련 기관 간 약정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조약과 / 홍보과

MF번호 2023-83 / 1 / 1-204

1991~93년 중 외무부가 체육·청소년 관련 기관 간 약정에 관해 검토한 문서임.

1. 한·캐나다 체육협정 양해각서 체결

- 1985.3월 체결되어 1990.12월 만료된 '한·캐나다 체육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하는 대신 도핑 검사, 장애인 체육 교류 등 내용을 추가하고, 양국 체육청소년기관 간 새로운 협정으로 체결하기로 함.

2. 한·헝가리 체육·청소년교류협정 체결

- 체육교류협정(1992.2.12., 부다페스트)
 - 한국 측: 체육청소년부장관
 - 헝가리 측: 무임소장관
- 청소년교류협정(1992.3월경, 서울)
 - 한국 측: 체육청소년부차관
 - 헝가리 측: 청소년담당 정무차관

3. 한·중국 체육협력의정서 체결 추진

- 체육청소년부는 한·중국 양국 간 체육교류 협력증진을 위하여 한국 체육청소년부 국제체육국과 중국 국가체육운동위원회 국제국 간에 '한·중국 상호 전지훈련에 대한 의정서' 및 '한·중국 상호 코치교환에 관한 의정서' 체결을 검토 중에 있다고 외무부에 통보해옴.
- 외무부는 1992.2.17. 상기 의정서 체결 관련, 정부 부서의 단위국을 협정당사자로 체결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하여 조약 체결권자의 위임 없이 체결 가능한지 여부 및 당사자 표기 문제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체육청소년부, 외무부 문화협력국 및 조약국에 문의함.
 - 조약국은 3.16. 조약 체결 절차에 따라 체결하거나, 모 협정에 해당하는 한·중국 문화협정이 체결된 후 추진하도록 해석함.

4. 한·중국 청소년교류협정 교섭 추진

- 문화체육부는 1993.1월 문화체육부장관의 중국 공식 방문 기회에 한·중국 청소년교류협정에 서명할 계획이었으나, 외무부는 모 협정인 한·중국 문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서명하도록 요청함.

5. 한·호주 체육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1993.10.28.)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 관련 합의의사록 갱신, 1993.10.1.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83 / 2 / 1-104

1992~93년 중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 관련 합의의사록 갱신 내용임.

1. 제1차 한·프랑스 어업회담(1993.1.6.~9.,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정갑래 수산청 어업진흥과 외 9명
 - 프랑스 측: Edouard Fritsch 해사군도개발 토지부장관 외 8명
- 회의 결과
 - 양국은 1993년 입어 조건 등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
 - 양국 의무량 및 조업 수역 등 몇 개 분야에서 이견이 있어 부속약정 갱신 실패

2. 제2차 한·프랑스 어업회담(1993.9.27.~10.1., 파리)

- 대표단
 - 한국 측: 김종철 수산청 산업진흥관 외 6명
 - 프랑스 측: Edouard Fritsch 해사군도개발 토지부장관 외 7명
- 회의 결과(최종입장 조정)
 - 양측은 154만 달러의 입어료에 합의하였으나, 한국 측은 입어료 총액 인상 요인(부대 의무삭제)에 대한 별도의 각서를 요구하고, 프랑스 측은 이에 동의함.
 - 자동위치발신기 장착 문제는 국제회의에서의 한국 측 입장을 저해함이 없이 허가 신청선의 10% 장착 및 프랑스령 수역에서 실제 조업기간 중 상시 1척의 자동위치발신기 장착선을 유지하기로 함.
 - 양국 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 관련 합의의사록 갱신에 합의함.

1351

대한민국 어업관리청 어업과

기관 간 약정: 상공부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조약과 / 통상1과

MF번호 2023-83 / 3 / 1-167

1993년 중 상공부가 중국과 체결한 기관 간 약정 관련 내용임.

1. 한국 상공부·중국 물자부 간 협력의정서

- 외무부 통상국은 1993.1.16. 중국 물자부가 1993.2.2.~12. 물자부장관 방한 시 상공부와 양 기관 간 협력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 내용의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 줄 것을 조약국에 요청함.
- 외무부 통상국은 1.27. 상공부가 양국 기관 업무 성격상 협력의정서 방식보다 합의의사록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합의의사록 수정안을 중국 측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조약국의 의견을 요청함.
- 외무부 조약국은 2.1. 일부 내용 및 표현이 체결 당사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교섭대표 간 토의기록으로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협의채널 및 인적교류규정의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함.

2. 한국 상공부·프랑스 교통부 간 항공기부품 품질인증약정

- 상공부는 1993.2.4. 프랑스 교통부(항공국)와 항공기 부품 검사에 관한 양국 정부 간 품질인증 협정 체결을 위해 1989년 이후 4차에 걸친 실무협상을 통해 양측 입장을 조정해 왔다고 하면서, 프랑스 측 협정 초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5.17. 한·프랑스 간에 1981년 체결된 '경제협력협정'이 동 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협정의 시행약정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면서 수정해야 할 제목과 내용을 상공부에 송부함.

한·리투아니아 간의 무역협정. 1993.9.24. 서울에서 서명: 1993.11.9. 발효(조약 제1196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3과 / 조약과

MF번호 2023-83 / 4 / 1-303

1. 추진 경위

- 1991.12월 Vagnorius 리투아니아 수상,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 제의
- 1992.6월 한국 측 초안을 리투아니아 측에 전달
- 1992.11월 리투아니아 측 수정안 제시
- 1993.8월 한국 측 대안 송부
- 1993.9월 양측 협정 문안에 합의

2. 주요 내용

- 양국 간 무역을 장려하고, 무역발전과 다양화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양국은 무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최혜국대우 부여
- 합법적인 교역에 의해 취득한 자유태환성 통화의 송금권리 보장
- 양국 국적의 상선에 대해 입·출항 및 정박 시 최혜국대우 부여
- 상대국 법원 및 행정기관에 출두함에 있어 내국민대우
- 상업거래상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중재, 채택 장려
- 협정 시행 검토를 위해 공동위원회 설치

3. 체결 의의

- 구소련연방 붕괴 후 효력이 정지된 양국 간 무역협정의 부활을 통해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 대발트지방 한국기업 진출의 발판으로 작용 계기
- 양국 간 무역증진을 통해 상호 호혜적 관계 유지 및 교역선 다변화에 기여

4. 동 조약은 1993.9.24. 서울에서 홍순영 외무부차관(장관 대리)과 Klimasauskas 리투아니아 상공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11.9.자로 발효됨(조약 제1196호).

- 11.18. 관보 게재

1353

대한민국-외국간 무역협정

한·베트남 간의 무역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1993.6.12. 발효(조약 제1174호) (V.1 1992-93.3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1과 / 조약과

MF번호 2023-83 / 5 / 1-131

1992~93년 중 한·베트남 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추진 내용임.

1. 한·베트남 외무장관회담(1992.12월)

- 1993년 중 베트남 총리 및 외무장관 방한 초청
- 주호치민총영사관 설치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합의
- 경제·통상협정 조기 체결에 합의
 -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문화협정 등
- 경제공동위 설치 합의
- 무상원조 50만 달러 제공 추진
- 양국 간 원유 개발 및 공급 분야 협력 기대(한국 컨소시엄의 '빅에어' 유전 개발 참여에 베트남 측의 호의적 고려 요청)
- 양국 수교를 계기로 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 지향 등

2. 한·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추진 경위

- 1992.11월 한국 측 무역협정 초안 베트남 측에 제시
 - 주베트남대사관과 베트남 상무부 간 문안 교섭 진행
- 1993.3.29.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Nghi 베트남 상무부 아태국장 면담
 - 베트남 측은 4월 초까지 문안에 합의할 경우 Kiet 총리의 5월 방한 시 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
 - 협정문 내 주요 이견조항 협의를 바탕으로 금명간 베트남 측이 수정 문안을 한국 측에 제시하기로 합의

한·베트남 간의 무역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1993.6.12. 발효(조약 제1174호) (V.2 1993.4-6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1과 / 조약과

MF번호 2023-83 / 6 / 1-168

1993년 중 한·베트남 간의 무역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주요 골자

- 양국은 관세부과, 무역대금 결제방식 등 무역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 특히, 상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의 경우 수량제한, 수입허가, 수입대금 결제통화 배정 등에 있어서 무차별대우 부여
- 양국 법인 및 자연인은 상대방 영역 안에서 상업 활동과 관련 최혜국대우 향유
- 양국 법인 및 자연인은 분쟁 해결을 위해 우호적으로 협의하거나 양국 중재기관을 이용하여 해결 하며, 양국 정부는 중재판정의 집행 보장
- 양국 정부는 동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기술공동위원회 산하에 무역실무위원회 설치

2. 동 협정은 1993.5.13. 서울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Nguyen Manh Cam 베트남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6.12.자로 발효됨(조약 제1174호).

1355

대한민국-외국간 무역협정

**한·미국 간의 쌍무 섬유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1.8. 및 11.30. 서울에서 각서교환:
1993.11.30. 발효(외무부고시 제231호) (V.1 7-9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 조약과

MF번호 2023-83 / 7 / 1-188

1993.8.30.~9.1.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국 간 섬유협정 개정 및 연장협상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노영욱 상공자원부 통상협력국장
- 미국 측: J. Hillman USTR(미통상대표부) 섬유협상 대표

2. 주요 결과

- 한·미 섬유협정 2년 연장
- 우회 수출 규제조항 잠정 합의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정안과 합치한다는 조건 충족 시 발효
- 한국의 미소진 쿼터 문제로 쿼터 구조조정 미합의

한·미국 간의 쌍무 섬유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1.8. 및 11.30. 서울에서 각서교환:
 1993.11.30. 발효(외무부고시 제231호) (V.2 10-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 조약과

MF번호 2023-83 / 8 / 1-166

1993년 중 한·미 섬유협정 개정 및 연장 추가 관련 각서교환 체결 내용임.

1. 우회 수출 규제조항 추가 협의내용

- 한국 측은 미국 측 제안이 UR(우루과이라운드) 협정안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협의 지속
 - UR 협정안에 따르면, 우회 수출 관련 분쟁 시 TMB(섬유모니터링기관)의 권고 요청 가능
 - 미국 측 제안에 의거 일방적인 제재조치 가능
- 1993.11.4. 최종 합의

2. 동 협정은 1993.11.8. 및 11.30.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1993.11.30.자로 발효됨(조약 제231호).

1357

대한민국-미국 자유무역협정

과학·산업기술·통신 관련 약정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3-83 / 9 / 1-445

1991~93년 중 과학·산업기술·통신 관련 약정 서명 관련 내용임.

1. 한국과학재단·중국과학원 간 과학협력 양해각서(1991년)

- 과학기술기관 간의 비공식 협력과 학술 교류 증진

2. 한·루마니아 체신부 간 전기통신 분야 양해각서(1991년)

- 1991.4월 한·루마니아 체신장관 회의 시 양국 체신부 간 합의에 근거

3. 한국 과학기술처·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1992년)

- 1992.11.27. 송건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임 방한 시 서명

4. 한국 과학기술처·러시아 과학교육기술부 간 의정서(1993년)

5. 한국 상공자원부·호주 산업기술지역개발성 간 산업기술협력약정(1993년)

- 1975년도 한·호주 무역경제관계협정에 근거, 동 협정의 시행약정으로 추진

6. 한국 통계청·중국 국가통계국 간 통계협력 양해각서(1993.8.31.)

7. 한국 과학기술처·인도 과학기술성 간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1993.9.10.)

8. 한국 상공자원부·프랑스 산업체신대외무역부 간 산업협력위원회 설립약정(1993.9.13.)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 교환각서. 전3권. 1993.9.20. Paris에서 각서교환: 발효 (조약 제1192호) (V.1 1978)

생산연도 1978-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3 / 10 / 1-203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ISC(국제철강위원회)의 한국 가입 초청

- OECD는 1978.10월 기존 철강비공식그룹(Steel Ad Hoc Group)에서 상설위원회 ISC를 발족
 - 당시 비회원국 가운데 한국, 멕시코,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의 동 참여 초청
- ISC의 발족 취지
 - 철강교역 관련 장벽 제거 및 자유무역의 보장
 - 비철강 분야 시설투자 방지
 - 경쟁 유지 및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다각적 협력체제 추진
- ISC 회원국 준수사항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 준수
 - 모든 규제조치는 ISC 및 GATT에 즉시 보고하고 원인에 부합하도록 한정적, 일시적 적용에 국한
 - 철강설비에 대한 연불 수출금융 등 비건설적인 경쟁 지양
 - 국내 철강 산업 보호정책 시행 시 상대국에 대한 부담 전가 금지
 - 철강 노동자 전직을 위한 사업 촉진 및 관련 정보 교환
 - 철강 원료 수출제한 시 ISC에 즉시 보고하고 당사자 간 협의
- 한국의 가입 시 유리한 점(OECD 사무총장 언급 요지)
 - 세계 철강 문제 관련 OECD가 조사 연구한 비공개 자료(수요·공급, 가격 및 생산 등) 구독 이용
 - 한국의 입장 및 정책 설명을 통해 회원국이 아닌 경우 생길 수 있는 여타 철강국의 보복조치 등 미연 방지 가능
 - OECD가 철강 문제를 다자 간 협의방식으로 다루는 상황에서 한국이 Outsider로서 남게 될 경우 불이익 예상

2. 여타 초청국의 반응

- 브라질: 긍정적
- 멕시코: 긍정적
- 인도: 중립 내지 부정적 경향

1359

대한민국-국제협약서-여타국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 교환각서. 전3권. 1993.9.20. Paris에서 각서교환: 발효 (조약 제1192호) (V.2 1979-90)

생산연도 1978-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3 / 11 / 1-294

1360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ISC(국제철강위원회) 가입 문제 검토(1979~88년)

- 1978.10월 OECD/ISC 발족 이후, OECD 이사회는 한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의 동 위원회 가입을 초청
- 한국 정부 검토의견(1979.11월말)
 - OECD/ISC 설립취지 및 회의규약 등이 선진국 본위이며, 한국과 같은 중진국의 철강 산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
 - 동 위원회에 가입 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선진국 의무 및 수출신용에 대한 선진국 간 합의사항 준수가 불가피하며, 또한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려워지는 등 한국의 철강 산업 형편에 비추어 큰 부담
 - 한국이 77그룹 일원으로서 개도국 수혜를 계속 받아야 하는 처지 및 남북대치 하에서 77그룹과의 유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OECD 산하위원회에 가입 시 제3세계 국가들과 소원해질 가능성
 - 인도, 브라질이 자국 철강 산업의 발전단계 및 개도국 지위임을 고려하여 불참을 결정하고 이를 OECD 측에 통보한 바(인도 1979.3월, 브라질 1979.6월), 이들과 같이 가입을 권유 받은 입장에서 공동보조 필요성
 - 한국은 불가입 입장을 결정하고, 동 통보는 OECD 사무국의 독촉이 있기 전까지 당분간 유보

2. 한국 정부의 관련조치 내역

- 한국의 불가입 정부방침 하에서 OECD 철강 심포지엄(1980.2.27.~28.)에도 민간대표만 파견
 - 민간대표는 KDI, 한국철강협회, 포항제철 책임자로 구성하여 자료 및 정보수집, 한국의 불가입 방침에 대한 OECD 측의 반응 간접 타진 등에 주력
- OECD/ISC Liaison Group 가입문제 검토(1988.4월 말)
 - Liaison Group 동 ISC와 비회원국 간 정보교류를 위한 비상설대화창구라는 점에서 OECD 사무국 측이 한국의 동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도 동 위원회 가입의 조기 실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 가입도 유보
 - 다만, 향후 동 Liaison Group 가입에 대비하여 비공식적 개별 접촉을 강화하기로 결정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 교환각서. 전3권. 1993.9.20. Paris에서 각서교환: 발효 (조약 제1192호) (V.3 1993)

생산연도 1978-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4 / 1 / 1-276

1. 한국 정부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ISC(국제철강위원회) 가입 결정(1993.4월)

- 경위
 - 1988.11월 OECD/ISC 측, 비공식회의에서 한국의 동 가입을 재차 권고
 - 1992.7월 주프랑스대사관, ISC 등 OECD 산하 주요위원회에 가입 추진 건의
 - 1992.12월 관계부처 회의에서 OECD/ISC에 옵서버로 가입하기로 방침 결정
 - 1993.2월 OECD 이사회, 한국과 브라질을 ISC 정회원 가입 초청을 결정
- 관계부처 및 철강업계가 가입에 따른 부담 및 업계 우려사항, 한·OECD 협력관계 확대 등 가입에 따른 이점 등을 총망라하여 검토 완료
- 한국 철강 산업의 위상과 1990년대 중반 OECD 정회원 가입방침 결정 사실 및 ISC 가입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입에 따른 이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2. 동 가입은 1993.9.20. 파리에서 장선섭 주프랑스대사와 Jean Claude Paye OECD 사무총장 간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한국은 동 위원회에 정식 가입됨(조약 제1192호).

- 한국은 동 이전 OECD 산하기구 가운데 조선작업반(1990.10월), 개발연구소(1992.4월), 원자력기구(1993.5월)에 정식 가입하고, 여타 다수의 산하기구에도 옵서버로 참가해옴.

1361

대한민국-국제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동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가입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5.24.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72호) (V.1 1991-92)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4 / 2 / 1-175

1991~92년 중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이전 단계에서 NEA(원자력기구) 가입을 추진한 내용임.

1. 가입 경위

- 1992.4.13. 대외협력위원회에서 OECD/NEA 가입 추진을 결정하고, OECD에 한국의 NEA 가입 희망 의사를 통보
- 1992.12.10. OECD 이사회, 한국을 NEA 정회원으로 초청하기로 결정

2. 가입 필요성

- 원전 가동 및 발전량 9위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원자력 국산화, 수출국 전환에 대비한 국제적 지지 기반 구축, 원자력 선진국그룹으로부터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
- OECD 내에서 한국의 동 기구 가입에 대한 신중 및 부정적 분위기 확산을 고려하여 산하기구에 순차적으로 가입 추진

3. OECD 내 한국의 NEA 가입 관련 검토사항

- 한국이 77그룹 회원국과 OECD 회원국으로서 역할 양립 문제
 - 종래 유엔,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77그룹과 NEA 회원국 간의 입장이 대립되는 경향
- NEA 회원국은 기술공여국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이 IAEA의 기술원조 수혜국이라는 양립성 문제

4. OECD 이사회 결정

- OECD는 한국의 NEA 규약 참가 및 NEA 부담금(연간 약 13만 달러) 동의, OECD의 원자력 분야 5개 권고사항 수락을 공식 표명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가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동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가입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5.24.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1172호) (V.2 1993)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4 / 3 / 1-222

1993.5.24.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NEA(원자력기구) 정회원 가입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NEA 회원국 가입 조건

- NEA 규약 참가 및 NEA 분담금(연간 약 13만 달러) 동의
- OECD 이사회의 원자력 분야 5개 의정서
 - ① 방사발광 시계의 방사선 방호기준 채택에 관한 이사회 결정(1966.7월)
 - ② 트리튬가스 발광기기의 방사선 방호기준 채택에 관한 이사회 결정(1973.7월)
 - ③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페이스메이커의 설계, 시험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사선 방호 임시기준 채택에 관한 이사회 결정(1974.6월)
 - ④ 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투기에 관한 상호 협의 및 감시체제 설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1977.7월)
 - ⑤ 원자력 발전사고 보고체계 운영에 관한 이사회 권고(1983.2월)

2. 한국 정부의 OECD 초청 수락

- OECD의 5개 의정서 중 2개 의정서④⑤는 수락하되 나머지 3개 의정서에 대해서는 국내 입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보하고 가입하기로 함.
- 5개 의정서에 대한 수락은 가입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기존 회원국도 모든 의정서를 수락한 것은 아님.

3. 동 가입은 1993.5.24. 주프랑스대사와 OECD 사무총장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됨과 동시에 OECD/NEA에 정식 가입됨(조약 제1172호).

1363

대한민국-국제원자력기구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V.3 1988.6-7월)

생산연도 1987-1993

생 산 과 조약과 /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84 / 6 / 1-247

1988.6~7월 중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준비 내용임.

1. 한·미국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1차 교섭회담(1988.6.13.~14., 워싱턴 D.C.)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전순규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미국 측: De Vos 국무부 해양·환경과학기술담당 부차관보
- 토의내용
 - 미국 측은 과기협정 시행을 군사비밀특허협정 체결과 연계하려는 강한 의도 표명(과기협정 수정 교섭이 타결되어도 비밀특허협정 미체결 시 과기협정 시행중단)
 - 미국 측은 기업비밀정보의 보호·발명에 있어서의 권리배분 등 쟁점에 있어서도 종전의 자국 입장을 주장함.
 - 제2차 협상(1988.8월말 또는 9월초, 서울) 개최 합의
 - 공동위원회 설치, 정보보호 및 기술이전 등 일부 조항에서 합의
 - 기업비밀정보, 발명권 배분, 안보의무규정 등 관련 안보의무규정에서 잠정 타결
 - 미국 측이 주장한 과학기술협정과 국방 관련 발명과 비밀보장 절차 문제의 연계 등 나머지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함.
- 교섭 결과
 - 본문 제7조, 제9조: 한국 측 안대로 합의
 - 제1부속서 전반: 계속 협의. 미국 측은 제4조의 E항 신설을 제안
 - 제2부속서: 잠정 합의문 작성

2. 외무부는 1988.6.29. 주일본대사에 한·미국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문제 검토에 참고하기 위해 미국·일본 과기협정 제4부속서 제1조 관련 아래 사항 보고를 지시함.

- 미국의 Freedom of Information Act 또는 Trade Secrets Act에 상응하는 기업비밀정보 또는 Trade Secret의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본의 법률 입법 여부
- 입법된 경우 사본 입수, 미입법된 경우 일본 내 기업비밀정보 보호 관행

3. 주일본대사는 1988.7.4. 상기 기업비밀 정보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협정상 규정 배경
 - 기업비밀정보는 일본의 국내법상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일본 측은 동 개념 도입에 소극적 자세를 보임.



- 이에 미국 측은 비밀보호상의 불균형을 이유로 일본 측의 적절한 보호담보를 요청하고 일본의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담보를 하도록 미국이 양해함.

- 일본에서의 기업비밀정보의 보호

- 비밀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비밀정보로서 지정되고, 양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에 한하며,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창출된 정보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보호대상이 되는 기업비밀정보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임.
- 보호방법: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00조 제1항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의무' 조항을 원용하여 보호하고, 민간인의 경우 계약서상에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여 보호

4. 외무부는 1988.7.28. 제1차 교섭회담(1988.6.13.~14.) 시의 잠정 합의에 따라 제2차 교섭을 1988.8.29.~30.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미국 측에 제안함.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V.4 1988.8-9월)

생산연도 1987-1993

생 산 과 조약과 /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84 / 7 / 1-268

1988.8~9월 중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교섭회담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교섭회담(1993.8.29.~30.,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전순규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미국 측: De Vos 국무부 해양·환경과학기술담당 부차관보
- 주요 합의사항
 - 저작권
 - 저작권 배분은 시행약정에서 결정
 - 저작권 확보조치는 각 국내법에 따라 취함.
 - 발명의 권리 배분
 - 단순한 정보교환에 의한 발명의 경우: 발명인 소속 당사기관이 전 세계에서 권리 보유
 - 발명이 인적교류에 의한 경우: 협력활동에 실질적 기여 시 접수 측은 전 세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접수 측은 자국 및 제3국에서, 파견 측은 자국에서 각기 권리 보유
 - 공동연구사업 등 여타 협력에 의한 경우: 형평의 원칙에 의거 상호 합의에 따라 권리 배분
 - 기업비밀정보
 - 기업비밀정보는 당사기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제공
 - 기업비밀정보의 국내법에 따른 충분한 보호 의무
- 주요 미 합의사항
 - 이중사용기술의 보호문제(제1부속서 제2조)
 - 발명권 배분의 예외 조항(제1부속서 제4조 E항)
 - 여타 형태의 지식재산권 조항(제1부속서 제6조)
- 미 합의사항에 관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함.

2. 외무부는 1988.9월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교섭회담(1988.8.29.~30., 서울) 이후에 미 합의사항 관련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하고 미 합의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제2조의 이중사용기술의 보호와 관련, 동 협정 개정과 PSA(비밀특허협정) 체결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동 조항 삭제제를 제외함.
- 2차 협상 시 한국 측은 현재까지 양국 간 협력 사업 과정에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발명권의 배분에 있어서는 대폭 미국 측에 양보하였음.



- 보호법 유무에 따라 권리를 배분한다는 제4조 E항의 미국 측 제의는 미국 측이 제1차 교섭회의 도중 돌연 제시한 것으로서 한국 정부로서는 이러한 미국 측 제안이 현 협정 개정의 조속 타결에 지장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미국 측이 본 조항 포함을 계속 요구할 경우, 한국 측은 잠정적으로 기합의된 제4조 발명에 관한 권리의 배분 조항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V.5 1988.10-12월)

생산연도 1987-1993

생 산 과 조약과 /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84 / 8 / 1-270

1988.10~12월 중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교섭 내용임.

1. 한·미국 과학기술협력협정 유효기간 만료 임박

- 한·미 과기협정의 개정교섭은 부속서의 주요 3개 조항(제2조, 제4조 E항 및 제6조)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동 협정이 1988.10.31.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동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양국 간 과기협정이 중단되어 기존 추진하던 협력사업 등도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됨.

2. 주요 미합의 쟁점

- 이중사용기술의 보호(제1부속서 제2조)
 - PSA(비밀특허협정) 체결과 연계되어 있는 조항
- 발명권 배분의 예외 조항(제1부속서 제4조 E항)
 - 미국 측은 한국이 한·미국 간 특허법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든지, 양국 특허법상 차이가 있다면 한국 특허법상 특허 가능한 발명과 특허 불가능한 발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희망함.
- 여타 형태의 지식재산권 조항(제1부속서 제6조)

3. 안효승 외무부 기술협력과장, Bosken 주한 미국대사관 과학관 면담(1988.10.26.)

- 미국 측은 동 협정 개정이 10.31.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11.1.자로 동 협정이 폐기될 것임을 표명

4. 제3차 교섭회의 제의

- 미국 측은 1988.11.22. 동 협정 개정 교섭을 위한 제3차 교섭회의를 1988.12.20.~23.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옴.
- 한국 측은 11.26. 쟁점 조항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 변화 없이는 제3차 교섭의 필요성이 의문시 된다는 입장 표명
 - 이에 앞서 한국 측은 동 협정의 시효기간 내 개정 교섭 타결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10.27. 종전의 한국 측 입장을 수정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미국 측의 회신이 없음.
- 미국 측은 12.15. 쟁점 조항에 대한 종래 입장 불변 통보
- 한국 측은 제3차 교섭회의에 대한 한국 측에 예상되는 실익이 없으므로 수락하지 않음.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V.6 1989)**

생산연도 1987-1993

생 산 과 조약과 /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84 / 9 / 1-188

1989년 중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교섭 내용임.

1. 협상 진전 별무 상황

- 한·미국 과기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교섭회담(1988.8.29.~30., 서울) 이후 양국 간 협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동 협정 개정과 한·미국 PSA(비밀특허협정) 간의 연계 해소방안, 미국 측 주장 또는 국제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한국 국내 특허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특허법 개정 시기 등도 협상에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 됨.

2. 특허청, 1989.3.3. 특허법 개정 관련 아래 내용 송부

- 국제 입법례 등 제반 여건을 감안, 개정을 요하는 사항
 - 국제출원에 있어 국제예비심사청구제도의 채택
 - 우선권 증명세 제출기간의 개선
 - 보정각하의 불복제도 채택
 - 국내우선권제도 채택
- 특허법 개정 추진 일정
 - 개정안 확정: 1989.4월
 - 국회 제출시기: 1989.6월(잠정)
 - 시행시기: 1990년
- 음식물 및 기호물에 대한 특허
 - 음식물 및 기호물에 대한 불특허 규정: 개정 예정

3. 미국 측은 1989.8.11. 한국 특허법 개정안 및 PSA 협상 진전 상황을 지켜본 후 1989.10월말이나 11월에 동 협정 개정을 위한 제3차 교섭회담 개최에 대해 비공식 제의함.

1369

대한민국 저작권법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V.7 1990-91.7월)

생산연도 1987-1993

생 산 과 조약과 /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84 / 10 / 1-369

1990~91.7월 중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교섭 내용임.

1. Boright 국무부 과학담당 부차관보 방한(1990.2.26.~27.) 시, 최대화 국제경제국장 면담 결과

- 한국 측은 그 동안 미국 측 입장을 대부분 수용하고 한·미국 과기협정 타결을 위해 한국 특허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상응한 노력을 강조함. 특히 미국 측이 과기협정과 PSA(비밀특허협정)를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협상 타결의 관건임을 강조하고 PSA가 한국 측 노력으로 큰 진전을 이룬 만큼 미국 측의 입장 변화를 요구함.
- Boright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과기협정과 PSA 간 연계 입장 불변임을 강력 시사함.

2. 비공식 실무회의(1991.7.22.,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이종무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미국 측: Boright 국무부 과학담당 부차관보
- 회의 결과
 - 미합의 3개 사항을 집중 논의하여 지식재산권 분배 문제는 미국 측이 한국 측 타협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함.
 - 과기협정과 PSA 체결을 연계하는 문제와 지식재산권 보호 준거법 명시 여부는 양측 입장이 충분히 교환되었으며, 외교경로를 통해 확정짓기로 합의함.
 - PSA 협상이 진전이 있고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를 계속하는 경우 과기협정 협상 타결 전망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V.8 1991.8월-12.15.)**

생산연도 1987-1993

생 산 과 조약과 /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85 / 1 / 1-261

1991.8월~12.15. 중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교섭 내용임.

1. 한·미 과기협정 최종문안 합의 및 가서명(1991.12.11., 워싱턴 D.C.)

- 가서명
 - 한국 측: 장기호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 미국 측: John Boright 국무부 부차관보
- 쟁점 사항 합의내용
 - PSA(비밀보호협정) 관련 조항(부속서 I 제2조)은 한국 측 안을 수용하여 동 조항 전체를 삭제
 - PSA 타결, 가서명(1991.11.6.)으로 연계 실익이 없어짐.
 - 발효조항은 한국 측 안을 수용하나 일부 자귀 수정
 - 준거법(부속서 I 제1조)는 미국 측 입장에 따라 일부 자귀 삭제

2. 양국 간 주요 교섭 경위

- 1991.8월말~9월말 한국 측 입장을 재외공관에 전달하여 미국 측과의 협의 계속 진행
- 1991.9.10.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 방미
 -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국무부 안보관계담당 차관, 에너지장관, 원자력 규제위원장, 과학재단 부총재, 하원 과기위원장 등 면담
- 1991.10.16. 한·미 과기협정 미국 측 안 접수
- 1991.11.6. 외무부, 과기협정 미합의 3개항 중 2개항은 PSA 타결 시 미국 측 안 수용여부 고려 예정임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 1991.11.9. 외무부, 과기협정 미합의 쟁점 관련 한국 측 입장 주미국대사관에 전달
- 1991.11.28.~12.4. 김진현 과기처장관 방미,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방문

1371

대한민국-미국-과학기술협력협정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V.9 1991.12.16.-1993)**

생산연도 1987-1993

생 산 과 조약과 /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85 / 2 / 1-240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이 1992.1.6. 서울에서 서명됨.

1. 체결 목적

-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평화적 목적을 위한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촉진
- 과학기술협력 방법 규정(정보교환, 인적교류,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등)
- 양국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회사 간 협력 장려 및 촉진
- 각 당사국은 협력활동에 참여하는 자국요원의 경비를 부담
- 협력활동은 양국의 국내법 및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
- 공동위원회 설치
-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타방국의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 협력활동 과정에서 제공된 지식재산권의 취급은 부속서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따름.
- 저작권은 시행약정에서 권리배분 결정
- 단순한 정보교환에 의한 발명인 경우 발명 측이 모든 나라에서 권리 보유
- 발명이 인적 교류에 의한 경우
 - 협력활동에 실질적 기여 시, 접수 측이 모든 나라에서 권리 보유
 - 협력활동에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 접수 측은 자국 및 제3국에서, 파견 측은 자국에서 각기 권리 보유
- 공동연구사업 등 여타 협력에 의한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권리 배분
- 기업 비밀정보는 국내법령에 따라 충분히 보호 보장
- 기타 형태의 지식재산은 이 부속서상의 발명에 대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 배분 등

3. 동 협정은 1991.12.27.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2.1.6.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 간에 서명되어, 1993.7.29.자로 발효됨(조약 1182호).

한·베트남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3.2.2. 서울에서 서명: 1993.3.4. 발효(조약 제1161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조약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85 / 3 / 1-205

1992~93년 중 한·베트남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92.12월 양국 간 최종문안 합의 및 가서명

2. 체결 이유

- 한·베트남 간의 경제·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제·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물론 이를 통한 전반적인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 증진

3. 주요 내용

- 양국 정부는 각자 법령에 따라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 장려(제1조)
- 동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양국 정부 간 또는 그 대행기관 간의 시행약정 체결 장려(제2조)
-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경제적·기술적 성격의 정보 교환 및 과학자, 기술 요원 등 전문가 교류를 장려하며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세미나·심포지엄 및 공동연구 사업 실시(제3조)
-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조정 촉진을 위하여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 설치(제4조)

4. 동 협정은 1993.2.2.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웬만 컴 베트남 외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3.4.자로 발효됨(조약 제1161호).

- 2.16. 관보 게재

1373

대한민국 외교부서약집

한·중국 간의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993.1.8. 북경에서 서명: 1993.2.7. 발효(조약 제1123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조약과

MF번호 2023-85 / 4 / 1-207

1. 체결 의의

- 한·중국 간의 상호 건설시장에의 참여, 건설전문가, 건설 관련 정보 등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건설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양국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함.
- 양국은 건설프로젝트에의 공동 참여, 건설 관련 정보 교환, 건설 분야 전문가 교류, 건설 분야 공동연구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함.
- 양국은 각자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협회 및 기업체 간의 협력을 장려함.
- 양국은 협력활동에의 참가에 따른 경비와 자국 참여요원의 경비를 부담하며, 일방당사국에 의하여 초청된 요원의 교류에 따른 경비는 초청국이 부담함.
- 동 각서는 서명일로부터 30일 후 발효하며 5년간 유효, 일방당사국이 6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간 유효함.

3. 동 협정은 1993.1.8. 베이징에서 서명택 건설부장관과 후첩 중국 건설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2.7.자로 발효됨(조약 제1184호).

- 2.2. 관보 게재

한국 건설부·중국 수리부 간의 수자원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1993.12.4. 서명: 발효(외무부고시 제232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3-85 / 5 / 1-32

1993년 중 한국 건설부와 중국 수리부 간의 수자원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92년 중국 개최 유네스코 IHP(국제수리협력프로그램) 회의 계기 중국 수리부가 한국 대표 (이순탁 영남대 교수)를 통하여 동 협정 체결 희망 의사를 전달
- 1993.6월 건설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자 방중 협의 실시
- 한·중국 수자원 분야 협력은 '한·중국 정부 간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1992.9.30. 체결)'을 모협정으로 하여 한국 건설부와 중국 수리부 간에 기관 간 시행약정 형식으로 추진
- 그 동안 중국 수리부는 북한과 수리 분야 기술협력을 해왔으나, 1992년 이후로 교류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

2. 주요 내용

- 양국 간 수자원 분야에서 의견 교환 및 전문가 교류 장려
- 양국 수자원 분야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 교류 장려
- 한·중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 설치·운영

3. 동 협정은 1993.12.4. 베이징에서 고병우 건설부장관과 나우 마오생 중국 수리부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32호).

1375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관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V.1 1974-83)

생산연도 1974-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5 / 6 / 1-151

1974~83년 중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가입 추진 관련 문서임.

1. 주유엔대표부는 1974.9.10. 외무부에 The World Peace Through Law Center에서 한국이 '피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피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상기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성명이나 기타 참고사항이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니,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

1376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가입국: 86개 당사국(1983.1월)
- 목적: 1951.1.1. 이전에 발생한 피난민 보호
- 1951.7.28. 제네바에서 채택
- 1954.4.22. 발효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가입국: 71개 당사국(1983.1월)
- 목적: 1951년 이후 발생된 난민 구호를 위해 1951년 협약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 1967.1.31. 뉴욕에서 채택
- 1967.10.4. 발효

4. 한국 가입 검토 방향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은 1951.1.1. 이전의 난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입상의 문제가 없으나, 1967년 의정서는 난민을 발생시킨 사건의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이 포괄적으로 난민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므로 가입 시 법률상(한국 국내법 관련) 및 사실상(정치·행정적 고려)의 숙고가 요청됨.
- 국내법과의 문제
 - 동 협약 및 의정서 가입 시, 출입국관리법, 동 시행령 및 국적법의 일정한 정비 불가피(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 동의 필요)

5. 외무부는 1983.3월 동 협약 및 의정서 가입 문제에 관하여 인도적 견지 및 난민 유입 시 행정적 처리의 편의와 다수 국가가 가입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도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법 개정을 포함한 국내 절차를 거쳐 1983년 중 동 가입을 추진할 계획임을 국회사무처에 전달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V.2 1984-85.8월)

생산연도 1974-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5 / 7 / 1-178

1984~85.8월 중 한국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가입 추진 관련 문서임.

1. 가입 추진 현황

- 1985.10월 가입을 위한 행정부 측 절차 완료 후 가입 동의안 국회 송부
 - 국회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가입 조치 예정
- 가입에 따른 국내 조치 및 가입 시 유보조항
 - 동 의정서 가입 추진과 관련, 관계부처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정비 작업 추진
 - 동 의정서 가입 시 난민협약 제7조 상호주의 적용 면제 규정은 유보 예정
- 협약 및 의정서 조속 가입 필요성
 - UNHCR(유엔난민기구)은 수차례 한국의 협약 및 의정서 가입 촉구
 - 소련인 망명, 체코병사 망명사건 등 처리에 있어서 수시로 난민협약상의 규정 원용
 - 한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상 난민 관련 업무 계속 증가 일로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을 위한 당정 협의회 자료(1985.8월, 외무부)

- 의정서 구성 내용
 - 전문, 11개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중 제2조부터 제34조 적용
- 의정서 채택 경위
- 가입 의의
 - 월남 난민 수용 이래 한국 정부가 취하여 온 난민 보호 정책 천명
 - 망명 사건 처리 시 동 의정서 원용
- 의정서 당사국 개황
- 주요 골자
 - 난민에게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각종 유리한 대우 부여
- 관계부처 입장
- 유보조항

1377

대한민국 의정서 및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V.3 1985.9월-1988)

생산연도 1974-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5 / 8 / 1-392

1985.9월~1988년 중 한국의 난민 협약 및 의정서 가입 추진 관련 문서임.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안 국무회의 상정(1985.9.18.)

- 의결 주문
 - 정부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기로 한다. 단, 동 의정서에 규정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의 한국에 대한 적용을 유보한다.
- 제안 이유
 - 동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동참
 - 증가하고 있는 망명사건 처리에 있어서 국제조약인 의정서 규정을 직접 원용, 한국에 유리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 마련

2. UNHCR(유엔난민기구) 출장(1986.5.10.~19.)

- 출장자: 이순천 외무부 국제법규과 사무관
- 목적: 한국의 난민 의정서 가입 문제 및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 협의
- 주요 협의내용
 - 난민 의정서 가입 및 가입 후속조치
 - 난민 재정착 문제
 - 기금 확보 등

3. 외무부는 1988.6.24. 법무부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 개정 작업 현황 및 현재 한국 내 난민체류 현황 통보를 요청함.

- 동 의정서 가입동의안은 1985.10.14.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제12대 국회 임기 중 통과되지 못하여 폐기됨. 이에 외무부는 동 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 있음.

4. 참고자료

- 당정협의회의자료: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1985.9월, 외무부)
- 민정당 외무분과위원회 상정 조약안 제안 설명 자료(1985.9.17., 외무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V.4 1989-91)

생산연도 1974-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5 / 9 / 1-197

1989~91년 중 한국의 난민 협약 및 의정서 가입 추진 관련 문서임.

1. 방한 인사

- Christopher J. Carpenter UNHCR(유엔난민기구) 도쿄사무소장
- Guy Prim 도쿄사무소장
 - 난민 의정서 가입 문제 및 부산수용소 난민 문제에 관해 의견교환

2. 외무부는 1989.4.27.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연내 가입을 목표로 국내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자 하니 동 의정서 가입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5.31.까지 화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가입동의안을 1985.10월 12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측 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
- 동 의정서 가입 동의안은 국제인권규약 가입 동의안과 함께 국회 제출 계획

3. 참고자료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문제 검토 자료(1990.9월, 외무부 국제법규과)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가입 검토(1991.9.23., 외무부 국제법규과)
-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 가입에 대한 검토 의견(11월, 법무부)

1379

대한민국 의정서 가입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V.5 1992-93)

생산연도 1974-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5 / 10 / 1-428

1992~93년 중 한국의 난민 협약 및 의정서 가입 추진 관련 문서임.

1. 가입서 기탁 및 발효

- 1992.5.28. 국무회의 통과
- 1992.6.5. 대통령 재가
- 1992.7.2. 국회에 가입 동의안 제출
- 1992.11.11. 제159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동의 획득
- 1992.12.3. 유엔사무총장에게 가입서 기탁
 - 난민 의정서, 가입서 기탁과 함께 발효
 - 난민 협약, 1993.3.3. 발효

2. 참고자료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 가입 안에 대한 예상 질문답변 자료(1992.6월, 외무부 조약국)
- 4개 조약 국회비준동의안 설명자료(1992.7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7항에 대한 유보철회 한국 가입, 1993.1.21.(조약 제1122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5 / 11 / 1-180

외무부는 국제인권규약(B) 가입 시 유보했던 2개 조항을 검토하여, 그 중 제14조 제7항의 유보철회를 1993.1.21.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함.

1. 유보철회 대상 조항

- 1990.4.10. 한국이 유보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으로 통칭)의 4개 조항 중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한 제14조 제7항과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검토함.
 - '상소권 보장'에 관한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는 계속 유지
 - '남녀불평등' 조항을 개정한 개정 민법이 1991.1.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23조 제4항에 대한 유보는 1991.3.5.자로 기철회

2. 유보 사유 및 철회 사유

- 제14조 제7항: 일사부재리 원칙(이중처벌 금지)
 - 유보 사유: 규약의 이중처벌 금지에는 외국에서 받은 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외국에서 받은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국형법 제7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유보함.
 - 철회 사유: 그러나 이 조항은 자국에서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중처벌을 금지한 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일사부재리를 재확인한 규정으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인정 문제와는 무관하며, 한국형법 규정과도 배치되지 않음.
- 제22조: 결사의 자유
 - 유보 사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관련 국내법 규정에 저촉됨.
 - 철회 사유: 1991년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유보의 실익이 사실상 없어짐.

3. 유보철회 추진 경과

- '일사부재리 원칙' 유보철회 문제는 법무부와, '결사의 자유'는 총무처·교육부·노동부 등과 협의
- 부처 간 협의 결과, 최종적으로 제14조 제7항만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
 -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제22조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과 각각 저촉된다는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 유보철회 통보 및 공포
 - 1992.12.24. 제58회 국무회의 의결
 - 1993.1.4. 대통령 재가
 - 1993.1.21. 외무부장관 명의의 유보철회 공한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송부 및 동일자 관보 게재

1381

대한민국 인권백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 개정 수락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5 / 12 / 1-41

외무부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8조에 대한 개정안 수락서를 1993.11.30. 유엔사무국에 제출함.

1.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12.21. 유엔총회 채택) 제8조 개정

- 1992.1.25. 제14차 협약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되고, 유엔총회는 1992.12.26. 개정을 승인
- 동 협정의 개정은 유엔총회가 동 개정을 승인하고 협약당사국의 3분의 2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개정 수락을 통고한 때 발효됨.

1382

2. 개정안 내용

- 협약 가입국 분담금으로 충당하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활동 경비를 유엔 정규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3. 한국의 수락 통보

- 한승주 외무부장관이 서명하고 날인한 수락서를 1993.11.30. 9번째 기탁국으로 유엔사무국에 제출함.

전쟁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Geneva(스위스), 1993.8.30.-9.1. 전2권 (V.1 4월-8.1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86 / 1 / 1-123

1993.8.30.~9.1.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전쟁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준비를 위해
1993.4.26.~28. 제네바에서 개최된 전문가 회의 관련 내용임.

- 약 50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8월 회의 시 채택할 선언문 초안과 회의 의사규칙 초안 제시
- 선언문은 제1부와 제2부로 구성, 1부는 전시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와 규탄, 2부는 전시인도법 제규정 준수를 위한 각국의 약속 열거

1383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법
1993

전쟁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Geneva(스위스), 1993.8.30.-9.1. 전2권 (V.2 8.14.-10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86 / 2 / 1-110

정부는 1993.8.30.~9.1.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전쟁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에 허승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유엔 및 전문기구 회원국 정부대표(각료급), 국제기구, 지역기구,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및 NGO 대표

1384

2. 회의 목적

- 유고 등 분쟁지역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시인도법 준수 등 전쟁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선언 채택

3. 회의 성격

-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 시행을 위해 공동의 방법을 모색하는 포럼 형식

4. 회의 결과

- 전쟁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언문 채택
- 최대 쟁점이었던 후속회의 개최 문제 타결
 - 국제인도법 준수를 위한 실질적 방안 검토를 위해 정부 간 전문가그룹 회의 개최
 - 회의 결과보고서를 각국 정부 및 차기 국제적십자 총회에 제출
- 선언문 채택 시 4개국 유보 입장
 - 이집트, 멕시코, 이란, 수단 4개국은 일부 조항에 대해 유보적 입장 표명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73호 및 권고 제180호 국회 제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6 / 3 / 1-57

1992~93년 중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73호 및 권고 제180호의 국회 제출 관련 내용임.

1. 주제네바대표부 보고

- 주제네바대표부는 1992.8.27. ILO 사무국이 제79차 ILO 총회(1992.6월)에서 채택한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 임금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173호 및 권고 제180호를 동 대표부에 보내왔다고 하면서, 외무부 및 노동부에 ILO 헌장 제19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정부 검토의견

- 협약 제173호
 - 사용자 파산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가능한 한 사업체의 회생 문제를 고려하여 고용보장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조정 등의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폐업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보호장치임.
 -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기타 노동법은 이 협약의 일부 규정을 상회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동 협약과 국내관계 법규제도를 계속 검토하고자 함.
- 권고 제180호
 -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 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173호를 보완하기 위하여 협약 제173호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 이 권고의 규정이 전반적으로 국내법에 포함되나, 일부 규정은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동 권고와 국내관계 법규제도를 계속 검토하고자 함.

3. 국회 제출

- 외무부는 상기 협약 제173호 및 권고 제180호를 1993.8.23.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8.31. 주제네바대사에게 동 조치내용을 ILO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함.

1385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73호, 제81호 및 제122호 한국 가입. 전2권 (V.1 1992.2-10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6 / 4 / 1-272

1992년 중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73호, 제81호 및 제122호의 한국 가입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ILO 협약 비준 관련 관계자 접촉(1992.2.21.)

- 접촉자
 - 한국 측: 박정규 주제네바대표부 노무관, 김두영 외무부 국제협약과 사무관
 - ILO 측: Sidibe 국제근로기준국장 등 관계자 3명
- 주요 협의사항(ILO 협약 비준 문제)
 - 비준대상 협약 선정 및 비준 시기는 회원국의 독자적 결정사항임.
 - 협약 비준 시 노사 간 의견대립으로 통상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되며, 이 문제는 노·사·정 3자 간 협의기구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함.

2. 국제노동위원회 실무회의(1992.9.4., 노동부)

- 회의 의제
 - 1992년도 비준대상 ILO 협약 선정에 대한 논의
 - 향후 ILO 협약 비준정책에 대한 논의

3. ILO 협약 비준에 대한 협조 의뢰

- 노동부는 1992.10.15. 관계부처 및 국제노동협의회와 제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제81호 공업 및 상업 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하면서, 연 내 동 3개 ILO 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73호, 제81호 및 제122호 한국 가입. 전2권 (V.2 1992.11월-199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6 / 5 / 1-181

1992~93년 중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73호, 제81호 및 제122호의 한국 가입 관련 내용임.

1. ILO 3개 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 상정 배경
 - 정부는 173개 ILO 협약 중 한국의 현행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않는 협약부터 점진적으로 비준해 나간다는 방침 결정
 - 이에 따라 1992년 상반기부터 10개 협약을 1차 비준대상 협약으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 및 ILO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
- 이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아래 3개 협약을 금년 안에 비준하기로 최종 확정
 - 제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 제81호: 공업 및 상업 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2. 3개 협약 내용

-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 선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및 건강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노동자의 일원인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ILO 현장에서 추구하고 있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 협약은 선박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유 또는 사유에 관계없이 교역 목적의 화물선 및 여객선에 적용되며, 선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승선자에게 적용됨.
- 공업 및 상업 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 공업 및 상업 부문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제도 운영을 의무화하여 노동조건 기준을 확립하고,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 규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 회원국은 공업 및 상업 부문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제도를 유지함.
-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 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극복하고 완전고용, 생산적 고용 등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 협약당사국은 완전고용, 생산적 고용 및 자유로이 선택한 고용 증대를 위한 적극적 고용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1387

대한민국 의정서

식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 의정서 한국 가입, 1993.5.17.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통상기구과

MF번호 2023-86 / 6 / 1-171

1993.5.17. 식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 의정서 한국 가입 관련 내용임.

1. MFA(다자간섬유협정) 채택 경위

- 1973년 식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채택
- 1977~91.7월 4차례에 걸쳐 연장 의정서 채택
- 1992.12월 제5차 연장 의정서 채택

1388

2. MFA 주요 내용

- 기본 목적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제 밖에서 수출입 양방의 이해 조정을 통한 식물류의 점진적 교역 자유화와 교역량 확대
- 쿼터제 운영
 - 당사국은 MFA 범위 밖에서 양자 간 쿼터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쿼터량은 당사국이 협의 요청 접수 2개월 전을 기점으로 하여 1년을 소급한 기간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정하며, 매년 6% 이상 증가하도록 함.

3. MFA 연장 의정서 수락

- 수락 이유
 - 1993.1.1.부터 MFA를 12월간 추가연장 의정서를 수락함으로써, 한국의 MFA상 기존 식물류 수출 쿼터량을 계속 유지 가능
- 주요 내용
 - 1991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MFA의 효력을 1993.1.1.부터 12.31.까지 12개월간 추가연장
 - 연장 의정서는 1993.1.1. 이전 정식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1993.1.1.부터 정식 발효되며, 그 이후에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수락 일자에 정식 발효됨.
 - 1993.1.1. 이전 서명 또는 잠정 적용 의사를 통고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1993.1.1.부터 잠정 적용함.

4. 연장 의정서 수락 통고

- 1993.1.8.자 주제네바대사 명의 GATT 사무총장 앞 서한으로 연장 의정서 수락(조건부 수락)을 통고함.

1977년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협약 의정서 채택에 관한 국제회의. Torremolinos(스페인), 1993.3.22.-4.2.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86 / 7 / 1-174

정부는 1993.3.22.~4.2. 스페인 토레몰리노스에서 개최된 1977년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협약 의정서 채택에 관한 국제회의에 이광수 수산청 어선과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구자원 한국어선협회 주임검사원)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토레몰리노스 어선안전협약 의정서 채택 시 적극 참여를 통한 한국 입장 반영
- IMO(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재입후보 대비 지지교섭 전개

2. 주요 내용 및 결과

- 1977 어선안전협약이 현재까지 발효되지 못하다가 금번 회의에서 아시아 국가 실정을 대폭 감안하여 동 협약을 완화 개정한 1993년 의정서를 정식 채택함.
- 한국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동 협약 의정서의 요건을 가급적 아시아 실정에 맞도록 여타 아시아 국가(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대처함.
- 한국 대표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축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최종의정서 문안작성에 참여함.

3. IMO 어선안전협약 의정서 주요 규정

- 주요 내용
 - 방화·화재탐지, 소화 및 소화 작업, 선원의 보호, 구명설비, 항해장비 요건 등 규정
- 의정서 발효 요건
 - 15개국 이상 수락 및 길이 24m 이상 어선이 14,000척 이상 달하는 날로부터 12개월 이후 발효
- 의정서 비준 절차
 - 1993.7.1.부터 1994.6.30.까지 비준, 수락, 승인, 가입을 위한 서명을 위해 개방
- 의정서 발효 전망
 - 주요 어선 보유국인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수락 여부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나 일본, 중국 등이 수락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1995.7.1.이후 발효될 것으로 예상

1389

대한민국 어선안전협약

도로 및 철도운송에 관한 협약 가입 검토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기구조

MF번호 2023-86 / 8 / 1-22

1992~93년 중 도로 및 철도운송에 관한 협약 가입을 위한 검토 추진 관련 내용임.

1. Ahmed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은 1992.12.15.자 서한을 통해 도로 및 철도운송에 관한 제48차 총회 결의(48/11) 1항에 언급된 7개 협약 중 아래 3개 협약에 대해 한국이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입에 관한 한국 정부 의견을 알려줄 것을 요청해 옴.

- 상업용 도로차량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1956)
- 상품의 도로수송계약에 관한 협약(1956)
- 상품의 국경통제조정에 관한 협약(1982)

2. 상기 관련 관계부처의 의견 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교통부
 - 남북 간 유통이 자유로워지거나 남북통일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가입은 필요 없음.
- 관세청
 - 상업용 도로차량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은 한국에 육로를 통과하는 수입화물 이동이 없으므로 협약 가입의 실익은 없음.
 - 상품의 국경통제조정에 관한 국제협약은 의약품 위생검사, 동물검역, 식물검역 등에 관한 것이므로 농수산부, 보건사회부 소관사항임.
- 상공부
 - 상품의 국경통제조정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태지역에서 가입한 나라가 없음.
 - 협약 내용이 대부분 규범적인 성격이어서 가입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나, 협약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의 자료부족으로 종합적인 가입효과를 검토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으로 일단 유보 입장, 차후 구체적인 자료를 송부해 줄 경우 가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UNESCO 전시문화재보호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검토

생산연도 1981-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86 / 9 / 1-90

1981~93년 중 유네스코 전시문화재보호협약 및 의정서의 한국 가입 검토 관련 내용임.

1. 전시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및 동 시행세칙 가입에 대한 의견 조회(1981.10.21.)

- 국방부, 법무부, 법제처(국회동의 불요)

2. '전시문화재 보호에 관한 의정서' 가입에 대한 의견 조회(1982.6.11.)

- 국방부, 법무부, 법제처(국회동의 필요)

3. 전시문화재보호협약 가입에 관한 의견 회신

- 외무부(국제기구조약국), 문화공보부에 협약 가입에 이견 없음을 회보

4. 전시문화재보호협약 가입에 관한 문화부 의견 조회(1993.2.17.)

- 문화부는 협약 가입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로부터 특수보호 문화재 지역에 대한 불가침성의 확보가 어렵고, 남북한 분단 상태에서 특히 북한의 군사목적 역이용 우려 등 조약규정 시행상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가입 등 여건이 성숙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3.2. 외무부에 통보함.

1391

대한민국 의정서 및 의정서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연장회의 관련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86 / 10 / 1-125

1993년 중 NPT(핵확산금지조약) 연장회의 관련 주요 동향임.

1. 1995년 NPT 회의 관련 세미나(1993.7.9.~12., 영국 사우스햄튼)

- 회의 명칭
 - Seminar on 'Issues at the 1995 NPT Conference'
- 회의 성격
 - 핵 비확산체제 유지 및 NPT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프로그램 PPNN(Program for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의 후원하에 각국의 군축 및 국제기구 관계관을 대상으로 함.
- 참가자: 약 60명(주영국대사관 참석)
- 주요 의제
 - NPT 연장 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검증 문제, 안보 문제, 지역 문제(북한, 중동, CIS(독립국가연합))
- 평가
 - 1995년 NPT Conference 개최에 앞서 NPT 연장 관련 이슈에 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전 논의함으로써 NPT 문제에 관한 각국의 의견 수렴 및 NPT 이행상 제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검토에 기여함.

2. 기타 사항

- 자료
 - The 1995 NPT Conference(John Simpson)
 -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Membership(The Arms Control Association)
 - Statement of the Pugwash Council on the 1995 NPT Extension Conference
 - 핵무기비확산조약(정책 참고자료, 안보정책과)
- 각국 주요 동향
 - 인도, 핵확산금지조약 불가입 재천명(1993.7.7.)
 - 일본, NPT 무기한 연장 지지 표명(7.28.)
 - 알제리 등 6개국 NPT 조약 신규가입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연장회의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 제1차. New York, 1993.5.10.-14. 전4권 (V.1 사전준비 I)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86 / 11 / 1-110

1993.5.10.~14.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NPT(핵확산금지조약) 연장회의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 참가 관련 내용임.

1. NPT 연장회의 준비위원회

- 1995년 NPT의 무기한 존속 또는 일정기간 연장 여부 검토
- 1995년 NPT 연장검토회의 개최 준비 및 당사국 간의 의견 조정 등
 - 1992.10.22. NPT 수탁국인 미국·영국·러시아 3개국 주도로 개최된 당사국회의에서 결정

2.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유종하 주유엔대사
- 대표단: 조상훈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 심의관 및 주유엔대표부 직원 3명

3. 사안별 한국 측 입장 정리

- 효율적인 핵 비확산을 위해 NPT 현 체제의 유지 및 강화와 NPT 연장을 지지
- 한국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전면 안전조치협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 다수 NPT 당사국의 협정 체결을 촉구
- 핵 군축협상을 긍정 평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 선진국의 협조를 촉구
- NPT 체제 확대 및 강화 차원에서 NPT 미가입국의 관련 회의 참여에 긍정적 입장
- 북한의 NPT 탈퇴 문제는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설득 및 압력을 병행하며, 제재 조치 검토도 가능

1393

대한민국 외교부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연장회의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 제1차. New York, 1993.5.10.-14. 전4권 (V.2 사전준비 II)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86 / 12 / 1-113

1993.5.10.~14.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NPT(핵확산금지조약) 연장회의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 관련 내용임.

1. 주요 국가의 입장 파악

-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프랑스, 스웨덴, 폴란드, 호주, 나이지리아 등 탐문
- 수석대표로는 주유엔대사, 주제네바대사, 외무부 군축담당 국장 또는 대사 등을 고려
- NPT 미가입국의 옵서버 참가 문제
 - 대부분 국가에서 반대 입장이나, 러시아 및 스웨덴은 가능하다는 입장
- NPT 연장 문제
 - 대부분 찬성하나,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
- 1995년 NPT 연장검토회의에 연장, 평가 등 위원회 구성이 필요
- 브라질의 제1차 준비위원회 옵서버 참가 문제
 -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여타 당사국의 입장을 감안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

2. 제1차 준비위원회 준비 자료

- 기본자료
 - 준비위원회에서의 입장
 - 1995년 NPT 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입장
 - NPT 연장에 대한 입장
 -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한 대응
- 참고자료
 - 준비위원회 관련 자료
 - NPT 관련 자료
 - NPT 연장 및 NPT 회의 구성/운영 관련 자료
 - 북한의 NPT 탈퇴 관련 자료
 - 한국의 원자력 현황
 - 한국의 입장을 언급한 연설문
 - 남북관계 관련 자료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연장회의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 제1차. New York, 1993.5.10.-14. 전4권 (V.3 회의 보고)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86 / 13 / 1-83

1993.5.10.~14.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NPT(핵확산금지조약) 연장회의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 결과 내용임.

1. 참가자

- 157개 NPT(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 중 123개국 대표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유종하 주유엔대사
- 북한 측: 박길연 주유엔대사

3. 회의 결과

- 행정사항
 - 준비위원회 회의는 향후 3차례 개최하며, 각 준비위원회 의장 및 개최 시기 결정
 - 컨센서스 의사결정 방식 및 옵서버의 회의 참가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 실패
- 핵심사항
 - 서방 국가들은 무기한 무조건 연장, 개도국들은 핵 군축 및 핵 협력과 연계하여 연장 결정 주장
 - 의장 및 25개국 대표들은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 NPT에 대한 도전으로 철회를 촉구

4. 한국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는 북한의 NPT 탈퇴 재고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고, 남북 간 해결 노력 강조
- 북한 대표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배경을 설명
- 조상훈 외무부 심의관 및 서대원 주유엔대표부 공사는 1993.5.8. 'NPT 연장문제' 논의 라운드 테이블 참석

1395

대한민국 외교부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연장회의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 제1차. New York, 1993.5.10.-14. 전4권 (V.4 결과보고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23-86 / 14 / 1-189

1993.5.10.~14.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NPT(핵확산금지조약) 연장회의 준비위원회(PrepCom) 회의 결과보고서 내용임.

1. 제1차 NPT 준비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1993.5.14., 외무부)

- 개최 배경
 - NPT 발효 25년 경과 시점인 1995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 개최
 - 연장 여부 결정 준비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회의 개최
- 주요 동향
 - 1995년 NPT 연장 결정회의는 1995.4.17.~5.20.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NPT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사규칙은 계속 협의
 - 대부분 국가들은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협정 의무 불이행에 우려 표명
- 한국 입장
 - NPT 체제 유지 및 강화, NPT 연장을 지지
 - 1995년 NPT 회의 개최 전까지 동향을 고려하여 무기한 연장 지지 방향으로 검토

2. 참고자료

- 회의 결과보고서(주유엔대표부)
- 회의 참가보고서(외무부 외교정책실)
- 유엔사무국 배포 자료
- 제1차 준비위원회 결정사항

PTBT(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체약국 간 특별 비공식 회의. New York, 1993.8.1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86 / 15 / 1-22

1993.8.10. 뉴욕에서 개최된 PTBT(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체약국 간 특별(비공식) 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핵 보유 5개국 포함 체약국

2. 주요 의제

- PTBT 개정 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 체약국 간의 의견 교환

3. 회의 결과

- Alatas 의장,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협상을 위한 국제정세 진전 평가
- 각국은 CTBT 협상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 일치
 - 다만 협상의 Modality에 대하여는 선진국은 CD(군축위원회)를 선호하는 반면, 비동맹국은 PTBT 개정 선호
- PTBT 개정회의 의장 성명 발표

1397

대한민국 외교부서 영사과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 제7-8차. Vienna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6 / 16 / 1-224

1992~93년 중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7~8차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제3차 원자력 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전문가 회의(1993.3.1.~5.)

- 참가자
 - 45개 IAEA(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 체코 대표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NEA(원자력기구) 등 정부 간 국제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 임한택 외무부 사무관 참석
- 주요 토의내용
 - 보충협약의 군사 목적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적용, 보충협약의 지리적 범위, 시설 소재국에 의한 배상, 원자력 사업자의 시설물에 따른 배상기금 부담, 비원자력 국가의 기금 부담 문제 등

2. IAEA 손해배상 상설위 제7차 회기(1993.5.24.~28.)

- 참가자: 50개 IAEA 회원국 및 옵서버 대표, 국제기구 대표
 - 한국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직원 1명 참석
- 회의 결과
 - 비엔나협약 개정(안)채택
 - 비엔나협약 개정안과 보충협약의 동시 채택을 위한 단일 외교회의 개최 합의
 - 차기 회의에서 외교회의 개최일자 결정

3. IAEA 손해배상 상설위 제8차 회기(1993.10.11.~15.)

- 참가자
 - 49개 IAEA 회원국 및 옵서버 대표,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EC(구주공동체), OECD/NEA, 유럽 보험위원회, 그린피스 대표 등
 - 김대식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 참석
- 주요 토의내용
 - 보충기금 설치에 관한 Pool안과 덴마크·스웨덴안
 - 비엔나협약상 원자력 손해의 개념에 환경피해 개념 도입

원자력 안전협약에 관한 전문가 회의, 제3-6차. Vienna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86 / 17 / 1-402

1993년 중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6차 원자력 안전협약에 관한 전문가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3차 실무그룹 회의(1993.1.25.~29.)

- 한국대표단
 - 허남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과학관 외 3인
- 주요 토의내용
 - 협약의 적용 범위, 기술 부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협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2. 제4차 실무그룹 회의(1993.5.17.~21.)

- 참가자
 - 50개국 120여 명
 - 한국대표단: 허남 주오스트리아 과학관 등 3인
- 주요 토의내용
 - 협약의 적용 범위(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 국한하지는 데 집약), 협약당사국의 보고 의무, 협약 이행의 검토과정, 협약 목적, 현재 상황 삽입,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 옵서버 참여, 결과보고서 공개, 협약국 회의 의사결정 방법 및 비용 분담 등

3. 제5차 전문가 회의(1993.10.25.~29.)

- 참가자
 - 허남 주오스트리아 과학관, 조건우 과학관보
- 주요 토의내용
 - 협약 중 대부분의 기술적 조항 합의
 - 법률적, 절차적 조항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

4. 제6차 전문가 회의(1993.12.7.~9.)

- 참가자
 - 허남 주오스트리아 과학관, 조건우 과학관보
- 주요 토의내용
 - 협약 제22조~40조를 포함하여 대부분 조항에 합의(법률 및 절차적 조항 제외)

1399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비준검토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84-1991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3-87 / 1 / 1-220

1984~91년 중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관련 정부의 가입, 비준검토 및 후속조치 내용임.

1. 협약 관련 경위

- 1971.12.16.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
- 1972.4.10. 런던, 워싱턴, 모스크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
- 1975.3.26. 원 조약 발효

1400

2. 한국의 서명과 비준 보류

- 1972.4.10. 주미국대사 및 주영국대사가 각각 동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북한과 중국이 서명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비준을 보류함
 - 1983.1월 현재 비준·가입국: 93개국

3. 협약 내용

- 인류를 위하여 세균성 물질과 독소가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
- 세균·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 세균·독소 무기의 폐기
- 당사국 간 협력
- 세균학 분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촉진

4. 한국 정부의 가입 검토

- 1984.3.17.부터 외무부 조약과, 국방부 검토
- 1986.9.4. 외무부 조약과, 협약 가입 추진 장관 앞 보고
- 1987.2.24. 법제처 의견조회
- 5.28. 국무회의 심의
- 6.5. 협약 비준 공포를 위한 대통령 재가
- 6.25. 비준서 영국, 미국 정부에 기탁, 동일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925호)
 - 6.26. 조약 공포 의리, 7.6. 관보 게재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ITTA) 개정회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87 / 2 / 1-235

1983.11월 채택된 ITTA(국제열대목재협정)는 1985년 발효되어 5년간 유효하였으며, 2차에 걸쳐 2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1994.4월 협정 만료 예정으로, 협정 만료를 앞둔 1993년 중 개최된 관련 회의 내용임.

1. 제2차 개정위원회 및 제1차 특별회의(1993.1.27.~30., 에콰도르 키토)

- 참가자
 - 회원국 40개국 113명, 비정부단체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등 14개 단체 45명
 - 한국 측 참가자(대표): 배점철 주에콰도르대사관 참사관
- 참가 목적: 향후 10년간 ITTO(국제열대목재기구)의 활동을 규정하는 협정 개정을 위한 준비회의에 열대목재 순수입국인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하기 위함.
- 의제: ITTA 개정 관련 주요 쟁점사항 토의
- 결과: 목재의 정의, 분담금 등 관련 생산국, 소비국 입장 차이로 합의하지 못함.

2. 유엔열대목재회의(1993.4.13.~16., 제네바)

- 한국 측 불참
- 결과: 생산국 및 소비국과의 의견조정을 위한 적절한 접촉 유지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에게 촉구

3. 확대개정을 위한 2차 회의(1993.6.21.~25., 제네바)

- 한국 측 불참
- 결과: 생산국/소비국 혼합안 채택

4. 제3차 개정위원회(1993.10.4.~15., 제네바)

- 대표단(수석대표): 박대원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 결과: 협정 적용 범위(목재 정의) 관련 소비국과 생산국 입장 차이 등으로 결렬
 - 제4차 회의는 1994.1.10.부터 2주간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함.

1401

대한민국 무역발전사 연구회

1992년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1993.4.15.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7 / 3 / 1-275

1992년 중 국제사탕협정에 대한 한국의 서명 및 비준에 관한 내용임.

1. 1992년 국제사탕협정 체결 추진 경과

- 1992.3.20. 유엔에서 새로운 사탕협정을 채택, 12.31.까지 각국에 서명을 개방
- 동 협정상 운영되는 국제사탕기구의 회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국내 업계의 의견에 따라 서명 및 비준 추진 검토
 - 원당 및 설탕의 국제가격은 변동 폭이 극심하므로 수급 관련 국제협력체제 구축 필요
 - 한국이 동 협정 당사국일 경우 수원당 수입국이자 동 기구의 행정위원회 위원국으로서 국제동향 파악에 유리하며, 추후 설정될 사탕 수급의 관리에 관한 경제조항의 채택 및 운용에 대한 발언권 확보 필요

2. 협정 서명

- 1992.12.23. 유종하 주유엔대사가 동 협정에 서명

3. 협정 비준

- 1993.1월 ISO(국제사탕기구) 사무총장, 호주 등은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한국의 조기 비준 요청
- 협정의 조기 발표가 예상되고, 기존 한국의 분담금에 과도한 증가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외무부는 동 협정 비준 추진 결정
- 2.19.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3.18. 국무회의가 동 협정안을 심의 상정 및 통과
- 4.15. 주유엔대사는 동 협정 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 동일자로 한국은 동 협정 정식 당사국 지위 확보 및 협정 비준 공포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1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93.3.22.-4.2.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87 / 4 / 1-73

정부는 1993.3.22.~4.2.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제11회기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회의에 김용규 주자메이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Precom(설립준비위원회)가 준비 중인 각종 규칙안 내용을 마무리 짓고 미진한 부분은 향후 국제해저기구에서 해결 추진
- 각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동향 파악 및 상기 비공식협상 전망 파악 노력
- 선발투자가 그룹 동향 파악
- Training panel 참가 등

2. 회의 결과

- 국제해저기구 기관 및 이사회의 선거, 심해저 기업 집행이사회의 의사결정 정족수 등에 선진국과 77그룹 간의 이견을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
- 육상개도국 보상 문제에 관해 11년간 토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쟁점 미합의
- 해양법재판소 구성에 있어 공평한 지리적 분포와 주요 법제도의 반영, 사용언어 미합의, 재판소 특권면제 의정서 최종초안 등 토의
- Precom의 장래와 관련 매년 2주간 회의 개최에 원칙적 합의
 - 상기 비공식협상과 관련하여 개도국들은 미국 주도의 비공식협상의 문제점 지적
- 상기와 같은 이견을 조정하는 최종보고서 문안 채택

1403

대한민국 국제법규과

유엔해양법협약 개정에 관한 비공식 협의. 전2권 (V.1 1-4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87 / 5 / 1-219

1993.1~4월 중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심해저 규정의 부분개정에 관한 비공식협의에 관한 내용임.

1. 제2라운드 제3차 회의(1993.1.28.~29.)

- 대표단(정부대표): 최정일 외무부 국제법규과장
- 훈령
 - 한국이 향후 심해저 광물 생산에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고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심해저개발 체제가 심해저개발 기업의 의무완화, 국제기구에 의한 통제완화 등 시장경쟁원칙의 도입임을 고려하여 한국으로서는 해양법협약이 서구 국가의 입장을 반영,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
- 회의 결과
 - 국제해저기구의 의사결정 방식, 협약 제11장 재검토, 심해저개발 기술이전, 생산한도, 육상광물 생산 개도국 보상기금 등 핵심쟁점에 관해 향후 개정방향이 마련

2. 제2라운드 제4차 회의(1993.4.27.~28.)

- 대표단(정부대표): 함명철 외무부 조약심의관
- 훈령
 - 한국의 입장이 개도국보다는 선발투자국에 보다 가까운 점을 감안, 심해저개발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협상 타결 노력
- 회의 결과
 - 협상 결과의 채택은 가능한 한 유엔총회 결의 등 간단한 절차에 회부하자는 데 공감
 - 해양법협약 발효 후 심해저 광물의 상업적 생산까지의 기간인 잠정체제에 관한 내용은 해양법 협약이 상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며 경비절감적인 심해저 개발체제 운영에 의견일치

3. 미국의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입장

- 1993.3.19. Colson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버지니아대학 해양법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은 동 협약의 심해저(제11장) 규정에 대한 해결 없이는 협약 수락 불가능 설명
- 나머지 협약 규정에 대해서 미국은 의무로서 인정, 해양 이용을 동 협약과 일치되게 시행
- 미국은 심해저 규정의 개정을 전제로 동 협약 참여를 재검토 표명

유엔해양법협약 개정에 관한 비공식 협의.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87 / 6 / 1-243

1993.7~12월 중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심해저 규정의 부분개정에 관한 비공식협의에 관한 내용임.

1. 제2라운드 제5차 회의(1993.8.2.~6.)

- 대표단(정부대표): 최종무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 훈령
 - 해양법협약 개정방향 및 발효전망, 선발투자가 등록절차, 심해저 관련 규정 개정방향과 각국의 세부입장 등 파악 및 대처
- 회의 결과
 - 한국의 심해저개발 선발투자가 등록 절차를 파악한바, 미국계 4개 컨소시엄의 관계국인 벨기에,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독일, 미국과 중북광구 문제 선결, 신청서를 유엔해양법사무국에 제출, 해양법준비위의 기술전문가그룹의 등록서류 검토, 일반위원회의 승인 등의 절차로 진행
 -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 잠재적 선발투자가 국가들을 협약체제 내로 들어오도록 유인책 강구
 - 국제심해저기구의 비용 효율성, 이사회 구성 및 의사결정 체제, 세부 사항 협의

2. 제2라운드 제6차 회의(1993.11.8.~12.)

- 대표단(정부대표): 함명철 주유엔대표부 공사
- 회의 결과
 - 심해저개발과 관련된 8개 주요 사항에 대해 선진·개도국 간 의견 차이 절충 및 최종합의 사항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 문제 토의
 - 기술이전, 재검토 회의, 생산정책, 보상기금, 재정위원회, 체약자 재정부담, 협약당사국의 비용 부담 등 쟁점에 관해 집중토의
 - 지난 8월 회의 시 작성, 배포된 Boat Paper에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입장이 반영되고 이 Paper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최종 타결될 가능성
 - 쟁점 중에서 심해저개발 관련 의사결정 절차와 재검토 회의 등을 제외하고 큰 방향에서 합의가 형성 중인바, 차기 회의 시 전체적인 합의 가능 예상

1405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해양수산위원회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발투자가 등록 신청. 전2권 (V.1 5-10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87 / 7 / 1-158

유엔해양법협약상 심해저광물자원개발 체제하에서 한국이 탐사한 심해저광구에 대한 선발투자가 등록 신청 관련 1993.5~10월 중 내용임.

1. 심해저광물자원 개발 추진 현황

- 1991.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 중 유망광구 탐사 등 1단계 사업 완료
 - 한국의 심해저 탐사는 1983~93년 중 태평양 공해상 Clarion-Clipoerton 중동부해역 약 180만 km² 개괄탐사를 통해 유망광구 30만 km² 확보
- 상공자원부는 동 심해저 탐사 결과에 따라 2단계(정밀탐사 및 실용기술 개발) 및 3단계(상업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추진을 희망하면서 1994년 중 상공자원부 명의로 선발투자가 등록 추진

2. 한국의 심해저 광구에 대한 선발투자가 등록 문제

- 한국은 이미 개도국 선발투자가 자격요건 충족
 - 해양법협약 서명 및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 기존 광구등록 국가와 중복 광구 존재 여부 협의 절차, 기술전문가 그룹 검토 등 유엔해양법사무국에 신청서를 내고 등록하는데 12개월 소요 예상

3. 상공자원부, 한국의 선발투자가 등록 추진

- 상공자원부는 1993.10.22. 심해저광물자원개발 2단계 추진을 위하여 선발투자가 등록에 관한 국가 기본방침을 확정하기 위해 외무부 등과 공문으로 협의 개시
 - 태평양 해역에 한국 단독광구를 유엔에 등록, 심해저 자원개발을 통한 니켈, 망간 등 전략 광물자원을 장기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첨단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선진 해양개발국가로의 도약 목표
 - 1994년 초 선발투자가 등록 신청 및 1994년 말까지 등록 완료 목표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발투자가 등록 신청. 전2권 (V.2 11-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87 / 8 / 1-127

1993.11~12월 중 유엔해양법협약상 심해저광물자원개발 체제하에서 한국이 탐사한 심해저 광구에 대한 선발투자가 등록 신청 관련 내용임.

1. 심해저광구 선발투자가 등록 문제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기관 대책회의(1993.11.19.)

- 참가자: 외무부(개최), 상공자원부, 과학기술처, 국방부, 한국해양연구소,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연구소 관계관
- 회의 결과
 - 심해저 광업의 상업적 가능성에 대한 전망 관련, 회의적인 시각도 있으나 한국이 그간 개발 참여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투자비용, 선발투자가제도가 기득권보호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발투자가 등록을 추진한다는 원칙 확인
 - 등록 신청 시점에 적절한 등록 주체가 될 수 있는 민간 주체가 없는 바, 일단 상공자원부를 등록 주체로 등록 추진
 -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일이 1994.11.16.로 확정되고 동 발효 전에 한국의 등록 신청을 심의 할 준비위원회가 1994.2월 단 한차례 밖에 없는바, 최대한 조속히 등록 추진

2. 심해저광구 선발투자가 등록 추진

- 1993.12.3. 경제장관회의,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추진계획 의결
 - 한국이 탐사하여 확보한 태평양 Clarion-Clipperton 해역 유망광구 30만 km² 중 15만 km²를 한국의 단독광구로 유엔에 등록 추진
- 동 의결에 따라 주유엔대표부대사 명의 서한으로 유엔에 선발투자가 등록 신청
 - 동 대사는 12.9. 총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60번째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서가 기탁되어, 동 협약의 발효로 새로운 해양질서 확립의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평가하고, 한국의 심해저광구 선발투자가 등록 방침을 천명

1407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북서대서양 다자 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2.21. 전3권 (V.1 1989-93.7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87 / 9 / 1-245

1989~93.7월 중 한국의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가입 관련 내용임.

1. 주캐나다대사는 1992.5.6. NAFO 수역 조업 규제 관련 아래와 같이 건의함.

- 캐나다는 현재까지 EC(구주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 외교 및 언론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EC와의 분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경우, 다음 단계로서 한국, 파나마를 비롯한 비회원국 조업 중지를 강력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NAFO 사무국은 한국이 희망할 경우, NAFO 총회에 한국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는 NAFO 의장 명의 초청장 발송을 제안한 바 있음.
- 금년 4/4분기부터는 캐나다 측이 과학적 조사를 근거로 회유어족 자원(Straddling Stocks) 보호를 위한 연안국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는 한편, NAF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압력이 예상되는바, 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뉴펀들랜드 어장을 관할하는 NAFO 가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금년 9월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NAFO 회원국과 관련된 정보, 자료의 수집, 회원국 간 분위기 파악 및 대구 이외 어종의 적정 쿼터 확보를 통한 NAFO 가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금년 NAFO 총회에 옵서버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2. NAFO 가입 추진

-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93.6.4. 북서대서양 공해상의 어족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 1979.1.1. 설립된 NAFO에 1993.8월까지 가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동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조약국에 요청함.
- 동 협약 가입신청서를 8월까지 동 협약 수탁국인 캐나다 정부에 제출하여 1993.9월 개최되는 NAFO 정기총회에서 한국의 가입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북서대서양 다자 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2.21. 전3권 (V.2 1993.8-9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87 / 10 / 1-332

1993.8~9월 중 한국의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가입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93.8.17. '북서대서양 다자 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93.8.23. 정부가 NAFO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동 기구의 설립협정인 북서대서양의 장래 다자 간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아래 사항을 보고 하도록 캐나다, 일본, 러시아, 폴란드, 노르웨이, 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동 협약 제17조는 체약당사국이 협약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절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고, 제18조는 국제 공동규제 계획에 따라 체약당사국 상호 간의 승선·검색권 및 이에 기초한 기국의 기소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협약 규정과 같이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상호검색 등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협약의 새로운 경향인바, 이와 관련 국내입법에 참고하고자 하니 NAFO 회원국인 주재국이 동 협약 제17조 및 제18조의 의무이행을 위해 국내 입법한 것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보고할 것

2. '북서대서양 다자 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가입(안)의 국무회의 상정 추진(1993.8.31.)

- 주요 내용
 - 북서대서양 수역 내 어업자원의 보존과 관리
 - 어종별 국별 쿼터 할당
 - 국제 공동규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가입 추진 일정
 - 9월 중순 국무회의 상정
 - 9월 하순 대통령 재가
 - 10월 중순 국회동의안 제출
 - 11월 초순 캐나다 정부에 가입서한 전달 및 발효

북서대서양 다자 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2.21. 전3권 (V.3 1993.10-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87 / 11 / 1-165

1993.10~12월 중 한국의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가입 관련 내용임.

1. '북서대서양 다자 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가입(1993.10.5., 대통령 재가)

- 외무부는 1993.9.23.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표제 협약의 가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
 - 1993년도 정기국회에 표제협약 가입동의안 제출
 - 협약 가입에 대한 국회 동의 후 캐나다 정부에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 통보 서한 전달
 - 한국 발효일자에 공포

2. 국내절차

- 1993.11.26.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통과
- 1993.11.30. 정기국회 통과

3. 외무부 보도자료 배포(1993.12.21.)

- 제목: '북서대서양 다자 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가입
- 주요 내용
 - 정부는 1993.12.21. 캐나다 정부에 '북서대서양 다자 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가입을 통보하는 외무부장관 명의의 서한을 전달함으로써 협약에 정식 가입함.
 - 뉴펀들랜드 어장을 포함하는 북서대서양 어업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보존을 목적으로 1978.10.24. 채택되어 1979.1.1.자로 NAFO의 설립과 함께 발효됨.
 - 회원국: 13개국과 EC(구주공동체)
 - 가입 의의
 - 공해 어업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
 - 공해 어업규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 능력 배양
 - NAFO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어업정보 및 자료의 직접 활용 기대

4. 동 협정은 1993.9.23.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3.12.21. 캐나다 정부에 한승주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 통보서한을 전달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206호).

- 12.23. 관보 게재

기후변화협약 정부 간 협상회의(INC), 제7차. New York, 1993.3.15.-2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87 / 12 / 1-267

정부는 1993.3.15.~3.20. 뉴욕에서 개최된 제7차 기후변화협약 INC(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에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체계, 개도국 자원 및 기술지원, 의사결정 등 제도 및 법적 사항에 관한 제1차 협약당사국 회의 준비

2. 훈령

- 상기 협약 제11조상 재정체계 관련 기금의 규모 산출이 우선이며 기존 국제금융기구와 더불어 별도의 금융체제 고려 필요
-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공여 방법의 구체화가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노력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의사규칙 등 제도 관련 초안 작성 시 명료성이 확보되도록 노력
- 참가국 대표들과 접촉, 각국의 협약 비준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협약 가입 준비 조력

3. 회의 결과 및 평가

- 동 위원회 제2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기구 개편사항, 재정·기술지원 관련사항, 협약당사국 회의와 부속기구의 의사규칙안에 관해 협상
- 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을 위한 재정체계를 처음으로 논의하였으나, GEF(지구환경기금)의 개편 방향, 재정지원의 우선순위와 추가비용의 개념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의 입장차이로 구체적 합의 도출 실패
- 한국대표단은 COP(협약당사국회의)와 GEF 간의 관계정립을 위한 체제 확립 강조 등 적극 참여
- 협약이 조기 발효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적인 협약이행 의무가 예상시기보다 앞당겨 발생할 것에 관한 대책 수립 건의

1411

대한민국 외교부

기후변화협약 정부 간 협상회의(INC), 제8차. Geneva, 1993.8.16.-2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88 / 1 / 1-245

정부는 1993.8.16.~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차 기후변화협약 INC(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에 이석조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의제

-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체계
- 개발도상국 당사국들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 관련사항
-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량 산출과 통계작성 방법론
- 협약의무 공동이행 기준, 협약당사국 총회의 의사규칙안 토의

2. 정부 훈령

- 온실가스 통계방법론과 관련,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한 통계방법론 마련 및 개도국 전문가 참여 확대 추진
- 한국은 온실가스 절감과 관련, 타국과 공동이행이 유리하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
- 협약의 재정체계는 보편적 참여, 정책 결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무상 및 양허성 조건으로 신규의 추가적 재정지원 보장, 자금지원의 예측성 보장 등 원칙에 입각함이 타당

3. 회의 결과

- 재정체계 및 공동이행 문제에 관한 선진·개도국 간 입장차이가 현격
-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 총회를 1995.3.28.~4.7.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동 회의 산하 제1실무위원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거량 통계방법론, 공동이행 문제, 협약 보조기구 등 의제에 관한 보고서 채택
- 제2실무위원회에서는 재정체계의 이행 관련 정책·사업 우선순위 및 선정기준, 당사국 총회와의 연계, 합의된 충분한 부가적 비용 결정, 재원조성 및 소요액 평가 등 4개 의제에 관한 보고서 채택
- 동 회의에서 논의된 배출량 측정방법과 공동이행 기준 문제에 관한 각 국의 의견을 1993.9.30. 까지 제출해 줄 것을 동 정부 간 협상위원회 사무국에서 회의 종료 후 공한으로 요청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개정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10.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8 / 2 / 1-305

정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개정 의정서에 1993.3.10. 가입함.

1. 대만의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개정 의정서 비당사국 지위 확보 시도

- 대만 측은 1992.8.16.~21.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양국 경제각료회담의 의제인 몬트리올 의정서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만의 비당사국 지위부여 문제에 대해 한국의 지지를 요청

2. 동 개정 의정서 한국 가입

- 가입 경위
 - 1990.6월 런던에서 개최된 몬트리올 의정서 제2차 당사자 회의는 오존층 파괴가 가속화되어 현행 의정서 규제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의정서의 규제조치를 강화한 개정 의정서를 채택, 동 개정 의정서는 1992.8.10.자로 발효됨.
 - 1992.5.27.부터 몬트리올 의정서의 가입국이 된 한국은 개정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동 개정 의정서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 가입 의의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노력에 동참
 - 비가입에 따른 불이익 사전방지
 - 개도국에 대한 특수 사정 배려 및 개도국의 의정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체계의 설치·운영
- 개정 의정서 가입에 따른 의무
 - 추가 규제물질의 생산 감축 일정 준수
 - 비당사자에 대한 무역규제 실시
- 주요 내용
 - 당사자는 기금을 통한 추가재원의 확보와 관련 기술에의 접근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특별한 규정이 개도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함을 인정함.
 - 개정 의정서에 추가된 부속서(나)의 물질을 의정서의 규제물질에 포함시키고, 과도물질을 열거한 부속서(다)를 의정서에 추가함.
 - 완전히 할로겐화된 그 밖의 CFC, 사염화탄소 및 메틸클로로포름을 새로이 규제물질에 추가하고 1989년도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이들 각 물질의 단계적 감축일정을 규정함.
 - 개정 의정서 발효 후 1년부터 당사자는 부속서(나)에 열거된 규제물질의 비당사자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함.
 - 당사자는 개도국인 당사자가 제2조(가) 내지 제2조(마)에 정한 규제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포함한 재정적·기술적 협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체제를 설립함.

1413

대한민국-국제법-서-연구-자료



- 개도국이 아닌 당사자는 획득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최선의 대체물과 관련 기술을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인 당사자에게 신속히 이전함.

3. 동 의정서는 1992.12.10. 유엔사무총장에게 한승주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3.3.10.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1168호).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 가입, 1993.3.8. 전2권 (V.2 1992.7월-1993)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8 / 4 / 1-338

외무부는 1993.3.8.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정식 가입함.

1. 가입 필요성

- 한국 해역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빈발하고 대형화되어 보상요구액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보상체계를 보완할 필요
 - 정부 입장: 유류오염 배상체계 확립이 가능하고,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IMO(국제해사기구)의 노력에 협조
 - 피해어민 입장: 피해발생에 충분한 보상(기존 150억 원 가입 후 최대 660억 원)
 - 유조선주 입장: 유류오염 사고 시 선주 단독책임의 위험부담에서 해방
 - 정유사 입장: 추가부담이 예상되나 정유업체가 별도의 Crystal 계약에 들어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감경

2. 동 조약은 1992.7.16.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1992.12.8. IMO 사무총장에게 한승주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3.3.8.자로 발효됨(조약 제1165호).

- 3.6. 관보 게재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8.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8 / 5 / 1-133

정부는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의정서 가입을 추진하여 동 협약이 1993.3.8.자 한국에서 정식 발효됨.

1. '69 민사책임협약'의 '76 의정서' 개요

- 주요 내용: 화폐단위를 IMF(국제통화기금) SDR(인출권)로 변경
- '76 의정서' 가입의 필요성
 -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개정상법(1993.1월 시행)에서 적용 제외되어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동법 하위법령 제정 시까지 사실상 시행 곤란
 - '76 의정서' 가입 시 선주 책임 한도액이 1/10로 감소
 - 가입을 추진 중인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1971년 국제협약'과 손해산정 단위를 통일시켜 유류오염에 관한 손해보상 체계를 일관되게 운용함.

2. '69 민사책임협약'의 '76 의정서' 가입 추진 경과

- 1992.1월 법무부, 환경처, 수산청 협의 완료
- 1992.8~9월 교통부, 외무부, 법제처 심사

3. 동 조약은 1992.10.30.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1992.12.8.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게 한승주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3.3.8.자로 발효됨(조약 제1167호).

- 3.6. 관보 게재

바젤협약 가입국 회의, 제1차. Piriapolis(우루과이), 1992.11.30.-12.4.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88 / 6 / 1-236

정부는 1992.11.30.~12.4. 우루과이 피리아폴리스에서 개최된 제1차 바젤협약 가입국 회의에 정래권 외무부 과학환경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53개국(가입국 27개국, 옵서버국 26개국), 7개 국제기구 및 7개 NGO

2. 참가 목적

- 바젤협약 채택 시 합의한 결의안 이행조치 경과에 대한 토의 동향 파악
- 동 협약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과 향후 활동계획에 관한 각국 및 국제기구의 동향 관찰
- 동 협약 관련 각국의 국내입법 동향 파악 및 관련자료 수집 등

3. 회의 결과

- 협약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 토의
 - 책임과 보상에 관한 의정서 체결, 위급상황에 대비한 회전기금 설립, 기술지침서 채택 등 의결사항 검토
- 기타 의결사항
 - 사무국 지정, 재정규칙 및 예산편성
- 차기 회의 시기 결정, 기술훈련센터 설치 검토

바젤협약 관련 국가 간 기술협력 및 동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88 / 7 / 1-221

1992~93년 중 바젤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의 국가 간 기술협력 동향에 관한 문서임.

1. 각국 동향

- 바젤협약 비준 및 이행 관련 EC(구주공동체) 집행위가 제안한 폐기물의 국제교역규정이 구주의회 환경위 반대로 추진에 난항(1992.2월, EC대표부)
-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와 '유해폐기물의 교역통제 및 처리' 양자협정 체결(2월, 주미국대사관)
- 독일 경제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에 의거한 양자협정 제의 (1993.6월, 주한 독일대사관)
- 미군기지 환경 문제(6월,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유해폐기물 관리 워크숍 개최(8월, 주태국대사관)
- 파나마 의회, 방사성물질 적재 선박 영해통과 금지 추진(11월, 주파나마대사관)

2. 참고자료

- EC 채택 유해폐기물 리스트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결정(92/39, 유해폐기물 국가 간 이동자료)
- 한국 폐기물관리법(영문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영문본) 각 1부

1419

대한민국 외교부

바젤협약 기술실무회의, 제4-5차. Geneva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88 / 8 / 1-76

1993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5차 바젤협약 기술실무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제4차 회의(1993.6.2.~4.)

- 참가자
 - 바젤협약 당사국 14개국, 옵서버 6개국, 5개 국제기구, 3개 NGO
 - 정부대표: 이석조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 주요 토의내용
 - 기술지침 기본문서
 -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지침
 - 이용 목적의 유해폐기물 국경이동 문제
 - 이용할 목적의 오존파괴물질의 국경이동 문제가 바젤협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2. 제5차 회의(1993.9.1.~3.)

- 정부대표
 - 김기환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
- 주요 토의내용
 -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지침안
 - 재활용 목적의 유해폐기물 국경이동 문제
 - 새로운 기술지침 작성 분야
 - 오존파괴물질의 국경이동 문제
 - 기술작업반의 향후 역할 문제
 - 유해폐기물 HS 분류 문제

바젤협약 배상책임의정서 작성회의, 제1차. Geneva, 1993.9.13.-1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88 / 9 / 1-177

정부는 1993.9.13.~1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바젤협약 배상책임의정서 작성회의에 김기환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주요 토의사항

- 의정서의 목적
 -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에 따른 피해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한 제도수립을 위한 것
- 적용 범위: 방사능 물질로 인한 피해, 정규선박 운행에 따른 피해는 제외
- 배상책임 한도 및 보험가입 문제
- 배상청구 시효, 배상책임자, 배상범위, 면책사유, 불법 유해폐기물 이동피해 책임
- 긴급응급조치기금(Emergency Fund) 및 배상기금(Compensation Fund) 모금기준 및 모금방법
- 국가책임, 관할법정, 판결의 상호인정 및 집행 등

2. 회의 결과

- 배상책임 한도 및 보험가입 문제
 -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은 무제한인 것으로 하고, 유해폐기물 수출국, 경유국 및 수입국은 이동 관계자가 보험, 채권 구입 기타 재정적 보장 장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함.
 - 최소 보험 보상액 등 재정 보장액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 확정하도록 하며, 향후 정기적으로 동 금액을 검토해 나가기로 함.
- 배상청구 시효
 - 배상청구권자가 피해 사실, 피해 원인, 관련 책임자를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배상 청구하도록 함.
 -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 발생 후 30년이 지나면 배상청구를 못하도록 잠정 채택함.
- 긴급응급조치기금 및 배상기금
 - 긴급응급조치기금 및 배상기금 모금기준 및 모금방법 등 구체적 문제보다는 우선 관련 정보 수집 후 기본원칙 문제부터 차기 회의에서 재토의하기로 함.
- 국가책임
 - 배상책임은 민사책임 문제이며, 국가가 관련된 과실이 있을 경우 바젤협약상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가 책임조항을 삭제하자는 입장과 본 사항이 상기 이동 관계자들의 배상이 부족할 경우 관련 국가의 잔여책임을 규정한 것이므로 동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됨.

1421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바젤협약 이행 특별위원회, 제1차. Geneva, 1993.10.26.-28.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88 / 10 / 1-343

정부는 1993.10.26.~28.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바젤협약 이행 특별위원회에 이석조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토의내용

- 바젤협약 이행안내서(Manual)
- 유해폐기물 국경이동 관련 양자, 다자 및 지역협정의 바젤협약과의 합치 여부(협약 제11조)
- 유해폐기물 불법거래 감시 및 방지 문제
- 당사국의 협약 관련 정보제출 의무(협약 제13조)
- 훈련 및 기술이전센터 설립 문제
- 협약분담금 배정 등 재정 문제
- 유해폐기물 안전기술지침(Technical Guidelines) 문제

2. 관찰 및 평가

- 1994.3월 개최 예정인 제2차 COP(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준비회의로 유해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지침, 1994년 협약분담금 배정, 훈련 및 기술이전센터 설립 문제 등 주요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논란 없이 진전이 있었음.
- 폐기물 수출국인 대부분 선진국은 자국 산업계 영향을 고려, 재활용 목적의 유해폐기물 국경이동 관련 기술직업반지침(안)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금번 위원회에서 채택한 유해폐기물 국경이동 관련 양자, 다자 및 지역 협정의 바젤협약과의 합치 여부 평가요건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강조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임.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1 1972-73)

생산연도 197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8 / 11 / 1-272

정부는 1973.2.12.~3.2. 미 국무부에서 개최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체결을 위한 전권 대표회의에 황호을 주미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81개국 대표단, 8개국 옵서버 대표단, 6개 국제기구 대표

2. 정부 훈령

- 회의 자료인 Working Paper(Appendices)가 1973.1.8.에 배포됨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고,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양지할 것
- Working Paper의 서명(제14조), 가입(제17조) 조항은 초안대로 채택되도록 주력할 것
- 특정 한국산 야생식물(별지 1)이 초안 부록에 포함, 심의 대상이 되도록 적절히 회의에 제출할 것
- 한국이 야생생물의 보존 및 교역에 관한 국내 법규(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유념할 것

3. 회의 결과 중 한국 관련사항

- 동 회의에서 합의된 CITES 협약은 1973.4.30.까지는 미국에서, 1974.12.31.까지는 스위스에서 서명, 가입이 개방됨.
- 인삼 문제
 - 미국 대표가 야생인삼(Panax Quinquefolia)을 Appendix I 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는바, 이 경우 한국산 재배인삼(Panax Schinseng)이 절대교역 금지대상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국 측에 Appendix II(허가 획득 시 수출 가능)에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이를 관철시킴.

142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인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2 1974)

생산연도 197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9 / 1 / 1-444

1424

1. 주스위스대사,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서명 관련 현황 및 절차 보고(1974.6월)

- 서명 절차는 외무부의 위임 및 훈령에 따라 주스위스대사가 서명할 수 있으며, 비준은 추후 가능
- 동 협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1973.3월부터 서명하기 시작하여 서명국 중 1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야 발효됨.
 - 현재 서명국은 48개국이나, 비준국은 미국과 스위스임.
- 전체 서명국 중 유보 선언국은 없음.

2. CITES 협약 문안 구성

- 용어 정의
 - 종, 표본, 교역, 재수출, 당사국 등
- 기본원칙
 - Appendix I : 교역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멸종위기에 있는 모든 종
 - Appendix II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나, 교역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모든 종
 - Appendix III : 특정 당사국이 자국 관할권 내에서 그 이용을 방지 또는 제한을 인정하거나, 교역의 통제를 위하여 여타 당사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종
- Appendix I, II, III에 포함된 종의 표본에 대한 교역 규제
- 허가 및 증명서
- 교역에 관한 면제 및 기타 특별규정
- 체약국이 취해야 할 조치
- 과학 및 관리 당국
- 협약 비당사국과의 교역
- 당사국 회의 등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3 1979-88)

생산연도 197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9 / 2 / 1-247

1.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발효 실태 및 한국의 가입 검토 (1979년)

- 발효 시기 및 비준국 현황
 - 1975.7월 발효, 당사국 59개국
- 주요 내용: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교역 금지대상의 종류와 정도 규정
 - Appendix I : 절대적 금지
 - Appendix II : 상대적 금지
 - Appendix III : 체약국 관할권 내 규제
- 가입의 의의
 -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
 - Appendix I, II, III에 규정된 한국의 희귀동식물 보호(동물 20여 종, 식물 10여 종)
 - 약어 등 해외 희귀품종 국내 반입 금지 및 압수 가능
 - 협약 가입 후 국내 서식 희귀종의 보호대상 추가 지정 가능
- 한국의 가입 지연 이유
 - 전매청은 Appendix II에 규정된 미국산 산삼과 한국산 재배인삼의 학명 혼동으로 인한 수출 장애 우려

2. CITES 가입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1988.10월)

- CITES 가입 필요성 재확인
- 민원 창구 일원화
 - 환경청, 산림청, 수산청 간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나, CITES 가입 후 업무의 핵심은 대민홍보임을 감안하여 창구 일원화 필요성
- CITES 사무국과의 정부 창구는 외무부가 담당
- 가입 시기를 미리 정할 필요는 없으나,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가입 절차 돌입
- 환경청 주도로 추진계획 작성

1425

대한민국 자연유산·문화유산·무형유산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4 1989-91)

생산연도 197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9 / 3 / 1-297

1426

1.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 검토 배경(1991.2월)

- 범세계적 자연보호 노력에 호응 필요성
- 국제사회의 요청
 - 1979년부터 CITES 사무국, UNEP(유엔환경계획), IUCN(국제자연보존연맹) 요청
 - CITES 사무총장 방한(1986.3월, 1989.4월) 시 한국의 가입 추진 현황 문의
 - 1990.10월 필립공(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부군)은 WWF(세계야생생물기금) 총재 자격으로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에서 한국의 협약 가입 요청
- 가입 추진 지연 이유
 - 동식물 보호에 대한 각종 국내 법규의 중복 및 분산
 - 협약 가입을 주도할 단일 관할부처의 부재
 - 규율대상 동식물의 식별 전문가 부재
- 향후 추진 방향
 - 관계부처 회의 소집, 협약문 번역, WWF 총재에 대한 외무부장관 답신(한국의 가입 추진 현황 전달) 등

2. 필립공의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1991.12.2.자)

- CITES 협약에 한국의 금년 내 가입계획을 환영하고, 차기 CITES 당사국 회의(1992.3.2.~13., 교토)에 정회원국으로 참가 요청
- 아래 요지의 외무부장관 명의 답신 준비
 -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입법 동향 및 1992년 하반기 중 가입추진 의사 표명
 - 교토 당사국 회의에는 일단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 확인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5 1992)

생산연도 197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9 / 4 / 1-186

1.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1992.1.17.)

- 참가자
 - 이종무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주재로 상공부, 보사부, 환경처, 산림청, 관세청, 수산청, 문화재 관리국 담당관
- 주요 토의사항
 - 국내 입법 관련사항(관련 법률 간 형평 및 일관성 문제, 벌칙규정의 형평 문제 등)
 - 협약 가입을 위한 필요 조치(유보사항 여부, 과학 및 관리 당국 지정 등)
 - 제3차 CITES 당사국 회의(1992.3.2.~13., 교토) 참가 문제(옵서버 자격으로 참가)

2. CITES 협약 및 IUCN(국제자연보존연맹) 가입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1992.10.8.)

-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주재
- 회의 결과
 - CITES 협약 1993년 초 가입 결정(1992년 말까지 국내 입법 완료)
 - 국제 자연보전 노력 동참을 위해 IUCN 가입추진 합의
 - UNEP(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특사 방한(코볼소 불 불법거래 문제 관련) 준비

1427

대한민국외교부에서
영어판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6 1993.1-4월)

생산연도 197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9 / 5 / 1-279

1428

1.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1993.3월, 환경처 작성)

- 협약 조기 가입의 시급성
 - 1975년 발효 이래 118개국 이 가입(군소 도서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예멘이 미가입)
 - 미가입에 따른 국제적 비난, 국가 이미지 실추, 경제 보복 등 우려
- 가입 준비상황
 - 부처별 소관 과제 추진 일정
 - 가입 후 협약 업무 전담부서 지정 등
- 가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 국내법 재정비 문제
 - 사항, 응답 등 관련 일부 종에 대한 유보 문제
 - 코뿔소 뿔 유통단속 등 가시적 성과 미흡 문제
- 향후 조치계획

2. CITES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대책 동향

- 제29차 CITES 상임이사국 회의(1993.3월)에서 한국에 대한 결정
 - 코뿔소 뿔 교역 규제에 대한 정부 조치(CITES 가입 문제 포함)를 1993.7월까지 작성, 제출 요청
 - 차기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한국 등 CITES 미준수 국가에 대한 무역제재 결의안 채택 예상
- 3~5월 수차례 관계부처 회의 개최
 - 상반기 중 가입서 기탁을 위한 국내조치(유보 문제)와 코뿔소 뿔 거래 단속에 대한 조치계획 재확정
- 5월 CITES 사무총장, WWF(세계야생생물기금) 조사단 및 주한 미국대사관 등 조사와 문의
 - 6월 이전에 CITES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 검토가 임박함을 통보
- 6월 미국 정부는 6월 말 이전 협약 가입 및 코뿔소 뿔 거래의 효과적인 단속 결과를 전제로 한국을 무역제재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7 1993.5월)

생산연도 197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9 / 6 / 1-201

1.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 관련 관계부처 간 논의 동향(1991~93년)

- 1991~92.11월
 - 협약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 입법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회의 수차례 개최
 - 1991.12.31.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 1992.12월 차관급 관계부처 회의에서 1993년 상반기 중 협약 가입을 추진하기로 합의
- 1993.3월 국장급 관계부처 회의에서 상반기 가입서 기탁을 위한 국내 조치 최종 점검
 - 3~5월 협약 가입 시 유보대상종의 축소 문제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 3차례 개최
- 1993.6.2.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6월 중 가입방침 확정
- 1993.6.23. 국무회의 심의
- 1993.7.9. CITES 가입서 기탁(1993.10.7. 발효)

2. CITES 협약 가입에 따른 유보 문제

- 보사부 측이 사향, 웅담, 천산갑, 구판 등 4개 품목(Appendix II) 유보를 계속 주장
- 1993.5.31.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정
 - 사향, 웅담에 대한 3년간 유보 요청
 - 천산갑, 구판에 대해서는 유보 요청 철회

1429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관리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8 1993.6-7월)

생산연도 197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9 / 7 / 1-373

1.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 공식 발표

- 1993.7.9. 외무부는 주스위스대사관을 통해 스위스 연방정부에 CITES 협약 가입서를 기탁하며, 90일 후인 1993.10.7.부터 한국에 대해 발효한다고 발표
 - 유엔환경기구, WWF(세계야생생물기금), TRAFFIC 등 국제환경단체가 한국이 환경보호에 소극적이라고 지목해왔으나, CITES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인식이 바뀌게 될 것임을 강조
 - 한편 사향 및 웅담을 사용하는 국내 유관업계의 적응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협약 Appendix II에 포함되어 있는 사향노루 및 곰에 대해서는 3년간 유보하였다고 설명

2. CITES 협약 가입 당사국 수(1993.7월 현재)

- 121개국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V.9 1993.8-10월)

생산연도 197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89 / 8 / 1-251

1.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이행계획 작성(1993.9월, 환경처)

- 1993.10.7. 협약 발효
- 이행계획 개요
 - 법령 정비
 - 관리 및 과학 당국 지정
 - 통합공고 제정·개정
 - 협약 관련 발급서식 통일
 - 유보 품목(사향, 웅담) 대응계획 수립
 - CITES 협약 규제대상종 통관 시 검색 강화
 - CITES 연례 국가보고서 작성
 - 협약 관련 업무처리 지침 작성
 - CITES 규제대상 동식물 수출·입항 지정
 - CITES 규제대상 동식물 및 가공품 한국어판 식별도감 발간 및 배포

2. CITES 협약 가입 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1993.10월, 외무부)

- 헌법 제60조 1항 중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여부 관련, '입법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
 - 특정 협약 가입으로 기존 국내법의 개·폐가 필요한 경우
 -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경우
-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
 - CITES 협약 가입 시에는 이미 국내 입법(자연환경보전법, 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약사법)이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방지할 경우 한국의 대외 이미지 손상이 명백하기 때문임.

3. 동 조약은 1993.6.23.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3.7.9. 스위스 연방정부에 한승주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3.10.7.자로 발효됨(조약 제1194호).

- 10.8. 관보 게재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제1차. New York, 1993.4.19.-23. 전3권 (V.1 개최결의, 1992)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89 / 9 / 1-179

1993.4.19.~23.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관련 내용임.

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공해 어업전문가 회의(1992.9.7.~15., 로마)

- 참가자
 - 66개국 대표, 15개 국제기구 대표, 3명의 옵서버 대표
 - 한국은 수산청 원양생산과장 등 4명
- 회의 결과
 - 원양어업국과 연안국 간 대립 속에서 유엔해양법 협약의 원칙에 따라 공해어업 관리를 추진하며, 전통적인 공해어업 자유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책임 있는 어업 문제가 강하게 제기
 - 200해리 EEZ(배타적경제수역)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자원 관련 공해 조업 규제 필요 주장

1432

2.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개최 추진

- 1992.11.6.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후속조치로 뉴질랜드는 동 회의 개최를 위한 유엔총회 결의안 준비
 - 이에 대해 외무부는 연안국의 이익에 치우친 초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및 주유엔대표부를 통한 교섭 추진
 - 11.17. 뉴질랜드 측은 한국 측의 의견을 상당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한바, 한국 측은 뉴질랜드 결의안 동의
- 11.21. 및 11.23. UNCED 후속조치 관련 AD HOC 그룹은 뉴질랜드 수정안 토의, EC(구주공동체) 등은 이견 제시 등
- 11.25. 최종 타결, 동 회의는 3주간 개최되는 것으로 타협
 -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 및 1992.5월 책임 있는 어업에 관한 칸쿤 선언 상기
 - 1993년 유엔에서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정부 간 회의 개최
 - 어족자원의 보존·관리 관련 문제점 도출, 국가 간 어업협력 증진, 권고안 작성 등 임무 부여
- 동 결의안은 유엔총회 제2위원회에서 12.16. 채택, 12.22. 총회 원안 통과
 - 동 결의 채택 즈음, 한국 측은 공해상의 생물자원 보존조치는 과학적인 조사에 근거해야 하고, 공해조업의 비중은 전체 어업의 5%에 불과하며, 어업자원 보존은 연안국과 조업국의 공정하고 평등한 책임분담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함.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제1차. New York, 1993.4.19.-23. 전3권 (V.2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90 / 1 / 1-285

정부는 1993.4.19.~23.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에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도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사전준비

- 회의 의장 선임 문제
 - 동 회의 의장으로 아주그룹에서 피지 출신 해양법 전문가 S. Nandan을 추천, 자메이카 출신 후보와 경합 결과 최종 피선
- 회의 일정(유엔사무국 발표)
 - 조직회의(1993.4.19.~23.), 본회의(1993.7.12.~30.)

2. 정부 훈령

- 의장단 구성: 의장 선출건은 회의 컨센서스를 존중하되, 금번 회의시 연안국과 조업국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임을 감안하여 의장의 중립과 공정성이 중요함을 공적·사적으로 적극 개진하고, 부의장 선출시 반드시 조업국이 포함되도록 지역 안배가 배려되어야 함을 지적 바람.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한국의 부의장 입후보 방안도 적극 추진 바람.
- 의사규칙: 조업국의 숫자가 소수임에 비추어 연안국의 수적인 우세를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 바람.
- 금번 회의 논의가 한국 원양어업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며, 조업국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임을 감안하여, 일본, EC(구주공동체) 등 여타 조업국들과의 적극적인 공동입장 모색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바람.

3. 참가자

- 64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

4. 회의 결과

-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표결은 실질 문제에 관해 출석 및 투표수의 2/3 이상, 절차 문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공해자원의 보존과 최대 지속적 생산성 유지라는 양면이 균형을 잡고 있는 유엔해양법 협약 규정의 테두리를 유지하며, 연안국의 관할권을 확대하거나 공해 어업권을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통적으로 강조

1433

대한민국 어업관리위원회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제1차. New York, 1993.4.19.-23. 전3권 (V.3 각국 입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90 / 2 / 1-146

1993.4.19.~23.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관련 각국 입장 내용임.

1. 공해어업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 회의(Meeting of Like-minded States in Preparation for the UN Conference on High Seas Fisheries)(1993.1.21.~24., 캐나다 뉴펀들랜드 세인트존스)

- 참가자: 연안국 위주로 초청된 49개국 대표
 - 한국, 일본, EC(구주공동체) 초청 배제
- 경계 왕래 어족(대구, 명태 등)의 전체적 현황, 공해어업의 관리원칙, 개도국의 특별한 문제, 공해어업의 감시·통제 및 강제집행 등 논의, 상기 유엔회의 시 연안국 입장 연대 및 강화 기도
- 캐나다는 연안국의 공해에 대한 특권(special interest) 주장, 연안국의 EEZ(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보존조치의 공해상 연장 적용, 과학적 증거 불비에도 자원 보존 관련 예방적 조치 강구 등 주장

2.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관련 각국의 입장

- 미국은 캐나다와 달리 공해어업 규제를 위한 범세계적 질서규정협정체제에 반대하며 고도 회유성 어족(참치 등)의 경우 경계 왕래 어족과 구별되어 연안국의 영향이 보다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 유지
- 일본은 공해어업자원 관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 어업국과 조업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적절한 어업관리기구 등을 통해 상호협력하고 과학적인 정보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
- 호주는 공해상 어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태의 협력적 감시 및 집행체제가 필요하며, 공해어업 관리를 위해 예방적 접근을 포함한 보존조치 필요 입장
- 중국은 공해어업에 대한 연안국의 일방적 규제와 간섭에 반대하며, 조업국 간 공동대처 필요 입장
- EC(구주공동체)는 경계 왕래 어족의 보호 관련 일방적으로 조업국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일방적으로 연안국이 관리규칙을 수립 및 강요하는 것도 불용 입장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제2차. New York, 1993.7.12.-30.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90 / 3 / 1-238

1993.7.12.~30.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관련 내용임.

1. 본회의 대비 사전회의(1993.5.24.~25., 뉴욕)

- 캐나다는 공해어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 및 어업분쟁 해결 기관의 유엔 내 설치 주장
- 미국은 캐나다 주장에 반대, 유엔회의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나 지침 채택 입장
- 한국 측은 1993.6.8.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본회의 토의 주제로 공해 및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현행 보존 및 관리 조치의 개선 등 9개 항을 유엔사무국 측에 전달
 - Nandan 회의 의장은 6.18.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토의 주제 및 설명 송부

2. 한국대표단

- 서대원 주유엔대표부 공사(수석대표) 외 외무부, 수산청 관계관 및 학계, 업계 전문가

3. 주요 의제

- 협력을 통한 보존 및 관리조치
- 협력조치
- 지역수산기구 및 제도의 책임, 보존 및 관리조치 이행확보
- 공해어업 보존 및 관리조치 실시
- 지역기구협약 및 협정의 비당사국 문제

4. 정부 훈령

- 효율적인 자원 보존을 위하여 어종의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소지역적 또는 지역적 협력 체제가 적당하며, 이미 FAO(유엔식량농업기구)를 통해 책임 있는 어업의 행위 준칙이 합의 단계에 있으므로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비구속적 결의안 내지 선언 수준의 합의 추진 지지
- 한국대표단 기조연설문 작성
 - 유엔해양법 협약의 원칙 하에서 연안국 및 조업국 공히 최대 지속 가능한 어획을 위해 협력할 의무 강조
 - 경계 왕래 어족과 고도 회유성 어족은 구별되어 획일적 규제에 둘 수 없으며, 고도 회유성 어족의 광범위 서식이동 성격을 감안 필요

1435

대한민국 어업관리청



- FAO에서 공해조업준칙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작업 방지 필요
- 방대한 EEZ 내 자원이 연안국 배타적 관할에 속하는 것에 비해 공해조업은 전체 어획의 5%에 불과한바, EEZ의 자원보존 관리에 중점 필요
- 공해어업의 규제는 최고의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입각 및 실시 원칙 강조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제2차. New York, 1993.7.12.-30.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90 / 4 / 1-41

정부는 1993.7.12.~30.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에 서대원 주유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09개국(EC(구주공동체) 포함)

2. 회의 결과

- 회의 토론 내용을 요약한 “Negotiating Text”(협상초록) 채택
- 연안국과 조업국 간 입장차이로 합의도출 실패
 - 차기 회의를 1994.3월 및 8월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 한국은 EC, 일본 등 주요 원양 어업국과 공동대처, 공해어업 규제를 위한 연안국들의 기도를 일단 저지
- 연안국은 국제적 규제조치를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체결할 것을 주장한바, 조업국은 자율에 근거하는 권고로 해야 한다는 규제형식부터 세부내용까지 입장 차이 노정
- 차기 회의 시 각국 교섭의 토대가 될 협상초록을 채택, 이는 향후 협상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속하는 지위 미부여
- 차기 회의 이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전문가 연구를 통해 수산 분야에서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및 최대 지속가능한 생산개념의 적절성 등 검토 실시 예정

3. 여타 동향 및 자료

- 유엔어족보존회의 참석 결과(수산청 및 한국원양어업협회 작성)
- UN Conference on Straddling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an Analysis of the 1993 Sessions(1993.9월, 모리타기 하야시 유엔사무국 해양법과 법무관)
- 1993.11.4. 및 11.19. 상기 회의에 관한 제48차 유엔총회 결의안에 관한 협의 개최 및 문안 조정
 - 한국 대표는 1994.3월 개최될 회의를 위해 FAO 검토서의 조기 마련 필요 문장 포함 제안 및 반영
 - EC는 동 결의안에 공해상의 전반적인 생물자원이라는 표현에 반대, 상기 특정어종에 국한 주장
 - 차기 본회의 1994.3.28.~4.15. 개최 합의
 - 유엔총회 산하 제2위원회에서 동 위원회 의장의 발언(동 회의는 어족자원 문제 해결 국한)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12.10. 채택

1437

대한민국 어업법률사 연구회

카타르·바레인 간 영토분쟁

생산연도 1986-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90 / 5 / 1-121

1986~93년 중 카타르·바레인 간의 영토분쟁 관련 내용임.

1. 카타르·바레인 영토분쟁

- 1971.12월 영국이 걸프지역에서 철수한 이래, 카타르와 바레인은 양국 간 해상에 위치한 Hawar 및 Fasct Al-Dibel 두 섬의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함.
 - 카타르, 바레인 양국 간의 해상에는 많은 유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Fasct Al-Dibel 섬은 썰물 때만 물 위로 드러나는 산호섬임.
 - 사우디와 UAE(아랍에미리트공화국)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는 두 섬을 둘러싼 무력시위가 빈발하게 일어남.
- 카타르가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해결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바레인은 사우디, UAE 등 GCC(걸프협력회의) 중재에 의한 해결방식을 선호하는 가운데 1993년 말 현재 ICJ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 중임.

2. 양국은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건을 전 세계에 회람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1986.3월 및 5월 해당 재외공관을 통해 각각 카타르 및 바레인의 문건을 접수함.

벨리즈·과테말라 간의 영유권 분쟁

생산연도 1982-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90 / 6 / 1-110

1982~93년 중 벨리즈·과테말라 간 영유권 분쟁 관련 내용임.

1. 과테말라의 대벨리즈 공식입장

- 1991.8.14. 과테말라 정부는 벨리즈 국민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최초의 공식입장 발표
 - 과테말라 헌법과 국제법의 정신에 따라 벨리즈 국민의 자결권 인정을 선언하며, 앞으로 영토 분쟁을 위한 교섭을 계속할 것임.

2. 공식입장 발표 배경

- 벨리즈의 국제적 승인 추세
 - 1991.1월 벨리즈 OAS(미주기구) 가입
 -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 중미국가들은 벨리즈를 역내국가로 수용 인정
- 영국 측의 과테말라·벨리즈 간 비밀협상 종용
- 과테말라·벨리즈 간 비밀협상 개시
 - 1991.7월 말 마이애미에서 과테말라 측 Mulet 의원과 벨리즈 측 Leslie 주영국 벨리즈대사 간 비밀협상 개시

3.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발표 및 영토분쟁 지속

- 과테말라 정부는 1991.9.5. 양국 간 평화공존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독립국가인 벨리즈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벨리즈의 독립을 묵시적으로 승인
- 과테말라와 벨리즈 양국은 9.11.자로 외교관계 수립을 공식발표
- 양국 간 과테말라의 카리브해 진출권, 일부 도서의 이용권을 둘러싼 분쟁은 지속

ICJ(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선거. 전2권 (V.1 1992-93.6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90 / 7 / 1-179

1992~93.6월 중 ICJ(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선거 관련 내용임.

1. ICJ 판사 입후보자 및 지지 요청 공한(후보자 이력서 첨부)

- 일본: Shigeru Oda 현 ICJ 판사
- 캐나다: Jules Deschenes 판사
- 중국: Shi Jiuyong 외교부 법률고문
- 가나: Samuel L. B. Asante 헌법초안위원장
- 헝가리: G. Herczegh 헌법재판소 부소장
- 카보베르데: Jose Luis Jesus 주유엔대사
- 우간다: F. Ssekandi 유엔 법률국 부국장
- 케냐: Andronico O. Adede 유엔 법률부서 부국장
- 시에라리온: A. G. Koroma 주유엔대사
- 튀니지, 독일, 불가리아 후보 등

2. ICJ 판사 보궐선거

- 사유: 1993.1.14. 사망한 Manfred Lachs 판사(폴란드) 후임 선출
- 선거일시: 1993.5.10.
- 결과: G. Herczegh 헌법재판소 부소장(헝가리)이 후임판사로 피선(임기는 1994.2.5.까지)

ICJ(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선거. 전2권 (V.2 1993.7-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90 / 8 / 1-161

1993년 제48차 유엔총회에서 1994.2.5.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ICJ(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선출함.

1. ICJ 선거 결과

- 선거일시 및 장소: 1993.11.10. 유엔본부
- 임기: 9년(1994.2~2003.2월)
- 선출된 ICJ 재판관(안보리, 총회 득표수)
 - 일본: Shigeru Oda(15표, 163표)
 - 독일: Fleishhauer(15표, 152표)
 - 중국: Shi Jiuyong(15표, 147표)
 - 헝가리: Herczech(13표, 3차 투표 111표)
 - 시에라리온: Koroma(4차 투표 15표, 145표)

2. ICJ 입후보 현황

구분	입후보국	한국 지지국	선거결과	비고
안보리상임이사국	중국	중국	중국	안보리상임이사국은 관행상 ICJ 1석 보유
아시아	일본 필리핀	일본	일본	재임후보
서구	독일 캐나다	독일	독일	캐나다후보 사퇴
동구	헝가리 불가리아	헝가리	헝가리	1993.5월 보궐선거 시 헝가리 지지
아프리카	케냐, 튀니지, 가나, 시에라리온, 우간다, 잠비아, 카보베르데	케냐, 2차 선거부터 시에라리온 지지	시에라리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회의, 제236-239차. New Delhi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90 / 9 / 1-122

1993년 중 제236~239차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연락관회의가 뉴델리에서 개최됨.

1. 제236차 회의(1993.3.11.)

- 참가자: 이집트, 방글라데시, 중국, 북한 등 18개국 연락관
 - 인도 주재 회원국 대사관에서 참석
 - 회의 주재: AALCC 사무국 총장
- 의제: 제235차 연락관회의 의사록 승인, 제32차 AALCC 총회 보고, 사무국 이전 문제, 자문 패널 구성 문제 등
- 회의 결과: 상기 의사록 승인, 지난 총회 결과 설명, 사무국 본부 카타르 이전 경과 등 협의

2. 제237차 회의(1993.5.19.)

- 참가자: 이집트, 방글라데시, 중국, 일본, 북한 등 21개국 연락관
- 의제: 직전 연락관회의 의사록 승인, 사무국 이전 관련 자문위원회 보고, 유엔 국제법 10년 관련 법적 주제에 관한 카타르 도하 회의 보고, 사무총장의 유엔본부 해양법 비공식협의 참석 보고 등
- 회의 결과: 사무국 이전에 따른 제반 행정·법적 문제 협의 및 여타 의제는 보고 청취

3. 제238차 회의(1993.8.12.)

- 참가자: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 18개국 연락관
- 의제: 사무총장의 제네바 등 출장 및 AALCC의 세계인권회의 참석보고, 사무국 이전 문제 등
- 회의 결과: 사무국 이전 시 건축, 본부협정 체결, AALCC의 명칭변경 문제 등 협의 및 여타 의제는 보고 청취

4. 제239차 회의(1993.9.22.)

- 참가자: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 20개국 연락관
- 의제: 1994년도 AALCC 총회 개최, 유엔 개최 각국의 법률자문관 회의 참석, 사무국 이전 문제 등
- 회의 결과: 1994년도 제33차 AALCC 총회 개최 준비 보고 및 동 회의 시 특별 세션으로 민영화 관련 경제·법적 문제 토의 계획 설명 및 참가자 질의 및 토의, 사무국 이전 관련 카타르 정부의 유치 승인 및 본부협정 초안 완성 보고 및 토의, 기타 의제에 관한 사무국 보고 청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32차. Kampala(우간다), 1993.2.1.-6.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90 / 10 / 1-144

정부는 1993.2.1.~6. 우간다 캄팔라에서 개최된 제32차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에 이정빈 주인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AALCC 43개 회원국 중 남북한을 포함한 30개국, 5개 옵서버국, 12개 국제기구

2. 주요 의제

- 개도국 경제법센터 설립
- AALCC 본부 건물 신축 경비 분담금 문제
- 회원국 확대 및 옵서버 허용 문제
- 제44차 ILC(국제법위원회) 회기 작업보고 등

3. 회의 결과

- 본부 협정 및 사무국 이전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 회의의 최대 성과인바, 카타르 측 제안에 대다수 회원국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임.
 - 인도가 총회 종료 후 1개월 내 카타르 정부가 총회에 제출한 제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무국은 도하로 이전될 것임.
- 카타르 측이 AALCC 사무국 유치, 1995년도 제34차 총회 유치 및 1994.1월 국제법 세미나(도하) 개최 의사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취한 점이 특이할 만함.

144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32차. Kampala(우간다), 1993.2.1.-6.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90 / 11 / 1-144

1993.2.1.~6. 우간다 캄팔라에서 개최된 제32차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 관련 자료임.

1. 제32차 총회 의장 당선 인사(영문)
2. UN DECADE OF LAW 관련 한국대표단 성명(영문)
3.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영문)
4. 제32차 AALCC 총회 참가자료(국문)
5.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제도문제(지속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6.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 가입 참고자료 등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본회의, 제26차. Vienna, 1993.7.5.-2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90 / 12 / 1-68

정부는 1993.7.5.~23.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6차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본회의에 김대식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각국의 상이한 상거래법을 통일시켜 국제교역의 장벽을 제거함.
- 정부조달 국제무역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달에 관한 표준법 초안을 검토 및 채택 추진

2. 정부 훈령

- 국제상거래법 분야 통일법 작업 지지, 한국 법체계의 UNCITRAL 작업 반영 노력
- 정부조달 표준법, 전자데이터 상호교환 및 국제보증장에 관한 통일법 등 논의 중인 3개 통일법안 초안 작성 시 한국 입장 반영 노력

3. 회의 결과

- 참가국: UNCITRAL 29개 회원국, 옵서버 36개국, 세계은행 등 10개 국제기구
- 조달 관련 표준법안에 관한 논의에서 동 표준법안과 각국의 조달 관련 국내법과의 상충,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마찰, 경제구조상 조달에 관한 정부의 자율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도국 그룹과 기업의 조달기회를 최대한 보장받고자 하는 선진국 그룹 간의 이견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표준법과 입법가이드에 합의
- 전자데이터 상호교환 실무 작업반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승인하고, 동 작업반의 동 주제 논의를 계속 추진하도록 위임
- 국제계약 실무 작업반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승인하고, 국제보증장 표준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하여 토의의 신속 진행을 권고
- UNCITRAL이 채택한 법률문서에 따라 각국에서 나온 각종 판례를 모은 'CLOUT'(Case Law on UNCITRAL Texts)의 운용 개시 관련 회원국의 이용 권장

1445

대한민국 국제법률사 어휘집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분담금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90 / 13 / 1-63

1993년 중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의 한국분담금에 관한 내용임.

1. UNIDROIT의 1993년도 대한민국 분담금 인상

- 1991.12.5. UNIDROIT 사무국, 1992년 한국의 분담금 통보
 - 15,175스위스프랑

2. 제46차 UNIDROIT 총회(1992.12.1., 이탈리아 로마)

- 대표단: 정우성 주이탈리아대사관 참사관, 신연성 주이탈리아대사관 서기관
- 1993년도 예산안 및 1993~95년간 업무계획을 승인하고 기타 행정사안 안건 처리
- 한국의 분담금 책정기준을 카테고리 8에서 카테고리 5로 인상 조정하여 1993년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한국의 분담률은 기존 0.15%에서 0.69%로 인상, 1993년도 한국의 분담금은 34,320스위스프랑
 - 1994년부터는 스위스프랑으로 되어 있는 분담금 납부 화폐단위를 1994년부터는 이탈리아 리라로 변경, 시행 결정
 - 이에 따라 UNIDROIT 사무국은 한국에 대해 1994년 분담금을 3천 6백 8만 이탈리아리라로 통보

3. 한국의 분담금은 카테고리 5에 고정되어 계속 납부

- 외무부는 1995년도 UNIDROIT 분담금도 동 카테고리에 따라 예산 신청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및 한국 피선. 전3권 (V.1 1990-93.8월)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90 / 14 / 1-155

1990~93.8월 중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관련 자료임.

1. 1993.6.9. 외무부는 UNIDROIT 이사 입후보 관련 아래와 같이 결정함.

- 목적
 - 국제사법 통일화 작업에 적극 참여
 - 국제법률기구에 한국인 진출 확대
- 입후보자: 유병화 고려대 교수
- 임기: 총회(1993.11월)에서 임기 5년 이사진 선출

2. 1993.7월 외무부는 이사 피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동 후보의 입후보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 이사국에 교섭하도록 지시함.

1447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처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및 한국 피선. 전3권 (V.2 1993.9-10월)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90 / 15 / 1-203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현황 자료임.

1. 입후보국 현황

- 총 56개 회원국 중 28개국 입후보
- 현 이사국: 나이지리아,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등 21개국
- 신규 입후보국: 한국, 이란 등 7개국

1448

2. 한국 입후보에 대한 각국 반응

- 적극 지지: 폴란드, 튀니지 등 4개국
- 상호 지지: 네덜란드, 헝가리 등 25개국
- 호의적 검토: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11개국
- 검토: 우루과이 등 9개국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이사국 입후보 지지 교섭 및 한국 피선. 전3권 (V.3 1993.11-12월)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국제협약과

MF번호 2023-91 / 1 / 1-225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이사에 유병화 입후보자가 피선된 선거 관련 자료임.

1. 유병화 이사 피선

- 1993.12.2. UNIDROIT 총회에서 5년 임기의 이사로 피선

2. 투표 결과

- 25개국 후보를 선출하는 총회에서 42표 득표

3.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25명과 ICJ(국제사법재판소) 법관 1인 등 총 26명으로 구성

4. 평가

- 한국이 처음으로 비중 있는 국제법률기구 이사로 피선
- 한국이 국제거래법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의 법전화에 효과적으로 입장을 반영하는 계기 마련

유고전범재판소 설치 및 판사 선출. 전2권 (V.1 1-8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동구2과

MF번호 2023-91 / 2 / 1-159

1993년 중 유엔안보리의 유고전범재판소 설치 결의에 따른 판사 선출 관련 내용임.

1. 유엔안보리, 유고전범재판소 설치 결의(1993.2.22., 안보리 결의 제808호)

- 1991년 유고내전 발발 이후 인도에 관한 죄를 범한 전범자 처벌을 위한 재판소 설치
- 사무총장은 60일 이내 재판소 설치에 관한 시행안을 안보리에 제출

2. 유엔사무총장, 유고전범재판소 판사 후보 추천 및 전문가위원회에 대한 기여 요청(1993.5월)

- 판사 추천: 최대 2명(동일국적 불가), 형법, 국제법, 국제인권 등 분야 유경험자
- 절차: 안보리가 22~23명 후보자 명단 작성, 총회에서 11명 판사 선출
- 유고 내 인권침해 사례조사 전문가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인적 기여 기대

3. 유고전범재판소 판사 후보에 대한 각국의 입후보 지지 요청 서한 및 이력서

- Pazarci 튀르키예 외무성 수석 법률고문
- Datuk Lal Chand Vohrah 말레이시아 최고재판소 판사
- Jules Deschenes 전 캐나다 퀘벡주 대법원장
- Mcdonald 미국 판사
- Antonio Cassese 이탈리아 교수
- Jerzy Jasinski 폴란드 학술원 법률연구소 교수
- Tofazzal Hossain Khan 방글라데시 대법원 판사
- M.C.W Pinto 스리랑카 외교부 법률자문대사

4. 유엔안보리는 1993.8.20. 안보리 결의 제827호에 의거, 각국이 사무총장에게 추천한 유고전범 재판소 판사 후보자 41명 중 23명 선발

유고전범재판소 설치 및 판사 선출. 전2권 (V.2 9-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동구2과

MF번호 2023-91 / 3 / 1-92

1993년 중 유엔안보리의 유고전범재판소 설치 결의에 따른 판사 선출 관련 내용임.

1. 유고전범재판소 판사 후보에 대한 각국의 입후보 지지 요청 서한 및 이력서

- G. Le Foyer de Costil 프랑스 판사
- L. Elizabeth Odio Binito 코스타리카 법무부장관
- Li Haopei 중국 교수
- Rustam Sidhwa 전 파키스탄 대법원 판사
- Sikhe Camara 기니 판사, 전 주유고 기니대사
- Valentin G. Kisilev 러시아 판사
- Faphael Barras 스위스 군 법무감
- George ABI-SAAB 이집트 교수

2. 외무부, 각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 우선순위 결정

- 각국 후보자에 대한 지역별 지지 우선순위에 대해 부내 의견 수렴
 - 중동아프리카국, 미주국, 구주국, 국제기구국
- 유고전범재판소 판사 선거 지지 대상자 결정

3. 유엔, 유고전범재판소 판사 및 검사 선출

- 판사(11명):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이집트, 중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호주,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나이지리아 후보(1993.9.17)
- 검사: Ramon Excovar-Salom 베네수엘라 검찰총장(10.21.)

1451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

제3국 간 해양경계분쟁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91 / 6 / 1-142

1991~93년 중 캐나다·프랑스, 영국·아르헨티나 간 국경 분쟁에 관한 내용임.

1. 캐나다·프랑스 간 대서양 도서국경 분쟁 중재

- 캐나다 뉴펀들랜드해안과 프랑스령 St. Pierre-Miquelon섬 간 영해경계획정 관련 중재회의 (1991.7.29., 뉴욕) 결과
 - 캐나다 측: 프랑스령 도서는 12마일 영해만을 보유하고 주장
 - 프랑스 측: 동 도서와 뉴펀들랜드 간의 등거리선에 의한 경제수역(약 5만km² 해역)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
- 1992.6.10.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캐나다 측에 유리하게 결정
 - 중재재판소 결정에 따라 뉴펀들랜드 연안 방향으로 13마일, 센트로렌스강 어구 방향으로 24마일, 그리고 남방으로 10마일의 회랑을 설정함.

2. 영국·아르헨티나 간 Georgias섬 통제수역 관련 분쟁

- 아르헨티나 언론은 영국 정부가 Georgias섬 통제수역을 12마일에서 200마일로 확대 추진할 것이며, 이는 말비나스제도 사태에 버금가는 중대 사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1993.4.6., 주아르헨티나대사 보고)
 - Hurd 영국 외무장관은 동 수역확대가 Georgias 군도에 관한 영국의 입장 강화와 남대서양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대륙붕상의 석유자원개발을 앞둔 영국 정부의 전략적 포석으로 간주

북한·러시아 간 해양경계획정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91 / 7 / 1-75

1990~93년 중 북한·러시아 간 해양경계획정 관련 동향임.

1. 소련·북한 간 국경선 경계획정 협정

- 1985.4.17. 서명
- 두만강 하류 및 동 연장선상의 영해 등 총 39.13km 경계선 획정

2. 소련·북한 간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협정 서명

- 1986.1.22. 평양
-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를 동시에 획정한 최초의 협정
- 경계획정을 위한 2개 좌표점 규정(전문 및 3개 조항)

145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베트남 난민 처리 문제. 전2권 (V.1 1991-92)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영사과 / 해외이주과

MF번호 2023-91 / 10 / 1-126

1991~92년 중 베트남 난민 처리 관련 내용임.

1. 노르웨이 국적선이 구조한 베트남 난민 처리

- 1991.1.11. 노르웨이 국적선 Igloo Espoo가 베트남 난민 23명을 싣고 여수항에 도착
 - 주한 노르웨이대사, 1.13. 난민들의 72시간 이내 필리핀 이송을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난민들의 임시 상륙허가를 요청
- 한국 정부, 1.14.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및 UNDP(유엔개발계획)로부터 난민들에 대한 출국보장서 접수
 - 1.15. 3일간 상륙허가 결정 및 대한적십자사 주도로 난민들에 대해 구호물자 전달
- 필리핀 정부의 비자발급 지연으로 상륙 허가기간 연장 후 1.21. 난민 23명 필리핀으로 출국 조치

2. 베트남 난민 한국 입출국 현황(1991.10월 현재)

- 1975년 이후 도착한 난민 규모: 1,329명
- 1975년 이후 제3국으로 출국한 난민 규모: 1,220명
 - 출국 대상국은 미국(652명), 네덜란드(109명), 프랑스(71명), 호주(71명), 캐나다(56명), 독일(44명)
- 부산수용소에 대기 중인 난민 규모: 155명(이중 일부는 출생에 의한 증가분)

3. 부산수용소 내 베트남 난민 처리 문제

- UNHCR(유엔난민기구) 사무국은 1992.5~8월간 부산수용소를 방문하여 실시한 베트남 난민 심사 결과 및 후속처리 방침을 10월 중 한국 정부에 통보
 - 베트남 난민 148명 중 중국계로 추정되는 133명 가운데 실제 중국계인 경우는 119명으로 추정
 - 베트남 난민(133명)의 희망과 뉴질랜드 정부의 의사표명에 따라 뉴질랜드로 이민 추진
 - 나머지 15명은 제3국에 정착 유도

베트남 난민 처리 문제. 전2권 (V.2 1993)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영사과 / 해외이주과

MF번호 2023-91 / 11 / 1-97

1993년 중 베트남 난민 처리 관련 내용임.

1. 부산수용소 내 베트남 난민 출국(1991.2월)

- 부산수용소 내 베트남 난민 150명 전원이 뉴질랜드 재정착을 위해 1993.2.1.~8. 항공편으로 출국
 - 1992.10월 한국 정부는 UNHCR(유엔난민기구)이 추진하는 부산수용소 난민의 뉴질랜드 재정착 계획에 동의
- 동 난민 출국 후 부산수용소는 폐쇄
 - 1977.9.15. 개설 이후 베트남 난민 연1,382명 수용

2. IOM(국제이민기구) 홍콩 사무소장, 베트남 난민 수송 관련 협조 요청

- 1993.6월 IOM 홍콩 사무소장, 새로운 베트남 난민 수송계획 관련 한국 정부의 협조 요청
 - 7월부터 매주 200명 정도의 난민 수송계획
 - 신수송 프로그램에 따라 기존 항공노선 이외에 새로운 노선 설정, 호치민에서 서울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송
 - 순조로운 경유지 통과를 위한 IOM 관리사무소 설치, 현지요원 채용에 있어서 협조 요청
- 11월 현재 IOM 관리사무소 설치는 김포공항 내 사무실 공간 확보가 어려워 지연되고 있으나, IOM 직원에 대해 공항 보호구역 임시출입증 교부 조치

1455

대한민국 외교부서 영사과

남극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전문가 회의. Heidelberg(독일), 1993.11.18.-20.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91 / 12 / 1-132

1993.11.18.~20.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남극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전문가 회의가 개최됨.

1. 참가국

- 31개 남극조약 당사국(25개 협의당사국 및 6개 비협의당사국)
- 한국 측: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1456

2. 의제 및 토의 내용

- 적용대상 남극활동의 범위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34항에 나열되어 있는 어떠한 활동을 특별히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외시킬 것인지에 토의의 초점이 모아짐.
- 환경훼손의 정의
 - 환경 자체 훼손, 인적·물적 훼손, 어느 정도의 배상책임을 규정할 것인지 등 합의
- 배상책임의 체제
 - 과학탐사활동, 관광, 어업활동 등으로 인한 배상 체제를 구분할 것인지에 관해 다수는 구분 없이 단일 배상책임 지지
- 배상책임 의무자의 범위 및 한계
 - 예견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제3자의 과실 또는 고의 등에 의한 훼손 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지 여부
- 환경보호기금
 - 당사국 동일비율 부담 혹은 환경훼손 초래 국가 기금 공헌 방안 등
 - 일본, 뉴질랜드 대표 등 다수국이 주의를 요망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임.
 - 한국 측 대표 이서항 교수 또한 환경보호기금 조성 문제는 당사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시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함.
- 배상책임 면제의 범위 및 한계
 - 다수국 대표는 개인, 단체가 환경훼손을 한 경우 이들이 1차 책임을 지고 총당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은 소속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 지지
- 분쟁조정기구
 - 다수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 의정서가 규정한 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 지지



3. 평가 및 건의사항

- 남극환경 배상책임 부속서는 '의장초안' 작성 이후 시안 제정 단계에 있으므로 한국은 각 주제 및 조항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 차기 회의에서 적극 반영할 것이 요망됨.
- 남극환경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법무부, 과학기술처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사전 의견 조정 및 대책수립 필요
- 남극환경 배상책임 부속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제7부속서로서 개정되는 것이므로 한국은 부속서의 모 협정이 되는 의정서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한국은 1992.7월 의정서 서명 이후 비준 절차를 밟고 있지 않고 있음.

1457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작성한 자료

남극조약 이행관련 활동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91 / 13 / 1-90

1992~93년 중 남극조약 이행, 당사국 간 협조 등 관련 내용임.

1. Alison Mann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1등 서기관, 함명철 외무부 조약심의관 면담(1992.4.28.)

- 뉴질랜드 측은 뉴질랜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남극 담당 부서 변경에 관해 알리면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에 관한 한국의 서명계획을 탐문함.
- 한국 측은 4.23. 국무회의에서 동 안건이 통과된바,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5월 중 주미국 대사가 동 의정서에 서명할 예정임을 알림.

1458

2. 세종과학기지 연구단 및 보급품 수송

- 칠레 공군성은 1992.9월 한국이 남극에 설치 운용 중인 세종과학기지의 연구단 및 보급품 수송을 지원해오고 있는바, 항공기 운항계획 수립을 위해 1992.9.30.~93.9.30. 중 세종과학기지가 필요로 하는 수송 자료를 요청하여 옴.
- 칠레 공군기 이용 내용
 - 세종과학기지를 운영하는 월동대원 수송
 - 기지 방문단 및 위급환자의 수송
 - 연 2회의 중간 보급물품 및 긴급 소요물품의 수송
- 칠레 측은 한국의 93/94년도 칠레 공군기 이용계획을 늦어도 1993.3월 말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함.

3.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남극기지 이전에 따른 의견 요청

- 남아공 정부는 1993.9.20. 자국의 남극기지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부속서 1의 제3조에 따른 포괄적 환경평가 초안을 작성하여 외무부에 송부함.
 - 외무부는 한국 측 의견서를 10.7.까지 송부하여 줄 것을 한국해양연구소에 요청함.
- 한국해양연구소는 10.4. 아래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외무부로 송부함.
 - "적어도 연료탱크에는 유출유류를 모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4. 스위스인의 남극 세종기지 방문 허가

- 국제남극탐험대(소수의 스위스인, 프랑스인, 독일인 등으로 구성)는 1993.10.26. 한국 측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접근 및 내부시설 방문 허가를 요청함.
 - 신청인: Mr. Roger Meyer(스위스 국적)
 - 방문 시기: 1994.1.10. 아르헨티나 Ushuaia 출발 예정, 남극 도착까지 28일간 항해 소요 예정



- 동 남극탐험대는 프랑스 선적의 요트를 사용 예정이며, 남극 칠레기지(Videla), 영국기지(Faraday), 아르헨티나기지(Almirante Brown) 방문을 허가받았으며, 미국기지(Palmer Station) 허가는 현재 신청 중이라고 함.
- 과학기술처는 11.8. 상기 스위스인이 요청한 남극 세종과학기지 방문 건 관련 '수락' 의견을 외무부로 송부함.

COPUOS(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91 / 14 / 1-64

1992~93년 중 COPUOS(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 회의 및 한국의 동 위원회 가입에 관한 내용임.

1. COPUOS 회의

- 제29차 과학기술 소위원회 회의(1992.2.25.~3.5., 뉴욕)
 - 참가자: 53개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
 - 유엔 우주응용계획, 유엔 내에서의 우주 활동 조정문제 및 외기권 평화적 이용 및 탐사에 관한 제2차 유엔회의(UNISPACE 82) 권고사항 이행 문제 협의
 - 위성원격탐사 및 개도국의 동 분야 활동 참여, 외기권에서 핵 동력 이용, 우주이동시스템 및 장래우주활동, 지구정지궤도 위성 등 주제 토의
- 제35차 본회의(1992.6.15.~26., 뉴욕)
 - 참가자: 53개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
 -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주 분야 국제협력의 새로운 접근 방법 주제하에서 각 전문가의 패널 토의
 - COPUOS 산하 법률소위원회 및 과학기술소위원회의 이슈, 활동 보고 및 토의
 - 외기권의 평화적 목적 유지 방안으로 외기권에서 군비경쟁 지양 토의, 우주기술의 파생해택 등 토의

2. COPUOS 회원국 증원 문제

- 제48차 유엔총회 제4위원회(특별정치 및 탈식민지 문제) 회의 시 위원국 증원 문제 제기
 - 위원국 증원 시 지역안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아주그룹에서는 카자흐스탄이 신규 위원국 선임 희망 및 말레이시아의 위원국 진출 의향 기표시
- 1993.11.12. 주유엔대표부는 유엔총회 제4위원회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의제 토의 현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한국의 COPUOS 위원국 진출 추진을 건의

외교 특권·면제의 포기 관련 검토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91 / 16 / 1-214

1993년 중 외무부는 경미한 사안(특히 음주운전)일 경우 외교관의 특권면제 포기를 예외적으로 공관장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함.

1. 교통법규 등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 시 외교특권 포기 검토 요청(주미국대사관)

- 사안이 경미하고 법정에 출두하는 것이 공관 업무 수행에 명백히 유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관장 판단에 따라 외교특권 면제 포기
- 주재국 행정법규에 대한 존중자세 및 상호주의 적용

2. 주요국의 단속 관행 사례 수집

- 외교관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관행
- 외교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주재국의 처리 관행
- 외교관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 법정출두를 요청 받았을 때 외교특권을 포기하고 응소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차이점

3. 외교특권 면제 포기의 재외공관장 위임에 대한 검토 결과

- 40개 공관에 의견조회 결과, 주미국대사관을 제외하고는 외교특권 면제의 포기 권한을 공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필요 없거나 이를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주미국대사관을 위한 제도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잠정 결론

1461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영사관계 국제법 해석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91 / 17 / 1-121

1993년 중 외무부 조약국에 요청한 외교사안 및 영사관계 사건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내용임.

1.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1993.4월 발생한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암살음모 사건 수사 결과가 이라크 정보국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6.26. 바그다드 소재 이라크 정보국 건물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함. 이에 에스핀 미 국방장관은 배경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금번 조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는바, 이에 미국 정부의 대이라크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점을 검토함.
- 상기 미국의 자위권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적 해석은 자위권의 발동요건을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헌장 제51조의 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임.

2. 독일국적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국내법과의 저촉 여부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1993.6.18. 단독 친권을 행사하고 있던 모의 사망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독일 당국이 청소년 유관기관을 자녀들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모의 사망 전 독일국적 신청에 따라 자녀들에 대해 독일국적을 부여하려고 하는바, 한국법과의 저촉 여부 검토를 요청함.
- 독일국적을 부여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할 때까지 사실상의 이중국적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됨.

조약 및 승계 관련 국제법적 검토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91 / 18 / 1-148

1990~93년 중 조약 및 승계 등 국제법적 검토 관련 내용임.

1. 항공 관계

- 민간항공기 사고 관련 자료의 증거 제출 또는 그 이용 문제
- 1992.4.19. 영국항공소속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항공기 승객의 하기 거부 및 하기 후 공항 내 사무실에서의 항의 행위가 국제항공법 위반인지 여부 검토

2. 사법공조 관계

- 미국 내에서 기소된 제3국 국민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대한 검토
- 팬암 여객기 폭파 혐의자에 대한 재판관할권 검토
- 러시아 정부의 자국선원 한국 내 수산물 불법거래 조사 요청에 대한 검토
- 중국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 선원 석방 문제 검토

3. 승인·승계 관계

- 체코연방 해체에 따른 체코공화국의 중립국감시위원회국 지위승계 문제에 대한 검토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한 의견 회신

1463

대한민국 외교부

문화외교 및 홍보 강화 방안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91 / 19 / 1-167

1992~93년 중 문화외교 및 대외홍보 강화 방안에 관한 검토 관련 내용임.

1. 검토 배경

- 문화외교와 대외홍보의 중요성 점증
 - 국력신장 및 북방외교 성공에 따른 외교 다원화를 반영
 - 통상마찰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상쇄 수단으로 중요성 부각
- 국력 낭비 및 외교활동 수행 지장으로 인해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국내외 여건 변화 및 대외적 문화홍보의 중요성 부각에 상응하는 범정부 차원 정책 및 조직 미비

2. 문제점

- 문화외교에 대한 국내적 인식 부족
- 문화외교를 주관하는 정책결정기구 및 업무협조 체제 부재
- 해외 문화외교 및 대외홍보기관의 독자성으로 인한 조직상 문제
 - 해외공보관 및 해외문화원이 외무부나 문화체육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

3. 개선 방향

- 체제 정비
 - 문화외교의 대외창구 일원화
 - 대외홍보를 문화외교 차원에서 수행
 - 문화외교협의체 구성
 - 국제교류재단의 문화외교 집행기관 역할 수행
- 문화외교의 질적 개선
 - 대표적인 한국문화 소개사업 발굴
 - 획기적인 문화외교 자원 확보

4. 조치사항

- 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
- 재원의 획기적 증액
- 전문 인력 확보

한·중국 수교 계기 해외홍보사업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3-92 / 1 / 1-126

1. 한·중국 수교 후속 홍보사업 추진

- 대통령의 중국 공식방문 시기에 맞추어 추진
- 과거 단절관계 치유와 우호 친선관계 정립을 위해 핵심 여론 주도층 인사 및 언론 교류에 치중
- 주요 사업
 - 주요 언론사(인민일보, 신화사 등) 사장 방한 초청
 - 한국 소개 특집을 위한 언론인 초청
 - 한국 및 한국문화 소개사업 활성화
 - 중국어판 한국소개 도서 출판·보급 추진
 - 중국 동포사회에 대한 홍보 활동

2. 대통령 방중(1992.9.27.~10.1.) 사전 홍보를 위한 중국 언론 취재팀 방한 초청(1992.9.20.~25.)

- 신화사 Zhu Kechuan, 인민일보 Xu Baokang, CCTV 등 취재진 5명
- 주요 일정
 -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차관, 과학기술처차관 등 회견
 - 21세기 위원장, 프레스센터 이사장, 삼성연구소장 등 회견
 - 금성사(평택공장), 부산 컨테이너 부두, 창원 전자공단, 포항제철, 경주 일원 및 용인 민속촌 등 산업 시찰 또는 관광
 - 롯데백화점, 남대문시장, KBS 등 방문

1465

대한민국 외교부

한·중국 언론지국 설치 및 상주 특파원 교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3-92 / 2 / 1-145

1. 한·중국 언론지국 설치 및 상주 특파원 파견

- 한·중 수교를 위한 양국 외무장관회담(1992.8.23.)에서 공식 논의
- 양측 입장
 - 한국: 매체 수 제한 없이 동시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 존중과 한국 매체 간 차등 없는 일괄처리 원칙을 제시
 - 중국: 한·중 관계 발전에 발맞추어 점진적으로 허가

1466

2. 한국 언론사에 대한 베이징지국 설치허가 현황

- 1차 허가(1992.11.23.)
 - 연합뉴스(2명), KBS(3명), 동아, 조선, 중앙, 한국, 서울신문 등 7개 언론사
- 2차 허가(1993.3.10.)
 - MBC(2명), SBS,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세계일보, 매일신문(부산일보, 대전일보, 강원일보, 광주일보 공동) 등 7개사

3. 중국 언론사에 대한 서울지국 설치허가 현황

- 1992.12월 신화사
- 1993.5월 인민일보, 10월 중국경제일보

주한 미국문화원(부산) 관련 제문제

생산연도 1988-199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3-92 / 3 / 1-47

1988~93년 중 부산 소재 미국문화원 무상사용 관련 내용임.

1. 1988년 부산 미국문화원 무상사용 문제

- 부산시는 1986.8.26. 부산 미국문화원에 대해 무상사용이 아닌 대부계약 체결을 촉구
- 미국문화원은 1988.5.27. 1948.9월 체결된 협정에 따라 영구 무상사용하고 있다고 회신
- 부산시는 11.18. 외무부에 무상사용 중인 미국문화원의 불법 건축공사에 대한 조치 방법 문의
 -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 대집행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 회신

2. 부산 미국문화원 점거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한국 측 보상책임 문제 검토

- 법적책임은 없으나, 정치적 고려에서 미국 측 손실에 대한 전액 보상이 타당

1467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

한·이탈리아 문화공동위원회, 제6차. 서울, 1993.8.5.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92 / 4 / 1-236

1993.8.5. 서울에서 제6차 한·이탈리아 문화공동위원회가 서면회의로 개최됨.

1. 경위

- 1988.12월 로마 개최 제5차 한·이탈리아 문화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차기 회의를 1991년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1991.10.29. 제5차 회의 합의사항 추진 실적을 이탈리아 측에 송부
- 1992.7.30.~31. 제6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이탈리아 측 사정으로 무산

1468

2. 양측 관심 분야

- 고등교육 및 학술 분야 교류
- 장학생 교환
- 예술분야 교류
- 문서보관소 및 도서관 협력
-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
- 청소년·체육 교류

3. 회의 결과

- 1993.8.5. 양측 간 일정 조정을 거쳐 제6차 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
 - 권순대 외무부 문화협력국장과 Dino Volpicelli 주한 이탈리아대사 간 합의의사록 서명
 - 1993~96년간 교류시행계획서 첨부
- 제7차 회의는 1996년 로마에서 개최 합의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회의, 제5차. 서울, 1993.7.14.-16.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92 / 5 / 1-84

1993.7.14.~16.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회의의 준비에 관한 내용임.

1. 개최 일정 합의

- 외무부는 1992.7월 한·일본 문화교류 비공식회담 시 기무라 일본 외무성 문화교류부장과 제5차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회의를 1993년 1/4분기 중 개최하기로 한 바에 따라, 일본 측에 3월 중순 개최를 제의
- 일본 측은 정기국회 예산위원회 회기 중임을 들어 4월 개최를 제의한바, 양측 간 협의 결과 1993.7.14.~16.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2. 개최 준비

- 1993.4.27. 외무부는 문화체육부, 공보처, 교육부, 국제교류재단에게 동 회의에서 채택할 교류 협력서에 포함할 내용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입장 통보를 요청
 - 교육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서울대학교, 중앙교육연수원의 일본과의 교육·학술 교류 사업 현황 제출
 - 공보처: KBS와 NHK 간의 합동회의 현황 등 제출
 - 문화체육부: 한·일본 교류 현황 평가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면서, 재일본 한국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정부방침과 함께 일본 대중문화 국내허용 문제는 단계적으로 제한을 해제하되 그 시기는 추후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

3.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제

- 기무라 문화교류부장은 1993.6.4. 이재춘 주일본대사관 공사 면담 시,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걸림돌 제거에 양측의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
- 주일본대사는 6.15. 동 문화교류 실무자회의 의제 검토 보고에서 아래 내용을 건의
 - 일본 대중문화 개방 관련, 양국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선별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에 비추어 가시적인 개방조치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일본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 해외여행 자유화, 다양한 인적교류 확대, 매체의 발달로 개방억제 정책이 현실적 괴리가 있으므로 점진적 개방을 구체화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수립, 제시할 것을 건의
- 일본 대중가수의 서울시내 호텔 공연 등 허용 검토

1469

대한민국 외교부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회의, 제5차. 서울, 1993.7.14.-16. 전3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92 / 6 / 1-136

1993.7.14.~16.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회의 결과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권순대 외무부 문화협력국장
- 일본 측: 기무라 타카유키 일본 외무성 문화교류부장

2. 의제

- 양국의 대외문화교류 정책 소개, 문화교류 현황 등 양국 간 문화교류
- 청년 및 청소년 교류사업, 학술교류, 지자체교류 등 미래지향적 문화교류 관계
- 일본 대중문화 허용

3. 훈령

- 동반자적 양국관계 강화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의 문화교류 방안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일본 측의 이해 및 협조 확보
-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제한 없는 교류에 관한 일본 측의 관심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되, 양국관계의 장애요인이 해결되면 점진적으로 진전될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

4. 회의 결과

- 공식회의
 - 미래지향적 문화교류 관계 정립을 위하여 청소년교류, 학술교류, 대형문화소개, 지자체교류 사업 등 추진 방향에 합의
 -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존 등 아시아지역에서의 문화교류 촉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추진
- 비공식회의
 - 일본 측은 일본 대중문화 규제의 조속한 철폐를 요청하고, 단시일 내 철폐가 어렵다면 점진적 허용을 위한 청사진 제시 요청

5. 기타

- 주일본대사는 1993.7.7. 일본 도쿄대학교에 조선문화연구부문 설치 기념식 행사를 보고하고, 이에 상응하여 서울대학교에도 일본관계연구소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회의, 제5차. 서울, 1993.7.14.-16.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92 / 7 / 1-49

1993.7.14.~16.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회의 관련 외무부 작성 자료임.

1. 회의 준비자료

- 청소년교류, 지자체교류, 학술교류, 한·일본 간 양서 번역 교류 등 교류 현황
-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제 관련 개방 조건, 시기 등 정책 검토
 - 개방 조건으로 한국문화의 자생력 회복, 양국 간 문화교류의 양적 균형 유지 등 검토
 -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폐쇄정책 고수 및 개방 시 각 장단점 검토
 -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대책 촉구 및 양국 간 문화교류의 역조 시정 방안 등 검토

2. 회의 자료

- 회의 개요 및 훈령, 의제별 토의 자료, 발언자료, 보도자료 등 포함
 - 각 세부 의제별 한국 측 발언문 및 일본 측의 발언에 대한 대응발언 자료
 - 청소년교류, 학술교류, 대형 문화소개, 지자체교류 사업 등 각 분야별 교류 현황, 통계 등
- 회의 진행 요령 및 절차
 - 한국 측 회의 주도 의제: 양국 간 문화교류, 각종 미래지향적 문화교류 관계 정립 등
 - 일본 측 회의 주도 의제: 상대국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계획소개

1471

대한민국외교부작성·인양본

한·영국 문화혼성위원회, 제5차. 서울, 1992.12.1.-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92 / 8 / 1-139

1992.12.1.~2.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영국 문화혼성위원회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권순대 외무부 문화국장
- 영국 측: Julian Davey 영국문화원 아태국장

2. 주요 합의내용

- 한국학 및 한국어 진흥 계속 권장
- 역사기술 내용 오류 시정 노력
- 학술 연구기관 간 협의 확대

한·영국 문화훈성위원회, 제5차. 서울, 1992.12.1.-2.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92 / 9 / 1-92

1992.12.1.~2.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영국 문화훈성위원회의 관련 회의자료임.

1. 주한 영국문화원 운영 문제
2. 영어 및 영국학 진흥방안
3. 한국어 및 한국학 진흥방안
4. 역사 오류 서술내용 시정 문제
5. 체육 및 청소년 교류
6. 지식재산권
7. 의제 관련 한국 측 발언내용

1473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
위원회

외무부·한국국제교류재단 간 정책 협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92 / 10 / 1-71

1992~93년 중 외무부·한국국제교류재단 간의 정책협의 관련 내용임.

1.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제1차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 기본방침과 1992년도 주요 사업계획 설명(1992.6.2.)

- 운영위원들은 프로그램별 지원, 사후평가 철저, 경제 분야 사업 포함 및 대일본 교류사업 제안

2. 외무부·한국국제교류재단 간 정책협의회(1992.12.8.)

- 업무협조체제 구축
 - 외무부(문화국)·재단 간 정책협의회를 매분기 개최 및 실무협의회 수시 개최
- 사업계획 및 예산
 - 재단의 사업계획 수립, 심의 및 집행 과정에서 협의, 감독 및 심의 분석 기능 강화
 - 199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조정 승인 통보
- 중장기 사업 추진 방향
 - 대미국 중점사업에 대한 평가
 - 한국학 지원기관 선정기준 재검토 및 관리체계 확립
- 유사 업무 조정
 - 관계부처 간 정례회의 상설, 유사 업무 조정 추진

3. 외무부·한국국제교류재단 간 정책협의회(1993.8.17.)

- 재단 직제개정 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 강화 필요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축소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 필요
- 미국 4개 대학에 대한 한국학 집중지원 관련 여타 지역과의 균형 문제 등 감안 필요성 지적 등

중국 내 고구려 유적 보존·관리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92 / 11 / 1-38

1.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 등 한국 민족유산 보존 문제

- 동아일보, 1993.6.24.자 기사에서 중국 길림성 집안 소재 고구려 고분벽화 등 한민족 문화유산이 방치 내지는 훼손되고 있다고 보도
 - 이원홍 전 문공부장관의 5월 현지 답사결과를 인용
- 한국 정부의 대책
 - 6월 주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의 보존대책 마련을 요청
 - 문화체육부는 중국 문화부 문물국장 방한 초청 추진
 - 한·중국 문화협정 조속 체결로 양국 정부 간 공식 대화여건 조성 추진

2. 문화체육부 담당관, 중국 길림성 집안 일대 고구려 유적 답사(1993.8.8.~19.)

- 결과
 - 6개 지역 고분군 가운데 산성하 고분은 현재 정리 및 정비 중
 - 국내성 터는 북벽 기초부와 서벽 일부만 잔존
 - 공개된 벽화고분(씨름무덤, 춤무덤, 5과분, 4·5호묘 등)은 결로현상으로 인해 벽면과 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림.
 - 광개토왕비는 서쪽으로 기울어짐
 - 태양릉의 석실 내부 가형석실은 시멘트로 복원
- 조치 필요사항
 - 빠른 시일 내 한·중 공동으로 유적 현황조사 실시: 1993년 중 성단위와 협의 추진
 - 집안시 간부(서기, 시장, 문물국장 등)의 방한 초청을 통해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실태(경주 등) 견학 추진
 - 1994년 중 중국 국가문물국장을 방한 초청하여 상호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의견 교환

1475

대한민국 외교부

한·중국 문화교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92 / 12 / 1-102

1993년 중 한·중국 교류 및 문화협력에 관한 내용임.

1. 한·중국 기관협력

- 1993.2.25. 주중국대사는 중국 외교부 직원의 한국어 연수 추진을 외무부에 건의
 - 8명의 한국어 구사 직원이 있으나 대부분 북한식 어법을 사용, 한국 연수를 통해 이를 교정 추진
- 4.9. 중국 인사부는 한국 총무처 간의 교류협력활동에 관한 합의서 체결을 제의하면서, 동 합의서 초안을 주중국대사관으로 송부함.

1476

2. 한·중국 언론 교류

- 윤세영 SBS 사장 등 언론 관계 인사의 방중(1993.3.9.~11.)
 - 중국 방송 관련 주요인사 면담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서보강 초대 서울 상주특파원 부임 지원
 - 4월 중국 측의 조속 비자 발급 요청, 외무부의 공보처 및 법무부 측에 협조 요청
- 중국 내 한국 공보원 설치에 대한 중국 측 지속 반대, 대사관 내 사무실 수준 유지 요망

3. 학술 및 교육

- 중국 국무원 소속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아태지역 및 한반도 전문가 4명의 대표단 방한 (1993.6.27.~7.1.)
 - 한국민족통일연구원장의 초청
- 주중국대사의 관련 건의
 - 6.30. 중국 사회과학원 한국연구중심이 준비하고 있는 협조사업 관련 예산지원 건의
 - 7.2. 베이징대학교 한국학연구중심에 대한 대중국 학술협력 활용 건의
 - 7월 베이징의 외국인 교육기관 과밀로 인한 한국인 학생의 취학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한국학교 건립을 건의

한·중국 수교 1주년 기념 공연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92 / 13 / 1-41

1993년 중 한·중국 수교 1주년 기념 국립예술단의 중국 공연에 관한 내용임.

1. 추진 경위

- 양국 수교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문화체육부는 2차례의 국내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립예술단(90여 명)의 중국 공연 추진
 - 공연 레퍼토리로 '소리여, 천년의 소리여'는 중국어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중국 측의 지적으로 중국 문화의 특성을 고려, '아침의 나라, 한국, 그 신명'으로 조정
- 1993.9월 베이징(2회), 천진(1회) 및 상하이(2회) 총 5회 공연 추진
 - 부채춤, 승무, 강강술래, 회상, 농악 등으로 구성

2. 공연 준비 교섭

- 1993.6.14. 주중국대사관 공보관이 국립예술단 공연 관련 중국 측과 교섭 결과, 중국 문화부 산하 행사 주무기관인 대외연출공사가 전담, 구체 검토 실시
 - 행사 전반에 관해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세부 경비 부담 문제 조정 필요
 - 중국 내에서 매표가 불가한 관계로 전부 초청행사로 추진
- 6.17. 대외연출공사 사장은 이 행사를 국가 대 국가의 중요행사로 보고 적극 지원 약속
- 7월 국립예술단 측은 사전답사차 2명의 인원을 중국에 파견, 공연 사전점검 실시
- 8.11. 공연 관련 중국 측과 최종계획 확정

3. 공연 결과

- 제1회 공연(1993.9.9., 베이징)
 - 이남청 중국 부총리 등 1천 2백여 명의 관객 동원
- 제2회 공연(9.10., 베이징), 제3회 공연(9.12., 천진)
 - 만원 공연, 중국 주요 매체 방영 및 보도
- 제4회 및 제5회 공연(9.16.~17., 상하이) 완료

1477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기관

한·이집트 문화·과학·기술협정 시행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92 / 14 / 1-246

1991~93년 중 한·이집트 간의 문화·과학·기술협정 시행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홍순영 외무부차관의 이집트 방문 계기 1992.12.9. 박동순 주카이로총영사와 Latif 이집트 외무부 문화 담당 부차관보 간에 시행계획서 서명
- 1988.8월 서명된 양국 간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 의거

1478

2. 주요 내용

- 고등연구기관에 대한 각종 실험 기자재 및 훈련 제공
- 전문가 교환 강의 및 세미나 참석
- 상대측 유학생에 대해 장학금 지급
- 예술단 교환
- 양국 통신사 간 협력
- TV 및 방송 프로그램 교환
- 관광주간 촉진
- 체육팀 교환 등

3. 동 협정의 시행계획서에 따라, 1993.8월 이집트 측은 한국 교육 현황 자료 제공, 1994년 중 한국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단의 카이로 공연 등을 요청함.

한·프랑스 문화교류 일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구주1과

MF번호 2023-92 / 15 / 1-73

1993년 중 한·프랑스 간 문화교류 관련 내용임.

1. Alexandre Blokh 서훈

- 문화훈장 서훈 검토

2. 대통령의 프랑스 피가로지 인터뷰 추진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방한 직전인 1993.9.12.~13. 게재 예정

3. Liberation지 도쿄 특파원의 취재 협조 요청

- 외무부 구주국장과 면담하여 미테랑 대통령의 방한 의의 등 취재 희망

4. 한·프랑스 포럼(1993.12.17.~18.)

- 외무부장관의 격려사 요청

1479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작성한 자료임

한·헝가리 수교 100주년 기념 사업 지원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2 / 16 / 1-123

1993년 중 한·헝가리 수교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관련 문서임.

1. 수교 100주년

- 1892.6.23. 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는 수교조약 체결
- 1893.10.5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수교조약 발효
 - 헝가리는 1899.2.1. 동구권 중 가장 먼저 한국과 수교함.

1480

2. 기념행사 검토

- 언론매체 홍보
- 기념메시지 교환
- 고위인사 교환 방문
- 기념리셉션 개최
- 학술 세미나 및 문화 좌담회
- 민속공연 및 국악연주회
- 사진전 또는 회화전 개최

3. 기념행사 내용

- 한국 측
 - 1993.6.14.~17. 헝가리에서 헝가리 언어·역사·고고학 세미나 및 좌담회 개최
 - 10.5. 양국 외무장관 축전 교환, 주헝가리대사관은 국경일 리셉션 계기에 수교 100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
- 헝가리 측
 - Gonc 헝가리 대통령이 방한하여 1993.11.4. 대전 엑스포 '헝가리의 날' 참석

한·인도 문화협정 시행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92 / 17 / 1-113

1992~93년 중 한·인도 간 문화협정(1974년 체결) 시행을 위한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서명 및 교환 관련 내용임.

1. 채택 경위

- 1993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6차 한·인도 문화공동위원회가 인도 측 사정으로 취소되고, 1993~95년간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서명 및 교환 시행 추진
- 1993.2.14. 주한 인도대사관은 공한으로 동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초안을 한국 측에 송부, 외무부는 교육부, 문화부, 체육청소년부, 공보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한국 측 초안 작성
 - 인도 측 초안 중 전통무용단 파견, 공연전 교환, 공연예술자료 교환, 문화재 보존 전문가 교환, 청소년 및 체육 교류 등 수정안 검토
- 최종적으로 전문 포함 학술교류 분야 10개조, 예술·문화교류 분야 8개조, 청소년 및 체육교류 분야 2개조, 일반·재정조항 6개조로 구성된 한국 측 안 제시
 - 이에 대해 인도 측은 재수정안 제시, 협의를 거쳐 최종안 성안

2. 주요 내용

- 고등교육 및 학술 분야 교류
- 장학생 교환
- 예술 교류
- 문서보관소 및 도서관 간 협력
- 청소년 및 체육 교류

3. 동 협정 시행계획서는 1993.9.10. 서울에서 이원영 외무부 문화협력국장장과 Bhupatray Oza 주한 인도대사 간에 서명 및 교환됨.

1481

대한민국 외교부서 역사자료

한·일본 도·시 간 자매결연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 홍보과

MF번호 2023-92 / 18 / 1-66

1993년 중 한·일본 도시 간 자매결연 관련 내용임.

1. 충청남도 공주시·아마구치시

- 주시모노세키총영사는 1992.10.16. 아마구치시는 금년도 사업으로 한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목표로 정하고, 8.25.부터 4일간 아마구치시 우호 방한단을 한국 내 3개 도시(청주, 진주, 공주)에 파견하여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 바 있다고 하면서, 동 방한단의 보고에 따라 아마구치시는 공주시를 역사적, 문화적 연관성과 교육도시이며 전통고도라는 유사점 등으로 자매결연 대상도시로 결정하고, 주시모노세키총영사관에 동 건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 내무부는 1993.2.9. 공주시와 아마구치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외무부의 의견을 요청함.
 - 외무부는 이의 없음을 통보
- 주시모노세키총영사는 2.24. 아마구치시와 공주시 간의 자매결연이 체결되었다고 보고함.
 - 일시 및 장소: 2.23. 아마구치시 시청 대회의실
 - 조인식 내용: 주시모노세키총영사 및 아마구치현 지사 입회하에 김건배 공주시장과 사야니 마사지 아마구치 시장이 자매도시 체결 협정서에 서명함.

2. 전라남도 나주군·구라요시

- 내무부는 1993.3.19. 전라남도 나주군이 일본 구라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외무부의 의견을 요청함.
 - 외무부는 3.27. 이의 없음을 통보

3. 충청북도 보은군·미야자키시

- 내무부는 1993.6.8. 충청북도 보은군이 일본 미야자키현 다카오카정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외무부의 의견을 요청함.
 - 외무부는 6.16. 이의 없음을 통보

한·일본 문화교류 일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2 / 19 / 1-208

1993년 중 한·일본 간 문화교류 활동 관련 내용임.

1. 주요 활동

- ‘규슈 청년의 배’ 파견 관련 일본 측 관계자 방한(1993.2.16.~19.)
 - 청년의 배를 한국에 파견하여 규슈지방 청년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한국 청년과의 교류를 통해 한·일본 간 우호 친선 증진에 기여함.
 - 규슈지방 8개현 공동으로 1994.8월 말 420명 파견 계획
- 후쿠오카지역 문화발전 5개년 계획 사업(1993~98년)
- 가가와현 의회 친선의원 방한단 방문(1993.4.15.~19.)
- 일본 염색화가 서울전시회 개최 관련 사전조사단 방한(1993.8.16.~18.)
- 사가 현립박물관, 나고야성 건립
- 한·일 협력위원회, 합동간부회의 및 심포지엄 개최
- 국립박물관 소장 일본화 200여 점의 일본 전시 추진
- 나가사키현 전통예술단, 대전 엑스포 공연장 주선 요청
- 센다이 미야기현 미술관, 한국 현대미술 12인전 개최

2. 자료

- 일본의 문화외교정책(주일본대사관)
- 한·일본 간 인적교류 활성화방안(동북아1과)
- 한·일본 문화관계(문화협력2과)

148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한·일본 문화교류기금

생산연도 1990-199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92 / 20 / 1-112

1990~92년 중 한·일 문화교류기금 관련 내용임.

1. 1990년도 주요 활동

- 1991년도 한일·일한 합동학술대회(1990.4.13.~15.)
- 제7차 일·한 교류 대표단 방한(1990.8.30.~9.2.)
 - 방문단: 하나무라 니하치로 일·한 문화교류기금 회장 외 19명
 - 방문 목적: 일본 측의 연례행사로서 한일·일한 문화교류기금 간의 1991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 협의, 양국 정·재계 인사들 간의 우의 증진 도모
 - 주요 일정: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차관 면담, 정·재계 인사 간 간담회, 심포지엄 참석 등

2. 1991년도 주요 활동

- 하나무라 니하치로 일·한 문화교류기금 회장에 대한 서훈(수교훈장 광화장)
- 제8차 일·한 문화교류 대표단 방한(1991.8.24.~27.)
 - 주요 일정: 대통령, 국회의장, 한·일 의원연맹 회장, 한·일 문화교류기금 이사장 예방 등

3. 1992년 주요 활동

- 제9차 일·한 문화교류단 방한(1992.8.27.~30.)
 - 방문단: 하나무라 니하치로 일·한 문화교류기금 회장 외 18명
 - 주요 일정: 국무총리, 한·일 의원연맹 회장, 전경련 회장 등 예방, 한·일 문화교류 간담회 등

한·요르단 문화협정 시행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92 / 21 / 1-135

1992~93년 중 한·요르단 간의 문화협정 시행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2.1월 요르단 측은 1977년 체결된 양국 간 문화협정에 의거, 동 시행계획서안을 한국 측에 제시
- 1993.7.22. 이한춘 주요르단대사와 사프완투칸 요르단 기획부차관 간에 한·요르단 문화협력 시행계획서 서명

2. 주요 내용(총 21개 조항)

- 고등교육기관 간 인적 교류
- 대학교 간 학술협정 체결 및 장학생 교환
-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교환
- 통신사 간 협력
- 도서·그림 및 전통공예품 교류
- 아동교육 협력
- 체육·청소년 교류
- 보건위생 및 전염병 관련 정보 교환
- 구급 분야 지도자 교류 등

1485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정책

서울시·Mexico City시(멕시코) 간 자매결연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92 / 22 / 1-185

1991~93년 중 서울시와 멕시코시티 간 자매결연 체결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1991.7월 멕시코 측은 양 도시 간 자매결연 제의

- 양 도시 간 향후 협력 교류 강화
 - 서울시는 멕시코 측은 자매결연 제의 관련 실무 협의 추진 입장 표명

2. 1991.10월 서울시 대표단, 멕시코시티 방문

- 자매결연 체결 시기 등 세부 사항 협의

3. 1992.4.28.~5.1. Beristain Iturbide 멕시코시티 부시장 방한

- 자매도시 결연 협의

4. 1992.9월 이상배 서울특별시장과 마누엘 까마초 솔리스 멕시코시티 시장 간에 협정문 서명 (10.5.자 발효 결정)

- 주요 내용
 - 주택, 교통, 환경 및 일반 공공사업과 서비스의 제공 등 도시발전에 있어 최우선적 분야에서의 정보교환 및 과학기술 증진
 - 교육, 문화, 체육 및 관광분야의 상호협력 활동 확대
 - 양 도시의 행정조직, 시민대표제도 및 참여제도에 관한 정보교환 촉진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개관 기념행사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93 / 1 / 1-63

1993년 중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개관 기념행사에 관한 내용임.

1. 개관 기념행사 계획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은 1993.1.7., 4.16. 또는 4.23.에 주러시아대사 및 외무부 간부 참석 하에 동 총영사관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외무부에 건의
 - 현판식
 - 민속예술단 공연
 - 경제사절단, 방문 세미나 개최(전경련 한·소 협회 또는 한·러 극동협력위원회 등)
 - 해군함정 친선 방문
 - 한국 관계 서적 기증(극동대학교 또는 주정부 도서관 등)
- 외무부는 1993.1.13. 상기 기념행사 관련 예비적 의견을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에 회보
 - 개관행사에 대한 외무부 지원 관련, CIS(독립국가연합) 내 1~2개국에 공관 신설을 추진 중임에 따른 예산배정 및 기타 유사한 행사에 대한 지원상 형평성 고려로 인해 예산지원 제약이 있음을 설명

2. 개관 기념행사 관련 세부사항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은 1993.1.27. 개관 기념행사를 4.23.에 개최하기로 결정
- 주러시아대사는 2.1.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개관 기념행사로 1992.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바 있는 '한국의 사계절' 소개 사진전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외무부의 예산지원을 요청
 - 송기업 작품 50여점을 전시하고, 동 제작비용에 7천달러 소요됨을 설명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은 2.23. 사진전을 대체할 한국영화제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동 행사를 위해 1,250달러가 소요됨을 보고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은 3.3. 개관 기념 리셉션 개최 경비로 최소 7,900달러가 소요됨을 보고
 - 외무부는 3.5. 예산 사정상 동 개관 기념행사는 규모를 축소하여 가능한 한 총영사관의 소관예산 범위 내에서 개최하도록 지시

1487

대한민국 외교부서 역사자료

한·튀니지 문화교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3-93 / 2 / 1-20

1992~93년 중 한·튀니지 간 문화협력 증진 관련 내용임.

1. Khelil 주한 튀니지대사의 최상덕 중동아국장 면담(1992.7.15.) 시 주요 언급 내용

- 한·튀니지 문화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협정 제12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여 나갈 것을 제의함.

2. SBS TV 취재팀 튀니지 취재

1488

- 외무부는 1993.1.15. 주튀니지대사에 SBS 취재팀이 특집 프로그램인 '세계의 여성' 제작의 일환으로 1.30.부터 약 3주간 튀니지를 방문, 현지 촬영 계획임을 알리면서 협조할 것을 지시함.
- 피점령 아랍지역 취재차 튀니지 문화, 경제 및 정치상 등을 취재
- 튀니지 외무성은 5.24. 주튀니지대사관 직원을 초청, SBS가 방영 예정인 튀니지 여성에 관한 특집프로 중 일부가 튀니지 여성의 비참상을 부각시킨다고 항의하면서 동 프로의 방영 중지를 요청함.

3. 한국 기독교인 튀니지 선교활동 금지 요청

- 튀니지 외무성은 1993.7.8.자 주튀니지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엘리자사도 선교회 소속 한국인 신도 15명이 주재국 법령을 위반하여 포교활동을 함에 따라 이들을 강제추방하였음을 알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함.

한·터키 문화·체육교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3-93 / 3 / 1-53

한·튀르키예 간 1993년 중 문화 및 스포츠 교류 관련 문서임.

1. 주튀르키예대사관, 1993.1.27. 한·튀르키예 통상증진 여건조성을 위한 문화 및 스포츠 교류 필요 건의

- 대튀르키예 수출증진 및 인근 CIS(독립국가연합) 국가 수출 교두보 마련 차원

2. 한국 민속공연

- 1993.2.5. 양승희 가야금 공연
- 주튀르키예대사관은 1993년 하반기 민속무용단 순회공연도 건의

3. 기아 농구팀 순회경기

- 1993.8.28.~9.5. 앙카라 및 이스탄불 순회

4. 삼성 레슬링팀 순회경기

- 삼성 측이 긍정 검토하고 추진하였으나, 튀르키예 레슬링협회가 소속팀의 호응도가 낮다고 평가함에 따라 추진 중단

5. 세계 청소년 배구대회

- 한국 청소년 배구팀은 1993.9.11.~20. 이스탄불 개최 세계 청소년 배구대회 참가

1489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

한·미국 도·시 간 자매결연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3 / 4 / 1-190

1991~93년 중 한·미국 도·시 간 자매결연 관련 내용임.

1. 추진 배경

- 한국 시정부 대표의 미국 방문 시 거론
- 미국 주재 대사 및 총영사의 시정부 인사 면담 시 거론
- 거주 교민이 제안하고 주선

1490

2. 자매결연 추진 진전사항

- 자매결연 확정 도시
 - 인천·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앵커리지 시의회 부의장이 인천을 방문하여 의정서 체결
- 추진 협의 진전 도시
 - 경기도 부천·텍사스주 패서디나: 패서디나 시의회 의장 방한
 - 충청남도 천안·오리건주 비버턴: 천안시장의 비버턴 방문
- 관계기관 간 긍정적 의사 교환 도시
 - 경기도 하남·아칸소주 리틀록
 - 전라남도 나주·워싱턴주 웨내치
 - 경기도 양주군·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 대전·일리노이주 시카고
 - 경상남도 진해·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 초기 검토단계 도시
 - 서울·플로리다주 마이애미
 - 항구도시·메릴랜드주 볼티모어
 - 광주·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루이스 측 재해로 지연

한국문화예술 해외선양계획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93 / 5 / 1-23

1. 외무부 문화협력국은 1992.4.17. 미주국, 구주국, 중동아프리카국에 1993년도 한국문화공연단을 파견할 대상국가에 대하여 문의한바, 각 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함.

- 미주국: 미국, 캐나다, 페루, 파라과이, 바하마
- 구주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루마니아, 불가리아
- 중동아프리카국: 쿠웨이트, 요르단, 오만 등

2. 문화부는 1992.7.10. 외무부로 '1993년도 한국문화예술 해외선양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면서, 각국 대사관에 주재국 현황을 파악 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문의사항
 - 주재국 주요 공연주선 단체·개인 현황
 - 주재국 진출 한국 주요 상사 및 현지 투자법인 현황
 - 주요 공연장 및 전시장 현황 및 일일 대관료(US\$ 기준)
 - 주재국 정부 또는 민간차원에서 지원 가능성(현지 체재비, 대관료, 현지 홍보비 등)
 - 동 행사 추진에 대한 의견
- 또한 동 행사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재국 정부가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1993~95년도 현지 문화행사 개최 및 참여를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임.

1491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작

동북아시아지역의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국제회의. 동경, 1993.11.4.-5.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93 / 6 / 1-44

1993.11.4~5. 도쿄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됨.

1. 회의 개요

- 주최: 일본 정부
- 경위: 1993.1월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태국 방문 시 제의
- 목적
 - 소멸 위기에 처한 동북아시아 무형문화재 보존 실태와 문제점 및 성공 사례에 대한 의견교환
 - 무형문화재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동북아시아 국가 간 협력방안

1492

2. 초청 대상국

- 한국, 중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12개국 및 유네스코 등

3. 한국 측 참가자

- 이상용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기획관

4. 회의 일정

- 비공개 정부대표 간 회의, 공개 토론회, 일본 전통 문화 시찰

5. 회의 결과

- 동북아 전통문화 보존과 진흥에 관한 선언 채택

해외 소재 유적 현황 조사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MF번호 2023-93 / 7 / 1-170

1. 중국 공식 방문 후 국무회의 주재 시(1992.10.1.), 노태우 대통령의 해외 소재 한국 유적 관련 지시사항

- 한·중 수교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경 임시정부청사를 비롯하여 앞으로 추가로 발굴하고 고증해야 할 선조들의 사적이 많을 것으로 생각함.
- 문화부는 외무부, 보존처 등과 협조 하에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산재하는 사적지를 찾아내어 이를 면밀히 고증하고 필요시 성역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바람.

2. 동 대통령 지시 관련 외무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한 해외문화유적 현황(1993.2월)

- 외무부는 1992.10~12월 33개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지에 산재하는 한국 사적지를 조사하여 문화부에 전달
 - 일본: 2·8 독립선언기념비, 백제문화재, 조선통신사 자료관 등 16곳
 - 중국: 중경 임시정부청사, 홍구공원, 청산리전투 유적지 등 8곳
 - 미국: 안창호 선생 유가, 대한인국민회의 회관, 예수교장로회 예배당 등 4곳
 - 러시아: 주러시아 대한제국공사관 터, 홍범도장군 묘지 등 3곳
 - 네덜란드: 이준 열사 묘

3. 외무부, '해외 소재 한국 문화재' 반환 관련 검토(1993.9월)

- 반환 요구의 국제법적 근거, 해당 문화재의 반출 경위 소명자료 미흡 등 문제점 하에서 아래 대책을 검토
 - 사안별로 양국 간 우호관계 내지 문화협정정신 차원에서 반환 교섭
 -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유네스코) 활동 참여, 국제적 여론 형성 및 관계국 간 반환 노력 병행
 - 해외 유출 문화재의 공개 전시 추진: 해외 유수 박물관에 한국실 설치 지원 등

149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부스기념관 내 한국전시장 설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문화협력1과 / 중미과

MF번호 2023-93 / 8 / 1-82

1992~93년 중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부스기념관 내 한국전시장 설치 관련 내용임.

1. 설치 경위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콜롬부스기념관을 세계적인 교육문화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국의 전통문화 상설전시장 설치사업을 추진
- 도미니카공화국 측은 1992.7월 주도미니카대사에게 한국전시장 설치 문제 제기
- 기본품목 전시를 위해 우선 전시장 1단위(module: 폭 2.36m) 배정

2. 한국전시장 설치 문제 검토

- 설치 목적: 미주대륙 발견 500주년 사업에 참가함으로써 미주지역 국가와의 유대증진
- 추진 방안
 - 제1단계: 개관일에 맞추어 기본 품목(국기, 국가문장, 대통령 메시지) 전시 추진
 - 제2단계: 개관일 후 한국문화 소개 품목 전시 추진

3. 콜롬부스기념관 개관식(1992.10.6.) 개최

- 한국전시관은 기송부된 기본전시품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념관 1층에 위치함.

4. 콜롬부스기념관 내 한국관 전시물 추가

- 주도미니카대사는 1992.11.17. 콜롬부스기념관 개관식이 1992.10.6. 거행되었음을 알려오면서 이미 설치된 기본전시품(국기, 문장, 대통령메시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전시품을 제작, 송부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외무부는 11.17. 문화부장관, 공보처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에게 아래 지원품목 제작을 위한 지원을 요청함.
 - 천주교 전래역사, 금속활자 또는 훈민정음 소개 패널
 - 거북선 모형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3.8~9월간 동 기념관 전시품으로 거북선 모형 1개, 금관 모형 1개 및 천주교 전래역사 소개 및 훈민정음 소개 패널 1개를 과테말라에 송부, 동 기념관에 전시됨.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 호주 방문, 1993.10.26.-3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93 / 9 / 1-7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의 1993.10.26.~30. 호주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 경위

- 주호주대사관은 1993.7.15. 주재국 외무무역부에 따르면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이 1993.8.21.~25. 호주를 방문, Ros Kelly 호주 환경체육부 장관과 한·호주 체육교류 증진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바, 동 양해각서 체결의 배경 및 이민섭 장관의 호주 방문 관련사항에 대해 알려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외무부는 1993.7.19. 문체부에 문의 결과, 주한 호주대사의 제의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호주 방문을 내부 검토하였으나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호주대사관에 통지함.
 - 한·호주 체육교류 양해각서는 문체부가 주한 호주대사관으로부터 호주 측 안을 접수하여 검토 중이며, 서명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함.
- 주호주대사관은 1993.11.1. 이민섭 장관 일행 4명이 10.26. 주재국에 도착, 호주 방문을 마치고 10.30. 귀국하였음을 보고함.

2. 주요 일정

- 한·호주 체육교류 부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 외무무역장관, 환경·체육·영토장관, 예술·행정장관 및 퀸즐랜드주 수상 직무대리 예방
- 호주 국립예술단 Brisbane 공연 참관
- 시드니 올림픽 2000 개최 예정지 및 시설 건설현장 시찰 등

1495

대한민국 외교부

Broadbent, Edward 국제인권·민주발전센터 이사장 방한, 1993.10.14.-16.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3-93 / 10 / 1-52

Edward Broadbent 국제인권·민주발전센터 이사장이 1993.10.14.~16. 방한함.

1. 방한 목적

-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상과 인권시장 상황 관찰
- 인권과 민주발전을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력관계 구축
- 미얀마 등 인권 침해국에 대한 공동대응 방향 모색

1496

2.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인권대사 면담
-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 조찬, 지도급 여성인사 오찬, 한양대 이사장 조찬
- 이기택 민주당 대표 면담

3. 한국 외무부 고위인사와의 면담 내용

- 홍순영 외무부차관, 신두병 인권대사 면담 시 인권문제의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
 - Broadbent 이사장은 한국 정부의 대미얀마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바, 홍 차관은 미얀마의 정치발전과 인권 향상을 기대하는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전달
 - 동 이사장은 태국, 일본 방문 후 귀국하여 홍 차관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음.

Emilio PEREZ 볼리비아 'Presencia'지 기자 방한, 1993.9.6.-1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3-93 / 11 / 1-50

Emilio Perez 볼리비아 Presencia지 기자의 1993.9.6.~11.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목적

- 외국 언론인 초청사업의 일환
-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주요 일정

- 주한 볼리비아 명예총영사 주최 만찬
- 대전 엑스포 관계관 주최 오찬
- 대전 엑스포 관람

1497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작성한 자료임

Mohammad HASHEMI 이란 국영방송 'IRIB' 이사장 방한, 1993.7.5.-8.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3-93 / 12 / 1-94

Mohammad Hashemi 이란 국영방송(IRIB) 이사장의 1993.7.5.~8.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해외 유력 언론인 초청사업 일환
 - Hashemi 이사장은 라프산자니 이란 대통령(1993.6.11. 선거에서 당선)의 친동생이며, 1992.10월 방북하여 김일성을 면담할 만큼 이란 내 비중 있는 인물

1498

2. 주요 일정

-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공보처장관 예방
- KBS 사장 면담 및 뉴스·프로그램 교환 합의서 서명
- MBC 사장, 국제교류재단이사장 면담
- 대우자동차, 삼성전자 시찰

3. 국무총리와 면담요지

- Hashemi 이사장
 - 한국 건설업체의 이란 전후 복구사업 참여에 감사
 - Habibi 이란 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이란 초청 전달
 - 이란이 서방권 협력에서 아시아 중시정책으로 전환한 사실을 강조하고, 남북한 긴장 완화를 위한 이란 정부의 기여 용의 표명
- 국무총리
 - 더욱 많은 한국 업체의 이란 전후 복구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란 정부의 배려 기대
 - Habibi 부통령의 초청에 감사 표명, 동 부통령 및 라프산자니 대통령에 대한 안부 당부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이후 심화되는 한반도 긴장 국면 소개, 남북한 긴장 완화를 위한 Hashemi 이사장의 지속적인 노력 희망

George S. Hawatmet 요르단 Jordan Times 편집국장 방한, 1993.11.14.-19.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3-93 / 14 / 1-50

George S. Hawatmet 요르단 Jordan Times 편집국장의 1993.11.14.~19. 방한 관련 문서임.

1. 방한 경위

- 1993년도 대외홍보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언론인 방한 초청사업

2. 주요 일정

- 11.15. 판문점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방문,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 면담, 주한 요르단 명예총영사 주최 만찬
- 11.16. Korea Herald 방문, 한국기자협회장 면담, 한국프레스센터 사업 이사 주최 오찬, 통일원 관계관 면담,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권태욱 한보철강 사장 주최 만찬
- 11.17. 국립중앙박물관 및 비원 관람, 울산 현대자동차 및 현대조선소 방문
- 11.18. KOICA 방문 및 임원 주최 오찬,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외무부 문화협력국장 주최 만찬

1499

대한민국 외교부서 업무편람

Yambot Isagani 필리핀 'Philippin Inquirer'지 발행인 방한, 1993.4.12.-1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3-93 / 15 / 1-45

Yambot Isagani 필리핀 Philippin Inquirer지 발행인의 1993.4.12.~17. 방한 관련 문서임.

1. 방한 일정

- 4.12. 도착
- 4.13. Korea Herald 방문, 한국기자협회 방문, 프레스센터 사업 이사 주최 오찬, 국립중앙박물관 및 비원 관람, 주한 필리핀 명예영사 주최 만찬
- 4.14. 대전 엑스포 현장 취재, 주한 필리핀대사 만찬
- 4.15. 외무부 아주국장 및 KDI 관계관 면담, 울산 현대자동차 및 현대조선소 방문
- 4.16. 포항제철 시찰, 포항제철 임원 주최 오찬, 외무부 문화협력국장 면담 및 만찬
- 4.17. 이한

2. 방한 언론인의 한국 관련 기사 게재

- 1993.5.3./5.10./5.11./5.12./5.13./5.14. 총 6회에 걸쳐 게재

Juan P. Castro 페루 'El Comercio'지 정치부장 방한, 1992.10.13.-18.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3-93 / 16 / 1-49

Juan P. Castro 페루 El Comercio지 정치부장이 1992.10.13.~18.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2.4.7. 외무부는 페루 유력 일간지 El Comercio지의 J. P. Castro 정치부 부국장을 방한 초청하기로 하고 주페루대사관에 통보
- 8.19. Castro 부국장은 10월 중 방한을 희망한다고 주페루대사관을 통해 회신
- 9.8. 외무부는 Castro 부국장의 방한 기간을 1992.10.12.~17.로 확정하고 통보
- 9.17. 주페루대사관은 Castro 부국장의 관심사항을 보고
- 출발공항에서 폭탄 테러사건 발생으로 출발이 1일 지연됨에 따라 10.13. 한국 도착

2. 주요 일정

- 10.14. 성남 새마을연수원 방문, 새마을 시범마을 방문, 주한 페루대사 주최 만찬
- 10.15. KDI 산업통상연구부장 면담, 판문점 시찰, 교류재단 이사 주최 만찬
- 10.16. 대전 엑스포 현장 취재, 한·페루 어업주식회사 주최 만찬
- 10.17. 외무부 문화협력국장 면담, KOICA 방문, 프레스센터 감사 오찬, 비원 관람

3. 방한 결과

- El Comercio지는 한반도 실정 및 대전 엑스포 관련 특집 기사를 2회 게재

1501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처

R. Bogdan 루마니아 Nine O'clock 발행인 방한, 1993.6.14.-20.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3-93 / 17 / 1-66

R. Bogdan 루마니아 Nine O'clock 발행인이 1993.6.14.~20.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2.11.3. 주루마니아대사는 R. Bogdan 루마니아 Nine O'clock 발행인의 방한 초청 건의
- 외무부는 Bogdan의 방한 초청 확정을 회신

2. 주요 일정

- Korea Herald 방문, 한국기자협회장 면담, 프레스센터 임원 주최 오찬
- 대전 엑스포 현장 취재,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금성사 임원 주최 만찬
- 판문점 시찰, 용인민속촌 관람, 경기도 자문대사 주최 오찬
- 주한 루마니아 명예총영사관 개관 기념식 참석, 한·루마니아 친선협회장 주최 만찬
- 외무부 제1차관보 예방 및 외무부 구주국 심의관, 문화협력국장, 경제기획원 관계관, KDI 관계자 면담
- 교류재단 임원 주최 만찬, KOICA 임원 주최 오찬

3. 방한 성과

- Nine O'clock지에 “21세기를 향한 한국 제하” 1993.7.6.~13. 6회 시리즈 기사 게재

EDMUND Ranasinghe 스리랑카 'The Island'지 편집국장 방한, 1993.8.23.-28.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3-93 / 18 / 1-46

Edmund Ranasinghe 스리랑카 The Island지 편집국장이 1993.8.23.~28.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3년 해외 언론인 초청 사업의 일환

2. 방한 의의

- 한국의 투자진출이 활발한 스리랑카의 언론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동인의 방한은 한·스리랑카 간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임.

3. 주요 일정

- 8.23. 갑을방적 사장 주최 만찬
- 8.24. 판문점 투어, 스리랑카 명예총영사 주최 만찬
- 8.25. 대전 엑스포 참관, 한·스리랑카 친선협회장 주최 만찬
- 8.26. 프레스센터 이사장 주최 오찬, Korea Herald 및 KDI 방문
- 8.27.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외무부 국제협력국장 면담 및 만찬

1503

대한민국 외교부서 업무

Alwin S. Chow 트리니다드토바고 'Guardian'지 편집장 방한, 1993.9.13.-18.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3-93 / 19 / 1-52

Alwin S. Chow 트리니다드토바고 Guardian지 편집장이 1993.9.13.~18.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2.12.4.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은 유력 일간지인 Guardian지의 Chow 편집장에 대한 방한 초청을 건의
- 1993.3.19. Chow 편집장은 1993.9.10.~30. 중 방한을 희망한다고 회신
- 외무부는 방한기간을 1993.9.13.~18.로 조정

1504

2. 주요 일정

- 9.14. 판문점 시찰, 주한 트리니다드토바고 명예총영사 주최 만찬
- 9.15. 대전 엑스포 관계자 주최 오찬, 엑스포 관람, 보트업체 관계자 주최 만찬, 한강유람선 승선
- 9.16. 동아일보 방문, KBS 방문, 울산 현대자동차 방문, 현대조선소 방문
- 9.17. 프레스센터 이사장 주최 오찬, 외무부 문화협력국장 주최 만찬

3. 방한 결과

- Guardian지는 "Korea-a Journey of discovery" 제하 방한 기사를 10.3. 게재

Reginald Mavunika MHANGO 탄자니아 'Daily News' 부편집장 방한, 1993.4.25.-30.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3-93 / 20 / 1-56

Reginald Mavunika Mhango 탄자니아 Daily News 부편집장이 1993년도 언론인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1993.4.25.~30.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92.4월 주탄자니아대사관 개설에 이어 탄자니아 국민에게 한국에 관한 포괄적인 소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탄자니아대사가 탄자니아 외무부와 협의하여 Mhango 부편집장을 방한 초청함.

2. 주요 일정

- 기관 방문 및 취재활동
 - 외무부, KOICA, KDI, 경제기획원, Korea Foundation, Korea Press Center, 연합뉴스 등
- 시찰 및 방문
 - 판문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삼성전자 수원공장, 대전 엑스포 현장 등

1505

대한민국-외국관계사-외교

미국 언론인 방한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북미1과 / 홍보과

MF번호 2023-93 / 21 / 1-205

1992~93년 중 미국 언론인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Joseph F. Copeland 주필(1992.5.14.~18.)

- 소속: The Herald(시애틀 소재)
- 주요 일정
 - 면담: 외무부 제1차관보, 통일원 제1정책관,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장, 상공부 전자정보공업 국장 및 수송기계과장, 당진군수, 김현욱 의원
 - 시찰: 국립중앙박물관, 비원

2. Buckley 회장 및 O'Sullivan 편집장(1992.5.24.~27.)

- 소속: National Review
- 주요 일정
 - 면담: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오찬, 주한 미국대사 만찬
 - 시찰: 비무장지대
 - 활동: 한국 특집 'Firing Line' 제작(주미국대사 및 주한 미국대사 출연)

3. Weinberger 발행인 및 Forbes 회장(1993.3.7.~10.)

- 소속: Forbes
- 주요 일정
 - 면담: 외무부장관, 대한항공 부회장, 삼환기업 부회장, 선경 회장, 럭키금성 회장
 - 오·만찬: 대우, 금호, 삼성, 쌍용, 현대 회장
 - 기타: Forbes 그룹 주최 리셉션

4. Leslie Gelb 논설위원(1993.3.16.~21.)

- 소속: The New York Times
- 주요 일정
 - 면담: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국방부장관, 공보처장관, 국회 외통위원장
 - 오·만찬: 민자당 대표, 외무부장관, 한승수 대사, 선경 회장
 - 기타: 주한 미국대사관 브리핑, 21세기위원회 조찬 간담회, 동북아협의회 만찬 간담회

외무부 출입기자단 일본 방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93 / 22 / 1-65

1993년 중 외무부 출입기자단의 일본 방문에 관한 내용임.

1. 기간

- 1993.10.11.~20.(9박10일)

2. 일행

- 기자단 12명, 외무부 직원 1명 총 13명

3. 교류 현황

- 1981년 한·일 각료회의 시 양국 외무부 출입기자단의 상호 교환방문 사업 실시 합의

4. 주요 일정

-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 타게시타 일·한 의원연맹 회장 면담
- 아시아경제연구소 방문, 육상 자위대 시찰, 키노시타 제작소 방문, 교토 전승문화 시찰, 관서 원자력발전소 시찰, 츠쿠바 연구학원 도시 방문(환경 관련 연구소 시찰)

1507

대한민국 외교부

AKSE(구주한국학회), 제16차. Berlin, 1993.4.16.-2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3 / 23 / 1-85

1993.4.16.~20.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6차 AKSE(유럽한국학회) 총회 관련 내용임.

1. 주관 단체

- 독일 훔볼트대학 한국학과

2. 참가자(22개국 108명)

- 한국 측
 - 서울대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및 학술진흥재단 관계자 12명
- 북한 측
 - 훔볼트대학 교환교수 1명

3. 주요 결과

- 한국 역사, 언어, 문학, 경제, 예술 분야 순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
- 극영화 상영 및 국립국악원의 사물놀이 공연

4. 특이 사항

- 주최기관인 훔볼트대학은 과거 공산주의의 타성으로 한국 측 지원기관과 마찰
- 동 총회는 소련 붕괴로 인해 동유럽지역의 전문가 활동이 부진하고, 세대 교체 전망

미시간 주립대학 국제한국학 회의. East Lansing(미국), 1993.7.7.-1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3 / 24 / 1-212

1993.7.7.~11. 미국 이스트랜싱에서 미시간 주립대학, 한양대학교, 국제고려학회(친북단체) 공동주최로 국제한국학 회의가 개최됨.

1. 회의 주제

- 21세기를 향한 한반도의 변환 - 평화, 단결, 진보

2. 참가자

- 19개국 650여 명(대부분 교포 한국학자)
- 한국 측: 유종하 주유엔대사, 김진현 전 과기처장관, 임동원 전 통일원차관, 김상현, 유인태 등 의원, 이영희, 김근태, 고은 등 재야 인사
- 국제고려학회 측: 오청달 부회장, 송남순 사무총장이 참석하였으나, 북한 측 인사는 불참

3. 주요 결과 및 평가

- 당초 북한 학자를 비롯하여 친북성향의 한국학 전문가들이 포함된 최초의 초이념적 한국학 회의로 기획되었으나, 북한 학자 불참으로 의미가 다소 퇴색
- 회의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 예술, 의학 등 광범위하게 개괄적인 논의 형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북한 핵 문제, 남북대화 및 통일정책,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에 관심이 집중됨.
 - 유종하 주유엔대사는 북한이 9월 말까지 핵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유엔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
 - 반면, 오청달 국제고려학회 부회장, 리영희 교수 등은 북한의 핵 개발이 남한의 군사력 증강 및 흡수통일 추구 가능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생존 대비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
- 동 회의를 통해 국제고려학회의 친북성향이 사회주의권 몰락, 한국의 절대적인 대북 우위 현실 등으로 인해 크게 탈색된 것으로 파악

1509

대한민국 국제한국학 연구회

콜롬비아대학 한국학 토론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3 / 25 / 1-19

1. 1993.3.26. 콜롬비아대학교 한국학센터(Center for Korean Research)의 한국학 토론회에서 김준길 주뉴욕총영사관 문화원장은 미국 내의 한국학에 대한 비평 주제를 발표함.

- 김 원장은 미국 내 한국학 연구를 '선교사 시대, 미 군정 시대, 평화봉사단 시대, 무역동반자 시대' 등 4단계로 구분하고 미국의 한국학 연구가 시대별로 왜곡된 시각에 기초하여 범해온 오류를 지적함.
- 미국 내 한국학을 오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그레고리 헨드슨 저 '소용돌이 속의 한국 정치(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라면서 문제점을 집중 비판하고,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카터 에커트 교수의 '제국의 후예' 등에 대해서도 그 오류를 지적함.

1510

2. 김준길 문화원장 발제 자료(영문) 수록

한국문학 번역에 관한 국제회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3 / 26 / 1-66

1992~93년 중 한국문학 번역에 관한 국제회의 관련 문서임.

1. 제2차 한국문학 번역자 회의(1992.12.10.~13.,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주관
 - Marshall Phil 하와이대학교 언어문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 공동주관
- 회의 주제: 한국문학 번역 및 미국 내 강의와 관련한 제 문제점
- 참가자
 -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국 25명
 - 한국 측: 서지문(고려대), 권영민(서울대), 이성일(연세대), 권두한(서울대), 김종길(고려대) 교수, 고창수 외무부 본부대사
- 회의 결과
 - 조선 이전의 시, 조선의 시, 조선시대 판소리, 조선 이후의 문학, 문학 교수자료 및 방법 등 6개 주제로 패널 토론
 - 고창수 대사는 조선 이전의 시에 대한 주제 중 '원효대사가 시인에게 한 말'을 중심으로 발표함.

2. 제3차 한국문학 번역자 회의(1993.11.11.~14., 버클리대학교 한국학센터)

- 주관
 - 국제한국문학협회(회장: Marshall Phil 하와이대학교 교수)
- 참가자
 - 한국(계) 교수, 외국인 교수 등 총 23명
 - 고창수 대사는 '한국 현대시'에 관한 주제 발표

중국 소재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중심 협조 사업

생산연도 1993

생산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3 / 27 / 1-94

1. Hu Sheng 중국 사회과학원장 방한 초청(1993.10.10.~17.)

- 방한 경위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 유력인사 초청사업 일환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정신문화연구원장, 사회과학원장, 국제교류재단이사장 면담
 - 세종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총장, 대전시장, 경주시장 등 주최 오·만찬
 - 기자회견
 - 산업 시찰 및 대전 엑스포 관람 등

2. 손주환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면담(1993.10.11.) 시, Hu Sheng 원장 언급 요지

- 역사적 우여곡절로 잠시 양국관계가 단절되었으나, 이제 다시 수교되어 양국관계는 정상화되고 있음.
 - 이러한 양국수교의 의미를 가슴에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양국 간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모든 국가가 바라는 일로서 아시아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사회과학원은 국제교류재단의 한국학 연구지원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2명을 추천함.
 - 지원대상자 결정은 국제교류재단 고유 권한이지만 개인적인 역량과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추천한 만큼 이를 잘 검토해주시기 바람.

페루 카톨릭대학 한국학연구센터 연구지원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3 / 28 / 1-51

1992~93년 중 페루 가톨릭대학 한국학연구센터 연구지원 관련 내용임.

1. 페루 가톨릭대학 총장의 지원 요청

- 주페루대사는 1992.8.10. Hugo Saravia Swet 페루 가톨릭대학 총장이 대학 내 동양학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보고하고, 아래와 같이 건의함.
 - 한국학 관계 문헌 100여 권
 - 한국학 관계 교수 및 학생 연구비 지원
 - 한국학 관계 저널 발간
 - 주요 잡비 지원(워드프로세서, 타자기, 컴퓨터 등)
 - 한국학 관계 한국 교수, 연구원 파견
 - 한국학관 독립 설치(교실 3만 달러, 집기 2만 달러)

2.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외무부 앞 회신(1992.9.14.)

- 주페루대사관에서 요청한 동양학연구소의 한국 연구활동 관련, 동 재단은 한국 연구도서와 교수, 학생, 연구비 및 세미나 경비지원을 1992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여타사항은 성격상 재단 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양지해 줄 것을 요청함.
 - 연구비와 세미나 경비는 해외 한국 연구지원프로그램으로 2만 달러 미만 수준에서 검토 중

3. 한국학연구센터 설치 관련 가톨릭대학 측과의 이견 문제

- 주페루대사는 1993.4.27. 동 대학 측이 한국학연구센터 설치를 위한 별도 교실이 없으므로 신축할 건축비 등 재정 지원을 한국 정부에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함.
- 이와 관련 외무부는 5.7.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건축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임을 주페루대사관에 통지하고, 동 대학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재단에 대한 기송금 지원금(2만 달러) 반환 요청을 지시함.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5.24. 가톨릭대학 한국학연구센터 지원금 2만 달러를 동 사업 취소에 따라 반환받았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미국내 한국학·한국어 강좌 및 학술회의 지원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3 / 29 / 1-72

1993년 중 미국 내 한국학, 한국어 강좌 및 학술회의 지원 관련 문서임.

1. 국제교류재단은 1993.7.27.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연구프로그램의 집행 결과가 사업계획과 다른 점에 관해 주미국대사관 및 외무부에 의견 조회함.

- 주미국대사관은 8.12. 사업선정의 적정성 문제, 자금의 항목별 과다·과소 사용 문제, 행정경비 부과 문제, 대CSIS 지원 재검토 문제 등을 검토하였으나 종합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산 집행방식 등 행정적, 실무적 문제보다는 약속된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었는가 하는 효과를 측정하는 차원에서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보고

1514

2. 1993년 중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국 관련 학술행사

- UC버클리 동아시아연구소 주최, 환경 심포지엄(10.1.)
 - 주제: 한태평양지역의 환경 문제, 1990년대의 방향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이 김정한 박사를 추천, 참가하도록 하여 한국의 환경 관련 정책 홍보
-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프레즈노 캠퍼스 개최 학술행사(10.4.)
 - 주제: 21세기를 맞는 한태평양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가 만찬 초청 연사로 참석, 강연
- UC버클리 한국학연구소 개최 학술행사
 - 최장집 고려대학교 교수: 김영삼 정부의 초기 개혁 정책과 한국 민주화의 방향(10.4.)
 - 어수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가치변화와 한국의 민주화(10.8.)

3.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주최로 개최된 학술행사(1993.10.13.)

- 스칼라피노 교수: 동아시아의 새로운 세계질서
 - 동 교수 연설문 및 번역 요지 수록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3-93 / 30 / 1-112

1. 외무부의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 방향(1992.1월)

- 공보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지원
- 러시아, 중국 교과서 중점 수집, 검토 및 시정 조치
- 독도 및 동해 지도표기 오류시정 계속 추진(미국·영국 등 선진국 중점 추진) 등

2. 한국관 시정사업 방향설정 협의(1993.3월)

- 한국교육개발원 개최
- 1992년도 개발연구보고서 배포 활용 방안 협의
 -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튀르키예, 몽골, 브라질 등 7개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등
-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변화 분석 등 1993년도 연구사업 방향 설정 협의

3. 제1차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1993.6.30.)

- 참가자
 - 공보처에서 공보처차관 주재로 외무부 문화협력국장 등 관계관
- 외무부는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왜곡 및 오류 시정 추진 현황 등 자료 제출
 - 정부 간 외교적 교섭을 통한 시정, 자료수집 및 배포, 문화협정 체결과 문화공동위원회 개최 시 왜곡 시정 상호협력 추진 등 현황 및 차기년도 계획 설명
- 회의 결과
 - 외무부 및 국제교류재단의 적합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영문 한국백과사전 발간 사업을 국제교류재단 담당으로 계속 추진
 -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과거 체제홍보 부담이 없어진 여건을 활용하여 한국관 시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4. 제2차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1993.12.1.)

- 외무부는 동 사업 관련 1993년도 추진실적 및 1994년도 계획 제출
- 회의 결과
 -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 명칭을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추진협의회'로 변경
 - 한국 바로 알리기에 민간역량 총동원, 사업 다변화, 자료집 'Understanding Korea' 발간 등

1515

대한민국 외교부 역사자료

한국관 오류 시정사업 관련 자료 수집. 전4권 (V.1 1991.1-10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4 / 3 / 1-135

1991년 중 한국관 오류 시정사업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내용임.

- 교육부의 외국 교과서 및 관련 자료 수집 협조 의뢰
 - 교육부는 1991.10.11. 한국관 시정사업 관련, 외무부의 해외공관을 통해서 자료 수집 대상국의 교과서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대상국(7개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태국, 몽골, 필리핀, 튀르키예
 - 내용: 7개국의 초·중등·고등 사회학 교과서, 7개국의 초·중등·고등 교육과정 및 교육제도에 관한 자료, 7개국의 교과서 발행과 편찬에 관한 자료 등

한국관 오류 시정사업 관련 자료 수집. 전4권 (V.2 1991.11-12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4 / 4 / 1-166

1991년 중 한국관 오류 시정사업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내용임.

1. 한국관 오류 시정사업

- 외무부는 1991.12.10.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 관련, 주불가리아대사가 수집 보고한 지리 및 역사 교과서 내용을 송부하면서 연구 분석 후 외무부에 송부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함.
- 또한 9월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는 동구권 교과서 관계자 초청세미나에 참석한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n Education의 Mr. Petar Iazarov 박사가 귀국 후 Ministry of Public Education이 발간하는 주간지 'Azbuiki'에 기고 예정인 논문을 송부, 참고하기 바란다고 부연
- 주불가리아대사는 상기인은 주재국 역사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의 오류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기관 및 관련자에게 한국 관련 서적 및 간행물의 지속적인 지원과 주재국 교육부 관계관의 방한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해 옴에 따라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

2. 한국관 오류 시정사업

- 주루마니아대사는 1991.12.6. 주재국 중등교과서에 실린 한국 관련 내용 및 동 내용을 소재로 Mr. V. Teodorescu 루마니아 교육부 국제협력국장이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함께 송부함.
- 주재국 내 한국관은 1990.3월 양국 수교 이후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었으나 교과서 내용 수정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문화, 예술, 학술 분야에서 인적 교류 및 자료·정보 교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요청됨.

1517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관 오류 시정사업 관련 자료 수집. 전4권 (V.3 1992)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4 / 5 / 1-216

1992년 중 한국관 오류 시정사업 추진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92.3.26. 1992년도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 관련하여 각 공관에서 조사 수집한 자료 중 주모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그리스대사관에서 보고한 자료가 우수하다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분석 결과와 함께 송부하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 재외공관에 통보함.

- 한국관 시정 추진협의회(위원장: 공보처차관)는 연차적으로 외국 교과서 및 자료를 연구 분석, 시정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있는바, 금년도에는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튀르키예, 몽골, 브라질 및 일본, 미국의 사회과 교과서와 1993년도에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및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을 연구 분석할 예정임.

2. 외무부는 1992.3.26. 금년도 시정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인바, 해당 공관은 필요사항에 대해 조치하라고 지시함.

- 한국관 시정 관련 참고서적 지원
- 자료 수집 및 시정 현황 현지조사
- 독도 오류표기 시정

한국관 오류 시정사업 관련 자료 수집. 전4권 (V.4 1993)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4 / 6 / 1-165

1993년 중 한국관 오류 시정사업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93년도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계획(1993.1.16.)을 아래와 같이 공보처에 통보함.

- 독도·동해표기 오류지원
 - 재외공관을 통하여 오류표기에 관련된 출판사와 계속 접촉 시정 추진
 - 문화공동위 개최 시 상대국 정부의 관심 촉구
 -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시정조치 노력 계속
 - 문화대사 활용방안 검토
 - 민간단체 활용 강화: 관련 학자들의 시정 활동 지원, 관광지도 활용
- 교과서 시정
 - 재외공관을 통한 교과서 수집 및 시정자료 배포
 - 문화공동위를 통한 교섭
 - 민간단체 활용강화: 교과서 관련 단체 활동 지원
- 자료 배포 강화
 - 각 공관에 대한 외무부 주요자료 배포
 -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2. 한국관 시정사업

- 외무부는 1993.6.17. 외국 사회과 교과서(초·중·고) 한국 관련 내용 중 아래의 중점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잘못 기술된 부분을 파악 보고할 것을 주러시아대사, 주헝가리대사 및 주베를린 총영사에게 지시함.
 - 6·25를 북침이라고 기술한 부분
 - 한국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 북한을 민주적 합법정부로 규정한 내용
- 아울러 왜곡 부분에 대한 시정 추진 현황(특히 한국과 수교 후 개선내용)과 전망, 향후 대책, 외무부 건의사항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

1519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관 시정사업: 러시아 교과서 관계자 초청 세미나, 1993.9.2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4 / 8 / 1-93

1993.9월 중 한국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 러시아 교과서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

1. 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93.9.17.~22. 한국교육개발원
- 주최
 - 한국교육개발원

1520

2. 목적

- 한국관 시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 러시아 교과서 관계자들의 의견 교환을 통한 상호이해 제고 및 한국에 대한 시각 교정 작업

3. 초청 대상자(4인)

- 러시아 교육부 차관 외 교과서 편찬자 3인

4. 주요 일정

- 교육부차관 방문,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시 내 중·고등학교 방문
- 국립중앙박물관, 민속촌 등 방문

한국관 시정사업: 미국 내 한국 관련 문헌 수집 및 분석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홍보과

MF번호 2023-94 / 9 / 1-68

1991~93년 중 미국 내 한국관 시정사업 관련 내용임.

1. 공보처 주관

- 한국 관련 문헌 오류 시정사업(1992~94년)
 - 대상 문헌: 백과사전 및 연감, 역사 및 지리 교과서, 단행본 서적
 - 사업 주관: 유타주 소재 브리검영대학 한국학위원회
- 한국학 편람 발간
 - 주관단체: Korea Society
 - 한국학 연구자, 연구기관, 연구자료 등 수록

2. 국제교류재단 주관

- 한국학 워크숍(1992.7월, 서울) 개최
 - 대상: 미국, 캐나다지역 교과서 및 백과사전 관계자

3. 교육개발원 주관

- 미국 교과서를 입수하여 한국 관련 내용 분석 및 연구
 - 오류 부분은 시정 요구
- 미국 교과서 관계자 초청 한·미 합동 세미나(1992.8.31.~9.6.) 개최

한·러시아 국제학술회의, 제3차. 서울, 1993.11.29.-3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기획조사과

MF번호 2023-94 / 10 / 1-206

제3차 한·러시아 국제학술회의가 1993.11.29.~30.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성격

- 외교안보연구원과 IMEMO(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와의 제3차 공동학술회의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수길 외교안보연구원장
- 러시아 측: Vladen Martynov IMEMO 소장

3. 회의 주제

- 안보외교정책 분과
 -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러시아 협력
- 경제협력 분과
 - 경제 및 과학기술
- 문화협력 분과

4. 주요 내용

- 러시아 국내정세 설명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 다자간 안보협의 검토
- 한반도 군축과 군사독트린
- 한·러시아 경제관계 증진 방안

한·러시아 외교사료 발굴 추진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 동구1과

MF번호 2023-94 / 11 / 1-276

1. 한·러시아 정부 간 사료 발굴 공동위원회 구성 검토

- 1993.3월 러시아 소장 사료 발굴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무부가 동 구성(안) 검토
 - 1992.11월 체결된 한·러 문화협정에서 근거 규정 마련
 - 특히 1992년부터 시행 중인 세종연구소·IMEMO(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간 한·러 관계 사료 발굴작업이 연구대상 사료에 대한 접근 어려움으로 인해 부진한 실정임을 고려
- 추진 계획
 - 1993.4월 관계부처 및 연구소 등의 의견 수렴
 - 러시아 측에 공식 제의
 - 5~6월 경 한·러 외무부 간 정책협의회 또는 한·러 문화공동위원회 등 계기 합의 도출 목표

2. 한국전 관계 사료 발굴 추진

- 1993.8월 외무부는 열친 러시아 대통령 방한(1993.11월)을 앞두고 동 건 추진을 검토
 - 한국전 발발 책임이 소련,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역사적 사실로 정립할 필요성
 - 다만, 러시아 측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전 관계 사료 공개가 한·중국, 남북한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

152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중국 조선족 학교 국어교사 방한 연수 추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4 / 12 / 1-27

1. 중국 조선족학교 국어교사 방한 연수 추진

- 1993.10월 주중국대사관, 조선족 교육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조선족 학교 국어교사, 주·현 단위 교원연수원의 조선어 강사요원, 자치주의 조선어교과서 편수관들의 방한 초청사업을 건의
 - 올바른 표준어 사용법 및 표준어 국어교육 실상에 대한 이해 제고 목적

2. 연변 조선족자치주 교육위원회 주임 등 4명 방한(1993.11.26.~12.5.) 초청

- 초청 목적
 - 한국 표준어 교육 실태 및 현황 파악, 조선족 국어교육 지원교육에 대한 실무협의
- 동 방한인사들은 국제교육진흥원 및 교육개발원 방문·협의 시 아래 입장을 표명
 - 국어교사에 한정된 사업보다는 각 과목 교재 공급 및 편찬 지원, 유치원, 초·중등교사 방한 연수 등 일반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선호
 - 국어교사 및 교과서 관계자의 방한 연수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통제로 인해 중국 내 조선어 교재 및 강의를 한국 표준어 방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불투명
 - 1회 연수인원은 10명 이내에서 가능할 것이며, 수업 결손 때문에 3개월 정도의 국어교육 관계자 방한 연수는 성사되기 어려움.

3. 국제교육진흥원 측 대안 제시

- 조선족 교사에 대한 직접 연수 대신, 방학을 이용한 중국 동북지방 교사양성소의 연수원 교수 요원에 대한 단기연수 방식을 제시

James H. Billington 미국 의회 도서관장 방한, 1993.5.18.-25.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4 / 13 / 1-82

James H. Billington 미국 의회 도서관장의 1993.5.18.~25.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90년 미국 의회 개원 100주년을 계기로 한국국제문화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 전신)이 미 의회 도서관에 100만 달러를 기증하여 한국신탁기금(Korea Trust Fund)을 설치
 - 도서관 내 한국과 설치, 인사교류, 자료 구입에 활용
- 1992.11.6.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명의로 Billington 의회 도서관장 방한 초청
 - 해외 유력인사 초청사업의 일환

2. 방한 목적

- 미국 의회도서관 내 한국과 운영 협의

3. 주요 일정

- 예방: 국회의장, 국회도서관장, 외무부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총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사편찬위원장 등
- 오·만찬: 민자당 대표위원, 국회 외통위원장, 문화체육부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국회도서관장,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
- 시찰: 창덕궁, 해인사, 불국사, 석굴암, 천마총, 경주국립박물관, 교보문고

1525

대한민국 의회도서관

한·중국 대학 간 자매결연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4 / 14 / 1-287

1993년 중 중국유학 연수허가제도 개선과 양국 대학 간 자매결연 관련 내용임.

1. 중국유학과 연수허가제도 개선 문제

- 1992.11월 외무부는 주중국대사의 건의(현행 한·중국 교육학술교류 업무처리 지침상 자격요건 및 절차가 여타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까다로움)에 따라 이의 개선을 교육부에 요청
- 1993.8월 교육부는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기 지침을 개정함.

1526

2. 중국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허가 신청 및 회신

- 동아대·베이징 제2외국어대학, 경북대·과학원 수학연구소, 울산대·남경대학, 마산전문대·산동 중의학원, 전남대·남경대학, 동국대·청화대학, 정신문화원·사회과학원, 군산대·청도 해양대학, 경희대·남개대학, 한국외국어대·남경대학, 조선대·남경대학, 충북대·서안교통대학

한·자메이카 대학 간 교류사업 추진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4 / 15 / 1-22

1992~93년 중 한·자메이카 대학 간 사업추진 현황임.

1. 자메이카 University of West Indies, 이종욱 수원대 총장 방한 초청(1993.3.1.~5.)
2. 수원대 총장, 1993.2월 초 자메이카 방문 희망
3. 수원대 총장, 건강상 이유로 자메이카 방문을 1993.11월 이후로 연기
 - 수원대는 UWI 총장 방한 희망

1527

대한민국-자메이카 교류협력사업

러시아 한민족대학 설립 문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4 / 16 / 1-52

1993년 중 러시아 한민족대학 설립 보도 관련 내용임.

1. 러시아의 '종교활동자유법' 제정

- 러시아 국회는 동법을 1993.7.13. 통과시킴.
 - 동법에 종교행사 제한내용이 포함된바, 이는 한국 선교사 활동에 영향을 미침.
- 옐친 러시아 대통령, 동법 거부권 행사
- 7.29. 한국 언론은 '러시아 의회 외국인 선교활동 금지' 법개정으로 현지 한인 선교사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기사 보도

2. 러시아 한민족대학 설립

- 1993.12.4. 조선일보는 '한민족대학'이 12.3. 설립되었다고 보도

2000년도 하계올림픽 유치도시 선정 관련 각국 관계 및 협조 요청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4 / 17 / 1-79

1991~93년 중 2000년도 하계올림픽 유치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중국 등 개최 희망국이 한국 측 협조를 요청함.

1. 1993.3.8. 중국은 2000년 하계올림픽 유치도시 선정 관련 베이징 개최를 신청한다고 발표함.

● 4.11. 유치위 발족

2. 1993.4.13. 브라질은 200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대통령 친서를 한국 대통령에게 전달함.

3. 1993.5.17. 호주는 양국 간 정책협의회 시 한국 측 지지를 요청함.

4. 1993.6.30. 한국 정부는 후보지 결정에 정부가 간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치 희망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달함.

5. 1993.9.24. 200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시드니가 결정됨.

1529

대한민국 외교부

1993년도 제1회 상하이 동아시아경기대회, 1993.5.9.-18.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4 / 18 / 1-48

1. 제1회 동아시아경기대회(1993.5.9.~18., 상하이) 참가계획(1993.4월, 문화체육부)

- 1992.1월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원국 내 동아시아지역 8개국 간 스포츠 교류 증진 및 경기력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동아시아경기대회 창설에 합의
- 참가 목적
 - 남북한 체육 교류 확대·발전, 스포츠를 통한 한·중국 간 교류 협력 증진
- 13개 종목 280명의 선수단 파견 계획

1530

2. 제3회 동아시아경기대회 한국 유치 추진

- KOC(대한올림픽위원회)는 1993.8월 동 유치 관련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 문의
 - 1997.9~10월 중 부산 일대 개최
 - EAGA(동아시아경기대회협의회) 및 동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주최
 - 9개국(한국, 북한, 중국, 일본, 대만, 몽골, 홍콩, 마카오, 괌) 3,000여 명 선수단 참가(17개 종목)
 - 소요예산: 120억 원

태권도 사범 자메이카 파견

생산연도 1987-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95 / 1 / 1-25

1. 1987.1월 자메이카 측, 한국 측이 태권도 사범 1명을 1년간 파견해줄 것을 요청

- Anderson 자메이카 안보장관이 경찰 및 군인 약 50명의 태권도 사범 후보에 대한 지도를 위해 주자메이카대사에 요청
 - 주자메이카대사는 양국관계 증진, 남북한 대치지역인 자메이카에서 대북 우위 확보 및 태권도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 검토를 건의
 - 한국 측이 태권도 파견을 추진하였으나, 1989.4월경 북한 측이 태권도 교관 2명의 대자메이카 파견을 제의하면서 난관에 봉착
- 이후 주자메이카대사의 교섭 노력 및 자메이카 안보부의 호의적 인식으로 한국 측 사범을 태권도 교관으로 최종 선정
 - 한국 정부는 1990.8월 자메이카 측에 태권도복 100벌, 호구 20조를 지원

2. 대자메이카 체육후진국 지원 사업 검토

- 주자메이카대사는 주재국 인기종목이 축구임에 비추어 체육외교 효과차원에서 축구용품 지원이 필요함을 1993.2월 외무부에 건의
 - 1984년 경제협력 일환으로 자메이카에 축구공 1,200개를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음을 강조

1531

대한민국 외교부서 역사편

한·일본 외무부 간 청소년 교류 사업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5 / 2 / 1-197

1993년 중 한·일본 간 대학생 교류사업에 관한 내용임.

1. 일본 정부 초청 한국 대학생 방일

- 기간: 1993.2.9.~18.(9박10일)
- 인원: 17개 대학 총 18명
- 주요 일정
 - 시찰: 일본 역사민속박물관, 도교박물관, 교토 입명관대학, 나라현
 - 강연: 일본의 여론, 한일 경제 비교 등
- 성과
 - 일본의 문화재 견학, 민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 제고
 - 학생 교류 및 우의 친선 도모

2. 일본 대학생 대표단 방한

- 기간: 1993.10.26.~11.4.(9박10일)
- 인원: 17명
- 주요 일정
 - 강의: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정세, 한·일 문화 및 역사, 신라 역사, 퇴계 사상
 - 견학: 대전 엑스포, 판문점, 국립중앙박물관, 독립기념관, 서울지역 고궁, 경주 사적지, 안동

한·일본 청년교류 사업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5 / 3 / 1-227

1992~93년 중 한·일본 간 청년 교류 사업추진 관련 내용임.

1. 한국 청년대표단, 일본 방문(1993.7.6.~8.4.)

- 방문단: 대학생, 교사, 근로 청년, 청년 지도자 100명
- 사전 교육: 1993.7.3.~6.
- 활동: 일본문화 강의와 견학, 분야별 시설 견학, 지방자치단체 예방

2. 일본 청년대표단 방한(1993.11.23.~12.2.)

- 방한단: 58명
- 목적: 양국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
- 주요 일정: 국립중앙박물관, 대학, 전국 사적지 등 방문

1533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정책국

동북아 4개국 청소년 교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5 / 4 / 1-131

1992~93년 중 동북아 4개국의 청소년 교류 관련 내용임.

1. 동북아 역내 4개국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

- 1992.1월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방한 시 국회 연설에서 제의
 - 동북아 역내 4개국(한국, 일본, 중국(동북 3성), 러시아(극동)) 대학생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 목표
- 4개국 대학생, 일본 방문(1993.2.22.~3.5.)
 - 일본 외무성 주관
 - 동북아지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현장 실습 및 민박 등
 - 한국에서는 일본어 또는 일본학을 전공한 전국 대학생 가운데 대표 10명이 선발되어 참가

2. 향후 추진 방향

- 동북아 역내 국가 간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고, 한국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시야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1994년도 제2회 사업을 한국에서 주관
 - 국내 관계기관 및 상대국(일, 중, 러)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계획 마련

한·카타르 체육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95 / 5 / 1-49

1993년 중 한·카타르 간 체육협력 관련 내용임.

1. 카타르, 국제청소년캠프 개최

- 주카타르대사는 1993.10.16. 카타르 청소년 체육청이 1994.1.22.~28. 개최하는 국제청소년 캠프에 한국 청소년의 참가를 요청함에 따라 동 참가 여부 검토를 건의함.

2. 1994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참석한 북한팀 접촉

- 1993.4.9.~18. 도하에서 개최된 월드컵 아시아 그룹 C조(카타르, 북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예선전에 북한축구팀 참석
- 주카타르대사관은 동 대회에 참석중인 북한선수단을 접촉하여 필요한 지원 조치를 협의
 - 김치, 술 등 제공

3. 1994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주최

- 1993.10월 개최 예정인 1994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전 도하 개최 확정(1993.7.6.)
 - 참가국은 한국, 북한, 일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 김정남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및 가삼현 국제부장 카타르 방문(1993.10.15.~28.)
 - 동 대회 준비회의 참석
- 주요인사 카타르 방문
 - 정몽준 축구협회장(1993.10.15.)
 - 박태권 문화체육부차관(1993.10.16.)

1535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미국 Asia Society 후원 국제회의. 동경, 1993.5.12.-14.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 통상1과

MF번호 2023-95 / 6 / 1-72

정부는 1993.5.12.~14. 도쿄에서 개최된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 후원 국제회의에 이경식 경제기획원장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아시아경제가 당면한 도전들' 주제의 기조연설 시행
- 일본 정·재계 인사 면담

1536

2. 주요 일정

- 미야자와 일본 수상 예방, 경제기획청장관 면담
- 주일상사 대표와 조찬 간담회, 국제회의 기조연설, 일본 경제신문 회견, 일본 재계대표(한·일 경제협회장, 경단련 부단장 등) 및 대장성장관 면담

3. 회의 내용

- 아태지역의 중요성 점증
- 냉전 이후 아시아에 있어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 수행 희망
- 일본의 역할 점증
- 동북아지역의 불안 요인: 한반도 및 캄보디아 정세, 구소련의 민주화 실패 가능성, 미·일본 간 경제관계, 미·중국 간 정치·경제관계

미국 Asia Society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 홍보과

MF번호 2023-95 / 7 / 1-120

미국 Asia Society 활동 및 한국 측의 지원 관련 내용임.

1. 주요 활동

- 활동 개요
 - 한·미 양국관계 논의, 한국 경제발전 소개, 한국 전통공연 등
 - 서울포럼 회원, 한·미 양국의 정계·재계·학계·언론계 등 주요인사 참석
- 활동 내역
 - 1992년: 한국 탈춤 공연 및 세미나(11.19., 휴스턴)
 - 1993년: 미국 실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 관련 정책 건의서 발간, 한·미 양자회의(1993.4.15.~17., 워싱턴), 한국소개 행사(4.21., 워싱턴),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초청 오찬 강연(4.26., 워싱턴), N. Platt 회장의 조찬 강연(5.7., 휴스턴), R. Brown 미 상무장관 초청 오찬 강연(11.1., 뉴욕)

2. 1993년 활동 계획

- 세미나: '동아시아 지역경제에서 한국의 역할' 세미나(2.22.~23., 홍콩), 한국 전통예술 세미나(3.6., 하버드대학), 한국 민주화 소개 세미나(3.9., 포틀랜드), 한국 경제 소개 세미나(3.10., 로스앤젤레스)
- 강연회: '한국의 민주화 장래' 강연(2.27., 클리블랜드)
- 한·미 연례회의(1993.4.1.~17., 아멜리아)
- 출간사업: 한·미 연례회의 결과(6월), 한국과 동아시아 경제관계(8월), 코리아 브리핑(8월)

3. 활동 지원

- 1991년 초 Asia Society 측은 1991~95년간 한국소개 사업인 Scalapino 프로그램을 위해 소요경비 절반인 250만 달러 지원을 요청
 - 한국 정부는 요청을 수락하고, 공보처 50만 달러, 문화부 50만 달러, 민간출연(전경련,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150만 달러 등으로 부담 추진
- 1993.1.19. 서울국제포럼은 '동북아 지역협력 전망' 행사 참여 지원을 외무부에 요청
 - Asia Society 및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와 공동행사로써 1993년 워싱턴, 1994년 베이징 및 도쿄 개최

1537

대한민국-미국관계사 연구자료

미국 Korea Society. 전2권 (V.1 1-7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5 / 8 / 1-166

1993.1~7월 중 미국 Korea Society(한국협회) 활동 관련 내용임.

1. Korea Society(한국협회) 개요

- 연혁
 - 1978.9월 한·미 경제협의회(US-Korea Economic Council)로 발족
 - 1983.6월 문화교류 기능을 포함한 한·미 협회(US-Korea Society)로 확대 발족
 - 1990.3월 한국협회(Korea Society)로 변경
- 설립 목적
 - 한·미 간 경제·통상, 문화·예술, 교육·정보 및 안보 분야의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한·미 양국 국민 간의 유대관계 및 이해 증진
- 회원: 한·미 사업 관련 기업체, 뉴욕 소재 한국 지상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업인
- 회장: Donald Gregg 전 주한 미국대사(1993.4월 취임)

2. Korea Society 활성화 방안

- 예산 및 행정력 부족으로 활동이 저조, 아시아 소사이어티, US-Korea Business Council 등과의 기능 중복으로 회원 이탈 및 활동 위축
 - 회원 및 자체 예산: 단체회원 56사, 개인회원 65명, 연간 약 75만 달러
- 활성화 방안: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을 Korea Society로 통합 지원, 외무부장관 등 주요인사 방미 시 연설행사 개최, Korea Foundation의 중장기 재정지원(5년간 500만 달러) 등

3. Korea Society 활동

- Donald Gregg 회장 방한(1993.5.13.~19./7.27.~8.1.)
 - 한국교류재단 이사장 등 고위인사 면담
- 1993.5~7월 활동
 - 2nd Aerospace and Defense Conference, Young Professional Conference 개최
 - Finance and Securities Conference 개최
 - 뉴욕, 로스앤젤레스지역 흑인학생 방한 견학 프로그램 실시(7.28.~8.7.)
- Korea Society와 US-Korea Foundation 통합(8월)

미국 Korea Society. 전2권 (V.2 8-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문화협력2과

MF번호 2023-95 / 9 / 1-209

1993.8~12월 중 미국 Korea Society(한국협회) 활동 관련 내용임.

1. Donald Gregg US-Korea Society 회장 방한

- 한승주 외무부장관 면담
 - 한국협회와 한·미 재단의 통합 설명
 - 1993.11월 연례만찬 연설 초청, 부시 전 대통령 도서관 건립 지원 요청
- 이종업 한국교류재단 전무이사 면담

2. Korea Society 조직 확장 및 명칭 변경

- Korea Society와 US-Korea Foundation 통합에 이의가 없으나 명칭 문제(US-Korea Society)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재단과의 협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
- Gregg 회장 방한, 한국교류재단 이사장 면담(1993.9.7.)
 - KS 발전 5개년 계획(안) 제시
 - Korea Society 명칭 문제 협의
 - 한국학 워크숍, 연례만찬 연설회 등 협회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토의

3.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기 Korea Society 연설 추진

- Korea Society 활성화와 새로운 한·미 간 관계를 미국 국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4. 허종 주유엔 북한대사, Gregg 회장 방북 초청

- 허종 대사, Korea Society가 미국 사회에 북한 입장을 알리는 Forum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동 회장을 평양에 구두 초청

5. Korea Society 연례만찬 개최

- 기조연설: Winston Lord 차관보, The Horizons for US-Korea Relations
- 참가자: 한승수 주미국대사, 유종하 주유엔대사, 주뉴욕총영사 등

1539

대한민국 외교부

SUKHUM, Navapan 한·태국 친선협회장 방한, 1993.9.27.-10.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95 / 10 / 1-25

Navapan Sukhum 한·태국 친선협회장의 1993.9.27.~10.2.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93.3월 주태국대사는 한·태국 양국 간 민간외교 증진차원에서 Sukhum 한·태국 친선협회장 내외를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
 - 체재비 지원 조건

1540

2.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예방
- 외무부 외교정책실장 및 KOICA 부총재 주최 만찬

3. 방한 결과

- 동 친선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에 대한 기여 평가
- 양국 간 우호 친선관계가 한층 강화되는데 기여 당부

시카고 외교협회

생산연도 1984-199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3-95 / 11 / 1-199

1984~93년 중 시카고 외교협회의 활동 관련 내용임.

1. 한·미 연구관계 지원요청

- 1984.7.20. 시카고 외교협회(The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Arther Cyr 부회장은 한국관계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
 - 요청금액: 1만 5천 달러
 - 한국관계 연구사업 계획으로 “Korea and the Dynamic Economies of Asia”에 관한 연구 활동 및 자료발간
- 주시카고총영사는 권위 있는 단체를 통한 자연스런 홍보가 가능하고, 일본에 이어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 연구과제로 선정되었음을 고려, 적극적 검토 건의
- 외무부 검토결과
 - 동 협회가 소위 ‘아시아 4인방’ 연구를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한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
 - 미국의 유사한 타 민간단체로부터도 재정지원 요청을 받고 있어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신중을 기할 필요

2. 외무부장관 연설 요청

- 1986.8.20. 시카고 외교협회는 한국 외무부장관의 유엔총회 참석 시 시카고를 방문, 오찬연설을 하여 줄 것을 요청
 - 동 협회는 외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 앞 초청장 발송
- 주시카고총영사는 미 중서부에 한국을 알린다는 관점에서 외무부장관의 상기 연설초청을 수락하기를 건의
 - 동 참석이 어려울 경우, 재무부장관의 참석도 검토 건의
- 외무부는 외무부장관은 총회 일정상 어려우나, 재무부장관이 참석하여 오찬연설을 가능함을 주시카고총영사에게 통보

1541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한·일본 친선협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95 / 12 / 1-120

1993년 중 한·일 친선협회 회장단(회장: 김수한)의 1993.5.16.~19. 일본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 경위

- 1993.4.23. 한·일 친선협회 총회 개최, 김수한 회장 선출 등 회장단 구성
- 일·한 친선협회 일본 측 중앙회는 전국 47개 도·부·현 협회 임원이 참석하는 연차 총회에 한국 측 회장단 초청

1542

2. 주요 일정

- 일본 총리, 일본 외상 면담
- 친선협회 연차 총회 참석
- 다나카 일·한 친선협회장, 다케시다 일·한 의원연맹 회장 방문
- 사쿠라우치 중의원 의장

3. 주요 결과

- 미야자와 일본 총리 면담
 - 김수한 회장은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및 경제인포럼 구성을 위해 동 총리가 협조한 데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현안이 문민정부 탄생 계기로 조속 해결되기를 희망
 - 동 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과감한 개혁추진에 감명받았으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 무토 일본 외상 면담
 - 동 외상은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 폐를 끼친 과거를 잊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언급
 - 김 회장은 양국 현안의 조기 해결과 대전 엑스포 성공을 위한 지원 요청

EC(구주공동체) 주재 공관 경제담당관 회의. Brussels(벨기에)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95 / 13 / 1-157

1992~93년 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C(구주공동체) 주재 경제담당관 회의 관련 주EC대표부의 보고 내용임.

1. 1992년도 EC 주재 경제담당관 회의 및 경제인협의회 회의(1992.2.21.~22.) 결과

- 수출 진흥 방안
 - 한국 상품 이미지에 파급영향이 큰 주종상품의 대유럽 수출 시 세밀한 판매전략 수립
 - 박람회 및 전시회 적극 참가
 - 주요 기업별로 대표제품에 대한 집중 광고 실시
 - EC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 유지 및 공여한도의 증액을 위한 교섭
 - 한국계 은행 진출(밀라노, 뒤셀도르프), 무역협회 지부 등 유관기관 진출 확대(런던, 프랑크 푸르트 등)
 - 중소기업 수출품질 관리체제 강화
 - 1993년을 'EC의 해'로 지정하여 국내의 대EC 관심제고 추진
- EC 경제인협의회 운영 활성화
 - 대EC 경제외교 수행에 앞서 경제인협의회를 통한 한국업체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 수집
 - 각 지역별, 업종별 분과위원회 구성
- 수출 보완 차원의 투자진출 확대
 - 투자 진출 시 부품업체와의 동반 진출 권장
 -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 시 EC 지역개발자금 적극 활용
- 중소기업의 대EC 진출을 위한 지원 확대

2. 1993년도 EC 주재 경제담당관 회의(1993.4.30.~5.1.) 결과

- 대EC 진출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EC의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능력 개발
 - EC 진출기업의 영업환경 개선
 - 수출상품의 인증 지연에 신속 대응
- 대EC 진출 가능분야 발굴(공공조달시장 등)
- 기업 진출 관련, 공관의 지원 강화 및 공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 마련
- EC 전담 경제연구소 추진

1543

대한민국 무역면담서 요약집

대중국 경제진출 전략회의, 1993.1.1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95 / 14 / 1-80

1993.1.19. 서울에서 개최된 대중국 경제진출 전략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청와대, 안기부,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법무부, 상공부 등 13개 부처 국장급

2. 주요 결과

- 한·중국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 상호 보완적인 경제관계를 감안, 양국 간 공동이익에 부합되도록 경제, 통상교섭 확대 추진
- 세부 대책
 - 통상 확대, 경제기술협력 및 투자 확대, 중국의 8·5 계획 적극 참여 등

3.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

- 한·중국 간 급속한 관계 발전을 토대로 하여 북한의 개방유도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검토
 - 구체적 추진방안(동북아 개발은행 및 연구소 설치, 철도, 항공, 해운 운송망 확충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 이해관계국(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

4. 추진 대책

- 대규모 사업 및 경제·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구체사업 시행 전 북방경제실무위원회 등 기존 협의체를 통한 협의 후 추진
- 한·중국 경제무역기술공동위를 통한 협의, 평가 및 교섭 시행

대일본 경제협력 정책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95 / 15 / 1-225

정부는 김영삼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일본 경제협력정책을 재검토하여 2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1993.8.9. 제20회 대외경제협력위원회에서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방향(안)’을 의결함.

1. 제1차 한·일본 경제관계 관련 관계부처 간담회(1993.6.4.)

- 참석 기관: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
- 회의 결과(대일본 경제관계의 기본 추진방향)
 - 정치논리의 배제 및 경제논리로 접근
 - 대일 차별적 조치의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
 - 국제경제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관계 증진 등

2. 제2차 한·일본 경제관계 관련 관계부처 간담회(1993.7.16.)

- 참석 기관: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과학기술처
- 회의 결과
 - 문민정부 출범에 따라 대일 경제관계도 합리성과 실효성 중심으로 추진
 - 새로운 한·일 경제관계 발전방안

3. 제20회 대외협력위원회(1993.8.9.)

- 참석 기관: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과학기술처, 환경처, 경제수석비서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행정조정실, 국가안전기획부
- 회의 결과
 - 상기 1, 2차 관계부처 회의 후 작성된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방향(안)’ 의결

4. 한국의 대일본 경제정책 추진 방향(주일본대사관)

- 한국의 새로운 한·일본 경제관계 발표에 대한 일본 측 반응
- 일본 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향

쿠웨이트 전후 복구사업 참여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95 / 16 / 1-100

1991~92년 중 쿠웨이트 전후 복구사업 참여 관련 내용임.

- 쿠웨이트 전후 복구사업에 한국 업체의 참여 확대방안
 - 1992.5월 주쿠웨이트대사 보고
 - 공사입찰 시 한국 업체의 Supplier Financing 마련 필요성
 - 쿠웨이트 업체와 제휴
 - 한국 업체의 현지지사 유지 필요성(미국, 유럽 각국 업체들의 경우 사무실을 운영하며 공사 발주처, 현지 업체 등과 긴밀히 접촉 중)
 - 기술향상에 의한 원가절감(최근 저유탱크 공사, 어선, 경비정 등 구매입찰 시 한국 업체들의 제시 가격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예외 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품수출 증대를 위해 지사복귀 및 상품전 개최 등 필요

대아프리카 경제 진출 현황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95 / 17 / 1-32

1993년 중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 진출 현황임.

1. 한국의 진출업체 현황

- 외무부는 1993.3.30. 아프리카 주재 공관에 해당 공관 및 관할국에서 활동 중인 현지 투자법인, 해외 지사 또는 교민업체 등의 규모 및 활동내역을 4.1.까지 지급 보고하도록 지시함.
- 각 공관별 보고 내용
 - 코트디부아르: 진출업체(금성지사, 대우지사, 금호타이어지사, 한국타이어지사 등), 현지 투자법인(선박업체 등)
 - 카메룬: 진출업체(대우종합상사지사, 대우건설), 현지 투자법인(타이거카메룬, 카메룬시멘트, 사진업체 18개)
 - 가나: 진출업체(대우), 현지 투자법인 및 교민업체
 - 그 외 가봉,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세네갈 등 국가들의 한국업체 진출 현황 등 보고

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외채 현황(1993.5.27., 아프리카1과)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외채 현황
 - 1980년 이후 외채 총규모 3배 이상 증가
 - GNP 대비 외채비율에 있어 타지역을 압도
- 최근 선진국 간 논의된 외채 탕감방안(회의 장소에 따라 명명)
 - Trinidad Terms
 - Enhanced Toronto Terms
- 미 클린턴 행정부의 외채 경감방안 분석
 - 1993.5월 Lawrence Summers 미 재무부차관 발표
- 아프리카 외채 문제 해결의 근본 문제점
 - 효과의 비현실성
 - 대폭적인 탕감책 필요(영국 자선기관 Oxfam 주장)

1547

대한민국 아프리카경제협력

중국 경제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95 / 18 / 1-84



1993년 중 중국의 주요 경제 동향임.

1. 중국 경제에 관한 이붕 중국 총리 연설

- 주중국대사관은 1993.2.1. 이붕 총리가 전국경제공작회의(1992.12.24.)에서 행한 최근 경제 현황 및 당면과제에 대한 연설 요지를 보고함.
 - 최근 중국 경제 현황
 - 중국 경제의 당면과제
 -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방안
 - 1993년도 경제운용의 중점
- 연설 중 특이사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중국의 방침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

1548

2. 1993년 중국 경제 전망

- 주중국대사관은 1993.2.17. 주재국 주간 경제 전문지인 China Economic News의 중국 경제 전망을 요약 보고
 - GNP 성장률은 1992년과 같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투자가 지속되면 13%도 될 수 있으나, 투자조정 등 규제와 수송 부문 애로 요인을 고려하면 10.8% 전망
 - 공업생산은 19.7% 성장, 농업생산은 5% 증가 예상
 - 투자 구조상 에너지, 통신, 수송 등 애로 부문의 비용증가 예상

3. 중국 자동차 공업 목표

- 주중국대사관은 1993.2.24.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자동차공업대회(1993.2.19.~21.)에서 토의된 이후 10년간의 중국 자동차 공업발전 방향을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
 - 기본목표로 자동차 공업을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
 - 중앙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 수립 시행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복귀에 대비하기 위해 각 기업은 공동으로 대처방안 강구 필요

서구의 대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지원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95 / 19 / 1-265

1993년 중 서구의 대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지원 관련 내용임.

1. 파리클럽회의(1993.4.2.)

- 파리클럽과 러시아 간 구소련 외채 상환 재조정(150억 달러 규모) 관련 합의
- 합의 이후 개별협상 진행 상황
 - 3국(미국, 독일, 프랑스)은 소액인 아일랜드 외채는 전액 상환, 상환 우선순위 대상인 식품 및 의약품 차관은 채권에 유리하게, 여타 차관은 채무국에 유리하게 한다는 조건으로 타결
- 비파리클럽국 협상
 - 한국, 태국, 사우디, UAE 등 비파리클럽 국가 중 태국만이 대러시아 곡물차관에 대한 리스케줄링 원칙에 합의

2. 런던클럽회의(1993.7월)

- 런던클럽과 러시아 간 구소련 채무 재조정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
 - 채무 재조정 대상 규모: 약 260억 달러
 - 조건: 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변제, 1992~93년도 연체이자 5억 달러는 1993년 4/4분기 중 지불

3.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1993.9.25., 워싱턴 D.C.)

- 러시아 경제개혁 지원 및 열친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명
- 기합의된 대러시아 지원계획(434억 달러 규모) 재확인

4. 독일·러시아 간 채무재조정협정 체결

- 내용
 - 약 49억 달러에 대해 5년간 지불유예, 최장 10년간 상환기간 연장
- 의의
 - 1993.4월 러시아·파리클럽 간 대러시아 채무 재조정 합의 이후 최초로 타결된 양자협상
 - 열친 대통령 의회 해산 조치 후 타결된 것으로 열친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대한 독일의 구체적 지지 표시

유럽통화제도(EMS) 체제 개편 동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통상3과

MF번호 2023-96 / 1 / 1-214



1. 1993년도 EMS(유럽통화제도) 위기 관련 동향

- 1992.9월 EC(구주공동체) 외환위기 이후 EMS 불안정 상태 지속
- 1993년 들어 새로운 위기 요인 직면
 - EMS의 중심통화인 프랑화의 대마르크 환율이 1993.7.8. 이래 폭락하기 시작하여 7.30.에는 ERM(유럽환율조정장치)의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는 사태 발생
 - 이외에 스페인 페세타, 덴마크 크로네, 벨기에 프랑, 포르투갈 에스쿠도 등의 가치도 큰 폭으로 하락함으로써 EMS는 1992.9월 영국 및 이탈리아의 ERM 탈퇴 이후 최대 위기 봉착
- EC 통화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어 8.1. 대책 발표
 - 독일 마르크 및 네덜란드 길더를 제외한 모든 ERM 통화의 환율변동폭 15%로 확대(일시적 조치로서 1994.1월 재검토 예정)
 - 마스트리히트 조약상의 EMU(경제·통화통합) 목표 이행 재확인

2. 한국 정부의 관련 대응

- EC 통화위원회의 대책은 EC 각 회원국들 간 경기침체로 인한 정책협조의 한계 및 판이한 경제 상황하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이며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
 - 1994.1월 제2단계 EMU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금번 EMS 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향후 유럽통합 방향을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
- 1993.8.3. 외무부는 EC 주재 12개 공관과 주미국·주일본대사관에 아래사항에 대한 수시 파악 및 보고를 지시
 - 금번 위기 배경 및 EC 통화위원회 결정에 대한 주재국 정부 입장 및 대책
 - 주재국 언론 및 여론 동향
 - 향후 EC 통합 및 주재국에 미칠 영향 등

일본 경제 동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96 / 2 / 1-142

1992~93년 중 일본 경제의 주요 동향임.

1. 일본 정부, 경기후퇴에 따른 긴급경제대책 발표(1992.3.31.)

- 공공사업의 상반기 조기 실시를 중심으로 한 긴급경제대책 및 중앙은행 재할인율의 0.75 추가 인하(4.1. 실시) 등 재정, 금융 양면에 걸친 대책

2. 일본의 1992년 세출 규모 72조 2천 180억 엔 예산 통과(1992.4.9.)

- 예산 편성에 대한 평가
 - 금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7% 증가로 5년 만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는바, 이는 최근의 경기 후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경기후퇴에 따른 세수 부족을 국채 발행의 증가(전년 대비 36% 증가)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특색임.
 - ODA(공적개발원조) 지원규모를 계속 증대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및 발언권 강화를 계속 모색해 나가려는 것으로 해석

3. 일본 경제백서 주요 내용(1992.7.28.)

- 일본 경제가 1987년부터 고도성장을 계속하였으나, 1990년 말부터 성장이 감소되고, 1991년 후반에는 조정과정에 들어감.
 - 설비투자, 주택건설, 내구재 소비 수요가 재고조정에 들어가고, 금융긴축의 영향으로 버블경제 발생

4. 일본 정부, 긴급경제대책 발표(1992.8.28.)

- 일본은 공공투자 확대, 중소기업 대책 및 민간설비 투자 증진, 금융시스템 안정성 보장, 증권시장 활성화 등 10조 7천억 엔 규모의 긴급대책 발표
 - 버블경제 붕괴로 인해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자산 가치 하락으로 다시 경기가 후퇴하는 경제 악순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적 성격으로 평가

5. 1993년도 일본 경제 전망

- 일본 정부는 1993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로 설정하였으나(전년도 1.6%), 민간기업과 연구기관들은 1994년 이후에나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예상

1551

대한민국 경제발전 여하

일본의 불공정 무역보고서 발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96 / 3 / 1-387

1990.5월 일본 통산성이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 불공정무역보고서에 관한 내용임.

1. 주요 교역상대국 불공정무역보고서 발표

- 일본 통산성은 1990.5.10. 보고서 '1993 Report on Unfair Trade Policies by Major Trading Partners: Trade Policies and GATT Obligations' 발표
 - 미국, EC(구주공동체)와 함께 한국을 불공정무역 국가로 지목
 - 일본 통산성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에서 미국, 한국, EC 등 일본의 10대 무역상대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한 보고서

2. 보고서 분석 및 평가(외무부 통상국)

- 개요
 - 일본의 10대 무역상대국에 대해 13개 분야로 나누어 불공정 여부를 분석
 - 미국(10개 분야), 한국(6개 분야), EC(6개 분야), 말레이시아(4개 분야), 인도네시아 및 태국(3개 분야)의 불공정 관행 지적
- 한국 관련 내용
 - 수입다변화제도, 폴리아세탈 반덤핑 규제, 부품의 원산지증명 요구, 지식재산권 소급보호 관련 최혜국대우 미준수, 자동차 등의 일정 비율 국산부품 사용의무, 서비스교역 규제(일본상사에 대한 수입업 불허가, 외국영화 수입제한, 소매업진출 제한) 등 6개 무역관행에서 불공정 지적
- 일본 측의 대응 계획
 - 양자 간 협의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절차를 통한 시정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통한 서비스교역 문제 해결
 - 국산부품 일정비율 사용과 같은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기술협력 제공 검토
- 1992년도 보고서보다 강한 내용으로, 당시 미국의 통상압력에 적극 대응한다는 일본의 자세
- 한국 관련사항에 관해서는 사실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제3차 한·일본 무역산기위원회(1993.5.17.~18.)에서 입장 설명 추진

3. 관계부처 검토 및 대응

- 재무부, 상공부 및 문화체육부는 일본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대응 방안을 외무부에 송부
 - 반덤핑 관세부과, 일본상사의 수입업 불허가 및 소매업 진출 제한에 대한 일본 주장은 부당
 - 일본영화의 상영 제한은 역사적 배경이나 국민감정으로 인한 것으로 교역 차원의 문제가 아님.

일본의 수입확대 및 건설시장 개방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96 / 4 / 1-288

1993년 중 일본 정부가 시장개방조치, 수입확대 기본대책, 공공건설공사 입찰계약 개선계획을 연이어 발표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를 활용하는 대일본 수출촉진 대책을 마련함.

1. 일본 정부의 시장개방조치 발표

- 긴급경제대책 발표(1993.9.16.)
- 수입확대 기본대책 발표(10.7.)
- 공공건설공사 입찰, 계약절차 개선계획 발표(10.26.)
- 일본의 수입장벽보고서 발표(일본 수상의 자문기관 '생활대국추진위원회' 보고서)

2. 외무부의 대일 수출·건설 분야에서의 관심사항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1993.11.16., 외무부)

- 참석 기관: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수산청
- 회의 결과
 - 일본의 수입확대 및 공공건설시장 개방 확대 활용대책 작성

3. 일본지역 재외공관의 일본 건설시장 동향 보고

- 일본 건설시장 조건부 일반경쟁입찰 도입 방침
- 외국산 수입 건설자재 심사 완화조치
- 후쿠오카 국제선 여객터미널 이전 신축공사 입찰보고
- 요코하마항 국제유통센터 건설, 외국 기업에 건설시장 개방
- 중부 신공항 건설 추진
- 한국 건설업체의 일본 내 시장 기반 확장 사례
- 일본의 '공공사업 입찰계약 절차에 관한 행동계획' 세부계획

1553

대한민국-일본 자유무역협정

멕시코 경제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96 / 5 / 1-180

1993년 중 멕시코의 주요 경제 동향임.

1. 미국 주요인사 방문

- 1993.3.16.~18. Brown 미 상무장관, 멕시코 방문
 - 미국 행정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비준과 1994.1월 발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 발표
- 1993.11.30.~12.1. 고어 미국 부통령, 멕시코 방문
 - NAFTA 후속조치로 멕시코 국경지대 환경개선을 위한 국경 환경협력위원회와 북미개발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

2. 기타 동향

- 1993.9.6. Salinas 대통령 및 Aspe 재무장관, 제1차 금융기관 연합총회 연설
 -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설명
- 11.23. Salinas 대통령, 성명 발표
 - NAFTA가 멕시코의 경제적 취약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음.
- 제20차 일본·멕시코 민간경협위(1993.12.2.~3., 멕시코 몬테레이)
 - 양국 민간업체 간 정례 경협위
 -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현황 설명
 - 멕시코 민영화, 사회간접자본시설, 조세 및 노동 현황 설명
- 1993.12.16.~19. 멕시코 대통령, 중국 및 일본 방문

구소련연방 외채 승계 및 상환 문제.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96 / 6 / 1-179

1993년 중 구소련의 외채조정을 위한 파리클럽 회의가 진행된바,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시아 차관 문제에 참고하고자 파리클럽과 러시아 간의 채무조정협상 진행상황을 파악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함.

1. 파리클럽에의 참여 문제 검토

- 외무부는 한국의 대외채권이 점증함에 따라 파리클럽에 참여할 필요성은 있으나,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가입 시기에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함.
 - 특히 러시아에 대한 채권확보와 채무변제에 관해서는 파리클럽에 불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 러시아는 외환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차관에 대해서는 양자차원에서 호의적 조치

2. 러시아·파리클럽 간 구소련 외채상환 재조정 협정의 주요 내용

- 1993.4.2. 러시아와 파리클럽 19개 공여국 대표들은 리스케줄링에 서명(재조정 규모 150억 달러)
 - 1991년 이전에 체결된 모든 중·장기 차관의 원리금 및 연체금 대상, 5년 거치 5년간(1999.1~2003.7월) 10회 분할 상환, 이자율은 러시아연방과 각 공여국 간에 결정 등

3. 한국 경협차관을 등 협정에 적용시켰을 경우

- 1991년 중 체결된 중장기 차관 중 1993년 상황이 도래한 원금 및 이자는 2년 거치 후 5년간 (1996.1~2000.7월) 10회 분할 상환
 - 한국이 기제공한 차관은 총 14억 7천 달러로 은행차관 10억 달러, 소비재 차관 4억 7천 달러
- 파리클럽과의 협상 타결로 러시아는 한국과도 채무상환 재조정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

4. 러시아, 1993년 중 35억 달러 채무 상환을 제시

- 쇼힌 러시아 부수상, 1993.3.16. 파리클럽과 소련 채무 리스케줄링 협의
 - 동 협의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가 같이 참여함.
- 러시아 측은 파리클럽(공공외채), 런던클럽(상업차관), 한국 및 사우디 등 양 클럽 비 참가 채권국 등 총 3개 그룹에 상환할 총액을 35억 달러로 주장하였으나, 채권국은 이자만 해도 35억 달러 이상이므로 50억 달러 이상이 상환되어야 한다고 주장

5. 파리클럽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런던클럽과 러시아 간에 상업외채 리스케줄링 협상이 1993.4.27. 개시되고, 이와는 별도로 파리클럽 공여국과 러시아 간 개별협상, 한국 등 비파리클럽과 러시아 간의 협상이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

1555

대한민국 외무부 기록

구소련연방 외채 승계 및 상환 문제.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96 / 7 / 1-206

1993.4월 파리클럽과 러시아 간에 외채 리스케줄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외무부는 각 채권국 그룹과 러시아 간의 외채협상 동향을 파악하도록 해당 재외공관에 지시함.

1. 런던클럽 협상 결과

- 러시아와 런던클럽은 1993.7.31. 프랑크푸르트에서 구소련 민간채무 원리금 상환 유예에 합의함.
- 합의 내용 요지
 - 채무 재조정 대상 규모는 약 260억 달러
 - 러시아는 런던클럽에 대한 구소련 민간채무의 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변제
 - 1992~93년도분 연체이자 35억 달러 중 5억 달러는 1993년 4/4분기 동안 3회에 걸쳐 지급
 - 잔여 연체이자(30억 달러)는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변제

2. 파리클럽 개별공여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 결과

- 러시아의 대파리클럽 채무는 약 340억 달러로 그 중 40%에 상당하는 150억 달러가 1993.4월 재조정 협정에서 조정됨.
- 9.23. 독일·러시아 간 채무 재조정
 - 파리클럽 중 최초 협상 개시 및 최초 타결
 - 규모 80억 마르크(약 49억 달러 상당)로 1993년 중 상환이 도래하는 차관 원리금
 - 조건: 5년간 지불유예, 최장 10년간 상환기간 연장
- 10.25. 현재 파리클럽 국가 개별협상 진행 상황
 - 협상 타결: 독일, 미국, 프랑스
 - 협상 타결 후 가서명 국가: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호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 협상 진행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 아일랜드는 전액(100만 달러) 상환 받음.

3. 양 클럽 비참가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

- 쿠웨이트, 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러시아 협상 동향을 파악하도록 해당 재외공관에 지시
- 1993.10.25. 비파리클럽 국가 중 태국만 대러시아 국물차관에 대한 리스케줄링 원칙에 합의함.

러시아 경제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96 / 8 / 1-180

1993년 중 러시아의 주요 경제 동향 관련 내용임.

1. 러시아 화폐개혁

-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1993.7.24. 중앙은행이 취한 1992년 이전 발행 루블화의 통용중단 조치를 완화하는 포고령을 발표
 - 구화폐 교환액수를 1인당 10만 루블로 상향 조정하고, 화폐교환기간을 8.7.까지에서 8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
- 완화조치의 배경
 - 전격적인 구화폐 통용금지 조치가 경제적 혼란 및 국민의 저항 초래, 정세 안정화에 역작용 우려
- 평가 및 전망
 - 옐친 대통령이 완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구화폐 통용금지 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

2. 러시아의 1993~94년 경제개혁 계획

- 러시아 정부의 경제개혁 평가
 - 충격조치에 의한 경제개혁 단계는 지나갔으며, 자유시장 분야의 발전이 경제회복의 주요 요인으로 등장
 - 1993.1~9월 중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 대외교역은 동 기간 중 1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안점을 두어 연말까지는 월 15~17%로 억제 예정
- 경제개혁 조치 평가
 - 러시아 정부의 경제개혁 발표는 12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 동안 옐친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개혁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인식시키면서, 새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긴축 재정, 금융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해석

3. 러시아의 외국은행 규제령 발표

- 러시아 정부는 1993.11.23. 러시아 내 외국은행의 활동을 규제하는 대통령령을 발표
 - 1996년까지 새로운 외국은행의 러시아 내 지점 개설을 동결
 - 당국의 허가를 이미 받았으나 11.15. 현재 개업하지 않은 은행의 활동을 중지
 - 영업 중인 외화비율 50% 이상 은행은 1996년까지 영업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

1557

대한민국 외교부

미국 Clinton 행정부 통상정책 전망. 전2권 (V.1 1992.9월-11.10.)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북미2과 / 통상2과

MF번호 2023-96 / 9 / 1-262

1992년 중 클린턴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 관련 내용임.

1. 미국 신정부 동향 파악

- 미국 정부 및 재계 주요인사 접촉, 클린턴 대통령 후보 참모들의 기고문 및 저서 등 분석
- 신정부의 통상정책 기조 및 추진정책 전망, 한국의 대책 마련

2.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기술 정책기조

- 생산기술의 개발 및 상품화 위주의 기술정책
- 기술경쟁력 회복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목표
- 미국을 위한 6대 기술정책(기반시설 투자, 고도기술인력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립,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투자,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 산업성과 기여도 제고를 위한 기존 기술 투자, 민간부문 기술 및 투자혁신을 위한 세계 수준의 기업환경 창출)

미국 Clinton 행정부 통상정책 전망. 전2권 (V.2 1992.11.11.-93.4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북미2과 / 통상2과

MF번호 2023-96 / 10 / 1-217

1992~93년 중 클린턴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 관련 내용임.

1. 미국 신정부 정책 기조 파악

-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및 연두교서 발표, 의회 제출 보고서 등 파악
 - 아울러, 신정부 출범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정책 건의 및 의견 참고
- 네트워크를 구축한 연구소 및 단체의 의견 참조 병행

2.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

- 경제를 우선시하면서 조화와 실적을 지향하는 신통상정책 추구
 - 통상이슈의 종합적 조정, 여타 외교정책과의 조화, 구체적 결과 중시
- 공정무역과 상호 시장개방 중시
 - 연방정부의 통상기능 강화
- 통상외교를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의 초석으로 설정

3. 한국의 대응 전략

- 미국의 관심 대상인 시장개방 및 통상분쟁 타결 조속 추진
 - 아울러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 경제권에 적극 참여하고, UR(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위한 노력 경주
- 미국 주재 공관의 홍보역량 강화 및 유기적 협조(주미국대사관 건의)
 - 행정부, 의회, 지방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소통 강화
 - 친한 단체 활용 및 세미나 개최 등 적극 추진

1559

대한민국-미국관계사-1993년

미국의 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96 / 11 / 1-123

1993년 중 미국의 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 동향임.

1. 미국의 분위기 조성 동향

- 미국은 TIFA(무역투자기본협정)를 자유무역체제 확산을 위한 초석으로 간주하는 경향
 - 다수의 중남미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등 총 34개국과 체결
 - 1993년 초 미 국무부는 한국과 TIFA 체결을 검토 중임을 시사
- 1993.2.3. P. Crane 미 하원의원은 아·태 국가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 제안

2. 한국 정부의 대응

- 미국 측 동향을 주시하면서 재외공관을 통해 주요 국가 사례를 파악 분석
 - 특히, 미·이스라엘 간 TIFA 사례를 중점 검토
- 1993.4월 한국 산업연구원은 '한·미 간 FTA 체결의 필요성과 과제' 제하 보고서 발표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전3권 (V.1 1991.8-92.10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96 / 12 / 1-160

1991~93년 중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관련 내용임.

1. 미 국세청, 국내은행 본점 세무조사

- 1990.7월 미 국세청은 외환, 조흥은행 본점 방문 조사 요청(이중과세방지협정 의거)
- 1992.1월 양 은행은 미 국세청에 초청장 발송
- 2월 미 국세청 국제조세국장 방한
 - 한국 국세청 조사 결과를 미국 측에 통보하기로 함.

2. 미 국세청, 이전가격 조작 관련 한국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1991.8월)

- 미 국세청 동향
 - 미 국세청은 1986년 세법 개정 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세입확보를 위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대폭 강화
 - 종전에는 일본계 기업이 주세무조사 대상이었으나, 최근 한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도 현저히 증가
- 현황
 - 미 국세청은 이전가격 조작과 관련하여 한국계 현지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 대우(주) 등 3개 기업에 대해 조사 종결
 - 대우(주)는 5천 6백만 달러 추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
 - 금성사 등 11개 기업에 대해 조사 진행 중
- 외무부는 현지 공관에 미국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지시

3. 미 재무성, 연방세법 제482조 수정안(이전가격 관련) 발표(1992.1.31.)

- 영향
 - 수정안은 미 국세청이 과세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3자 수익성을 이전가격 조정기준으로 하는 문제가 있음.
 - 개별기업 경영 현실의 철저한 배제 및 비교 가능한 제3자 가격법 적용의 사실상 배제 등 문제점 야기
- 6.2. 뉴욕 주재 지사협의회는 동 건 관련 대정부 건의 제출
- 6.30. 주뉴욕총영사관 검토의견 보고
- 7.4. 한국 국세청은 건의 사항에 대해 회신
 - 워싱턴 D.C.에 세무협력관 파견, 정기적인 세무 간담회 실시 등
- 11.10.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1561

대한민국 무역발전사 연구회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전3권 (V.2 1992.11-93.3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97 / 1 / 1-247

1991~93년 중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관련 내용임.

1. 1992.11월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미 국세청 세무조사

- 선경 마그네틱, 코오롱, 삼성, 금호, 현대자동차 등

2. 미국 이전가격 세제 개정에 관한 실무 대책회의(1992.11.10.) 개최

- 미국의 이전가격 조사 사례 검토, 미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등 논의

3. 미 국세청, 미 국세법 제482조 시행세칙 초안 발표(1993.1.13.)

- 주요 내용
 - 90일 후 1993.4월부터 발효 예정
 - 외국기업의 이윤이 업계 평균치에 못 미칠 경우 이전가격 조작으로 간주
- 1.21. 뉴욕 한인 상공회의소는 대정부 건의문 작성, 송부
 - 해외법인 증자와 관련한 국내 행정절차 간소화
 - 미국 정부의 한·미 조세협정 위반 시 한국 정부의 강력 대처
- 2.8. 정부는 뉴욕 상공회의소 건의문에 대해 회신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전3권 (V.3 1993.4-12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97 / 2 / 1-258

1993년 중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관련 내용임.

1. 미 국세법 제482조 임시 시행령에 관한 한국 국세청 논평(1993.4월)

- 미 재무부가 임시 시행령을 입안하면서 각계의 논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함.
- 동 논평을 주미국대사관에 송부, 필요시 미국 국세청에 전달하도록 지시

2.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경제협의회 개최 시 이전가격 관련 세무 현황 설명(1993.5.7.)

3. 미 국세청, 이전가격 청문회 개최(1993.8.16.)

- 공청회 결과를 참고하여 가을부터 최종 시행규칙 제정작업을 추진, 익년 상반기에 시행할 것으로 전망

4. DEC(한미경제협력대화) 조세 작업반 회의(1993.12.1.~3.)

- 논의 주제: 미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과세 완화(이전가격 과세 문제 등)
- 회의 결과: 조세 문제 양해각서 가서명
 - 계열회사 간 거래 시 이전가격 산정 문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 문제 지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

1563

대한민국-미국-경제협력대화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97 / 3 / 1-156



1564

1. 아르헨티나 Misiones주 경제사절단 방한(1993.4.10.~13.)

- 방문단
 - Ramon Puerta 주지사 일행 22명
- 주요 일정
 - KOEX 방문 등 산업 시찰
 - 상공부차관, 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코트라 사장, 수출입은행장 등 면담
 - 대우통신 부평공장, 럭키 금성 등 방문
- 동 일행 중 Adriana Tongi Misiones주 무역·외무장관은 외무부 심의관 면담 시 Misiones주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관심과 투자진출 희망
 - 특히 산림보존 프로젝트 및 벌목 후 잔여 목재 활용 프로젝트 관련 한국기업의 관심 기대

2. 아르헨티나 Mendoza주 경제사절단 방한(1993.6.23.~27.)

- 방문단
 - Gabrielli 주지사 일행 26명
- 주요 일정
 - 투자설명회 개최
 - 외무부차관 및 상공부차관 면담
 - 수출입은행, 대한상공회의소, KIET 등 방문
- Gabrielli 주지사는 외무부차관 면담 시 한국기업이 Mendoza주를 MERCOSUR(남미공동시장) 진출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한·Mendoza 간 공동경제협력사업 추진 제의

한·방글라데시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97 / 4 / 1-87

1993년 중 한·방글라데시 간의 경제협력 관련 내용임.

1. 청년봉사단 신규 파견국(방글라데시) 사전답사(1993.1.28.~2.2.) 결과

- 파견협정
 - ERD(방글라데시 대외경제협력청)는 한국 측 표준문안 중 교통수단 제공 건 등 일부사항 외에 는 이의가 없으며 6월 이전 체결을 추진하기로 약속
- 파견 수요
 - 요청 분야: 작물재배, 축산, 식품가공, 공중보건, 임상병리, 요업(도자기), 잠업 및 체육 분야
 - 한국 측은 최초 파견임을 감안하여 7~8명 정도의 인원이 될 것이라고 통보
 - 2.15. 이전까지 공식요청서를 주방글라데시대사관에 접수시키기로 약속
- 기타
 - ERD는 현지인 강사의 한국 파견, 현지훈련 실시 협조, 조정관 임명 등 제반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것을 약속
 - ERD는 최초 파견임을 감안, 단원 근무지는 수도 20마일 이내 지역으로 할 것이라고 함.
 - 한국 측은 협정 체결 및 단원 장기비자 발급 등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함.

2. 한·방글라데시 간 의료협력 양해각서

- 한국국제협력단이 1993년 의료단원 파견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방글라데시, 미얀마, 탄자니아, 페루 등에 의료단원 신규 파견을 희망함에 따라 외무부는 의료단원 접수국과 재외공관장 간 약정 체결을 추진함.
- 1993.8.22. 신성오 주방글라데시대사와 ERD 국장 간 서명
- 주요 내용(전문 및 13개조)
 - 의료단 파견(2년), 병원 배치 및 파견자격(의사면허 소지자), 단원 및 가족의 파견경비(한국 측 부담), 보수 지급(한국 측 부담), 특권과 면세 부여(소득세 면제, 부임 6개월 이내 반입 개인물품 관세 면제, 출입국 제한 면제,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법적책임 면제), 의약품·의료 장비(접수국 측 부담), 주택제공(접수국 측 부담), 접수국 내 공무여행 경비(접수국 측 부담), 의료혜택 제공(접수국 측 부담), 제3국 기술원조 파견원과 동등한 대우 보장, 접수국 법령준수 의무, 양측 간 협의 해결

1565

대한민국-방글라데시-의료협력

한·브라질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97 / 5 / 1-168

1993년 중 한·브라질 간의 경제협력 관련 내용임.

1. 민간 경제협력활동 지원

- 1993.1월 외무부는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남미시찰단의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부에노스아이레스 방문 관련 남미 교포 상공인들과 친선도모, 비즈니스 협력 등 지원 제공
- 외무부, 코트라 등 관계기관을 통해 브라질 산타카타리나, 파라나주의 상공인단 방한 관련 활동 지원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1993.8.22.~9.6.) 관련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페루 주재 공관 협조 요청

2. 공공 경제협력활동

- 1993.1.14. 주한 브라질대사관, 브라질의 대전 엑스포 참가 통보
 - Vieira 브라질 상공장관 방한 시 브라질 국가행사 개최
- 브라질 대통령실, 한국 KDI의 국영기업 관리 및 민영화 자료 송부 요청
 - 외무부는 주브라질대사를 통해 관련 자료 송부
- 3.31. 장재룡 외무부 미주국장과 Amado 주한 브라질대사 간 투자보장협정 체결 및 브라질 상공장관 방한 관련 협의
- 주브라질대사관, 현지 진출 14개 상사대표와 함께 1993년도 경제통상협의회 개최

3. 브라질 정부, 한국 화섬직물 반덤핑 조사

- 1993.8월 주브라질대사, 브라질이 급증한 화섬직물 수입으로 인해 브라질 국내 섬유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섬유수출국에 대해 반덤핑 여부 조사를 착수함을 보고
 - 브라질 직물협회는 10.8. 덤핑제소 서류를 브라질 상공부에 접수
 -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은 한국섬유 수출업체 및 현지 한인업체(브라질 교민 95%가 섬유업 종사)를 감안, 대브라질 PE 직물 덤핑제소대책위원회(1993.10.25.)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 외무부, 10.29. 브라질의 한국섬유 덤핑 조사와 관련 주브라질대사에게 적극 교섭을 지시
 - 한국은 대브라질 교역에서 6억 달러 적자이며, 한국산은 브라질 전체 직물류 수입의 5~9%에 불과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 동 제소가 기각되도록 교섭을 추진
- 브라질 정부, 11.11.자 관보로 한국산 원단 11개 품목에 대해 덤핑 여부 조사 착수를 발표
 - 이에 대응해 현지 변호사 선임 등 적극 대응

한·볼리비아 경제·통상협력. 전2권 (V.1 1987-89)

생산연도 1987-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97 / 6 / 1-225

1987~89년 중 한·볼리비아 간 경제·통상협력 관련 내용임.

1. 무상원조품 전달

- 주볼리비아대사는 1989.6.19. 볼리비아 수도인 수크레 출장 시, 동시통역 장비 및 컴퓨터 등 무상원조 기계를 안데안대학교 측에 기증함.
 - 동 전달식은 안데안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어 대법원장, 검찰총장, 주지사, 영사단 및 교육계, 언론계 주요 인사가 참석

2. 컴퓨터 전달식 개최

- 주볼리비아대사는 1989.9.5. 볼리비아 대통령실 사회사업지원 품목 중 동 대사관에서 보관 중이던 컴퓨터 2세트를 볼리비아 내무장관에게 전달함.
 - 전달식은 내무장관실에서 개최되어 내무부 산하 이민청장, 내무차관, 사회방위차관, 법무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내무장관은 동 컴퓨터가 마약퇴치를 위한 행정 현대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연대 표시에 사의를 표명

3. 재무부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추진 검토 결과

- 재무부는 1989.8.18. 개최한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함.
 - 검토한 사업 중 볼리비아의 상수도 확충사업(770만 달러)은 볼리비아와의 경제협력 실익이 낮고, 차관공여 시 상황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 추진대상에서 제외

1567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한·볼리비아 경제·통상협력. 전2권 (V.2 1992-93)

생산연도 1987-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97 / 7 / 1-174

1992~93년 중 한·볼리비아 간 경제·통상협력 관련 내용임.

1. 사회사업용품 기증행사

- 주볼리비아대사는 1992.3.30. 1991년도 대볼리비아 사회사업용품(PC, 세탁기, 소독기) 기증식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기증식은 사회사업본부 물품보관소에서 개최되어 Rosario Paz Zamora 사회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사회사업본부 요원 및 주볼리비아대사와 대사관 직원이 참석
 - 동 대사와 Zamora 본부장이 기증서에 서명한 후, 본부장은 동 사회사업본부가 필요로 하는 용품 기증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감사 표명

2. 대전 엑스포 설명회

- 주볼리비아대사는 산타크루즈 및 코차밤바시에서 동 대사관 및 INPEX(수출진흥청) 주최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대전 엑스포 설명회를 개최하였음을 보고함.
 - 산타크루즈시: 1993.3.9. 산타크루즈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어 약 70명 참가
 - 코차밤바시: 1993.3.24. 코차밤바 수출회관에서 개최되어 약 90명 참가

3. 산타크루즈 민간경제사절단 방한계획

- 주볼리비아대사는 1993.8.21. 산타크루즈 상공회의소가 8.23. 25명으로 구성된 민간경제 사절단이 아래와 같이 방한 예정임을 통보해왔다고 보고함.
 - 방한 목적: 한국 상품 수입을 위한 상담 및 대전 엑스포 시찰
 - 방한 기간: 1993.8.29.~9.5.
 - 주요 일정: 대전 엑스포 방문, 상공회의소 및 코트라 방문, 한국 상사와 상담 등 추진계획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97 / 8 / 1-114

1. 제1차 ICORC(캄보디아 재건 국제위원회) 회의(1993.9.8.~9., 파리)

- 의제
 - 캄보디아 정세 논의 및 경제 재건계획
 - 기약속 원조분 이행 현황 및 신규 지원문제 협의 등
- 회의 주관
 - ICORC 의장국 일본의 주관하에 이케다 외무성 아주국장이 주재
- 참가국
 - 1992.6월 도쿄회의에 참가했던 33개국 대다수
- 한국 정부 입장
 - 한국 정부는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의 대폭 확대 시까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몽골, 필리핀, 베트남 원조회의에만 참석하고 여타 다자 간 원조공여국 회의에는 불참하는 기본 방침에 따라, 동 회의에는 불참 결정

2. 앙코르 유적지 보존에 관한 국제회의(1993.10.12.~13., 도쿄)

- 주최
 - 일본, 프랑스(공동의장국), 유네스코 사무국
- 참가국
 -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동남아 국가 등 총 30여 개국 및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 한국 측 참가 문제
 - 캄보디아 외무장관은 한·캄보디아는 국교가 없어 한국 참가에 부정적 입장으로 그 배경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한 것으로 추측

1569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간

한·칠레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97 / 11 / 1-154

1. 칠레 신선과일의 한국시장 접근 문제(1993.8월 당시)

- 한국 식물방역법상 법정 경계 해충인 지중해 과실파리(Medfly)가 분포하고 있는 칠레를 수입금지 국가로 지정
 - 수입금지국가인 칠레 내 특정지역을 해충 무발생지역(Pest Free Zone)으로 인정할 법적근거 부재
- 이와 관련, 한국 측 식물검역조사단은 1993.2월 칠레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 10월 동 결과 칠레 측에 통보 계획

1570

2. Maximiliano Cox 칠레 농업부 차관 방한 협의(1993.12월)

- 칠레 측, 농림수산부 면담 시 한국 식물검역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저온처리 요구 등)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검역 전문가 간 협의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UR(우루과이라운드) 위생 및 동식물 검역 협상, 한·칠레 공동위원회를 통한 정치적 해결책 모색을 시사
- Cox 칠레 농업부 차관은 신기복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시에도 상기 입장 반복 개진

한·콜롬비아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97 / 12 / 1-109

1. 주콜롬비아대사, 대주재국 수출증대 방안 보고(1993.8월)

- 수출품목의 다양화
 - 중소기업 시장 개척에도 역점
- 단품 위주 수출에서 프로젝트성 수출로 전환
- 투자 및 자원 획득지로서의 중요성 인식
- 제도적 장치 강구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 프로젝트성 수출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 사용 확대
- 경제 및 투자사절단 파견 확대
- 한국선사에 의한 상품 수출 유도

2. 콜롬비아 바예 델 카우카주 경제사절단 방한계획(1993.9.22.~26.)

- 사절단 구성
 - 동 주지사 외 10여 명
- 주요 일정
 - 코트라 방문, 투자설명회, 공장 견학, 대전 엑스포 관람 등
- 동 사절단 방한 계기 한국 측 제기 필요사항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조기 체결 촉구
 - 해운협정, 어업협정 체결 제의
 - 자원개발 진출 시 안전 보장(시설 및 인원에 대한 대테러 안전 보장) 등

1571

대한민국-외국관계사-외교

한·캐나다 경제통상관계 일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97 / 13 / 1-160

1993년 중 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통상 협력 관련 내용임.

1. Hibernia 해양석유 생산설비 수주 관련

- 주캐나다대사는 1993.1.27. Hibernia 해양석유 생산설비 수주계획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현대중합상사 캐나다 법인 측은 캐나다 뉴펀들랜드주 St. John's 315km 앞바다 유전개발 사업인 프로젝트 추진 관련, 해양석유생산 설비 중 Living Quarter Module 및 Process Module 등 2개 Module을 1994년 말까지 제작공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최종 계약은 2월 중 체결될 것이라고 함.
 - 금번 수주로 1994~95년 중 수출증대 효과는 4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기대됨.

2. Michael Harcourt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수상 일행 방한계획(1993.4.29.~5.1.)

- 회망 일정: 포항제철, 한진, 쌍용, 삼성데이터시스템, 효성그룹 방문 등
- 동 수상은 4.16.~5.1.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홍콩을 순방 예정임.

3. 알팔파 할당관세 적용 문제

- 주캐나다대사는 1993.7.26. 알팔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관련 아래 내용을 확인해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한국무역협회 발행 일간무역(1993.7.16.자 석간)에 따르면, 재무부가 신규로 5가지 품명(매니옥, 옥수수, 알팔파, 원당, 오산화바나듐)에 대하여 금년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함.
 - 알팔파 할당관세 적용은 한·캐나다 양국 간 통상현안문제의 하나로서 지난 6월 오타와에서 개최된 양국 간 고위정책 협의 시 캐나다 측의 할당관세 적용 요청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한 바 있음.
- 외무부는 8.2. 상기 문의 관련, 생필품 가격안정지원 차원에서 알팔파에 대해서는 7.31.~12.31. 수입전량에 대해서 4%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기로 대통령령으로 확정되었음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4. 주밴쿠버총영사관 주최 상사협의회(1993.9.23.) 개최

- 수출 부진 원인 및 대책 마련

5. 제1차 한·캐나다 통신정책협의회(1993.9.20.~21., 서울) 개최

- 양국의 이동통신 현황, 표준 문제 및 통신 분야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의

한·코스타리카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미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97 / 14 / 1-132

1992~93년 중 한·코스타리카 간의 경제·통상협력 추진 관련 내용임.

1. 현지 진출 한국업체 문제

- 주코스타리카대사, 현지 진출 한국업체 현황자료 보고(1992.1월, 1993.2월)
 - 한국인 및 교포 업체 11개, 약 3천만 달러 투자, 현지인 5천여 명 고용
- 주코스타리카대사, 한국인 직원에 의한 현지 근로자 구타 등 인권 위반사례 빈발 관련 보고 및 대책 건의(1992.2월 등 수차례)

2. 현지 경제 정보 보고

- 코스타리카 경제 현황(1992.1월)
- 통상외교 추진계획(2월, 주코스타리카대사관)
 - BCIE(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검토, 한국 산업단지 설립 추진, 미주농업협력기구의 한국 전문가 파견 등 의견 제시
- 코스타리카 섬유업체 동향 보고(3.5.)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진전과 엘살바도르 평화협정 등 비교 우위 및 정세 변화로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으로 섬유 분야 투자업체의 이전 현상
- 일본의 중미 산업개발을 위한 인력훈련센터 창설(4.15.)
- 중미 고용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4.20.)
- 코스타리카 신노동법 제언 동향, 1993년도 예산안, 일본의 BCIE 가입 동향, IMF(국제통화기금), IDB(공업개발이사국) 등 차관교섭 현황 등

3. 현지 투자지원 및 공여사업

- 1992.2.9. 산업연구원 투자환경조사단, UNDP(유엔개발계획) 초청으로 코스타리카 방문
- 주코스타리카대사, 1992년도 기자재 공여사업 배정액(10만 달러)이 전년도보다 삭감된 데 대해 인상조치 건의 및 대코스타리카 기자재 공여사업의 대상, 물품, 방법 등 보고
- 1993.12.8. 주코스타리카대사, 로스앤젤레스-브라질 간 운행하는 KAL 노선의 중간 경유지 설정 건의
 - 외무부, 수요 성숙 시기에 재검토 요지로 회보

1573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중국 내 한국공업단지 건설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98 / 1 / 1-250

1990~93년 중 중국 내 한국공업단지 건설 관련 자료, 보고서, 전문 등 문서임.

1. 중국 측의 중국 내 한국공업단지 건설 요청 및 한국 측의 타당성 조사

- 1989.10월 중국 요녕성, 하북성, 산둥성 등으로부터 한국 전용공단 개발 요청
- 1990.11월 민관합동조사단 1차 타당성 조사(천진, 청도, 진황도 등 7개 지역)
- 1991.5월 민관합동조사단 2차 타당성 조사(천진, 청도, 진황도)
 - 천진을 최적지로 예정
- 8월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 중국 내 전용공단 개발 필요성 인정
- 1992.7.3. 제38차 북방경제정책 실무위는 중국 천진 경제기술개발구 내 한국기업공단 추진 확정

2. 천진 한국공단 사업에 관한 기본합의(전문 및 6개조) 서명(1992.8.14.)

- 권영각 토지개발공사와 YI ZHI KUAN 천진경제기술개발구총공사 총경리 간에 서명
- 50년간 토지 사용권 취득, 토지사용권의 처분권 보유
- 천진경제기술개발구 측은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 및 법률적 보장을 위한 조치

3. 토지사용계약 체결(1993.2.18.)

- 용수량: 1일당 1만 7천 톤 공급
- 입주기업 선정: 한국 측이 입주 기업 선정
- 임차가격: 평당 14.20달러
- 시공업체: 한국 건설업체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전3권 (V.1 1-4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98 / 2 / 1-231

1. 한·중국 농림수산물 분야 협력 대책(1992.12월, 농림수산부)

- 1989년 이후 수입개방 확대와 함께 증가된 중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이 한·중 수교를 계기로 가속화 우려
 - 값싼 농림수산물 수입으로 생산 농어민 생계 위협, 식품위생 안전 문제 등 예상
- 주요 대응조치
 - 수입 및 유통관리 측면에서 국내산과의 차별 강화
 - 산업피해 구제 제도의 적극 활용체제 구축
 - 정밀검역 실시
 - 수출자율규제 유도
 - 중국 농림수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2. 가금육의 수입 위생 조건 개정 고시

- 농림수산부, 1993.3.1. 동 개정 시행 개시
 - 중국, 미국, 캐나다, 태국, 프랑스 등 16개국 주한 대사관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통보
 - 미국, 캐나다, 태국 등은 이미 한국으로 가금육 수출을 위해 도계장, 가공장, 검역증명서 등에 대한 심사 서류를 제출 중
 - 중국의 경우도 조속한 시일 내 외교경로를 통해 심사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 정부는 현지 점검 또는 서류심사 등 방법을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중국 측에 회신

1575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간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전3권 (V.2 5-8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통상1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98 / 3 / 1-162

1. 대중국 신규투자 상담체제 재정비 방안

- 1993.8월 외무부가 작성하여 시행
 - 민간기업(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투자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하며, 또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온 관련기관 간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중복 문제 노출
- 주요 방안
 - 새로운 종합 투자안내기구 설치의 지양
 - 종합정보서비스센터로서 기존 '중국 투자정보지원센터(코트라)'의 확대 개편
 - 코트라가 국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기관별 각종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투자지원체제를 마련
 - 중소기업진흥공단 베이징사무소(1993.5.21. 개설)을 통한 지원 강화
 - 중국 내 지역별 진출 협의회 활성화

2. 중국,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설치를 한국 측에 제의(1993.7월)

- 한국 측(농림수산부) 입장
 - 동 설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중국 측이 희망하는 동 위원회 기능 중 '동식물 검역 등 농산물 교역에 관한 조정'은 제외
 - 한·중 간 농산물교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동 위원회에 포함시킬 경우 한국 측에 실익이 없음.
 - 농산물교역 관련사항은 양국 간 대화채널(경제무역기술공동위 및 무역실무위원회)을 통해 해결 가능
 - 동식물검역 등 기술적 사항은 현안별로 동식물 검역기관 간 직접 접촉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전3권 (V.3 9-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98 / 4 / 1-178

1. 국제 군수장비·기술 전시회(1993.10월, 중국 시안)

- 참가자
 - 국방부 군수협력과장 및 업계 대표
- 참석 목적
 - 동북아 정세 및 남북한 관계 고려 시 한·중 간 군사부문 교류가 긴요
 - 중국군 군사조달 분야에의 참여가능 여부 파악에 유리
-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군부 참모장 면담
 - 중국 측은 국방 분야 교류·협력이 일반적으로 군수 분야에서 시작된다고 하면서 양국 군수 분야 관계자들의 상호 노력 필요성 강조
 - 서울 개최 방위전 참석 초청에 대해 사의 표명

2. 중국산 수출 가금육 작업장 승인조치 문제

- 1993.11월 중국 측은 주중국대사관을 통해 14개 가금육 작업장에 대해 한국 측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
 - 외무부는 1992년 이래 대중국 무역흑자 기조하에서 동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통상 현안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을 농림수산부에 전달
- 농림수산부는 중국 내 가금전염병 발생상황에 대한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가 불가피하며, 동 조사 이후 승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

3. 대중국 경제협력대책 검토(1993.11월, 경제기획원)

- 중국시장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간주하고 종합적인 진출 전략을 모색
- 핵심 대책(안)
 - 지역별·산업별로 체계적인 진출방안 마련
 -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차원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조속히 체결하고, 각종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
 - 중국 주재 영사관의 경제 업무 기능 보강
 - 투자제한 사업을 폐지하되, 주요 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개별투자 심사 시 검토
 - 금융기관 상호 개설 확대
 - 질서 있는 진출 체계 확립: 민간투자 정보지원체제 확충, 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 등

4. '중국 한국상회' 창립

- 중국 진출 한국기업 친목단체로서 1993.12.9. 중국 정부에 등록하고 정식 창립

1577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에콰도르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98 / 5 / 1-95

1993년 중 한·에콰도르 간의 경제협력 추진 동향임.

1. 주에콰도르대사, 에콰도르 외무장관 면담(1993.3.19.)

- 동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 설명 및 주재국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대표가 이사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함. 이에 동 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IAEA, 유엔 등 어디서나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함.
- 동 장관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 최근 자신의 페루 방문 시 주페루 북한대사관의 경제 담당관이 외교관계 수립 계획서를 전달한 바 있으나 한국과의 관계에 비추어 절대로 북한과는 수교를 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함.
- 동 장관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관해 강한 희망을 표명하고, 구체적으로 아래 프로젝트에 한국이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함.
 - 도로건설: 주재국으로서는 도로건설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바, 주재국 대통령이 한국업체의 참여를 바라고 있으며 건설자금에 관하여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국 측의 차관공여를 원함.
 - 통상사절단 파견: 관민통상사절단의 대만 파견 시 방한도 희망하는바, 방한 여비 지원 검토 요청
 - 버스·바나나 교환: EC(구주공동체)의 대중남미 바나나 수입 쿼터 제한 때문에 구주산 버스 구입은 원하지 않으며 우수한 한국산 버스로 대체하기를 원함. 총 소요 대수는 약 2,000대이며, 결제방식은 에콰도르로서는 한국이 차관을 제공해 주면 가장 좋겠으나 버스와 바나나의 직접 교환도 가능함.
 - 무상원조: 금년도분 무상원조는 관광 진흥을 위한 홍보 비디오 편집기기 및 아마존지역 도로 정비를 위한 트랙터 등 도로건설 중장비 공여 희망

2. 에콰도르 통상사절단 방한(1993.8.1.~3.)

- 방문단
 - Particio Izurieta Mora-Bowen 외무부 차관보 일행 7명
- 주요 일정
 - KOICA 총재, 농림수산부 차관보, 상공부 무역진흥국장, 관광공사 부사장 등 면담
 - 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에콰도르 투자환경 소개) 참석, 력키금성 방문 등
- KOICA 총재 면담 시 에콰도르 측 제기사항
 - 에콰도르의 민간기업 컴퓨터화 추진사업에 대한 기자재 공여 요청, 농촌개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사업 지원 요청 등

한·에티오피아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98 / 6 / 1-89

1993년 중 한·에티오피아 간의 경제협력 추진 관련 내용임.

1. 경제개발 지원

- 1992.11월 방한한 에티오피아 외무장관은 7개 분야 기술연수생 초청 사업 희망
- 1.12. 주에티오피아대사는 한발구호금 10만 달러 전달
- 3.22. 에티오피아 구호재활청은 한발기금 지원을 위해 240만 달러 원조 요청
- 6.23. 주에티오피아대사는 경제·외교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자재 공여 사업 건의
- 8.14.~17.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명성교회 선교단은 에티오피아 총리 면담 시 2만 달러 기증
- 8.17. 일양약품(주)은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을 통해 845만 원 상당 의약품 기증

2. 경제협력 사업 및 행사 추진

- IDA(국제개발협회) 자금에 의한 입찰사업
 - 도로청의 4개 구간 도로공사
 - 공업부의 냉연강판 및 아연코팅 구매
 - 상하수도청의 수도 계량기, 밸브, 땀질기기 등 구매 및 정수장 건설
 - 도시개발사무소의 트럭 구매
- 전화청의 전화선 케이블 구매 입찰
- 에티오피아 정부 주관 박람회
 - 연중 2차례 국제박람회 개최
 - 1994.3월 아디스아바바 박람회 및 제7차 중소기업 총회 개최 추진
- 삼성물산 관심사업
 - 연 30만 톤 생산 시멘트공장, 섬유공장, 대리석 가공공장

3. 경제협력사절단 교류

- 한국 민간 경제사절단, 에티오피아 방문(1993.6.10.~13.)
 - 에티오피아 외무장관, 통상장관, 대외경제협력장관 등 면담
 - 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1579

대한민국 외교부

EC(구주공동체)의 대한민국 보고서 채택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98 / 7 / 1-158

1993.6.8. EC(구주공동체) 이사회에서 채택된 대한민국 관계 보고서 관련 내용임.

1. 1993.5.14. EC 집행위원회, EC 이사회에 대한민국 관계 보고서 제출

- 보고서 성격
 - EC의 대한민국 정책 전반에 관해 EC 집행위가 채택한 최초의 공식 문서
 - 동 보고서에 따라 EC 이사회가 처음으로 한·EC 관계에 관한 종합적인 협의 시작
- 보고서 요지
 - 최근 한국의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민주화 평가
 - 한·EC 경제관계의 균형적인 발전 평가
 - 다방면에 걸친 한·EC 관계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사회의 결의안을 건의

2. 1993.6.8. EC 이사회는 동 보고서 채택

- 의미
 - EC가 1963년 한국과 수교한 이래 최초로 채택한 관계 보고서임.
 - EC가 한·EC 관계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
- 평가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EC 협력관계의 기본 틀 마련
 - 향후 적절한 형태의 한·EC 기본협력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

한·EC(구주공동체) 경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1과 / 통상3과 / 경제1과

MF번호 2023-98 / 8 / 1-92

1993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 통상분쟁 및 경제협력 관련 문서임.

1. 한·EC 협상 및 협의 동향

- EC 집행위원회는 한국대표부 및 한국 정부 담당부처와 분야별 협상 및 협력방안 협의
- 주EC 한국대표부는 EC회원국 주재 경제담당관 및 진출기업과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협의

2. 통상분쟁 대상

- EC 측 관심분야
 - 주세(세율), 조선(보조금), 통신(무선통신사업자 구분, 통신장비 조달), 모직물 조정관세, 자동차 시장개방, 금융시장개방, 해운(항만 간 서비스), IPR(지식재산권), BOP(국제수지), 의약품 허가, 동식물 검역, 외국기업 고정사업장 등
- 한국 측 관심분야
 - 잔존수입규제, CDP(반덤핑), 전자레인지(반덤핑), 자동차(자율규제), CPT(자율규제), 원산지 규정, 수입식품 검사 등

3. 경제협력 분야

- 협력 분야: 특허, 상호인정, 동식물 검역, 세관,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 협력 방안: 협정 체결, 인적교류, 정보 및 자료 교환,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 EC 측은 재정부담 수반 협력사업은 별도의 합의문서가 필요하다는 입장

4. 기타 관심사항

- 한국의 금융실명제, 한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 유지, 코볼소 무역제재 등

1581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

한·프랑스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1과 / 통상3과

MF번호 2023-98 / 9 / 1-262

1993년 중 한·프랑스 간의 경제·통상협력 동향임.

1. Alain de Cointet 프랑스 산업대외무역성 경제협력총국 부국장 방한(1993.3.15.~19.)

- 방한 경위
 - 동 부국장은 프랑스의 대아태·동구·중동지역의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상공부 초청으로 방한
 - 프랑스 정부 실무 간부급 인사로서는 최초로 한국 측의 일체 경비 부담 조건으로 방한 초청
- 주요 일정: 정부인사, 기업, 연구소 면담
- 초청 성과
 - 한·프랑스 양국 간 통상 및 산업기술협력 확대의 필요성 공감, 구체적 방안 모색 합의
 - 프랑스 정부의 대한국 잔존수입규제 철폐 방침 통보
 - 생산기술연구원과 프랑스 ANVAR(국립연구진흥기관) 간 업무협력 적극 추진 합의
 - 프랑스의 첨단산업 기술정보를 한국 측에 제공하는 방안 검토 등
 - 상공자원부 및 산업연구원 직원 대상 강연회 개최를 통해 프랑스 및 EC의 제반 정책과 한·프랑스 산업협력 방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제2차 한·프랑스 경제정책토론회(1993.7.12.~13.)

- 한국 경제기획원과 프랑스 기획위원회 간 토론
 - 세계경제 전망, 양국의 경제 상황, 정책 과제 등 토의
- 대표단
 - 한국 측: 장승우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등
 - 프랑스 측: Jean-Baptiste de Foucauld 기획청장 등

3. 한·프랑스 통상장관회담(1993.9.13.)

- 양국 간 교역, 투자증진과 산업기술협력 증진 방안 협의

4. 제1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1993.11.26.)

- 대표단
 - 한국 측: 노영욱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프랑스 측: Lombard 산업 및 대외무역부 산업전략차관보
- 협의 내용
 - 7개 산업협력 우선 분야 선정
 - 민관 전문가 모임 구성 합의
 - 기술연수생 교환 지원

한·헝가리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98 / 10 / 1-85

1991~93년 중 한·헝가리 간의 주요 경제·통상협력 동향임.

1. 헝가리 농산물(소고기, 돼지고기, 꿀, 고추)에 대한 수입 허용 요청 검토(1991.2월)
2. 헝가리 투자세미나(1991.6월, 서울) 개최
 - 헝가리 투자환경 설명 및 한국 민간기업의 대헝가리 프로젝트 개발 참여 요청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과 헝가리 대외경제성국장 간 경험 현안 협의
 - 금융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방안 및 헝가리산 농축산물 수입 허용 문제 협의
3. 제1차 한·헝가리 특허청장회의(1992.5월, 부다페스트) 개최
 - 산업재산권의 법제화 및 특허청의 기능 강화를 위한 경험 전수 및 전문가 파견 등 협력방안 협의
4.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헝가리 방문(1992.7월)
 - 경제기획, 수출진흥 전략, 중소기업발전 분야의 국별 연수 실시 등 기술협력방안 협의
5. 무역사절단, 헝가리 방문(1992.9월)
 - 무역정보 교환 및 무역활동 촉진을 위한 무역협력협정 서명
6. 헝가리 SPA(국유재산청) 투자사절단 방한 추진(1992.12월)

1583

대한민국-외국관계사-외교편

한·인도네시아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98 / 11 / 1-217

1990~93년 중 한·인도네시아 간의 경제협력 및 통상분쟁 협의 관련 내용임.

1.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 협력 사례
 - 1992.4월 재무부는 인도네시아 생건사 제조업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결정
 - 1992.4월 기아자동차는 인도네시아 Udatin 그룹과 상용차 및 승용차 협력 생산 MOU 체결
 - 1992.7월 한국 자동차세 비교연구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사절단 방한

2. 한·인도네시아 통상분쟁 및 교역 증진

- 통상분쟁
 - 삼일섬유(주)는 30만 9천 달러 상당 합성직물 수출대금 미회수
 -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의 미사용 대미 섬유쿼터를 자국의 미국 섬유수출에 사용 희망
 - EC(구주공동체)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쿼터규제로 한국 섬유업체의 인도네시아 진출 여건 악화
 - 인도네시아 PVC Scrap 수입금지로 진출기업 태화공업(주)은 원료 조달에 차질
 - 한국산 원사의 덤핑 수출로 인해 인도네시아 화학섬유업체의 피해 발생 소문
 - 흥화타이어(주)는 로비에 의한 한국산 타이어의 수입규제로 수출중단 위기 신고
 - 미국 및 캐나다 섬유쿼터 품목 수출을 위한 한국 섬유업체의 문서위조 사건 발생
 - 인도네시아의 주요 농산물 수입은 독과점 형태의 지정업체가 담당하고 품목 및 수량은 정부 승인
- 교역 증진
 - 인도네시아 담배업체는 유럽 시장을 겨냥하여 한국 담배 수입 희망
- 진전사항
 - 한국의 미사용 대미 섬유쿼터는 이양하지 않기로 결정
 - 태화공업(주) 수입 PVC Scrap은 통관 완료
 - 인도네시아 합성섬유의 수급 불균형을 지적하고, 한국산 원사가 인도네시아의 섬유류 수출 증가에 기여함을 설명
 - 흥화타이어(주) 제기 타이어 수입규제는 불량품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명
 - 한국 담배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 여타 사항은 해결을 위한 협의 지속, 협력 증진 노력, 각별한 주의 및 동향 주시 등으로 진행

한·이란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98 / 13 / 1-80

1993년 중 한·이란 간의 경제·통상협력 동향임.

1. 제4차 한·이란 공동위(1991.9월) 후속조치

- 1991.10.7. 외무부 중동 1과장, 주한 이란대사관 참사관을 면담하여 동 후속조치의 이행 점검
- 양국 간 무역절차 간소화, 주한 이란대사관의 비자 발급 관련 비리 근절, 이란에서 수령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보험금 달러화 환전 관련 협조 등

2. Nowfarasti 주한 이란대사,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면담(1993.8.3.)

- 이란대사, 이란·이라크 전쟁의 피해 복구 관련 양국 간 협력 확대 가능성 시사
- 특히, 한국국제협력단 개발조사사업 관련 이란 철도의 컴퓨터 시스템 설치사업 적용 여부에 관심

3. 라프 산자니 이란 대통령, 이란 국영 SAIPA사 기아 프라이드 조립생산 기념식(1993.8.25.) 참석

- 산자니 대통령, SAIPA사 자동차 사업 관련 기술이전 여부, 기아 프라이드를 이란의 국민차로 보급하는 문제에 큰 관심 표명

4. 이란 정부, 대규모 철도건설에 한국 업체 참여 희망

- 1993.12.1. Torkan 이란 도로운송성 장관, 이상열 주이란대사 면담
- 이란의 제2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될 4대 철도공사에 한국 업체의 Financing 및 시공 참여 요청
● 동 계기 이상열 대사는 지난 2월 발생한 수해 복구공사 사업비(약 6,500만 달러) 관련 한국 업체(대우)에 대한 지불 지연을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

1585

대한민국 외교부

한·이란 노동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98 / 14 / 1-176

1993년 중 한·이란 간의 노동협력 관련 내용임.

1. 제2차 한·이란 노동차관회담(1993.10.27., 테헤란)

- 수석대표: 김훈기 노동부차관
- 제1차 양국 노동차관회담(1993.8월, 서울)의 쟁점사항 타결
 - 양국 간 노동 현안에 대한 양해각서 조인
 - 이를 통해 Work Visa 발급 소요기간 단축, 노동 허가 즉시 발급 및 노동 허가 기간 확대 등 현지 진출업체 애로사항 해결
 - 특별 노동세 과표 인하, 한국 고유식품 면세, 사회보장 균등 혜택 등 한국 측 근로자 권익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양해각서 내용

- 양측은 취업, 직업훈련제도, 농촌 부문과 중소기업의 취업, 장애인 직업훈련 등의 분야에서 경험, 정보 및 전문가의 교환을 추진함.
- 양국 간 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측은 KOICA 및 APSDEP(아태지역기능개발사업단)의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이란인 훈련생의 숫자를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함.
- 한국 측은 한국 업체의 대이란 투자 실적을 고려, 한국 업체에 이란인 직업훈련을 권고함.
- 이란 측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비자쿼터 내에서 취업비자 발급기간의 단축,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의 즉시 발급, 공기 및 작업성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노동허가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함.
- 이란 측은 한국인 근로자의 합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지원하고 필요 시 관련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함.

3. 한국대표 활동

- H. Kamali 이란 노동사회부장관, 노동사회연구원장, 기술·훈련·조정 최고위원회 사무총장 등 면담
- 한국 건설업체 대림산업(주) 방문 등

한·일본 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98 / 15 / 1-255

1993.3.8.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본 산업기술협력재단 회의 관련 내용임.

1. 대표단

- 한국 측: 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과기부 사무관 및 재단 사무국장
- 일본 측: 외무성, 통산성, 재단 전무이사

2. 회의 결과

- 재단 사업
 - 양측 재단 사업별로 구체적인 역할 분담 및 소요비용 분담 방안을 작성
- 양 재단 간 연락협의회 설치 문제
 - 연락협의회(재단 이사로 구성)와 간사회(사무국 직원으로 구성) 구분 설치하는 데 합의
- 한국 측 재단의 도쿄사무소 설립 문제
 - 설립하되 당분간은 무역협회 도쿄지부가 대행
- 양 재단 간 협정서 체결 문제
 - 일본 측은 협정서 체결을 통해 일종의 공동 사업체를 창설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순전히 일본 측의 거출금 예산(6억 엔) 확보를 위한 목적임을 설명함.
 - 한국 측 입장은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하기로 함.

1587

대한민국외교부서영향

한·일본 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 전2권 (V.2 사업현황 및 예산)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99 / 1 / 1-248

1993년 한·일본 간 산업기술협력재단의 운영,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 관련 내용임.

1. 1993년도 1/4분기 사업 집행계획 및 교부금 신청 내역

- 사업명: 인력사업 교류, 전문가 초청, 공동연구 및 산업기술협력 기반 구축 등 분야

2. 1993년 재단 사업 추진 현황

- 중견 기술자 연수, 기술지도기관 지도요원 연수, 업종별 모델기업에 대한 일본 전문가 초청 지도, 산업디자인 기술지도, 기술 연구인력 파견, 공공연구소·대학 연구인력 파견, 브레인 풀 운영, 신진 이공계 인력 육성, 한일 산업기술 공동연구, 한일 테크노파크 개설, 전문 분야별 기술교류 세미나

3. 1993년 사업비 잔액 활용 방안 협의

- 재단은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5개 사업, 6억 7백만 원 선정
- 연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독려 요망

4. 1994년도 재단 사업 선정 기준

- 일본으로부터 기술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에 비중을 둬.
-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 효과가 큰 인력교류 사업에 중점을 둬.
- 1994년 사업 계획은 증액 없이 1993년도 수준으로 인정하기로 함.

한·쿠웨이트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99 / 2 / 1-117

1993년 중 한·쿠웨이트 간의 경제협력 추진 관련 내용임.

1. 쿠웨이트는 Shuwaikh 항구의 컨테이너 하역 작업 및 시설유지관리 용역 관련 한진 또는 타업체 물색 희망(1993.1.11.)

2. 쿠웨이트 전자제품전시회(1993.3.1.)

- 참가 업체
 -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15개국 33개 회사
 - 한국 측은 대우전자가 소규모로 참가하여 냉장고, TV, 세탁기, 라디오 등 전시
- 평가
 -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은 쿠웨이트 시장 확보 및 확대를 위해 개별상품전시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있음에 비해 한국은 1993년도 국제박람회에도 무명 중소기업 1개사만 참가하여 엑세서리, 손목시계만 전시했을 뿐, 이것은 오히려 한국상품의 쿠웨이트 수출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

3.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주한 쿠웨이트대사 면담(1993.5.26.)

- 쿠웨이트 내 정세 설명
-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 증진
- 한·쿠웨이트 간 항공 문제 협의

4. 경제협의회(1993.9.26., 주쿠웨이트대사관) 개최

- 쿠웨이트 경제 동향 분석
- 쿠웨이트의 대한민국 최근 수출입 동향 분석 및 한국의 수출증진 방안
- 대쿠웨이트 한국 업체 공사 진출현황 파악 및 향후 진출

5. 현대건설의 쿠웨이트지점장이 1993.12.23. 주쿠웨이트대사관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주재국 사비야에 300MW의 화력발전소 8기를 건설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마감 결과 현대건설이 1억 2천 222만 7천 KD(약 4억 2천만 달러)로 응찰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것으로 비공식 판명되었다고 함.

- 상기 관련, 주재국의 입찰담당 기관은 12.25. 오전 입찰 결과 공식발표를 토대로 주재국의 발주처인 수전력성은 입찰사와 기술적 합의에 들어간 후 낙찰의향서를 향후 2~3개월 후에 전달함으로써 낙찰이 확정될 예정인바, 주재국의 낙찰 관례에 따라 현대 측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현대의 낙찰이 거의 확실하다고 함.

한·리비아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3-99 / 3 / 1-37

1990~93년 중 한국의 리비아 수출·투자 관련 활동에 관한 문서임.

1. 리비아 경제 동향

- 리비아 산유능력 보도(1990.3월 로이터통신)
 - 원유 매장량: 약 500억 배럴(종래 추정치 228억 배럴, 일 최대 산유능력: 165만 배럴)
 - 가스 매장량: 43조 입방피트(종래 추정치 29.2조 입방피트)
- 리비아 1991/1992 회계연도 예산
 - 총 38억 6,600만 디나, 전년 대비 60% 증액, 농업, 주택, 인프라 등 국민기본수요 충족 투자확대
- 제12차 리비아·몰타 공동위(1991.12월) 개최
- 주리비아 베트남대사, 리비아 한국 건설현장에 베트남근로자 취업 희망 피력(1992.1월)
- 리비아 주재 한국 업체 활동(12월)
- 주재 상사 초청 수출촉진 간담회(1993.10월) 개최

2. 한국기업의 대리비아 수출·투자 활동

- 리비아 유전개발 참여(1990.10월)
 - 석유개발공사, 대우 등 한국기업 5개사, 영국 LASMO사와 합작하여 리비아 국영 석유회사와 유전개발계약 체결
- 금성사, 연 7만 대 규모의 VTR 공장 뱅가지에 설립(1991.8월)
- 가일통상, 군복 5만 벌 수출(12월)

한·말리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99 / 4 / 1-178

1991~92년 중 한·말리 간 경제협력 관련 내용임.

1. 대말리 원조 내역

- 1991.2.28. 주세네갈 말리대사관 요청에 따라 소나타 4대 및 엑셀 6대 무상지원
- 11.6. Fofana 말리 제도개혁 및 지방분권장관, 주세네갈대사관에 인쇄출판시설 지원 및 지방분권 분야 연수생 방한 초청 요청
- 11.28. Mamadou Fane 말리 체육장관, 주세네갈대사관에 말리 체육부 차량 및 체육 분야 지원 요청
 - 축구공 등 지원

2. Keita 말리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의 서한을 통한 원조 요청

- Keita 위원은 1992.2.21.자 김운용 한국 IOC 위원 앞 서한을 통해 무상원조 요청을 위한 동년 4월경 방한 희망의사 표명
 - 농기구, 의료기기, 국방성 차량, 통신기기 및 군복 등 원조 요청
 - 한·말리 간 정기 혼성위원회 개최 희망
 - 한국 정부는 1992년 무상원조액을 7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방한 불요 입장 전달
- 동 위원은 6.30.자 2차 서한에서 김운용 위원의 말리 방문(대통령특사자격) 또는 말리 고위사절단의 방한을 제의

1591

대한민국 외교부서 역사편

한·모로코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99 / 5 / 1-140

1993년 중 주모로코대사관의 경제·통상협력 관련 내용임.

1. 1993년도 상반기 경제협의회 및 관광진흥회의(1993.2.27., 아가딜)

- 주요 의제
 - 1992년도 대모로코 통상진흥 활동 심사분석
 - 1993년도 대모로코 통상 및 투자진흥 계획
 - 아가딜 진출업체 현황 및 애로사항
 - 관광진흥대책
- 회의 결과
 - 금년도는 연내 선적대상 입찰 물자가 없고 주재국의 경기 침체 및 가뭄으로 인하여 수출 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
 - 당초 수산업 관련 영세 영업을 영위해 온 아가딜 한인 업체들은 최근 한국 선원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따라 현지인 및 관광객 대상 업종으로 변경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
 - 모로코 수산업 현황 청취
 - 1993 대전 엑스포 대규모 참관단 유치 추진

2. 1993년도 하반기 경제협의회 및 관광진흥회의(1993.12.17., 아가딜)

- 주요 의제
 - 1993년도 대모로코 통상진흥 활동 심사분석
 - 1994년도 대모로코 통상 및 투자진흥 계획
 - 아가딜 진출업체 현황 및 애로사항
 - 관광진흥대책
- 회의 결과
 - 1993년도 한국의 대모로코 수출은 대형입찰 물자가 전무하고 주재국의 가뭄으로 인한 구매력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약 15% 감소
 - 그러나 1994년도는 모로코의 경기회복과 대형입찰 수주 및 금성사의 진출로 인하여 수출이 5,000~6,000만 달러를 상회함으로써 1억 달러 수출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 주모로코대사관과 코트라는 한국 중소기업의 대모로코 진출 특히 시장개척단 모로코 방문활동과 한국 대기업의 주재국 정부 입찰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한·멕시코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99 / 6 / 1-303

1. 한국의 중남미 수출확대 방안 보고(1993.6월, 주멕시코대사관 보고)

- 중남미 개방화에 부응하는 진출전략 마련
 - 중남미 현지 세일즈 적극 전개
 - 고유 모델 및 자가 상품 진출 확대
- 중남미 산업화에 부응하는 진출 전략 마련
 - 수출품목을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자본재로 전환
 - 국제입찰에 적극 참여
 - 중남미 국영기업 민영화에 참여
 - 현지 생산·판매로 시장 선점 및 용이한 주변국 수출 여건 조성
- 미주개발은행 가입 적극 추진

2. 멕시코 주요 입찰에 한국 업계의 참여 검토 사례

- 멕시코시티 경전철 공사
- 툴라 지역 등 정유시설 공사
- 산 루이스 포토시 광산개발

1593

대한민국-외국관계-역사

한·오만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동1과 /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99 / 7 / 1-55

1992~93년 중 한·오만 간의 경제협력 관련 문서임.

1. 석유·가스 관련 동향

- 오만 석유·가스 매장량(1992.1월)
 - 석유: 44억 3천만 배럴(1991년 중 3억 배럴 추가발견), 가스: 7조 입방피트
- 오만 정부 LNG 생산계획 발표(2월)
 - 오만 정부는 Shell, Total 등과 8년간 90억 달러 투자, 연간 500만 톤 생산하여 전량 일본 수출 계획
- 오만 경제동향(12월)
 - 수입 48억 3천만 달러(원유·가스 수입 84%), 수출 48억 5천만 달러(국방비 34%, 경상비 43% 등)
- 오만·인도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협정 서명(1993.7월)
- 오만 원유수출 동향(10월)
 - 1993년 상반기 총 1억 5천만 배럴 수출, 한국(4천 5백만 배럴), 일본(4,495만 배럴), 중국 순

2. 한국기업의 오만 진출

- 오만 정부, 한국 어업전문가 파견 요청
- 삼성중공업, Mina Qaboos 항구 1,100만 달러 규모 크레인 설치공사 수주(1992.11월)
- 한국 원양업체 진출(1993.11월)
 - 동원수산, 사조산업 오만 경제수역 내 참치 입어계약 체결

한·파키스탄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99 / 8 / 1-149

1993년 중 한·파키스탄 간의 경제·통상 협력 관련 내용임.

1. 경제협력·통상관계

- 대우그룹, 파키스탄 정부와 신드주 Qasim 항구지역에 한국 전용공단 설치계획 협의(1993.1월)
 - 총 4억 달러 규모 투자, 카라치 항구 인근의 500에이커 개발 추진
- 삼부건설, 파키스탄 편잡 주 국도복선화 공사 수주(6월)
- 한국국제협력단, 파키스탄 N5 도로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사업 추진(1993년 연중)
- 한국기업이 시공하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노사분규 및 조정(12월)
- 현대건설, Chashma 수력발전소 토목공사 시공계약 체결(12월)
- 파키스탄 정부, 한국 업체 참여 사업에 대한 제재(12월)
 - 국내 정치적 이유로 전 정부에서 착수한 고속도로 공사의 축소, Yellow Taxi Sheme 중지 등
- 대우전자, Hattar 지역에 컬러TV 생산 공장 합작투자(12월)

2. 주파키스탄대사관의 경제협력·통상증진 활동

- 1993년도 제1차 경제협의회(1993.3월) 개최
- 1993년도 제2차 경제협의회(1993.7월) 개최
- 파키스탄 신원양어업정책 보고(10월)
- 주파키스탄대사, 교통·체신장관 및 외무장관 면담 시 한국 자동차 수출 어려움 해결 요청
 - 소비자 금융 중단에 따라 대중교통 현대화계획에 의거 대량 수입된 현대, 대우자동차 판매 급감
- 1993년도 제3차 경제협의회(1993.11월) 개최
- 한·파키스탄 산업협력회의(1993.12월) 개최

1595

대한민국-서남아대양주-여하전

한·폴란드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동구2과

MF번호 2023-99 / 9 / 1-52

1993년 중 한·폴란드 간의 주요 경제협력 동향임.

1. 한·폴란드 경제공동위 추진 경위

- 1993.4.27. 주한 폴란드대사,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 시 한·폴란드 양국 간 실질 경제협력 모색을 위해 9월경 서울에서 경제공동위 개최를 제의
- 1993.5.14. 동 대사, 외무부 통상국장 면담 시 9월경 공동위 개최 제의
- 1993.6.9. 외무부장관 폴란드 방문 중 폴란드 외무장관과 양국 간 공동협력위 추진에 합의

1596

2. 폴란드의 채무상환용 차관 제공 요청

- 크로바츠키 폴란드 재무차관, 주폴란드대사에게 채무 상환용 차관 제공 가능성 타진
 - 규모 2억 달러 차관
 - 런던클럽과의 채무조정협상 관련, 일부 연체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자금으로 활용할 목적
- 한국 측 입장
 - 국제수지 여건 및 은행의 수지 여건상 추가 차관 제공 불가
 - 기존 경험자금 제공 약속분 중 미이행분의 채무 상환금으로 전용 불가

한·파라과이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99 / 10 / 1-50

1993년 중 한·파라과이 간의 경제·통상협력 추진 동향임.

1. 파라과이 국제박람회(1993.7.17.~8.1., 아순시온)

- 참가국
 - 한국, 일본, 독일, 브라질 등 14개국
- 주파라과이대사관은 MERCOSUR(남미공동시장) 출범을 겨냥하여 동 박람회를 한국의 유망품목 집중 홍보의 장으로 규정하고, 외무부 지원 하에 한국 상품 홍보관 설치·운영 및 종합문화행사 개최
- 주파라과이대사, 1993.8월 말 MERCOSUR 출범 이후 효율적인 수출증대 모색을 위한 코트라 사무소 재개설 건의

2.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라과이 파견(1993.8.26.~28.)

- 무역 상담

1597

대한민국-외국관계사-연호

한·페루 경제·통상협력. 전2권 (V.1 1-8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99 / 11 / 1-168

1993년 중 한·페루 간의 경제·통상협력 추진 관련 내용임.

1. 경제협력

- 주페루대사는 페루 Cuzco 공항 확장공사, 한국 전용공단 건설,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 증액 등 건의
- 외무부는 페루 Cuzco 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EDCF 지원 요청 및 재무부(수출입은행) 공여 여부 심사
- 동 한국 전용공단 건설 및 공항 확장공사 추진을 위해 대페루 투자조사단 파견(1993.10월)

2. 수산협력

- 1993.2월 주페루대사는 한국 오징어선단의 허가 쿼터 미소진 관련 조업기간 연장을 페루 측과 교섭, 2개월 연장 관철
- 1993년도 페루 오징어 쿼터 입찰 관련 6만 톤 이상의 쿼터 한국선단(총 37척) 확보 지원
- Sobero 페루 수산장관 방한(1993.3.22.~26.)
 - 양국 간 어업협정 체결 추진
 - 페루수역의 미개발 또는 저개발된 자원 이용을 위한 한국 트롤어선의 입어 가능성과 수산물 가공 및 어선 건조 분야에서 상호 협력방안 모색

3. 기타 경험 및 통상관계 활동

- 페루 정부가 요청한 외채 조정을 위한 제2페루지원그룹 참여는 1993.1.30. Pella 주한 페루 대사와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면담 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 1993.2월 페루 정부, 한국산 자동차 740대 구매입찰 지원
- 1993년 중 2차례 코트라 주관 중남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 한국 통신공사(대우, 삼성과 컨소시엄 형성), 페루 전화공사 민영화 국제입찰에 참여(8월)하여 예비심사 통과
- 주페루대사, 8.19.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면담 시 구매 희망한 발전설비, 변전기 및 12인승 버스 700대 가격 및 구매 알선
- Bustmante 페루 상공장관, 10.13. 대전 엑스포 페루관 개관식 참석차 방한

한·페루 경제·통상협력. 전2권 (V.2 9-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99 / 12 / 1-109

1993년 중 한·페루 간의 경제·통상협력 추진 관련 내용임.

1. 수산협력

- 1993.9.1. 페루 정부가 자국 수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 오징어선단의 불법어로로 조업중단조치를 취하자, 주페루대사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에게 사태의 해결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통해 잔여 조업 및 추가 쿼터를 확보함으로써 선단의 재조업을 확보
 - 한국 선단의 부조리 조업(감독관 매수, 조업량 하향 기록 등)과 노무관리 등 제반 개선조치 노력 추진
- 어업교섭단, 페루 파견(1993.11.25.~27.)
 - 단장: 한국 수산청장
 - 한·페루 간 어업협정 협의, 양국 간 수산협력 방안 협의

2. 대페루 투자조사단 파견(1993.11.1.~10.)

- 조사단
 - 김호식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제1협력관, 외무부, 건설부, 체신부,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재무부, 상공부 관계관 총 9명
- 파견 목적
 - Cuzco 공항 확장공사, 한국 전용공단 건설, 페루 전신전화국 민영화 등 현안사업 검토 및 페루 내 일반 투자환경 조사
- 활동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1,850만 달러 규모의 Cuzco 공항 확장사업의 타당성 조사
 - 3개 한국 공단 후보지의 입지 조건 검토
 - 페루의 외국인투자제도 조사
- 건의
 - 공항 확장사업의 경우 국제관광객이 배가될 전망으로 EDCF 자금 회수에 문제없고, 페루 내 건설공사 수주 기반 활용 가능
 - 한국 전용공단 건설 시 남미시장 및 미국시장(GSP(일반특혜관세제도) 활용) 진출의 우회수출 기지로 활용 가능

1599

대한민국 외교부 남미과

러시아 군수산업 민수화 참여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99 / 13 / 1-304

1991~93년 중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화 참여 관련 내용임.

1. 한·러시아 산업장관 회담(1992.9.1.)

- 수석대표
 - 한국 측: 상공부장관
 - 러시아 측: A. A. Titkin 산업부장관
- 회의 결과
 - 양국 간 산업협력 증진에 합의: 산업기술협력 강화, 기술정보 교환 확대, 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
 - 군수산업 민영화 관련 협력 확대
 - 상공부·산업부 간 협력 강화
 - 산업부 산하 산업투자기금의 서울지부 설치
 - 상공부와 러시아 산업부 간의 산업협력 증진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2. 러시아 군수산업 민영화 조사단 파견

- 기간 및 장소: 1992.11.5.~12.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 대표단 구성
 - 정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외무부, 과학기술처 관계자
 - 관련 기관 및 단체: 코트라, 방위산업진흥회,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항공우주연구소 관계자 및 민수전환 참여 관심기업 등
- 주요 활동
 - 경제부처 방문협의, 산업기술정보협력 추진 협의, 산업시찰 등
 - 정부 측 조사단: Malei 군수산업 민수화 전환담당 열린 대통령 보좌관, Braginskiy 모스크바 부시장, Materov 경제성 차관 등을 각각 면담,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화 전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 논의
 - 민간 측 조사단: 항공, 기계, 화학, 라디오, 방산 등 분야별 러시아 측의 민수화 전환 현황을 청취하고 동 과정에 한국기업의 참여 방안에 관한 협의, 분야별 관련 기관 및 시설 방문
- 러시아 군수산업 민수화 조사단 결과보고서 수록

한·러시아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99 / 14 / 1-297

1993년 중 한·러시아 간 경제협력 관련 내용임.

1.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1993년도 제1차 경제협의회(1993.2.11.) 개최

- 참가자
 - 블라디보스토크 및 하바롭스크주 내 8개 상사 대표
- 주요 결과
 - 동 협의회 참석 상사들은 1993.7.1.부터 오른쪽 운전석 차량의 신규등록금지 등 러시아 정부의 조치가 한국 중고차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는 동 상사들이 효율적인 중고차 수출 촉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자격 있는 국내업체를 지정하여 수출하도록 하고, 수출중고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반환하여, 한국 중고차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하면서, 이를 긍정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

2. 러시아 관세제도 개편 관련

- 상공부는 1993.11.8. 러시아 정부가 한국 수출품에 대해 적용해오던 특혜관세를 폐지할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서, 주러시아대사관으로 하여금 러시아 관계부처를 접촉하여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현지 상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방안을 건의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주러시아대사관은 11.16. 러시아 주재 상사, 주요 대한 수입선, 대외경제성, 외무부, 관세청 등 다양한 접촉통로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철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철폐 움직임이 있다는 어떤 정보도 입수된 바 없다고 보고함.
 - 일부 대규모 수출상사들은 거래선을 통하여 주요 수출품목들의 다음 년도 수입관세율표(미확정)는 부분적으로 입수하였으나, 수입관세율 인상보다 거래선의 영업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특혜관세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

1601

대한민국-러시아 경제협력

한·루마니아 경제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99 / 15 / 1-179

1993년 중 한·루마니아 간의 경제협력 관련 내용임.

1. 한·루마니아 경제공동위 개최 검토

- 1993.1.20. Ciobanu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상무참사관, 한국 측에 양국 간 경제공동위 개최 제의

2. Mr. Dan Popescu 등 4명 루마니아 정부대표단, 대전 엑스포 참가 협의를 위해 방한 예정 (1993.2.19.~26.)

- 루마니아 측은 대전 엑스포 전시계획서를 확정, 1993.2.17. 주한 루마니아대사관을 통해 조직위에 전달 예정

3. 주한 루마니아대사, KOICA 총재 면담(1993.3.30.)

- 기자재 공여,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및 통신장비 지원, 대전 엑스포 참가 등 관련 협의

4. 상공자원부장관, 루마니아 무역부장관 방한 초청 협의(1993.6.4.)

- 1993.7.10. 김철수 상공부장관 명의 루마니아 무역장관 방한 초청
- 1993.10.7.~12.로 최종 확정

5. Ciobanu 주한 루마니아 상무참사관, 오갑열 외무부 경험2과장 면담(1993.6.29.)

- 공동위 개최 협의
- 경제공동위 개최 관련 외무부(경협2과), 주루마니아대사관의 의견 청취

6. 대루마니아 EDCF 차관공여

- 주루마니아대사관은 1993.7.27. 주재국 정부가 대루마니아 EDCF 차관 5천만 달러에 대하여 지불 보증하기로 했다는 루마니아 외무부의 공한 접수
- Prohava지역 통신망현대화 사업용 차관

한·사우디아라비아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 통상1과

MF번호 2023-99 / 16 / 1-158

1993년 중 한·사우디아라비아 간 경제·통상관계 및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동향 관련 내용임.

1. 한·사우디아라비아 경제·통상관계

- 한국 산업설비 수요 조사단 사우디아라비아 방문(1993.5.15.~18.)
- 삼성전자 대리점 마케팅 담당자 45명 방한 초청(1993.6.29.~7.7.)
- 대한전선 합작투자계약 체결
- 한국중공업 Shoaiba 제2차 담수설비플랜트 입찰 최저가 낙찰
- 한국 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 사우디아라비아 방문(1993.11.20.~25.)
- 사우디아라비아 유력 실업가 초청 한국 건설기업 대표 간담회 개최
- 사상분쟁 발생 및 처리
 - 삼성물산과 Ahmed Shalfan Est. 섬유수출 계약 관련
 - 수출클레임(AL Amal EST사 수입 아랍커피주전자 1,920개, 4만 8천 달러 상당)
 - 한국산 수입 검에 유해물질 포함 보도 관련 대응

2.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외 경제 동향

- 사우디아라비아 해안유전 발견, 금광개발 보고
- 사우디아라비아 시멘트 수입관세 6개월간 유보조치
- 상용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조치
- GCC(걸프협력회의) 기업 레바논 복구사업투자 문제 협의를 위한 회의(1993.6.15.~16., 베이루트) 개최
- 아랍공동시장 결성 추진 동향(1993.6.20., 제67차 아랍연맹 경제장관회의)
- 국영석유제품판매회사 SAMAREC을 Saudi Aramco에 합병
- 사우디아라비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추진
- GCC의 대외협약채널 운영 현황
- 외국 경제사절단 사우디 방문 현황
- 유가하락 원인 및 전망

1603

대한민국 경제발전사 1993

한·스웨덴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00 / 1 / 1-181

1992~93년 중 한·스웨덴 간의 경제·통상협력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92.3.17. 제3차 한·스웨덴 공동위(1991.12.16.~17., 서울) 시 한국 측 제기사항인 스웨덴의 비관세 장벽 시정 요청에 대한 스웨덴 측 해명자료를 상공부로 송부함.
2. 주재상사 경제협의회(1992년 1/4분기)(1992.4.2.)
 - 무역관 주재상사 관할 구역
 - 라트비아공화국 통상진출 관련 무역관의 경우 관할국이 당관 겸임국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
 -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주재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전자제품 수출품의 경우 EC(구주공동체) 기준 합격품인 경우라도 스웨덴에서 다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수출 가능함.
3. 주한 스웨덴대사관은 1993.4.3. 스웨덴 IRO사 실저장 공급장치의 제어장치에 대한 특허권이 한국기업 동협(Dong Hyup)에 의해 침해되고 있음을 알려오면서 시정 요청
 - 특허청은 4.24. 상기 건에 관한 구제는 권리자가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특허청이 침해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 및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특허권자가 직접 또는 한국 내 특허관리인을 통해 민사적 구제를 청구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는 입장
4. 주스웨덴대사는 1993.11.22. 라트비아(리가) 상주무역관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나, 헬싱키무역관이 발틱 3국을 모두 관리하기가 어렵고, 라트비아는 주스웨덴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스톡홀름무역관이 라트비아(리가)를 관할하도록 외무부에 건의함.

한·튀니지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3-100 / 2 / 1-100

1993년 중 한·튀니지 간의 경제·통상협력 관련 내용임.

1. 인사 교류

- KOICA 총재, Khelil 주한 튀니지대사 면담(1993.5.26.)
 - 엠불런스 20대 등 의료기기 지원 요청, TTCA와의 협력, 기술협력 증진 희망
- Salalh Hannachi 튀니지 국제협력투자부 차관 방한(1993.10.27.~31.)
 - 대전 엑스포 '튀니지의 날' 행사 참석 계기, 경제기획원차관 면담
- KOICA 총재, 튀니지 방문(1993.11월) 추진
 - 튀니지 ATCT(기술협력청)의 조직, 기능, 활동, 실적 등 조사 보고

2. 연수초청, 전문가 파견 등 기술협력 증진

- 경제전문가 파견(1993.1.10.~2.7.)
- 제2회 국제 기업 및 기술 전시회(1993.6.9.~11., 튀니스) 참가 요청
- Sfax 국제 상품박람회(1993.6.16.~27.) 참가
 - 한국 측 참가업체: 럭키금성, 삼성
 - 주튀니지대사 개막식 참가
- 튀니지, 1990년 작성 관세 양허리스트 수정안에 대한 지지 요청
- 튀니스 과학도시 건립 추진
 - 한국국립과학박물관을 모델로 건설 추진, 한국 정부에 지원 요청
- 마산 수출자유지역과 튀니지 수출자유지역 간 자매결연 추진
- 수산양식 전문가 파견
- 코트라, 통상진흥분야 전문가 초청연수 실시
 - Azzi Samir, CEPEX 소속
- 정보관리 및 검색과정 연수(1993.11.16.~25.)
 - Amor Sassi 공업진흥청 공업훈련국장
- 중소기업육성과정
 - Neziha Berrzouga 튀니지 공업진흥청 소속
- 1994년도 국제협력사업 수요조사
 - 연수생 4개 과정 4명, 전문가 2개 분야 2명, 태권도 사범 1명 파견
 - 기자재 공여, 프로젝트 사업(개발조사 분야는 없음)

1605

대한민국 무역발전사

한·터키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2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00 / 3 / 1-218

1993년 중 한·튀르키예 간의 경제·통상협력 관련 내용임.

1. 튀르키예 진출 주재상사의 애로사항(1993.3월)

- 대튀르키예 수출여건이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품목 다각화 추진 필요성
- 튀르키예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업체 간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 필요성
- 튀르키예 정부 발주 대형 프로젝트 참여 시 튀르키예 정부의 Financing 요구가 큰 부담
- 세계시장에서 크롬 가격 하락으로 튀르키예 측과의 광산개발 합작 시 운영자금 압박 심화 추세

1606

2. Tahir Kose 튀르키예 상공장관 방한(1993.12.14.~17.)

- 상공자원부장관 초청으로 방한
- 한·튀르키예 상공장관회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면담, 산업 시찰(대우 자동차 및 동 부품공장, 성안 섬유공장, 현대 조선소 등), 한·튀르키예 민간경협위원장(은용기 현대목재 사장) 주최 만찬 등
- 튀르키예 측 주요 관심사항
 - 중소기업 지원정책 자문 및 기술협력 요청
 - 자동차 부품 생산 분야에서의 협력
 - 섬유 분야에서의 협력
 - 한국의 대튀르키예 투자 증진

한·우간다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00 / 4 / 1-116

1992~93년 중 한·우간다 간의 경제·통상협력 관련 내용임.

1. 무상원조 차량 기증식 개최

- 주우간다대사는 1993.2.5. 우간다 정부에 대한 차량 무상원조 기증식에 참석하였으며, 동 기증식에 참석한 우간다 외무장관과의 별도 면담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우간다 외무장관은 한국 정부의 차량 무상원조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고, 동 차량이 1993.2.5.~9.로 예정된 교황 방문 행사에 긴요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함.
 - 이에 대해 동 대사는 동 차량이 주재국 방문 귀빈 행사 및 외무부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해 활용되기를 바라며,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동 장관은 우간다 외무부의 업무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및 외무부에 신설된 공보실용 소형촬영기 무상원조도 희망한 후, 배석한 우간다 외무부 아주국장에게 주우간다대사와의 협의를 요청함.

2. 대우간다 대우 투자조사단 방문

- 주우간다대사는 1993.10.24.~26. 대우 투자조사단(대표: 이종성 대우 전무)의 우간다 방문 관련, 10.25. 개최된 대우간다 투자관계 간담회 참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상공부장관은 우간다 정부의 외국 투자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우간다가 투자를 희망하는 섬유, 관광, 건설 등 5개 분야를 소개하면서, 한국 내 3대 그룹 중의 하나이며 운영석 주한 명예영사가 부회장으로 있는 대우가 동 분야에 적극 투자해 줄 것을 희망함.
 - (주)대우 이종성 전무는 상기 투자 여부는 우간다 정부가 제공한 대우간다 투자관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섬유 부문의 경우 전기세 및 수도세 등 높은 생산원가 부담 및 섬유류 밀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 주우간다대사는 대우 조사단의 우간다 방문으로 대우간다 투자가 가시화되었음과 향후 투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함.

1607

대한민국 아프리카지역협력

한·미국 기업환경 개선방안(PEI) 합의사항 이행(국내법령 개정)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0 / 5 / 1-196

1992~93년 중 정부는 한·미국 기업환경개선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대외경제 관련 행정규칙 및 절차 개선을 추진함.

1. 경위

- 1992.7월 외무부에서 대외경제 관련 행정절차 개선 조치 시안을 작성, 관계부처에 검토 의뢰
 - 경제기획원에서 적극 추진 의사 표명

1608

2. 요지

- 절차 개선에 관한 내용(입법 예고 확대, 불복 소명절차 등)을 총리 훈령에 포함
 - 각 부처는 자체 시행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결과를 총리실에 보고

3. 결과

- 1992.11.11. 경제기획원은 표준 등 행정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총리 훈령을 확정하고, 바로 제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정함.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PEI) 이행점검 및 후속대화 문제 협의. 전4권 (V.1 1-5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0 / 6 / 1-216

1993년 중 PEI(한미영업환경개선협약) 이행점검과 후속대화 관련 내용임.

1. 한국 상공부, 제3단계 유통업 개방계획 발표(1993.1.19.)

- 주요 내용
 - 소매업에 대해 적용되는 점포 수 및 매장 면적 제한 완화
 -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계약 배달업, 특수 판매업 등
 - 1993.7월 시행

2. 새로운 PEI 검토

- 미국 측은 1993.9월 종료될 PEI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대화를 염두에 두고 아래 분야의 토의 대상 제시
 - 투자, 규제 완화, 통관 및 표준

3. PEI 후속대화 추진계획(안)

- 추진 일정: 1993.6.24. 한·미국 경제협의회에서 후속대화 운영방안 합의 추진
- 한국 측 운영방안
 - 대화 방식: PEI 접근방식 계승
 - 기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되 성과를 보아 연장 가능
 - 대상 분야: 무역과 투자 작업반 설치
 - 양측 대표: 총괄 조정자(차관보급), 각 작업반(국장급 반장)

1609

대한민국-미국 자유무역협정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PEI) 이행점검 및 후속대화 문제 협의. 전4권 (V.2 6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0 / 7 / 1-212

1993년 중 PEI(한미영업환경개선협약) 이행점검과 후속대화 관련 내용임.

1. PEI 후속대화 관련 비공식협의(1993.6.3.~4., 워싱턴 D.C.)

-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정기 주미국대사관 공사
 - 미국 측: 크리스토프 백악관 경제보좌관
- 논의 결과
 - 명칭: '경제 파트너십 대화'로 잠정 합의
 - 협의 대상 분야: 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및 자유화 문제
 - 구성 및 운영: 미국 측은 차관보급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특정 사항에 대한 협의 필요시 특별소위원회 개최 희망

2. DEC(한미경제협력대화) 추진

- 경과
 - 한·미국 양국은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화 설치 문제 협의
- 현황(아래 사항에 대체적 합의)
 - 명칭: 한미경제협력대화
 - 목적: 경제규제 완화 및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 협의
 - 체제: 양국 차관보급 주재 전체회의를 운영하고, 필요시 특정 문제 처리를 위한 임시협의체 설치
 - 운영: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권고서 작성, 각자 책임 이행
- 추진 일정
 - 한·미국 정상회담(1993.7월)에서 공식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PEI) 이행점검 및 후속대화 문제 협의. 전4권 (V.3 이행보고서 검토 I, 3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0 / 8 / 1-309

1993년 중 PEI(한미영업환경개선협약) 이행점검과 후속대화 관련 내용임.

1. 각 부처의 PEI 이행보고서(안) 검토(1993.3월)

- 재무부, 상공자원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경제기획원 등 국·영문 보고서 초안 제출

2.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하여 보고서 초안 작성

- 표준 작성 및 규제 절차
- 통관 절차
- 투자
- 기술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PEI) 이행점검 및 후속대화 문제 협의. 전4권 (V.4 이행보고서 검토 II, 4-6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0 / 9 / 1-247

1993년 중 PEI(한미영업환경개선협약) 이행점검과 후속대화 관련 내용임.

1. 미국 정부는 1993.4.1.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표준, 통관, 기술 등 PEI 3개 분야 권고서 이행 현황에 대한 미국 측 보고서를 전달하여 옴.
2. 외무부는 1993.4.2. PEI/고위실무회의 준비 미국 측 보고서에 대한 관련 부처 및 미국 주재 한국 상공회의소에 검토를 요청함.
 - 재무부, 상공자원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검토의견 송부

한·베트남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 경제협력2과 / 통상1과

MF번호 2023-100 / 10 / 1-166

1993년 중 한·베트남 간의 경제·통상협력 관련 내용임.

1. 한·베트남 외무장관회담(1993.2월, 서울)

- 기술협력
 - 개발조사사업, 직업훈련원 설립, 무상원조, 베트남 연수생 초청, 한국청년 해외봉사단 파견, 베트남 대학생 유학 초청
- 경제협력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수출입은행 융자조건 우대,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경제 관련 협정 조기 체결, Blue Dragon 유전개발사업 참여 지원

2. 한·베트남 무역장관회담(1993.5월, 서울)

- 베트남 측은 양국 간 무역역조 시정(특히 베트남산 쌀 및 가공 농산물의 제3국 수출지원), 베트남 연수생 초청 확대 등 관련 협조 요청
- 한국 측은 상무관 파견 관련 협조, 양국 간 통상·자원협력위원회 발족, 한국 상사 주재원들에 대한 비자기간 연장, 베트남 광물개발 참여,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당부

1613

대한민국 외교부

한·베네수엘라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00 / 11 / 1-46

1993년 중 한·베네수엘라 간의 경제·통상협력 관련 내용임.

1. 주요인사 접촉

- 주베네수엘라대사, 베네수엘라 외무부 경제차관보 면담(1993.5월)
 - 투자보장협정 문안 검토, 공업소유권협약 및 항공협정 체결 필요성 협의

2. 경제 및 통상 관련 동향 보고

- 천연가스 개발 및 수출 동향(1993.8월)
- 대한민국 수출입 동향(8월)
- 부가가치세(10%) 도입(9월)
- 한국산 차량 수입 동향(8월, 11월)
- 베네수엘라, 산호세협정에 의한 대코스타리카 원유공급 중단(11월)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미 의회 통과에 따른 베네수엘라 측 반응(11월)

3. 경제·통상 증진 활동

- 한국 상품 전시회 추진(1993.5월)
- 전라남도 시장개척단 방문(9월)
- 현대중공업과 베네수엘라 간의 유전개발계약 체결(10월)
 - 2억 달러 규모의 팔콘주 유전개발 낙찰, 20년간 미국기업과 합작개발 예정

한·중남미 국가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 중미과 / 남미과

MF번호 2023-100 / 12 / 1-176

1993년 중 한·중남미 국가 간 경제·통상협력 관련 내용임.

1. 한국기업 중남미 진출 관련 공관 보고

- 1993.2월 주파나마, 주과테말라, 주자메리카대사는 주재국 진출 한국기업 현황, 문제, 현지 개최 박람회 참가 건의 등을 보고함.

2. 중남미 개최 박람회 참가 건의

- 파라과이 국제박람회(1993.7.17.~8.1.)
 - 주파라과이대사는 1993.3.8. 파라과이 국제박람회 참가를 건의함.
 - 동 박람회는 지역 국가의 관심이 지대하며, Menem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아르헨티나관 개관식에 직접 참가
 - 파라과이 상주대사관을 두고 있는 아주 3국 중 일본, 대만은 매년 공식 참가
 - 동 박람회 참가는 남미공동시장에 대비하여, 경제·지리적 중요성이 큰 파라과이에 교두보 확보를 위해 긴요한바, 제반 사정상 국가단위 참가가 어려울 경우, 인근 코트라에서라도 참가 조치해줄 것을 건의함.
- 트리니다드토바고 박람회(1994.4.15.~24.)
- 제1회 중남미 보건박람회(1994.5.24.~27., 칠레)

3. 지역경제회의 결과 보고

- 중미 무역투자회의(1993.6.28.~7.1., 온두라스)
 - 참가자: 문호준 주과테말라대사관 참사관
 - 회의 목적
 - 중미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
 - 중미지역과의 교역 증진 도모
 - 관찰 및 평가
 - 미국은 대중미 무역교류 확대에, 중미는 외국의 투자유치 및 금융지원에 중점을 둔 관계로 회의 후 특별한 결정 등이 없음.
 - 대만 및 일본의 민간기업 대표의 대거 참석은 중미지역에 역점을 두고 가능성 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바, 한국 정부가 참고해야 할 사항임.
 - 건의
 - 중미의 주요 기반 건설사업은 대부분 BCIE(중미경제통합은행)를 통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한국의 대중미지역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차관공여 확대, BCIE의 적극 가입 및 한국기업의 주요 건설사업 참여가 요망됨.

1615

대한민국 외교부

- 제14차 CARICOM(카리브공동체) 정상회담(1993.6.5.~8., 바하마 나사우)
 - 주자메이카대사는 7.13. 금년이 CARICOM 창설 20주년으로 통합을 위해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대했던 것으로 관찰되는바, 동 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보고함.
 - CARICOM 차원의 대외경제 무역교섭 전략 및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대EC 공동 전략 추진 및 특히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적절한 잠정조치 확보를 위해 주력하기로 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 입장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
 - ACS(카리브국가연합) 관련, 동 연합 창설이 지역 전체에 대해 경제 측면에서 특히 이롭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CARICOM 비회원국 중 주요한 카리브연안국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감지하게 됨에 따라 ACS 추진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
 - CARICOM 사무국 및 기구를 개편, 강화시키기로 합의함.

4.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상품 전시회 추진

- 한국상품 카탈로그 전시회(1993.11.11., 자메이카), 우루과이 무역관 개설 건의에 대한 검토, 서울시 시장개척단 파견 검토 등

5. 주요인사 방한 초청 건의

- 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공단관리청장, 파라과이 육군총사령관, 자메이카 외무장관, 아르헨티나 경제장관, 과테말라 외무차관 방한 초청 등

6. 투자유치단 방한 추진

- 자메이카 투자유치단(1993.3.7.~13.), 엘살바도르 상공회의소(1993.10월), 트리니다드토바고 투자유치단

7. 중남미지역 수출증진 대책 보고

-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한국상품 전시회 개최, 상사분쟁 방지 및 해결 강구, NAFTA(북미자유 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카리브지역 투자효과 감소,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 등 건의 등

8. 상사클레임 해결 관련

- 파라과이 자동차 수입상의 쌍용자동차 부품 구매, 우루과이 기아자동차 대리점 개설 희망, 에콰도르의 한국산 섬유 덤핑 제소, 우루과이산 농어 수입 절차에 관한 문의 등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제9차. 서울, 1993.11.12. 전4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00 / 13 / 1-193

1993.11.12.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한·EC 모니터링 회의(1993.6.29.~30., 브뤼셀)

- 외무부 제2차관보 참석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한승주 외무부장관
- EC 측: Leon Brittan 집행위 부위원장

3. 주요 의제

- 실무회의 결과 보고
- 한·EC 기본협력협정 체결
- 지식재산권 문제
- 다자 간 국제경제 문제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제9차. 서울, 1993.11.12. 전4권 (V.2 의제 및 실무회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00 / 14 / 1-220

1993.11.12.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의제 및 일정 관련 내용임.

1. 의제(안)

- 실무회의 결과 보고
- 한·EC 간 관계 평가 및 전망
 - 지식재산권, 시장접근 문제, 농산물 및 식품, 유해물질 신고, 통신,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
- 다자 간 국제경제 문제
 - UR(우루과이라운드)
 - 지역 경제협력: APEC(아태경제협력체), EEA(유럽경제지역)
 - 대미·일본 관계
 - 대CIS(독립국가연합) 및 중·동구 관계

2. 일정(안)

- 11.10.
 - 제1차 실무회의
- 11.12.
 - EC 수석대표 Brittan 부위원장의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예방
 - 각료회의
- 11.13.
 - Brittan 부위원장의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예방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제9차. 서울, 1993.11.12. 전4권 (V.3 결과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01 / 1 / 1-145

1993.11.12.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개최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주요 합의사항

- 지식재산권 문제 타결
 - 보호대상 품목(의약 193개, 농약 28개) 및 한국의 기투자 품목(의약 4개 업체: 2개 품목, 농약 9개 업체: 6개 품목) 대상을 확정하기로 합의
- 기본협력협정 체결 추진 합의
 - 한국 측이 제시한 형식 및 내용에 대해 협의를 갖고 이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
- Wisemen's Club 설치 및 구성 합의
 - 양측 3~4명의 대표로 구성된 제1차 회의를 내년 상반기 중 서울 또는 E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EC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 1994년도에도 한국이 EC GSP 수혜대상에 계속 포함될 것임을 확인
- 중소기업 협력 강화
 - 한국무역협회의 EC BRE(기업정보센터) 가입 수락

2. 주요 양자 현안 협의

- EC 측 관심사항
 - 외국산 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
 - 모직물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 가능성
 - 시장개방 시 대미 차별(통신, 해운 등)
 -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 한국 측 관심사항
 - 반덤핑 등 EC의 수입규제조치 자제
 - 전자, 자동차 등 산업협력 강화

3.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문제

- EC 측 입장
 -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및 기여 요청
 - 시장 접근, 서비스, 정부조달, 농산물 분야에서 한국이 제시한 양허안 개선 요망
 - 쌀시장 개방 관련 관세화에 의한 개방 필요성 강조



- 한국 측 입장
 - 쌀 등 기초식량의 개방불가 입장 설명

4. 후속조치

- 외무부, 주한 EC 회원국 대사관 대상 제9차 한·EC 각료회의 결과 설명(1993.11.25.. 외무부)
- 1993.12.3. EC집행위, 동 회의 결과를 113조 위원회에 보고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제9차. 서울, 1993.11.12. 전4권 (V.4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01 / 2 / 1-104

1993.11.12.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대비 자료임.

1. Giola EC 집행위 부총국장과 제2차관보 간 면담자료
2. 한·EC 각료회의 관련 관계부처 송부자료
3. 편집인협회 브리핑 시 장관 말씀자료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8차. Brussels, 1992.11.10.-12. 전4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서구1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01 / 3 / 1-96

1992.11.10.~12.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8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참가 준비에 관한 내용임.

1. 정부대표단 임명

- 대표단(32명)
 - 수석대표: 외무부장관
- 참가 목적: 한·EC 간 경제통상 현안 협의, 한·EC 간 과학기술협력 약정 서명
 - 분야별 협의: 통신, 과기협력, 육상 운송 등

2. 분야별 의제 선정 작업 협의

- 자동차 수입규제 문제, 환경 문제, 금융 분야, 위조상품 문제 등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8차. Brussels, 1992.11.10.-12. 전4권 (V.2 결과 및 후속 조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서구1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01 / 4 / 1-265

제8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가 1992.11.10.~12. 브뤼셀에서 개최됨.

1. 수석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교부장관
- EC 측: 안드리센 EC 집행위 부위원장

2. 주요 협의내용

- 한·EC 경제통상 현안: 정부조달, 통신 시장 개방 등
- UR(우루과이라운드), 남북한 관계, 지역 경제협정

3. 의의

- 1993.1월 유럽단일시장 출범을 앞두고 한국기업의 지속적인 대EC 진출기반 확보
- 한·EC 간 성숙된 동반자적 협력관계 확인

4. 후속조치

- 각 분야별 논의사항과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8차. Brussels, 1992.11.10.-12. 전4권 (V.3 자료 I)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서구1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01 / 5 / 1-215

1992.11.10.~12.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8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준비자료가 수록됨.

1. 제8차 한·EC 고위협의회 실무회의 자료(국문)

- 회의 진행 방법
- 대표단
- 의제별 양측 입장
 - 시장접근 관련 문제
 - 지적재산권과 위조상품
 - 통신 조달
 - 육상 운송
 -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금융기관 영업환경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 및 한국의 개도국 지위
 - 과학기술협력, 산업 간 협력

2. 제8차 한·EC 고위협의회 실무회의 자료(영문)

3. 외신기자 회원 자료(국문)

4. Delors EC 집행위원장 면담 자료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8차. Brussels, 1992.11.10.-12. 전4권 (V.4 자료 II)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서구1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01 / 6 / 1-126

1992.11.10.~12.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8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참가 준비 관련 자료가 수록됨.

1. 제8차 한·EC 고위협의회 의제 검토

- 유해 화학물질 등록 제도
- 과학기술협력 방안(공동 워크숍 공동개최, 인력 파견 등)

2. 제8차 한·EC 고위협의회 실무회의 참고 자료

- 대표단 명단, 일정 개요, 의제, 의제별 양측 입장

3. 제8차 한·EC 고위협의회 기본 자료

- 대표단 명단, 항공 일정, 일정, 세부행사 계획
- 협의회 개요, EC 개관 및 한·EC 관계
- 언론 관련사항, 선물, 공간 현황 등

1625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처
외교정책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11차. 서울, 1993.6.24.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1 / 7 / 1-183

1993.6.24.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한·미국 경제협의회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차관
- 미국 측: Joan Spero 국무부 경제차관

2. 주요 의제

- 신행정부 하의 양국 경제·통상 관계 정립 방안
 - PEI(한미영업환경개선협약) 후속대화 운영 방향
- 주요 경제·통상 현안
- 세계경제 전망, 한국경제 및 미국경제 현황과 평가

3. 협의 결과

- 한·미 통상관계의 발전 방향 합의
- 7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협력
- 기타 APEC(아태경제협력체)에서의 협력방안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방안 협의

4. 평가

- DEC(한미경제협력대화) 설치에 합의, 대화를 통한 호혜 협력적 경제 동반자 관계 발전의 기반 마련
- 미국 측은 양국 간 경제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 및 영업환경 개선이 중요함을 강조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11차. 서울, 1993.6.24.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1 / 8 / 1-197

1993.6.24. 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한·미국 경제협의회 관련 자료임.

1. 주요 의제별 관계부처 송부 자료

- 상공부, 과기처, 교통부 등

2. 한·미 경제협의회 관계부처 회의 자료

- 외무부 통상국의 취합 자료

1627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처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장관 회의, 제13차. Teheran(이란), 1993.4.21.-2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101 / 9 / 1-152

정부는 1993.4.21.~23.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장관회의에 이인제 노동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역내 회원국 간 노동 분야 협력증진 도모

2. 주요 의제

- 고용과 노동시장정책, 인력개발, 아태지역 국가 간의 노동 분야 기술협력 등

3. 정부 훈령

- 한국의 고용현황과 직업안정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 산업수요에 부응한 각종 인력양성시책을 참가국에 적극 소개
- 각국의 고용증진 및 근로자 보호시책 관련 자료 수집
- 기술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각국에 제공하는 기술협력 사업 홍보 등

4. 회의 결과

- 한국 수석대표인 이인제 장관이 부의장으로 선출
- 회의는 인력자원개발이 생산성, 경제성장, 복지 그리고 근로자와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관건이라는 요지의 공동성명 채택

5. 한국대표단 활동(수석대표)

- 이 장관은 한국이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복지산업사회 실현을 위해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조절과 고용안정에 주력하는 등 고용 및 인력개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요지로 기조 발언
- Zajani 이란 기획예산담당 부통령 및 Kamali 노동사회부장관 예방
 - 양국 간 협력증진 및 노동 분야 현안문제 협의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 제4차. Brussels, 1993.6.29.-30.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01 / 10 / 1-319

1993.6.29.~30.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4차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 준비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EC 측: Giola 집행위원회 대외총국 부총국장

2. 주요 의제

- 한·EC 경제통상 관계 주요 현안
- 제8차 한·EC 고위협의회(1992.11.18., 브뤼셀) 협의사항 후속조치 및 제9차 한·EC 고위협의회(1993.11.11.~12., 서울) 개최 문제

1629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처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 제4차. Brussels, 1993.6.29.-30. 전2권 (V.2 결과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01 / 11 / 1-132

1993.6.29.~30.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4차 한·EC(구주공동체) 모니터링 회의 개최 결과 및 후속조치 내용임.

1. 회의 결과

- 한·EC 관계강화
 - 한국 측은 한·EC 기본협력협정 체결 제의
- 신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 EC 측은 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어온 외국인 투자자유화 등 한국의 신경제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동 정책이 향후 한·EC 관계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
- 분야별 전문가회의 개최 합의
- 주요 통상현안 협의
 - 주세 문제 최종 타결
 - 미시판 물질 보호품목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
- 인적 교류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한·EC Wisemen's Club 창설에 기본적인 합의

2. 후속조치

- 모니터링 회의 토의 요록 수정안 상호 교환
- 한·EC 세관협력협정 서명
- 한·EC Wisemen's Club 창설 문제
- 제1차 한·EC 편집인 세미나
- 제2차 한·EC 과학기술 워크숍 개최 문제
- 지식재산권 문제 타결
- 통신 및 경쟁 문제 전문가회의 개최
- 유해물질 신고 등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1차. Washington D.C., 1993.9.7.-8. 전5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1 / 12 / 1-146

제1차 DEC(한미경제협력대화) 개최 준비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외무부 제2차관보
- 미국 측: 국무부 경제차관보

2. 주요 토의 내용(안)

- DEC의 향후 추진방향 및 원칙 설정
- 규제완화 및 경제협력 2개 협의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과제 선정

3. 한국의 대응 방향

- 한·미국 간 산업·과학기술협력 증진 제의에 대한 미국 측의 적극적 협조 확보 추진
- 한국기업의 대미 영업상 어려움 해소 노력

1631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1차. Washington D.C., 1993.9.7.-8. 전5권 (V.2 결과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1 / 13 / 1-173

1993.9.7.~8.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DEC(한미경제협력대화) 결과임.

1. 회의 성격

- DEC 기구의 향후 추진방향 및 원칙 설정과 함께 규제완화 및 경제협력 2개 협의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과제 선정

2. 협의 내용

- 규제 완화 관련
 - 미국은 한국 내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을 제의
 - 한국은 미국의 301조, 반덤핑 등 통상법 제도 운영과 한국기업의 대미 영업활동상 각종 애로 사항 해소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의
- 경제협력 방안
 - 미국은 민간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길 희망
 - 한국은 기업 간 산업협력, 제반 과학기술협력 사업 추진, 사회보장제 면제협정 체결 등을 제안

3. 회의 내용 평가

- 균형 잡힌 협의를 진행하여, 양국 간 경제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1차. Washington D.C., 1993.9.7.-8. 전5권 (V.3 협의의제 검토)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1 / 14 / 1-241

1993.9.7.~8.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DEC(한미경제협력대화) 협의 의제 검토 관련 내용임.

1. 1993.7.17. 외무부는 회의 의제 준비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기업에 협조를 요청함.

- 전경련은 대미 진출 한국기업의 세무 대책을 제기함.

2. 제1차 회의 대비 관계부처 대책회의(1993.8.18., 경제기획원)

- 분야별 의제 및 대응 방안 협의
 - 규제완화
 - 미국 측 제기 예상 의제: 투자,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경쟁정책
 - 한국 측 제기 의제: 반덤핑 조사, 외국기업 과세 등
 - 경제협력 분야
 - 미국 측 제기 예상 의제: 노사문제 등
 - 한국 측 제기 의제: 과학기술협력, 산업협력, 사회보장제 면제 협정, 검사기관 상호인정 등
- 향후 작업 일정 확정

1633

대한민국 외교부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1차. Washington D.C., 1993.9.7.-8. 전5권 (V.4 사례 및 제도 조사)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2 / 1 / 1-110

1993.9.7.~8.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DEC(한미경제협력대화) 준비를 위하여 각국의 제도와 사례를 조사함.

1. 1993.8.19. 외무부는 공관을 통해 사례 조사를 실시함.

- DEC를 위해 국내 제반 경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의제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공관을 통해 제도 및 사례 조사
 -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 대상

1634

2. 1993.8.20.~9.10. 각국 공관은 아래 사항에 대한 주재국의 제도와 사례를 외무부에 보고함.

- 형식 승인 문제, 세관 이용 수수료, 통관 문제
- 방송광고 및 간행물 관련 내용, 유해 화학물질 통제 관행
- 광고시간 판매 배분 문제, 항만유지 수수료, 포괄수집허가제, 세관 사후검사제도 등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1차. Washington D.C., 1993.9.7.-8. 전5권 (V.5 회의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2 / 2 / 1-222

1993.9.7.~8.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DEC(한미경제협력대화)의 외무부 작성 보고서 내용임.

1. 회의 개관

- 회의 개요, DEC 개요, 양측 대표단 명단, 수석대표 방미 일정

2. 기본전략

- 1차 회의 성격, 기본 대응방향, 세부 대응전략

3. 개회사

4. 규제완화 분야

- 미국 측 제기 사항
- 한국 측 제기 사항

5. 경제협력 분야

- 한국 측 제기 의제
- 미국 측 제기 의제

1635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처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2차. 서울, 1993.10.20.-21.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2 / 3 / 1-233

1993.10.20.~21.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DEC(한미경제협력대화)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미국 측: Daniel Tarullo 경제차관보

2. 주요 협의내용

- 양국 간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규제 완화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협의

3. 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

- 경제규제 완화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행정 및 규정 제정 절차: 미국 측은 불투명, 불합리한 행정 절차 및 규제조치가 투자확대의 걸림돌임을 지적, 행정 절차 전반에 관한 기본법 제정 문제 협의 요청
 - 미국의 보복적 무역조치: 한국 측은 반덤핑 조사, 미 통상법 301조 조사, 해운 분야 보복조치 절차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
 - 조세: 미국 측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관련 분쟁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해 양국 간 세부약정 체결 제의
- 양국 간 경제협력
 - 한국 측은 현재 양국 간 협회가 진행 중인 산업협력 및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또한 미국 내 한국기업체 직원들에 대한 미국 사회보장세 납세의무 면제, 상대국 제품 수입 시 각종 검사 면제 등을 위한 협의 요청

4. 향후 협의 진행방안

- 투자문제는 중요성을 감안, 전체회의에서 계속 협의
- 조세, 행정 절차에 대해 관계부처 간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경쟁정책 관련 실무 작업반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함.
- 금융규제 완화, 통관, 각종 검사결과 상호인정, 해운관련 조사, 과기협력 등은 양국 간 기존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DEC에 보고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2차. 서울, 1993.10.20.-21. 전3권 (V.2 관계부처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2 / 4 / 1-216

1. 제2차 DEC(한미경제협력대화)(1993.10.20.~21., 서울) 경제규제 완화 관련 미국 측의 사전 질의서(1993.9.23.)

-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 절차, 분야별 개방, 국산화, 토지취득, 노동, 유통
- 규제완화(전반): 규제완화 일반, 금융규제완화, 로열티, 기술, 식품 및 농업
- 규제완화(통관)
- 규제완화(과세): 부과된 세금의 징수 연기, 행정적·사법적 구제 중지, Permanent Establishment 인정기준, 대법원 판결 준수, 기술이전, 초과유보소득세, 사전가격협정, 이전가격 과세, 부가가치세
- 규제완화(공정거래정책): 경품제공 제한, 담합인정, 반독점법으로부터의 예외, 기술계약, 할인판매 제한, 이중가격표시 요건

2. 미국 측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외무부 앞 관련 공문 수록

1637

대한민국 외교부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2차. 서울, 1993.10.20.-21. 전3권 (V.3 회의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2 / 5 / 1-201

1993.10.20.~21.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DEC(한미경제협력대화) 관련 외무부 작성 자료임.

1. 회의 개관: 회의 개요, 양측 대표단 명단
2. 의제 및 일정: 협의 진행안, 회의 의제, 회의 일정
3. 개회사, 폐회사

4. 의제별 자료

(경제규제완화)

- 투자
- 행정 절차 및 규제 제정
- 과세
- 경쟁정책
-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조사 및 제재조치
- 관련 협의체 처리사항
 - 수입통관 문제 및 세관이용 수수료
 - 금융규제완화

(경제협력)

- 산업협력
- 과학기술협력
- 사회보장제 상호면제협정 체결
- 노동문제
- 은행감독
- 검사결과 상호 인정
- 미국 건설공사 입찰 시 이행보증채권 요건
- 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회의종료)

- 향후 협의 진행방안(관계부처 간 협의체 구성)

한·호주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1993.12.1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02 / 6 / 1-170

1993.12.17. 체결된 한·호주 경제공동위원회 약정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3.5.7. 주호주대사, 경제공동위 설치 건의
- 1993.5.18. 주호주대사관, 호주 수상실로부터 동 건에 관한 긍정적 반응을 얻음.
- 1993.6.1. 제2차관보, Grible 주한 호주대사와 추진 여부 협의
- 1993.6.2. 관계부처 의견 문의
 - 재무부, 농수산부, 체신부, 건설부, 과기처: 이의 없음
 - 상공자원부: 설치 불요 의견통보
- 1993.6.9. 제2차관보, 주한 호주대사 면담 시 한국 측 입장 재통보
- 1993.6.14. 호주 측, 주한 호주대사를 통해 경제공동위 설치 추진에 동의

2. 한·호주 간 경제공동위 설치 검토(1993.5.29.)

- 설치 시 장단점
 - 협의 범위 다변화 및 참여부처 확대를 통한 협상력 강화
 - 기존 협의체들과 기능 일부 중복(통상장관회담, 정책협의회, 자원협력위, 산업기술협력위 등)
 - APEC(아태경제협력체)를 통한 제분야 협력 확대에 유리
- Keating 수상 방한 시 설치 추진에 관한 원칙만 합의하고 설치 방법, 기능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합의 추진

3. Keating 호주 수상 방한(1993.6.20.~23.)

- 주요 일정
 - 정상회담,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 총리 예방, 상공자원부장관과 오찬
 - 판문점 시찰, 포항제철 방문, 불국사, 석굴암 관람
- 정상회담 시 협의사항
 - APEC(아태경제협력체) 활성화: 정상회담 개최 추진을 위해 공동노력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 및 사찰 수용을 위한 공동노력
 - 양국 간 개혁정책 평가
 -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증진
 - 경제공동위 설립 합의



- 방한 결과 및 의의
 - 아태지역 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 북한 핵 문제 해결 필요성 강조
 -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 한국의 개혁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4. 경제공동위 설치에 관한 약정 체결

1640

- 한국 측 초안 송부(1993.8.31.), 호주 측 대안 접수(10.13.)
- 1993.12.17. 이창범 주호주대사와 Ric Smith 호주 외무무역부 차관 대리 간 서명(외무부고시 제233호)
 - 모 협정: 한·호주 무역 및 경제관계 발전에 관한 협정(1975.6.17.)

한·중국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북경, 1992.12.16.-18.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통상1과

MF번호 2023-102 / 7 / 1-150

1992.12.16.~18.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국 경제공동위원회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
- 중국 측
 - Tian Runzhi 대외경제무역부 부장조리

2. 정부 훈령

- 노태우 대통령의 중국 공식방문(1992.9.27.~30.) 후속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경제 교류협력이 가일층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주력
- 경제공동위가 중요한 양국 간 경제 분야 대화창구로서 중국 측 관련 인사와 폭넓은 교류 기반을 통하여 양국 간 경제교류가 중장기적으로 긴밀해지도록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
 - 중국의 제8차 5개년 계획(1991~95년)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업체의 참여 관련 중국 측 지원 요청

1641

대한민국 외교부서 영사관

한·중국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북경, 1992.12.16.-18. 전2권 (V.2 결과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통상1과

MF번호 2023-102 / 8 / 1-355

1992.12.16.~18.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국 경제공동위원회 관련 내용임.

1. 회의 결과

- 교역 및 투자 증진
 - 한국 측: 중국 측에 한국 상품 수출 관련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요청
 - 중국 측: 한국의 대중국 수입제한조치(조정관세, 반덤핑관세 부과) 완화 요청, 대중국 투자에 있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 기대
- 중국의 제8차 5개년 계획 관련 국제입찰 시 한국기업에 대한 중국 측 배려 요청
- 건설, 어업 분야에서 중국 인력을 활용한 제3국 공동진출 확대에 합의
- 환경협력
 - 한국 측은 양국 간 환경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주관 동북아 환경회의(1993.2월, 서울)에 중국의 참여 요청
- 중국 측은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관련 한국 측의 지지에 사의 표명
- 중국 측은 중국인의 한국 입국 및 세관 통과 관련 절차 및 검사 개선 요망

2. 대중국 경제 진출 전략 관계부처 회의(1993.1.19.)

- 참가자
 - 노재원 주중국대사,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 주재
 - 청와대, 외무부, 안기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법무부, 상공부 등 13개 부처 국장급
- 기본방향 설정
 -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를 이용하여 양국 간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제·통상교류 확대 추진
 - 급속히 확대되는 협력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기반 조성(항공협정 조기 체결,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등)
 - 민간주도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는 측면 지원하는데 주력(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정부 조정 등)
- 세부대책
 -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절도 있는 무역정책 시행, 한국 전용공단 설치 추진 등
 - 중소기업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원조성 협력은 최대한 억제
 - 중국의 제8차 5개년 계획(중국 측 19개 사업 요청) 세부내용 파악 후 적극 참여 추진
 - 특정 사증발급 권한을 주중국대사관으로 이관 검토 및 복수방문 허가 부여 등 전향적 검토
 - 항공협정, 해운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조기 체결
 - 베이징 Korea Center 설치 등

한·중국 경제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93.10.4.-5.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2 / 9 / 1-238

1993.10.4.~5.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국 경제공동위원회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중국 측: Liu Xiangdong 대외경제무역부 부장조리

2. 회의 결과

- 다자협약체에서의 협력
 - 양측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APEC(아태경제협력체), 두만강개발계획 등 협력 강화에 합의
 - 한국 측은 APEC 시애틀 정상회담 시 한·중국 정상회담 성사를 기대
- 무역
 - 중국 측은 양국 간 무역역조 시정 요구(중국 상품 수입 확대, 대중국 조정관세 및 반덤핑관세 철폐 등)
 - 한국 측은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각종 비관세장벽 제거, 대중국 수출대금 미수금 조속 해결 및 농산물의 소나기식 수출 자제 등 요청
- 투자
 - 중국 측은 향후 한국 기술·자본집약 업종의 대규모 투자진출 희망
 - 한국 측은 승용차 합작투자 신규 진출, TDX 교환기 진출 확대를 위한 중국 정부의 협조 요청
- 한국 측은 공용여권을 소지한 경제교류 목적의 중국인 입국자에 대해 간이 세관검사 실시 등 약속
- 양측은 건설, 과학기술협력, 무상기술협력, 자원개발 및 황해 공동해양조사 등 협력 확대에도 합의

1643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

한·중국 경제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93.10.4.-5.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2 / 10 / 1-389

- 제2차 한·중국 경제·무역·기술협력 공동위원회
 - 개최시기 및 장소: 1993.8.20.~21., 서울
 - 의제 관련 자료 제출 및 위원회 회의 참석 대표단 명단 송부: 외무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수산청, 교통부, 과학기술처, 상공자원부,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법무부, 체신부, 노동부, 재무부

한·가봉 혼성위원회 개최계획

생산연도 1985-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02 / 11 / 1-59

1985~93년 중 한·가봉 간의 혼성위원회 개최계획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외무부는 1985.2.4. 한국 총선, 대통령 방미, 기타 제반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한·가봉 간 혼성위를 4/4분기 또는 익년 1/4분기 중에 개최하도록 가봉 측에 설명할 것을 주가봉대사관에 지시
- 주가봉대사는 1993.1.27. Diop 주재국 외무부 아태국장 면담 시 1992.8월 봉고 가봉 외무장관 공식 방한 시 합의한 제3차 한·가봉 혼성위 개최 시기 문제 관련, 봉고 장관에게 보고 후 한국 측과 협의 예정이나 주재국 측은 1993.6월 또는 7월 상순경 서울 개최를 제의하고자 한다고 보고함.
- 주가봉대사는 주재국 외무부가 5.17.자 공한으로 금년 7월 중 서울에서 혼성위 개최를 정식 제의하여 왔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5.21. 한국 측이 혼성위를 1993.7.7.~8. 개최하는 방안을 수락한다고 가봉 측에 전달 지시

2. 가봉 측 체재비 문제

- 주가봉대사는 1993.6.18. 주재국 측이 혼성위 개최를 1993.7.14.~15. 양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제의하였다고 보고함.
- 주가봉대사는 6.23. 한국 측이 가봉 측 체재비를 부담할 수 없다면 가봉 측이 혼성위 개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6.23. 동건 관련 가봉 측 요청을 재검토하였으나, 예산사정으로 한국 측 체재비 부담이 어려운 입장을 가봉 측에 최종 통보하고, 이에 가봉 측 입장을 보고하라고 주가봉대사에게 지시함.
- 주가봉대사는 7.19. 주재국 외무부로부터 한·가봉 혼성위 연기에 관한 7.14.자 공한을 접수하였다고 보고함.

한·일본 원조정책협의회, 제1차. 서울, 1993.5.4.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2 / 12 / 1-133

1993.5.4.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본 원조정책협의회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제6차 한·일 과거협력위(1993.2월, 도쿄) 계기 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장은 한·일본 간 대개도국 경제협력에 관한 국장급 연례협의회 개최를 제의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조원일 국제경제국장
- 일본 측: 가와카미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3. 주요 의제

- 양국 원조정책의 최근 동향(원조실시체계, 현황 및 정책 포함)
- 향후의 원조정책 방향, 대개도국 원조 관련 한·일 협력방안
- 상호 관심지역 및 국가(중국, 베트남)에 대한 원조 문제 토의

4. 주요 결과(한·일본 간 원조 협력방안 협의)

- 한국 측 제의
 - UNDP(유엔개발계획) 주관의 동북아 환경회의 관련 협력, KOICA-JICA 간 인적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실시
 - 한국기업 대상 일본 ODA(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일본 측 반응
 - 한국 측이 구체적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협력의사 표명
 - 여타 원조공여국과의 협력 현황 소개

5. 일본의 ODA 정책 동향 파악

- 일본의 제3국과 ODA 공동 실시
- 일본의 제5차 ODA 중기 목표
- 일본의 환경 분야 ODA 내용
- 일본의 대외원조정책(가와카미 외무성 경제협력국장의 외교포럼지 기고문)

한·일본 원조정책협의회, 제1차. 서울, 1993.5.4.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2 / 13 / 1-116

1993.5.4.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 원조정책협의회 관련 자료임.

- 대개도국 협력에 관한 한·일 협의회(외무부 통상국)
- 대개도국 협력에 관한 한·일 협의회(주일본대사관)
- 대개도국 협력에 관한 한·일 협의회(한국국제협력단)
- 제1차 한·일 원조정책협의회 회의자료(1993.5월, 외무부 경제협력2과)
- 카와카미 일본 외무성 국제경제국장 접견자료(1993.5월, 외무부 경제협력2과)

한·멕시코 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92.10.29.-3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3 / 1 / 1-262

1992.10.29.~30.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멕시코 공동위원회를 위한 사전 준비, 회의 결과, 후속조치 관련 문서임.

1. 사전준비 체크리스트

- 회의 기간(멕시코 측 대표단 방한 기간), 회의 일자
- 대표단 구성(대표단 규모, 수석대표, 정부대표 임명),
- 회의 일정과 회의 진행, 면담 인사(멕시코 측 희망 시), 시찰·방문 요청(멕시코 측 요청 시)
- 의제 및 의제별 Lead 측 결정
- 의제별 한국 입장 수립(대책회의, 의제별 발언 분담)
- 의제별 회의자료 준비
- 보도자료(기자간담회: 사전, 사후)
- 회의 진행(개회사, 폐회사, 오·만찬사, Agreed Minutes)
- 연회(오·만찬, 일시, 장소, 참석범위)
- 행정사항(선물, 회의실 예약, 음료수, 차량)
- 예산
- 후속조치(회의결과 보고, 합의사항 후속조치)

2. 제2차 한·멕시코 공동위원회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노창희 외무부차관
 - 멕시코 측: Javier Barros 외무부차관
- 주요 의제
 - 경제, 통상, 과학기술, 문화, 영사 각 분야 협력 방안 협의
- 토의 내용
 - 양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비추어 무한한 협력 잠재력을 가짐.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투자협력 증진을 포함한 공동 이익 증진
 - 역외 국가의 불리한 입장을 보완하기 위해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촉구
 - 멕시코 측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감안하여 멕시코 측 원유, 에틸렌, 육류, 과실류 수입 확대 희망
 - 한국 측은 한국산에 대한 멕시코 측의 반덤핑 제소에 관해 공정 조사 요망
 - 한국의 IDB(공업개발이사국) 가입에 대한 호의적 검토 확인
 - 멕시코 측은 원유도입 확대 요망



- 한국 측의 어업협정 체결 희망에 대해 합작에 의한 어업분야 투자 가능하다는 입장
- 멕시코 측은 양국 간 직항개설을 희망한데 대해, 한국 측은 미국 경유 중남미 이원권과 연계 희망
- 서울·멕시코시티 간 자매결연 추진 합의
- 한국 측은 한국인 단기방문자에 대한 멕시코 측의 입국허가서 요구, 비자 발급 소요기간 단축 희망

한·멕시코 공동위원회, 제2차. 서울, 1992.10.29.-30. 전2권 (V.2 의제 및 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3 / 2 / 1-407

1992.10.29.~30.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멕시코 공동위원회 관련 외무부, 관계부처, 멕시코 정부로부터 받은 의제별 자료가 수록됨.

1. 외무부 통상국 작성 자료(1992.10월)

2. 관계부처 자료

-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동력자원부, 교통부, 보건사회부, 수산청 등으로부터 접수한 관계부처의 희망, 예상 의제 및 관련 입장에 관한 자료

3. 멕시코 측 자료(스페인어)

- 멕시코가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채소, 과일에 관한 멕시코 내 생산지역, 질병 등 관련 자료

한·러시아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03 / 3 / 1-257

1990~93년 중 한·러시아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동향임.

1. 추진 배경

- 1990.9월 한·러시아(구 소련) 수교 이후 분야별 협력을 포괄하는 단일화된 협의 창구 필요
- 외무부는 러시아와 공동위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 사례 검토
 - 수석대표 및 공동위 구성, 근거 법령 마련 등 검토
- 제2차 한·러시아 정부대표 회담(1991.1월, 서울) 시 기본사항 합의
 - 한·러시아 경제 및 과기협력 공동위원회 설치를 위한 합의서 서명
 -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공동위 구성, 세부사항 협의 실무회담 조속 개최 추진

2. 진전사항

- 1991.8월 이후 러시아 내 정세변화 등으로 양국 간 경제공동위 발족 협의 중단
- 1992.3월 Kozyrev 러시아 외무장관 방한 시 양국 간 경제공동위 발족 재추진에 합의
- 1992.9월 한·러시아 경제공동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문안에 합의
- 1992.11월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방한 시 양국 부총리 간 경제공동위 설치 규정에 서명
- 1993년 한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연내 제1차 경제공동위 개최 추진

3. 한·러시아 경제공동위 구성과 운영

- 구성
 - 위원장: 양국 부총리
 - 위원: 관계부처 장·차관
- 기능
 -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협의
 - 국제경제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
- 운영
 - 매년 1회 이상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한·수단 공동위 후속조치: 무역의정서 체결 교섭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중동2과/통상1과

MF번호 2023-103 / 4 / 1-87

제1차 한·수단 공동위(1991.8.26.~27., 서울) 후속조치로 양국 간 무역의정서 체결을 위한 문안 교섭 내용임.

1. 교섭 경위

- 제1차 공동위(1991.8.26.~27., 서울)
 - 수단 측, 무역의정서 체결 제의
- 1991.10월 외무부, 양국 초안을 첨부하여 검토 요청
- 1992.8월 수단 측, 한국 측 수정 문안에 동의

2. 주요 내용

- 양측 당사국은 부속표 A 및 B에 열거된 상품 무역의 1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조치 이행
 - 부속표 A: 면화, 아랍검, 원피류, 참깨, 멜론씨, 철 및 동 스크랩, 약재 씨앗 및 식물류, 향료, 과자류 및 식품류, 크롬 등
 - 부속표 B: 직물류, 타이어 및 튜브류, 철제 부품, 전기 제품, 목재류, 화학제품, 도로건설 장비 및 자재류, 제품류 등
- 상대 체약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수량제한 적용, 허가증 부여 및 수입 결제에 필요한 외환의 배정과 관련 무차별대우
- 상대국 영토 내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향하는 물품 또는 제3국에서 생산되어 상대국 영토로 향하는 물품에 대해 원활한 통과 적용
- 각 체약국 법인 및 자연인에 대해 상대국 법원 및 행정기관에서 내국민대우 보장 등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12차. 서울, 1993.10.7.-8.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03 / 5 / 1-216

1993.10.7.~8.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영국 경제협의회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차관보
- 영국 측: John Meadway 상공부차관보

2. 협의 내용

- 세계 무역 동향(UR(우루과이라운드), 지역경제협력, 국제금융 동향), 양국 경제 현황 관련 의견 교환
-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현황 검토 및 양측의 관심 품목, 자본,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 문제 논의
- 관계부처 간 한·영국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 과학기술 협력방안 협의

165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간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Hanoi, 1993.9.20.-21.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3-103 / 6 / 1-271

1993.9.20.~21.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한·베트남 외무장관회담(1992.12.22., 하노이)에서 동 회의 개최에 합의
 - 수석대표: 양국 외무차관 또는 차관보급
 - 제1차 회의를 베트남 외무장관 방한 시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 검토
- 한·베트남 외무장관회담(1993.2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1993.9.20.~21. 하노이 개최에 합의

1654

2. 수석대표

- 한국 측
 -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베트남 측
 - Vu Khoah 외무차관

3. 주요 결과

- 양국 수교(1992.12월) 이래 베트남 총리 방한(1993.5월) 및 외무장관 방한(1993.2월) 관련 경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최초의 실무 점검 회의로서 구체적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
- 한국 측은 투자환경 개선, 원유탐사 사업 참여, 건설 및 통신 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베트남 측의 협조 요청 등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
- 베트남 측은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한국의 협조와 양국 간 중장기적 경제협력을 위한 다방면의 인력 협력에 지대한 관심 표명
- 양측은 수은 용자제도, 개발조사 사업 등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Hanoi, 1993.9.20.-21. 전2권 (V.2 의제 및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3-103 / 7 / 1-310

1. 제1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 취합

- 외무부는 1993.2.8. 한·베트남 외무장관회담(1993.2.2., 서울) 시 제1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를 하노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등 10개 부처에 의제별 회의자료 제출을 요청함.
 - 공동위가 당초 1993.4월 중 추진되다가 9월로 연기되면서 해당 부처는 회의자료를 8월 중 업데이트하여 제출

2. 주요 부처 자료 개요

- 외무부(통상국)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베트남의 무역제도 국제화·투명성 제고 등
- 경제기획원
 - 한·베트남 경제협력 강화방안
- 재무부
 - 베트남 측 요청사항(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추가지원, EXIM(자금 융자조건 완화,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등) 검토
- 상공자원부
 - 한·베트남 자원협력위원회 설립 추진
- 문화체육부
 -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 체육·청소년 분야 교류 등

1655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간함

한·아세안 민간 경제협력위원회(AKBC)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03 / 8 / 1-58

1992~93년 중 개최된 AKBC(한·아세안 민간경제협력위원회) 관련 내용임.

1. AKBC 공동집행위원회(1992.7.1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한국 측은 한국 정부의 대아세안특별협력기금 공여 건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 동 기금의 일부를 AKBC(민간 부문)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간 협의체인 공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강조, 동 회의에 민간 대표도 참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 민간 부문에서 특별협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계획서와 함께 한·아세안 양국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
- 양측은 1993.3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차기 한·아세안공동위가 대정부 접촉의 좋은 기회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기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기로 합의
- 아세안-CCI(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표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기금사용계획과 관련한 결의안을 작성하여 아세안-CCI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2. 주말레이시아대사관 관계자는 1993.2.8. AKBC 관련하여 Sani 아세안 부국장과 아래와 같이 협의함.

- AKBC가 요청한 Deep Sea Fishing 사업의 요청 예산이 150만 달러에 달하는 점을 감안, 우선 아세안상임위는 아세안사무국으로 하여금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민간 분야 주도 사업 및 사용가능 액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 측과 협의하기로 함.

한·중국 민간경제협의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1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03 / 9 / 1-189

1. 한·중국 민간경제협의회 발족(1992.9월)

- 한·중 간 경제협력의 양적 확대 및 다양화 추세에 맞추어 개설
 -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
 - 한·중 민간경제교류 확대, 업계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경제·무역교류 정보수집 및 전파에 주력
- 대통령 방중 기간 중 각각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상회(CCPIT)가 주도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 간 협력약정서 체결 및 제1차 합동회의 개최
- 1993.12월 동 경제협의회 베이징사무소 개소

2.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1993년도 주요 사업 계획

- 제2차 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1993.9월, 서울) 개최
- 경제사절단 파견 및 접수
 - 파견: 대중국 경제사절단(4월, 25명 내외) 파견, 한국 통상·투자 세미나 개최(11월, 중국)
 - 접수: 중국 통상사절단, 투자사절단 방한(6월 중 15명 내외), 중국 통상·투자 세미나 개최(5월, 한국), 중국 상품전시회 개최(5월 중, 중국기업 300여 개 참석), 대전 엑스포(9월, 50명 내외)
- 중국 지역별 진출 상사협의회 확대 구성
- 주요 업종별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중국 경제자료실 운영 및 월간 중국 경험 소식 발간 등

1657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홍콩 기업인 원탁회의. Hong Kong, 1993.12.1.-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03 / 10 / 1-124

1993.12.1.~3. 홍콩에서 개최된 한·홍콩 기업인 원탁회의(Business Round Table)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한국 상품의 대중국 수출확대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
 - 수출시장으로서 위상이 점증하고 있는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되는 문제에 대비
 -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화남 경제권과의 협력 강화
- 진출 한국기업과 홍콩의 수출거래선 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대두

2. 기본 구상

- 협의체 구성
 - 주관기관: 한국 무역협회 및 홍콩 TDC(무역발전국)
 - 회원 자격은 개방
 - 매년 홍콩과 서울에서 총회 개최
- 기능
 - 민간차원의 한·홍콩 교역 촉진
 - 양측 경제계 인사 간의 친선 도모
 - 중국 화남권 진출을 위한 중심적 협의체로서 역할
- 추진사업
 - 한·홍콩 민간교류 확대
 -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
 -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 경험 및 교역 관련 정보 수집

3. 진전사항

- 1993.12.2. 창립총회 홍콩 개최
 - 차기 회의는 1994년 가을, 서울 개최 결정

한·일본 민간합동 경제위원회, 제25회. 경주, 1993.4.15.-1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03 / 11 / 1-76

1993.4.15.~17. 경주에서 개최된 제25회 한·일본 민간합동경제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박용학 한·일 경제협회장, 하구라 노부야 일·한 경제협회장 등 양국 재계인사 280여 명

2. 주요 결과

-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대일본 부품 중간재 수입의 편중이 지적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 중소기업의 육성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
- 세부 방안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기술 이전 강화, 한·일본 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한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인식 공유
- 최근 일본의 대한국 투자가 냉각되고 있는 점에 대해 양측이 우려를 표하였으며, 한국 측의 투자 유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됨.
- 1993년 하반기 한국 측은 일본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일본 측도 제반 협력을 제공하기로 약속
- 회의 종료 후 공동성명과 별도 합의사항이 발표됨.

3. 한·일 민간 경제합동위 일본 측 인사(17명), 김영삼 대통령 예방(1993.4.14.) 시 대통령 언급내용

- 신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확고한 정통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 일본을 축으로 하는 외교를 할 것임.
- 한·일본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할 것임.
 - 정신대(위안부) 등의 배상금은 불필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임. 일본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함.
- 대일본 무역역조의 시급한 시정 및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확대 희망, 최근 몇 년간 양국관계의 부진과 양국 정부와 기업인들의 교류 협력 노력 기대 등 표명

1659

대한민국외교부자료

한·미국 재계 회의, 제6차. Washington D.C., 1993.6.13.-15.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03 / 12 / 1-121

1993.6.13.~15.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6차 한·미국 재계 회의 관련 내용임.

1. 회의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 합동회의(1993.1.17.~19., 하와이)

- 분과위원회별 의제 합의
- 한·미 영업환경 개선 협의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간 통상·투자협력 증진에 긴요하다는데 의견 일치

1660

2. 대표단

- 한국 측: 박운서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 구평희 위원장, 정세영, 김각중, 조석래 회장 등 57명
- 미국 측: Von Clemm 위원장, Junki NS 회장, Usher 사장 등 72명

3. 주요 토의내용

- 미국 측
 -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요청
 - UR(우루과이라운드) 및 APEC(아태경제협력체)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 IPR(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법 집행과 국민 계몽교육 강화
 - 금융 및 농산물시장 개방 등 요청
- 한국 측
 - 한국 정부의 시장개방정책 노력 설명
 - 한·미 간 경제관계가 미래지향적 산업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일본 경제인 포럼.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04 / 1 / 1-435

1993.1~6월 중 한·일본 경제인 포럼 관련 내용임.

1. 제3회 한·일본 경제인 포럼 전문위원회 회의(1993.3.29.~30., 일본무역진흥기구)

- 의제: 무역의 확대균형, 산업협력, 기술협력
- 주요 토의내용
 - 일본 측: 한국의 문제는 국제수지 균형이 아니고 경쟁력 회복이며, 대일본 의존적 산업 및 기술구조가 원인
 - 한국 측: 무역불균형이 양국 우호관계에 악영향,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 비관세장벽 개선 필요

2. 제2회 한·일본 경제인 포럼 본위원회 회의(1993.4.14., 롯데호텔)

- 제2회 한·일 경제인 포럼 개최계획(안)

3. 제4회 한·일본 경제인 포럼 전문위원회 회의(1993.6.4.~5., 서울 전경련회관)

- 사전 대책회의(1993.5.27.)
 - 무역협회, 전경련, 삼성경제연구소 등 9명 참석
- 양측 입장
 - 한국 측: 한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한 대일본 시장 확대, 경쟁력 제고방안에 논의 집중
 - 일본 측: 관세인하 문제를 다국간 문제로 인식, 기술협력 및 경쟁력 제고 문제에 대한 제언

1661

대한민국 무역발전 기여도

한·일본 경제인 포럼.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04 / 2 / 1-92

1993.7~12월 중 한·일본 간 경제인 포럼 관련 내용임.

1. 한·일본 간 경제인 포럼 보고서 작성 방향에 관한 검토(1993.7월)

- 일본 측: 한·일본 무역불균형은 양국의 산업구조상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연말 보고서에 무역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 관해 기술하는데 집중한다는 입장
- 한국 측: 원인분석보다는 대책위주로 포럼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1662

2. 한·일본 간 경제인 포럼 국내 사전회의(1993.7.15.)

- 목적: 한·일본 경제인 포럼 기초위원회(1993.7.29.~30.) 대비 한국 측 입장 사전 정리
 - 기초위원회는 보고서 구성 및 기본내용을 작성할 계획
- 참가자: 한국무역협회, 한일경제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연구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상공부, 외무부 등 한국 측 포럼 전문위원, 옵서버
- 첨부자료
 - 기초위원회에 제출할 한국 측 보고서(안)
 - 일·한 경제인 포럼 보고서(일본 측 소안)

3. 제4차 한·일본 간 경제인 포럼 전문위원회 회의(1993.6.4.~5., 한국무역협회)

4. 제5회 한·일본 간 경제인 포럼 전문위원회 회의(1993.9.15.~18., 일본 경단련회관)

엘살바도르 경제·통상사절단 방한, 1993.10.28.-3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04 / 3 / 1-94

엘살바도르 경제통상사절단의 1993.10.28.~31. 방한 관련 내용임.

1. 사절단 구성

- Mirna Lievano De Marques 엘살바도르 경제기획성 장관 등 20명

2. 주요 일정

-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 수출입은행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면담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오찬 겸 업체 대표 간담회
- 구자두 주한 명예영사 주최 만찬

3. 방한 결과

- 엘살바도르 측은 저임금,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혜택, 미국으로의 우회수출 가능 등 투자지로서 엘살바도르의 유리한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의 투자 증대 요망
 - 한국 측은 양국 간 통상사절단 교환 확대 희망
- 엘살바도르 경제정책 설명 및 수출입은행 측의 대엘살바도르 투자(특히 교통, 통신 분야) 확대 요청
 - 한국기업들의 대엘살바도르 투자진출 장려 언급 및 CABEI(중미통합은행)에 제공된 수출입은행의 전대차관 이용 확대 희망

1663

대한민국 무역발전 기여도

자메이카 투자유치단 방한, 1993.3.7.-1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04 / 4 / 1-80

자메이카 투자유치단의 1993.3.7.~13. 방한 관련 내용임.

1. 투자유치단 구성

- Pringle Frank 자메이카 상원의원(단장), D. Heaven 주한 자메이카대사(도쿄 상주) 외 공무원, 기업인 등 15명
- 당초 Coor 자메이카 외무부장관이 유치단장으로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자메이카 측 사정으로 변경

1664

2. 주요 일정

- 코트라와 공동으로 자메이카 투자세미나 개최, 개별 기업 면담, KOEX 견학
-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대전 엑스포 조직위 방문,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3. 방문 결과

- 자메이카 측은 투자유치 세미나에서 경제자유화조치, 자유공단 운영, 외국인 투자 및 관광유치를 위한 제도를 설명함.
 - 자메이카 진출 영원무역 대표는 자메이카 투자조건이 양호함을 설명하고, 자메이카 내 활동상의 애로사항을 제기함(한국기업인 약 40명 참석).
- 자메이카 측은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 및 성과에 관심을 보이고 자메이카의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요청함.
- 한국 측은 비자 면제, 투자보장협정의 조기 체결을 촉구함.

튀니지 투자사절단 방한, 1993.3.28.-4.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23-104 / 5 / 1-78

튀니지 투자사절단의 1993.3.28.~4.2.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문단(단장)

- Hannachi 국제협력·외국투자부 차관

2. 주요 일정

- 전자공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방문(3.29.)
- 과기처장관 면담, 투자세미나 개최(3.30.)
- 대덕연구단지 시찰, 표준연구소, 선박공학연구소 및 KAIST 방문, 상공부차관 면담(3.31.)
- 울산 현대중공업 및 현대자동차 시찰(4.1.)
- 반월 염색사업협동조합, KOICA 방문, 외무부차관 및 현대그룹 회장 면담(4.2.)

3. 외무부차관 면담 시 Hannachi 차관 언급 요지

- 금번 방한은 자신이 튀니지 공업진흥청장 재직 시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서울에서 투자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성사됨.
 - 투자세미나는 자신과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발표에 이어 매우 진지한 분위기로 성공적이었음.
- 한·튀니지 간 관계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비자면제협정, 문화협정, 통상·경제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에서 기인됨.
 - 튀니지에는 삼성전자, 금성사 및 2개 플라스틱 제조사가 진출해 있는데, 더 많은 한국기업 유치를 희망하며 KAL기의 튀니지 제르바섬 취항에 이어 한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 한국기업의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이전에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기업의 튀니지 진출을 권장해줄 것을 당부함.
 - 한국이 튀니지 선박건조 및 수리 분야 참가 및 한국의 경험 전수를 희망함.
 - 기술연수생 및 전문가 파견을 담당하고 있는 KOICA가 튀니지 연수생을 적극 접수하도록 협조를 기대함.

1665

대한민국-외국관계사-외교편

미국 경제·통상사절단 방한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통상2과

MF번호 2023-104 / 6 / 1-143

1991~93년 중 정부는 북마리아나연방 투자유치단 및 괌 경제사절단의 방한 활동을 지원하고, 기타 휴스턴 한인경제인협회 등 재외동포 경제 활동을 지원함.

1. 북마리아나연방 투자유치단 방한(1992.4.11.~15.)

- 방문단: L. Guerrero 북마리아나 연방지사 등 26명
- 국무총리 및 상공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면담, 동원수산 등 기업체 시찰,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
- 사이판을 수도로 하는 북마리아나연방은 미국의 정규 주는 아니나 미국의 영토로서 관광, 수산업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강화를 희망한바, 외무부와 주하와트총영사관은 동 투자유치단의 고위 인사 예방 및 면담, 기업체 시찰 등 제반 활동 주선 등 지원

2. 괌 경제사절단 방한(1992.10.13.~18.)

- 방문단: Joseph Ada 괌 주지사 등 14명
- 방문 목적: 한·괌 간 경험 증진
-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 건설부장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및 수산청장 면담, 관광세미나 개최, 지방 시찰
- 외무부는 수산, 해운, 건설 등 분야에서 괌과의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동 사절단의 방한 일정 주선 등 지원

3. 재외동포 경제인 방한

- 휴스턴 주재 한인 경제인협회 소속 재외동포 경제인(약 20명)(1993.2.9.~18.)
 - 방문 목적: 도산매 목적의 상품구매
 - 외무부는 한국 상품의 수출을 위해 동 방문의 최대 성과를 거두도록 일정 주선 등 협조 제공
- 미주 한미식품연합회 회원(150여 명)(1993.10.20.~24.)
 - 방문 목적: 서울 KOEX 개최 국제식품 전시회 참가 계기
 - 동 연합회 대표가 농수산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코트라, 보건사회부 관계자를 면담하도록 주선
- 기타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남미시찰단 30여 명의 브라질 방문과 관련, 외무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현지 한국 지상사 및 동포 상공인들과 간담회 개최 등 지원

중국경제 관계 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1과 / 동북아2과

MF번호 2023-104 / 7 / 1-204

1992~93년 중 중국경제 관계 고위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물자부 부장(1993.2.3.~14.)

- 주요 일정
 - 상공장관회담, 경제기획원 부총리 예방
 - 코트라, 무역협회, 대표기업 종합상사 등 방문
- 상공장관회담 시 거론사항
 - 한국 측: 중국 내 정부조달 참여, 주요 사업 참여 및 교역 확대, 한국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희망
 - 중국 측: 한국의 소비·유통 분야 중국 진출 협조, 한국 내 물자부 산하 사무소 설치 희망
 - 양측은 협력 약속을 규정한 합의의사록 서명

2. 화공부 부부장(1993.2.8.~17.)

- 주요 일정
 - 상공차관회담, 코트라, 무역협회, 과학기술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방문 등
- 상공차관회담 시 거론사항
 - 한국 측: 투자 진출 협조, 화공플랜트 공급 참여 확대, 기술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 등 희망
 - 중국 측: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한국의 참여 희망, 한국기업 중국 진출에 협조
 - 양측은 화공협력위원회 설치 및 정례 개최 검토 약속

1667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관리

후첩(候捷) 중국 건설부장 방한, 1993.4.14.-2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4 / 8 / 1-162

후첩 중국 건설부장의 1992.4.14.~21. 방한 관련 주요 일정임.

● 주요 일정

- 한·중국 건설장관회담
- 해외건설협회장 주최 만찬, 대한건설협회장 주최 오찬, 건설부장관 주최 만찬
- 외무부장관 예방, 상공부차관 예방, 서울시장 예방
-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분당 신도시 방문
- 중국 건축공정총공사 서울 사무소 개소식 및 기념 리셉션 참석
- 포항제철, 현대조선소 시찰
- 경주 관광
- 국토개발연구원장, 주택은행장 방문

Tavar, Teofilo Quico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 방한, 1993.6.7.-11.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04 / 9 / 1-164

Tavar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이 김경태 관세청장의 초청으로 1993.6.7.~11. 한국을 방문함.

1. 방한 경위

- 1992년 재외공관장 회의 시,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 및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김경태 관세청장 명의로 Tavar 관세청장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 도미니카는 한국과 단독 수교국으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이 44개로 중남미에서 두 번째 규모임.
- Tavar 청장은 당초 1992.11월 방한 예정이었으나, 10월 이베로아메리카 관세청장회의 의장으로 피선됨에 따라 방한을 연기함.

2. 주요 일정

- 관세청장 회담 및 관세청장 주최 만찬, 외무부차관 예방
-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시찰, 섬유류 해외투자 협의회와 간담회 및 만찬
- 과천 현대미술관, 용인 민속촌 등 방문

3. 방문 결과

- 도미니카공화국 진출 한국 업체에 대한 지원 확보, 도미니카 관세청·한국대사관·한국업체 간 상설위원회를 설치
- 양국 관세청장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기아자동차 수출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도미니카 관세청에 협조 요청

1669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Jacinto Soares VELOSO 모잠비크 협력장관 방한, 1993.9.13.-1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04 / 10 / 1-122

Veloso 모잠비크 협력장관이 1993.9.13.~17. 한국을 방문함.

1. 경위

- 한·모잠비크 간 수교 직후 양국 간 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함.
 - 한국과 모잠비크는 1993.8.11. 뉴욕에서 유엔주재 양국 대사 간에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함.

2.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면담 및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 국제협력단 총재, 수출입은행장 면담, 상공회의소장 면담 및 투자설명회 개최
- 한국 선명회 방문, (주)대우,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산업 시찰

3. 방한 결과

- 양국 간 수교 이후 실질적 협력증진 방안 협의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경제기술과학문화협정 체결 협의
 - 40만 달러 상당의 기자재 제공, 평화정착과 경제 재건을 위한 기자재 제공
 - 한국 선명회, 국제기아대책기구 등 민간기구의 지원 사업 권장
 - 기술협력 협의(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
- 수교 후속 조치 협의
 - 검임공관을 주잠비아대사관으로 지정하고, 서울에 모잠비크 명예영사관 설치 등

Kracun, Davorin 슬로베니아 부총리 겸 경제담당 장관 방한, 1993.10.9.-1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104 / 11 / 1-53

Davorin Kracun 슬로베니아 부총리 겸 경제담당 장관의 1993.10.9.~12.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93.10월 중 일본, 말레이시아 방문 계기 WTCA(세계무역센터연합) 서울 총회 참석

2. 방문 의의

- 1992.11월 양국 수교 이후 최초의 각료급 방문
- 한·슬로베니아 간 실질 협력증진 기반 구축

3. 수행원

- Genorio 과기처 과학기술담당 국무상, Ravbar 경제담당 차관보 등 4명

4. 주요 일정

- 상공자원부장관 예방
- 코트라 방문, 삼성전자 공장 시찰
- 대전 엑스포 관람

국제금융기관 및 미국의 대베트남 지원 문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104 / 12 / 1-126

1993년 중 국제금융기구의 대베트남 경제지원 검토 동향임.

1. 베트남·IMF(국제통화기금) 관계

- 베트남은 1976년 월남 정부를 승계하여 IMF 정회원의 자격 보유
- IMF는 1981년부터 대베트남 차관공여 중단
 - 1992년 현재 베트남은 대IMF 연체금 약 1억 SDR(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상환이 선결과제
- IMF 차관공여 재개는 사실상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하에 가능

1672

2. IMF 입장 변화

- 1993.7.2.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IMF 차관공여 재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발표
- 7.14. IMF 이사회는 베트남의 연체금이 상환되는 대로 차관공여를 재개하기로 결정
 - 10.5. 베트남은 대IMF 연체금 1억 4천만 달러 상환 완료
- 10.6. IMF는 대베트남 차관공여 재개
 - 구조조정 차관 1,710만 달러, Stand-by 차관 8,540만 달러 등 공여

대러시아 경제협력차관 연체이자 알루미늄 상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04 / 13 / 1-112

1992~93년 중 대러시아 경협차관 연체이자에 대한 알루미늄 상환 관련 내용임.

1. 러시아 측, 대소련 경협 은행차관 이자 상환용 알루미늄 제공

- 1992.5월 1차분 5,400톤(600만 달러 상당) 도착
- 1993.2.16. 2차분 5,689톤(650만 달러 상당) 도착

2. 경위

- 1991.1월 구소련연방에 경협차관 30억 달러 제공 합의
- 1991년도 제공 약속분 18억 달러 중 14억 7천만 달러(은행차관 10억 달러, 소비재차관 4억 7천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나, 구소련연방 해체로 소비재차관 잔여분 3억 3천만 달러 집행 중단
- 1992.11월 열린 러시아 대통령 방한 시 연체이자 상환을 조건으로 소비재차관 잔여분 집행 재개 합의
- 1992.12월 현재 러시아는 소비재차관 연체이자(1,930만 달러)를 현금상환으로 완료하고, 은행차관 연체이자(3,680만 달러)는 알루미늄으로 현물 상환할 것을 약속

3. 러시아가 알루미늄 2차분 인도(1993.2.16.) 이후 추가분(2,430만 달러 상당) 이행에 소극적인 가운데 주러시아대사관이 러시아 측 진의를 파악 중임.

1673

대러시아 경제협력차관 연체이자

대러시아 경제협력차관. 전3권 (V.1 1-6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동구1과

MF번호 2023-104 / 14 / 1-183

1993.1~6월 중 대러시아 경협차관 회의 관련 내용임.

1. 대러시아 경협 재개 등 관계부처 차관보급 회의(1993.2.11.)

- 참석부처: 청와대, 기획원, 외무부, 안기부, 재무부, 상공부, 조달청
- 토의 내용
 - 1991년도 소비재차관 상품 재고분을 단계적으로 집행
 - 연해주공단 건설 관련, 경협차관 미집행액 중 5천만 달러를 연해주공단 발전소 건립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신정부에 인계

1674

2. 대러시아 경협차관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3.3.29.)

- 정상적인 차관 원리금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지원은 불가
- 추후 외무부장관의 방일, 방미 결과와 G7 및 파리클럽 동향 등을 파악하여 대응방안 재논의
- 1991년도 소비재차관 잔여분은 이자 납입 후 재개하되, 러시아 측 정세를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대응

3. 대러시아 경협 관련 관계부처 차관보급 회의(1993.5.4.)

- 개최 경위: 쇼힌 러시아 부총리가 방한 예정으로 대러시아 경협 재개 요청이 예상되어 대책 필요
- 협의 결과: 1991년도 소비재차관 미집행분 3억 3천만 달러 전액 재개, 또는 상기 소비재차관 중 상품 재고분 7천만 달러 재개, 또는 상기 7천만 달러 중 중소기업 재고분 2천만 달러만 재개

4. 양국 간 경협차관 문제 협의(1993.6.29.)

- 한국 측은 소비재차관 이자 연체 관련하여 러시아 측이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됨을 설명
- 러시아 측은 러시아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우선은 파리클럽 개별국과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도 조속히 경제공동위 개최를 희망

대러시아 경제협력차관. 전3권 (V.2 7-8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동구1과

MF번호 2023-104 / 15 / 1-221

1993.7~8월 중 대러시아 경협차관 관련 내용임.

1. 대러시아 경협차관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3.7.1.)

- 안건: 오희초크해 수역 내 연간 입어로 5천만 달러를 러시아 경협차관 원리금 상환과 상계 처리 하는 방안 협의
- 협의 내용: 러시아가 상기 내용을 받아들이기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주러시아대사관이 건의한 현물 상환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2. 대러시아 경협 대책 검토

- 경협차관 30억 달러 집행 전반에 관한 대책으로 1안(대러시아 차관은 14억 7천만 달러에서 종결하고 나머지는 러시아 측과 채무 재조정), 2안(소비재차관 3억 3천만 달러 집행 재개, 기집행차관에 대한 채무 재조정 협의) 제시

3. 대러시아 경협차관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1993.8.20.)

- 참가자: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재무부차관, 상공부차관
- 회의 결과
 - 대러시아 경협 관련 러시아와의 고위실무회의 개최 추진
 - 30억 달러 경협 약속은 현 단계에서 종결하고,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경협방안 모색
 - 기제공 차관에 대해서는 현물상환, 리스캐주얼링 등을 패키지로 타결

4. 소련 러시아 부총리, 김영삼 대통령 예방(1993.8.24.)

-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의사 언급
- 한·러시아 간 차관 상환 문제 관련 러시아 측은 파리클럽 방식의 차관 재조정 또는 방산물자로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한국 측은 실무차원에서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언급

1675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대러시아 경제협력차관. 전3권 (V.3 9-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동구1과

MF번호 2023-104 / 16 / 1-220

1993.9~12월 중 대러시아 경협차관 관련 내용임.

1.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방한(1993.8.31.~9.1.)

- 외무부장관 예방과 외무부차관 면담
 - 한국 측은 30억 달러 차관 제공 문제는 현 상태에서 종결하고,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 표명

1676

2. 대러시아 경협차관 추진계획(대통령 재가)

- 경협차관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양국 간 고위실무회의 개최
- 기존 30억 달러 경협계획은 러시아가 원리금 상환 보장을 않을 경우, 현 단계에서 차관 제공을 동결하고 기제공한 14억 7천만 달러의 원리금 상환을 계속 추진
- 러시아 측이 방산물자로 상환을 제의해 올 경우 종합 검토

3. 대러시아 경협차관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3.9.15.)

- 참가자: 재무부 차관보(주재), 외무부, 경제기획원, 산업자원부, 안기부 등 국·과장급
- 주요 결과
 - 1993.10.25.~28. 서울에서 한·러시아 고위실무회의 개최 제의
 - 주요 의제: 원리금의 현물상환 등 대체상환 문제
 - 채무 재조정 문제는 기본 입장만 교환
 - 경협차관 제공 종결 후의 새로운 대러시아 경협방안 검토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

생산연도 1989-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05 / 1 / 1-379

1989~93년 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에 관한 내용임.

1. 한국피코(주) 분규(1989~92년)

- 경위
 - 1989.3.2. 미국 경영진이 도주하여 임금 등 2억 9천 4백만 원의 체불 발생
 - 1989.3.9. 이후 근로자들이 방미하여 피코 그룹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등 지급 청구 소송 (1,061,600달러) 제기
- 결과
 - 1992.6.8. 뉴욕 연방법원에서 항소심이 개최되고, 판결은 2~3개월 소요 예상
 - 노조 측 변호사는 한국에 설립된 현지법인인 한국피코(주)가 미국 연방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함.

2. 한국미스다 분규(1989~90년)

- 경위
 - 1989.10.14. 일본에 체류하는 회사 대표의 일방적 폐업 및 근로자 해고 통보로, 회사 노조 간부들이 폐업 철회 요구 및 회사와 협상 개시
 - 1990.6.8. 노사 양측은 합의서 서명
- 공판은 스미다 본사의 대표 등을 면담,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을 유도함.

3. 기타 분규

- 한국TC(1989.3월), 아세아스와니(주)(1989.9월) 티엔디(주)(1989.12월), 등 외국인 투자기업 폐업에 따른 노사분규 발생

1677

대한민국외국투자기업노사분규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 차관협약 개정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05 / 2 / 1-148

1992~93년 중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 서울시 지하철 건설 사업의 차관협약 개정 관련 내용임.

1. 협정 개정 대상

- 1990.10.31. 서명된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 차관협정 내용 일부
 - 부속서 1의 일부인 차량 366량을 608량으로 수정
 - 부속서 2의 일부인 기자재 구매 내역 등을 개정하여 미집행 잔액을 집행하도록 함.

2. 개정 협상

- 1992.9월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교섭 추진

3. 일본 측의 입장

- 기체결된 협정상 합의된 액수의 잔액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원칙상 안 되나, 한·일 관계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동의함.
 - 정부 차원에서 잔액 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정부 차원의 협정 개정은 필요하지 않음.

4. 개정 절차

- 최초 협약 절차와 같이 재무부장관과 OECF 서울지사 간 서명으로 개정 가능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인출기한 연장 및 대상사업 협의

생산연도 1988-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05 / 3 / 1-193

1988~93년 중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의 인출기한 연장과 대상사업 협의에 관한 내용임.

1. 인출기한 연장

- 국립보건안전성 연구센터, 기상장비 현대화 사업, 서울시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주암댐 건설 사업 등
 - 외무부의 공한 교환으로 차관 각서를 수정함.

2. OECF 차관 최종 연도 도입

- 1988년도 대상사업
 - 도입액: 6억 9,160만 달러
 - 사업 건 수: 서울시 지하철 건설 등 8건
- 추진 일정
 - 1989.10월 일본 측에 사업 제시
 - 1990.5월 차관협정 서명
- OECF 차관 도입 현황
 - 1982~87년간 35개 사업, 11억 5,760만 달러 도입

3. 제7차 연도 OECF 차관 협의

- 일시 및 장소: 1990.4.23.~25. 일본 OECF 본부
- 협의단
 - 한국 측: 재무부 등 12명
 - 일본 측: OECF 단장 등 4명
- 대상 사업: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 서울대 의료장비 확충사업, 축협 배합사료공장 건설사업 등 7개 사업

1679

대한민국 외교부

대수리남 전대차관 공여

생산연도 1988-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05 / 4 / 1-167

1988~93년 중 대수리남 전대차관 공여 관련 내용임.

1. 대수리남 전대차관 공여 현황

- 1차분(1986.2월 체결) 여신한도 300만 달러 가운데 210만 2천 달러 집행
 - 원리금 상환 연체액: 12만 달러
- 2차분(1990.12월 체결) 여신한도 300만 달러 가운데 184만 1천 달러 집행
 - 원리금 상환 연체액: 2만 달러
- 수리남 정부는 전력설비 구입사업 명목으로 500만 달러 상당의 추가 전대차관 공여 요청
 - 수리남 측, 차관 연체액 상환 및 경제계획안 재조정후 재요청하는 방안 검토 중

2. 이후 동향

- 1993.2월 현재 1, 2차 전대자금 연체액은 총 952,324달러에 달하나, 수리남 측은 보크사이드(외화 수입의 80% 차지) 수출 침체 등으로 대외차관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수리남대사관에 설명
 - 동 전대차관 원리금의 연내 상환이 불가능함을 표명

한·리비아 건설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3-105 / 5 / 1-159

1993년 중 한·리비아 간의 주요 건설협력 동향임.

1. 업체별 시공 계획

- 동아
 - 대수로 제1차 공사: 1993.7월 완료 예정
 - 대수로 제2차 공사: 1993.8월 착수 계획
- 대우
 - 1993년 시공: 트리폴리 5천 세대, 트리폴리 중앙병원, 벵가지 7천 세대, 벵가지 중앙병원 등
 - 1993년 준공 예정: 벵가지 제3도로, 자위야 인터체인지, 베니나 국제공항 보수 등
- 현대
 - 1993년 시공: 라스라누프 폴리에틸렌 공장
 - 1993년 준공 예정: 데르나 항만 2단계, 줄리텐 탈염 공장, 미수라타 발전소

2. 주요 현안문제 및 건의

- 사회보장세 일부 면제 추진
 - 사회보장세에 외국인인 수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8.5%의 연금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의 면제로 업체의 부담 감소 추진 예상
- 자국화 시책 강화에 대응한 대책 필요
 - 리비아노동법 준수 압력 등 자국화 시책 강화
 - 외국기업의 등록 및 비자 발급 지연, 거주비자 발급 거부 등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

1681

대한민국-외국인-여민

Oversea사 에티오피아 진출 문제

생산연도 1987-1993

생 산 과 남동아프리카

MF번호 2023-105 / 6 / 1-140

1987~93년 중 Oversea사의 에티오피아 시장 진출 관련 내용임.

1. 상사 진출

- 1986.10.10. 먼 혼방사 국제 공개입찰 낙찰, 11.30. 동 물품 수출 이행계약 체결
 - 이후 원사 파동으로 수출물량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차원의 선처 요청
- 1987.5.26. 에티오피아 석유공사가 실시한 냉연강판 입찰(858톤, 약 35만 달러) 낙찰
 - 강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철 가격의 변동 및 물품 품귀현상 등으로 동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많아 정부차원의 지원 요청
- 한국산 철강재 계속 공급 요청
 - 포항제철산 4,500톤 냉연강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요청

2. 상사 분쟁

- 1988.4월, 에티오피아 수출입공사는 수출입 활동 중지 및 Oversea사 대표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
 -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당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관련 부서와 접촉하여 인도적 입장에서 관대한 고려 요청
 - 공관 지원으로 1988.7월 출국 정지는 해제되었으나, 동사에 대한 수출활동 금지 조치는 계속됨.
- 1993.10월 Oversea사 대표는 외무부 중동아국장을 방문하여 에티오피아 정부에 지불한 48만 달러 상당 클레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요청

대부룬디 차관공여 사업 추진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5 / 7 / 1-21

1992년 중 대부룬디 차관공여 사업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92.10.27. 주중국 부룬디대사관(베이징 상주)이 10.9. 아래 3개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하면서, 각 사안별 한국의 입장을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 통지함.
 - 중앙아프리카지역 상설안보협의체 구성을 위한 금차 유엔총회의 재정지원 문제 토의 시 한국의 지지 요청: 검토 중
 - 부룬디 경제개발 원조회의(1992.11월, 제네바 개최 예정)에 한국 측 참여 요청: 참여유보 입장
 - 부룬디 뇌염 퇴치를 위한 의료지원 요청: 대부룬디 연례 무상원조 일환으로 추후 지원 검토 중
2. 상기 관련, 동 상설안보협의체는 CEEAC(중앙아프리카지역 경제공동체) 회원국 10개국을 회원국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CEEAC는 유엔의 지원하에 1992.9월 카메룬에서 제1차 안보 협의회를 개최, 차기회의를 1993년 부룬디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바, 외무부는 한국 측 입장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보고하도록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 지시함.
 - 1992.9월 카메룬 회의 의결 사항(주카메룬대사)
 - CEEAC 회원국 및 동 기구 현황 상세
3. 주중국대사관은 1992.10.17. 주중국 부룬디대사관(베이징 상주)이 1천만 달러 상업차관을 요청 하는 공한을 동 대사관 앞으로 발송해왔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결과를 요청함.

1683

대부룬디 차관공여 사업 추진

카자흐스탄 의료 지원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105 / 8 / 1-164

1992~93년 중 카자흐스탄에 대한 인도적 의료 지원 목적으로 민간 차원의 백혈병센터 건립 추진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0.11월 임웅의 서울해성병원 원장은 카자흐스탄 측과 환자 치료와 핵 방사능 관련 질병 연구를 겸할 의료센터 건립에 합의
- 1991.8월 부지와 공사자재는 카자흐스탄 측이 제공하고, 공사비와 의료기기 구입비(약 15억 원)는 카자흐스탄 선교회에서 충당하기로 합의
 - 임 원장은 동 센터를 위한 모금활동을 위해 '카자흐 의료 선교회'를 구성
- 동 센터는 대지 2만 4천 평에 5층짜리 3개 병동으로 건립 예정

2. 정부 차원의 지원 검토

- 1992.11.30.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상기 백혈병 치료센터 건립사업에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
- 1993.1.25. 노태우 대통령은 동 사업이 양국 간 인도주의 협력의 모범사례라며, 가능한 후원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는 선에서 답신
 - 일단 대카자흐스탄 무상원조 차원에서 의료 기자재 및 의약품 지원 추진

3. 외무부 입장

- 건립 모금이 부진하여 추진이 지체되는 가운데 병원장은 동 센터에 국제센터를 추가 건립하여 영리사업을 추진한바, 정부는 영리사업이 포함된 동 사업에 대해 지원 불가 입장을 병원장에게 전달함.

한국의 대아프가니스탄 무상원조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105 / 9 / 1-135

1991~93년 중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상원조 내용임.

1. 무상원조 추진 방향

- 아프가니스탄 정세 안정 이후 수교에 대비하여 물품의 직접 지원 선호
- 유동적인 아프가니스탄 정세로 인해 유엔기구를 통하거나, 현금형식 지원도 병행

2. 1991년도 지원

- 대아프가니스탄 난민 지원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조기 복귀를 지연시키고, 또한 집행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유엔 측의 별도 지원 요청도 접수
- 배정된 25만 달러 중 15만 달러는 파키스탄과 경제협력에 전용하고, 나머지 10만 달러는 UNOCHA(유엔인도지원조정국)를 통해 현금 지원

3. 1992년도 지원

- 주파키스탄대사관은 1992.5.20. 향후 수립될 아프가니스탄 신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능한 국산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
- 아프가니스탄 측과 협의하여 10만 달러 상당의 의료물품(운송비 포함)을 직접 지원하고, 홍수피해 발생에 따라 현금 5만 달러 및 5만 달러 상당 구호품을 추가 지원

4. 1993년도 지원

- 주파키스탄대사가 1993.9.29. UNOCHA 관계자 접촉 시 한국 측의 지원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국산 기자재 원조사업 시행원칙을 서명하고,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관해 협의함.
 - UNOCHA 측은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유엔 차원의 지원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
- 유엔 측 의견을 감안, 11월 지뢰제거작업을 위한 현금 지원 7만 5천 달러 및 7만 5천 달러 상당의 의약품 지원(총 지원액: 15만 달러)

1685

대한민국 외교부 대외협력처

한국의 대몽골 원조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105 / 10 / 1-180

1993년 중 몽골에 대한 원조 내용임.

1. 주몽골대사의 대몽골 원조 요청(1993.1.13.)

- 1993.1월 이래 주몽골대사는 몽골의 식량부족, 발전량 부족, 폭설피해 긴급지원 등 상황과 지원 필요성, 현지 서방 원조공여단 모임 논의 동향 등 보고

2. 대한적십자사의 대몽골 지원

- 1993.4.15. 대한적십자사, 몽골적십자사에 기초 생필품과 의약품 등 지원(42,000달러 상당)
 - 동 지원은 1년 전부터 청소년 적십자 단원의 자발적인 계획하에 진행되어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
-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4.20. 우루진 주한 몽골대사와 면담한바, 동 대사는 최근 폭설로 인한 몽골의 긴급 사태를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함.
 - 동 총재는 대한적십자사의 국제구호비에서 1만 달러 지원 약속

3. 몽골 눈사태에 따른 긴급 원조현황(1993.7.9.)

- 적십자사 긴급원조(42,775달러)
 - 긴급구호금 1만 달러, 선물 3천 개, 구호약품 300개, 구호품(양말 11,480족)
 - 대한적십자사 총재 일행이 1993.6.2. 몽골적십자사 총재에게 전달(7.6. 현재 외무성 입금 미확인)
- 가톨릭계 긴급 원조(2만 달러)
 - 현금 전달
 - 한국가톨릭계 구호금을 한·몽골 친선협회장이 주한 몽골대사에게 전달
- 국제기아대책기구 원조(1만 달러)
 - 1만 달러에 해당하는 밀가루 7만 5천 Kg
 -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이사 일행이 7.7. 몽골 정부 긴급대책위원장에게 전달

한국의 대니카라과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05 / 11 / 1-24

1993년 중 코스타리카에 대한 원조 내용임.

1. 대니카라과 기자재 등(차량 10대) 공여식(1993.5.24.)

- 니카라과 측, 한국 정부에 사의 표명

2. 기증식 계기 주코스타리카대사의 대니카라과 활동(1993.5.23.~26.)

- 니카라과 통신 현대화 사업 청취
- 자동차 기증식
- 명예영사 후보자 2명 각각 초청 오찬
- 외무성 아세아·아프리카·비동맹국장대리 방문
- 경제개발장관 방문
- 니카라과 수출투자센터 소장 방문
- 주코스타리카 독일대사 예방
- 니카라과 체신차관 면담

1687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

남부아프리카 한발피해 지원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05 / 12 / 1-165

1992~93년 중 나미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잠비아, 말라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 동남부 아프리카 한발 피해 관련, 국제기아대책기구,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의 활동과 정부의 지원 내용임.

1. 1992년도 민간단체의 남부아프리카 한발 피해 구호 활동

- 한국 국제기아대책기구는 나미비아, 앙골라, 잠비아, 말라위,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등 6개국에 각 1만 달러 포함, 전체 22만 달러 지원
 - 각 해당 국가 주재 대사관은 이를 전달할 현지 인사 및 기관 주선
-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는 탄자니아에 102톤(5만 달러 상당), 에티오피아에 500톤 제공
- 한국선명회의 '사랑의 빵 운동'으로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소말리아에 총 35만 달러 지원

2. 정부는 개별국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총 12만 달러(잠비아, 나미비아, 앙골라, 에스와티니), 유엔한발회의(1992.6.1.~2.)를 통해 5만 달러 지원

3. 정부는 정부보관 양곡의 한발 피해국에 대한 제공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함.

- 민간 인도지원단체에 대한 염가제공 방식의 지원, 피해국에 대한 직접 대여, 자연 소모분 상당의 무상원조 등 방안 검토
- 양곡 지원 시 FAO(유엔식량농업기구)와 협의, 양곡지원에 따른 국제시장 교란을 우려한 미국의 입장 등 고려

한국의 대코트디부아르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05 / 13 / 1-49

1. 1991년도

- 1991.6.6. 1990년도 대주재국 무상원조 품목인 소나타 경찰순찰차 10대 기증
 - Bombet 코트디부아르 내무장관은 기증식 답사를 통해 주재국 신정부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경제회복과 함께 치안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대주재국 정책 지원에 사의를 표명함.

2. 1992년도

- 1992.5.16. 주재국과의 체육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주재국 디보지역에 체육용품(축구공 30개) 기증
- 5.20. 1991년도 대주재국 무상원조 품목인 엑셀 5대, 소나타 10대 기증

3. 1993년도

- 1993.7.30. 1992년도 주재국 무상원조 품목 중 경찰차량 10대 기증

1689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한국의 대소말리아 지원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5 / 14 / 1-95

정부의 1991~93년 중 소말리아에 대한 원조 내용임.

1. 소말리아 과도정부의 긴급원조 요청(1991.2.25.)

- 식품, 의약품
 - 소말리아 내전으로 한국 원조품을 벨기에에 보관 중

2. 한국 정부 조치

- 1992.9월 중 UNDRO(유엔재해원조조정기구)에 3만 달러를 기탁하면서 국제사회 지원에 동참할 계획
- 9.23. 기독교 총연합회 부설 민간단체인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는 소말리아에 사랑의 쌀 500톤 지원 결정

아프리카 관련 다자 간 원조회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5 / 15 / 1-79

1992~93년 중 한국의 아프리카 관련 다자간 원조회의 참가 내용임.

1. 1991~93년 아프리카 다자간 원조회의 동향

- 이집트 자문그룹 회의(1991.7.8.~10., 파리)
- 이집트 환경보호실행계획 회의(1992.5.23.~24., 카이로)
- 잠비아 원조공여국 회의(1993.4.6.~7., 파리)
- 제28차 UNECA(유엔아프리카경제이사회) 정기회의 및 제19차 아프리카 경제각료회의(1993.4.19.~22., 가봉 리브르빌)
- 앙골라 원조공여국 회의(1993.6.3., 제네바)
- 가나 자문그룹 회의(1993.6.24.~25., 파리)
- 에리트레아 난민 재통합 및 재정착지역 재활 프로그램 지원 서약회의(1993.7.6., 제네바)
- 케냐 자문그룹 회의(1993.11.22.~23., 파리)

2. 한국 정부 입장

- 경험 규모의 획기적인 확대가 있기까지는 다자간 원조공여국 회의는 가급적 불참
- 향후 수교 교섭 등을 감안하여 이집트 관련 회의는 참석하고, 여타 회의는 불참하거나 관할공관에서 참관

1691

대한민국-아프리카 원조

캄보디아 재건 국제위원회, 제1차. Paris, 1993.9.8.-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5 / 16 / 1-85

1993.9.8.~9.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ICORC(캄보디아재건국제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대상

- 캄보디아 부흥 재건을 위한 각료급회담(1992.6월, 도쿄) 참가국 및 국제기구 고위공무원

2. 회의 목적

- 최근 캄보디아 내 정치적 상황 발전에 관한 정보 제공
- 캄보디아 신정부에 대한 원조국 그룹의 지지 표명
- 캄보디아 신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청취
- 최근 캄보디아 내 경제 상황 및 개발수요, 경제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평가
- 원조국 및 국제기구의 현재까지의 지원 노력과 도쿄회담 시 공약의 재확인

3. 한국 입장

- 원조 공약
 - 기공약한 10만 달러의 기자재와 연수생 등 6명 초청
 - 다만, 대캄보디아 원조 시행을 위한 제반여건 성숙 시까지는 동 원조를 잠정 보류
- ODA(공적개발원조) 대폭 확대 시까지는 인도네시아 등 5개 원조회의만 참석하기로 한바, 제1차 ICORC 회의에는 불참

인도네시아 원조자문그룹 회의, 제2차. Paris, 1993.6.29.-3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5 / 17 / 1-302

정부는 1993.6.29.~30.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CGI(인도네시아 원조자문그룹) 회의에 장선섭 주프랑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 인도네시아 정부는 네덜란드 정부와의 불화로 1967년 이래 네덜란드 주관으로 개최되어 온 인도네시아 원조회의를 세계은행 주관으로 변경하여 1992.7월 제1차 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함.

2. 참가국

-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ADB(아시아개발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12개 국제기구

3. 한국대표단 보고

- 일본의 주도적 역할
 - 일본, 세계은행, ADB가 각각 14억 4천만 달러, 18억 달러, 12억 달러를 원조하여 전체 원조의 87%를 공여하고 있으며, ADB 자금이 상당 부분 일본 엔화임을 감안할 때 일본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됨(서방 국가의 경험 비중은 적고 특히 미국의 원조 규모는 6,540만 달러로 일본의 4.5%에 불과).
- 인도네시아의 인권문제 거론
 -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은 Good Govern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네시아는 인권 존중의 필요성 지적
- 캐나다는 1991년 동티모르 인권문제 제기
- 미국은 행불자 조사, 티모르 주재 인도네시아군 철수, 사태 관련자 사면 등 요망
- 네덜란드는 CGI 회의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경험과 인권문제를 결부시키고자 하는 한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
- 한국은 개도국 중에서 유일하게 CGI 참석

1693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

인도네시아 원조자문그룹 회의, 제2차. Paris, 1993.6.29.-30.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5 / 18 / 1-89

1993.6.29.~30.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CGI(인도네시아 원조자문그룹) 회의 자료임.

1. 한·인도네시아 관계 현황 및 전망
2. 제2차 CGI 회의자료(1993.6.15., 한국국제협력단 작성)
3. 인도네시아 관련 자료(1993.6월, 외무부 아주국 작성)
4. 제2차 CGI 회의자료(1993.6월, 외무부 국제경제국 작성)
5.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세계은행/일본 주관 몽골 원조공여국 회의, 제3차. 동경, 1993.9.13.-14.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6 / 1 / 1-85

정부는 1993.9.13.~14. 도쿄에서 개최된 제3차 몽골 원조공여국 회의에 윤지준 주일본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 경제체제 전환국인 몽골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회의인 세계은행/일본이 주관하는 몽골 공여국 그룹회의와 UNDP(유엔개발계획) 주관 몽골 지원회의가 각각 도쿄와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것보다 양 회의를 통합해 울란바토르에서 연간 1회 개최하는 방향으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및 세계은행, UNDP 간 협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봄.
- 그러나 일본은 구소련 및 동구권에 대한 지원으로 대몽골 지원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기존 방식대로 세계은행과 일본이 주관하는 공여국 회의 방식을 유지할 희망
 - 일본 정부는 한국에 동 입장에 대한 지지 표명 요청

2. 참가국

- 총 23개국 및 6개 국제기구 대표단

3. 정부 훈령

- 몽골 정부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추진 현황 및 전망, 경제개발 관련 자금조달과 중점투자 분야 등 파악
- 국제기구 및 공여국의 몽골 원조 현황 및 정책 파악
- 한국 대몽골 경제협력(EDCF(대외경제협력기금) 13백만 달러 등) 등 협력강화 용의 표명

4. 회의 결과

- 한국대표단은 몽골과 수교 이래 한국이 능력 범위 내에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EDCF 사업, 기술협력 및 무상원조계획 등 설명
- 신규 원조계획 표명은 없이, 몽골의 정치·경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민간 부문의 적절한 역할 제고, 빈곤층 지원, 농·목축업 이외에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인프라 투자가 필요함을 제기
- 차기 회의도 같은 방식으로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1695

대한민국 외교부

파푸아뉴기니 자문그룹 회의, 제6차. Hong Kong, 1993.6.1.-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6 / 2 / 1-93

정부는 1993.6.1.~2.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파푸아뉴기니 자문그룹회의에 오갑력 외무부 경험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원조공여국(6개국): 한국, 호주, 미국, 일본, 독일, 뉴질랜드
- 국제기구(6개):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EC(구주공동체), IMF(국제통화기금), UNDP(유엔개발계획) 등
- 옵서버국(2개국): 싱가포르, 프랑스
- PNG: Chan 부수상 겸 재무기획장관 등 27명

2. 정부 훈령

- PNG의 경제개발정책 파악
- 주요 원조공여국의 대PNG 원조현황 파악
- 한국의 대PNG 경제협력 강화 의지 표명
- 1993년도 한국의 대PNG 원조공여계획 표명

3. 회의 결과

- 원조집행 이행의 지연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원조 이행에 있어서 장기간 지체 문제는 심각한바, 개선 필요
- 향후 공공투자계획 및 대외원조 소요와 참여국들의 공여 공약액(4억 5천만 달러) 발표

4. 관찰 및 평가

- 참가국들은 1991년 이후 PNG의 지속적 고도성장을 평가하고, 지속적 원조공여 의사를 표명
- 앞으로 PNG 경제정책의 운용방향으로서 재정적자 관리, 광물수출로 인하여 급증하는 수입의 효과적인 활용 및 시행능력 재고를 지적
- PNG 측은 금번 회의에서 4억 5천만 달러의 지원 약속 확보에 만족을 표시하고, 특히 시행 문제의 개선에 집중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 PNG 정부의 향후 경제개발계획과 각 원조공여국의 대PNG 지원계획이 파악된바, 향후 한국의 대PNG 경험 제공을 이러한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지원 분야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 제1차. Paris, 1993.11.9.-1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6 / 3 / 1-157

정부는 1993.11.9.~10.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에 박노수 주베트남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세계은행과 UNDP(유엔개발계획) 공동 주관으로 22개국 및 16개 국제기구

2. 정부 훈령

- 기본입장
 - 경제 분야에서 한·베트남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모색에 역점
 - 베트남 경제개발계획 현황과 전망, 주요 공여국의 대베트남 원조 현황 파악에 주력
 - 정부개발원조 중점 대상국인 베트남에 대해 한국의 높은 관심과 지원 의지 표명
- 세부 훈령
 - 베트남 경제개발계획 중 중점투자 분야 및 한국 업체 참여 유망 분야 파악
 - 베트남 경제계획에 소요될 자금 규모 및 조달계획 파악
 - 선발개도국으로서 한국의 대베트남 개발경험 전수, 인력 훈련 및 교환 등 적극적 입장 천명
 - 대베트남 경제협력 계획 발표(유상원조 5천만 달러, 무상원조 900만 달러 등 총 5,900만 달러)

3. 회의 결과

-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혁정책과 신속한 시장경제 전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 재확인
- 원조공여국은 총 18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대베트남 원조계획 발표
 - 세계은행 주관 원조자문회의 1년 내 개최에 합의
- 베트남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해 사회·경제 인프라 건설, 거시경제 조정, 인적자원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특히 도로, 항만 등 교통 부문, 에너지, 통신 등이 최우선 투자 영역임을 강조

4. 한국대표단 활동

- 베트남 정부의 경제개혁·개방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약속
- 한국의 개발경험 및 기술을 공유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
- 유상원조 5천만 달러, 무상원조 900만 달러 등 총 5,900만 달러 규모의 대베트남 원조계획 발표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 제1차. Paris, 1993.11.9.-10.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6 / 4 / 1-112

1993.11.9.~10.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 관련 회의자료임.

1.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 자료(한국국제협력단 작성)

- 베트남 정부의 개발전략
- 기술 및 자본원조의 우선순위
- 재정수요

1698

2. IBRD/UNDP 주관 대베트남 국제원조회의 자료(1993.10월, 재무부)

- 대베트남 EDCF 지원 현황 및 계획
- 베트남 경제개발보고서
 - 베트남 개혁평가
 - 2000년까지의 사회경제개발계획
 - 해외원조
 - 우선투자사업
- 베트남 경제 현황

3. 제1차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1993.11.9.~10., 파리) 자료(외무부)

- 정부대표단 구성
- 회의 개요
- 정부대표단 훈령
- 한국 측 발언요지
 - 베트남 정부의 개발전략
 - 기술 및 자본원조의 우선순위
 - 재정수요
 - 대베트남 원조계획

중동평화 지원을 위한 다자회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3-106 / 5 / 1-101

정부는 1993.10.1.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중동평화 지원회의에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 (교체수석대표: 주미국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총 46개국 및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유엔, 세계은행 등

2. 회의 목적

- 대팔레스타인 경제지원 소요액 평가, 지원방식 및 지원 분야 협의

3. 정부 훈령

- 이스라엘·PLO 간 평화협정을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하고, 국제적 지원 노력에 동참 용의 표명

4. 회의 결과

- 고어 미 부통령의 개막연설에 이어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등 38개국 대표들은 5년간 20억 달러 지원 약속
- 중동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하고, 미국은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팔레스타인 경제지원을 유도

5. 중동평화지원회의 산하 분과회의 참석 검토

- 동 회의 산하에 5개 분야별 실무그룹 회의 구성 및 활동
- 한국 정부는 수자원 실무그룹 회의 및 향후 개발프로젝트 참여 제고를 위해 중동지역 경제개발 실무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방안 검토

1699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아프리카 개발 동경회의. 동경, 1993.10.5.-6.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06 / 6 / 1-228

일본 정부는 1980년대 말 국제질서 개편 이후 포괄적인 아프리카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과 공동주최로 1993.10.5.~6. 도쿄에서 아프리카 개발회의를 개최함.

1. 참가자

-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또는 각료
- 미, 영, 프랑스 등 13개 원조공여국 대표
- 한국, 중국 등 14개 옵서버국 대표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FAO(유엔식량농업기구), OAU(아프리카단결기구) 등 23개 국제기구

2. 주요 결과

- 도쿄 선언 채택
 - 아프리카의 자체 발전 노력 및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 강조, 새천년 이전 개발회의 재개최 의지 재확인 등
- 6개 의제별 토의
 - 정치·경제 개혁, 아시아의 발전 경험, 민간주도 개발, 긴급원조, 지역협력 및 통합, 도쿄 선언 기초
- 호소가와 일본 총리 기조연설
 - 1993년부터 5년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증액 노력(700억~750억 달러 규모)

3. 전반적 평가 및 한국 정부 입장

- 당초 준비회의 단계에서 제기되었던 도쿄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기구 창설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아 일단 선언적 회의로 폐막
- 다만,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으로 국제위상 제고에 상응하는 역할 문제가 대두될 전망임을 고려하여, 경험 및 무상원조의 점진적 확대 노력이 바람직한 것으로 내부 평가

인도차이나 종합개발포럼 예비회의. 동경, 1993.12.9.-1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6 / 7 / 1-140

정부는 1993.12.9.~10. 도쿄에서 개최된 인도차이나 종합개발포럼 예비회의에 이원형 주일 본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경위

- 주한 일본대사관이 동 회의에 한국 정부의 참가를 요청해온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동 지역에 대한 한국 경제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라오스, 캄보디아와의 수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일본대사관 직원을 참석하도록 함.

2. 참가국

- 인도차이나(3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 아세안(6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 원조공여국(15개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영국, EC(구주공동체) 등
- 국제기구(6개): ADB(아시아개발은행), UNDP(유엔개발계획),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IMF(국제통화기금) 등
- 옵서버: 미국

3. 의제

- 인도차이나지역 개발의 의의, 개발계획 및 프로그램
- 인도차이나 종합개발포럼에서 다룰 문제들
 - 인프라 개발
 - 인적자원 개발 및 시장경제전환 지원
 - 여타 협력 분야

4. 주요 토의 내용

- 일본(주최국) 측 제안
 -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문제에 인도차이나 3국이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제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
 - 1994년 가을경 각료급 레벨 포럼 개최를 표명하고, ADB, UNDP가 작성한 계획 및 프로그램을 포럼 시 협의의 토대로 할 것과 민간 부문 참여 검토를 제의함.
- 인도차이나 3국
 - 경제개발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 노력 설명

1701

대한민국 외교부



- 아세안
 - 인도차이나 3국의 안정과 발전이 동남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직결
- 원조공여국
 - 인도차이나 3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아세안 등 주변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정책 공조가 중요함을 언급
 - 인도차이나 종합개발포럼은 1993.1월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아세안 방문 시 및 9월 하타 외상의 태국, 캄보디아 방문 시 대체적인 구상이 제의된 바 있음.

1702

5. 관찰 및 평가

- 인도차이나 3국과 아세안은 고위대표단 파견 등 동 회의에 큰 관심을 보임.
- 일본 측은 인도차이나 개발문제에 대해 각료급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동 지역에서의 정치적 기반 강화 의도가 엿보임.
 - 프랑스가 이번에 대규모 대표단(아시아대양주국장 등 5명)을 파견한 것은 일본 견제 의도로 감측
- 한국 측 수석대표는 인도차이나 3국의 아세안 가입문제에 대한 관계국들의 입장을 탐문함.
 - 베트남, 라오스는 이미 아세안에 옵서버로 참석하고 있으며, 아세안 내부에서도 장래 이들 국가의 Full Member 참여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 등도 있어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었음.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및 지원개선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6 / 8 / 1-199

1993년 중 개최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 및 지원개선 관련 회의 내용임.

1. 제26차 EDCF 운영위원회

- EDCF 지원대상국 체제정비 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3.1.14.) 개최
- 경제기획원은 2.19. 관계부처에 EDCF 지원조건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알려오면서 개정(안)과 서면의결서를 송부
 - 외무부는 2.24. 상기 서면의결서 회신
- EDCF 지원조건 운영지침 개정(안) 가결
 - 상기 개정(안)은 제26차 EDCF 운영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하여 3.3.자로 원안대로 의결
 - 주요 내용
 - 중점 지원 대상국 선정: 한국과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8개 주요 개도국(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베트남, 폴란드, 케냐, 칠레)

2. EDCF 지원제도 개선(안) 관계부처 회의(1993.8.19., 재무부)

- 주요 결과
 - 실무위원회 설치
 - E/N 체결 생략
 - 사업 준비 차관의 무상지원
- 재무부는 9.3. 상기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에 송부하면서 이견이 있을 경우 회신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9.9. 아래 내용의 검토의견을 회신함.
 - 기금운용위원회 외에 별도 실무위원회 불필요
 - E/N 체결 계속 유지 필요
 - 사업 준비 차관의 무상지원에 반대
 - 사업협의단의 운용은 외무부와 재무부 공동주관

3. 제28차 EDCF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 경제기획원은 1993.9월 관계부처에 1994년도 EDCF 운영계획(안) 및 1993년도 EDCF 운영계획 수정(안)을 서면심의로 의결하고자 한다면서 동 계획(안)과 서면의결서를 송부
 - 외무부는 10.4. 상기 서면의결서 회신

1703

대한민국 외교부



- 1994년도 EDCF 운용계획(안) 가결
 - 상기 계획(안) 및 수정(안)이 12월까지 EDCF 제도 개선안을 수립, 기금운용위원회에 성장할 것을 전제로 제28차 EDCF 운영위원회 서면결의를 통하여 10.7.자로 원안대로 의결
 - 주요 내용
 - 사업 발굴 방식의 다양화
 - KOICA 개발조사 사업과의 연계 강화
 - 한국과의 경험 잠재력이 큰 지역 위주로 배분
 - 전략국가 중점 지원 방식 추진
 - 지원 절차의 간소화 계속 추진

대피지(Ba/Sigatoka 가교 및 접근도로 건설)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생산연도 1989-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6 / 9 / 1-211

1989~93년 중 피지의 교량건설 사업 관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협의 과정 내용임.

1. 경위

- 1990.5.1. 정부 간 협정 체결
 - 피지의 Ba 및 Sigatoka 교량건설 사업 EDCF 지원 협정
 - 총 사업비 690만 달러, 지원 요청금액 620만 달러
- 1991.4.17. 피지 정부, 동 사업 자금을 EDCF 자금이 아닌 자체자금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
- 1991.6월 피지 정부, 외무부를 통해 EDCF 지원 재개 요청
- 1992.6월 피지 정부, 사업조정안 제시
 - 사업비용 상승으로 Ba 및 Sigatoka 교량 중 Ba 교량에 한하여 지원 요청

2. 협의 결과

- 1993.2.10. 피지 정부, EDCF 지원에 의한 교량복구 사업 포기 통보
 - 태풍피해로 파괴된 4개 교량 건설을 위해 EC(구주공동체) 자금을 활용하기로 최종 결정
- 한국의 EDCF로 교량 건설할 경우 자체 부담액의 재원조달 난망

1705

대한민국-외국간사-외환

대몽골 판유리공장 건설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6 / 10 / 1-139

1992~93년 중 대몽골 판유리공장 건설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관련 내용임.

1. 대몽골 EDCF 차관공여

- 1991.10월 한·몽골 정상회의 시 1천만 달러 상당의 EDCF 지원 약속
- 몽골 측은 주사기공장 건설사업(5백만 달러), 판유리공장 건설사업(8백만 달러), 편물공장 현대화 사업(2백만 달러) 등 3개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
- 한국 측은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주사기공장 건설사업과 판유리공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총 1천 4백만 달러 규모), 1992.5월 제2차 몽골 원조공여국 회의(도쿄)에서 1천 4백만 달러 차관공여 계획 발표

2. 몽골 측은 판유리공장 건설사업 추진 포기 대신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자금 전용 희망

- 한국 측은 1993.4월 판유리공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EDCF 자금공여 절차 추진
- 몽골 측은 10.9. 판유리공장 건설과 관련한 추가자금 소요 가능성, 건설공기, 원자재 공급 문제 등을 감안하여 판유리공장 건설을 포기하고, 판유리공장 건설을 지원하려던 자금을 전용하여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 희망
- 몽골 측은 10.13. 화력발전소 건설용으로 자금 전용을 희망하는 공한을 주몽골대사관에 보내음.

대가이아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검토

생산연도 1989-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6 / 11 / 1-221

1989~93년 중 가이아나 정부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지원 요청 사업 검토 내용임.

1. 경위

- 1987.1~6월 가이아나 정부, 2차에 걸친 한국 민관경제사절단 파견 시 EDCF 기금 지원 요청
 - 사금 채취장비 구입
 - 화장지원단 제조공장 건설
 - 중소기업 공업단지 조성
 - 농·축산단지 조성
 - 금광개발 합작 투자
- 1987.7~8월 수출입은행 예비검토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 1989.4월 민관경제사절단(단장: 외무부 미주국장), 가이아나 방문
- 1989.8월 관계부처 실무회의
 - 사금 채취장비 구입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긍정 추진 결정

2. 협의 동향

- 1993.1.6. 가이아나 정부, 가이아나 도로 보수 장비 및 특수 소방차 구입을 위한 EDCF 자금지원 요청
- 3.19. Jagan 가이아나 대통령 친서 접수
 - 디젤 발전소 건설, 내수로 선박 공여 등 경제원조 요청

1707

대한민국-가이아나-경제협력기금

대불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추진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6 / 12 / 1-276

1990~93년 중 대불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협의 내용임.

1. 경위

- 1990.5.20.~22. 불가리아 대외경제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 방한
 -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 및 차관 문제 협의
- 1990.11월 불가리아 정부, 컬러TV 공장 및 광케이블 건설 사업 등 13개 사업 지원요청 (총 6천만 달러)
- 1991.4.4.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 1991.7월 및 10월 EDCF 정부조사단 불가리아 방문
- 1992.4월 한국 정부, 컬러TV 공장 건설 사업(5백만 달러) 지원 방침 통보
 - 연 5.0%, 상환기간 20년(거치기간 5년 포함) 등

2. 결과

- 1993.6.8. 불가리아 정부, 동 사업 포기 결정 통보
 - 담당업체인 BITOVA사 측이 시장수요 변화 등 제반여건 상 동 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결정

대체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검토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6 / 13 / 1-121

1993년 중 체코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여부 검토 관련 내용임.

1. 검토 경위

- 1990년 초 수교 교섭 시부터 체코 측은 합작투자 등 경험 축진을 위해 EDCF 및 EXIM(미국수출입은행) 자금지원을 강력 요청
- 1992.4.27. 하벨 체코 대통령 방한 시 동 대통령은 체코를 EDCF 자금 수혜대상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
- 1993.9월 Dyba 체코 경제부장관 방한 시 상기 문제 협의
 - 7월 삼성은 EDCF 차관 승인을 조건으로 체코 통신공사와 5천만 달러 상당의 TDX 통신기기 수출계약 체결 통보

2. 한국 입장

- 적절한 사업과 함께 자금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EDCF 수혜대상국에 포함시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음.
- 단, 일정 금액을 사전에 지원 약속하는 것은 곤란함.

3. 추진사항

- 체코가 동 자금 수혜대상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추진

1709

대한민국 외교부 대외경제협력기금

대리투아니아(신발공장사업 및 피혁가공공장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검토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6 / 14 / 1-20

1993년 중 리투아니아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관련 문서임.

1. 1993.9.5. 리투아니아 정부는 리투아니아 신발 공장 및 피혁가공 공장에 대하여 각각 200만 달러와 300만 달러 규모의 EDCF 차관을 요청함.

2. 1993.10.7. 한국 정부는 동 기금지원 여부에 대한 정식 검토를 위해 절차상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함.

- 리투아니아 정부의 EDCF 요청 공한
- EDCF 지원신청서
- 상세 사업계획서
- 기타 관련자료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검토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06 / 15 / 1-71

1990~93년 중 나이지리아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관련 내용임.

1. 1990.5.22. 나이지리아 체신청과 삼성전자 간에 약 1억 달러 상당 규모의 동국 통신사업(전자 교환 전화회선 공급, 조립 합작투자, 기술이전 등)에 관한 각서가 서명된바,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소요사업비 중 5천만 달러를 EDCF 차관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

2. 나이지리아 정부, 라고스 도시철도건설프로젝트에 한국 정부 참여 요청

-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라고스 메트로라인은 총 4개 노선 중 1개 노선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희망
- 외무부는 삼성물산, (주)대우, 럭키개발을 접촉해 참여 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프로젝트 자체 참가는 어려우나 시공 및 차량공급에 관심 표명

3. 나이지리아 기관차 현대화 관련 EDCF 추가 요청 검토

- 1993.6.11. 나이지리아 외무성은 공한으로 자국의 기관차 현대화 사업의 지속을 위해 한국이 EDCF 차관으로 2천만 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
- 외무부는 동 프로젝트가 단순 기자재 공급으로 지원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며, 나이지리아의 외채상환 능력, EDCF 운용재원의 한계 등을 감안해 부정적 입장 전달

1711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지구과

MF번호 2023-106 / 16 / 1-336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관련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추진

- 1991.1월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황금의 삼각주)를 선포, 그간 투자실적은 전무
- 1993.8.6.~15. 김정우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사절단, 러시아 방문
 - 나진·선봉지역에서의 러시아 기업유치 협의, 북한의 나진항 합작개발사업 합의
 - 러시아의 29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나진항을 국제무역항으로 개발 추진
- 1993.9.13.~18. 김정우 부위원장, 홍콩 방문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은 UNDP(유엔개발계획)의 TRADP(두만강지역 개발계획)과 동시에 병행 추진 등 언급
 - 한국기업의 동 지역 진출은 제3국 기업인에 의한 1단계 및 해외영주권자에 의한 2단계 이후 3단계 방안에 따라 추진함이 바람직함을 언급
 - 김정우 부위원장은 9.21. 도홍길 대만 국제무역협회 이사장 등 10명의 대만대표단을 대동하여 북한으로 귀국
- 주함부르크총영사의 보고에 의하면, 10.5. 함부르크지역 동아시아협회 소속 20여 명의 회원들이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 직원으로부터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입지조건 및 투자환경 설명 청취

2. 주중국대사관, 나진·선봉지구 개발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 검토 필요 건의(1993.12.13.)

- 북한은 북한 핵 문제 해결 시 외국투자를 유치하여 실리 극대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 대만 등 한국 경쟁국 선점 진출 가능성 및 이 경우 남북한 간 이질적 산업관계 형성 등 위험
-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수용 등 핵 문제 해결시점에 맞추어 TRADP의 두만강개발 회사 설립과 이의 상시 운영을 적극 추진하며,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을 연변, 나진·선봉 및 연해 주지역에 파견하여 기선을 잡는 대비책 등 필요
- 외무부는 12.16. 상기 두만강개발회사의 경우 UNDP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1994.1~2월경 개최될 제3차 실무회의에서 3개 국제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며, 민관합동조사단 파견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

3. 참고자료

-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 안내(영문본 포함)(북한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
-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해상수송 방안 검토(1993.12월, 주중국대사관)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PMC(계획관리위원회), 제3차. 평양, 1993.5.9.-10.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107 / 1 / 1-226

정부는 1993.5.9.~10.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PMC(계획관리위원회)에 김용 경제기획원 제3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일정

- 실무그룹 회의: 1993.5.5.~7.
- 제3차 PMC 회의: 1993.5.9.~10.

2. 주요 의제

- PMC 이후 신기구 구성 및 기구 간 권한 배분
-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국제협력협정 초안 검토
- 수송, 환경, 인프라, 통신 등 주요 협력 필요 분야

3. 한국 입장

- TRADP 사업이 장차 동북아지역 개발과 직결되어 있고, 수송, 환경, 인프라, 통신 등 주요 사업 분야에 있어 PMC 5개국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을 회의 기간 중 견지
- TRADP 신기구 구성에 있어 한국의 입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며,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이견조정을 위한 별도회의 개최를 제의

1713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PMC(계획관리위원회), 제3차. 평양, 1993.5.9.-10. 전2권 (V.2 결과 및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107 / 2 / 1-273

1993.5.9.~10.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PMC(계획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내용임.

1. 주요 의제

-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2. 주요 합의사항

-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법제도 분야에 대한 2개의 협정서 초안에 대체적으로 합의
 - 두만강지역개발공사 및 정부 간 조정협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한국 포함 PMC 5개국 간 서명 예정)
 - 두만강지역 개발에 관한 협정(장차 북한, 중국, 러시아 등 3개 연안국 간 서명 예정)
- 통신, 자원 및 산업, 환경, 운송, 재정, 중심도시(Core City) 설치 등 각 분야별 향후 사업계획 수립

3. 주요 동향

- 북한과 중국은 두만강지역 개발에 적극적 입장
- Core City 건설, 개발방식 등과 관련된 중국·북한 간의 의견 대립
-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자 유역 3개국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여타 동북아지역 국가의 참여를 요망, 특히 일본을 겨냥한 이중적 입장 견지
- 북한은 두만강지역개발회사 설립에 적극적 입장 표명

4. 평가

- 중국 및 북한 움직임 관련, 향후 남북한 협력 또는 통일에 대비한 동 계획 진행에 참여하여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북한이 구사회주의권 시장 상실로 '중국의 경제 배후 지역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장차 동 지역 내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법·금융분야 회의, 제1차. New York, 1993.2.22.-24.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107 / 3 / 1-148

제1차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법률·금융 분야 실무그룹 회의가 1993.2.22.~24. 뉴욕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한국,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UNDP(유엔개발계획), 세계은행

2. 정부대표단

- 문하영 외무부 경제기구과장, 강대형 경제기획원 북방경제1과장 등

3. 주요 일정

- UNDP 측 법률 및 재정 전문가 강의 청취
- LCG(법률자문그룹) 및 FCG(재정자문그룹) 회의 개최
 - TRADP 조직 구성안, 유역국 및 투자국 간 관계 내용, 국제협정안, 재정조달 문제 등

4. 훈령(한국 측 관심사항)

- 두만강 개발계획 추진에 있어서 관계국 상호 간의 법률체계 정리 및 자원 확보가 성패의 관건이므로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을 접촉하여 관련 정보 입수 및 동향 파악
- 회의 참가국, 특히 두만강 연안 3국(북한, 중국, 러시아)의 동 회의에 관한 입장 파악
- UNDP, 세계은행, 기타 국제기구 및 관심국들의 TRADP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동향 파악
- 북한의 TRADP에 대한 입장 파악 등

5. 주요 협의내용

- 한국대표단은 1992.10월 베이징 개최 제2차 PMC(계획관리위원회) 합의사항에 의거, 동북아지역개발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두만강지역개발공사 설치안 제의
 - 중국, 러시아, 몽골 등 3개국은 동의 입장, 북한은 토지임차 문제와 연계하여 입장 표명을 유보
- UNDP 측은 두만강유역 공동개발을 위한 전제로서 토지임차 및 국제관리 필요성 제시
 - 중국, 러시아는 긍정적 입장, 북한은 차기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언급

6. 관찰사항

- 1993.5월 평양회의를 위한 예비회담으로 기구 구성 및 토지임차에 대하여 북한 이외 국가 간 의견 접근
- 북한은 토지임차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TRADP 자체에 대해서는 확고한 지지 및 회의 속개의사가 있는 것으로 감지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법·금융·제도 실무회의, 제2차. 북경, 1993.9.20.-24.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107 / 4 / 1-242

정부는 1993.9.20.~24.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법·금융·제도 실무회의에 이태식 국제경제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5개국)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2. 회의 결과

- UNDP(유엔개발계획)는 회의 기간 중 참가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정안을 3개로 재차 작성 하였으며, 1993.10월 또는 11월에 속개될 실무회의에서 이를 심의 확정하도록 추진 예정임.
- 3개 협정안: 두만강지역개발회사, 5개국 정부 간 위원회 및 유역 3국 위원회 설치에 관한 3개 별도 협정
- 개발회사 정관 초안에 관해서는 주식 배정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감안하여 UNDP 측이 개정안을 작성하여 추진 예정임.

3. 대응방향 및 건의

- 동 사업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연안 3국 간 이해조정이 어렵고, 또한 동국들이 시장경제의 경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면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봄.
-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동 사업은 차후 경제, 통상 측면뿐 아니라 외교, 정치, 안보차원에서 보다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음에 비추어 UNDP가 주관하는 동 사업에 참여하여 신정부의 동북아지역 개발사업 참여 자세를 표명하면서, 한국의 다각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노력함.
- 상기 기본입장 추구를 위해서는 한국 내부체제 정리 작업이 필요한데, 외무부가 중심으로 동 사업 관련 대외 교섭에 임하도록 하며 동시에 정부 간 협의체 및 민간협의회 운영을 재정비 및 일원화하여 부처 간 및 협의체 간 이기주의를 초월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산업분야 워크숍. 서울, 1993.11.8.-1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107 / 5 / 1-138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산업 분야 워크숍이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경제기획원 주최로 1993.11.8.~10. 서울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핀란드, UNDP(유엔개발계획), UNIDO(유엔공업기구)

2. 북한 참가

- 북한대표단(수석대표)
 - 황정남 대외경협추진위 과장
- 외무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북한대표단에 입국사증을 발급
- 금번 회의에 3명의 북한대표단이 참가 신청한바, 이는 1993.1월 서울 개최 TRADP 통신전문가 회의 참석 이후 최초의 북한 정부 관계자의 서울 방문임.

3. 두만강지역의 산업발전 계획에 관한 국가별 보고

- 중국
 - 훈춘지역 개발계획 구상 언급
 - 인프라 개발을 통해 동 지역이 2010년까지 교역·금융의 중심지가 되도록 추진
- 러시아
 -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계획 언급
 - 군수산업의 민수화 과정 및 대규모 투자구역 설립에 외국인, 특히 한국의 투자 희망
- 몽골
 - 몽골 동부지역의 풍부한 광물자원의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동북아 국가 간 협력 강조
- 한국
 - TRADP 연구용역 사업(경공업, 인프라, 전력 등) 진척 현황 보고

4. 북한 측 언급 요지

-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발 방향을 장단기계획으로 나누어 설명
 - 단기계획(1995년까지): 청진·웅상 항구 확충, 회령-학송 간 철로 개설 및 선봉지역 내에 공항 건설, 신흥, 동명 등 5개 경공업단지 집중 육성
 - 장기계획(2010년까지): 나진을 대규모 컨테이너 항구로 개발, 선봉공항 완공, 관곡, 홍의 등 9개 공단을 추가 조성



- 중점 사업: 나진·선봉 항구 확장, 선봉공항 건설 및 고속도로 확장
- 북한 측은 이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줄 것임을 언급하면서, 한국기업의 공단건설 참여 및 직접투자를 요청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수송 분야 회의. 북경, 1993.3.30.-4.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107 / 6 / 1-48

1993.3.30.~4.2. 베이징에서 개최된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수송 분야 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대표
 - 한국 측은 교통 분야 전문가 3명 및 옵서버 2명 참석

2. 주요 의제

- 북동아시아 수송축으로서의 TREZ(두만강경제구)
- 국별 수송수요 설명
- 국별 기존계획 및 계획 고속도로, 계획 철도 설명
- 공항, 항구, 환경 관련 토의 등

3. 회의 결과

- 북한 측은 TREZ 내 나진, 자루비노항을 주요 항만으로 개발하는 데 동감 표시
- 한국 측은 동북아 국가 간 석탄, 광물, 목재, 곡물 등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한 운송수요를 설명하고, 이 지역의 항만 등 운송 분야 개발계획에 한국 등 미래 잠재 이용국의 수요도 고려할 것을 제의
- 중국 측은 운송 분야 개발계획의 전제조건으로 각국의 기본계획 고려 시 초래될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경제적 타당성 고려 및 최신기술 적용 등 4가지 원칙 제시
- 러시아 측은 광역 블라디보스토크 계획을 중심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지구의 철도, 도로, 건설 계획 설명

1719

대한민국 지역발전사업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자원·산업 및 환경 분야 회의. Helsinki(핀란드), 1993.3.16.-1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조

MF번호 2023-107 / 7 / 1-123

1993.3.16.~19.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자원, 산업 및 환경 분야 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중국, 러시아, 몽골, 한국 등 4개국(북한은 불참)

2. 주요 협의내용

- 두만강유역 지하자원, 산림자원 현황 보고 및 개발방안 협의
 - 현재로서는 목재 채취 산업 발전 전망이 가장 낙관적
- TRADP 개발 관련 환경 분야 원칙에 대한 검토
- 동 유역 산업개발 시나리오 논의

3. 관찰 및 평가

- 북한은 한·미국 간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함을 UNDP(유엔개발계획)에 공식적으로 통보함.
- 한국 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TRADP 각종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4. 여타 진전사항

- TRADP 관련하여 일본, 중국 등의 움직임에 진전이 있어 계속적으로 주시할 예정
 - 일본은 '북동아경제위원회(경단련 중심)'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에 각각 수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지원을 적극 검토 중
 - 중국과 북한은 1993.3.19. 'TRADP 관련 공동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 서명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통신전문가 회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07 / 8 / 1-264

1993년 중 제2~3차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통신전문가 회의가 개최됨.

1. 제2차 통신전문가 회의(1993.1.28.~30., 서울)

- 개최 경위
 - 1992.10월 베이징 개최 제2차 PMC(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경제특구는 각국이 독자 개발 하되, 인프라 등 주요 시설은 토지를 조차하여 공동개발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통신 분야 전문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 참가국: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UNDP(유엔개발계획)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이교용 체신부 통신협력과장
 - 북한대표단(단장): 김명호 체신부 통신지도국 부국장
- 주요 회의 내용
 - UNDP 제출안 중심으로 토의: 두만강지역의 낙후된 통신시설, 장·단기 통신발전 계획, 지역번호, 통신체계 등 통신기술 등
 - 북한은 나진과 중국의 연결, 훈춘 간 초단파 통신 각각 30개 채널 설치 제의 등 적극적 입장
 - 그러나 UNDP가 제의한 서울-평양 간 초단파 통신 30개 채널 설치 제의에는 반대: 남북한 당사자 간 해결 필요성 강조
 - 외무부 특수정책과장의 북한 참가자 리성덕 개별 면담(면담록 첨부)

2. 중국과 북한 간 통신 분야 협력 의향서 체결(1993.9.2.)

- 중국 길림성 연길시(조선족 자치주) 우전국과 북한 당국 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청진항, 라신항의 조·중 공동운용을 위해 통신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
- 이 사업을 위해 중국 측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자본과 설비를 이 지역에 투입할 것을 검토

3. 제3차 통신전문가회의(1993.9.6.~8., 블라디보스토크)

- 참가국: 한국, 러시아, 북한, 몽골, UNDP
 - 중국은 국경통과 문제로 불참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박창환 체신부 통신협력과장
- 회의 내용
 - 기술 분야 마스터플랜 및 단기사행계획: 수요분석, 번호계획, 루팅계획, 국제접속, 시내통신망 등
 - 규제 분야 및 재정계획: 규제기구, 국가주권 위임, 참여국 권리, 통신전담회사 설립, 통신요금 등
- 회의 결과 평가
 - 북한은 두만강개발계획에 적극적인데 비해 러시아는 소극적이며 회의 준비도 미흡함.
 - 회의 참가국 간 UNDP에서 제안한 기술 분야, 규제 분야 등 대부분 계획에 관해 합의함.

1721

대한민국 지역발전 연구자료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전2권 (V.1 1-5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107 / 9 / 1-198

1993년 중 북한의 개방을 염두에 둔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사업 관련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한국의 관계부처 간 TRADP에 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바,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임.

1. TRADP 관련 주요국 동향

- 1993.3.19. 베이징에서 중국·북한 간 '두만강개발지역 내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자협정' 체결
 - 두만강지역 철도, 항구 등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사업 실시 등
- 일본 북동아경제위 대표단, 1993.3.1.~8. 중국을 방문하여 길림성 측과 협의
 - 양측 간 '두만강개발공동위' 설치방안 협의

2. 제3차 TRADP/PMC(기획관리위원회) 회의(1993.5.9.~10., 평양)

- '두만강지역 개발공사 및 정부 간 조정협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안)'에 합의
- 각 분야별 협의
 - 통신: UNDP(유엔개발계획)에서 작성한 master plan 수용
 - 자원 및 산업: 경공업, 식품 가공 등 우선 고려
 - 환경: 헬싱키 회의(1993.3월) 환경 분야 권고안 채택
 - 수송: 수송 분야 master plan 수정본에 대한 각국 의견 요청
 - 재정: UNDP 측은 각국 재무부 관리를 포함하는 TRADP 재정위원회 설립 구상 소개

3. TRADP 관계부처 실무 대책회의(1993.5.25., 경제기획원)

- 참가자
 - 경제기획원, 외무부, 통일원, 재무부, 상공부, 건설부, 교통부, 체신부, 과기처, 환경처 등 관계관
- 주요 토의내용
 - 제3차 TRADP/PMC 회의 결과 및 후속대책 논의: 평양 회의 시 채택된 2개 협정(안) 집중 검토
 - 이후 6개월간 작업계획 논의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전2권 (V.2 6-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지구과

MF번호 2023-107 / 10 / 1-301

1993년 중 UNDP(유엔개발계획)의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관련 움직임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정부도 관계부처 고위급 차원에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적극 검토를 시작함.

1. 제14차 통일관계 장관회의(1993.12.11.) 주요 내용

- TRADP 추진 배경 및 추진 동향
 - UNDP가 동북아지역 수혜국회의(1991.7월, 울란바토르)에서 제안하고 참가국 호응으로 착수
 - UNDP는 두만강 인접지역을 장차 동북아의 교통·관광 요충지, 가공·제조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20~30년에 걸쳐 개발 모색(약 300억 달러 소요 추정)
- 제3차 평양 PMC(기획관리위원회) 회의(1993.5월)
 - 2개 협정문(안) 및 주요 부문별 계획(통신, 산업·자원, 인프라 등)
- 관련국 입장
 - 중국: 적극적 참여
 - 북한: 제한적이거나 적극적 참여(나진·선봉지역을 대외개방 시범지역으로 지정)
 - 러시아: 소극적 입장(TRADP보다 블라디보스토크 개발에 더 큰 관심)
 - 한국: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참여
 - 몽골: 내륙국으로서 적극적 참여에 한계
 - 일본: 적극적 개입 자제

2. 한국 측 대응 방향 채택

-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RADP 참여 모색
- 현재 설립 추진 중인 두만강개발회사(TRAD Co.)의 기능 및 수익성 불투명으로 인해 실질적 투자는 여타 투자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축적으로 대처하고, 개별투자 사업은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는 양자적 참여에 주력
- 한반도 통일과 그 이후까지를 고려한 중장기 전략 고려(북한의 개방 유도에 역점)

1723

대한민국 지역발전 여하

KOICA(한국국제협력단) 규정지침. 전2권 (V.1 1992.2-4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7 / 11 / 1-288

1992.2~4월 중 KOICA 사업수행지침 제4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사업 세부시행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임.

1. 연수생 초청사업 세부시행지침 개정내용

- 연수생 등급을 종전 연수기간에 따른 구분에서 훈련과정 참가자격 기준에 따라 구분
- 공관 관련 업무 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사업계획서: 매년 1월 말까지, 과정안내서 등: 훈련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관장에게 제출)
- 국제공항이 없는 국가의 연수생에게 최인접국 국제공항까지 교통 실비 추가 지급

2. 전문가 파견사업 세부시행지침 개정내용

- 후보자등록제도 신설 및 등록 방법, 제출 서류 등 규정
- 전문가를 등록 후보자 중에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기관장 추천에 의한 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

3. 의료단원 파견사업 세부시행지침 개정내용

- 의료단원 선발자격 요건 중 연령제한 규정 삭제
- 계약기간 만료 전 주재국 사정 또는 부득이한 경우 30일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
- 퇴직금 산출기준 보수항목을 명백히 하며, 대기 기간 중 보수는 구 임지보수의 70%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4. 태권도사범 파견사업 세부시행지침 개정내용

- 계약기간 만료 전 주재국 사정 또는 부득이한 경우 30일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
- 퇴직금 산출기준 보수항목을 명백히 하며, 대기 기간 중 보수는 구 임지보수의 70%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5. 청년해외봉사단원 파견사업 세부시행지침 개정내용

-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연장하며, 미혼 남자의 경우 군 필, 면제 조건 추가
- 봉사활동 기간을 파견국 도착일로부터 봉사활동을 마치고 파견국을 출발하는 날까지 2년으로 함.
- 현지적응 기간을 1개월로 하며, 훈련비용은 협력단과 파견국 유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일정한 역할 수행

KOICA(한국국제협력단) 규정지침. 전2권 (V.2 1992.5월-199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7 / 12 / 1-178

1992~93년 중 KOICA 규정지침 개정(안)의 승인 내용임.

1. KOICA 측은 1992.5.4. 아래 국제협력사업 세부시행지침 중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및 국제협력요원의 대우개선에 관한 조항의 개정 승인을 외무부에 건의

- 연수생 초청
- 전문가 파견
- 청년해외봉사단원 파견
- 의료단원, 태권도사범 파견

2. 외무부는 1993.3.4. 효율적인 대개도국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KOICA 상기 사업의 세부시행지침 개정안을 승인하고, 상기 개정 외에 KOICA 측이 승인 요청해온 대외무상원조사업 및 개발원조조사사업의 세부시행지침에 대해서는 외무부가 현재 작성 중인 관련 개선방안을 토대로 추후 검토 예정임을 통보함.

- 동 승인으로 개정안 발효
 - 1993년도 예산에 관련 내역 기반영

1725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
정책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전2권 (V.1 국제협력 의료요원 확보 대책)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7 / 13 / 1-66

1991~93년 중 국제협력 의료요원 확보에 관한 내용임.

1. 개요

- 외무부는 국제협력 의료요원 확보와 관련, 병역법을 개정할 경우 개정과 함께 별도의 '국제협력 의료요원 파견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함을 감안, 보사부 소관 농특법 개정으로 추진하기로 함.
- 그러나 보사부는 1991년 말 국회의 반대를 우려하여 동 법 재개정에 소극적인 입장

1726

2. 추진계획

- 1안: 보사부와 직접 협의하여 농특법 개정 추진
- 2안: 대외경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정 방향으로 의결 추진

3. 진행 경과

- 보사부는 의료요원 해외파견이 농특법 제정 취지(지역 간 균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 국방부도 병특법 개정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을 들어 반대
- 외무부는 관계부처가 동 사업 추진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입장임을 감안하여 외무부 주관으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 검토
 - 1994.3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함이 바람직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전2권 (V.2 법률 제정)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8 / 1 / 1-249

1991~93년 중 국제협력 의료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92.10.12. KOICA는 아래 내용의 '국제의료협력을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 건의
 - 선발: 특례보충역 의사 또는 치과 의사 중 선발
 - 파견 대상지역: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정한 특정협력 대상지역
 - 한국의 노동자가 다수 진출한 개발도상지역 등
 - 복무기간: 37개월
 - 보수 및 휴가: 군의관 및 공중보건직에 준하는 보수 지급
- 1993.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2. 법령 내용

- 특정 협력대상 지역(개도국)에 요원을 파견하여 경제, 사회, 문화발전 지원
- 외무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지원자 중 요원 대상자를 선발, 병무청장에게 추천
- 외무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KOICA 이사장에게 위탁 가능

3. 기대 효과

- 국제협력요원의 확보로 국제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
- 한국 청년의 국제화에 기여(향후 10년 내 매년 약 1천 명 파견)
- 해외교포 밀집지역에 파견하여 교포 지원 가능

1727

대한민국 의정망

KOICA(한국국제협력단) 운영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08 / 2 / 1-172

1990~93년 중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한국의 유·무상 원조 현황 및 정책을 검토하고, KOICA가 발족함에 따라 외무부 내에서 각 지역별로 담당하던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업무가 KOICA로 이관되는 등 관련 내용임.

1. 중동아프리카 대상 원조정책 검토

- KOICA 및 학계에서 제기되는 다국가 소액지원 및 물자 제공방식에서 소국가 다액지원 및 프로젝트 지원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바, 이러한 정책 제언의 취지는 이해하나 실제 운용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로 인해 부적절하거나 최소한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

2. 한국국제협력단법(1991.1.14.)에 의거, 특정국가와의 협력사업을 전담 수행하게 되는 KOICA가 한국국제협력단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외무부 아프리카·중동국에서 수행해 온 의료단 및 태권도 사범 파견 업무를 1991.4월부터 인수하게 됨.

3. 기타 KOICA의 협력사업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 등 수록

한국의 TCDC(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사업 참여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108 / 3 / 1-102

1992~93년 중 TCDC(개발도상국간기술협력) 사업 참여 현황임.

1. KOICA의 잠업 및 어로 훈련과정

- 1992.12월 KOICA는 1993년도 개도국 훈련생 초청 국내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아래 3개의 FAO(유엔식량농업기구)/TCDC 사업을 확정하고 FAO 측에 각 사업별 연수생 선발 및 동 연수생에 대한 항공료와 기타 경비지원 여부 등을 요청함.
 - 수산청 주관 선박수리과정: 60일, 20명
 - 농진청 주관 잠업과정: 60일, 15명
 - 전남대 주관 식물보호과정: 21일, 15명
- 1993.3월 주이탈리아대사관이 FAO 측과 협의한 결과, FAO 측은 각 회원국의 Trust Fund 기여금 중단 및 한국 사업에 대한 Co-Donor 희망국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표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함.
- KOICA는 사업추진 시기가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단 자체 사업으로 동 훈련 계획을 변경,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식물보호과정 취소
 - 선박수리과정은 어로과정으로 변경하고 인원을 15명으로 감축
 - 잠업과정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

2. 외무부와 UNDP(유엔개발계획)는 1991.10월 서울에서 전기·전자 분야 중소기업가 회의 및 제2차 개도국 간 기술협력회의를 개최함.

- 외무부, 1993.4월 UNDP에 대한 공한을 통해 동 회의 후속조치로 KOICA, 코트라 등 관련 기관이 참가국과 시행한 사업 및 시행사업 목록을 제공함.

1729

대한민국 국제협력사업 현황

1993년도 말레이시아 산업기술 훈련생 현장 연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8 / 4 / 1-45

1993년 중 말레이시아 산업기술 훈련생 현장 연수 관련 내용임.

1. 연수 경위

- 1993.2.3.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 1993년도 산업기술연수생(26명) 연수 실습 요청
- 5.14. 외무부, 각 부처 및 KOICA에 실습 요청 공문 발송

2. 조치 결과

- 연수생 7명,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등 공공기관에서 연수
- 연수생 4명, 삼성 등 4개 기업에서 연수 확정
- 여타 연수생에 대한 현장실습 주선 추진

한·중국 자원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08 / 5 / 1-28

1993년 중 한·중국 간의 자원협력 관련 내용임.

1. 대중국 에너지·자원 분야 실무조사단 파견 추진 경위

- 동력자원부는 1993.1.15. 제1차 한·중국 경제무역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대중국 실무조사단을 3월 중 파견하고자 한다면서 방문 일정, 주요 협의 의제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요청함.
- 동 위원회에서 중국 측은 에너지·자원 분야의 연락 창구를 '중국 능원부 국제협력국'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함.
- 주중국대사는 1993.3.2. 지난 1월 하순 중국 능원부에 동 실무조사단 접수 의향을 문의하였으나, 중국 측은 2.28. 조사단의 활동 범위가 능원부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고, 3월 하순 전국인민대회 개최 관계로 3월 중 접수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함.
- 상기 능원부의 소극적인 반응은 전인대에서의 능원부 개편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보고

2. 중국 동북지역(하얼빈, 장춘) 항공·기계 기술조사

- 주중국대사는 1993.6.18. 한·중국 과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기계기술조사단이 1993.6.9.~16. 중국 항공 및 자동차 기술 중심지역인 하얼빈, 장춘지역의 연구소 및 공장 등을 방문하였다고 보고함.
- 또한, 동 조사단은 베이징에서 국가 과기위, 기계공업부 및 항공·항천부 관계관을 면담,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관심사항을 협의함.

3. 중국 삼협댐 공사

- 주중국대사는 1993.8.6. 국무원 삼협 공정건설위원회는 7.25. 추가화 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고, 수리부가 작성한 '장강삼협 수리 초보 설계보고서'를 승인하였다고 보고함.
- 이는 1991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삼협댐 건설계획이 승인된 이후, 2년 여 간의 기술 검토를 거쳐 작성된 단계별 설계를 승인한 것으로, 동 설계에 따라 본격적인 초보단계 공정이 개시될 예정임.

1731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한·러시아 자원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08 / 6 / 1-100

1992.11월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이후 한·러시아 간 적극 추진된 에너지 및 자원 협력 관련 문서임.

1. 에너지 개발 사업

- 사할린 천연가스개발 사업
 - 1993.2월 한국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할린 가스전 개발 입찰 참여를 추진
- 프라보우르미 주석광 개발
 - 러시아 측이 1993년 상반기 중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완성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유자 매광 방안 검토) 추진
- 치타주 우다칸 동광 개발
 - 러시아 측이 국제입찰 준비를 위한 개발계획서를 준비 중이며, 렉키금성은 입찰 실시 후 러시아 측과 협의를 거쳐 본 사업 참여 추진 계획

2. 러시아 에너지 및 자원 정책 자료 수집 보고(주러시아대사관)

- 러시아 에너지 정책 방향 및 에너지 생산량·수출량 자료(1993.1.29.)
- 주러시아대사관의 1992년 4/4분기 자원 분야 업무추진 실적(2.5.)
- 러시아의 석유·가스법 제정 동향(2.24.)
-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대러시아 자원 분야 협력 현황 보고(3월)
- CIS(독립국가연합) 국가 간 석유 및 가스협의회 창설 및 운영 관련 자료(4.9.)
- 1992년 한·러시아 정상회담 시 러시아 측이 제의한 광업 분야 협력사업 자료(영어, 러시아어)
- 러시아 광물자원, 석유, 가스 관련 제3차 국제세미나 참석 결과 보고 등

한·베트남 자원협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08 / 7 / 1-78

1992~93년 중 한·베트남 간의 자원협력 추진 관련 내용임.

- 한·베트남 자원협력위원회 설립 추진
 - 1993.8월 상공자원부는 한·베트남 자원협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동 추진을 위한 양국 간 자원협력위원회 설립 필요성 제기
 - 이에 대해 외무부는 제1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1993.9.20.~22., 하노이) 개최를 상기시키면서 별도의 자원협력위 구성보다는 공동위에서 자원협력을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공동위 산하에 자원협력소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

173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한 자료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제11차. Canberra, 1993.7.20.-2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08 / 8 / 1-120

1993.7.20.~21.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1차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79.10월 Anthony 호주 부수상 겸 대외무역자원성 장관 방한 시 장덕진 동자부장관과 동 위원회 구성 합의
- 한국 정부의 직제 개편으로 주무 부처인 동력자원부가 상공부 주도로 개최 추진
- 1993.7.20.~21. 캔버라에서 개최 합의

1734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태곤 상공부 제3차관보
- 호주 측: Russell Higgins 1차산업에너지부 차관보

3. 주요 의제

- 세계 및 양국의 에너지·자원 현황, 정책 및 교역, 공동개발 및 국제협력

4. 정부 훈령

- 양국 간 자원·에너지협력 강화 및 확대, 그리고 장기적이고 안정적 공급 및 합작개발 기반 강화

5. 회의 결과

- 양국 간 에너지·자원 분야의 장기 수급 전망, 자원 분야 교역증진, 주요 자원의 국제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대한 공동 노력방안 등 논의
- 양국의 에너지 현황과 정책에 관해 토의하고, 특히 한국의 전력개발계획 소개
- 양국 간 에너지·자원 교역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 협의
- 양국 간 광물자원 공동개발 방안 협의

한·러시아 자원협력위원회 사전전문가 회의. 서울, 1993.3.25.-26.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08 / 9 / 1-246

한·러시아 자원협력위원회 사전 전문가 회의가 1993.3.25.~30.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2.5월 동력자원부장관의 러시아 방문 시, 한·러시아 자원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
- 제1차 한·러시아 자원협력위원회 개최에 앞서 실무회의를 1993.3.25.~30. 서울에서 개최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 박영한 상공자원부 자원개발국장
- 러시아 측
 - Vasiliev 연료에너지부 국제협력국장

3. 주요 의제

- 제1차 한·러시아 자원협력위원회 세부구성 및 운영방안, 양국 간 에너지 현황 및 교역
- 석유 및 천연가스 공동개발, 석탄 및 기타 광물자원개발
- 한·러시아 정상회담 시 제의한 6개 프로젝트 등 유망 광구개발 등

4. 회의 결과(합의의사록 서명)

- 차관급을 공동위원장으로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 1993년 말경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러시아의 에너지 및 한국의 공산품 간 상호보완적 교역증대에 노력하기로 함.
- 러시아 측은 3천 개에 달하는 노후 유정개발에 한국 측의 적극 참여를 요청함.
- 한국 측은 프라보우르미 주석 광산, 우다칸 동 광산, 하켄샤 금 광산에 대한 제반 정보를 요청, 러시아 측은 석탄광 개발에 한국업체의 참여를 요청함.

5. 특이사항

- 러시아 측: 러시아 자원개발에 한국 측이 자금을 제공하여 공동개발한 후 개발된 자원을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희망
- 한국 측: 사업타당성 조사와 민간기업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의 재정지원 검토는 한국 기업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능함을 설명

나미비아 광업 투자회의. Windhoek(나미비아), 1993.3.17.-19.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08 / 10 / 1-64

1993.3.17.~19.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개최된 나미비아 광업 투자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추진 배경

- 1992.7.28. 나미비아 광업에너지장관은 서한으로 나미비아 광업투자회의에 한국 참가를 요청
 - 광업투자회의는 나미비아 광업에너지부 및 투자센터 공동으로 1993.3.17.~19. 개최
- 동력자원부가 참가 기업을 두 차례 물색한 끝에 고려아연(주) 및 광업진흥공사가 참가 의사 표명

1736

2. 회의 결과

- 참가자
 - 30여 개국 300여 명
 - 서림금속(주), 고려아연(주), 영풍산업(주), 광업진흥공사 등
- 주요 내용
 - 나미비아 광업 관계자들의 나미비아 광업 현황 및 전망 보고
 - 관계 인사들이 나미비아 투자환경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
- 평가
 - 나미비아 광업 투자회의는 각계에서 폭넓은 호응과 반응을 표시
 - 한국기업의 참석으로 나미비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
 - 향후 한국기업은 나미비아 아연광 개발사업 합작투자 또는 제련·아연 수입 검토 전망

해외자원개발심의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08 / 11 / 1-235

1992~93년 중 해외자원개발심의회 주요 동향임.

1. 심의 안건

- 삼성물산(주), 알제리 Issaouane 육상광구 석유탐사사업
- 현대종합상사(주) 포함 컨소시엄, 호주·인도네시아 해상 공동개발구역 2개 광구 석유탐사사업
- 한라자원(주), 파푸아뉴기니 PPL-123 육·해상 광구 석유탐사사업
- 유공(주) 및 선경(주), 가이아나 Takutu 육상광구 석유탐사사업
- 한국석유개발공사(8개사 컨소시엄 대표), 베트남 11-2 해상광구 석유탐사사업
- 한보에너지(주), 요르단 Risha 및 Sirhan 육상광구 석유탐사사업
- 유공(주), 리비아 NC170, NC171, NC172 육상광구 석유탐사사업
- 한솔종합임산(주),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Bunbury 지역산림개발사업
- 대우(주), 앙골라 2-92 해상광구 석유탐사사업
- 유공(주), 이집트 자파라나 해상광구 석유개발사업 변경
- 현대중공업(주), 베네수엘라 팔콘주 해상광구 석유개발사업

2. 외무부 심의 결과

- 해당지역 관할 공간의 현지 정세 및 사업 여건 등 파악을 토대로 신청사업 검토
- 대체로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 및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
 - 다만, 알제리 및 리비아 등 국가는 정세가 유동적인 점에 유의를 당부

1737

대한민국 외교부

McKnight, Bill 캐나다 에너지광업자원부 장관 방한, 1993.3.5.-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08 / 12 / 1-14

Bill McKnight 캐나다 에너지광업자원부 장관의 1993.3.5.~9. 방한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배경

- 캐나다 측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협의 및 캐나다 홍보행사 참석을 위해 추진
 - 1993.3월 중 McKnight 장관이 방한하여 한국 정부와 업계 지도자 면담 희망
- 외무부는 방한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설명
 - 신정부 출범에 따른 내각 구성 및 정부조직 개편 진행 중

1738

2. 캐나다 측 관심사항

- 월성 원전 2호기 초기 장전용 중수(약 850만 달러 상당) 구매 입찰
- 월성 원전 5, 6호기 건설 전망 파악
- 제1차 한·캐나다 간 에너지·광물자원협력 실무회의 개최

3. 진전사항

- 1993.2.26.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공한으로 McKnight 장관의 방한 추진 일정을 외무부에 통보
 - 기간: 1993.3.5.~9.
 - 방문: 월성원전, 포항제철, 한국전력, 현대, 금성, 대우
 - 면담: 상공자원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전경련 회장

Abdullah Bin Hamad AL-ATTIYAH 카타르 동력산업장관 방한, 1993.5.20.-2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108 / 13 / 1-41

Abdullah Bin Hamad AL-ATTIYAH 카타르 동력산업장관의 1993.5.20.~23.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카타르 측 희망에 따라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명의 초청

2. 방한 목적

- 카타르 LNG 추가판매 교섭

3. 방한 인사

- Abdullah Bin Hamad AL-ATTIYAH 카타르 동력산업장관, Al-Marri 카타르 석유공사 사장, Al-Khalifa 주한 카타르대사 등

4. 주요 일정

- 한국가스공사 사장 면담
- 상공자원부장관 예방 및 오찬, 외무부차관 면담
-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면담

5. 방한 결과(외무부차관 면담 결과)

- 외무부차관은 한·카타르 관계 발전에 만족하며, 최근 카타르로부터 다량의 LNG 도입 계약은 양국 간의 관계강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 상공부장관 방문 시 통상 증진방안을 협의한바, 한국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중동 진출을 촉구함. 특히 철강, 에너지, 석유화학 분야 등 LNG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합작투자 진출 환영, 외국기업의 단독 진출보다는 카타르 국내기업과의 합작투자가 보다 용이하다고 언급함.

1739

대한민국 외교부

Kostyunin, V. N. 러시아 연료에너지부 제1차관 방한, 1993.11.3.-1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08 / 14 / 1-34

V. N. Kostyunin 러시아 연료에너지부 제1차관이 1993.11.3.~10. 방한함.

1. 방한 목적

- 상공자원부를 방문, 한·러시아 자원협력위원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의 자본참여, 러시아 측의 원유제공 및 이에 대한 대가로 한국정유회사의 주식취득 등 양국 간 협력방안 논의
- 한국 관련업체와 러시아의 연료·에너지 분야 기계설비 투자 참여 등 협력방안 협의

1740

2. 주요 일정

- 대전 엑스포 참관
- 상공자원부, 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방문
- 대우, 삼성, 유공, 고합 등 업계 방문

3. 주요 협의내용

- 제1차 한·러시아 자원협력위원회 개최(1994년 상반기)
- 사할린 가스전 개발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 사하(아쿠트) 가스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조속 추진
- 러시아 원유공급 및 국내 정유사 주식취득 등 자본 참여

러시아 사하공화국 내 야쿠티아 천연가스 개발사업 및 가스 수송관 건설 추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08 / 15 / 1-149

1993년 중 한·러시아 간의 야쿠트 천연가스 개발사업 및 가스 수송관 건설 추진 관련 내용임.

1. 사업 개요

- 추진 주체: 석유개발공사 등 12개사
- 대상: 러시아 야쿠트 가스전
 - 확인 매장량: 약 6억 톤(LNG 환산), 추정 매장량: 71억 톤
 - 총 사업비: 200~250억 달러
 - 개발에 10년 이상 소요, 2005~2010년 생산 개시 예상
 - 연간 약 1천만 톤 생산 전망
 -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으로 가스 수송
- 추진 방향
 - 타당성 조사 참여를 통해 가스개발의 기득권 확보
 - 기술 및 자원 능력이 있는 미국 및 일본 등 기업과 국제 컨소시엄 추진

2. 배경 및 진전사항

- 1992.5월 진남 동력자원부장관의 러시아 방문 시 예비 타당성조사에 합의
 - 1992.7.6.~19. 러시아 자원조사단 파견
 - 7.29. 한국 측 컨소시엄 구성(최초 9개사)
- 1992.9.2.~5. 한·러·사하 컨소시엄 합의서 체결
 - 공동위원회 설치 합의서, 예비 타당성조사 공동운영 합의서, 3개 정부 간 지지 합의서
- 1992.12.28.~30. 제1차 컨소시엄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 1993.5.9.~24. 한·러·사하 컨소시엄 실무회의(모스크바)
- 이후 예비 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소요예산 규모에 합의하지 못하고 진전 별무
 - 한국 측: 830만 달러 주장
 - 러·사하 측: 2,400만 달러 주장

1741

대한민국-러시아-야쿠티아

한국의 원자력 현황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3-108 / 17 / 1-129

1993년 중 한국의 원자력 현황 관련 내용임.

1. 영국과 플루토늄 추출계약 추진(1993.1.10.자 NYT 보도)

- 국내 일간지 관련 보도

2. 국가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구축에 관한 자문회의 참석 요청(1993.2.18.)

- 한국원자력연구소, 핵 비확산 동향 및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구축방안 관련 자문회의(1993.3.9.) 소집

3. Green Peace International(GPI)의 동북아 플루토늄 현황 보고서(1993.3.3., 주유엔대사 보고)

4.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GPI 측 질의사항에 대해 한국은 1991.11월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재처리 시설 건설 권리까지 포기하였음을 설명하고, 한국으로서는 핵연료의 재처리 필요성도 인센티브도 없음을 설명(1993.3.15., 주유엔대사 보고)

5. 외무부는 한국이 영국과 핵재처리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Greenpeace 서한 내용은 사실 무근임을 주유엔대표부에 확인(1993.5.27.)

6. 동북아시아 원자력 정세와 협력 전망 세미나(1993.6.26., 한국원자력연구소 주최)

7. 미 에너지부 내부규정(1993.9.30.)

- 미국 에너지부와 산하 연구시설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보안 통제
- 국가 안보상황,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및 테러 지원 문제 등을 고려하여 50개 국가를 Sensitive Countries로 분류(한국 포함)

한·호주 원자력 정책협의회, 제3차. Canberra(호주), 1993.6.2.-4.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08 / 18 / 1-127

1993.6.2.~4.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3차 한·호주 원자력 정책협의회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이승구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
- 호주 측: Ian Cousins 외교부 국제안보국장 대행

2. 주요 의제

- 원자력 정책개발 및 국제협력
- 한·호주 원자력협정 관련 이행점검
- 핵 비확산 문제
-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강화방안 및 기술협력방안 협의

3. 정부 훈령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한·호주 간 협력 제고
 - 특히 원자력 신소재 개발,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핵물질안전조치제도, 중성자 산란 등 분야 협력 증진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4. 회의 결과

- 원자력 개발
 - 양측은 원자력 정책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현황 설명 및 의견 교환
- 한·호주 원자력협력협정 및 재이전 각서 운영 평가
- 핵 비확산 문제
 - 이라크 핵 개발,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의 NPT(핵확산금지조약) 미가입 및 북한의 NPT 탈퇴 등에 대해 상당한 우려 표명
- IAEA의 재정적 어려움과 안전조치체계 효율성에 관한 의견 교환 및 안전조치 강화방안 협의
- 원자력 신소재 개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및 응용, 핵물질보장조치제도 등 협의
- 중성자 산란, 핵종 이동모델 연구, 방사성 동위원소 응용 신기술 등에 관한 지속적인 협력 합의

174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한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제11차. 서울, 1993.10.28.-2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08 / 19 / 1-159

제11차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가 1993.10.28.~29.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과학기술처 원자력 정책관
- 캐나다 측: Sunquist 주한 캐나다대사관 공사

2. 주요 의제

- 국제협력 의제
 - 1995년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 및 연장 회의
 - IAEA(국제원자력기구)
 - NSG(원자력공급국그룹)
 - 지역 핵 비확산 및 민감국가 문제
- 양국 간 협력 의제
 -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 기술협력과제 추진 합의

3. 특이사항

-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 기술개발협력 강화 및 원자력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제3국 공동진출 방안 모색
-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하여 추진하기로 합의

Guizard, Claude 프랑스 원자력 안전위원회 사무총장 방한, 1993.12.1.-6.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08 / 20 / 1-28

Claude Guizard 프랑스 원자력 안전위원회 사무총장이 1993.12.1.~6. 방한함.

1. 방한 목적

- 프랑스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원자력 안전 분야 협력증진 방안 협의

2. 주요 일정

- 과기처차관 면담
-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면담 및 원장 주최 오찬
- KAERI(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 및 소장 면담

3. 방한 결과(외무부 제2차관보와의 면담 시 주요 내용)

- Guizard 사무총장은 프랑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수상실 직속기구로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정책 자문역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원자력 안전에 관해 프랑스의 축적된 노하우를 한국과 교류하기를 희망
 - 모든 폐기물은 발생시킨 국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동해 핵투기 관련,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핵폐기물도 해양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함.
- 제2차관보는 가능하다면 본인이 의장으로 있는 한·프랑스 경제공동위원회에서도 원자력 안전 문제가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함.

1745

대한민국 외교부外事部

한·프랑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제9차. Paris, 1993.5.3.-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08 / 21 / 1-168

제9차 한·프랑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가 1993.5.3.~7. 파리에서 개최됨.

1.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지호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관
- 프랑스 측: De La Fortelle 원자력청 국제협력국장

2. 주요 의제

- 한·프랑스 양국 간 원자력 정책 기본방향 및 원자력 분야 협력증진 방안 협의
- 북한 핵 문제 공동대처와 관련, 프랑스 정부 측의 협조적 태도 평가 및 향후 계속적 협조 당부
- 핵 사고 시 대처·복구기술 개발 및 원자로 안전성 분야 협력 증진 등 18개 기술협력 과제 협의

3. 회의 결과

- 양국 대표단은 회의 결과를 회의 토의록(ROD)으로 작성,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한 뒤 폐회
- 한국 측 주요 성과
 - 원자력 안전관리 기술 분야 협력, 국민의 수용 증진을 위한 프랑스의 경험 전수, 원자력 기술 및 전문가 교류강화 등
- 전망
 - 프랑스 측이 한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및 중장기계획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에 비추어, 특히 한국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 원자로 운용의 안전성 증진 및 방사선편폐물 처리 등에 있어서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일본 원자력협의회, 제3차. 서울, 1993.1.19.-20.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08 / 22 / 1-99

1993.1.19.~20.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일본 원자력협의회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일본 측: 스토 다카야 외무성 과학기술 담당 심의관

2. 토의 의제

- 양국의 원자력 정책
- 제3국과의 원자력 협력
- 양국 간 원자력 협력 등

3. 정부 훈령

- 회의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술협력 확대 강화방안 논의 및 도출의 장으로 활용
- 한국의 원자력 정책이 NPT(핵확산금지조약) 기본정신에 입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 확산 금지 지향함을 설명
- 북한 핵 관련 한국 측이 제의한 남북 상호사찰의 조기 수락을 위한 일본 측의 협력 요청
- 차세대 원자로, 지능로봇 기술 등 첨단 원자력 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일본 측의 협조 당부

스웨덴의 영광 원자력발전소 4호기 연료 도입 관련 확인 요청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09 / 1 / 1-9

1993년 중 스웨덴의 영광 원자력발전소 4호기 연료 도입 관련 내용임.

1. 스웨덴 외무성 요청사항(1993.6.23.)

- 자국 ABB사는 한국에 수출 예정인 우라늄 관련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NPT(핵확산금지조약) 정신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인을 요청함.
 - 동 연료는 평화적이고 비폭발적 목적으로만 사용
 - 동 연료의 IAEA 핵안전조치 적용
 - 동 연료의 물리적 방호조치 부여
 - 동 연료의 이전 및 재이전 규정 준수

2. 과학기술처, 1993.10.23. 상기 요청에 대해 국제 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약속함.

한·터키 원자력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3-109 / 2 / 1-65

1993.10.12.~15.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된 제1회 한·튀르키예 원자력 기술포럼 관련 내용임.

1. 개요

- 튀르키예 공업기술자협회 주관 및 튀르키예 에너지지원성의 협조

2. 참가자

- 문석형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부원장
- 김화섭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전사업본부장
- 조건우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과학관보

3. 참가 목적

- 한국의 원자력 건설 경험 홍보
- 양국 간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의 기술, 경험 이전 등 가능한 협력 모색

1749

대한민국 에너지·환경 정책

한·영국 원자력협의회, 제2차. 서울, 1993.4.20.-2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09 / 3 / 1-237

1993.4.20.~21.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영국 원자력협의회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1.11월 한·영국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 1992.5월 제1차 한·영국 원자력협의회 개최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재희 과학기술처 원자력실장
- 영국 측: Timothy Walker 통산성 원자력국장(IAEA(국제원자력기구) 영국 측 이사)

3. 회의 의제

- 정책 의제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영국 양국 간 공동 대처방안 협의
 - 영국이 개발한 가스냉각식 흑연감속 원자로 기술과 북한이 개방 추진해 온 원자로 기술의 비교 설명
 - 양국의 원자력 정책과 양자 및 다자 간 원자력 국제협력 현황
- 기술협력 의제
 -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의 장기관리 정책 연구

한·미국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제14차. Washington D.C., 1992.11.18.-20.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09 / 4 / 1-147

1. 제14차 한·미국 원자력 공동위(1992.11.18.~20., 워싱턴 D.C.)

- 수석대표
 - 한국 측: 홍재희 과기처 원자력실장
 - 미국 측: Statford 국무부 부차관보
- 주요 의제
 - 가압수형 원자로 사용 후 핵연료의 CANDU로 직접 사용 연구 협력
 - 협정 개정 및 약정 체결 협의
- 결과
 - 미국 측은 고속로 관련, 중장기 연구개발 발표는 시기상 부적절함을 설명
 - 미국 측은 소련의 원전 안전지원계획을 설명하고 한국의 협조 요청
 - 11.20. 합의록 서명

2. 제10차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위(1992.11.23.~25., 오타와)

- 수석대표: 홍재희 과기처 원자력실장
- 주요 의제
 - 가압수형 원자로 사용 후 핵연료의 CANDU로 직접 사용 연구 협력
 - 고속 증식로 기술협력

1751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Las Palmas를 기지로 한 대서양 어장 조업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09 / 5 / 1-90

1990~93년 중 서부아프리카 국가 연안에서 조업 중인 한국어선의 현황 및 주라스팔마스 총영사관의 지원활동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라스팔마스 어업진출 현황

- 진출 연혁
 - 1966.3월 수산개발공사의 라스팔마스기지 개설
 - 1977년 연안경제수역 선포로 한국어선 철수 개시
- 현황(1989.12월 현재)
 - 북양수산 등 18개사 진출
 - 어선 40척, 선원 7,011명, 생산 32,000톤, 수출 5,800만 달러
- 주요 현안
 - 교민 법적지위 문제: 1,570명 중 750명만 거주허가 획득
 - 어장 개척 문제: 북서아프리카 연안과 대서양 연안에서 단순입어 조업 중이나 연안 국가의 자원보호 및 수산업 자국화 정책에 따라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 정부 간 교섭을 통해 장기 입어 확보 필요

2. 주라스팔마스총영사관의 어업활동 지원

- Anastasio Travieso Quintana 주지사 방한(1990.8.7.~9.4.)
 - 외무부차관 예방 계기, 한국 교민의 체류자격 취득 등 체류 교민 지원 요청
- 서부아프리카 연안 어획물의 국내 반입 시 재외공관 확인 절차 시행
- 우루과이 영해 오징어 조업 허용조치 안내
- 시에라리온 수산장관 대리 초청 시에라리온 수역의 새우 트롤선 입어 관련 회의 개최
- 국제 수산장관회의(1993.9월, 스페인) 결과 신문기사 종합 보고
- 1992년도 한국 국적선 및 한국 교민 사용 제3국적선의 서부아프리카 연안국 입어 동향 및 입어 조건 보고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관할 수역 내 조업 문제. 전2권 (V.1 관할수역 내 조업규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 북미1과

MF번호 2023-109 / 6 / 1-172

1992~93년 중 한국 정부는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수역 내 한국어선 철수 관련 협상(1993.2.8.~10., 캐나다) 이후 한국어선의 철수 결정 및 NAFO 가입을 추진함.

1. NAFO 수역 한국 조업어선 철수

- 배경: 캐나다 측은 1990.9월 이래 한국어선이 NAFO 수역에서 전면 철수해 줄 것을 공식 요청
- 수상 3회, 외상 등 각료급 요청 5회
- 경과: 캐나다 측의 지속적인 철수요구에 대해 정부 및 업계 대표단을 캐나다에 파견하여 한국 입장 설명
- 캐나다 측은 1993.4.30.까지 전면 철수를 재차 요구하고 불응 시 보복조치 경고
- 철수 결정: 한국 정부는 한·캐나다 우호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철수를 설득

2. 제15차 NAFO 총회(1993.9.6.~10., 캐나다 다트머스)

- 한국대표단(옵서버 파견)
- 박규성 주미국대사관 수산관, 윤종곤 주캐나다대사관 참사관
- 주요 성과
- NAFO 수역 내 한국어선 철수 후 캐나다 측의 적극 협력 의사 확인
- NAFO 가입 필요성 확인
- 한·캐나다 간 어업협력 기반 구축

3. NAFO 수역 내 한국선원 편의 국적선 불법조업 문제

-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한국선원이 승선한 편의 국적선이 NAFO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상기 선박 철수를 위한 재제조치 요청

1753

대한민국 어업관리서 어항지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관할 수역 내 조업 문제. 전2권 (V.2 어업교섭단 파견)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 북미1과

MF번호 2023-109 / 7 / 1-264

1992~93년 중 한국 정부는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의 철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NAFO 수역 조업규제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2.12.1.)

- 참석 범위
 - 경제기획원차관, 외무부, 상공부, 수산청
- 논의 내용
 - NAFO 수역 조업규제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 회의 결과
 - 수산청의 단계적 철수안대로 캐나다와 교섭을 추진하기로 함.
 - 교섭활동은 외무부가 추진하고, 수산청은 조속 대표단을 캐나다에 파견하기로 함.
 - 수산청은 동 교섭에 NAFO 가입(1993년 상반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지참하기로 함.

2. NAFO 정부대표단 파견

- 캐나다 정부의 NAFO 수역 내 한국어선 전면철수 요청 관련, 캐나다 측 이해를 촉구하고자 함.
- 당초 1992.12월 수산청 차장을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캐나다 측 사정으로 1993.2.8.~10.로 연기
- 대표단
 - 한국 측(7명): 허성환 수산청 차장, 이태식 외무부 심의관, 민간업계 2명 등
 - 캐나다 측(9명): Randolph Cherson 외무부 어업대사, Bob Applebaum 수산해양부 국제국장
- 교섭 결과
 - 한국 측: 어선의 점진적 철수, 1993년 NAFO 연례회의 이전 NAFO 가입, NAFO 가입 후 한국어선 어획 쿼터 확보 및 미이용 자원 할당에 캐나다 측 협조 요청
 - 캐나다 측: 1993.4.30.까지 한국어선 완전철수 요구, 동 기한 내 철수하지 않으면 제반 제재 조치 강구 및 자원 회복 시까지 쿼터 할당은 불가하다는 입장

오호츠크 공해 조업 문제. 전5권 (V.1 1-4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09 / 8 / 1-215

1993년 중 오호츠크 공해 조업 문제 관련 내용임.

1. 경위 및 배경

- 러시아 정부는 1992년 이래 오호츠크 공해상에서 무절제한 외국어선의 명태 어획이 어족자원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수차례 조업 중단을 요청
 - 러시아 최고회의는 오호츠크 공해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동 수역의 조업 전면 중단 등을 심의함.
- 1993.2.24. 러시아 최고회의, 오호츠크 공해를 생태계 재난지역으로 지정, 동 수역에 조업 모라토리엄을 실시하는 요지의 결의안 상정
- 1993.4.8. 야로브 러시아 부수상, 5월 중 관련국 간 다자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동 회의 개최에 앞서 조업국의 자발적인 조업 중단을 요청
- 1993.4.16. 러시아 최고회의, 모라토리엄 결의안 통과
 -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동 공해상 어업활동 잠정 중단
 - 동 수역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체제 강구를 위한 관계국 회의 제의

2. 한국 측 대책

- 러시아의 일방적 조치인 오호츠크 공해상 모라토리엄은 국제법상 공해 어업 자유의 원칙 등에 위반임을 들어 수용 불가 입장 견지, 다만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폴란드 등 관련국 간 다자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동 공해상 조업을 잠정 중단 결정
- 한국어선의 동 공해상으로부터의 철수는 한국 정부가 결정한 자율규제이며, 러시아 최고회의의 결의안을 따른 것은 아님(4.14. 한국 입장 통보).
- 한·러시아 어업협력 증진방안 강구
 - 러시아 어업위원장 방한 초청
 - 한국어선의 쿼터 조업 및 공동어로 사업 증대
- 조업국과 공동 대응
 - 일본, 중국, 폴란드 정부와 긴밀한 협의 진행
 - 다자회의 개최 시 조업국 간 사전준비 회의 개최로 공동 협조방안 모색

1755

대한민국 어업협력사업

오호츠크 공해 조업 문제. 전5권 (V.2 5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09 / 9 / 1-344

1993년 중 오호츠크 공해 조업 문제 관련 내용임.

1. 오호츠크 공해 수역 관련 다자회의 개최 추진

- 러시아 정부는 1993.5.11. 오호츠크 공해상의 어족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연안국인 러시아와 조업국(한국, 일본, 중국, 폴란드)이 참여하는 정부 간 회의를 1993.5.31.~6.1. 모스크바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동 다자회의 직전 모든 참가국과 러시아 간 양자협의로 개최 추진
- 한국대표단 파견
 - 수석대표: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일장: 조업국 사전회의(1993.5.27.), 한·러시아 양자회의(1993.5.28.~29.), 다자회의(1993.5.31.~6.1.)
 - 훈령: 오호츠크 공해상 어업 자유의 원칙을 견지하되 자원의 보존 관리에 협조, 장기적 안정 조업 확보 추진

2. 한·러시아 어업 양자회의(1993.5.28.)

- 러시아 측은 한국어선의 오호츠크 공해 진입 및 조업에 대해 유감 표명
 - 한국 측이 조사한바, 동 선박은 조업이 아닌 선상 수매사업 후 귀항 중임을 확인
- 한국 측은 동 공해 자원 보존에 협력할 것이나, 관련 당사국이 수락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 기타 상업 어획 쿼터 재배정 및 어종 교환사업 등 협의

3. 오호츠크 공해 조업국 회의(1993.5.30., 주러시아대사관)

- 조원일 한국 수석대표 주재로 한국, 일본, 중국 및 폴란드 대표단 참석
- 러시아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모라토리엄에 반대하며, 과학적 사실조사를 위한 임시 과학조사 위원회 설치 합의 및 다자회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조업 감축 등 조치 시행 확인

4. 상기 회의 관련 자료 수록

- 오호츠크 공해 관계국 다자 간 회의 대책(1993.5월, 외무부 국제경제국)
- Status Of The Okhotsk Sea Walleye Pollock Resource(국립수산진흥원)

오호츠크 공해 조업 문제. 전5권 (V.3 6-7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09 / 10 / 1-208

정부는 1993.5.31.~6.1.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오호츠크 공해 관련국 회의에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결과

-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주재로 자원고갈이 심각한 상황에 따라 대책 강구 강조
 - 우선 3년간의 자발적 모라토리엄 실시, 장기대책으로 다자 간 회의의 정기적 개최 및 명태자원 보존방안 수립 제의
 - 폴란드 측 제의로 과학자 실무그룹 회의를 1993.9월 중 개최하여 잠정적 자원평가 실시 추진
- 속개회의(6.1.)에서 관계대책 합의
 - 제2차 회의(1993.10월)에서 공해 명태자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임시 과학자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중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자원평가회의 개최
 - 모라토리엄에 대한 합의는 실패, 자율 잠정조치를 공동보고서에 포함하며, 한국, 중국 및 폴란드는 1992년 대비 25% 어획노력량 감축 추진
 - 러시아 측은 25% 감축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
- 러시아 측은 3년간 모라토리엄 대신 차기 회의(1993.10월)까지 전 조업국의 자발적 모라토리엄 실시를 제의하였으나, 조업국 반대로 미채택

2. 후속조치 및 상황

- 1993.6.11. 외무부는 수산청에 대해 25% 감축 전제하에 오호츠크 조업 재개 관련 유엔 공해 어업회의가 종료되는 8월 이후 시작을 권고
- 동 회의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 어민은 불만을 표하고, 폴란드어선의 계속 조업으로 비난 비등(주 러시아대사관 보고), 모라토리엄 강제조치 대신 조업국에 대한 수산협력 거부 등 경제제재 검토
 - 다만, 러시아 최고회의에서 채택된 모라토리엄의 경우 공해에까지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
 - 러시아 해군은 동 수역에서 군사훈련 실시 검토 등 조업 중단 노력
- 중국의 경우 러시아 측이 차기 회의 시까지 조업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25% 감축의 범위 내에서
 - 7.1. 조업 재개 추진
- 7.5. Panov 주한 러시아대사는 열친 러시아 대통령 친서를 한국 측에 전달
 - 오호츠크 공해에서 한국어선의 제2차 회의 시까지 조업 중단 요청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은 7.14. 전면적 조업 중단은 거부하고, 향후 대폭적인 조업 감축 검토 용의를 표명

1757

대한민국 어업관리청

오호츠크 공해 조업 문제. 전5권 (V.4 8-9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09 / 11 / 1-300

1758

1. 오호츠크 공해 조업 재개 관련 동향

- 러시아 정부는 동 수역 내 조업의 전면 중단을 관철하기 위해 폴란드 조업선을 나포하고, 잠정 중단 중인 한국 측에 대해서는 옐친 러시아 대통령 친서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업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업 재개 조건을 검토
- 한국선단은 오호츠크 공해에서 조업을 잠정 중단한 이후 베링 해에서 조업 중인바, 감축 조업 입장은 불변이나 당초 조업 재개 시점으로 1993.8월 대신 9월 이후로 검토
 - 9월 이후 오호츠크 해 및 쿠릴 근해 러시아 경제수역 내 조업 물량 확보 시 공해 조업 자체 계속 유지

2. 김영삼 대통령과 쇼힌 러시아 부총리 간의 오호츠크 공해 조업 관련 면담(1993.8.24.)

- 한국어선의 조업 재개 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미국과 협의, 오호츠크 공해 조업 모라토리엄 실시를 고려하고 있으며, 조업 중단으로 한국 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면 러시아 경제수역 내 조업을 검토 할 용의 표시
-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은 1993.8.27. Panov 주한 러시아대사 면담 시 조업 중단 지속에 대한 애로 설명 및 대체 어장(러시아 경제수역 내 4만 톤의 어획 쿼터) 제공 요청
- 홍순영 외무부차관은 8.31.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면담 시 계속 조업 중단에 협조할 것이나, 기요청한 어획 쿼터 배정의 호의적 고려를 요청

3. 오호츠크 공해 어업 관련 과학자 회의(1993.9.21.~23., 블라디보스토크)

- 수석대표: 태석원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 영사
- 정부 훈령
 - 조업국 사전 조정회의에서 조업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이 조정되도록 하고, 본 회의에서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오호츠크 공해 명태 조업 재개를 위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합리적 대응책을 수립함.
 - 감축 조업은 50% 수준 유지
- 회의 결과
 - 러시아 북부 오호츠크 해 난치어 조사 결과 명태자원이 1987년부터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이것은 러시아어선의 Cpue 감소에 의해서도 확인됨. 이러한 명태자원의 감소는 러시아 과학 자의 의견으로서 오호츠크 해에서의 외국어선에 의한 어획의 영향에 부분적으로 기인함.
 - 1991년 이후 오호츠크 해에서 중국, 한국, 폴란드의 Cpue 자료에 의하면 명태의 풍도가 현저 하게 감소하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음.



- 과학자 회의는 오호츠크 해 관계국 회의에 제1차 회의에서 규정한 어획노력량의 25% 감소를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권고함.
- 명태자원 상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과학자 회의 참가자는 과학조사 노력을 증진하고, 또 북부오호츠크 해 명태자원에 관한 과학 자료의 교환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음에 동의함.
- 한국대표단 활동
 - 본회의 개최 시부터 오호츠크 해 명태자원 보존을 위한 한국 정부의 관심 사항을 표명하고, 오호츠크 해에서의 명태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금년 5월 이후부터 공해 조업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여 현재까지 조업 중단 중임을 설명
 - 금번 회의는 과학자 간의 회의로서 서로 간의 과학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합리적인 자원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어떠한 과학적 근거 없이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조치(모라토리엄)는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

오호츠크 공해 조업 문제. 전5권 (V.5 10-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09 / 12 / 1-175

1760

1. 오호츠크 공해 조업 관련 동향

- 러시아 해군, 조업국 압박차원에서 동 공해상 함포사격 및 로켓발사 훈련 실시(1993.9.15.~18.)
- 러시아 정부 각의는 1993.9.22. 각령 제962호로 오호츠크 해 어족 및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공포, 이는 동 공해상에서 조업하였거나 조업 중인 외국어선에 대해 금후 러시아 경제수역 내 어획량 할당 금지 및 조업선의 러시아 항구 이용 금지 등 조업국 및 조업국 어선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포함함.
- 수산청은 10.13. 업계 상황상 동 공해 조업 재개 불가피성을 외무부에 전달하고, 외무부는 10.20. 조업 재개에 대해 당분간 유예 필요 회신

2. 제2차 오호츠크 공해 어업회의(1993.10.27.~28., 모스크바)

- 수석대표: 이태식 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익관
- 정부 훈령
 - 과학자 회의 권고 수준인 25% 감축 조업을 우선 실시하고, 추가적인 조치는 차기 과학자 회의에서 자원평가 이후 검토
 - 25% 이상 감축 필요시 단계적으로 교섭 추진, 50% 감축까지 수용 가능
- 회의 결과
 - 러시아 측은 1992년도 오호츠크 해 명태자원 총량은 480만 톤으로 1988년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 주장, 모라토리엄 타당성 강변, 조업국들은 자원상황 우려 없음을 주장
 - 러시아와 조업국 간 효과적인 자원보존 방법에 관한 근본적 의견 대립으로 합의 없이 종료
 - 공동 과학조사의 계속 및 필요한 정보 교류 필요성에 공감

3. 제3차 한·러시아 어업위원회 개최 및 오호츠크 공해 어업협약(1993.11.15.~20., 서울)

- 1993.12월분 어획 쿼터 및 1994년도분 합의
- 러시아 측이 정부 간 어획 쿼터 합의 이행 조건으로 오호츠크 공해 조업 재개 입장 유보

한·인도네시아 어업협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10 / 3 / 1-40

1992~93년 중 한·인도네시아 간의 어업협력 추진 관련 내용임.

1. 인도네시아와의 합작 새우양식사업 추진 동향(1992.6~93.8월)

- 합작사: (한국) 코리수산, (인도네시아) Indofish사
- 합작사: (한국) 한두수산, (인도네시아) Indah사

2. 한국어선의 인도네시아 조업 현황(1992.11월)

- 경제수역 내 조업 허가를 얻기 위한 절차 등 설명

1761

대한민국 어업관리청 어항과

1993년도 한·일본 어업실무자회의, 제1-2차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110 / 4 / 1-119

제1~2차 한·일본 어업실무자회의 개최 관련 일본 연안어업의 현황 내용임.

- 일본 연안어업 현황
 - 연안어업의 개념: 어업제도상 구분, 어업통계상 구분에 대한 정의
 - 연안어업 생산량: 어업규모별 생산량에 대한 상세 어획량 기재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27차. 서울, 1993.4.6.-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110 / 7 / 1-308

1993.4.6.~7. 서울에서 개최된 제27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의 부대회의인 어업자원 전문가회의의 지침 내용임.

- 어업자원 전문가 회의 지침
 - 자원상태에 관한 심의
 - 공동 규제수역과 조사수역에 있어서의 해양환경 및 주요 어업자원에 대한 평가와 공동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및 연구기관 간에 교환된 자료를 중심으로 자원상태의 추이를 분석 평가할 것
 - 자원 관리방안에 관한 심의
 - 자원평가 결과 및 지금까지 상호교환된 자료를 토대로 자원의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최대 지속적 생산을 가능케 하기 위한 어업관리시책의 기본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기타
 - 어업자원 평가 등에 관한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기 정기연차회의에 앞서 어업자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

1763

대한민국 어업관리서 어업자원

일본·러시아 어업관계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10 / 10 / 1-61



1. 일·러시아 간 명태어가 교섭

- 주러시아대사관 수산관이 주러시아 일본대사관 관계관에게서 확인한 일·러시아 간 명태어가 교섭 내용 보고(1993.1.6.)
 - 1992년 어가
 - 북전선 포란테는 톤당 5만 엔, 유상쿼터의 비포란테는 톤당 275달러
 - 1993년 어가
 - 북전선 포란테는 25,000톤(1992년 만 톤)으로 1992년과 동일한 수역인 로파트카 돌단이남(52도 이남) II-1 수역 북부태평양 수역에서 확보했다고 함. 이 중 1만 톤은 달러이비와 톤당 5백 엔에 5만 톤을 이미 계약했고, 15,000톤은 어업위와 교섭 중에 있으나 달러이비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비포란테 또한 교섭 중이라 함.

2.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 관련 일본의 수산 분야 대응책(1993.10.21., 주일본대사관 보고)

- 주일본대사관 수산관이 1993.10.20. 요시자키 일본 수산청 여장보존과장을 접촉,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 관련 일본의 수산 분야 대응책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일본 수산청 산하 서해구 수산연구소 소속 조사선 1척을 11.1. 일본해에 출항시켜 약 2주일간 어개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매년 시행하는 일본해 어개류 안전검사는 금년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추가로 가장 많이 위판되고 있는 니가타 어시장의 어개류에 대한 검사를 양적으로 확대 실시
 - 일본 어민단체인 전어련은 주일본 러시아대사관을 비롯하여 외무성, 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해상투기 중지 및 육상 관리 보관처리 태세를 확립하도록 요청서를 보내는 등 진정 활동을 하고 있음.

한·멕시코 어업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10 / 11 / 1-85

1993년 중 한·멕시코 간 어업협력 관련 내용임.

1. 멕시코 수산부, 1993 멕시코 국제수산박람회(1993.7.30.~8.8.) 참가 초청

- 주멕시코대사는 1993.1.27. 동 박람회가 멕시코가 개최하는 우수한 수산 분야 국제박람회로서 멕시코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수산 분야 외국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업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함.

2. 삼아해양 민원 건에 대한 멕시코 어업법 관련 확인 결과(1993.7.8.)

- 멕시코 국적선 및 멕시코인에 대해서만 조업을 허가하고 외국인에 대한 조업 허가는 불허
- 멕시코인과 외국인과의 용선계약 허가문제 관련 외국인에 대한 용선계약은 불허

3. Uribe 주한 멕시코대사의 수산청장 면담(1993.7.19.) 결과

- 어업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
- 1993 멕시코 국제수산박람회 개최 관련, 멕시코 측은 다음 해 박람회에라도 참가 희망
- 수산청장 멕시코 방문 초청
 - 연 내 멕시코 방문 초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

4. 한·멕시코 수산협력 관련, 전비호 주멕시코대사관 서기관의 Ramos 수산부 국제수산국장 면담 (1993.8.26.) 주요 내용

- 멕시코 수산정책
 - 1992.6월 수산법을 개정하여 수산자원개발 및 상업화, 수산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추진 중
- 멕시코의 외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유무
 - 어업협정을 체결한 바 없으며, 다만 수산기술협력을 위해 제3국과 협력의정서를 체결한 사례는 있음(일본).
- 한·멕시코 어업협정 체결 추진
 - 경제 전관수역 내 조업 허용은 어려우나, 양국 간 기술협력증진, 합작투자 장려 및 경제 전관수역 밖의 200해리 내 직접 조업 허용 등을 포함한 협력의정서 체결은 가능
- 외국인에 대한 상업적 조업 허용
 - 전관수역 내 상업적 조업은 공동투자 형태로 조업할 경우만 가능하며, 외국인 지분 참여분은 최고 49%, 반드시 멕시코 국기 부착 의무

1765

대한민국 어업법 관련 어업법



- 200해리 내 수역
 - 외국어선의 참치 등 어획 조업은 상호주의 하에 허용 가능(사전합의 필요)

5. 주멕시코대사관, 한·멕시코 간 어업협정 체결 건의(1993.9.29.)

- 주멕시코대사관은 칠레, 중국, 태국,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은 정부차원에서 멕시코 측과 어업협력 의정서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체결을 추진하고, 민간차원에서 대멕시코 조업 및 양식 분야 투자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도 제3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멕시코 간 어업협력 추진을 건의함.
 - 멕시코가 칠레, 중국, 태국 간 체결한 어업협력 양해각서(스페인어본) 및 한국어본 번역문 수록

한·노르웨이 어업협력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10 / 12 / 1-18

1991~93년 중 한·노르웨이 간 어업협력 관련 문서임.

1. 한·노르웨이 합작투자 교섭 경위

- 한국 수산업체의 대노르웨이 합작투자
 - 1991.8월 (주)동남 대표는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합작투자 협의
 - 1991.9.4. (주)동남과 노르웨이 Global Fishing사는 어로 합작투자 계약 체결
- 주노르웨이대사관은 수산청의 요청에 따라 관련 기업, 법령, 어획 쿼터 등 조사
 - 1991.10.30. 외국인 투자 한도 및 Global Fishing 신용도 등을 조사
 - 1993.5.5. Global Fishing사의 1992년 및 1993년 어획 쿼터 및 실적 조사

2. Lindeman 주한 노르웨이대사의 수산청 차장 면담(1992.11.17.)

- 한·노르웨이 연구기관 간 교류, 특히 넙치 및 연어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노르웨이 측의 관련 연구기관 및 관계자 등을 통보해주기로 함.
- 노르웨이 측은 한국의 수입 자유화 계획에 고등어를 조기 개방해 주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한·노르웨이 합작사를 통한 고등어 1,500톤은 한·노르웨이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별 배려한 것임을 설명

1767

대한민국 어업협력사업

한·뉴질랜드 어업협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10 / 13 / 1-208

1992~93년 중 한·뉴질랜드 어업회담 및 양국 간 어업협력에 관한 내용임.

1. 한·뉴질랜드 어업회담(1992.10.23.,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정갑래 수산청 어업진흥관
 - 뉴질랜드 측: M. Craig 농수산부 수산총국장
- 훈령
 - 1991~92년 어기 뉴질랜드 수역 한국어선 진출 및 조업 실적을 설명하고, 1992~93년 어기 정부 간 실질 쿼터 배정이 가능하도록 교섭
 - 입어로 문제는 전년 수준에서 교섭하되 오징어의 국내가격을 고려, 30% 인하 노력
 - 수산물 교역에 있어 한국의 수산물 수입개방 조치를 설명
- 회담 결과
 - 1992~93년 어기에 정부 간 쿼터로 오징어 10,200톤 배정을 요청한바, 뉴질랜드 측은 긍정적 검토
 - 입어로 인하 문제는 민간 사항이나, 양국 간 어업협력 차원에서 협조 노력
 - 뉴질랜드의 선원 취업비자 1년 제한을 2년으로 연장

2. 한·뉴질랜드 어업 현안 처리

- 1992.12월 상기 어업회담 결과에 따라 정부 간 오징어 쿼터 확보 추진 및 양국 어업협력 차원에서 뉴질랜드산 전갱이(1천 톤) 수입 추진
 - 1993.1.19. 주뉴질랜드대사관은 동원수산(6,640톤) 등 4개사의 오징어 쿼터 확보 보고
- 1993.3월 뉴질랜드 선원 취업난으로 인한 한국 선원의 취업비자 발급 일시 중단 사태에 대해 주뉴질랜드대사관이 뉴질랜드 당국을 설득, 비자 발급 재개
- 3.17. 주뉴질랜드대사관은 뉴질랜드산 홍합 독소 검출 보고 및 이에 따른 수입 홍합 폐기 등 보건 안전 조치
- 4월 수산청은 원양오징어 채낚기 불법조업 혐의 선박의 위반 여부 관련,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협조 요청, 행정처분 및 어획물 반입 확인

한·러시아 어업위원회, 제3차. 서울, 1993.11.15.-2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10 / 14 / 1-128

1. 제3차 한·러시아 어업위원회 개최(1993.11.15.~20., 서울) 결과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희수 수산청장
 - 러시아 측: 카렐스키 블라디미르 어업위원회 의장
- 명태 어획 쿼터 8만 7천 톤으로 합의
 - 1994.7월 중 어획 쿼터 추가 할당 문제를 협의하기로 약속
- 오호츠크 공해 조업 문제 관련, 한국 측은 양국 정부 간 합의사항이 원활히 이행되는 동안 자율·잠정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기로 함.
- 동해 조업 한국어선들의 러시아 항구 긴급피난에 러시아 측이 적극 협조
- 입어로 합의 전 러시아 측이 쿼터를 취소할 수 없도록 명문화

2. 평가

- 러시아 극동어민들의 반발로 정부 간 쿼터 배정에서는 충분한 쿼터를 확보하지 못한 반면, 민간 계약으로는 20만 톤 이상 확보가 가능하도록 러시아 측이 협조하기로 약속
- 한국 측은 오호츠크 공해 생물자원 보존, 관리방안은 관련국 다자 간 회의에서 협의,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1769

대한민국 어업관리서 영인

한·러시아 어업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10 / 15 / 1-251

1993년 중 한·러시아 간 어업협력 관련 내용임.

1. 한·러시아 민간 어업회의(1993.1.13.~16., 블라디보스토크)

- 개최 배경
 - 한·러시아 어업위원회(1992.12.21.~26., 모스크바)의 후속조치로 1993년도 한국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명태 조업 조건에 관해 협의하기로 함.
 - 러시아는 정부 간 상업 쿼터로 15만 톤을 할당, 한국은 협의 창구로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지정함.
- 대표단(정부대표)
 - 한국 측: 원양어업협회 부회장
 - 러시아 측: Brukhis 어업위원회 부국장
- 회의 결과
 - 양 측은 조업수역, 시기, 입어 선박 수 및 물량에는 합의했으나, 어가, 입어료, 지불조건 등에 합의하지 못함.
 - 이후 외무부와 주러시아대사관은 원양협회 등의 요청으로 러시아 측과 협상하였으나, 1993년 상업 쿼터 확보에 실패하고, 여분이 생기는 경우 한국 측에 우선 배정하기로 함.

2. 한·러시아 수산과학기술협력회의(1993.3.22.~25., 부산 국립수산진흥원)

- 개최 근거: 1992.12.26. 한·러 어업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수산과학기술협력회의를 개최
- 대표단(정부대표)
 - 한국 측: 고영 국립수산진흥원 해양자원부장
 - 러시아 측: Boret TINRO(태평양수산해양연구소) 부소장
- 회의 결과
 - 양국 수역의 오징어 자원조사, 오호츠크 해 및 인접수역의 명태 자원조사 등 협의
 - 차기 회의 1994.5월 블라디보스토크 개최 합의

한·중국 농업협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10 / 16 / 1-121

1992~93년 중 한·중국 간의 농업협력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중국 농업협력위원회 설치 문제

- 중국 농업부는 1993.7월 주중국대사관을 통해 한·중국 농업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가능성 협의를 위해 중국대표단 방한을 희망
- 공동위 역할
 - 양국 간 농업생산 및 과학연구에 관한 정보교환, 양국 농업전문가 방문 주선, 농업기술의 교류 및 경제협력에 관한 결정, 동식물 검역을 포함한 양국 간 농산물 교역에 관한 사항 조정, 농업 유전자원 교환 등

2. 한국 측(농림수산부) 검토의견

- 양국 간 농업기술 교류 증진을 위한 '한·중국 농업협력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
- 다만, 동 위원회 기능으로 '동식물 검역 등 농산물 교역에 관한 조정'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농산물 교역에 관한 사항은 기존 양국 간 경제공동위 및 무역 실무회담 채널을 통해 해결 가능

3. 중국농업실태조사반(단장: 천중인 농림수산부 통상협력관), 중국 방문

- Zhang Yanxi 중국 농업부 부부장 면담(1993.8.17.)
 - 중국 측이 한·중국 농업기술협력위원회 설립을 통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한국 측은 '한·중 경제공동위' 산하에 이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역 제시

1771

대한민국 외교부서 역사자료

IMF(국제통화기금)/World Bank(세계은행) 총회, 제48차. Washington D.C., 1993.9.26.-3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110 / 17 / 1-120

정부는 1993.9.26.~30.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8차 IMF(국제통화기금)/World Bank (세계은행) 총회에 홍재형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한국의 역할 증대, 대외경제정책 방향 등 개진

2. 정부 훈령

- 세계경제 전망 및 선진·개도국 간 협조체제 강화 필요성 강조
- 세계은행과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설명

3. 주요 의제

- 1993년 연차 보고서
- IC(잠정위원회) 및 DC(개발위원회) 보고서
- 1994년도 예산
- 1993~94 합동운용위원회 구성

4. 회의 결과

- 선진국의 성장률 저조, 실업을 증가, 지속적인 보호무역주의 압력에 대해 우려 표명
-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도록 계속적으로 물가안정 및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는 저축 증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지적
-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최빈개도국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 개혁, 외채감축 노력 및 상당한 양허성 자금원조가 필요함을 지적
- 몇몇 전환도상국가들의 거시경제 안정 및 시장경제 전환개혁에 있어서의 진전,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촉진한 IMF의 노력을 환영
- 전환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매우 중요함을 지적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일반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10 / 18 / 1-126

1993년 중 중미 국가의 MIGA(다자투자보증협정) 체결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동 협정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함.

1. 외무부의 중미지역 국가 주재 대사관에 대한 지시

- 중미지역 여러 나라가 해외투자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은행과 MIGA를 맺고 있는 상황 등 파악 보고를 지시
 - MIGA 개요, 주재국과 MIGA 관련사항, 투자보증협정 체결 추진에 미치는 영향 등

2. 주코스타리카, 주엘살바도르, 주파나마대사관 등 보고

- 각 주재국의 다자투자보증기구 가입 협정문 사본(스페인어)
 - MIGA 설립일 및 가입국: 1988.4.12.(1992.2월 현재 77개국 가입)
 - 취지: 세계은행 산하 개도국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보험 성격의 투자보호 기능을 관장하는 기구로서 협정 인준에 의해 신규 회원국 가입을 허용함.
- 보장계획
 - 투자자가 국외송금 보장, 국유화 등 정치적 위험 및 비상업적 위험에 의한 손실을 입는 경우
- 투자보증협정과의 관계
 - 투자보증협정은 당사국 양국민의 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적용되나, MIGA와 같은 다자 간 투자보증기구는 회원국 투자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개도국의 투자 유치 도모에 목적을 두며,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아님.

3. 관련 대사관의 검토 의견

- MIGA가 한국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양자 간 투자보증협정 체결을 선호함.

1773

대한민국-외국면담서-영어작성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제26차. Manila, 1993.5.4.-6.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조

MF번호 2023-110 / 19 / 1-61

정부는 1993.5.4.~6.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6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 홍재형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명호 한국은행 총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53개 회원국 대표단, 옵서버 및 국제금융기구 관계인사

2. 주요 의제

- 역내 개도국의 빈곤 완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
- 환경보호 문제 등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3. 한국대표단 활동

- 역내 개도국 가맹국들의 정책과제 제시
- ADB의 정책과제 제시
- 1993.2월 베트남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5천만 달러 지원 약속 등 역내 개도국에 대한 지원 노력 소개

4. 주요인사 면담

- Li Guixian 중국 인민은행 총재
 - 양국 간 금융협력 증진방안 협의
- ADB 총재
 - 한국의 특별증자 실현을 위한 협조 요청

CABEI(중미경제통합은행)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남미지역협력과 /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110 / 20 / 1-30

1992~93년 중 CABEI(중미경제통합은행)과의 관계 설정 필요성 검토 관련 내용임.

1. 배경

- CABEI이 1992.5.6. 주과테말라대사관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이 동 은행 산하 중미경제사회발전 기금에 출자해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
 - 온두라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CABEI는 한국의 출자를 이미 요청한 적이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이 1991.12월 동 은행에 5백만 달러의 전대자금을 제공하기로 함.

2. 검토 결과

- 외무부는 1992.7.13. 온두라스 소재 CABEI 가입 시 대중미 경험 및 외교 활동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평가하나, 관계부처에서는 예상 출자금(약 1억 5천만 달러)에 비하여 경제적 실익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IDB(미주개발은행)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달함.

1775

대한민국 외교부서 업무지침

IDB(미주개발은행) 총회, 제34차. Hamburg, 1993.3.29.-3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110 / 21 / 1-85

정부는 1993.3.29.~31.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제34차 IDB(미주개발은행) 총회에 박찬진 주함부르크총영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44개 회원국(역내 27, 역외 17) 및 4개 옵서버국(한국, 중국, 대만, 루마니아)

2. 주요 의제

- 8차 일반 증자: 1994년 1/4분기까지 타결 전망
- 경제개발, 사회개발, 중남미 무역환경 개선 등 논의

3. 한국대표단 활동

- 총회 참석
- IDB 부총재,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 미국 재무부 개발은행국장 등을 면담하여 한국의 IDB 가입 문제 타진

4. 회의 결과

- 1992년도 연차보고서 및 결산 재무재표 승인
- 총회 위원회 활동보고
- 주요 내부기구 인사교체
 - 총회 의장: 독일연방 경험성 정무차관이 차기 회의 시까지 총회 의장으로 채택됨.
 - 이사회 개편
- 각국 대표단 기조연설
- 제35차 회의, 1994.4월 중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개최 예정

5. 한국대표단이 현지에서 관찰한 한국의 IDB 가입 전망 및 향후 대책

- 전망
 - 현재 여건상, 당분간 신규 역외국가가 IDB에 가입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 제8차 일반증자계획에 의해 소요되는 자금은 기존 회원국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 국가가 참여할 여지는 적음.
 - 신규 역외국가의 가입을 위해서는 협정을 획기적으로 개정해야 하는바, 동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지는 않을 것임.



● 향후 대책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역외 회원국으로서 지분증대를 도모하는 국가들, 중남미의 주요 국가들(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및 지분양도 용의 표명 국가들과의 양자 접촉 및 교섭
- 지분조정 문제를 둘러싼 여러 관계국들 간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
-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양허적 조건의 자원공여에 적극성(MIF, IIS 참여 검토 등)을 보일 필요

1777

대한민국 외교부의 여왕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총회, 제2차. London, 1993.4.26.-2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지구과

MF번호 2023-111 / 1 / 1-128

정부는 1993.4.26.~27.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총회에 임창렬 재무부 제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2차 EBRD 연차총회

- 주요 결과
 - 예산 심의 및 중동부 유럽의 중소기업 진흥방안 논의
- 한국 정부대표단 활동
 - EBRD와 기술협력기금협정 체결
 - EBRD 측에 한국인 직원채용 요청
 - 동유럽 경제개혁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사 표명

1778

2. EBRD 총재 선출

- 1993.6.25. Jacques Attali 총재 사임
 - 대다수 국가는 유럽 출신 총재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컨센서스 동향을 주시
- 입후보 동향
 - 프랑스: Jacques de Larosiere 중앙은행 총재
 - 덴마크: Henning Christoffersen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
 - 폴란드: Leszek Balcerowicz 경제대학 교수
 - 이탈리아: Giuliano Amato 전 총리
- 한국 정부 입장
 - 이탈리아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이탈리아 후보를 긍정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프랑스 후보 지지
- 8.18. 59개국이 참여한 우편투표에서 프랑스의 Jacques de Larosiere 후보 선출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 제28-29차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기구조

MF번호 2023-111 / 2 / 1-103

1992~93년 중 개최된 제28~29차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 관련 문서임.

1. 제28차 총회(1992.5.12.~14., 세네갈 다카르)

- 수석대표
 - 이우영 한국은행 부총재
- 참가 목적
 - AfDB를 통한 아프리카 개도국 지원 및 경제협력 의지 표명
 - AfDB 총재, 아시아그룹 국가들과 상호 관심사 논의

2. 제29차 총회(1993.5.12.~14.,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 수석대표
 - 임창열 재무부 제2차관보
- 주요 결과
 - AfDB 자문위원회 설치 결정
 - 설치 목적: 역내외 가맹국 간 대화촉진과 AfDB의 융자 및 재무정책과 관련한 협력증진을 위해 총회 산하에 자문위원회 설치

3. AfDB 내 신유고연방 회원자격 승계 문제

- 1992.9.22. 유엔총회에서 신유고연방의 유엔 내 회원자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 채택
 - 신유고연방은 구유고연방의 의석을 자동 승계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신유고연방은 유엔에 신규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고, 유엔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한국 정부는 동 결의 채택 시 찬성 표결

1779

대한민국 외교부

AfDF(아프리카개발기금) 제7차 재원보충 실무회의, 제2-3차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111 / 3 / 1-100

1780

1. 제2차 AfDF(아프리카개발기금) 제7차 재원보충을 위한 실무회의(1993.7.29.~30., 네덜란드 헤이그)

- 대표단: 권태신 재무부 국제기구과장, 한병길 주네덜란드대사관 서기관, 김익태 한국은행 조사역
- 훈령
 - 재원보충 규모(28억 FUA 수준), 국별 출연 부담(0.696%), 우선지원 분야, 융자 정책 개선, 기타 융자 정책 일반 관련 등
- 회의 결과
 - 재원보충 규모에 관해 국별 입장표명이 있었으며, 국별 부담 방안은 차기 회의(1993.11월)부터 본격 토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

2. 제3차 AfDF 제7차 재원보충을 위한 실무회의(1993.11.8.~10.,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 대표단: 권태신 재무부 국제기구과장, 황정욱 한국은행 국제협력과 행원
- 훈령
 - 제2차 실무회의 때와 유사
- 회의 결과
 - AfDF가 제시한 40억 FUA의 재원보충 규모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 다수국이 국별 출자비중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 차기 회의(1994.1.20.~21., 코펜하겐)에서 계속 토의하기로 함.

아프리카 수출입은행 참여 검토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조

MF번호 2023-111 / 4 / 1-67

한국 정부는 Abou Diouf 세네갈 대통령의 요청에 의거, 아프리카 수출입은행 설립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함.

1. 검토 배경

- Abou Diouf 대통령이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의장자격으로 1993.6월 김영삼 대통령 앞 친서에서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의 지지 및 참여를 요청

2. 아프리카 수출입은행 설립 개요

- 설립 경위
 - 1987년부터 역내 국가들이 설립 필요성을 제기, 1993.5월 아비장에서 발기인 총회, 1993년 중 창설을 목표로 108개 금융기관에 지지 및 참여 요청
- 설립 목적: 아프리카의 역내·외 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수출금융 등 단기무역금융
 - AfDB(아프리카개발은행)와 별도기구로서 설립하되, AfDB는 A그룹 출자자로 참여
- 추진 전망
 - 아프리카 역외국들은 소극적인 반응이나, 역내국들의 적극 호응으로 1993.9월 창립 전망
- 주요 역외국 동향
 - 프랑스: 유용성과 운영가능성에 의문으로, 진전 상황을 보면서 입장 정립 예상
 - 일본: 아프리카개발회의(1993.10월, 도쿄)까지 입장 정립 예정
 - 영국: 공식입장은 미정이나 부정적 반응 감지
 - 미국과 독일: 참여 제의 미접수

3. 한국 정부의 검토

- 선진국들도 미온적 입장임을 감안, 한국도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기로 함.
 - Diouf 대통령 앞 친서보다는 주세네갈대사가 필요시 세네갈 정부에 적절히 설명하도록 함.
- 검토 시 고려사항
 - 한국은 역외국이므로 한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가입출자가 불가하고,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문제는 상업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수출입은행도 재정 사정으로 지분참여가 어려운 상황임.
 - 정부는 국내에서 열린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의 설립 설명회(1993.7.22.) 개최를 지원함.

1781

대한민국 경제발전사 199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자 간 조선 협상. 전2권 (V.1 1-7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11 / 5 / 1-190

정부는 1993.6.21.~23. 파리에서 개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협상 및 조선수급회의에 김종희 상공자원부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협상 경위

- 1989.10월 이후 미국의 제의로 다자 간 조선협상이 OECD 주관으로 개시
 - 조선 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철폐 및 선박덤핑규제제도 시행 등 추진
- 1992.4월 미·EC(구주공동체) 간 이견으로 회담이 중단된 이후 12월 회담 재개

1782

2. 회담 결과

- 1993.11월까지 협상타결을 추진한다는 데 원칙적 합의
 - 1993.10.30. 이후 새로운 구조조정 조치의 도입 금지
 - 1995.1.1.까지 모든 보조금 및 관행 철폐
- 향후 추진 일정 합의
 - 계획조선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 1993.7.26.~28.
 - 피해가격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 (1차) 1993.9.13.~15., (2차) 1993.9.27.~28.
 - 수출신용 관련 전문가 회의: 1993.9.16.~17.
 - 본회의: 1993.9.30.~10.1.

3. 향후 추진 전망 및 조치 예정사항

- 미국 및 EC가 조선 다자협상을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함께 금년 내 타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조기타결 가능성 증대
- 동 협상 타결로 선박덤핑규제제도 시행 시 한국 조선업계에 상당한 영향 예상
- 관련 부처 및 업계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전문가 회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 미국, 일본, EC 등 주요 협상국들과의 관련 동향에 대해 정보 수집 강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자 간 조선 협상. 전2권 (V.2 8-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11 / 6 / 1-227

1. 전문가 회의(1993.9.9.~17.)

- 참가국: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 회의 결과
 - 수출신용 전문가 회의: 선박원조 거래, 분쟁해결 절차, 원조지원 거래 시 Matching 절차에 대해 집중 협의하고, 합의 도출보다는 수출신용에 대한 각국 입장 재확인
 - 피해가격 전문가 회의: 한국 및 일본 측 수정안을 중심으로 협의한바, 양 수정안은 피해가격 제소 및 판정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피해가격제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EC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함. 향후 협상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다자협상을 포기하고 한·미 간 양자협상의 제기 가능성 예상
 - 계획조선 전문가 회의: 각국별 계획조선제도 및 간접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철폐할 지원 여부의 기준(조선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보조요소 평가기준, 정부 관여 등)에 대해 각국 이견 노출

2. 조선협상(1993.9.27.~10.1.)

- 참가국: 미국, 일본, EC,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 회의 결과
 - 피해가격제도에 대한 협상 참가국 간 이견 폭 축소에 실패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은 10월 중 협상 참가국들과 개별협의를 갖고 일괄 협상타결안을 작성, 이를 기초로 11월 중 2차례의 본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타결을 추진하기로 함.

3. 조선협상(1993.11.4.~10.)

- 의장 절충안을 토대로 협의한 결과, 실질적인 핵심사항은 합의되지 않았으나, 입장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합의 가능성을 높임.
- 계획조선 등 간접지원제도, 수출신용, 피해가격제도 등 주요 이슈에 관해 합의 가능성을 높임.

4. OECD 다자 간 조선협상 대책회의(1993.12.2., 파리)

- 1993.11.25. 의장이 제출한 절충안에 대한 각국의 수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조선협상 대표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참석으로 인해 12.6. 협상 참가가 어렵게 됨에 따라 1994.1.24.~27.로 잠정 연기

1783

대한민국 외교부

타니구치 마코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 방한, 1993.6.15.-1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11 / 7 / 1-130

타니구치 마코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의 1993.6.15.~17.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목적

- 한국의 신정부 수립과 정부 고위인사 교체 후 한·OECD 간의 관계 협의

2.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예방, 한·OECD 실무 연석회의(외무부 제2차관보, 다나구치 사무차장 공동주재), 외무부 제2차관보 주최 오찬,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주한 OECD 회원국 대사 면담
- 경제기획원 대조실장, 재무부, 상공자원부 차관보 면담, KDI, KIET, KIEP 원장과 오찬

3. 방한 결과 및 기대효과

- 한·OECD 간 협력관계 확대방안 협의
 - 한국 신정부가 경제 도약을 위하여 정부규제와 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혁해 나가는데 기여
- 1996년까지 OECD 가입을 실현하기 위해 OECD 산하위원회와 기구에 대한 한국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데 도움(OECD는 1993.6월 초 연례 각료이사회에서 한국의 OECD 가입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
 - 한국은 현재 OECD 산하 조선작업부(1990.10월 정회원), 개발센터(1992.4월 정회원), 무역위원회(1992.6월 옵서버), 원자력기구(1993.5월 정회원)에 참가하고 있음.
 - 한국은 금년 중 추가로 8개 OECD 산하위원회와 기구에 정회원 또는 옵서버 가입 추진 예정
- 한국의 OECD 가입은 아래 측면에서 유용
 - 개도국형 경제운용 방식에서 탈피, 민간 창의와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따르는 선진국형 경제운용 방식 전환
 - 금융, 서비스 등을 포함한 국내시장 개방화, 국제화를 통해 세계화 추세에 대응
 - 세계경제 문제에 대한 선진국 간 협의에 동참, 과학기술협력 강화 및 통상마찰 사전 대비 등

[OECD/DAC] Tidewater 회의, 제28차. Mexicocity(멕시코), 1993.7.19.-2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11 / 8 / 1-160

정부는 1993.7.19.~20.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제28차 Tidewater 회의에 박쌍용 KOICA(한국국제협력단) 총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자

- 노르웨이 등 12개국 대표, UNDP(유엔개발계획) 처장, 유니세프,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원조 관련기구 및 NGO 대표 등 27명

2. 주요 의제

- 선진국의 대개도국 개발원조 증가의 둔화 문제
- 개발원조의 능률 및 효과 제고 문제
- 세계인구 문제 및 중남미 경제 현황

3. 회의 결과

- 선진국의 대개도국 개발원조 증가의 둔화 문제
 - ODA(공적개발원조)를 GNP 대비 0.7%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 필요성이 증대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대국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개발원조 능률과 효과 제고 문제
 - 수원국의 자조노력을 권장하고 정책대화를 확대하여 수원국 일선 관계기관의 원조 실무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 접근을 봄.
- 후속조치로 UNDP 처장 등은 범세계적인 위원회의 설치가 소망스럽다는 견해를 밝힘.
- 금번 회의에서는 ODA의 개념을 확대하여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지원경비는 제외하더라도 환경보전, 인구, 난민, 개도국의 수출증진 등 문제해결을 위한 원조는 ODA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표출됨.
- 참가자들은 대개도국 원조를 남북문제 해결차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남남협력차원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한국과 같은 선진개도국의 참여를 권장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상을 줌.

1785

대한민국 국제협력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위원회 회의. 전2권 (V.1 무역·환경 합동위)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11 / 9 / 1-171

1992~93년 중 개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위원회 무역·환경합동위원회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제7차 무역환경합동위원회 회의(1992.9.28.)

- 한국은 환경위원회 옵서버가 아니므로 참석 불가
- 토의 내용: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이 상호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5개 지침 협의
 - 국내 환경정책의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에 관한 지침
 - 무역정책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에 관한 지침
 - 국제환경협정에서의 무역조치 이용에 관한 지침
 - 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내 규정에 무역규제를 부과하는 지침
 - 국가별 환경정책의 조화를 통한 무역·환경 문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침

2. 제8차 무역환경합동위원회 회의(1993.2.1.~2., 파리)

- OECD 비회원국 관련 이사회(1993.1.14.)에서 동 회의부터 한국을 옵서버로 초청하기로 결정
- 토의 내용: 무역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지침 등 논의

3. 무역과 환경전문가 회의(1993.3.10.~12., 파리)

- 참가국: OECD 24개국, 옵서버 4개국(한국, 멕시코, 폴란드, 헝가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 UNEP(유엔환경계획)
- 토의 내용: 무역과 환경 양립성, 무역 원칙과 개념, 환경정책 및 협정에 대한 무역 검토

4. 제1차 환경농업위원회 합동작업반 회의(1993.9.8.~10., 파리)

- 토의 내용: 농업과 환경 간의 상호 관련성 증가, Sustainable Agriculture 개념, 영향 평가 지표 및 각국의 사례 분석 등

5. 일본 환경성과 평가 그룹회의(1993.11.1.~2., 도쿄)

- 토의 내용: 일본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실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위원회 회의. 전2권 (V.2 기타 회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11 / 10 / 1-156

1992.12월 개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환경위원회에 옵서버 참여 추진 검토

- 관계부처 대책회의(1992.10월) 개최
 - 옵서버 자격으로의 참가 지위, 참가 추진 여부, 추진 방안 등 토의

2. OECD/DNMEs(신흥공업국) 시장환경 정책(Economic Instrument) 워크숍(1993.11.8.~9.)

- 참가자: 김규옥 경제기획원 대조실 사무관, 이호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 연구원
- 토의 내용: 시장환경 정책의 시행 현황과 확산방안, 수자원 관리와 도시 교통공해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향후 OECD와 DNMEs 간의 환경협력 분야에 대해 토의
- 관찰 및 건의: 금번 워크숍 논의 상세는 한국의 환경 정책 수립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건의함.
 - 싱가포르의 Road Pricing, 스웨덴의 디젤 세금차별제도, 호주의 누진 수도물 가격인상제도 등

3. 환경정책위원회 회의(1993.12.7.~10., 파리)

- 수석대표: 김형철 환경부차관
 -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차관급 외에 대규모 대표단 참석
- 참가 필요성: 한국은 OECD 환경위원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 중인바, 향후 동 위원회에 공식 가입할 것을 대비하여 동향 파악 및 실질 의제 분석 필요
- 토의 내용: 회원국 환경성과 평가, 공해 예방 및 규제
- 수석대표 발언 내용: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대하여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무역규제 조치의 자의적, 일방적 적용에 대한 우려 표시

1787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
국
국제협력
국
국제협력
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공업위원회 옵서버 참가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11 / 11 / 1-91

1788

1. 제81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공업위원회(1993.6.29.~30., 파리)

- 참석 경위
 - 한국 정부는 1993.2월 OECD 공업위원회 산하 4개 작업반에 대한 가입은 유보하고, 공업위원회 옵서버 자격을 신청하여 처음으로 공업위원회에 참석
- 수석대표: 최혁 주프랑스대사관 공사
- 정부 훈령
 - 한국의 OECD 공업위원회 옵서버 자격 허가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회원국과 협조를 강화할 것
 - 1996년 한국의 OECD 정회원국 가입에 대비하여 회원국과의 협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협력관계 형성에 노력할 것
- 주요 결과
 - OECD 국가의 산업정책 연례 검토보고서에 반영할 국가별 발표 및 보고서를 1993.10월까지 완성하기로 함.
 - OECD 경제의 구조적 변화 관련,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확대와 이에 따른 실업 문제 해결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거론됨.
 - 1994년 연례보고서 준비 관련, 한국은 1994.4월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발표하기로 함.

2. OECD 산업위원회의 산업국제화에 관한 심포지엄(1993.11.30.~12.1., 파리)

- 정부대표: 이희범 상공자원부 전자정보공업국장
- 회의 목적
 - OECD 공업위원회가 2년간 연구해 온 산업의 세계화 현상을 정부 및 업계 양 시각에서 조명하고, 향후 공업위원회의 작업 활동에 활용함.
 - 공업위원회는 1994년도 각료이사회에 산업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를 위한 종합 점검차원에서 심포지엄이 개최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철강위원회, 제43차. Paris, 1993.10.25.-2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11 / 12 / 1-49

정부는 1993.10.25.~27.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3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철강위원회에 최혁 주프랑스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한국이 OECD 철강위원회 정회원 가입(1993.9.20.) 이후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

2. 주요 의제

- 세계 철강시장 현황 및 철강생산 규모, 철강산업과 환경
- 세계 철강무역 및 철강 관련 노동정책
- 다자 간 철강통상 협상, 철강위원회 회원국 최근 정책 동향 등

3. 특이사항

- 사무국은 동유럽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관련, 지역의 경제 특성 감안 시 선진국의 조정 경험보다는 국별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및 민영화가 요구됨을 강조
- 주요 OECD 회원국의 1993년도 철강생산 능력이 감소되는 상황이며, 유해물질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과 환경/무역 상호 영향에 관한 OECD 지침 등을 감안하여 철강과 환경에 관한 워크숍을 1994년 중 개최할 예정
 - 미국은 바젤협약이 철강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특히 고철교역에 가해지는 환경 규제에 우려 표시
 - 일본은 철강위원회의 환경 관련 활동은 철강산업에 직접 연관되는 사안에 한정할 것을 제의

1789

대한민국-외국관계사-연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위원회 및 교육연구혁신센터 옵서버 참가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11 / 13 / 1-103

정부는 제51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위원회(1993.11.3.~5., 파리)와 제49차 CERI(교육연구혁신센터) 운영위원회(1993.11.8.~9., 파리)에 이성호 교육부 대학정책실장과 최혁 주프랑스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옵서버로 파견함.

1. 참가 경위

- 옵서버 가입(1993.10.14. OECD 이사회 결의) 이후 최초로 참가하는 회의로 1994년 개최 예정인 한·OECD 교육정책 세미나 및 국별 교육정책 평가 등 현안을 협의함.

2. 정부 훈령

- OECD 교육위원회 및 CERI 회의 참가는 한국의 옵서버 가입에 따른 첫 공식회의임을 감안, 한국의 교육정책과 제도 등을 설명하고 회원국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것
- OECD의 선진교육 정보 및 경험 활용을 통한 교육 발전 및 학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의 참여 방안 등 OECD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
- 1994년 교육정책 세미나 개최 및 국가 교육정책 평가 관련,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도모할 것

3. 한국대표단 활동

- 제51차 교육위원회 이사회에서 신정부의 개인 특성에 맞는 인간중심 교육 강화방침을 설명하고 교육훈련 세미나 서울 개최 등 향후 OECD와 협력 확대를 천명함.
- 제49차 교육연구혁신센터 집행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간중심 교육, 기술인력 양성 등 한국 교육 정책을 설명하고 자료를 배포함.
 - 교육정보 입수 및 교류 확대를 위해 IMHE를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에 한국 교육기관의 참여를 정부에 건의함.
- 다나구치 OECD 사무국 사무차장 면담
 - 1994년 서울 개최 교육훈련 세미나, 국별 검토회의, 회원국과의 협력 확대 관련하여 OECD 사무국의 지원을 요청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11 / 14 / 1-140

1993년 중 개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OECD 무역위원회(제105차(1993.2.24.~25.), 제106차(1993.4.27.~29.), 제107차(1993.9.22.~25.), 제108차(1993.11.9.~10.))

- 정부대표: 최혁 주프랑스대사관 공사
- 토의 내용
 - UR(우루과이라운드) 조기타결 문제와 국제무역 환경, 1990년대 무역 문제와 관련된 무역과 환경 및 투자, 지역통합과의 관계 등(제105차)
 - 6월 각료회의에 제출한 무역과 환경 및 경제정책 간 관계에 관한 보고서 검토, UR 협상 재개 전망 및 양자 간 무역 문제 등 현안(제106차)

2. OECD 무역위원회 작업반 회의(1993.2.11.~12., 3.31.~4.2., 6.15., 7.12.~13., 10.28.)

- 정부대표: 최혁 주프랑스대사관 공사
- 토의 내용
 - 국제교역에서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상호 연관성 문제 및 양자 간 상호 보완을 위한 국제규범 작성 추진, 각료회의의 제출 보고서 검토 등(2월)
 - 국제무역 동향, 각료회의의 앞 보고서, 산업의 세계화, 지역통합 문제 등(3월)
 - 1993.10월 홍콩 개최 예정인 OECD/DNMEs(신흥공업국) 간 워크숍 의제(6월)
 - 산업의 세계화 현상 파악을 위한 사례 연구, 무역과 투자의 상호 관계, 지역통합, 미·일 신경제 협력 Framework 등(7월)
 - 무역정책과 경쟁정책 간 양립성 제고 관련, 1994년까지의 무역위/경쟁위의 합동 작업계획 채택(10월)

3. 무역·경쟁정책 합동위원회(1993.5.10.~12./12.6.~7.) 옵서버 참가

- 대표단: 정광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상공부 김순철 사무관, 장윤종 KIET 연구원 등
- 토의 내용
 - 6월 각료회의의 앞 보고서 검토, 무역정책과 경쟁정책 상호 관계에 관한 양 위원회 간 공동작업 추진 방향(5월)
 -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틀로서 스웨덴안과 BAKKE안에 대한 논평 및 향후 작업계획, 5월의 수직통합에 관한 원탁회의의 결과에 관한 의견 교환(10월)

Sutherland, Peter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선임, 1993.6.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1 / 15 / 1-175

서덜랜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이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1993.6.9. 선임됨.

1. 선임 경위

- 던켈 사무총장의 임기가 1993.6.30. 종료됨에 따라 미국, EC(구주공동체)는 서덜랜드 후보를 추천
 - 중남미 국가들은 우루과이, 콜롬비아 출신 후보를 마지막까지 지지하였으나, 신설 차장직을 개도국에게 할당한다는 양해하에 입후보 철회
- 1993.6.9. 특별총회에서 서덜랜드 후보를 컨센서스로 선출

2. GATT 사무차장 인선

- 1993.7.15. 서덜랜드 사무총장은 3인의 사무차장을 인선
 - Lavorell 미국대사, Seade 멕시코대사, Honda 인도 상무성 차관보
- 체약국단과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인선 통보
 - 사무차장을 1명 증원하여 선진국에 1석, 개도국에 2석 할당 양해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상. 전5권 (V.1 1-8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2 / 5 / 1-232

1993.1~8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추진 동향임.

1. UR 협상 서비스 실무소위원회(1993.7.12.)

- 주요 안건
 - 차기 양허협상 시 협상상대국에게 제시할 수정 양허표(안) 실무확정 및 기본 대응방안 논의
- 참가자
 -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주재),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등 관련부처 담당관

2. UR 서비스협상(1993.7.26.~28., 제네바)

- 대표단
 - 수석대표: 이윤재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 경제기획원, 재무부, 체신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담당관
- 정부 훈령
 - UR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전달
 - 한국 측 2차 수정 양허표를 협상 상대국 측에 제시
 - 한국 측 요청리스트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
 - 본격 협상에 대비, 한국 측 수정 양허표에 대한 각국 반응과 전반적 협상 동향 파악

1793

대한민국외교부서외무장관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상. 전5권 (V.2 9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2 / 6 / 1-271

1993.9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추진 동향임.

1. UR 대책 서비스 실무소위원회(1993.9.14.)

- 회의 목적
 - 1993.9.22.~28. 제네바에서 재개될 차기 양허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 대표단
 -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주재), 관련부처 담당자
- 회의 결과
 - 서비스협상에 적극적 참여
 - 추가 양허대상 업종 선정
 -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

2. UR 서비스 양허협상(1993.9.23.~28., 제네바)

- 대표단
 - 수석대표: 이윤재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 재무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KIEP 위원 등
- 정부 훈령
 - UR 연내 타결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
 - 제2차 수정 양허표의 범위 내에서 대응하되, 추가 양허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 추가 양허하겠다는 의사 표명
 - 최종 양자협상 대비, 각국 요구의 강도 및 전반적인 협상 분위기 등 파악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상. 전5권 (V.3 10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2 / 8 / 1-201

1993.10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양허협상(1993.10.25.~29., 제네바) 추진 동향임.

1. 대표단

- 수석대표: 이윤재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 재무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KIEP 위원 등

2. 정부 훈령

- 최종 양자협상 기회임을 감안하여 주요국의 대한민국 관심사항을 최종적으로 파악하고 최종 양허안 제출에 대비
- 1993.10.18. 대외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된 수정 양허안을 상대국에 제시, 설명
- 양자협상 결과를 종합하여 필요시 한국 측 수정 양허안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

3. 협상 결과

- 11개 국가와 각각 양자협상 개최
- 한국 측 최종 양허안(초안) 제시: 총 157개 업종 중 80개 업종 개방
- 주요국 반응
 - 미국·EC(구주공동체): 한국의 해운(복합운송), 법률자문, 시청각(케이블 TV) 개방 중점 요구
 - 일본: 건설 분야의 각종 규제 폐지 요구

1795

대한민국-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상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상. 전5권 (V.4 11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2 / 9 / 1-255

1993.11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추진 동향임.

1. UR 서비스/기본통신 다자 간 협상(1993.11.14.~21., 제네바)

- 대표단
 - 통신협력단 설정선 과장, 최영해 사무관, 통신개발연구원 최병일 박사
- 정부 훈령
 - 협상 진행방식: 미국, 일본 등 기본통신에 관한 협상을 진행시킬 별도의 “기본통신 협상그룹”의 창설 의견에 동의
 - 협상 기간: 일정기간(3년)을 정하여 단계적 접근하며, 중간평가(1년 후)를 실시하여 향후 협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
 - 협상 기간 중 평화조항 적용
 - 참가국 범위: 모든 국가(특히 개도국)에게 참가 기회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
 - 개방 범위: 국가별 통신발전수준에 따른 개방 범위의 차등 인정 등이 필요

2. EC(구주공동체) 금융 총국장 방한(1993.11.5.~6.)

- 재무부, 외무부 차관보 면담
- UR/금융서비스 관련 협의

3. UR 대책 서비스 실무소위원회(1993.11.30.)

- 주요 안건
 - UR 서비스 최종 양허표(안) 실무 확정
- 대표단
 -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주재), 관련부처 담당자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상. 전5권 (V.5 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2 / 7 / 1-172

1993.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추진 동향임.

1. UR 서비스/기본통신 협상(1993.12.2.~3., 제네바)

- 참가국
 - Manhusen 제네바 주재 스웨덴대사(주재),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 등 14개국
- 주요 안건
 - 기본통신협상 Modality안 및 Standstill 조항 토의

2. 비공식 회의(1993.12.10.~11., 제네바)

- 서비스협상 최종화를 위한 회의
- 주요 안건
 - 조세 문제, 금융, 시청각 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분야 협의
 - 미국의 금융 MFN(최혜국대우) 일탈 Two-Tier Approach

3. UR/GNS 비공식회의(1993.12.13., 제네바)

- 합의된 기본통신 협상시기 공지
- 최종스케줄 제출과 관련한 각국 논평 요구

1797

대한민국 무역면접시험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협상. 전3권 (V.1 1-7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2 / 10 / 1-287

1993.1~7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협상 추진 동향임.

1. UR 시장접근 분야 관세협상 대응방안 회신 요청(1993.4월, 재무부)

- 관세협상 전반에 대한 상황 점검(시장접근협상의 주요 난관 및 향후 협상 전망 등)
- 양자협상에서 상대국 주요 관심사항 및 예상 합의내용 등 요청

2. 4개국(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캐나다) 통상장관회담(1993.6.23.~24., 도쿄)

- 회의 목적
 - UR 시장접근(공산품 및 서비스) 타결안 마련
 - 1993.5.14. 토론토에서 개최된 4개국 통상장관회담 이후 실무급 협상을 이어 오다가 통상장관 회담 속개
- 회의 결과
 - 미국은 섬유 분야 관세인하(50%), EC는 전자제품, 비철금속, 목재 무세화 반대, 일본은 증류주 및 목재 분야 무세화 반대로 합의 도출에는 실패
 - G7 정상회담 이전까지 4개국 간 UR 시장접근 타결안 마련이 UR 협상 연내 타결의 관건이 되고 있어서 4개국은 G7 정상회담 직전인 1993.7.6.에 통상장관회담을 재개할 예정
 - 의약품, 의료기기, 종이 및 펄프, 건설기계, 맥주, 철강 등 6개 품목 관세철폐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UR 시장접근 타결안 도출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협상. 전3권 (V.2 8월-11.15.)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2 / 11 / 1-189

1993.8~11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협상 추진 동향임.

1. UR 시장접근 양자협상(1993.9.13.~24., 제네바)

- 정부 훈령
 - Request/Offer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의 교역이익 확보에 주력
 - 대한민국 무역흑자국(일본, 호주, 캐나다 등)에 대해 한국의 수출관심 품목(섬유, 신발, 가죽제품 등)의 관세인하폭 확대 요구
 - 무세화협상 및 관세조화협상 4국(Quad) 합의 품목은 UR 대책 실무위원회에서 확정한 단계별 대책에 따라 대응
 - Quad 간 미합의 품목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 개진

2. UR 시장접근 양자협상(1993.10.22.~30., 제네바)

- 정부 훈령
 - UR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참여
 - 무세화 및 관세조화협상에서는 기확정된 한국의 참여대상 품목 전체를 구체적으로 제시
 - 무세화는 75개 품목 중 철강, 건설장비, 농업장비, 의료기기, 의약품, 가구 분야 등 53개 품목 참여
 - 관세조화는 화학제품 196개 품목 중 177개 품목 참여
 - 그 동안 제기되어 온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요청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

1799

대한민국 무역면접 인터뷰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협상. 전3권 (V.3 11.16.-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3 / 1 / 1-207

1993.11~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협상 추진 동향임.

1. UR 시장접근 양자협상(1993.11.19.~25./12.6.~17., 제네바)

- 정부 훈령
 - UR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한 한국의 기여와 역할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참여
 - 무세화 및 관세조화에 대한 한국의 참여 확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무세화 총 8개 분야 75개 품목 중 60개 품목 참여, 화학제품 관세조화 196개 품목 중 192개 참여)
 - 전자, 비철금속 등 Quad 합의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Quad 등 주요국들의 합의를 조건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 전달
 - 수정관세 양허계획(무세화/관세조화 참여 범위 품목별로 제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
 - 협상상대국들의 한국 관심 품목(섬유, 신발, 가죽제품 등)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 반영 여부 최종 점검

2. UR 시장접근협상 타결(1993.12.15., UR 시장접근협상그룹 공식회의)

- Denis 의장이 7년에 걸친 UR 시장접근협상 타결 선언
 - Offer 제출 국가는 95%, 18개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1년 유예
- 주요국 협상 종료 현황
 - 미국: 종료 26개국, 진행 중 11개국
 - EC(구주공동체): 종료 12개국, 진행 중 5개국
 - 일본: 종료 20여 개국, 미국과는 미합의
- 한국은 13개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칠레, 핀란드, 홍콩, 아이슬란드, 말레이시아, 태국,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과 협상 종료, EC(공산품 미결), 오스트리아와는 협상 계속
- 1993.12.15. 이후에도 협상 미진 국가와는 협상을 계속해 나가며, 협상 종료 국가와도 Offer 개선을 위한 협상 계속 가능
 - Final Offer 제출 시한은 1994.2.15.

UR(우루과이라운드)/제도 분야 협상. 전2권 (V.1 1월-11.15.)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3 / 2 / 1-321

1993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제도 분야 협상 관련 내용임.

1. 반덤핑협상 관련 전문가회의(1993.1월)

- 미국이 우회덤핑에 대한 규범 작성을 주장하면서 자국안 제시
 - 각국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
 - 한국은 부정적 입장 언급

2. 보조금, 상계관세협상(1993.7월)

- 1991.12월 던켈 초안 작성
 - 초안에는 구조조정, 환경보호 보조금 삭제
- 회원국 간 협의 중이나, 의장이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

3. Russing 회동(1993.10월, MTO(다자간무역기구) 문제 협의)

- 미국, 수정 제안내용 설명
- 회원국은 동 수정안을 검토하면서 자국 입장 제시
 - Friends 그룹 수정안 제시

4. 제도 분야 비공식 작업반회의(1993.3.28.~11.15. 26회 개최)

- 1993.11.13.~14. 작업반회의 시 아래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함.
 - 특별하고 추가적인 조항에 대한 검토
 - 보복 결정 시 중재 결과 고려 정도
 - 개도국 우대에 대한 1966년 절차 등

UR(우루과이라운드)/제도 분야 협상. 전2권 (V.2 11.16.-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3 / 3 / 1-268

1993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제도 분야 협상 관련 내용임.

1. 제도 분야 비공식 작업반회의

- 비공식 작업반 설치(1993.9.20.)
 - 작업반은 최대 쟁점인 MTO(다자간무역기구) 설립 자체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MTO 협정 및 분쟁해결양해협정 검토
- 비공식 작업반 종결(11.15.)
 - MTO 협정의 국내법 일치 의무 등 합의에 근접
 - 미국의 JONES ACT 등은 재검토 예정

2.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안 타결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안은 1993.12.15. 최종 무역협상위에서 채택
 - 보조금의 새로운 구분 채택
 - 상계관세 부과 절차 합의
- 이와 관련, 한국도 산업지원제도 정비 및 재편 필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전5권 (V.1 1-4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3 / 6 / 1-283

1993.1~4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임.

1. 협상 동향

- 제네바 주재 주요국 대사(한국 포함 약 30개국) 비공식 회의(1993.3.4.) 개최
 - 향후 UR 협상 추진 방향 논의
 - 미국은 신속처리절차 연장을 미 의회에 요청할 방침 확인
 - 여타국은 미·EC(구주공동체) 간 주요 문제 타결 의지 등 의문시
- 주요 4개국 고위 실무회의(1993.3.22.) 개최
 - 4월부터 주요국 간 상품,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협상 진행
 - 7월 G-7 정상회담에서 UR 협상 연내 종결 확인
- 미·EC 각료회의(1993.3.29.) 개최
 - 동년 여름 전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2. 미국 신속처리절차 연장조치

- 1993.4.9. 미국 대통령은 UR 협상의 연내 종결을 위해 신속처리절차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 예정
- 4.27. 동 연장 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

1803

대한민국 의회도서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전5권 (V.2 5월-7.1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3 / 7 / 1-271

1993.5~7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임.

1. UR 협상 관련 4개국(미, EC(구주공동체), 일본, 캐나다) 통상장관회담(1993.5.14., 토론토) 개최

-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문제 협의
- 1993.7월 G7 정상회담 시까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접근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2. 미국 의회, 행정부의 신속처리 권한(Fast-track authority) 연장 의결(1993.6.30.)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전5권 (V.3 7.14.-9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3 / 8 / 1-229

1993.7~9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임.

- UR/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1993.7.14.) 개최
 - Sutherland 의장, 즉각적 다자협상 재개를 위해 향후 작업계획 제시
- 협상 참가국 전체회의인 무역협상위(1993.8.31.) 개최
 - UR 협상의 타결 시한(12월 중순)에 합의하고 본격 협상 재개
- EC 합동이사회(1993.9.20., 브뤼셀) 개최
 - 벨기에(의장국)가 제출한 성명서 초안에 대해 프랑스, 독일이 수정안을 제출, 토의 진행

1805

대한민국-외국관계사-외교편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전5권 (V.4 10월-12.6.)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3 / 9 / 1-289

1993.10~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임.

1.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1993.11.26.) 개최

- 사무국은 1993.11.30.~12.6. 최종협정 초안 수정 배포
- 1993.12.13.까지 각국은 최종 양허계획표를 제출하고 최종의정서안 확정
- 12.15. TNC 회의에서 최종의정서안 승인을 위한 TNC 개최

1806

2. 한·미 고위협상 개최

- 차관보급 고위 실무급회의(1993.12.7., 제네바)
- 각료급회의(1993.12.7.)

3. 정부종합협상단 구성

- 단장: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부단장: 김광희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
- 구성 목적
 - 1993.12.7.부터 본격화될 제네바 UR 협상 분야별 다자 및 양자협상에 적극 참여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전5권 (V.5 12.7.-27.(12.15. 협상 종결))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3 / 10 / 1-273

1993.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임.

1. UR 협상 종결(1993.12.15.)

- TNC(무역협상위원회) 개최, 최종의정서 및 부속협정 채택
- 일부 서비스 분야 양허 후속 협상 개시 합의

2. UR 협상 결과 대국민 보고

- 1993.12.15. 허신행 국무총리, 정기국회에서 UR 협상 결과 대응방안에 관해 보고
 - 쌀시장 개방은 막지 못했으나, 쌀의 관세화 장기간 유예, 최소시장접근 폭 최소화한 부분은 성과
 - 수입 양곡의 별도관리, 축산시설의 현대화, 농업의 기업화 등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책을 강력 추진할 것
 - 모든 경제 분야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

1807

대한민국 무역면담 여야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4 / 1 / 1-134

1993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관련 내용임.

1. 2월 이사회(1993.2.9.~10.)

- 미국의 철강 상계관세 및 반덤핑 예비판정 조치 논의
- ITC(국제무역위원회) 사무국장 선임 문제
- 브라질산 모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
- EC(구주공동체) 바나나수입제도, 패널보고서 이행감독
- 제4차 LOME 협약 검토 문제

1808

2. 3월 이사회(1993.3.24.)

- 미국의 철강 예비판정 조치
- EC 바나나수입제도, 패널보고서 이행 감독
- BOP(국제수지)위원회 1993 필리핀 협의보고서 채택
- ITC 사무국장 선임

3. 5월 이사회(1993.5.12.)

- 미국의 철강제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패널보고서 이행
- 미국의 Super 301조 적용국가 지정

4. 6월 이사회(1993.6.16.~17.)

- 한국 소고기 패널보고서 이행
- 러시아 GATT 가입 신청
- EC 신규 바나나수입제도 관련 패널 설치

5. 7월 이사회(1993.7.21.)

- 한국 소고기 패널보고서 이행 통보
- EC 바나나 패널보고서 채택 문제
- EC의 정어리, 참치 통조림 수입제한
- 미국 및 EC의 소맥 보조금



6. 9월 이사회(1993.9.22.)

- 키르기스스탄 옵서버 가입 신청
- EC의 사과수입 규제
- 일본 농산물 패널보고서 이행
- 미국 관세법 337조 패널보고서 이행

7. 10월 이사회(1993.10.22.)

- 마케도니아 옵서버 가입 신청
- 튀니지 웨이버 신청
- 회의 연기 및 12월 이사회 개최

1809

대한민국 무역면접영합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국별 TPRM(무역정책검토제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4 / 2 / 1-212

1993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국별 TPRM(무역정책검토제도) 개최 동향임.

1. 개최 경위

- GATT 결의에 따른 TPRM에 의하여 1989.12월부터 각국 무역정책 검토
-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캐나다는 2년마다, 한국 등 무역액 5~20위 16개국에 대해서는 4년마다, 기타국은 6년마다 토의
 - 해당국의 수출입제도, 무역정책 수단, 무역자유화계획, 무역정책 관계법 및 경제 현황 등 토의 및 검토

1810

2. 개최 현황

- 필리핀 무역정책 검토를 위한 특별이사회(1993.2.16.~17., 제네바)
- 볼리비아 무역정책 특별이사회(1993.3.29.~30., 제네바)
- 멕시코의 무역정책 검토 특별이사회(1993.4.19.~20., 제네바)
- EC 무역정책 특별이사회(1993.5.17.~18.)
- 남아공 무역정책 특별이사회(1993.6.1.~2.)
- 말레이시아 무역정책 특별이사회(1993.7.19.~20.)
- 케냐 무역정책 특별이사회(1993.9.7.~8.)
- 인도 무역정책 특별이사회(1993.9.27.~2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BT(무역기술장벽)위원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4 / 3 / 1-190

1993년 중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BT(무역기술장벽)위원회 관련 내용임.

1. GATT 기술장벽위원회(1993.5.11., 제네바)

-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 논의

2. 수입 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 협의회(1993.8.31., 농림수산부)

- 수입 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 협의

3. GATT/TBT 위원회(1993.11.2.~3., 제네바)

- 수석대표: 이재길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 한국 원산지표시제도 집중 논의
 -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가 TBT 협정의 관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설명

1811

대한민국 무역면접 어휘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4 / 4 / 1-129

1812

1. EC(구주공동체) 보조금제도 조사 결과(1993.3월, 주EC대표부)

- 농산물 수출환불제도
 - EC산 과잉농산물의 역외권 수출을 가능하도록 하고, 수출부진 시 발생하는 보관비용 감축 및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1991년 102억 ECU, 1992년 110억 ECU 규모)
-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제도
 - 미국, 일본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EC 차원의 공동 R&D 정책 필요성
 - 기술혁신 주기와 제품의 수명 단축으로 R&D 비용이 현저히 증가한 가운데, 기존의 각국별 R&D 정책은 한계에 달함으로써 EC 공동의 연구개발 필요성 증대(매년 50여 건 예상)
- 재정지원 규제제도
 - 로마조약에서는 개별 회원국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특정상품의 생산이나 기업흡수 합병에 대한 지원이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을 왜곡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
 - 다만, 회원국 정부의 특정산업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기능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또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지원(9백만 ECU 또는 총 투자금액의 15% 이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회의(1993.4.27.~28.)

- 한국대표단 주요 발언 내용
 - 한국의 개정된 관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심사 시 훈령에 따라 관련 사실 위주로 설명
 - 한국의 축산물 수매제도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조치가 아니며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축협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소개
 - 미국의 철강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한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발언

3. GATT/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회의(1993.10.27.~28.)

- 관찰 및 평가
 - 각국이 자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상계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국 입장을 개진함. 특히 일본, 홍콩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는 인상적
 - 한국 측도 한국 상품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사례를 분석·검토하여 다자 간 협의체인 GATT 위원회에서 동 문제들을 제기하여 한국의 이익을 적극 보호함이 바람직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반덤핑위원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4 / 5 / 1-131

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한 패널보고서(1992.11.30.)

- 노르웨이 측은 패널보고서의 부당성을 이유로 동 보고서 채택을 수락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자국 입장을 한국 측이 지지해줄 것을 요청
 - 한국 수산청은 GATT/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방향과 관련, 미국의 자의적 덤핑 판정 내지 상계관세 부과 방지 측면에서 노르웨이 측과의 협조에 대해 긍정적 입장
- 1993.4.26. GATT/반덤핑위원회 회의 시 미국이 동 패널보고서 채택에 동의한 반면,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 EC(구주공동체) 등이 반대한 가운데 한국은 입장 표명을 유보

2. GATT/반덤핑위원회 회의(1993.4.26.)

- 한국대표단 주요 발언 내용
 - 각국 법령 심사 시 한국의 개정 관세법 및 동 시행령에 대해 질의
 - 한국 측은 조사반 전문가(공인회계사, 공학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는 사실 판단에는 참여하나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제소인, 피제소인 어느 쪽과도 무관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정보 누설 방지를 위해 사전 서약을 받는다고 설명

3. GATT/반덤핑위원회 회의(1993.10.25.~26.)

- 한국대표단 주요 발언 내용
 - 한국의 개정 법령 심사 시 조사 참여 전문가의 비밀 누설 시 조사 참여 배제 등의 제재를 가하며, 재무부장관이 관세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필요성 및 정도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세심의위원회의 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설명
 - 동 회의에서 대만의 옵서버 자격 부여 결정

1813

대한민국 무역면접 어휘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관세양허위원회 및 관세평가위원회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경제지구과

MF번호 2023-114 / 6 / 1-47

1991~93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PC(양허위원회) 및 CCC(관세평가위원회) 협의 진행 관련 내용임.

1. GATT/CPC 회의

- 1991.5.22. 회의
 - HS 시행에 따른 관세 양허표 수정
 - HS 양허협상: 미국은 Waiver도 부여받지 않고 HS 양허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인도, 아이티,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나이지리아, 튀니지, 베네수엘라에 대해 GATT상 의무이행을 촉구한 바 의장도 이에 동의
 - 관세 양허표시 제5, 6 및 7란의 종결
 - HS 변경에 따른 양허표 수정 문제: CCC 대표가 1992.1.1.부터 시행 예정인 일부 HS 수정표 설명
- 1991.6.18. 회의
 - HS 품목 변경에 따른 재협상 절차 문제
 - 양허표 제6란 완결 문제
- 1992.3.23. 회의
 - 특허 양허폭 유지를 위한 대책: 한국의 자발적 치유조치, 권고안 채택 문제
 - UR 결과의 회원국 간 조기 시행 문제 등

2. 제22차 CCC 회의(1991.10.7.~11.)

- 확인 수수료, 로열티 및 라이선스사용료 정의, 로열티 가산 사례, 모듈드의 과세가격 및 가격분배, 복제권의 범위 등 토의
- 관세협력을 위한 연수과정 지원 및 각국의 법령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교환

3. UR(우루과이라운드)/TRIM(무역관련투자조치) 비공식 협의(1991.11.20.)

- TRIM 정의, 인센티브 포함, GATT 위배 투자조치 및 수출이행 의무 금지 등 논의
- 보조금 협상그룹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도 제기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4 / 7 / 1-246

1992~93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논의 관련 내용임.

1. 1992.8월 미국은 민간항공기협정 확장 협상에 한국의 옵서버 참여 요청

- 미국은 항공기 관련 제품의 주요 제조국인 한국이 항공산업의 규정 제정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협상 참여를 촉구
 - 민간항공기위원회는 1992.9~10월 확장 협상을 제네바에서 시작할 예정
- 10월 상공부는 옵서버 참가는 실익이 없어 참가하지 않는다는 입장
 - 다만, 향후 협상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 항공산업의 개발계획에 고려한다는 입장

2. 민간항공기협정 확장 협상 주요 내용

- 1992.10월 소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3차례 회의 개최
- 주요 쟁점사항
 - 새 민간항공기협정과 여타 협정과의 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EC(구주공동체)는 민간항공기협정이 모든 문제를 규율해야 된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보조금협정의 경우 민간항공기 문제에 추가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미국은 미·EC 간 양자협정을 수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속한 다자화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보조, 수출보조 등에 대해 양자협정보다 엄격한 규정을 원하고 있음.

1815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법률국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무역과 환경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전3권 (V.1 1-3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14 / 8 / 1-179

1993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9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무역과 환경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8차 회의(1993.2.4.~5.)

- 참가국
 - GATT 체약국 60개국
- 회의 결과
 - 다자환경협정의 무역규정과 GATT 규정과의 관계: 다자환경협정 미가입국 문제 및 치외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면서 수입국 관할권 밖에서 환경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EC(구주공동체) 입장을 지지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환경 규정의 명료성: 현행 GATT 및 UR(우루과이라운드) 규정상 통보대상이 아닌 분야와 환경을 이유로 한 공정 및 생산방식(PPM)의 명료성 제고를 위해 GATT에 통보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

2. 제9차 회의(1993.3.18.~19.)

- 참가국
 - GATT 체약국 60개국
- 회의 결과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환경규정의 명료성: 미국은 현행 GATT, UR 규정 등 기존의 명료성 관련 규정을 활용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공통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보다는 의제 전반에 걸쳐 각국의 의견 개진
 - 사무국이 작성한 현행 GATT/UR 규정상 나타날 수 있는 환경 관련 조치(GAPS)를 어느 정도 구체화 함으로써 향후 논의방향을 제시한 것이 성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무역과 환경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전3권 (V.2 4-7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14 / 9 / 1-292

1993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11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무역과 환경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3차 무역과 환경 비공식 회의(1993.4.28.)

- 미국, EC(구주공동체), 핀란드, 뉴질랜드 등 대다수 선진국은 무역과 환경작업반,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 여타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후속조치 논의와의 중복을 최대한 회피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멕시코, 인도, 홍콩, 필리핀, 이집트 등 개도국은 UNCED 후속조치 논의 시 개도국 입장에서 무역과 환경작업반 그룹 논의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무국 제안 의제에 따라 항목별로 광범위한 토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의의 중복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

2. 제10차 회의(1993.5.6.~7.)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포장 및 라벨링 요건
 - 미국, EC, 스웨덴, 멕시코, 홍콩 등 대다수 국가는 환경보호를 위한 포장요건이 환경보호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흐름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내·외국산 상품에 공히 적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포장요건 도입 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외국 수출업체에게 새로운 포장요건에 대한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사전통고가 중요하다는 입장
 - 스웨덴은 내국민대우 시 적용되는 동종 상품의 개념을 포장요건과 관련하여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 평가 및 전망
 - 환경보호 문제를 GATT에 수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부당한 무역 왜곡효과를 최소화함이 긴요하다는 각국의 공통 인식하에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른 포장 및 라벨링 요건의 체계적 분석표 작성, 기존 GATT 규정상 통보대상이 아닌 분야에 대한 명료성 제고를 위해 환경보호규정 시행 전 사전 통보의 중요성 등에 각국이 공감하는 분위기임.

3. 제11차 회의(1993.7.5.~7.)

- 홍콩이 제안한 웨이버 활용방안에 대해 다수국가가 지지
- 향후 작업반 토의 방향은 GATT 제20조의 집단 해석방안과 제25조의 웨이버 활용방안에 대한 비교분석이 될 것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무역과 환경작업반 회의, 제8-12차. Geneva. 전3권 (V.3 8-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14 / 10 / 1-206

1993.10.5.~6.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무역과 환경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공식 회의(1993.10.5.~6.)

- GATT 특별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이 임박해 옴에 따라 작업반 논의의 핵심 문제인 환경보호 무역조치를 GATT 체제 내로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
 - 무역조치에 대한 효율적 수용을 중시하여 GATT 제20조 예외 조항 활용을 선호하는 경향(미국, EC(구주공동체), 스웨덴, 캐나다)과 무역조치의 남용 방지를 중시하여 GATT 제25조 웨이버 조항 활용을 선호하는 경향(한국, 홍콩, 일본)이 대두되고 있음.
 - 미국, EC, 캐나다, 스웨덴 등 대부분 선진국은 GATT 체제 내로 환경보호 무역조치를 수용할 경우에도 MEA(다자간환경협정) 비당사국에 대한 차별적 무역조치의 법적 근거, MEA의 정의 및 기준, 생산과정의 차이에 따른 동종상품 차별 여부, 환경세, 환경보조금 등 활용 문제 등 어려운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시
 - 미국, EC, 스웨덴, 캐나다 등은 MEA상 환경보호 무역조치를 GATT 제20조 예외 조항을 활용 또는 개정하여 GATT 체제 내로 수용하는 방안을 지지하면서 환경보호 관련 무역조치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남용 방지를 위해 MEA의 정의 및 기준 수립, MEA상 무역조치의 구체성 원칙, 특정 환경보호 목적을 위한 최소 무역조치 원칙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

2. 비공식 협의(1993.10.6.)

- 논의 내용(의장 언급 내용)
 - 환경보호 무역조치를 GATT에 수용하려는 외부 압력이 상당함.
 - 동 환경보호 무역조치에 대한 이해 관계국의 불신 해소와 이견 조정에도 어려움이 있음.
 - 회의에서 주요국 상당수가 환경문제에 대한 본심을 보이기 시작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옵서버 지위 관련 비공식 협의

생산연도 1985-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4 / 11 / 1-40

1985~93년 중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옵서버 지위 관련 비공식 협의에 관한 내용임.

1. 옵서버 자격에 관한 비공식 회의(1985.5.8.)

- 옵서버 자격 부여는 궁극적인 GATT 가입을 전제로 한 훈련 기간이어야 한다는 컨센서스에는 이의 없음.
- 미국, EC(구주공동체) 등 선진국이 옵서버의 재정부담, Time Limit 설정, GATT 하부기관 참여 반대 등을 주장한데 반하여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은 옵서버의 재정부담 반대, 개도국의 GATT 가입을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 기간 필요성으로 인한 엄격한 Time Limit 설정 반대 및 GATT 하부기관 참여에 대하여는 찬성함.

2. 옵서버 자격에 대한 비공식 협의(1986.4.21.)

-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 측은 옵서버 자격부여 시 GATT 가입의사 선언, 옵서버의 시한부 기간(Sunset Clause) 설정, 재정부담 및 옵서버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인도 및 아르헨티나 등은 옵서버 자격부여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 및 조건을 부여하는 것보다 case by case로 결정해야 하며 개도국이 옵서버 자격 신청 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옵서버 자격을 부여할 것을 주장

3. 옵서버 자격에 대한 비공식 협의(1986.10.22.)

-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은 옵서버 가입 후 3년 또는 5년 경과 시까지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5년 또는 10년 경과 시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옵서버 자격을 박탈하자고 주장한 반면 인도는 시한의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더 토의하자고 제의

4. 옵서버 자격에 대한 비공식 협의(1993.7.5.)

- 가입 작업반 검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입 신청국이 작성하는 메모랜덤과 별도로 사무국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브라질 제안에 대해 토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4 / 12 / 1-128

1993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주요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던켈 사무총장(1993.5.21.~24.)

- 방한 목적
 - 제26차 PBEC(태평양경제협력회) 총회 참석
- 방한 일정
 - 외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 면담, 전경련 주최 만찬 토론회, PEBC 총회 참석
- 방한 결과
 - 한국은 GATT 체제 내에서 많은 혜택을 보았으므로, UR(우루과이라운드) 성공을 위해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망

2. Carlisle 전 사무차장(1993.7.12.~15.)

- 방한 일정
 - 무역협회 인사 간담회, 외교안보연구원 초청 세미나,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3. Sutherland 사무총장 방한 추진

- 1993.10월 초 방한하고자 하였으나, UR 협상 문제로 취소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정 운영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4 / 13 / 1-132

1993년 중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협정의 운영 관련 내용임.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GSTP 설문서 관련 문서

- UNCTAD의 설문서와 한국의 답변서

2. UNCTAD/GSTP 양허 품목 수입 통계 관련 문서

3. UNCTAD의 한국의 GSTP Request list 제출 요청 문서와 한국 측 회신 문서

4. UNCTAD/GSTP 비공식 회의(1993.5.23., 제네바)

- 회원국 가입 확대
 - 케냐, 모로코 등 4개국이 가입 의사 표명
- GSTP 사무국은 제2라운드 협상을 위한 관세양허 Request 제출 요청

1821

대한민국 무역발전 기여도

CCC(관세협력이사회) 각종 회의. 전2권 (V.1 1-5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4 / 14 / 1-261

1993.1~5월 중 개최된 CCC(관세협력이사회) 관련 회의 내용임.

1. 제4차 CCC 아태지역 회의(1993.2.9.~12., 방콕)

- 참가국: 한국, 일본, 중국 등 14개 지역 회원국
- 정부대표단(수석대표): 김동환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 회의 결과
 - 지역훈련 조정국제도 신설: 한국을 비롯하여 태국, 말레이시아가 역내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훈련 조정국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일본을 지역훈련 조정국으로 선출함.
 - 차기 지역대표 선출: 태국에 이어 중국을 차기 지역 대표국으로 추천하기로 함. 이에 따라 태국이 수행하던 정책위원회 일반위원국은 말레이시아가 수임하기로 함.
 - APEC(아태경제협력체)과의 협조: APEC의 역내 무역자유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역내 세관 당국이 협조하여, 1993.3월 고위실무회의에 교토협약, HS 품목분류, EDI, 감시, 교육훈련 등 5개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기로 함.

2. 제11차 CCC/HS 위원회(1993.4.19.~30., 브뤼셀)

- 참가국: HS 협약국 43개국, 비협약국 15개국,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등 4개 국제 기구
- 정부대표단(정부대표): 김병기 재무부 산업관세과장
- 회의 결과
 - 품목분류표, 동 해설서 및 품목분류 의견서 수정(안) 검토 및 승인
 - 협약 제16조에 의한 HS 체계 수정(안) 검토
 - CCC 품목분류 기술지원 활동 등

CCC(관세협력이사회) 각종 회의. 전2권 (V.2 6-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4 / 15 / 1-241

1993.6~12월 중 개최된 CCC(관세협력이사회) 관련 회의 내용임.

1. 제81/82차 CCC 총회(1993.7.5.~7., 탄자니아 아루샤)

- 참가국: 131개 회원국
- 정부대표단(수석대표): 변형 재무부 관세국장
- 회의 결과
 - 사무총장 활동상황 보고
 - 제2차 HS 협약 전면개정안(1996.1.1. 시행)과 평가 및 감시위원회와 PTC 위원회가 상정한 의안 승인
 - 정책위원회가 건의한 향후 관세행정 방향을 아루샤 선언으로 채택함.
 - 동 회의는 차기 사무총장으로 미국의 Shaver를, 품목분류국장에 일본의 Kusahara를 각각 선임 하였으며, 아태지역의 지역대표국으로 중국을, 부의장국으로 일본을 각각 선임함.
 - 1996년 총회는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함.

2. 제26차 CCC 관세평가기술위원회(1993.10.3.~8., 브뤼셀)

- 참가국: 49개 회원국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ICC(국제상공회의소) 등 국제기구
- 정부대표단(대표): 문재우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 회의 결과
 - GATT 평가협약 미가입국을 위한 체약국에 대한 제도 도입 과정의 영향 평가 질문서 검토, CCC 기술지원, GATT 평가협약상의 권고의견, Case Study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그 중 7건의 권고적 의견이 채택되는 등 활발한 토의가 진행됨.
 - GATT 평가협약 관련 기체약국에 질문서 검토는 더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뒤 차기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함.

1823

대한민국 무역면허서 영수증

BIE(국제박람회기구). 전3권 (V.1 1991-92)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14 / 16 / 1-180

1824

1. 제110차 BIE 총회(1991.12.12., 스페인 세비아)

- 참가국
 - 한국 포함 34개국
- 주요 안건
 - BIE 의장 선거, 각국 박람회 경과보고, BIE 업무보고 등
- 한국대표단 활동
 - 대전 엑스포 경과보고 및 특별규칙 승인, 홍보영상 상영 등 유치 활동
 - 의장 선거 관련 대전 엑스포 개최에 적극적 지지 입장을 보여준 T. Allan(영국)의 지지 결정
- 회의 결과
 - 1996년 부다페스트 박람회 개최 문제에 관한 표결 결과 1992.2월 집행위원회 재검토 결정
 - 한국이 지지한 Allan 후보가 BIE 의장으로 피선
 - 오명 대전 엑스포 정부대표는 준비상황 보고를 통해 박람회 준비 및 다수국가 참가 확보 통보

2. BIE 특별총회(1992.2.27., 파리)

- 참가국
 - 33개국
- 주요 안건
 - BIE 집행위원장 선거, 부다페스트 박람회 등록 등
- 한국대표단 활동
 - 한국은 M. Galopin BIE 프랑스 대표를 집행위원장으로 지지 결정
 - BIE 집행위원회(1992.2.21.)에서 1996년 부다페스트 엑스포 등록을 총회에 보고, 동 박람회 개최에 대한 공식 승인 추진
- 회의 결과
 - 부다페스트 박람회 표결 결과, 조건부 등록 결정
 - 집행위원장에 Galopin 프랑스 대표, 규정위원장에 Aroutiounov 러시아 대표 등 집행부 선출

3. 관련 동향

- 1992.4.21. 한국 BIE 대표로 이량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 국제국장 등 3명 임명
- BIE 집행위원회(1992.9.16.)에 대전 엑스포 추진 현황 보고
- 제112차 BIE 총회(1992.12.4.) 개최: 오명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의 준비 현황 보고 및 홍보영상 상영

BIE(국제박람회기구). 전3권 (V.2 1993.1-6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15 / 1 / 1-201

1. BIE(국제박람회기구) 관련 동향

- 특별총회(1993.3월)에서 2000년까지 신규 국제박람회 개최 검토를 봉쇄하는 의제 토의(스위스 제안)
 - 일본은 2005년 아이치 엑스포 개최 추진 관련 이견 표명
- BIE 사무총장은 BIE 문장을 변형하여 사용한 대전 엑스포 기념우표가 동 문장의 지식재산권 침해 설명 요구
 - BIE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대전 엑스포 입장료 수입 일부를 BIE에 납부 희망
- 홍보위원회(1993.3.22.)에서 한국 우표 발행 문제는 Allan 의장과 대전 엑스포 조직위 간 협의를 통해 의제에서 제외
- 국제박람회회의 미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서 제출 관련, 외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에 설문서 답변 준비 요청 및 동 결과를 취합해 제113차 총회에 제출

2. BIE 특별총회(1993.3.24., 파리)

- 한국은 스위스의 국제박람회 개최 제한 제안 관련, 전체적인 대세에 따르되, 대세가 불명확한 경우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 결정
- 스위스 제안 표결 결과, 2001년까지는 현재 기공인된 엑스포 이외 더 이상 BIE 공인 엑스포를 개최하지 않도록 결정
- 대전 엑스포에서 1993.11월 초 BIE Day 행사계획 및 BIE 기념비 제막식 개최 보고

3. 제113차 BIE 총회(1993.6.11., 파리)

- 참가국
 - 36개 회원국
 - 오명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 이랑 정부대표 등 참석
- 중국 및 태국 신규 가입으로 총 회원국 45개국에 도달
-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로부터 BIE 휘장 사용료 12만 달러 및 BIE 볼레틴 발간비 2만 달러 지원
- 오명 위원장은 대전 엑스포 준비 현황 보고, 제3차 정부 대표자 회의를 1993.8.3. 대전에서 개최, 개막식은 8.6. 거행 예정 보고
- 문제점: 최근 엑스포 개최가 너무 빈번하며 참가 소요경비가 과다함을 지적
 - 엑스포 개최 주기 관련 5년 주기로 1회 개최 제안 등 토론

1825

대한민국 의정문서

BIE(국제박람회기구). 전3권 (V.3 1993.7-12월)

생산연도 1991-1993

생산과 통상3과

MF번호 2023-115 / 2 / 1-205

1826

1. BIE(국제박람회기구) 장래에 관한 실무회의(1993.10.29.~30., 파리)

- 엑스포 장래에 관한 세미나
 - 엑스포 개최 시기 간격, 개최 기간, 엑스포 명칭 구분, 주제개발, 해외 참가자와 국내 참가자에 대한 전시관 제공 문제에 대해 집중 토의
 - 엑스포 개최는 5년 간격으로 하며 개최 기간은 3~6개월로 총회에 건의
 - 엑스포 명칭은 종합, 전문 등 구분을 없애고, 하나의 명칭 '세계 박람회'(World Expo)로 통일
 - 새로운 엑스포 개최신청은 1996년까지 유예(즉, 2001~2004년간 엑스포 미개최)
 - 전시관 제공 관련 해외 및 국내 참가자에 따라 모듈형 전시관의 무료 제공, 자체 건축, 임차 등 다양한 방법 검토
- 대전 엑스포 'BIE의 날 행사' 협의
 - BIE 기념비 제막식 등 개최

2. 제114차 BIE 총회(1993.12.8., 파리)

- BIE 의장 및 각 위원회 임원 선출, 대전 엑스포, 부다페스트 엑스포, 하노버 엑스포 조직 등 업무협의
 - 한국은 집행위원회 입후보를 검토한바, 이미 후보국 경합이라 출마 포기
 - 의장의 경우 프랑스와 덴마크 후보가 경합, 한국은 유력 후보 지지 입장이나, 백중세인 경우 프랑스 후보 지지 결정
- 한국은 오명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 등 5명 참석
- 엑스포 장래에 관한 실무그룹 토의내용을 검토하고, 익년도 실무그룹 재차 소집 및 재검토 추진
- 표결 결과 프랑스 후보가 신임 의장으로 선출
- 여타 위원회 임원국 및 위원장 선임
- 대전 엑스포 최종 결과 보고 및 성공적 개최 관련 BIE 사의 표명

ITTO(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 제15차. 요코하마, 1993.11.10.-1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115 / 3 / 1-313

정부는 1993.11.10.~17.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5차 ITTO(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에 박종호 산림청 임업사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 목적

- 열대목재 생산국 및 소비국 간 목재 무역 및 임업 분야 협력 증진
- 목재 무역의 확대, 다변화,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2. 주요 결과

- ‘열대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무역’에 대해 생산국과 소비국 간 토의
 - 생산국 대변인인 말레이시아 대표는 목재환경증명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산림 소유자, 관련 산업 관계자 모두에게 수용 및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국제사회가 합의하는 시한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고, 모든 목재에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존원칙을 재천명함.
- 국제열대목재협정 개정 관련 적용 범위, 재정지원, ITTO 기능 등에 관한 의견 조정

3. 한국대표단 활동

- 의제 토의 시 목재 수요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목재환경증명제도가 가격상승의 요인 및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시장 왜곡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1827

대한민국-국제열대목재기구

ITTO(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 제12-14차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115 / 4 / 1-171

1992~93년 중 개최된 제12~14차 ITTO(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 관련 내용임.

1. 한국 측 관심사항

- 세계 2위의 원목소비국으로서 원목 수급 안정화 노력
- 자원보유국 동향 지속 파악

2. 제12차 ITTO 이사회(1992.5.6.~14., 카메룬 야운데)

- 정부대표: 김외정 산림청 임업연구관

3. 제13차 ITTO 이사회(1992.11.16.~21., 요코하마)

- 한국대표단: 김외정 산림청 임업연구관 외 1명
- 주요 결과
 - 환경보호 차원에서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주정부는 벌채량 감축 선언
 - 오스트리아는 열대재 표시제(라벨) 시행
 - 8개 소비국 및 8개 생산국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신규 설치

4. 제14차 ITTO 이사회(1993.5.11.~19., 쿠알라룸푸르)

- 한국대표단: 정광수 산림청 이용과장 외 1명
- 주요 결과
 - 소비국과 생산국 간 입장 조율, 열대목재와 한대목재 간 차별 최소화가 쟁점사항
 - 열대림 보존을 위한 각종 조치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논의

관세심의위원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5 / 5 / 1-199

1993년 중 관세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임.

1. 1993년 할당관세 운용안(2차) 검토(1993.2.1., 외무부)

- 할당관세 개요
 - 물자수급 현황,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관세법 제16조)
- 1993년 할당관세 운용
 - 제1차: 1993.1.1. 연장적용이 불가피한 물품에 대해 우선 조치(원유, 포도주, 바나나)
 - 제2차: 1993.3.1.부터 조치, 12.31.까지 한시적 운용(조치대상 품목: 27개)
- 외무부 검토의견
 - 서울인상 품목인 산화니켈의 경우, UR(우루과이라운드) 양허관세율(5%) 내로 인상되었고, 기타 품목은 서울인하 대상인 관계로 별도 이견 없음.

2. 중국산 '활석' 조정관세 부과 문제 관계부처 회의(1993.5.14.)

- 참가자: 재무부 관세국장(주재) 및 기획원, 외무부,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 담당과장
- 경위
 - 수입 활석에 부과된 조정관세 연장 문제 협의 결과, 기존 조정관세 부과(적용기간 1991.7~93.6월, 요청세율 7%(기본세율)을 30%(긴급관세율)로 인상
 - 무역위원회는 동 조치를 향후 3년간 연장하도록 건의(1992년도 활석 수입액은 약 900만 달러, 중국 수입이 약 90% 차지)
- 회의 결과
 - 제1차 한·중 무역실무회의(1993.4월, 베이징) 시 확인된 중국 측의 큰 불만을 감안, 무역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로 함.
- 외무부 입장
 - 상당 기간 동안 중국 상품이 관련되는 조정관세 부과에는 강력히 반대
 - 중국은 한국 측의 중국 상품 관련 조정관세 부과조치를 양국 통상관계의 최대 현안 문제로 제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1829

대한민국 무역관계사 연혁

수입관세 운용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2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15 / 6 / 1-180

1991~93년 중 수입관세 운용 관련 내용임.

1. 돼지고기 통조림 긴급관세 연장적용 실무협의(1991.6.14.)

- 발언 요지
 - 재무부: 무역위원회와 상공부가 현행 긴급관세율 50% 유지를 요청하였으나, 수입단가 상승률 4.1%, 원화환율 절하율 5.1%를 감안, 40%를 제안
 - 경제기획원: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관세율 인하에 찬성
 - 농수산부: 양돈 농가 보호를 위해 현행 관세율 유지 필요
 - 외무부: 1년 연장하고 1년 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상공부: 현재 국내 업체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 2년 연장 및 현행 관세율 유지 필요
- 회의 결과
 - 긴급관세 적용을 2년간 연장하되, 관세율은 40%로 인하

2. 모직물 조정관세

- 외무부는 1993.12.27. 모직물 조정관세 관련 아래 요지로 관련사항을 주EC(구주공동체)대사에게 통지함.
 - 경제장관회의(1993.12.17.)는 모직물에 대한 아래 조정관세 부과안을 채택한 바 있음.
 - 대상품목: HS 5111, HS 5112, HS 5515.13
 - 조정관세율: 20%
 - 부과기간: 1994.1.1.~12.31.
 - 그러나 1993.12.23. 개최된 국무회의 시, 상기안에 대한 외무부의 강한 이견 제시로 국무회의 통과가 일단 보류되고, 1993.12.24. 개최된 경제장관회의 시 재협의하여 당초 조정관세율을 업계가 처음 요청한 38%의 절반 수준인 19%로 하향 조정하기로 최종 결정됨.

통상 관련 국내법령 개정안 검토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5 / 7 / 1-206

1991~93년 중 대외통상에 관련되는 국내법령 제·개정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의견임.

1.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률안 요지
 - 무역자동화주식회사로 하여금 무역자동화망을 구축하고 무역 관련 전자서류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
- 외무부 통상국 의견
 - 무역이 개방될 경우에 대비, 통상마찰 방지 차원에서 무역자동화망 구축 및 이용에 외국인 무역업자도 포함 검토 필요

2.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 상장법인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매매 등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 정의 및 내부자거래 시 이익반납과 처벌을 규정
- 외무부 통상국 의견
 - 증권회사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해 외국증권회사에 대해 차별적으로 높게 설정된 것은 시정 필요
 - 외국증권회사 청산 시 보유자산의 국내인 채권변제 우선권 인정은 내국민대우 원칙상 문제

3.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 개정 요지
 - 유엔경제 제제 등에 따른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원산지제도 도입, 상공부의 대외통상진흥 종합계획 수립 권한 및 관계부처 간 대외통상진흥협의회 운용
- 협의 결과
 - 외무부는 대외통상진흥계획 수립, 대외통상진흥협의회 신설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1차 송부
 - 상공부의 2차안에 정부조직법상 외무부 관장 사항인 통상이 포함되고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통상 협상의 추진'과 같은 외무부 업무와 상충되는 문제에 관해 의견 표명(1992.9.2., 경제차관회의)
 - 1992.9.17. 경제장관회의 시 문제조항을 무역 관련 협상 추진방안과 산업협력 추진방안으로 수정, 최종 확정
- 1993.3월 상공부 추진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무역제도를 자율관리체제로 전환)에 관해 외무부 통상국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사실상 성안된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 조사 등에 관한 초안과 동 개정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 송부

1831

대한민국 의정록

한·이스라엘 간 교역통계 발표 문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115 / 8 / 1-138

외무부는 한·이스라엘 간 무역통계를 1994.1.1.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함.

1. 한·이스라엘 간 교역통계 발표 문제

- 한국은 1993년 현재 대이스라엘 교역국 중 교역량을 발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
 - 이스라엘 측은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차별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발표를 촉구
- 외무부는 12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94.1월부터 이스라엘과의 교역통계를 비밀에서 해제하되, 당분간 무역통계연보 및 월보에는 수록하지 않고 열람 요청 시 열람을 허용하기로 함.

2. 대이스라엘 보이콧 완화 움직임

- 아랍권은 이스라엘 국가수립 저지를 위해 1946년부터 대이스라엘 보이콧을 논의, 1951.5월 아랍연맹 산하조직으로 보이콧위원회를 두었으나,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1979.3월) 계기로 폐지
 -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이스라엘 국가 묵시적 인정(1988.11월)과 함께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노력이 적극화, 아랍권 내부 분열과 개별 국가 이익추구 경향 등에 따라 완화 조짐
 - 튀니지, 모로코 등도 보이콧 일부 완화
 - 아랍연맹은 1993.11.22. 카이로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아랍점령지로부터 완전 철수할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보이콧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발표
- 미국은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에 보이콧 적용대상을 제한하도록 요구, 유럽 국가들은 불거래 사전인증발급제도 철폐를 요청, 일본은 대이스라엘 보이콧에 반대한다는 정부 입장 표명

3.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역통계 발표 결정

- American Jewish Congress(AJC) 이스라엘 지부장은 1993.7월 주이탈리아대사관(이스라엘 경임공관)에 대이스라엘 교역 현황 누락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옴.
- 외무부는 아래 사유로 대이스라엘 무역통계를 1994.1.1.부터 발표하고, 다만 일부 아랍국가의 반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1, 2단계로 나누어 공개하기로 결정함.
 - 미국, 일본, 대만 등 다수국이 교역통계 발표, 이스라엘 측은 대한민국 교역통계 발표로 한국 측 미발표가 사실상 무의미
 - 중동 국가들의 보이콧 완화 추세로 보이콧조항의 전반적 유명무실화
 - 이스라엘·PLO 간 평화협정으로 보이콧제도의 최대 사유인 팔레스타인 생존권 보장 명분 상실
 - 주이스라엘 상주대사관 개설 계획 감안

USTR(미국통상대표부)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5 / 9 / 1-127

1993.3.31. USTR(미국통상대표부)가 발표한 1992년도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임.

1. NTE 성격

-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상대국의 법, 정책, 관행 등 무역장벽 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
 - 1988년 종합통상법에 따라 USTR이 매년 3.31.까지 미국 의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

2. 한국 부문 내용

- 한국의 통상관련 제도, 정책 및 1992년 중 조치내용 점검
 - 수입정책(관세 및 비관세 정책), 표준,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 분야
- 체제, 포함 항목, 내용과 논조에 있어 전년도 보고서 내용과 대동소이
 - 전년도 보고서에서 부록으로 별도 기술했던 금융 부분을 이번에는 서비스 부문에 포함하여 간략히 기술
- 1980년대 중반 이후 각종 수입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으나, 많은 규제가 잔존하여 수입장벽으로 작용
 - 농산물 수입제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율
 -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
 - 국제관행에 맞지 않는 각종 무역관련 규정
 - 수입품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노력 미흡 등

3. 평가

- 한국 시장개방 노력 및 잔존 수입장벽을 비교적 균형감 있고 객관적으로 기술

1833

대한민국 무역면허서 영인본

미국 의회 통상 관련 입법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5 / 10 / 1-185

1993년 중 미국 의회의 통상 관련 주요 관심 의제에 관한 정보 수집 내용임.

1. 미국 의회의 논의가 예상되는 통상 이슈에 대한 정보 파악

- Super 301조 부활, 무역협정 준수 법안, 신속처리 절차,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2. 미국의 각종 통상 입법 전망 및 구체 내용에 대한 정보 수집

- 조선 통상 입법
- 무역 강화 법안
- 관세 관련 법안
- 무역협정 준수 법안
- 대중국 최혜국대우 조항
-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발전 전망
- 금융서비스 공정무역 법안

미국의 대외통상 정책 일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5 / 11 / 1-121

1993년 중 미국의 대외통상 정책 연례보고서와 주요인사 연설문 관련 내용임.

1. 1993.1.19. 캔터 미 무역대표부 대표 인준 청문회

- 캔터 후보자는 외국의 관세인하와 시장 접근 장벽을 해소해 나갈 것을 언급

2. 1993.2.26. 클린턴 미 대통령의 대외경제통상 관련 연설

- 실행정부의 정책 윤곽을 제시
 - 개방된 교역체제 창설 노력 강화
 -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교역상대국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 양자 뿐 아니라 다자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 추진
 - UR(우루과이라운드)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종결 추진

3. 1993.9.29. 미국 백악관의 수출 전략 발표

- 수출 장애 제거
- 수출 절차 간소화
- 수출 촉진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

1835

대한민국 외교부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교역국의 문제제기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통상1과 / 통상2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5 / 12 / 1-218

1991~92년 중 한국의 수입물품 원산지표시규정의 시행에 따른 교역국들의 문제 제기 및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상공부의 원산지표시제도 도입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7절의 개정(1991.5.18.)에 근거하여, 의류, 가전제품, 식품류 등 일반소비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 1991.7.1. 시행 예정
- 전체 품목의 25%에 적용하며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교토협약의 기준을 수용,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채택
- 외무부는 6.2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등에 대한 통보절차 준수 등의 필요를 들어 동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거나 계도기간을 두어 실시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상공부는 국제규범상 사전 통보 관련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실시 연기 불가를 회보

2. 주요 교역국들의 문제 제기

- 동 제도 시행과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국화장품협회가 충분한 사전 통보 기간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 상공부는 3개월간 업계에 대한 계도차원에서 물품 포장에 간이방식의 원산지표시를 허용
- 기타 EC(구주공동체), 오스트리아, 독일, 필리핀 등은 동 원산지표시제도가 수입 장벽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한국에 협의 요청

3. 문제 제기에 따른 대책

- 1991.10.9. 경제기획원 주도로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동 문제 대응방안 협의
 - 상공부와 관세청은 동 제도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충분한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 상공부는 향후 동 제도의 개선 등 관련 규정 개정 시 고려를 위해 외무부 등과 협의
- 상공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를 1992.4.1.부터 확대 실시하면서 상공부에서 작성한 영문설명서 등을 주요 교역국 측에 사전 제공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5 / 13 / 1-226

1. 한·호주 간 소고기 양자협상(1992.6.15.)

- 수석대표
 - 한국 측: 농림부 축산국장
 - 호주 측: 1차 산업성 축산국장
- 양측 입장
 - 한국 측: 1997.7월 이후에도 최소한의 소고기 생산 기반 유지가 필요하며, 1993년 이후 쿼터량은 1992년도 쿼터량을 기초로 경제성장률(7%) 만큼 증량 가능
 - 호주 측: 1997.7.1. 이후 소고기수입제도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일치시키고, 실 수입량에 기초하여 쿼터량 결정

2. 한·뉴질랜드 간 소고기 양자협상(1992.6.23.)

- 수석대표
 - 한국 측: 축산국장
 - 뉴질랜드 측: 외무무역성 다자부국장
- 양측 입장
 - 한국 측: 1997.7월 이후에도 최소한의 소고기 생산 기반 유지가 필요하며, 1993년 이후 쿼터량은 1992년도 쿼터량을 기준으로 3년간 쿼터 기간 설정 희망
 - 뉴질랜드 측: 1997.7.1. 이후 소고기 수입제한 철폐 또는 GATT에 일치시키고, 실 수입량에 기초하여 쿼터량 결정

3. 한·호주(1992.9.21./1993.2.23.~24./5.17.~18.) 및 한·뉴질랜드(1992.9.18./1993.2.26.~27.) 간 협상

- 양측이 합의하지 못했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

4. 한·호주 간 소고기 협상(1993.7.9.~12.)

- 도매시장에서 호주산 상장 물량의 점진적 증가에 합의하고, 1993~95년 쿼터 물량은 한·미국 간 합의한 내용 적용(최혜국대우)

5. 한·뉴질랜드 간 소고기 협상 양해록

- 1993.9.15. 서명

1837

대한민국 무역면허서 영수증

칠레산 과일 수입 문제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2과 / 남미과

MF번호 2023-115 / 14 / 1-101

1. 주칠레대사, 1991.11월 칠레 측이 자국산 과일(포도)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동 문제의 해결 지연이 양국관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 현 단계에서 시장개방이 어렵다면, 관련 사정과 향후 개방계획을 칠레 측에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 자료를 요청
- 칠레 측은 한국 측의 과일검역조사단 파견을 요청
 - 정원식 국무총리가 유엔환경개발회의(1992.6.11.~15., 리오) 계기 Aylwin 칠레 대통령 면담 시 칠레 측은 동 조사단의 조속한 파견을 재차 요청

1838

2. 과일검역조사단 파견 및 결과 통보

- 1993.2월 한국 측은 과일검역조사단을 칠레에 파견하여 현장 조사하고, 동 조사결과를 9월 칠레 측에 통보
 - 저온처리 및 공동검역 조건부 수입허용방안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
- 12월 Maximiliano Cox 칠레 농업부 차관 방한 시, 칠레 측은 동 조사결과에 대해 강력 항의하면서 UR(우루과이라운드) 위생 및 동식물검역 협상 및 한·칠레 공동위원회를 통한 정치적 해결 모색을 시사
 - 이에 대해 농림수산부는 동식물검역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정치적 타결사안이 아니므로 양국 식물검역소 간 추가협의 진행을 희망하면서, 칠레 측에서 공동시험 실시 및 관련 일정을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

대중국 자동차 수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5 / 15 / 1-164

1993년 중 중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동향임.

1. 중국 자동차 시장조사단 방한(1993.8.13.~27.)

- 방문단
 - 중국 자동차수출입총공사 상무(단장) 외 2인
- 방문 목적
 - 한국 자동차의 공식적인 대중국 수출을 위한 중요한 계기
- 주요 활동
 - 한국 자동차 업계 인사 면담
 - 주요 자동차 및 부품 생산공장 방문

2. 한국 자동차 협력조사단, 중국 방문(1993.12.5.~11., 베이징, 톈진, 상하이)

- 방문단
 - 박삼규 상공자원부 제2차관보(단장), 완성차 및 부품업체,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부품종합기술연구소 등 18명
- 방문 목적
 - 한·중국 통상장관회담 후속조치 일환
- 주요 활동
 - 중국 정부기관 및 자동차 공업 유관부서 방문
 - 한·중국 자동차 산업협력약정 체결
 - 중국 자동차 공장 방문, 중국 자동차 업계와의 간담회 및 업체별 상담

1839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한·EC(구주공동체) 자동차 교역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15 / 16 / 1-215

1993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 관련 문서임.

1. 한·EC 간 자동차 교역 동향

- EC 내 자동차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동차 수출 급증
 - 1991년 42,748대, 1992년 86,595대, 1993.1~8월 66,179대
- 한국 내 EC산 자동차 수입 부진
 - 1991년 859대, 1992년 838대, 1993.1~8월 513대

1840

2. 한국 및 EC 입장

- EC 측 우려
 - 한·EC 간 자동차 교역에서의 불균형에 대해 우려
 - 한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각종 차별적 무역장벽 철폐 필요
- 한국 측 대책
 - 한국이 자동차 교역에서 불공정 무역국이라는 인식을 지우고 통상마찰 완화 노력
 - EC 측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을 사전에 억제해야 할 필요

3. ACEA(유럽자동차협회)의 평가 및 요구사항(1993.6월)

- 한국 내 EC산 자동차 판매 부진 평가
 - 인증 및 통관 절차에 장기간 소요
 - 고율의 수입관세 및 취득세
 - 외제차 구매자에 대한 세무조사
 - 한국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
- 요구사항
 - 한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 중지
 - 한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제도 조사

4. 한·EC 양측의 해결방안 모색

- 공동조사반 구성, 한·EC 자동차 업계 간 협의체 구성 합의

한·EC(구주공동체) 철강 협의체 구성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16 / 1 / 1-180

1990~93년 중 한·EC(구주공동체) 철강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임.

1. 협의 경위

- 1990.3.5. EC 각료이사회, 철강쿼터협정 대상국에서 한국과 베네수엘라 제외 결정
- 1990.4.2. 한·EC 철강약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 개최
- 1990.5.28.~31. 한·EC 철강약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 개최
- 1990.10.25. 한·EC 철강약정 교환각서 서명(1990년)
- 1991.4.9. 한·EC 철강약정 교환각서 서명(1991년)
- 1992.11.13. 한·EC 철강 협의체(Contact Group) 구성에 대해 가서명

2. 주요 내용

- 목적: 철강 분야에 관한 상호 정보 교환
- 그룹 구성: 한국 정부 및 EC 집행위 대표자로 구성(필요시 산업 대표 참여 가능)
- 협의사항
 - 철강 산업 동향, 철강 교역 동향,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상호 인식
- 협의 개최: 연 2회 개최하되, 상호 합의 시 임시 협의 가능

1841

대한민국 무역면접 어휘집

한·홍콩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1과 / 동북아2과

MF번호 2023-116 / 2 / 1-194

1992~93년 중 한·홍콩, 한·중국 간의 주요 경제협력 동향임.

1. 한국의 대홍콩, 대중국 수출 촉진 간담회 개최
2. 한국대표단의 광동성 특구 시찰
3. 한국 경제설명회 개최
4. 한·홍콩 간 금융 및 관세 협력 추진
5. 중국 진출을 위한 투자환경 조사
6. 홍콩 노동, 금융 시장 현황 보고
7. 한·홍콩 세관협력위원회 개최
8. 중국 사천성 투자환경 조사를 위한 대표단 파견

대이라크 수출 관련, 유엔 이라크제재위원회의 수출승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1과 / 중동1과

MF번호 2023-116 / 3 / 1-148

제1차 걸프전쟁 이후 유엔의 이라크 제재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대이라크 수출 관련 유엔안보리 이라크 제재위원회의 수출승인 내용임.

1. 한국기업 또는 한국 관련 이라크 제재위 수출승인 요청 현황

- 1992.12월 한국산 아동복 수출 및 국제종합기계(주)의 농기계 수출 건
- 1993.4월 한국산 공산품(X-Ray 필름, 자동차 배터리, 식물 등) 수출 건
- 1993.10월 한국 문화공연단의 바그다드 개최 'Babylon 축제' 참여 건
- 1993.12월 현대상사의 농기계 수출 건

2. 이라크 정부의 한국기업 수출 및 건설공사 대금 미수금 문제

- 당시 동 미수금은 20억 달러 상당이었으며, 이라크 측은 원유로 상환하겠다는 입장 시사
- 이와 관련, 1993.4월 주유엔대표부가 이라크 제재위 측 입장을 타진한 결과 이라크의 유엔안보리 결의 불성실 이행을 이유로 동 방안 불허
 - 다만, 한국 정부는 유엔안보리가 11월 중 이라크의 원유판매 허용 문제를 검토계획인 것으로 파악

1843

대한민국 외교부서 영사관

대일본 무역역조 개선대책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6 / 4 / 1-190

1992~93년 중 대일본 무역역조 개선방안으로 시행한 사업 관련 내용임.

1. 외무부 소관 대일본 무역역조 개선대책

-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 모국상품 구매운동 전개
 - 민단, 상공회 등 재일동포 단체, 일본 주재 총영사관, 코트라와의 유기적 협력
 - 모국상품 구매단(오사카 한국 상공인회 주관) 유치 추진

1844

2. 대일본 무역역조 개선대책

- 산업연구원의 '한국상품 전시판매장' 개선대책 제언
- 오사카 흥은을 중심으로 'Buy Korean' 운동 추진
- 대만의 대일본 시장개척 지원방안 참고
- 상공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세부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대일본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세부 실천 대책 마련
 - 외무부 소관사항은 일본 건설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일본과의 교섭 강화

일본산 성숙바나나 수입 규제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6 / 5 / 1-83

일본 수출 성숙바나나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관련 내용임.

1. 일본의 한국에 대한 성숙바나나 수입금지 해제 요청

- 1991.5.7. 일본 농림수산물성 식물방역과장은 주일본대사관 농무관을 통해 일본 성숙바나나 수입 금지 해제 요청에 대한 회답 요청
 - 한국이 1986.3.1. 굴광대파리 방역을 이유로 성숙바나나를 수입금지 조치한데 대하여 동년 2.4.자로 동 해충이 일본 전역에서 근절되었다고 주장

2. 농림수산물부 검토 및 한·일본 간 협의

- 한국 농림수산물부는 1986년 이후 일본 국내의 굴광대파리 발생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검토가 어렵고, 1991년 현재 굴광대파리 예찰 상황에 관한 자료를 일본이 제공하면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
- 일본 측은 농림수산물성 농잠원예국 식물방역과장 명의 1991.12.3.자 공한으로 1983년부터 굴광대파리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농림수산물성 책임 아래 트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시까지 동 해충이 침입, 정착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
- 한국 농림수산물부는 1992.4.15.자 공문으로 굴광대파리 관련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확신이 어렵고, 양국 전문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
- 일본 농림수산물성 측은 5.13. 주일본대사관 농무관을 통해 굴광대파리의 일본 전역 박멸은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도 인정하고 미국과 호주도 이미 수입금지를 해제한바, 한국 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표명
 - 8.10.자 공한으로 일본은 한국 측 입장의 과학적 근거 제시를 요청
- 1993.1.6.자 공문으로 한국 농림수산물부는 대만을 통해 동 해충이 재침입할 수 있으며, 일본 본토산과 금지지역산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기
 - 한국이 수입금지 하는 일본산 사과와 해충인 만주애기잎말이 나방이 일본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
- 일본 농림수산물성 식물방역과장은 1.7.자 공한으로 한국의 수입금지를 이해할 수 없으며 동 조치의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일본산 사과의 수입금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를 요청

3. 일본 식물검역 관계관 방한 협의(1993.3.22.)

- 참가자
 - 한국 측: 조일호 국제검역정보과 제1주무관 등
 - 일본 측: 농림수산물성 식물방역과 수출계장 등

1845

대한민국 무역관계관 방한



- 협의 내용
 - 일본 측 관심사항: 코드린나방의 한국 분포여부 사실 확인, 일본 사과 및 성숙바나나의 수출, 한국의 식물검역체계에 대한 정보 입수 등
 - 한국 측 관심사항: 한국산 사과 및 배의 화상병을 특정병해충 검역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한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의 수입호두 등에 대한 원산지 확인
- 일본 측의 성숙바나나 수입금지 해제 요청 관련, 한국 측은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에서 꿀광대파리 박멸사실을 볼 수 있으나, 대만으로부터의 꿀광대파리 재침입 우려는 배제할 수 없음. 수입금지 해제는 매우 위험하고 중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응

한·몽골 경제통상 및 기술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116 / 6 / 1-104

1993년 중 몽골의 경제 상황 및 한·몽골 간 경제통상 협력 관련 내용임.

1. 몽골 경제 상황

- 1990년 이후 몽골 경제 동향: 시장경제로의 전환 및 경제사정 악화
 - 정부대책: 시장경제 전환 가속화, 가격 자율화, 세법 개정, 공식 환율 인상, 국가재산 사유화조치, 봉급인상 및 최저생활비 지원, 축산 및 농산물 증산, 석유탐사, 발전소 건설 등
- 일본·몽골 간 협력관계
 - 대몽골 서방 원조공여국 국제회의(1993.9월, 도쿄) 개최
 - Jasrai 몽골 수상 방일(1993.11.24.~28.) 확정, 무상경제원조, 기술협력 등 협의 예정
 - Japanese Village 건설 추진 및 몽골 진출 향로 개척, 몽골 제철소 건설 및 운영 등

2. 한·몽골 경제협력 동향

- 한국 보잉 727기 기증
 - 몽골 대통령 러시아 공식 방문(1993.1.19.~22.) 시 사용, 향후 몽골 국내노선 운항 예정
- 해운, 항공협력 방안 협의
 - 내륙국으로서 대한민국 화물반입 확대와 관련, 한·중국 해운협정 체결 시 몽골 측 관심 반영 희망
 - 중국과의 항공협정 체결 후 이원권을 이용한 몽골 진출 및 하계 임시운항 허가 가능성
- 몽골, 화력발전소 건설용 장기 저리 차관(1,406만 달러) 요청(3.18.)
- 몽골 지질광물부, Mardai지역 우라늄광 개발사업에 한국 측 협력 가능성 문의(4.2.)
- 몽골 과학아카데미 원장 방한(1993.6.16.~21.) 초청
- 몽골 부수상 방한 추진
- 제2차 몽골·한 민간경제협의회 사절단 방한(1993.11.24.~28.)
 - 경제협력 관련 정부부처 방문, 산업 시찰, 개별기업 상담, KOICA 방문 등
- 몽골 국제공항 활주로 보수, 화물창고, 컨트롤타워 건설공사에 한국기업 포함
 -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 3,500만 달러 공사에 한국 삼화기업 등 6개 업체 선정

1847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작

담배소비세율 인상 관련 대미국 협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6 / 7 / 1-74

1993년 중 담배 소비세율 인상 관련 대미국 협의 내용임.

1. 담배 소비세 인상 계획

- 목적
 - 지방재정 결손 충당(담배 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원천)
- 조치계획
 - 갑당 소비세율 360원에서 460원으로 정률 인상(가격 200원 초과 권련담배에 해당, 무관세는 현행대로 유지)
 - 현재 종량세 제도는 그대로 유지

1848

2. 대미국 협의 내용

- 1993.9월 한국 측은 한·미국 담배 양해각서(1989.5월)가 소비세율 갑당 360원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동 소비세 인상계획을 미국 측에 통보하며 협의 제의
- 제15차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1993.10.14.~16., 서울)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인상계획에 동의
- 외무부 통상국장과 USTR(미국통상대표부) 한국과장 간 서한교환으로 동 양해각서 해당조항 수정

3. 국내 조치

- 한·미국 간 협의결과에 따라 내무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94.1.1.부터 인상된 소비세 적용 예정
- 담배 사재기에 대처하기 위해 1994년 초까지 보도 제한

대미국 경제통상 홍보. 전2권 (V.1 경제통상 홍보활동)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6 / 8 / 1-141

1993년 중 외무부는 김영삼 정부의 출범 및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대미 경제·통상 홍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함.

- 외무부의 대미국 경제·통상 홍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부처·기관의 활동계획 조사
- 미국 상공회의소의 한국 경제관계 특집 취재(1993.2.20.~25.) 지원
- 상공자원부 발간 영문 홍보자료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conomic Partnership & Perspects(1993.2월) 재외공관 배포
- 경제개혁 및 고통분담 정책하에서의 수입억제 움직임의 표출 방지, 외제차 소유 중소기업인에 대한 조치 관련 협조 요청
- 한·미 통상 교섭상의 정경분리 대응 건의 검토
- 국제화 전략에 대한 대통령 연설문 송부(북미지역 재외공관)

1849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정책

대미국 경제통상 홍보. 전2권 (V.2 품질한국(Korea for Quality) 홍보행사)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6 / 9 / 1-206

1993년 중 주미국대사관은 한국 상품의 우수성 이미지 홍보의 일환으로 '품질한국(Korea for Quality)' 행사를 개최함.

1. 주미국대사관의 대미 교역 확대방안 수립

- 한국 상품의 우수성 이미지 홍보를 위한 '품질한국' 행사 개최(공관 역점사업)
- 지역별로 민관 합동 무역진흥회 개최
 -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무역관의 역할 강화
- 건의사항
 - 대미 무역투자사절단, 각종 회의 및 방미활동 계획을 '품질한국' 행사에 통합

2. 외무부, 유관 부처·기관의 방미활동 계획 및 '품질한국' 사업 검토

- 외무부 통상국, 무역·경협 관련 방미 행사계획을 종합하여 주미국대사관에 송부
- 1993년도 '품질한국' 행사는 상공자원부, 무역협회를 통한 지원방안 검토

3. 상공자원부, '품질한국' 추진회의(1993.7.6.)

- 참석 범위
 - 상공자원부(1차관보 주재), 외무부, 공보처, 문화부, 서울시, 대전 엑스포 조직위, 코트라, KIET, 대한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 회의 결과: 1993.10월 미국 주요 5개 주요도시에서 '품질한국' 순회 홍보
 - 경제 정책 및 투자여건 설명회
 - 민간 산업협력사절단 파견
 - 상품 상담회 및 리셉션 개최

4. '품질한국' 행사(1993.10월)

- 주미국대사관이 대미 교역확대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건의한 '품질한국' 행사를 상공자원부 주관으로 추진
 - 당초 경제 관련 행사와 문화행사 등을 포괄하는 종합행사로 추진하였으나, 경제행사로만 추진
- 행사 개요
 -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에서 상품전시회, 대한투자 및 무역제도 설명회 개최
 - 행사 주관
 - 무역협회: 투자 및 무역제도 설명회
 - 코트라: 상품전시회
 - Edelman Co.: 홍보

미국산 수입 밀 농약검출 문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6 / 10 / 1-102

1993년 중 미국산 밀의 농약 검출 관련 한국 정부 내 협의와 미국과의 협의 관련 내용임.

1. 협의 경위

- 1993.2월 보건사회부 산하 부산검역소에서는 미국산 밀 11,000톤(2월)과 1,500톤(5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잔류가 검출된 것을 이유로 통관을 보류함.
 - 그러나 6월 말 보건사회부가 문제의 11,000톤 밀에 대해 재검사한 결과, 12개 시료 중 11개 시료에서 잔류농약이 미검출 되었고, 나머지 1개 경우에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됨.
- 보사부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정상회담 이전에 수입 밀의 용도를 식용에서 사료용으로 전환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함.

2. 관계부처 협의내용(장관급 조찬회의(1993.7.10.), 국장급 회의(1993.7.21.) 등)

- 보사부가 11,000톤 수입 밀에서 검출된 농약이 기준치 미달임을 공식 발표하도록 함.
- 보사부는 부정적 검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항소 절차를 제도화할 예정임.
- 금번 도입된 밀은 수입업자가 사료로 통관 처분하도록 함.
- 사료 통관처분 절차
 - 수입업자가 요청서류를 제출하면, 세관당국이 독성검사를 농림수산부에 의뢰하고, 농림수산부의 회신에 따라 통관 조치함.
- 창고료 경감문제: 이미 발생한 창고료 중 용도전환에 따른 판매 손실액만큼을 경감해 주는 방안 마련

3. 미국 입장

- 보사부의 언론 발표를 수용하나, 사료용으로 전환 사용하기로 한 것은 미국 수입 밀에 대한 나쁜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언급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국제기준과 합치하는 항소 절차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것임을 설명

1851

대한민국 외교부

외국 화장품 부정 수입 문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6 / 11 / 1-100

1993년 중 미국 화장품 에스티로더의 부정 수입 관련 내용임.

1. 문제 경위

- 검찰은 1992.12월 화장품을 불법 수입하고 있는 6~7개 회사를 조사, 그 가운데 에스티로더 한국지사 직원 2명을 기소함.
- 미국 측은 지사장이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것에는 이의 없으나, 회사가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는 것에는 이의 제기

1852

2. 미국 측 동향(1993.1~4월)

- 솔라즈 전 의원, 다마토 상원의원, 에크만 하원의원 등은 에스티로더에 대한 선처를 요청
- 에크만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 USTR(미통상대표부) 대표보도 에스티로더에 대한 차별이 의심된다고 주미국대사관에 문제점 제기

3. 외무부는 1993.4월 상기 관련 미국 측에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에스티로더 한국지사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진행 중으로 관계부처에서는 아직 방침을 정한 바 없음.

한·미국 금융협력. 전2권 (V.1 1-5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6 / 12 / 1-114

1. 제3단계 금융자유화 및 개방계획(Blue Print)

- 금융제도 개편작업 관련 내용이 신경제 5개년 계획(1993.6월 확정 예정)에 포함되고 1993.6.30. 발표될 예정
 - 3단계 내용: 금리자유화, 여신관리제도 개편, 간접통화관리, 채권시장 개방, 단기 금융시장의 발전, 외환 및 자본 자유화
- 금융제도 개편 제1단계(1992.3.31.) 및 제2단계(1992.6.30.)는 이미 발표

2. 한·미국 간 금융정책 회의(1993.4.29.)

- 의제: 한국의 제3단계 금융개방(안) 국내 금융산업 개편(안)
- 수석대표
 - 한국 측: 임창열 재무부 2차관보
 - 미국 측: Jeffry Shafer 재무성 국제담당 차관보
- 회의 내용

(한국 입장)

- 금융개방 Blue Print 작성 추진 일정
- 2단계 금리자유화 시행, 연지급 수입대상 완화, 외환거래 실수요 증빙 완화
- 정책금융 축소, 통안증권 경매제 도입, 증권시장 추가 개방, SWAP 계산방식 개선
- CD 발행한도 확대, 은행감독 규제의 명료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차입 완화 등

(미국 측 질문사항)

- 통안증권 배정에서의 행정 재량권, 실세금리와 규제금리의 수준
- 제2단계 금리자유화 실시 시기, SWAP과 National Treatment와의 관계
- 현 CD 발행한도의 소진율,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차입 불가로 인한 철수 등

1853

대한민국 외경제협력위원회

한·미국 금융협력. 전2권 (V.2 6-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6 / 13 / 1-156

1993.6~12월 중 한·미국 간 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간 UR(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 관련 협의(1993.11.3., 서울)

- 개최 배경
 - Shafer 재무부 차관보는 미 행정부의 UR 협상 타결 시한인 1993.12.15.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 일본, 아세안 등과 금융서비스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아시아를 순방함.
- 수석대표
 - 임창열 재무부 2차관보, Shafer 미국 재무부 차관보
- 주요 내용
 - UR 협상의 타결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연내 UR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2. 미 재무부,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 발표(1993.11.23.)

- 한국은 환율을 직접적으로 조작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외환 및 자본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시장매커니즘에 의한 환율결정을 저해
 - 과감한 금융부문 국제화 조치 필요
- 광범위한 금융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 '금융자유화 및 개방계획(1993.6월 발표)'을 평가
- 미 재무부는 1988.10월 이후 3회에 걸쳐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1990.4월 보고서부터 환율조작국에서 제외

한·미국 동식물 검역·위생 문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6 / 14 / 1-102

1992~93년 중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한·미 간 검역 및 위생 문제 협의 동향임.

1. 한국의 식물검역 절차에 대한 한·미 간 이견 조정

- 미국 APHIS(농무부 동식물검역소)는 식물검역 관련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연장을 요청
 - 농수산부는 1992.12.8. 공고, 입법 예고기간으로 20일 부여한 후 1993.1.1. 시행 추진
- APHIS 요청에 따라 농수산부는 해당 개정안 시행을 1993.3.1.로 연기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BT(무역기술장벽) 사전 통보 의무기간이 60일 등 고려
- 1993.2.2.~3. 미국 전문가가 방한하여 한국 측과 기술적 내용 협의
 - 검역증명서가 과다한 정보를 요구하고, 한국 내 적용하지 않는 위생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
 - 협의를 거쳐 위생조건은 3.1. 시행, 새로운 위생조건에 의한 검역증명서 서식은 4.1. 사용

2. 기타 한·미 간 관심사항 협의

- 1993.5.4. 주미국대사관 농무관, APHIS 측에 구제역 비발생 사실인정 관련사항 진전 요청
 - 11.30. 미국 농무부, 구제역 비발생을 인정하고 육류 및 유제품 수입제한 해제를 입법예고
- 9.1. 주한 미국대사관 측,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오일시드 무세화 제안에 대한 한국의 지지 요청
- 9.13. 한국 농업중앙회장, 미 농무부를 방문하여 쌀 관련 한국 농업 상황 설명
- 12.13. 국립식물검역소 국제검역정보과장, APHIS를 방문하여 한국산 사과 및 과채류 수입허가 요청
- 1993년 중 애완동물용 사료 관련 한·미 간 협의 시도

1855

대한민국-미국 자유무역협정

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전4권 (V.1 제1-2차 협상, 1992)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6 / 15 / 1-218

1992년 중 개최된 제1~2차 한·미국 간의 소고기 협상 관련 내용임.

1. 제1차 한·미 소고기 협상(1992.6.11., 과천)

- 수석대표
 - 한국 측: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미국 측: Nancy Adams USTR(미통상대표부) 부대표보
- 협상 의제
 - 소고기 수입자유화 일정 문제(1997년 완전 개방 보장, UR(우루과이라운드) 일치 문제)
 - 1993년 이후 수입쿼터 설정 문제(쿼터량, 쿼터 운영 기간)
 - SBS(업계간 자율거래제도. Simultaneous Buy and Sell) 운영 문제(SBS 구매량, SBS 참여자 수)
- 양측 입장
 - (한국 측)
 - 소고기 시장 완전 자유화 문제 관련, 최소한의 생산 기반 유지 필요성 설명
 - 1993년도 이후 쿼터량은 1990~92년도 쿼터 수준을 기초로 산정
 - SBS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 (미국 측)
 - 1997.7.1. 이후 소고기 시장 완전 자유화
 - 소고기는 UR 농산물 협상에서 관세화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1993년도 이후 쿼터량은 1993년도 수입량을 20% 증량시킨 수준을 기초로 산정
 - SBS의 실질적 확대
 - 소고기 시장 완전 자유화 이후의 LMPO(축산물유통사업단) 기능 문제 검토 필요
 - 차기 양자협상부터 업계 간 협의 병행 및 동 협의 결과 반영

2. 제2차 한·미 소고기 협상(1992.8.31.~9.1., 워싱턴 D.C.)

-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정용 농림수산부 김정용 축산국장
 - 미국 측: N. Adams USTR 부대표부
- 협상 의제
 - 1997년 소고기 시장개방 보장 문제
 - 1993년 이후 쿼터 증량
 - SBS 확대 등

-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소고기 수출 관련 서류 간소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철폐 문제, 호텔용 DBS 운영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제기하였으나 양국 간 이견해소에 많은 진전
- 미국 측은 1997년까지 소고기 완전 수입자유화할 것과 쿼터량을 한국의 실제 소고기 수입량과 수요 증가율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소고기는 관세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한국 측은 경제사정 악화 및 수입량이 국내 소비의 60% 수준임을 들어 완전 개방은 무리이며, 한국 소고기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수입의 점진적 확대가 양국의 실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길임을 강조
- 미국 측은 SBS 물량 확대 및 미국 공급자가 시장에 보다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의 대폭 개선을 요구

- 평가

- 1997년도 소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전제로 쿼터량의 대폭적인 확대와 SBS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미국 측 입장과 현 수준에서 완전 자유화는 고려하기 어려우며 쿼터량이나 SBS 문제도 이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 간에 한계는 있었으나, 양측 주장의 근거와 논리적 배경 이해에는 도움이 되었음.

3. 한·미 소고기 비공식 협상(1992.12.14.~15., 호놀룰루)

- 대표단

- 한국 측: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등 2~3명
- 미국 측: N. Adams USTR 부대표 등 2~3명

- 협상 의제

- 1993년 이후 소고기 수입쿼터 책정
- 1997년 시장개방 문제
- SBS 확대 문제 등

- 논의 결과

- 한·미 소고기 협상 합의 도달에 대한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1990년도 한·미 소고기 협정상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예외 합치' 문구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함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로 함.
- 미국 등 수출국은 1997.7.1. 이후 소고기 시장 완전 자유화와 수입쿼터량의 대폭 증량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 측은 3년간의 쿼터 설정 및 소고기 수입제도의 UR 결과 일치를 주장하여 의견이 대립됨.

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전4권 (V.2 제3차 협상, 1993.2.11.-1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6 / 16 / 1-137

1993.2.11.~13. 과천에서 개최된 제3차 한·미국 간의 소고기 협상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김동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미국 측: N. Adams USTR(미통상대표부) 부대표보

2. 주요 협의내용 및 양측 입장

- 소고기 시장 완전 개방 문제
 - 미국 측, 1997.7.1.까지 완전 개방 약속 보장 요구
 - 한국 측,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합치시키겠다는 기본 입장 고수
- 1993년 이후 쿼터 증량 및 대상 기간 문제
 - 미국 측, 최근의 소고기 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쿼터 대폭 증량 요구
 - 한국 측, 국내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3년간 적정수준에서 단계별 증량 주장
- SBS(업계간 자율거래제도, Simultaneous Buy and Sell) 운영 문제
 - 미국 측, SBS 참여자와 구매량의 대폭 확대로 직접 시장접근(direct access) 요구
 - 한국 측, 미국 측에서 제시한 직접 시장접근 개념 수용, 정도 및 참여자 범위에 대해 단계별 대안 제시

3. 협상 경과

- 한국 측 협상 방향
 -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완전 수입자유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고, 우선 급박한 쿼터 및 SBS 개선 문제를 중점 협의, 최소한 잠정적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의
- 한국 측 제안
 - 수입 쿼터: 9억 9천만 톤(1993년), 매년 5%씩 증량하되, 대상 기간은 우선 3개년만 책정
 - SBS 대상 쿼터량을 7%에서 10%(1993년), 15%(1994년), 20%(1995년)로 확대
 - SBS 계약 조건에 관한 실수요자와 공급자 간 직접계약을 허용하고, 다만 국내 가격과 수입 가격의 차액만 축산기금으로 납부
 - SBS의 대상 국내 수요 업체는 향후 1년간은 기존의 3개로 하되 1년 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 양측은 상기 쿼터량 및 SBS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SBS에 참여할 국내 수요 업체의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협상을 종료함.

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전4권 (V.3 제4차 협상, 1993.4.13.-22.)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6 / 17 / 1-220

1993.4.13.~22.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국 간의 소고기 협상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김동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미국 측: Peter Collins USTR(미통상대표부) 한국담당관

2. 협상 의제

- 자유화 문제
- 1993년 이후 수입쿼터 문제
- 업계 간 자율구매제도

3. 협상 경과

- 1993.4.18.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해 일단 합의하였으나, 최종 합의 문안 작성에는 실패

4. 협상 결과

- 합의 사항
 - 협상 대상 기간: 1993~95년 3개년(한국 측 입장 반영)
 - 기본쿼터 수준: 1993년도에 9만 9천 톤으로 하고, 매년 5%씩 증가(한국 측 입장 반영)
 - SBS(업계간 자율거래제도, Simultaneous Buy and Sell) 물량: 1993년 및 1994년 한국 측 입장 반영, 1995년 27.5%
 - SBS 참여자: 1994년 실소비 업체, 1995년 대규모 소매점 제외, KOSCA 직영점 직접 참여 허용
 - 기타: 국내외 가격 차액 징수, Markup 상한선 설정, 상한선 매년 5%씩 감축
- 주요 미합의 사항
 - 소고기 수입자유화 문제
 - 관광호텔용 Mark-up
 - SBS 수입 가격
 - SBS 간접 참여자의 지위

5. 관찰 및 전망

- 미국은 상대국이 미국에 상응하는 시장개방을 하도록 향후 강경 입장 견지 예상
- 미국은 수입자유화 문제를 레버리지로 하여 실질적인 개방을 시도할 것임.
- 양측 간의 견해가 커서 당분간 소고기 협상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한·미국 소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전4권 (V.4 제5차 협상, 1993.6.22.-26.)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17 / 1 / 1-170

1993.6.22.~25. 과천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국 간의 소고기 협상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김동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미국 측: Peter Collins USTR(미통상대표부) 한국담당관

2. 협상 결과

- 수입자유화 문제
 - 소고기 수입 완전 개방 시기를 명확화하지 않고, 1990년도 한·미국 간 합의대로 1989년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위원회 결과에 따르겠다는 한국 측 입장 수용
 - GATT/BOP 결과: 1997.7.1.까지 '수입제한 철폐' 또는 여타 'GATT 규정' 준수
- 수입쿼터
 - 한국의 수급사정 범위 내에서 1993~95년 3개년 수입쿼터 설정
 - 1993년 9만 9천 톤(1992년 수입량 13만 2천 톤 대비 25% 감소), 1994년 10만 6천 톤, 1995년 11만 3천 톤
- SBS(업계간 자율거래제도, Simultaneous Buy and Sell)
 - SBS 물량: 현행 기본쿼터(7%)에서 점진적 확대(1993년 10%, 1994년 20%, 1995년 30%)
 - SBS 참여 대상: 연차별로 국내 업계의 참여 범위 확대
 - KOSCA 가맹점과 정육점 중 수입 소고기 전문점은 축협과 한국냉동을 통하여 공급되는 수입 소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Customer로 1995년에 참여
 - 부과금: 유통상 혼란방지 및 수요자의 과다이윤 발생 방지를 위해 일정 비율의 부과금 부과, 단 부과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인하(연 5%씩 감축)

3. 평가 및 의의

-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고기 문제 공동 당사자인 호주, 뉴질랜드와 협상을 개최할 예정인바, 타결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소고기 협상 타결로 미국과의 주요 통상현안을 대부분 해결하고, 1993.7월 개최되는 한·미국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방안 협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

한·미국 수산물 수입 문제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7 / 2 / 1-155

1990~93년 중 미국산 수산물 수입 협상 동향임.

1. 미국 측 관심 수산물 및 요청사항

- 미국 측 관심 수산물
 - 대구 머리, 먹장어, 서대/게/명태 연육, 민대구 연육/대구 선어
- 미국 측 요청사항
 - 수입허가 또는 설득력 있는 수입불허 사유 설명
 - 통관 지연 해소 및 과도하게 요구하는 검사증명서 간소화

2. 한국 측 입장

- 대구 머리
 - 대구는 전체로 식용 적합 HS 번호를 부여하나, 대구 머리는 폐기물 해당 HS 번호 부여
 - 폐기물 해당 HS 번호를 부여함에 따라 수입도 불가
 - 위생처리 적합 조건하에 별도 HS 번호를 부여하여 수입 가능 여부 재검토 필요
- 먹장어
 - 공업용 원자재로만 냉동상태로 수입되어 가축만 사용하고 어육은 폐기 처분
 - 약품처리 후 가축을 벗기므로 어육은 식용으로 부적합하며, 따라서 식용으로 수입 불가
 - 위생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 회의에서 판단해야 할 필요
- 서대/게/명태 연육
 - 수입제한 품목으로 합작회사 또는 공동사업으로 어획한 것만 수입허가
- 민대구 연육/대구 선어
 - 민대구 연육에 대한 통관 지연 사례 전무
 - 대구 선어는 수입 급증 및 불량제품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감안하여 엄격한 규정 적용

3. 진전사항

- 1992.10.22.~24.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무역 실무회의에서 대구 머리와 먹장어의 가공실태에 대한 현지 조사에 합의

1861

대한민국 어업관리청 어획량

한·미국 통관 문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7 / 3 / 1-209

1992~93년 중 미국 측이 제기한 한·미국 간 통관 문제 관련 내용임.

1. 주요 수입품에 대한 지정분석제 실시

- 관세청, 1992.7.1.부터 지정분석제 도입
 - 분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품목 분류 결정이 곤란한 107개 품목에 대해 정밀분석을 거친 후에 통관하도록 하는 제도
- 미국 측은 7.22. 지정분석제가 수입 장벽으로 작용될 우려를 표명하고, 초콜릿이 동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희망
- 관세청은 초콜릿은 지정분석 대상이 아니며,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겠다고 회신

2. 치과 보철물 합금 심사

- 보건사회부는 1992.9.8. 미국 Aalba Dent사의 치과 재료용 합금에 대한 국내 유통금지 조치 해제
 - 1987.8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동 합금이 인체에 유해하다면서 유통금지를 건의함에 따라, 보건사회부가 1990.11월 국내 유통을 금지하였으나, Aalba사의 무해성 주장을 충분히 반박하기 어렵고, 다른 선진 수입국가에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3. 기타

- 미국산 향커피(Flavored Coffee) 통관 불허 조치
- 관세청의 외국 세관의 농·수산·축산물 통관 절차 자료조사 요청
- 미국 Goober 땅콩버터 수입통관 보류 문제
- 미국 관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보고

한·미국 통상관계 일반. 전2권 (V.1 1-5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7 / 4 / 1-189

1993년 중 한·미국 간 통상관계 주요 동향임.

1. 대미 통상외교 추진계획(1993.3.3., 외무부 통상국)

- 양국 신정부 출범기 통상관계 조율, 양국 간 전략적 경제 동맹관계의 발전 도모 등 대응책 입안

2. 한승주 외무부장관, Burghardt 주한 미국대사 대리 면담(1993.3.5.)

- 한국 측: 영업환경 개선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잘 해결하면 통상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함
- 미국 측: 신정부 내에서 개방 정책의 가속화와 금융 정책의 전향적 추진 등 설명

3. Burghardt 대사 대리, 경제부처 장관 면담(1993.3.10.~11.)

- 재무부장관은 미국 측이 제기하는 초과 유보소득과세는 국내외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이며, 2단계 금리자유화 등 자유화 및 경쟁촉진에 바탕한 정책 방향 설명
- 농림수산부장관은 '쌀시장 개방 불가'라는 한국 입장이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반영되도록 협조 요청
- 상공자원부장관은 미국 측이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업환경 개선에 관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데 대해 신정부의 규제완화계획 및 지식재산권 관련 단속활동 등 한국 측의 노력 설명

4. 한·미 경제관계와 대응방안(4.7., 경제기획원 작성)

5. 외무부차관, Tarnoff 미 국무부 정무차관 면담(1993.4.22.)

- 지식재산권 보호 등 양국 간 합의사항의 정직한 이행을 언급
- 미 정무차관은 금융자유화 문제 진전 요청

1863

대한민국 외교부서 역사

한·미국 통상관계 일반. 전2권 (V.2 6-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7 / 5 / 1-200

1993.6~12월 중 한·미국 간 통상관계 주요 동향임.

1. 한·미 통상관계에 관한 평가

- 1993.6월 게파트 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및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의 시장개방의 필요성 지적
- 6.9. 주미국대사와 Spero 미 국무부 경제차관 면담 시 양국 간 통상이 원만한 관계에 있다고 한데 대하여 동 차관은 한국 내 외국인의 금융 및 투자활동에 상당한 규제와 관료조직의 저항을 언급
- Stiglitz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 교수는 6.15. 서상목 의원 면담 시 한국의 경우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 위치에 있고, 금융개발은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고도기술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같이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은 유익하다고 언급
- 6.18. 미국 Inside US Trade지는 한·미 재계회의 연설에서 Summers 미 재무차관 등 주요 경제·통상 관리들이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여 한·미 통상현안 동향을 보도함.
 - G7 정상회의(1993.7월, 도쿄) 직후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 계기 미국 측은 한국 시장개방 압력 증대
 - Cassidy USTR(미국통상대표부) 대표보는 한국은 아직 외국기업의 진출이 어렵고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표준, 통관, 기술이전 등 영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
 - 동 재무차관은 한국 금융시장 개방을 위해 금리자유화, 자본외환거래 규제완화 등 조치 요구

2. 한·미 통상관계 대응 및 협의

- Collins USTR 과장은 한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993.7~8월 중 공식 협의를 요청
- 한국 측은 하반기 통상 협의 일정으로 지식재산권 중간점검회의, 제1차 DEC(한미경제협력대화) 회의, 무역실무위, 통신회담 등 제안
- Kartman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7.26. 주미국대사관 측과 면담 시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이 성공적이었고, DEC를 통한 성과 기대를 표명
- 강봉균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실장, 미국 방문(1993.8.31.~9.1.)
 - 규제완화 및 개방, 국제화를 지향하는 대외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바람직한 한·미 협력 관계 협의
- 10.12. 헤리티지재단의 한국 관련 정책건의서에서 개혁의 장애요인으로 관료조직의 저항 언급

한·호주 세관협력회의, 제3차. 서울, 1993.9.13.-1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7 / 6 / 1-63

1993.9.13.~17.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호주 세관협력회의의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88.8월 양국 간 세관협력 양해각서 체결
- 제1차(1989년), 제2차(1991년) 세관협력회의 개최

2. 주요 의제

- APEC(아태경제협력체)과 세관협력
- 전산 프로그램 운영 기법

3. 정부 훈령

- 한국의 무역 규모 확대, 여행자 급증, 마약 밀수의 증가에 대비해 양국 간 긴밀한 세관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

4. 회의 결과

- 1988년도 양해각서를 수정 없이 연장함.
- 전산 프로그램 운영 기법 등 여러 분야 수사에서 상호 긴밀히 협조하기로 함.
- 양국 간 통관 애로 발생 시 최상급 행정기관을 통해 수시로 해결하는 채널 구축에 합의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제19차. 서울, 1993.9.17.

생산연도 1993

생산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7 / 7 / 1-187

1993.9.17. 서울에서 개최된 제19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장관
- 호주 측: Cook 외교통상부 무역장관

2. 주요 협의내용

- 무역역조 해소를 위한 한국의 주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반덤핑 제소 남발 자제
 - 호주 측은 1994년 초까지 섬유류 1~3% 관세인하 약속
- 산업기술협력 확대 합의
 -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방안, R&D 연구생 등 한국 연구인력의 호주 파견
- APEC(아태경제협력체) 및 UR(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협력 증진

3. Cook 장관의 기타 주요 일정

- 9.17. 김영삼 대통령 예방, APEC 관련 호주 수상의 친서 전달
- 9.18. Austrade 부산 사무소 개소식 참석
- 9.19. 대전 엑스포 시찰

한·캐나다 섬유협상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7 / 8 / 1-164

1992~93년 중 한·캐나다 섬유협상 관련 내용임.

1. 제1차 한·캐나다 섬유협상(1992.3.16., 캐나다 오타와)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구본룡 상공부 수출관리과장
 - 캐나다 측: Jean Saint-Jaques 수입관리1과장
- 회의 결과
 - 코팅의류 및 전문의류의 쿼터 운영, 견직물 비중이 70%를 초과하는 의류제품의 비쿼터화 지속, 나일론 직물과 폴리에스터/면직물 중 HS 52류 및 HS 59류 해당품목의 규제대상 제외 등에 있어 캐나다 측을 설득하여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폴리에스터 직물 및 소모직물의 규제범위 변경 문제와 유아용 의류 분류기준 등에 있어 양측이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못함.

2. 제2차 한·캐나다 협상(1992.6.25.~29.,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구본룡 상공부 수출관리과장
 - 캐나다 측: Jean Saint-Jaques 수입관리1과장
- 회의 결과
 - 폴리에스터 직물, 코팅직물, 여성용 의류 등 1993년도 쿼터 물량의 증량
 - 한국 측의 품목통합 요구를 캐나다 측이 수용하여, 블라우스, 수영복과 파운데이션류, 침대보, 부엌보를 각각 통합 품목으로 운영
 - 그동안 섬유 쿼터로 규제되어온 코팅의류와 전문의류는 1993년 이후 비쿼터 품목으로 운영

1867

대한민국 무역면담서 예시집

한·중국 무역실무회의, 제1차. 북경, 1993.4.28.-29. 전2권 (V.1 2월-4.2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7 / 9 / 1-134

1993.4.28.~29.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국 무역실무회의의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중국 정부는 1993.3.3. 주중국대사관을 통해 금년 상반기에 한·중국 무역실무회의의 개최를 제의

2. 개최 목적

- 한·중국 간 무역량의 급속한 발전 추세에 비추어 양국 간 통상관련 제반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

3. 한국 측 입장 검토 및 조치계획

- 무역실무회담 개최 필요성
 - 양국 간 교역량이 급신장되고 있으며, 서방선진국의 보호주의 추세로 중국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됨.
 - 양국 간 교역량의 급속한 확대 과정에서 중국 측은 자국 수출 농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조정관세 부과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도 중국 측의 수입통제조치 등을 포함한 각종 관세, 비관세장벽에 대한 개선을 중국 측에 요청 중임.
 - 예상되는 무역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양국 간 통상관계의 지속적 확대 발전을 위해 중국 측 제의를 수락, 무역실무회담 개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조치사항
 - 한국 측 수락 입장을 중국 측에 통보
 - 회담 개최시기, 세부의제 및 관계부처 참가 범위 등은 중국 측과 계속 협의

4. 협의 의제 검토

- 한국 측 관심사항
 - 관세인하 교섭, 비관세장벽 완화 추진, 중국 외환관리제도, 중국시장 개혁 및 개방조치,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 확대, 농산물 및 저가 소비재 등 대중국 수입품 급증 문제, 동·식물 및 농·축·수산물 등의 검역검사 문제,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추진에 따른 협조 문제, APEC(아태경제협력체)에서의 협조 문제, UR(우루과이라운드) 교섭 및 국제교역의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상호 협조 문제 등
- 중국 측 관심사항
 - 한국의 조정관세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문제 등

한·중국 무역실무회의, 제1차. 북경, 1993.4.28.-29. 전2권 (V.2 4.21.-6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7 / 10 / 1-116

1993.4.28.~29.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국 무역실무회의의 결과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외무부 통상국장
- 중국 측: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아주국장 대리

2. 주요 협의사항

- 중국 측 제기사항
 - 한국의 대중국 수입 증대: 작년 및 금년 1/4분기 중 대한민국 무역적자가 누증되고 있음에 비추어 플랜트, 반도체, 기계제품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입 증대를 적극 요망
 - 중국 상품에 부과되고 있는 26개 조정관세 철회
 - 중국산 정제인산 및 가성소다에 대한 반덤핑 제소조치의 철회 및 여사한 조치 시 사전협의 요청
 - 중국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을 위한 한국 측 지지에 사의 표명 및 계속 지지 요망
- 한국 측 요망사항
 -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개선
 - 한·중국 수출입 표준계약조항집 공동작성
 - 한국산 자동차의 중국 진출, TDX 교환기의 형식 승인 문제에 대한 적극 검토 요청
 - 대한민국 수출 농림수산물의 검역 강화, 중국 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인민폐 환율안정 및 외환평형제도 완화를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관심 촉구

3. 회의 평가

- 최초의 통상관계 실무회담으로 중국 측이 한국의 조정관세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 중국 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한국의 관심사항을 적극 제기, 일부 주요 분야에서 중국 측 동의 확보
 - 미·중국 간 301조 협상 결과의 대한민국 최혜국대우 적용 확보 등

4. 향후 대책

-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에서의 효율적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내 부처 간 협의 강화 필요
- 특히 조정관세 부과 문제 등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는 조치는 신중히 실시할 필요
- 한·중국 수출입 표준계약조항집 작성을 위해 상공부 또는 코트라로 하여금 조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한·중국 통상장관회담, 제1차. 북경, 1993.9.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7 / 11 / 1-88

1993.9.3.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국 통상장관회담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 중국 측: 오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관

2. 협의 내용

-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 여건 개선
- 통상마찰 소지 사전 제거
- 한·중국 산업협력합의서 서명 및 분야별 협력 추진

3. 한국대표단 활동

- 중국 전자공업부장, 화공부장, 기계공업부장, 국가경제무역위 주임 면담

1993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동경, 1993.6.17.-18.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7 / 12 / 1-226

1993.6.17.~18. 도쿄에서 개최된 1993년도 한·일본 생사류 회담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한·일본 간의 생사 및 견연사의 쿼터 및 견직물 대일 수출물량을 협의하기 위해 1976년 이래 17차례 개최

2. 수석대표

- 한국 측: 김광동 외무부 통상국심익관
- 일본 측: 다카노 도시유키 외무성 아주국 참사관

3. 정부 훈령

- 일본 측 수입 규제의 조속한 철폐를 촉구하되, 규제의 지속이 불가피한 경우 규제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교섭

4. 회담 결과

- 한국 측은 생사류 교역의 자유화 등 현행 생사류 교역제도 개선 강력 촉구
- 일본 측은 견직물 수요 감소에 따른 국내 잠업 농가와 견직 산업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난색 표명
- 견연사는 전년 대비 5.4% 증액하고, 기타는 전년도와 동일 수준 유지 합의
 - 생사: 5,500표(俵, 누에고치실 측정 단위로 1표는 60kg)
 - 견연사: 8,300표
 - 견직물: 595만 평방미터
- 특히, 견연사는 쿼터 소진율 100%로 엔고에 따른 수입 수요 증대 시점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확보하여 견연사 대일 수출증대 기반 조성

1871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일본 [외무부] 다자통상협의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 통상1과

MF번호 2023-117 / 13 / 1-163

1992~93년 중 한·일본 간 국제 다자통상협의회 개최 관련 내용임.

1. 제1차 한·일본 외무부 다자통상회의(1992.11.5., 서울)

- 회의 목적
 - UR(우루과이라운드), 지역통합 문제 등 국제 다자경제·통상 문제에 관한 한·일본 외무부 관계 국장 간 의견 교환
- 수석대표
 - 한국 측: 외무부 통상국장
 - 일본 측: 오구라 가즈오 외무성 경제국장
- 주요 의제
 - UR
 - 지역통합: EC(구중공동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COCOM(공산권수출통제제도), APEC(아태경제협력체), Tokyo Summit '93 등

2. 제2차 한·일본 외무부 다자통상협의회(1993.10.7., 도쿄)

- 수석대표
 - 한국 측: 외무부 통상국장
 - 일본 측: 오구라 외무성 경제국장
- 주요 합의사항
 - UR 협상에서의 긴밀한 한·일 협조 재확인
 - APEC 정상회담 시 양국 지도자 발제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 양국 고위 실무자 간 사전 조율 필요성에 동감
 - 지역주의에 대한 대처방안 협의: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체) 대처 관련 상호 협의, 일본은 NAFTA 회원국 확대 움직임에 우려
 - 한국의 OECD 가입 관련 일본 측의 협력 방침 재확인

한·일본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제3차. 동경, 1993.5.17.-18.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7 / 14 / 1-289

제3차 한·일본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가 1993.5.17.~18. 도쿄에서 개최됨.

1. 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일본 측: 마츠우라 코이치로 외무성 외무심의관

2. 의제

- 제1차 전체회의: 개회인사 및 모두발언, 양국 경제현황 및 전망, 실천계획의 점검(총론)
- 제1차 실무회의: 실천계획의 점검(각론), 실천계획 이외의 양국 간 협력
- 제2차 실무회의: 의제의 계속 협의

3. 회의 결과

- 양국 간 경제 분야
 - 신정부 출범 후 최초의 양국 간 경제 분야 고위 실무급회의라는 점에서 일본 측은 금번 회의에 큰 관심과 중요성을 부여하는 자세
 - 한국 측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대일본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수출경쟁력 제고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일본 측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바, 일본 측은 이를 환영하면서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협력적인 자세를 보임.
- 국제경제 분야
 - 양국은 UR(우루과이라운드)의 조기타결과 쌀 문제의 관세화 반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일본 측은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위해 적극 협력 약속
 - 양국은 지역경제협력체의 블록화에 반대하고, APEC(아태경제협력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보완에 공동노력하기로 합의

1873

대한민국 무역발전사 연표

한·일본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제3차. 동경, 1993.5.17.-18. 전3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7 / 15 / 1-217

1993.5.17.~18. 도쿄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일본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관련 회의자료임.

1. 제3차 한·일본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

- 일반사항
 - 대표단, 일정 및 회의진행 방식
 - 보도 관계
- 의제별 대책
 - 양국 경제 현황 및 운용방향
 -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 실천계획 이외의 양국 간 협력
 - 국제경제 분야 협력

2.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대책

- 설립배경 및 경위
- 추진내용
- 주요국 반응
- 평가 등

3. 제3차 한·일본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 중점 추진방향
- 한국 측 거론사항
 - 실천계획 관련사항
 - 무역·산업기술 관련사항
 - 관세면의 애로사항
 - 통관절차상의 애로사항
 - 입찰절차상의 애로사항 등

한·일본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제3차. 동경, 1993.5.17.-18. 전3권 (V.3 유관부처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8 / 1 / 1-214

1993.5.17.~18. 도쿄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일본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관련 유관부처 작성 자료임.

1. 수산청

- 비관세 장벽 철폐
- 일본의 대한민국 수산물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대일본 수출 애로사항 해소

2. 재무부

- 투자 및 기술이전 환경개선(실천계획 관련)
-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3. 환경처

- 실천계획 관련사항

4. 농림수산부

- 한·일본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점검
- 양국 간 무역
 - 비관세 장벽의 철폐
 - 김 수입규제 철폐

5. 과학기술처

- 산업기술협력재단
- 과학기술협력

1875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작성한 자료임

한·일본 통상장관회담, 제2차. 서울, 1993.8.3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8 / 2 / 1-68

1993.8.30.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일 통상장관회담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제1차 회의(1992.6월, 일본 도쿄) 개최, 제2차 회의(1993년 하반기, 서울) 개최 예정
- 구마가미 일본 통산대신, 1993.8.30. 양국 통상장관회담 개최 제안
 -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로, 특히 한·일 무역역조 시정 등에 전향적인 입장
- 일본 신내각의 첫 각료 방한 및 구마가미 통산대신의 일본 신생당 중진 지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예방 등 일정 주선 추진

1876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장관
- 일본 측: 구마가미 일본 통산대신

3. 주요 의제 및 훈령

- 양국 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한국 측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대일유통 및 건설시장 개방 확대 및 각종 비관세장벽 완화 등 대일본 시장 개방 요청
- 중소기업 기술인력 교류 확대 및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활성화 등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 확대방안 강구
- 양국 관심사안인 수입선다변화제도 등 상호 협조 추진
- 양국 간 공동 관심사안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UR(우루과이라운드), APEC(아태경제협력체),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체) 등) 제고

4. 회담 결과

- 대일 무역역조 개선과 관련, 수입의 제한이 아닌 수출의 확대와 같은 경제논리에 상호 양해
- 한국 측은 16개 품목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폐지, 건설시장 개발 등 요청
- 일본 측은 IPR(지식재산권) 소급 보호, 주한 일본상사 수입허가, 수입선다변화제도 등 문제 제기
- UR 협상 관련 양측 공히 연내 성공적 타결 노력 합의

한·뉴질랜드 세관협력회의, 제1-2차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8 / 3 / 1-205

1992~93년 중 개최된 제1~2차 한·뉴질랜드 세관협력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회의(1992.11.2.~6.,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백원구 관세청장
 - 뉴질랜드 측: 관세청장
- 회의 결과
 - 양국 세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기업의 대외 영업환경 개선 효과
 - 양국 통관 절차와 관행에 대한 정보 교환으로 통관상 마찰소지 사전 예방
 - 양국 간 마약 등 밀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보 교환으로 밀수사범의 효과적 단속에 기여

2. 제2차 회의(1993.9.3., 웰링턴)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백원구 관세청장
 - 뉴질랜드 측: 관세청장
- 회의 결과
 - 한국의 금융실명제 관련 물품의 저평가나 고평가를 통해 무역거래나 불법외화 유출 등 조사 시 최대한 협조 합의
 - 양국은 마약 및 밀수 단속을 위해 입수된 정보 교환 추진

1877

대한민국 외교부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제17차. 서울, 1993.8.2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8 / 4 / 1-106

1993.8.23. 서울에서 개최된 제17차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Burdon 뉴질랜드 통상교섭장관의 대전 엑스포 뉴질랜드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차 1993.8.22.~25. 방한 계기 양자 통상장관회담 개최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장관
- 뉴질랜드 측: Burdon 상공장관

3. 정부 훈령

- 한국의 대뉴질랜드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뉴질랜드 정부의 관심 및 노력 촉구
- TCF(섬유류) 품목 등에 대한 뉴질랜드의 고관세를 조속 인하 촉구
- GATT(관세및무역예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조항 졸업에 따른 개방화 시책 등 뉴질랜드의 관심사항에 대한 한국의 상황 등 설명

4. 회의 결과

- 역내 무역자유화와 APEC(아태경제협력체) 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 거양을 위한 공동 노력 다짐
- 뉴질랜드 측이 한국의 GATT/BOP 조항 졸업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수입자유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 중이며, 농산물의 경우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자유화할 예정임을 설명
- 한국 측은 양국 간 교역이 급신장세이며, 대뉴질랜드 역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신발, 의류, 승용차에 대한 현행 고관세 인하 요청
 - 뉴질랜드 측은 의류 및 신발은 1996년 초까지, 승용차는 1994년 초까지 각 30% 인하 약속
- 양국 간 상호 투자진출 확대방안 협의

5. Burdon 장관, 한국 농림수산장관 면담(1993.8.23.)

- UR 농산물 협상 관련 던켈 최종협정 초안 등 협의
 - 한국 측은 쌀을 포함해 기초식량의 관세화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 설명

한·러시아 세관협력회의, 제2차. 서울, 1993.5.19.-26.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18 / 5 / 1-186

1993.5.19.~26.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러시아 세관협력회의의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경태 관세청장
- 러시아 측: V. Krouglikov 관세위원회 부위원장

2. 주요 의제

- 사전통관제도, 한·러시아 세관 간 직접협력, 양측 간 세관직원 교류, 마약밀수 등 불법수출입 단속, 신속한 통관을 위한 상호 협조

3. 정부 훈령

- 사전통관제도의 조속한 시행, 마약밀수 등 부정무역행위 단속 상호 협조 등 합의 추진

4. 회의 결과

- 러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러시아 측의 모든 사전통관 절차는 한·러시아 통관(주)에서 수행 될 것이며, 전면실시 이전에 6개월간 시험적 실시단계를 설정
- 유사기능을 갖는 세관끼리 자매결연을 통한 직접적인 교류를 실시해 상호 편의제공 및 애로사항 해소와 양국 세관의 행정효율 향상을 추진
- 상호 직원 교류가 관세행정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직원 교류 실현을 위해 양국 세관당국의 노력 합의
- 마약거래 등 부정무역 단속을 위해 상호 협조에 관한 합의문 체결 추진

1879

대한민국-러시아 무역관계

한·러시아 표준협력회의, 제1-2차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18 / 6 / 1-166

1992~93년 중 러시아의 소비자 보호인증제도 실시 대응 및 한·러시아 표준협력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한·러시아 정례 표준회의(1992.11.5.~6., 모스크바)

- 대표단
 - 한국 측: 신국환 공업진흥청장 및 공업진흥청 관계관
 - 러시아 측: 주러시아대사관 상무관 등
- 의제
 - 양국의 공업표준화 및 계량제도 소개, 국가 규격 정기 교환, 제품 시험성적서 및 인증 상호인정 범위, 국립공업기술원과 러시아 제품인증연구소와 협력협정 체결 추진 등
- 실무회의 및 표준협력회의 개최, 러시아 표준연구소 및 광물리 측정연구소 방문 등

2. 러시아의 수입품에 대한 의무인증제 실시 문제 대응

- 의무인증제 개요
 - 1993.1.1. 러시아 소비자보호법 및 인증법에 따라 모든 소비재에 안전인증서 부착 의무
- 7.12. 주러시아대사관 보고에 의하면 일부 한국산 전자제품 통관 일시 정지
 - 주러시아대사관은 러시아 안전규격 인증 관련 법규 등 관련자료를 송부하고 대책회의, 러시아 표준위원회 접촉 및 한국제품 인증방법 확립을 위한 교섭 시행

3. 제2차 한·러시아 표준협력회의(1993.9.23.,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채재억 공진청장
 - 러시아 측: Bezverkhly 표준위원회 위원장
- 주요 결과
 - 한국 측이 생산기술연구원과 전기전자검사소 2개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추천하면, 러시아 측은 동 기관들에 대한 인정서 발급

4. 러시아 표준제도 개편 추진

- 1993.11.12. 러시아 표준위원회 부위원장은 주러시아대사관 측에 1994년도부터 새로운 인증 제도 실시 계획하에 법령정비를 작업 중이며, 일단 한국의 2개 기관 인정을 위한 자국 실사팀 방한 무기연기를 통보
- 공업진흥청, 한국수출입체를 위해 러시아 수입상품 강제인증제도 변화 내용 홍보 실시

한·태국 통상장관회담, 제10차. 서울, 1993.8.10.-11.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8 / 7/ 1-157

1993.8.10.~11. 서울에서 개최된 한·태국 통상장관회담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통상산업자원부장관
- 태국 측: Uthai 상공부장관

2. 합의내용

- 교역의 확대 균형을 통한 무역불균형 해결에 합의
- 관세,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상호 시장개방 확대 노력 추진
- 무역, 투자, 건설, 에너지 분야에 긴밀한 협력 추진
- 태국이 수입 개방 요청한 냉동새우는 한국 일정대로 개방
- 태국의 관세인하 계획에 한국의 요청 품목 호의적 고려

1881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14차. Washington D.C., 1993.3.16.-1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8 / 8 / 1-265

1993.3.16.~19.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4차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Robert Cassidy USTR(미국통상대표부) 아·태담당 대표보

2. 회의 의의

- 1993.4월 말 미국의 IPR(지식재산권) 보복조치 대상국 선정 등 현안 관련 논의
 -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포괄적 통상관계 협의
 - 미 통상법에 의거한 1993.4월 말 IPR 보복조치 대상국 지정을 앞둔 막바지 공식협상

3. 주요 의제

- IPR 문제, 통신 문제, 소고기협상 재개 문제, 유해화학물질의 수입 및 신고 절차 등

4. 회의 결과

- IPR 문제 협의
 - 한국의 IPR 보호 강화 노력을 상세히 설명, 미 정부 인식 개선에 기여
 - 미국 측은 임박한 보복조치 대상국 지정시한을 감안, 가시적인 추가 조치 요청
- 기타 통상 현안
 - 한국 측, 한국기업의 대미 시장접근에 대한 장벽 완화 촉구
 - 미국 측, 기존 양자 간 통상협정의 성실한 이행 요청

5. 회의 평가

- 양국 신정부 하의 건전한 통상관계의 발전 기반 조성
- IPR 보복조치 대상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
- 개별기업 관련 현안 누적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14차. Washington D.C., 1993.3.16.-19.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8 / 9 / 1-158

1993.3.16~19.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4차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임.

1. 관계부처 자료

- IPR(지식재산권) 관련 미국 측 제기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의견
 - 경제기획원: 한·미 IPR 관련 자료
 - 상공부: 신발류 및 CD 음반류의 위조상품 혐의 품목 요청사항
 - 특허청, 과학기술처 등 자료

2. 기타 참고자료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15차. 서울, 1993.10.14.-16.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8 / 10 / 1-213

1993.10.14.~16.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정의용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Peter Collins USTR(미통상대표부) 한국과장

2. 협의 일정

- 10.14. 주요 현안
- 10.15. IPR(지식재산권) 문제
- 10.16. 기타 일반의제 및 종합토의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제15차. 서울, 1993.10.14.-16. 전2권 (V.2 회의결과 및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8 / 11 / 1-122

1993.10.14.~16.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관련 결과임.

1. 주요 회의 결과

- 자동차 문제
 - 미국 측은 양국 간 자동차 교역의 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 등 한국 정부의 조치 촉구
 - 한국 측은 세제 등 관련 제도상 외제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별무하다고 대응
- IPR(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IPR 보호 노력을 일응 평가하면서도, 추가적 제도 개선 및 지속적인 침해 사범 단속을 촉구
 - 미국 측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IPR 보호 현황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
 - 한국 측은 IPR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 관련 제도 개선조치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 측에 한국의 IPR 보호 노력을 전달
- 기타 양국 통상 현안
 - 미국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 문제
 - 제3단계 농산물 수입자유화 3개년 계획(1995~97년) 관련 문제
 - 방문판매법
 - 녹색신고제 등

2. 평가 및 대책

- 양국 신정부 출범 후 한·미 통상관계가 원만히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
- 원만한 양국 통상관계 지속을 위하여 IPR 보호 노력 계속과 철저한 합의이행 필요

1885

대한민국 무역면담서 요약본

한·미국 무역통계회의, 제5-6차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8 / 12 / 1-315

1992~93년 중 개최된 제5~6차 한·미국 무역통계회의 관련 내용임.

1. 제5차 회의(1992.11.2.~3., 서울)

- 참고자료
 - 한·미 통계조정 내역자료
 - 예상 질의사항
 - HS 8542 분석자료
 - 통계자료

2. 제6차 회의(1993.5.20.~21., 워싱턴 D.C.)

- 정부대표
 - 강종구 관세청 자료관리담당관

한·미국 세관협력회의, 제8차. 서울, 1993.11.2.-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8 / 13 / 1-161

1993.11.2.~3.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한·미국 세관협력회의의 관련 분야별 세부회의 내용임.

1. 제1차 한·미 수입통관 실무회의(1993.11.1., 관세청)

- 수석대표
 - 한국 측: 이강연 관세청 평가협력국장
 - 미국 측: Heavy 관세청장보
- 1993.6월 제11차 한·미 경제협의회 시 PEI(한·미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 종료 후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실무위원회 신설 합의에 따라 개최

2. 제8차 한·미국 세관협력회의(1993.11.2.~3., 관세청)

- 수석대표
 - 한국 측: 김경태 관세청장
 - 미국 측: Weise 관세청장

1887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한·미국 식물검역 및 식품안전 전문가회의. Washington D.C., 1993.3.24.-26.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8 / 14 / 1-126

한·미국 식물검역 및 식품안전 전문가회의가 1993.3.24.~26.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1. 제4차 한·미국 식품위생 전문가회의(1993.3.24.~25.)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정도영 보건사회부 식품유통과장
 - 미국 측: Lyle Sebranek 농무부 식품안전기술과장
-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1992.12월 한국 정부가 입법예고한 녹색신고제가 전례 없는 새로운 제도이고 수출자가 이행하기 어려우며 한국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적게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한데 대해, 한국 측은 국내 소비자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이 제도는 수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미신고에 대한 제재가 없음을 설명
 - 미국산 밀에 대해서는 양국의 검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함.
 - 한국의 농약잔류기준 관련 미국 측은 한국 기준이 30여 종으로 적은 편이며, 기준 미설정 농약 검출 시 판정기준을 문의함. 한국 측은 정부가 100여 종으로 확대 예정임을 알리고 미국 업체가 필요시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임을 설명함.
 - 미국 측은 수입가금육(칠면조) 위생조건 관련, 도축과정 외에 선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도 수의사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한데 대해, 한국 측은 미국 측이 EC(구주공동체), 호주, 싱가포르에도 협조하고 있음을 이유로 미국 측 요청을 거부
 - 한국의 FMD 비발생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 미국 측은 관련 검토 중이며 1993.4월경 결과 통보 약속

2. 한·미국 식물검역 전문가회의(1993.3.25.~27.)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인식 국립식물검역소장
 - 미국 측: Glen Lee 동식물검역소 식물검역부처장
- 한국 측 제기사항
 - 한국산 온주밀감, 사과, 감(단감 포함) 수입 요건 합의 또는 완화
 - 한국산 채소류, 딸기, 호박, 참외, 오이, 수박, 토란 고들빼기, 취나물 등 8개 품목 수입허용 협의
 - 수출용 배는 1993년산에 대해 봉지 씌우기 시행에 합의하고 결과가 좋을 경우 계속 시행 합의
 - 플로리다산 감귤류에 대해 미국 측은 '수출증명에 대한 약정'안을 한국에 제공하고 1993년 하반기 시행
- 미국 측 제기사항
 - 하와이산 파파야 증열처리, 소나무 제재목 고열건조처리 등 조건부 수입허용
 - 가공 산물에 대한 위생증 면제(수출증명서 인정) 요청

한·미국 통상실무협약체(TAG) 회의, 제15-19차. 전4권 (V.1 제15-16차)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9 / 1 / 1-268

1993년 중 서울에서 개최된 제15~16차 한·미국 간 TAG(통상실무협약체)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5차 회의(1993.2.3.)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리처드 모포드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
- 주요 의제
 - 긴급관세제도, 카펫청소기 HS 분류, 연지급수입과 긴급관세제도, 초과유보소득과세와 기업공개, 카길사의 외국인투자 인가 등
- 회의 결과
 - 미 신행정부의 대외통상 정책: (미국 측) 한국 내 언론이 최근 클린턴 행정부가 공세적 강경 대외통상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과장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
 - 철강 반덤핑 제소 문제: (한국 측) 다자 간 철강협상 재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반덤핑 예비판정이 취해진 데 대해 실망 표명
 - 반도체 반덤핑 제소 문제: (한국 측) 미 행정부 판정에 실망을 표시하고 조사정지협정 등 합의에 의한 해결을 촉구 (미국 측) 제소회사가 합의에 의한 타결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합의 타결 전망은 희박하다고 설명
 - IPR(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한국 측) IPR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상세 설명
 - 기타 관세, 통관, 유통, 검역, 표준 관련 개별 현안 점검

2. 제16차 회의(1993.4.19.)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리처드 모포드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
- 주요 의제
 - 한국의 수입억제 문제, Baxter사 혈액제제 문제, 대구머리 등 수산물 문제, 모피수입 문제, 철강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 문제, 연지급 문제, 수입 밀 농약 검출 문제, 형식승인 문제, IPR 보호 문제 등
-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신경제 정책하에 검약운동이 수입억제로 나타날 가능성에 우려 표명
 - 미국 측은 미국산 밀 농약 검출에 따른 수입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재검사 요청
 - 미국 측은 한국의 IPR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문제 관련 입장 설명

1889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 제15-19차, 전4권 (V.2 제17차)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9 / 2 / 1-298

1993.6.1. 서울에서 개최된 제17차 한·미국 간 TAG(통상실무협의체) 회의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리차드 모포드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

2. 주요 의제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문제, 수입자유화 문제, 특정수입 문제(Baxter사 혈액제제, 명태연육 및 먹장어 등), 관세 및 무역규제 문제(한국산 철강 반덤핑 조치), 담배 등 유통 문제, 식품검역 및 안전 문제, 표준/라벨링 문제, IPR(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

3.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한·미 정상회담 및 한·미 경제협의체를 앞두고 통상현안의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 강조
- 미국 측은 G-7 도쿄 정상회담에서 UR 문제 토의 관련사항을 한국 측에 적절히 알려줄 것을 언급
- 미국 측은 Baxter사 혈액제제 의료보험 환불 문제 관련 미 해당 업체가 301조 청원을 준비 중인 것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
 - 한국 측은 보험제도상 최선의 고려 및 관계부처에서 해결방안을 검토 중임을 설명
- 미국 측은 부산검역소의 미국산 밀 농약검출에 따른 수입 불허조치에 대한 우려 표명
 - 한국 측은 상기 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의 중임을 설명
- 기타 통상현안의 진전 현황 점검
 - 명태연육 시장 접근 문제 등 특정품목 수입 문제
 - 관세 품목 분류
 - 전자기파 유해 검정, 원산지증명 등 표준 라벨링 문제
 - 식품검역 및 안전 문제
- 한·미 경제협의체 및 한·미 영업환경 개선 협의, 고위 실무자회의 준비사항 등 논의

한·미국 통상실무협약체(TAG) 회의, 제15-19차. 전4권 (V.3 제18차)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9 / 3 / 1-156

1993.8.17. 서울에서 개최된 제18차 한·미국 간 TAG(통상실무협약체) 회의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로버트 코난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관

2. 주요 의제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문제, 수입자유화 문제, 특정수입 문제(명태연육 등 수산물, 백스터 혈액제제, 치과 합금재료), 관세(판유리, 건전지, 감자제품 등) 및 무역규제조치 문제, 국제수지 균형 관련 농산물 수입규제 문제, 금융·투자 문제(연지급, 초과유보이윤세), 식품검역 및 안전 문제, 표준 및 라벨링 문제 등

3. 회의 결과

- 큰 쟁점 없이 기존 현안 점검에 주력
- 미국 측은 그간의 일부 현안 해결(치과 합금재료 수입 등) 평가
 - 국부적 현안 해결 노력을 가속화하고 1993.9월부터 개최될 DCE(한미경제협력대화)는 정책적 문제 협의에만 초점을 둘 수 있기를 희망
- 미국 측은 아직 미국산 밀이 반입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우려 표명
 - 한국 측이 소비자 단체 반발 등을 감안, 시간 경과 및 한국 정부의 설득 노력에 따른 반발 무마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으며, 미국 측도 문제 제기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감
- 한국 측은 1994.1월부터 담배소비세를 인상할 계획임을 통보
 - 미국 측은 1988년 한·미 담배 합의에 따라 협의 요청 시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천명
- 기타 미국산 건전지 조정관세 면제 문제, 애완동물용 사료 문제, 전자기파 유해 검증 및 형식 승인 문제, 원산지증명 라벨링 문제 등 협의

1891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미국 통상실무협약체(TAG) 회의, 제15-19차, 전4권 (V.4 제19차)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9 / 4 / 1-181

1993.11.30. 서울에서 개최된 제19차 한·미국 간 TAG(통상실무협약체) 회의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광동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 미국 측: Hoog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

2. 주요 의제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전, 수입자유화, 특정수입 문제(명태연육 등 수산물), 관세(카펫트 청소기 품목 분류, 마이크로웨이브용 햄버거 품목 분류), 무역규제조치, 제2차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 계획, 마케팅·유통·국내 영업상 애로(자동차 수입, 방문판매법, 소고기, 담배 등), 금융·투자 문제(연지급, 초과유보이윤세), 식품검역 및 안전, 표준 및 라벨링 문제 등

3. 회의 결과

- 향후 회의는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을 한국 측 주재자로 합의
- UR 협상 관련 미국 측은 1993.12.15. 협상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 없다고 전제, 타결 전망에 대해 긍정적 평가
 - 한국 측은 UR 협상의 최종 결과가 균형되어야 하며, 참가국의 특수이해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 강조
- 미국 측은 향커피(flavored coffee) 통관 관련, 부산항에 억류된 물량의 수입 허용을 촉구
 - 한국 측은 식품공전 개정을 검토 중이나, 현행 법규에 따라 현재 통관이 보류되고 있는 향커피는 통관이 불가함을 설명
- 미국 측은 유해물질관리법상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자료 유출 우려
 - 한국 측은 동 신고대상 확인 신청 시 여러 품목의 화학물질 혼합 등 비밀유출 방지 가능 설명
- 건전지 관세 price-break 재도입, 땅콩버터 HS 품목 분류 등 문제 해소
- 농산물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 소고기 협의, 애완동물 사료, 녹색신고제, 건자두 보존제, 수입 밀 관련 재심제도, 전자기파 유해 검증 및 형식승인, 통신망 장비 공급 외국회사의 국내 생산공장 설치조항 문제 등 심의

대일본 수출촉진단 일본 방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9 / 5 / 1-110

1993년 중 대일본 수출촉진단의 일본 방문 관련 내용임.

1. 제1차 방문(1993.2.28.~3.6.)

- 참가자: 섬유, 소비재, 농수산 관련 업종의 17개사 22명
- 대상 지역: 나가사키, 오이타, 고베
- 결과: 상담 132건, 계약 가능 71건

2. 제2차 방문(1993.5.23.~29.)

- 참가자: 섬유, 소비재, 농산물 관련 업종의 37개사 51명
- 대상 지역: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 결과: 상담 321건, 계약 가능 158건

3. 제3차 방문(1993.7.12.~17.)

- 참가자: 섬유, 소비재, 농산물 관련 업종의 20개사 29명
- 대상 지역: 삿포로, 야마가타, 고오리야마
- 결과: 상담 141건, 계약 가능 41건

4. 제4차 방문(1993.9.13.~18.)

- 참가자: 섬유, 소비재, 농산물 관련 업종의 20개사 26명
- 대상 지역: 아키타, 니가타, 도야마
- 결과: 상담 141건, 계약 가능 88건

5. 제5차 방문(1993.11.14.~20.)

- 참가자: 섬유, 소비재, 농산물 관련 업종의 26개사 36명
- 대상 지역: 도쿄, 오카야마, 후쿠오카
- 결과: 상담 166건, 계약 가능 73건

1893

대한민국 외교부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 일본 방문, 1993.9.6.-15.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9 / 6 / 1-239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의 1993.9.6.~15. 일본 방문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한국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사항으로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특히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기업의 대한민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유치단 파견 추진
- 이를 위해 제25회 한·일본 민간 경제합동위원회(1993.4월)에서 투자유치단 일본 방문 합의

1894

2.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 활동 개요

- 기간: 1993.9.6.~15.
- 지역: 도쿄, 나고야, 오사카, 센다이, 후쿠오카 등 일본 주요 5대 도시
- 투자유치단 구성: 민관 합동 52명
 - 박용학 한·일 경제협회장(단장), 강진구 삼성전자 회장, 강봉균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 등
- 투자환경 설명회
 - 일본 기업인 730여 명, 재일본 한국 상공인 300여 명 참여
- 정재계 주요 인사 예방
 - 호소가와 일본 수상, 하타 외상, 구마카이 통산대신, 하구라 일·한 경제협회장, 도요시다 JETRO 사장, 히라이와 경단련 회장 등

3. 활동 결과

- 호소가와 수상을 포함한 일본 정부 인사들은 투자유치단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일본 통산성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단 활동 적극적 협조
- 히라이와 경단련 회장 등 일본 재계 인사들도 한국 신정부의 개혁조치가 일본의 대한민국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투자환경의 변화라며 긍정적으로 반응
- 일본 기업인들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한국 측의 새로운 대일 경제 접근 방향 및 외국인 투자활성화 시책 내용에 대해 큰 관심 표명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 일본 방문, 1993.9.6.-15.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9 / 7 / 1-209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의 1993.9.6.~15. 일본 방문 관련 자료임.

1. 한국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 환경(1993.8월)

- 목차
 - 신경제 계획과 대외경제정책 기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시책,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한·일본 경제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 수록
- 능동적인 개방정책 추구, 행정규제 완화와 국제화 추진,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 외국인 투자 유인책 설명

2. 대일본 투자유치단 파견 관련 일본 측의 예상 질의 답변자료 작성

- 한·일본 관계 전반, 외국인투자제도, 노사 문제 등에 관한 답변 준비
- 특히, 외무부는 일본 후지 TV의 시노하라 기자 사건, 외국인 투자기업 임직원 비자 취득 절차 등에 관한 입장 및 정책자료를 투자유치단 파견을 담당하는 경제기획원에 제공

3. 한국의 외국인 투자 안내(1993.9월)

- 일본어로 작성된 일본의 주요지역 순회 투자유치단 설명자료
-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외국인투자제도 소개
 - 투자허용 업종, 투자신청 절차, 외자도입, 외국인투자우대제도 등
- 외국인 투자환경 관련 노동 인력과 인프라, 외국인 토지취득과 공업용지, 산업재산권제도, 상사 중재, 외환거래, 금융, 조세, 출입국 등 상세 소개
- 연도별 개방 업종과 유보 업종(1993~97) 소개

1895

대한민국외교부민사자료실

이집트 EXPO 사절단 방한, 1993.10.22.-27.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중동2과

MF번호 2023-119 / 8 / 1-48

이집트 엑스포 사절단의 1993.10.22.~27.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대전 엑스포 계기 한국 정부가 이집트 고위사절단을 초청하여 양국관계 증진 모색

2. 방문단

- Fuad Sultan 전 이집트 관광·민항장관(단장), El-Adawy 차관보, El-Agizy 의전장 등 이집트 외무부 고위관리

3. 주요 일정

- 엑스포 조직위원장 면담, 이집트 National Day 행사 참석
- 관광공사 사장 면담, 경복궁, 올림픽 스타디움, 민속촌, 석굴암 등 관광
- 외무부 제1차관보 주최 만찬 등

4. 홍순영 외무부차관 면담(10.27.)

- El-Adawy 차관보
 - 외교관계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양국관계가 계속 증진되면 한·이집트 간 관계의 형식도 정상화될 것임(총영사급→대사급).
 -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간의 화해로 많은 국가가 요르단강 서안 및 가자지구의 경제복구 및 개발사업 진출 희망을 표명하고 있는바, 이집트는 동 지역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의미가 있는 만큼 한·이집트 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 한국의 발전상은 상상했었던 것 이상이며, 한국의 발전 경험은 이집트 경제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홍순영 차관
 - 양국 간 실질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민간협력 강화가 바람직한바, 이러한 차원에서 서울-카이로 간 직항로 개설은 양국 간 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지역 복구와 재건을 위한 국제적 지원에 동참할 용의가 있으며, 동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임.

경제·통상 주요인사 미국 방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9 / 9 / 1-241

1993년 중 한국 경제·통상 주요인사의 미국방문 내용임.

1. 한·미 통상 고위실무대표단 방미(1993.3.2.~5.)

- 한국대표단
 - 단장: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
 -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등의 국과장급으로 구성
- 목적
 - 한·미 양국의 신정부 출범에 맞추어 양국 간 통상관계 전반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상호이해와 인식 제고
- 결과
 - 한국 신정부의 경제개혁 의지 부각
 - IPR(지식재산권) 보복조치 대상국 지정 문제 해결기반 조성
 - 미국 측은 한국 신정부의 경제개혁 방침 환영
 - 클린턴 행정부의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 시사

2. 강봉균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방미(1993.8.31.~9.1.)

- 목적
 - 한국의 신경제 정책을 미 행정부, 의회, 업계 및 학계의 주요인사들에게 설명하고, 양국 경제관계의 발전 방향을 협의
- 결과
 - 강봉균 실장은 한국의 신경제 정책 기조, 특히 규제완화 및 개방, 국제화를 지향하는 대외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한·미 협력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
 -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개혁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의 신정부가 정치·경제적으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

1897

대한민국 외교부

김철수 상공부장관 미국 방문, 1993.4.12.-1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9 / 10 / 1-110

김철수 상공부장관이 1993.4.12.~19. 미국 워싱턴 및 뉴욕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한국의 통상 정책 및 현안 해소 노력을 명확히 설명
- 향후 한·미국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교환

2. 주요 접촉 인사 및 일정

- 행정부: 켄터 무역대표, 브라운 상무장관, 오리여리 에너지장관, 타이슨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 의회: 크레인 하원 무역소위 간사, 와이든 하원 수출대책위원장 등
- 연구소: IIE(국제경제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등
-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 업계: 미국상공회의소, 제조업자협회, 미국·한국 재계회의 대표 등

3. 방문 결과

- 양국 새 정부 통상정책 책임자 간의 첫 만남을 통해 무역균형의 바탕 위에서 원활하고 안정된 한·미국 통상관계의 새로운 출발점 마련
- IPR(지적재산권) 보호, 반덤핑 등 현안 문제의 긴밀한 협의
- 개방과 자율을 기조로 하는 한국 정부의 신경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국 정부, 의회 및 각계의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

Joao Celestino DIAS 앙골라 상무장관 방한, 1993.6.19.-2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19 / 11 / 1-51

Celestino Dias 앙골라 상무장관의 1993.6.19.~23.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목적

- 대우(주)와 수입 물품 상담
- 앙골라 정부에 대한 지지 확보 및 내전에 따른 난민(약 200만 명) 구호원조 요청

2. 홍순영 외무부차관 면담(6.22.)

- Celestino Dias 상무장관
 - 김영삼 대통령 앞 Jose Eduardo Dos Santos 앙골라 대통령 명의 친서(1993.6.8.자) 전달
 - 앙골라 현 정세를 설명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앙골라 정부 입장을 지지해줄 것과 내전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 요청
- 동 차관
 - 친서는 대통령께 정중히 전달하겠으며, 정통성을 가진 앙골라 정부가 선거를 통해 민주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
 - 가능한 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 지원 용의를 표명하고, 앙골라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앙골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3. 주나미비아대사는 김영삼 대통령 명의 답신(1993.6.28.자)을 Dos Santos 대통령에게 전달

-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앙골라 정부의 노력 환영
- 앙골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구호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용의
- Dos Santos 대통령의 영도 하에 조속히 평화와 번영을 이루길 기원하며, 한·앙골라 양국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

1899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작

93-1811

Vieira, Jose Eduardo 브라질 상공관광장관 방한 초청 계획, 1993.10.5.-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19 / 12 / 1-58

1993년 중 Jose Eduardo Vieira 브라질 상공관광부 장관의 방한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배경

- 1993.3.16. 브라질 상공관광부 차관은 4~5월 중 Vieira 상공관광부 장관의 방한 희망을 주브라질대사관에 전달
 - Vieira 장관이 정부 인사, 기업인, 경제단체 간부 등으로 구성된 통상사절단 인솔
- 상공자원부는 신정부 출범으로 분주한 시기임을 감안, 공식 초청은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1900

2. 진전사항

- 브라질 측은 Vieira 장관의 1993.9월 중 방한계획을 주브라질대사관에 통보
 - 이후 10.5. 한국 도착, 10.7. 한국 출발 일정으로 변경
- 9.20. 브라질 외무부는 국내 정치 일정으로 Vieira 장관의 방한 일정 연기를 통보

Santos, Manuel Calderon 콜롬비아 대외무역부장관 방한, 1993.5.2.-5.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19 / 13 / 1-66

Manuel Calderon Santos 콜롬비아 대외무역부 장관의 1993.5.2.~5. 방한 관련 내용임.

1. 추진 배경

- 1993.3.5. 콜롬비아 대외무역부 장관 보좌관은 Santos 대외무역부 장관의 4~5월 방한 계획을 주콜롬비아대사관에 통보
 - 동 장관은 기업대표단을 인솔하고 아시아 순방 중 4월말 내지 5월초 방한 추진
- 상공자원부는 동 장관의 방한 접수에 긍정적 입장
 - 주한 콜롬비아대사관은 경제단체와 Santos 장관의 방한 일정 교섭

2. 방한 일정

- 5.3. 대전 엑스포 방문, 코트라 사장 접견, 삼성전자 관계자 오찬, 상공자원부장관 면담, 대우 및 현대 방문
- 5.4. 기아 방문, PECC 관계자 오찬, 상공회의소 세미나 참석

1901

대한민국 외교부서 업무지침

이남청(李嵐淸) 중국 무역 담당 부총리 방한, 1993.9.27.-10.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9 / 14 / 1-222

이남청 중국 무역담당 부총리의 1993.9.27.~10.2.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문단

- 부총리, 중앙부처 장·차관급 인사 6명 등 26명

2.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9.27. 오후)
- 대전 엑스포 '중국의 날' 행사 참가
- 대우자동차, 현대전자 등 시찰
- 경제인 면담: 현대, 대우, 삼성전자, 대한상의, 무역협회 회장 등

3. 방한 결과

- 대통령 예방
 - 북한 핵 문제 협의
-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한국기업인과의 친분 강화
- 한·중국 합작프로젝트 서명식 참가

Sulaiman Abdulaziz AL-SOLAIM 사우디아라비아 상무장관 방한, 1993.8.5.-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19 / 15 / 1-48

Sulaiman Abdulaziz AL-SOLAIM 사우디아라비아 상무장관의 1993.8.5.~7.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상공부장관 초청

2. 방한 목적

- 1993 대전 엑스포 참석 및 한·사우디 통상·경제협력 증진방안 협의

3. 주요 일정

- 대전 엑스포 개회식 참석
- 코트라 사장 및 상공자원부장관 예방, 상공자원부장관 주최 오찬
- 외무부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예방
- 대한전선 안양공장 시찰

4. 방한 결과(외무부장관 면담 결과)

- AL-SOLAIM 상무장관은 사우디가 석유화학 등 석유개발 이외 경제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면서, 대전 엑스포 참가도 그런 노력 중의 하나라고 설명
 - 한국의 쌍용정유에 ARAMCO가 투자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
- 외무부장관은 사우디의 비석유 부분 개발 추진에 따라 양국 간 합작투자 가능성이 많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가 촉진되어야 한다고 설명
 - 민간 기업인들 간의 상호 교류에 의한 구체적인 상담 증진이 더욱 중요
 - 사우디 상의와 한국 상의 간의 협력에 의한 기업인 교류를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

1903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

Richard KAIJUKA 우간다 상공장관 방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19 / 16 / 1-97

1992~93년 중 Richard KAIJUKA 우간다 상공장관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1992.2.13.~17. 방한

- 방한 목적
 - 한국의 수출진흥 정책 조사
- 주요 일정
 - 코트라 사장 면담
 - KOEX 관람, 대전 박람회 조직위원장 예방 및 조직위원장 주최 오찬
 - 상공부장관 예방 및 김우중 대우회장 면담 등
- 방한 결과(상공부차관 면담 결과)
 - 우간다 상공장관의 한국 경제개발 경험 전수 희망에 대해 상공부차관은 한국개발연구원의 IDEP(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기술협력 사업 등을 소개
 - 우간다 상공장관은 우간다의 풍부한 자원부존 상황과 동남부 아프리카의 특혜무역지역 시장 규모 등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한국기업의 대우간다 투자를 장려해 주기를 희망

2. 1993.10.6.~10. 방한

- 방한 목적
 - 대전 엑스포의 우간다 National Day 참석
- 주요 일정
 - 상공부 제1차관보 예방
 - 경제 설명회 및 우간다 National Day 참석 등

Cassidy, Robert USTR(미국무역대표부) 아태담당 대표보 방한, 1993.5.24.-2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19 / 17 / 1-107

Robert Cassidy USTR(미국통상대표부) 아·태담당 대표보가 1993.5.24.~27. 방한함.

1. 방한 목적

- PBEC(태평양경제협력회) 참석 계기에 방한하여 한국 정부의 통상관계 고위인사를 면담하여 소관 현안 협의

2. 주요 일정

- 외무부 차관보 조찬
- 상공자원부 차관보, 농림수산부, 경제기획원 차관보 면담
- AMCHAM(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원과의 조찬
- 주한 미국대사관 브리핑

3. 방한 결과

- 한·미 정상회담 시의 통상 문제 협의
- 소고기 문제 관련, 양국은 전제조건 없이 협상을 조기 재개할 필요성에 동의
- 미국산 밀 농약검출 문제 협의
- 미국 측은 무선통신시장 개방을 위한 한·미 통신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한국의 IPR(지식재산권) 보호 개선을 평가

1905

대한민국 외교부

현대자동차 캐나다 공장 조업 중단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0 / 1 / 1-35

1992~93년 중 현대자동차 캐나다 생산 공장의 조업 단축 및 중단 관련 내용임.

1. 현대자동차 캐나다 공장

- 1989.7월 캐나다 퀘벡주 브로몽지역에 완공된 국내 유일의 해외 자동차 생산 거점
 - 514,000평의 부지 위에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공장과 자동차 시험장, 컨테이너 야적장, 철도시설 등 부대시설 구비, 연간 10만 대의 생산능력

1906

2. 현대자동차 캐나다 공장 조업중단(주캐나다대사 보고)

- 현대자동차 캐나다 현지법인은 1992.2.17.~3.14.간 공장 조업중단 조치
 - 국내 울산공장의 노사분규로 인해 엔진, 트랜스미션 등 주요 자재 공급중단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
 - 조업중단으로 일시 해고된 근로자의 실업수당이 3주째부터 임금의 60% 수준으로 캐나다 고용이민부에서 지급될 계획이며, 현대 측은 주재국 정부와 협의하여 처음 2주에 해당되는 기간에도 6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
- 동 조업중단이 자동차 판매부진에 인한 공장폐쇄로 오인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상공부를 통해 현대 측에 유의하도록 조치

3. 현대자동차 캐나다 공장 조업단축 계획(주캐나다대사 보고)

- 현대자동차 캐나다법인은 1992.3월 말 또는 4월 초부터 6개월간 조립 공장의 조업단축 계획
 - 캐나다 및 미국지역에서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에 따른 것으로 주5일에서 주3일 근무로 변경 추진
- 동 조업단축 계획을 변경해 5.4.부터 26주간 조업단축 실시
 -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 주정부와 체결된 협약상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유지 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되어 협의 중
- 캐나다 당국이나 여론에서 공장폐쇄의 전단계로 인식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 측에 홍보 대책 조언

4. 현대자동차 캐나다 공장폐쇄 문제(주토론토총영사 보고)

- 기존 소나타 생산라인을 확장하여 엘란트라급 신형차 생산을 위한 라인교체로 1992.9월부터 1995년 봄까지 잠정폐쇄

EC(구주공동체)의 한국산 CDP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문제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0 / 2 / 1-56

1991~93년 중 EC(구주공동체)의 한국산 CDP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87.1월 제소
- 1990.1월 반덤핑 조치 확정
- 1993.3.31. 제소자(COMPACT 및 필립스사) 종결요청 서한 제출
- 1993.5.21. EC 반덤핑자문위원회는 관세부과 철회 결정

2. 철회 배경

- 한국 등 피소국들이 생산지를 EC 내 또는 제3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를 통한 EC 산업보호에 한계를 느낀 필립스사도 공장을 역외로 이전하기로 결정

3. 전망

- 동 결정은 조만간 이사회에서 확정될 예정

1907

대한민국 외교부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전4권 (V.1 1991.4-8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20 / 3 / 1-328

1991~93년 중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조치 부과에 대한 분쟁 관련 내용임.

1. 반덤핑조치 부과 배경

- 1990.5.8. 국내 KEP사는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신청
 - 대상: 미국 Du Pont사, Hoechst-Celanese사, 일본 아사히 케미컬사가 수출하는 중·저점도 및 VTR 테이프용 폴리아세탈 수지
- 8.25 재무부는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관세청의 가격조사 및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조사를 요청
- 1991.2.26. 관세청은 덤핑마진을 확정하고, 4.24.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를 긍정 판정
 - KEP사의 재고 증가, 국산품 판매가 하락, KEP사의 시장점유율 및 수익률이 정상 수준 이하

1908

2. 진전사항

- 1991.6.21. 미국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15조에 의거, 협의 요청
 - 한국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미국기업 이익이 침해
- 7.23. 관세심의위원회는 해당 3개사의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해 평균 4%의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산업정책심의회의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단계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관세 부과
- 8.2. 미국 측은 GATT 반덤핑위원회에 중재 절차 개시 요청
 - 제1차 한·미 양자협약(1991.7.24., 제네바)이 성과가 없다고 판단
 - 한국 측은 최종결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GATT 절차 개시가 부적절하다고 이의 제기
- 8.13. 부과된 반덤핑관세의 환율 변동분 반영 여부 검토를 위해 관계부처 회의 개최
 - 관세심의위원회 결정 시 환율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반덤핑관세율이 낮아 실효성 문제 제기
 - 관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일관성 및 책임성 문제, 원화 평가절하 등 감안, 미반영 결정
- 8.29. 국무회의에서 기존 결정을 승인함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절차 진행
- 8.30. 제네바에서 제2차 한·미 양자협약의 개최

3. 한국 정부 입장

- 한국에 의한 반덤핑관세 부과 최초사례로서 한국의 대외적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 대응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전4권 (V.2 1991.9-12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20 / 4 / 1-292

1991년 중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조치 부과에 대한 분쟁 관련 내용임.

1. 진전사항

- 1991.9.13.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에 의거, 한국에 대해 협의 요청
- 9.14.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령 공포, 9.30. 시행
- 1991.9.30. 제2차 한·미 양자협의 및 1991.10.2. 제1차 한·일 양자협의
- 10.4. GATT 화해 조정을 위한 반덤핑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 이후 3개월간 조정 절차 시작, 1992년 초 GATT 반덤핑위원회 패널 설치 가능
- 12월 미국 및 일본의 추가 질문서에 대한 답변 전달

2. 양측 입장

- 한국 측
 - 폴리아세탈 수지 생산 국내업체인 한국 KEP사는 미국의 듀폰사, 웨스트 및 일본의 아사히 케미컬사의 덤핑 수출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
 - 무역위원회는 1991.4.24. 수입품의 가격이 국산품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산품의 가격하락 유발 또는 상승 억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 관세법 제10조 제1항상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림.
- 미국 측
 - 한국기업 KEP사가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시장점유율, 고용 수준, 임금, 생산능력에 있어 성장이 있었음.
 - KEP사의 수익성 하락은 수입 때문이 아니라 국내시장 경쟁을 위한 과도한 지출 때문임.

1909

대한민국 무역면접 어휘집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전4권 (V.3 1992.1-9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20 / 5 / 1-296

1992년 중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부과에 대한 분쟁 관련 내용임.

1. 진전사항

- 1992.1.21. 주제네바 USTR(미통상대표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반덤핑위원회에 패널 설치 요청
 - 2.17. GATT/반덤핑위원회 패널 설치
- 1992.5.12.~13. 제2차 한·일 양자협약(서울)
 - 한국의 관행을 파악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일본 측의 시도로 평가
- 1992.7.10. 제1차 GATT/반덤핑위원회 패널 회의 개최
 - 5.24. 미국 측 1차 서면입장 제출, 6.24. 한국 측 1차 서면입장 제출
- 7.16. USTR 담당관은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의 덤핑 기업에 경고한 사실에 대해 항의
 - 타지역에서 수출한 덤핑판정 대상기업의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덤핑판정 결과 적용 경고
 - 한국 정부는 해당 기업이 상품명 및 제품등급 등의 변경 수출 시도에 대해 경고했다고 설명
- 1992.8.14. 제1차 GATT/반덤핑위원회 패널 회의 시 미국 측이 요청한 KTC(무역위원회) 판정 관련 자료 송부
- 8.31. 한국 측 2차 서면입장, 9.2. 미국 측 2차 서면입장 GATT/반덤핑위원회 패널에 제출
- 9.16. 한국 측은 미국 측이 7.24.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를 지적하고, 답변을 촉구

2. 제1차 GATT/반덤핑위원회 패널 회의(1992.7.10.)

- 미국 측 주장
 - KTC의 판정이 객관적 조사 및 실질적 증거에 의한 반덤핑협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 곤란
 - 피해 산정 시 협정상의 사실적 근거가 아닌 가정에 입각하여 판단
 - 피해의 인과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결여
 - 한국이 자국의 반덤핑규정을 협정에 일치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 요청
- 한국 측 대응
 - KTC의 판정은 협정상의 객관적 조사 및 명백한 증거에 기초
 - KTC 판정의 피해 산정기준은 협정상 정당
 - KTC 판정은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미국 측 요청 거부 요망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전4권 (V.4 1992.10-93.5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20 / 6 / 1-331

1992~93년 중 수입 폴리아세탈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부과에 대한 분쟁 관련 내용임.

1. 진전사항

- 1992.9.30.~10.1. 제2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반덤핑위원회 패널 회의 개최
 - KTC 회의록의 논거 보완자료로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양측 서면 입장 제출 후로 연기
 - 미국 측은 거부했던 답변을 제출하기로 하고, 산업피해와 인과 관계에 대한 문의도 재차 제기
- 10.9. 한국 측은 GATT/반덤핑위원회 패널보고서에 영업비밀 부분 제외를 요청
- 10.16. KTC 회의록에 대한 미국 입장 제출, 11.2. 한국 입장 제출
- 10.22. 한국 측은 미국 측과 패널 질의 등에 대한 답변서 제출
- 1992.11.12. 패널 절차 종결을 위한 한·미 간 양자협약(워싱턴 D.C.) 개최
 - 이후 미국 측이 제시한 타협안을 한국 측이 거부함에 따라 협상 결렬
- 12.11. GATT/반덤핑위원회 패널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 회신
- 1993.3.4.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측과 타협을 모색하기로 결정
 - 이후 한국 측은 미국 측 타협안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타협 결렬
- 3.10. 수차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완성된 GATT/반덤핑위원회 패널보고서 양측 전달
- 4.27. GATT/반덤핑위원회, 패널보고서 채택

2. 패널 절차 종결을 위한 양자협약(1992.11.12., 워싱턴 D.C.)

- 수석대표
 - 한국 측: 상공부 산업조사관, 미국 측: USTR(미국통상대표부) GATT 패널 수석대표
- 주요 결과
 - 타협안은 미국 USTR 및 한국 KTC 대표 간 체결
 - KTC 결정의 적법성 인정
 - 시행 중인 반덤핑관세의 불연장
 - 수입대체 논리에 입각한 산업피해 판정 금지 요구 철회
 - 덤핑조사 절차의 명료성 제고

3. GATT/반덤핑위원회 패널보고서 요지

- 미국 상품의 덤핑으로 인한 한국 내 산업피해 연관성이 부재하여 한국의 반덤핑조치는 협정 위반
- 1991.9월 한국의 반덤핑조치는 협정 의무에 배치하므로 협정과 일치를 권고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전5권 (V.1 1992.1-6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0 / 7 / 1-159

1992년 중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미국 내 한국산 철강제품 관련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 동향

- 1991.12.30.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제소 관련 한국 및 대만산 스테인레스강관 제품에 대해 미국 국내 산업피해 예비 판정
- 1992.1.8. 미국 정부, 한국산 스테인레스 주방용구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 철회
 - 1987년 최초 부과 이후 4년간 행정 재심 신청이 없어 철회 조치
- 4.9. 미국의 와이어로프 생산업체가 한국에 대해 덤핑 제소(덤핑마진율 148.94%), 미 상무부는 4.29.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 통보
 - 미국 ITC는 5.26.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예비 긍정판정
- 5.20. 미국업체는 한국산 Pipe Fitting에 대해 덤핑 제소
- 6.30. 미국 6개 철강업체는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산 강판류에 대해 84건의 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 한국 관련 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및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2. 한·미 간 자율규제 및 다자철강협정 교섭 관련 동향

- 1992.1.24. 제네바에서 상공부 제철과장과 미 상무부 철강협정과장은 상기 덤핑 제소와 관련 한·미 간 철강 VRA(자율규제협정)상 적용 종료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협의
- 미 상무부 측은 한·미 VRA가 1992.3월 말 종료에 따라 잔여기간 동안의 철강 쿼터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통계자료 요청
- VRA 종료 및 MSA(다자간철강협정) 미타결로 한·미 간 철강 교역 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등 일방적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 4.1.자로 대미 VER(자율수출규제) 결정
 - 미국 측은 동 VER 조치에 대해 평가 유보
- 4.29. USTR(미통상대표부)는 MSA의 분쟁 해결 절차, 일시적인 적용유보(waiver) 등 일부 개정안을 한국 측에 송부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전5권 (V.2 1992.7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0 / 8 / 1-201

1992년 중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미국 업체의 대규모 반덤핑 제소 관련 대응 등

- 미국 언론은 미국 업체가 외국의 경쟁업체와 대응하기 위해 동 제소를 이용하며 판정 자체도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점에 대해 보도
 - 특히, 뉴욕타임스는 제소된 47개 외국 업체의 변호사 비용이 1억 달러에 달해 법률회사들이 외국 철강회사 사건 수입에 혈안 보도
- 1992.7.9. 주미국대사관은 현임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각 위원별 성향 등을 기존 판정 사례의 통계적 분석으로 파악하여 보고
- EC(구주공동체) 측은 상계관세협정 제2조에 따라 미국 측에 대해 미 철강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유무 규명에 진력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동 협정상 규정된 사전 협의권을 미국 측에 발동할 것을 조언

2. 미국 내 한국산 철강제품 관련 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 동향

- 1992.7.20. 미 상무부는 한국산 강판류 등에 대한 덤핑 및 상계관세 대규모 제소 건에 대해 조사 개시
 - 7.31. 미국 측은 상계관세 조사 질문서 초안을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이전에 주미국대사관에 송부하여 제소에 적시된 프로그램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데 대한 필요한 정보를 질문서에 포함시킴.

1913

대한민국-미국 자유무역협정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전5권 (V.3 1992.8-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0 / 9 / 1-154

1992년 중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관련 동향

- 1992.5.30. 미 상무부, 한국산 Pipe Fittings에 대해 21.2%의 덤핑마진 예비판정
- 8.10.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한국 등에 대한 대규모 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관련 산업피해 예비판정
 - 한국, 일본, 브라질, 캐나다 등 20개국 76건에 대해 긍정판정
- 9.11. 미 상무부는 한국산 강관 덤핑마진을 현대강관 5.6% 등 최종 판정
- 9.24. 미 상무부는 한국산 와이어로프 덤핑마진 예비판정, 12.22. 미 상무부 21.2% 마진을 최종 판정
- 10.21. 미국 ITC는 한국, 멕시코, 대만,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산 일반강관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
- 11.5. 미 상무부, 한국산 강관에 대해 최종 덤핑마진 판정, 삼미금속(7.75%) 등 덤핑마진 확정
- 11.30. 미 상무부, 수입철강 판재류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판정 발표, 후판 3.9% 등 판정
 - 한국의 보조금 요소는 정부의 POSCO 주식투자, 금융 보조, 외국 차관 우선 배정, 광양만지역 사회간접자본 투자,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수출손실준비금제도, 해외판공비 무제한 인정 등
- 12.10. 미국 ITC, 한국산 스테인레스강관 최종 산업피해 판정

2. 한국 정부의 미국 내 철강제품 덤핑 제소 등 수입 규제 대응

- 상공부장관은 1992.7.30.자 미국 USTR(미국통상대표부) 대표 및 상무장관 앞 서한 발송
 - 대규모 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관련 미 상무부가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우려 전달
- 8.12. 미국 측이 문의한 와이어로프 등 대미 수출물량이 VRA(자율규제협정) 한도량을 초과한 이유로 동 협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이월 및 전용에 의한 것임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3. 기타 동향

- EC(구중공동체)는 대규모 철강 덤핑 등 제소와 관련 미 국내법의 적용과정에서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칙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GATT 반덤핑 및 상계관세위원회에 문제제기 방침(1992.10.13., 주미국대사관 보고)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전5권 (V.4 1993.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0 / 10 / 1-190

1993년 중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 관련 동향

- 1993.1.6. 주EC(구주공동체)대사관은 철강수출 VRA(자율규제협정) 제의 관련 동향을 EC 대외 총국 측에 문의한바, EC는 VRA를 제의하거나 제의받은 바 없음을 확인
- 일본 철강업체와 통산성도 같은 입장(주일본대사관 보고)
- 브라질은 1.13. 미국 측의 덤핑판정 등 조치와 관련 여타 관계 국가와 공동으로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 추진 발표
- 제네바 주재 브라질대표부는 1.29. 동 건을 GATT 이사회 안건으로 포함시킬 것을 공식 요청

2. 미국의 철강 관련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 절차 동향

- 1993.1.27. 미 상무부는 한국산 등 19개국 강판류에 대한 덤핑 예비판정
- 한국산인 경우 후판 4.72%, 열연강판 30%, 냉연강판 12.73%, 아연도강판 3.28%
- 이에 대해 1.28. 외무부 당국자 논평 발표, 철강제품의 자유교역 저해, MSA(다자간철강협정) 타결 전망에 부정적 영향 우려 및 여타 피해소국과 GATT 공동제소 검토 표명
- 2.9.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덤핑 제소된 한국산 와이어로프에 대해 최종 산업피해 판정

3. 미국 내 철강수입 대규모 제소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

- 1993.1.29. 외무부는 미국의 수입철강제품 반덤핑 조사 관련, 피해소국들이 GATT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견해를 타진할 것을 지시
- 프랑스의 경우 GATT 차원의 공동대처는 유익하다는 예비의견 표명
- EC, 캐나다 및 일본의 경우 GATT 이사회 논의 시 입장표명 등 일단 추진 의견
- 2.6. 한봉수 상공부장관 명의의 항의 서한을 브라운 미 상무장관에게 송부
- 외무부는 GATT 이사회(1993.2.9.)에서 한국 측 우려를 표명할 것을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
- 주제네바대사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최종 판정에서 만족할만한 결과 기대
- EC, 브라질 등은 피해 주장과 결정내용 간의 균형을 잃은 조치로 시정 요구

1915

대한민국 무역발전사 연구회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전5권 (V.5 1993.3-8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0 / 11 / 1-253

1993년 중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미국의 철강수입규제 관련 동향

- 1993.2.26. 제네바에서 브라질은 미국과 양자협의를 개최, 브라질 측의 입장 설명과 미국 측에 대해 철강 덤핑 마진 계산방법에 관한 설명 요청
- 3.19. 제네바 브라질대표부 개최 비공식 협의에서 EC(구주공동체)는 미국과 양자협의를 진행 중이며 상계관세 관련 제2차 협의는 3.30. 예정이고, 덤핑 관련 제1차 협의는 3.29. 각각 진행된다고 발표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1993.3.24.)에서 EC, 브라질 및 미국은 양자협의를 유용성을 주로 논의
- 브라질은 미국 측이 제시한 반덤핑·상계관세부과중지협정을 고려중이며, 타결 시 10%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수출재개 가능 판단(6.4., 주브라질대사관 보고)
- MSA(다자간철강협정) 협상 및 미·일 간 양자협의를(6.10., 주일본대사관 보고)
 - MSA 협상(1993.7.8.~9.) 관련 일본 측은 새로운 협상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며 기존 쟁점에 대한 재점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 통산성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표면처리강판에 대한 잠정 반덤핑조치에 대해 정식으로 미국 측에 2국 간 협의를 요청, 1993.6.15. 워싱턴 D.C.에서 제1차 양자협의를 개최에 합의

2. 미국의 철강 관련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 절차 동향

- 1993.1.27. 미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 예비 덤핑마진율을 30%에서 22.2%로 수정
- 5.13. 미 상무부, 한국산 철강 판재류 상계관세 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저리용자 및 외국차관 지원 관련 보조금 성격 판단을 위한 GDP 기준 적용 문제 집중 논의
- 미 상무부, 한국산 철강 판재류 반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5.24.)
 - 동 공청회는 제소자 측과 피제소자 측이 미 상무부에 제출한 Rebuttal Brief에 대하여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결정적 상황(Critical Circumstances), 회계시스템 적용방법 등이 주로 거론
 - 제소자 측은 Critical Circumstances 조사기간은 제소일 전후 5개월을 적용하여야 하며, 포철이 적용하고 있는 RPG 시스템은 일반적인 회계방법이 아니므로 제소자 측이 주장하는 BIA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6.22. 미 상무부, 한국산 철강재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마진율 최종 판정, 열연강판 마진율 하강 발표



- 6.29. 미국 ITC, 한국산 철강판재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공청회 개최, 미국 산업피해 심리
- 7.27. 미국 ITC, 한국산 철강판재류 중 열연강판 및 후판을 뺀 냉연 및 아연도강판 산업피해 최종 판정,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열연·후판 수출에 지장이 없고 여타 제품도 수출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

3. 미국 내 철강수입 대규모 제소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

- 1993.3.23. 상공부, 미국의 철강 상계관세·반덤핑 예비판정 관련 관계부처 및 업계 대책회의 개최
 - 4월 초까지는 GATT 제소 여부를 결정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4.12. 상공부장관 방미 시 원만한 해결 요청 예정
 - 6월 중순 예정된 최종 판정이 한국에 불리하게 결정되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1917

대한민국 무역면역 강화

미국의 한국산 DRAM 반도체 덤핑 제소. 전2권 (V.1 1991-92)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0 / 12 / 1-225

1991~92년 중 미국의 한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한 덤핑 제소 관련 내용임.

1. 미국의 제소 경위

- 1991.4월 Craig 미 상원의원은 한국업체의 반도체 덤핑으로 미국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함.
 - 한국은 OEM(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수출된 일부 반도체 가격은 미국 주문자에 의해 미국 내 가격이 결정되며, OEM 이외 반도체 수출가는 업체마다 상이하여 덤핑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회신
- 1991.4.22. 미국 마이크론사는 1메가비트 이상 DRAM 반도체를 대상으로 현대, 금성, 삼성을 미국 상무부 및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함.

2. 덤핑 제소 관련 동향

- 1992.5.13. ITC, 청문회 개최
 - 미국 마이크론사는 덤핑으로 인해 자사의 판매 감소 등 피해를 설명하면서, 1메가비트 외에 4, 16메가비트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6.8. ITC, 미국의 산업피해 인정 판정
- 10.21. 미국 상무부, 예상했던 덤핑마진율보다 높은 예비 판정 발표
 - 덤핑마진율: 삼성 87.40%, 현대 5.99%, 금성사 52.41%

3. 한국 정부의 대응

- 1992.11.3. 상공부장관 명의의 유감 표명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
- 11.6. 미국 측에 반덤핑 조사 절차와 같은 법적해결보다는 SA(반덤핑조사중지협정, Suspension Agreement) 체결 희망을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의함.
 - 미국 상무부는 미국업체가 SA 체결에 미온적임을 언급하면서도, 업계와 협의해 보겠다고 함.

미국의 한국산 DRAM 반도체 덤핑 제소. 전2권 (V.2 1993)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1 / 1 / 1-258

1993년 중 미국의 한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한 덤핑 제소 관련 내용임.

1. 한국 정부의 SA(반덤핑조사중지협정, Suspension Agreement)(안) 제시

- 내용: 반도체 관세(현행 9%) 철폐, 한국 정부가 평소에 생산가격 등 자료를 수집하여 미 업계 덤핑 제소 시 즉시 전달 및 양국업체 간 산업협력 지원 등
- 미국의 반응: 관계부처 협의(1993.1.11.) 시 상무부는 반대, USTR(미국통상대표부)은 다소 긍정적, 국무부 및 재무부는 중립

2. SA 신청과 체결 합의 실패

- 1993.1.11. 주미국대사는 Hills USTR 대표와 면담하여 SA 체결을 촉구한바, 미국 측은 제소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상공부 대표단이 1993.1.12.~16.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측과 SA 체결 문제를 협의함.
 - 정부 간 협정 내용으로 수입 반도체 및 장비에 대한 관세인하, 미국산 반도체의 국내시장 점유율 제고 등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
- 1.15. 주미국대사관, SA 신청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함.
 - 제소자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SA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 상무부에 전달함.
 - USTR은 제소자의 극렬한 반대로 SA가 정해진 기간인 2.12.까지 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한국 정부는 2.2. 미국 입장을 반영한 SA안을 미국 측에 전달함.
- 2.9. 한국 정부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측과 최종 협의
 - 2.12. 수정된 SA안을 상무부에 접수
 - 2.16. 미국 상무부는 제소자가 강력하게 반대함을 이유로 SA를 체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

3. 미국 상무부 최종 판정(1993.3.16.) 및 관보 게재(5.10.)

- 현대: 11.16%, 삼성: 0.82%, 금성: 4.97%

1919

대한민국 무역면접 어휘집

미국의 한국상품 덤핑 조사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1 / 2 / 1-107

1993년 중 발생한 미국의 한국상품 덤핑 조사 관련 내용임.

1.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제소

- 뉴욕타임스(1993.1.26.), 월스트리트저널(2.3.)은 미국 3대 자동차사의 외국산 수입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제소 추진을 보도함.
- 2.9. 미국 자동차 3사 회장단은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

1920

2. 1993.2.16. 미국 상무부, 한국산 Steel Wire Rope 덤핑 마진 최종 판정

3. 1993.7.18. 미국 조선협회, 각국 보조금 관련 보고서 발표

- 한국 등 6개국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은 연평균 2,400만 달러

4. 1993.7.28. 미국 Cordage Institute, 한국산 밧줄과 어망에 대한 반덤핑 제소

- 8.31. 동 사는 한국산에 대한 덤핑 제소를 자진 철회

5. 1993.10.1. 미국 연방순회재판소, 한국산 컬러 TV 반덤핑 조사 관련, 미 제소업체에게 패소 판결

6. 1993.11.17. 미국 사카린업체 PMC, 한국산 사카린 대상으로 덤핑 제소

- 12.8. 미국 상무부, 덤핑조사 개시를 결정

7. 1993.11.24. 미국 상무부, 한국의 합성스웨터 반덤핑 예비 판정

- 6개 업체 평균 마진율은 1.3%에서 2.51%로 상향 조정

한·미국 간 상사분쟁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1 / 3 / 1-34

1992~93년 중 한·미국 간 상사 분쟁 관련 내용임.

1. 대우조선과 미국 PMI 간 가계약 관련 분쟁

- 1992.10.29. Robb 미국 상원의원은 대우조선이 PMI와 체결한 가계약을 대우가 취소하고 재입찰을 통보한 데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함.
- 대우조선은 원 발주자인 미 해군이 계약가격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재입찰을 요구함에 따라 재입찰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임.
- 1992.11.16. PMI 측이 재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옴.
- 1992.11.20. 실시한 재입찰에 PMI도 참여함.
- 미 해군 측 사정으로 1993.2.12. 시작 주에 새 입찰 실시 예정

2. 한국의 Inter Korea Corporation(IKC)과 미국 Plastique Tags 간 분쟁

- 1993.5.3. 상기 미국 회사는 한국 IKC를 상대로 2만 5천 달러의 손실 보상을 요청
- IKC는 10월 말까지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물품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

1921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처

한·호주 항공협력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1 / 4 / 1-101

1991~93년 중 한·호주 간 항공협력 추진 관련 내용임.

1. 콰타스 항공, 서울 취항(1991.11.2.)

- 콰타스 항공, 서울-시드니 간 직항노선 개설

2. 제1차 항공 협상(1992.5.25.~26., 시드니)

- 현재 주1회 서울-시드니 간 직항편을 주2회 증편에 합의

3. 제2차 항공 협상(1993.4.21.~22.)

- 수석대표
 - 한국 측: 교통부 국제협력심의관
 - 호주 측: 교통체신부 부국장
- 회담 결과
 - 운항 횟수를 B747 기준으로 현행 주2회에서 주5회 증편에 합의
 - 이원권 관련 한국 측은 호주->뉴질랜드를 제시하였으나, 호주 측 반대로 미합의
 - 노선구조 합의
 - 한국 측: 호주 내 운항지점에 '브리즈번'과 '추후 지정 1지점' 추가
 - 호주 측: 중간 지점에 '뉴질랜드 내 1지점'과 '추후 지정 1지점' 추가

한·일본 항공협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21 / 5 / 1-167

일본 지자체들의 한국 항공사 직항노선 개설 추진 등 한·일본 간 항공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일본 지자체 한국 직항노선 개설 추진

- 외무부 작성 한·일본 간 항공운항 개요(1992.2.14.)에 의하면, 1991년 한·일본 항공회담 시 신규 4개 노선 합의에 따라 오키나와, 오이타, 다카마스에 이어 추가로 일본 내 1개 지점 선정을 두고 일본 지자체들은 한국 직항노선 유치에 노력함.
- 교통부, 1992.2.22. 국제선 정기항공운송사업 노선 면허 통보
 - 아시아나항공: 서울-다카마스, 서울-오키나와 노선
 - 대한항공: 서울-오이타 노선 등

2. 직항노선 개설 추진을 위한 일본 지자체 관계자 방한

- 시마네현
 - 시마네현청 기획부장 등 관계관 방한(1992.2.18.)
 - 외무부, 교통부 및 대한항공 측 면담
 - 동 일행은 2.7. 주일본대사를 예방, 이즈모와 서울을 연결하는 직항 개설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아오모리현
 - 서울-아오모리 정기항공편 개설 진정단 방한(1992.2.7.~11.)
 - 아오모리현 의회 일본·한 친선 의원연맹회원 및 아오모리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
 - 교통부 항공국, 국회사무처 예방
 - 정기항공편 개설추진 사절단 방한(1992.2.24.~27.)
 - 단장: 아오모리현 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방문
 - 청년상공인 방한(1992.4.7.), 서울 국제정기항공편 개설 촉진 운동, 아오모리 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 명의 주일본대사 및 주센다이총영사 앞 협조 요청 서한 송부 등
- 아키타현
 - 아키타현 부지사 등 경제사절단 40명의 서울-아키타 정기항공편 개설추진단 방한(1992.3.2.)
 - 혼쵸시 시장 등 50명의 개설추진단 방한(1992.5.8.) 등
- 에이메현
 - 에이메현 지사 일행 방한(1992.4.28.)

1923

대한민국-일본관계사-1993년



3. 주일본대사관은 1992.4.20.자 공한으로 1991년 한·일본 항공회담 시 합의된 양국 항공협정
부속서 개정의 발효가 일본의 국내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1992년 말까지 추가로
일본 내 도야마 지점이 노선으로 지정, 운항되어야 함을 일본 측에 전달

- 1993.4.20. 일본 외상 명의의 회답공한으로 동 부속서 개정 발효

4. 아시아나항공, 서울-오키나와 노선 취항 행사(1992.4.23.) 개최

- 주일본대사 및 오키나와현 지사 참석하 나하공항 국제선터미널에서 개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후속조치: 화물청사 건립 문제. 전2권 (V.1 1991.6-12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1 / 6 / 1-194

1991년 중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후속조치인 화물청사 건립 문제 관련 자료 내용임.

1. 교통부의 김포공항 내 미국 항공사 전용 화물청사 건립 추진 계획

- 화물청사 건립 계획
- 지상조업 장비의 이전 계획
- 추진 일정 계획
- 각 부서별 분담 계획

2. 미국 항공사 전용 화물청사 건립 설계 개요(1991.8월)

- 건축 기본 계획 설명서, 기계설비 기본 계획 설명서, 전기통신 기본 계획 설명서 등

1925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후속조치: 화물청사 건립 문제. 전2권 (V.2 1992-93)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1 / 7 / 1-210

1992~93년 중 한·미국 간 항공운수협정 후속조치인 화물청사 건립 관련 내용임.

1. 화물청사 건립 관련 한·미 간 실무회의(1992.1.16.~17.)

- 화물청사 건립 추진 내용 소개
- 설계 내용에 대한 검토
- 미국 측 요구사항 청취
 - 사무실을 항공사별로 분리, 향후 청사 운영 계획 등

1926

2. 화물청사 설계에 관한 실무자 회의(1992.4.29.)

- 기존 화물터미널 내 사무실 추가 구성
- ULD(Unit Load Device) 창고 설치 문제(미설치 합의)
- 설계 시 기타 유의사항, 사무실 조정 계획을 1992.6.30.까지 제출 합의 등

한·미국 항공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1 / 8 / 1-32

1993년 한국과 미국 간 항공분야 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주앵커리지총영사, 아시아나항공의 앵커리지 취항 건의(1993.1.6.)

- 최소 주1~2회

2. 양국 교통부 항공국장 면담(1993.1.15.)

- 수석대표
 - 한국 측: 정종환 항공국장
 - 미국 측: Edward Oppler 국제항공부국장
- 면담 내용
 - 김포공항 화물 청사 건립 지연 문제, 기재변경 관련사항(Change of Gauge)
 - 여타 한·미국 간 항공협력 관련사항 협의

3. 교통부, 국제항공운송 사업 허가 통보

- 콘티넨탈 마이크로네시아사(1993.2.17.)
- 아시아나항공(노선 면허 허가)(6.28.)
- 항공협정에 의한 항공사 지정(7.30.) 등

1927

대한민국 독립 100주년

한·미국 해운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1 / 9 / 1-172



1928

1. 한·미국 해운관계 동향(1993.2월)

- 최근 수년 간 한·미국 간에는 미국 측의 개방 압력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해운 마찰이 심화됨.
 - 미국선사의 한국 내 컨테이너 일관 수송 관련 국내지사 설치를 통한 직접 영업
 - 항만시설 이용 차별 해소 및 전용사용 문제
 - 트럭킹 업 및 철도운송 직접 참여와 해상운송 주선업의 전면 투자 허용 등
- 그럼에도 1992년 한·미 해운회담을 통한 트럭킹 업의 전국 개방 및 해상운송 주선업의 전면투자 개방 시기 합의에 따라 대부분의 장기 현안은 해결된 상태
- 그러나 미국 측은 개방합의 못지않게 합의내용의 이행과 실질적인 영업환경 개선 여부를 중시
 - 1993년 상반기 중 시행예정인 해상운송 주선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제한 해제조치 진전 및 1994년 초 전국적인 트럭킹 업 개방 이전 미국 선사들의 철도 보세운송 참여를 위한 관세청의 검토 결과를 예의 주시
 -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 투자를 비롯하여 컨테이너 내륙 운송기지 확보 및 장비 도입문제 등도 본격 거론될 전망
 - 한국과 중국, 러시아 간 직항로에 미국 선사 참여문제도 미국 측의 주요 관심 분야로 부상 예상

2. 한국 해상운송 주선업체에 대한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의 제재조치 철회(1993.9.23.)

-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해상화물운송 주선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제한과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한국인 소유 해상화물운송 주선업체 및 무선박 운항사업체에 대해 취해왔던 제재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
-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주미국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 채널 및 DEC(한미경제협력대화)를 통해 강력 항의와 함께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 측 조사 절차의 문제점 및 한국 측 업계에 대한 과도한 제재 부과 등을 계속 지적해온 바 있음.

한·중화민국 해운위원회, 제8차. Taipei, 1992.4.15.-16.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21 / 10 / 1-65

제8차 한·대만 해운위원회가 1992.4.15.~16.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조영훈 해운항만청장
- 대만 측: Lin, Chin-Chuan 교통부 항정국 부국장

2. 양측 제의 내용 및 결과

- 한국 측 제의
 - 대만 내 한국선사들에 대한 부두사용료 및 도선료 차별대우
 - 대만 측은 타이중 항에서 외국선사 부두사용료에 대해 차별 없음을 설명하면서, 도선료는 선사와 협회 상호 간 협의에 의해 결정(정부 미개입)되는 바, 한국선사에 대한 도선료 및 기타 차별사항에 대해 불공정한 대우 여부 조사를 약속함.
 - 국제운수 소득세 면제 적용 범위
 - 한국 측이 언급한 지체료 Surcharges 등의 수입도 면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의
 - 한·대만 적취율 불균형 시정
 - 대만 측은 양국 적취율 불균형은 선사의 수송능력 규모에 따른 것으로 상업적인 문제에 정부 개입 곤란 입장
 - 한국선사의 카오슝 항 전용터미널 확보
 - 대만 측은 가능한 빨리 임대 정책 전반을 검토하여 한진에 전용터미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대만 측 제의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등에서 대만 가입 관련 협조
 - 한국 측은 해운 관련 GATT, GATS(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자료 제공 적극 협조
 - 국적 원양선사의 Interport 서비스 및 덤핑 선사 규제
 - 대만선사의 한·일 항로 참여 요구
 - 대리점 변경과 지사 설치에 관한 제한

3. 주요 성과

- 한국 측 제의 관련, 요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어 가시적 성과 거양
- 대만 측 요구사항은 대부분 비수용, 다만 GATT 관련사항은 한국 측에서 적극 협조 약속

1929

대한민국-중화민국-영국

한·캐나다 항공회담. Ottawa, 1993.12.15.-16.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1 / 11 / 1-81

1993.12.15.~16.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항공회담 관련 내용임.

1. 회담 경위

- 한·캐나다 항공협정(1989.9.20. 발효) 개정 및 양국 간 항공 현안 협의를 위한 회담 제의
- 한·캐나다 항공협정에 부속된 양해각서는 양국 지정항공사들이 각각 매주 B747(3회) 또는 L1011(5회) 또는 B767(5회)을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992.9월 교통부는 MD11(5회)을 운항 기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MOU 개정을 캐나다 교통부에 제의하였으나, 캐나다 측은 우선 양국 지정항공사 간 협의 후 정부 간 회담에서 협의할 것을 제안함.
- 1993.8.23. 대한항공과 캐나다항공은 상무협정을 체결하여 MD11을 주4회 운항에 합의함.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 김규선 교통부 국제협력심의관
- 캐나다 측
 - Duane Van Beselaere 외교부 항공협상 부대표

3. 회담 결과

- 신규기종인 MD11 및 A340의 운항 횟수를 주4회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B747 콤비기는 주3회로 하되 공급 규모는 B747 여객 400석으로 하여 각종 항공기를 상호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주간 공급석 합계가 1,200석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양국 간 운항 횟수 증대, 중간 기착권 허용, 싱가포르 측에 서울이원 주3회 허용 합의사항 문제 등은 추후 서울에서 회담을 재개하여 협의하기로 함.

한·EC(구주공동체) 해운회담, 제5차. Brussels, 1993.6.1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1 / 12 / 1-93

1993.6.17.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5차 한·EC(구주공동체) 해운회담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종길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 EC 측: Blonk 집행위 해운국장

2. 회의 결과

- 한·일 항로를 제외한 모든 아시아 항로(한·중국, 한·러시아 항로 포함)를 EC선사에 대해 1993.11.19.부터 전면 개방
- 한·일 항로는 EC선사에 대해 1994.7.1.부터 전면 개방하되, 1993.11.19. 이전 피더서비스(소형선박 이용 수송)에 참여해온 것으로 확인된 EC선사는 계속 참여 가능
 - 기존 한국의 지정화물제도는 계속 유지

3. 기대 효과

- 1991년 이후 EC 측은 한국의 주요 항로에 대한 EC선사의 참여 규제 철폐를 요구해온바, 이번 타결을 통해 한·EC 간 관계 증진의 주요 걸림돌을 제거함.
- 한·EC 간 관계를 기존 통상해결 중심에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

1931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러시아 해운회담, 제5차. Moscow, 1993.7.21.-2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3과 / 동구1과

MF번호 2023-121 / 13 / 1-145

1993.7.21.~23.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5차 한·러시아 해운회담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러시아 측: Orlov 교통성 해운부 국제부국장

2. 회담 의의

- 1991.7월 부산-보스토치니(블라디보스토크 보조항) 해운 직항로 개설 후 한·러시아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최초의 공식회담으로 협정 문안 중 이견에 대해 집중 협의

3. 회의 결과

- 관할권 행사
 - 러시아 측은 내수가 아닌 항구에서의 행사관할권 배제에는 동의하였으나, 관련 한국 측 안의 수정을 주장함에 따라 한국 측은 한·네덜란드 협정문을 기초로 표현을 수정하는데 동의함.
- 공동위 구성
 - 공동위대표단 구성은 각국이 제정할 사항으로 굳이 협정에 명시할 필요가 없음을 고려, 정부 및 대표로 구성된다는 표현은 삭제하되, 개최 시기는 상호 협의 제정한다는 한국 측 안에 합의함. 단, 공동위에서의 협의사항에 제3국 항로 관련 문제를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견을 보임.
- 합작기업 및 지사 설립 지원
 - 양측은 해운 및 해운관련 분야에 관한 합작기업 및 지사 설립을 지원한다는 한국 측 안에 합의
- 양측 수석대표는 계속 이견을 보인 제3국 항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을 모두 명기한 단일 협정 문안을 채택하고,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 양측은 빠른 시일 내 서울에서 제2차 회담을 개최하고, 이번 회담 시 채택한 단일 협정 문안을 기초로 계속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해운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한·미국 항공 실무대책반 회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21 / 14 / 1-217

1993년 중 한·미 항공실무대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회의(1993.2.23.)

- 대표단
 - 한국 측: 서용현 외무부 통상2과장, 교통부, 체신부, 관세청, 김포세관, 한국공항관리공단 관계자
 - 미국 측: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 등
- 회의 결과
 - 한·미 항공 MOU 이행 및 미국 항공사의 영업상 제반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협의

2. 제2차 회의(1993.6.29.)

- 대표단
 - 한국 측: 서용현 외무부 통상2과장, 교통부, 체신부, 관세청, 김포세관, 한국공항관리공단 관계자
 - 미국 측: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 및 미국항공사 관계자
- 회의 결과
 - 김포공항 미국 항공사 전용 화물창고 건립지연 문제 협의
 - 세관 대책반 회의 결과 검토
 - CRS 장비 수입절차 검토

3. 제3차 회의(1993.11.15.)

- 대표단
 - 한국 측: 서용현 외무부 통상2과장, 교통부, 체신부, 관세청, 김포세관, 한국공항관리공단 관계자
 - 미국 측: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 등
- 회의 결과
 - 통관절차 개선내용의 조속한 이행촉진 협의
 - 화물청사 신축일정 협의 등

1993

대한민국 외교부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개최 준비. 전6권 (V.1 정부대표 임명)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 주한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121 / 15 / 1-33

1. 정부대표 임명

- 정부대표: 오명 대전박람회조직위원장
- 부대표: 이경훈 외무부 본부대사
- 정부대표 임무
 - 박람회 전반적 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표
 - 박람회 참가자에게 제시된 약속의 이행 보장
 - 박람회의 운영이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 등 제규칙을 준수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

1934

2. 대전 세계박람회 한국 전시구역 정부대표 임명

- 정부대표: 이경훈 대전 세계박람회 정부 부대표
- 추천 근거: 국제박람회 협약 제13조 및 대전 세계박람회 일반규칙 제8조
- 임무
 - 한국 정부관 및 국내 참가자의 준비와 운영 총괄
 - 한국 정부관 방문 인사에 대한 영접 및 주요 행사 참석
 - 참가국 정부대표자 회의 및 운영위원회 참석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개최 준비. 전6권 (V.2 정부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 주한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121 / 16 / 1-275

1. 정부지원위원회(1992.8.20./9.3./1993.7.1.)

- 참가자(위원 31인)
 - 국무총리(위원장), 전 국무위원, 법제처장, 보훈처장, 안기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조직위원장
- 회의 내용
 - 박람회 정부 지원사항 종합 보고, 박람회 추진 현황 보고, 박람회 개최 시 준비 현황 보고, 기타 주요 사항 토의

2. 정부지원 실무위원회(1992.8.12./1993.6.28./7.15./7.29.(최종점검회의))

- 참가자
 - 실무위원회 위원 31인
 - 총리실 행정조정실장(위원장), 각 부처 1급 공무원, 대전시 부시장 등
- 주요 의제
 - 정부 지원 현황(교통, 숙박, 안전, 홍보, 사후관리 등), 박람회 지원사항(박람회장 건설, 전시, 문화행사 등), 대전시 준비사항(시가지 정비, 시민 참여활동 등)

3. 국회 대전엑스포지원특위, 해외 시찰(1993.6.7.~21.)

- 시찰단: 남재두(단장) 등 의원 4명
- 시찰국: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일본
- 목적
 - 세계박람회 개최국 관계 인사 및 대전 엑스포 정부대표 면담, 세계박람회 개최국 박람회장 시설 사후관리 실태 및 박람회 개최도시의 파급효과 파악

4. 대전 엑스포 안전대책 분과위원회(1993.4.23.)

- 망명자 처리대책을 포함한 대테러 안전대책 논의

1935

대한민국 근현대사 연표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개최 준비. 전6권 (V.3 위원총회)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 주한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121 / 17 / 1-219

1. 제14차 의원총회(서면결의)

- 논의 안건: 1992년 수정 예산안 의결
 - 엑스포가 임박함에 따라 소요 인력 충원을 위한 필요 경비(3억 3천만 원) 총당 목적

2. 제15차 의원총회(1993.1.20.)

- 안건: 1993년 사업계획 및 예산(2천 476억 원) 의결

1936

3. 제18차, 제19차 의원총회(서면결의)

- 안건
 - 제18차: 정관 개정
 - 제19차: 1994년 예산안 의결

4. 제20차 의원총회(1994.2.4.)

- 참석 대상: 위원 전원(35인)
- 안건
 - 1993 회계연도 결산(안)
 - 엑스포 조직위 자산처분계획, 조직위 해산(안)
 - 엑스포 조직위 청산인 선임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개최 준비. 전6권 (V.4 참가대표단에 대한 특권·면제 부여문제)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 주한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121 / 18 / 1-169

1. 엑스포 준비회의(1993.4.16.)

- 참가자
 - 총리실, 외무부, 내무부, 국세청 등 과장급
- 회의 주제
 - 엑스포 해외 참가자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 협의
- 회의 결과
 - 부가가치세법상 엑스포 참가자에게 면세 혜택을 주기는 어려움.
 - 다만, 서울 상주공관을 통해 엑스포 참가국 주관행사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임.

2. 엑스포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회의(1993.4.29.)

- 참가자
 - 총리실, 외무부, 내무부, 국세청 등 1급 공무원
- 논의 결과
 - 엑스포 참가 정부대표에 대한 면세카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함.
 - 외국 참가자가 전시용 물품을 국내에서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건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함.

1937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개최 준비. 전6권 (V.5 자원봉사자 및 도우미)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 주한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122 / 1 / 1-202

1. 재외공관에서 송부한 해외 자원봉사자 신청서 관련 문서

- 접수 기간: 1992.10~93.2월
- 신청 공관(46개): 시카고(14명), 멕시코(2), 삿포르(1), 캐나다(9), 시드니(19), 워싱턴 D.C.(15), 휴스턴(12), 앵커리지(1), 파라과이(24), 상파울루(7), 대만(190), 라스팔마스(7), 바르셀로나(10), 하깟냐(3), 시애틀(37), L.A.(85), 비엔나(3) 등

2. 외무부, 대전 엑스포 도우미 모집 관련 재외공관에 지시(1993.3.2.)

- 재외공관은 도우미 모집내용 공지
 - 관람객 안내, 의전, 통역 업무

3. 외무부, 자원봉사자 선발 결과 공관에 통보(1993.3.5.)

- 지원자 전원 선발 내용(조직위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기통보)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개최 준비. 전6권 (V.6 기타)

생산연도 1990-1993

생산과 통상3과 / 주한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122 / 2 / 1-58

1. 대전 국제무역산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출장(1990.11.19.~24.)

- 방문국: 스페인, 일본(도쿄, 오사카)
- 출장단
 -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 대리 및 용역회사 5명
- 출장 목적
 - 박람회를 개최할 세비야 조직위 등 방문
 - 1993년 상기 박람회 개최를 위한 토목 기반시설 및 조경시설 견학

2. 엑스포 관련 영문 참고자료

- 엑스포 종류와 주제
- 대전시 소개 자료
- 대전 엑스포 개최 장소
- 국별 전시관 개요
- 문화행사 등

1939

대한민국 외교부 역사자료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문화행사. 전2권 (V.1 문화행사 I)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 문화협력1과 / 홍보과

MF번호 2023-122 / 3 / 1-167

1940

1. 국제민속축제 및 세계 전통혼례식 행사 개최계획

- 참가국(팀) 선정(20개국)
 - 엑스포 참가국: 15개국
 - 엑스포 비참가국: 5개국(인도, 이집트, 케냐, 유고, 몽골)
- 참가국(팀) 결정
 - 교섭 창구
 - CIOFF(국제민속축제기구협의회) 회원국: CIOFF
 - 비회원국: 현지 한국공관
 - 심사 결정: 참가 대상팀의 공연자료 입수, 검토
 - 참가팀 결정: 조직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심사위에서 결정
- 행사개최
 -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진행 및 공연장

2. 국제민속축제

- 구성: 20개팀
- 공연
 - 각 팀(30명 내외) 1일 1회(60분)
 - 3일간 3회 공연
 - 고유민속예술(무용, 음악, 연극 등) 공연
- 비교: 참가국의 National Day와 연계

3. 엑스포 영화제

- 대전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992.12.12. 벨기에 측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해 전달
 - Video Art Show 참가 가능 여부: 동 행사는 백남준 1인의 작품을 전시하므로 참가 불가
 - Int'l Children's Art Exhibition 참가가능 여부: 참가 가능
 - Miss World University Contest 참가가능 여부: 추후 별도로 통보 예정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문화행사. 전2권 (V.2 문화행사 II)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 문화협력1과 / 홍보과

MF번호 2023-122 / 4 / 1-122

1. 세계아동미술전

- 주베트남대사는 1993.4.3. 베트남 문화부가 세계아동미술전 참가 초청장을 받아 동 미술전에 송부할 작품을 선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 문화부가 예산 사정상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수 없으므로 총 4,100달러의 경비지원을 요청하여 왔으며 동 지원을 건의
- 주요코하마총영사는 4.20. 요코하마시는 세계아동미술전 출품 신청자가 대단히 많다고 하면서, 출품신청서 400매를 지급 송부해 줄 것을 요청
- 주센다이총영사는 10.20. 주최 측인 아시아문화교류센터에 확인한바, 센다이지역 응모자 중 입선자들이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동 입선자들의 상장 및 상품을 주센다이 총영사관으로 직접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2. 기네스 기록 도전 자동차 세계일주

- 대전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1993 세계 기네스 기록 도전대회 개최를 추진
 - 행사명은 최단 시간 자동차 세계일주 기네스 기록 도전이며, 행사 일시는 1993.7.1.~8.6.(약 37일 예정)
 - 출발 도착 장소는 대전 세계박람회장 내 한빛탑 광장이며, 도전자 3명이 총 6개 대륙 27개국을 최단 시간 내 자동차 세계일주 기네스 기록에 도전함.
 - 기록 도전자: 카레이서 박희태, 윤서현, 윤홍기 3명
- 행사 취소
 - 박람회조직위원회는 도전자의 신병으로 인하여 행사가 중단되었다고 외무부에 통지함.

3. 미국 VSA(Very Special Arts)의 미국 주간행사 공연 및 전시 문제

- 미 원호처장관은 1993.9.1. 주미국대사를 통해 동 장관 내외가 후원하고 있는 VSA 단체가 대전 엑스포 기간 중 미국 주간행사의 일환으로 공연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옴.
- 조직위원회는 VSA의 대만 공연 비디오테이프 자료를 검토한바, 공연내용 및 수준 등이 한국 조직위가 기대하고 있는 엑스포 문화행사 공연으로는 여러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용이 불가함을 외무부에 전달하고, 이러한 입장을 VSA 측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

1941

대한민국 외교부 역사자료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외빈 방한. 전3권 (V.1 총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122 / 5 / 1-167

1942

1. 엑스포 주요 행사

- 1993.8.6. 개막식
- 8.8.~11.5. 각국 National Day, 국제기구 Special Day

2. 주요인사 방한 계획(1993.7.30.)

- 정상급 인사: 16명 비공식 방한
- 각료급 인사
 - 외무장관, 국회의원, 국제기구 주요인사: 13명
 - 정부인사: 36명
- 기타 주요인사: 8명(차관급 이상)

3. 업무분장

- 외무부
 -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장관 이상 각료 및 국제기구 주요인사에 대한 의전 및 일정 주선
 - 외무부 이외 인사에 대한 해당부처와 재외공관 간 일정 주선과 업무연락 협조
- 관계부처
 - 해당부처 인사에 대한 일정 주선 및 편의 제공(특히 주한공관 부재 국가 인사에 대한 편의 제공)
-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
 - 대전지역 및 박람회장 내에서 편의 제공(호텔예약, 안내 등)
 - 주요인사 공항 출입 시 편의 제공(공항사무소 운영, 필요시 해당부처 협조)
 - 행사별 지원계획에 따른 항공료, 체재비, 차량 등 편의 제공

4. 기타

- 주한공관 부재 국가의 방한인사에 대한 편의 제공
 - 원칙적으로 해당부처가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예우 및 편의 제공
- 고위직 인사 방한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현상 방지
 - 카리브 5개국의 경우, 방한인사의 직급 하향 조정 및 방문시기 조정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외빈 방한. 전3권 (V.2 아주지역)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122 / 6 / 1-129

1. 일본 인사

- 엑스포 초청: 통산성 심의관 인솔 정부대표단 7명, 요코하마 시장, 도쿄도 지사, 나하현 지사 및 부지사, 오사카부 지사, 가고시마 주재 한국 명예총영사 등
- 편의제공: 가와사키 한일 친선협회장 인솔 참관단 40명, 도쿄도 지사, 통산성 차관 및 과장

2. 중국 인사

- 엑스포 초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 및 정부대표단 7명, 국무원 부총리, 국무원 신문판공실 3차례 참관단, 문정일 전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 편의제공: 과학기술자 참관단 300여 명, 이남청 부총리 인솔 대표단 23명

3. 몽골 인사

- 엑스포 초청: 총리 또는 부총리, 재무장관, 상공장관
- 편의제공: 상공부 차관 인솔 경제사절단 32명, 상공회의소 부회장, 부총리, 두만강회의 대표

4. 동남아 인사

- 편의제공
 - 말레이시아: 상공장관 인솔 사절단 5명, 사바주 산업개발 장관
 - 인도네시아: 수출개발청장 인솔 대표단 4명, 중공업부 차관보 인솔 사절단(20여 개 기업 참가)
 - 미얀마: 무역장관 인솔 대표단 8명
 - 베트남: 중공업장관
 - 태국: 하원 공업 분과위원장 인솔 대표단 34명, 하원 관광분과위원장 인솔 대표단 26명, 하원 과학기술분과위 위원단, 사회과학연구자협회 회원 40명

5. 서남아 인사

- 편의제공
 - 인도: Rao 총리, 한·인도 민간경제협의회 사절단 25명
 - 파키스탄: 무역진흥청 간부 3명
 - 방글라데시: 수출가공지역 관리공단 회장
 - 스리랑카: 청소년체육부 차관

1943

대한민국 의정관서 기록부



6. 대양주 인사

- 편의제공
 -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부장관 등 4명
 - 파푸아뉴기니: Port Moresby 시장
 - 마셜제도: 교통체신장관 인솔 사절단 4명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외빈 방한. 전3권 (V.3 미주지역 및 국제기구)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122 / 7 / 1-107

1. 북미 인사

- 미국: 하와이 대법원장 및 하원 부의장
- 캐나다: 대법원장 등 5인, 퀘벡 경제사절단

2. 중미 인사

- 트리니다드토바고: 상공회의소 사절단
- 도미니카공화국: 무역진흥청 단장 및 엑스포 조직위 위원 4명
- 바베이도스: 엑스포 담당대사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외무장관
- 세인트루시아: 상공장관
- 파나마: 상공부 차관 및 대외무역청장, 관광공사 부사장 등

3. 남미 인사

- 브라질: 상공장관 및 사절단
- 페루: 상공부 차관
- 에콰도르: 상공장관
- 콜롬비아: 대외무역부 차관 및 사절단, Valle del Cauca주 사절단
- 아르헨티나: 공업장관

4. 국제기구 인사

- 오스트리아: 경제부 차관 및 수행원, 국민당 원내총무 및 의원사절단, 상공회의소 부회장,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BIE(국제박람회기구) 의장, 아프리카개발은행 부총재, EC(구중공동체) 집행위원회 대외경제총국 부총국장

1945

대한민국 외교부 역사자료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구주지역). 전8권 (V.1 서구 I)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2 / 8 / 1-179

1. 바티칸 대전 엑스포 기념우표

- 주교황청대사는 1992.3.17. 교황청 국무부 담당관으로부터 아래 내용 확인
 - 대전 엑스포 기념우표 발행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바, 동 건은 교황청의 1993년도 기념우표 발행 우선순위에 의거 결정되며, 현재 신중히 고려 중으로 금년 말에야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결정할 것임.
 - 따라서 한국 측이 요청한 발행조건, 절차, 비용 등은 우표 발행 계획이 결정된 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바, 동 대사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전 엑스포 기념우표 발행이 내부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주재국과 협조할 것임.

2. 네덜란드

- 주네덜란드대사는 1992.12.9. Theo Herngreen 네덜란드 대외무역청 엑스포 담당관이 동 대사관을 방문, 네덜란드의 대전 엑스포 공식 참가 결정을 알려왔다고 보고함.
 - 동 담당관은 그간 참가결정이 어려웠던 배경을 설명하고, 비록 참가결정은 늦었지만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시킴으로써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할 뿐 아니라 훌륭한 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 동 담당관은 참가에 따른 세부사항 검토 및 협의를 위해 1993.1월 중 방한할 예정이라고 부연

3. 덴마크

- 주덴마크대사는 1992.7.24. 덴마크의 대전 엑스포 참가신청서 제출 관련 아래 내용을 보고함.
 - Steen Christensen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은 7.23. 추연곤 주덴마크대사관 참사관에게 덴마크 정부가 최근 대전 엑스포 참가를 최종적으로 공식 결정했으나, 대전 엑스포 담당 정부 대표자인 Ole Philppson 대사가 세비아 박람회에 가 있어, 대전 엑스포 공식참가자 특별규정에 정해진 마감시한인 8.7.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함.
 - 동 과장은 Philppson 대사가 8월 중순 덴마크에 잠시 귀환예정이므로 가능한 동 기간까지는 참가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언급함.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구주지역). 전8권 (V.2 서구 II)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2 / 9 / 1-191

1. 이탈리아

- 주이탈리아대사는 1992.7.3. 김경석 주이탈리아대사관 서기관이 7.1. 이탈리아 측 참가 주관 기관인 이탈리아 무역공사의 Permani 전시부장을 접촉, 이탈리아 측 참가 통보 및 참가신청서 제출을 교섭한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Permani 전시부장은 EC(구주공동체) 회원국 전시담당관 회의(1992.6.11., 브뤼셀) 결과에 대해 주EC 이탈리아대표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면서, 동 회의에서 EC 회원국 12개국 모두가 대전 엑스포에 참가할 의사를 표명하고, 20개 모듈 규모로 EC 명의 공동 참가를 결정함.
 - 동 부장은 상기 EC 전시담당관 회의에서 EC 집행위 측이 9월 초 브뤼셀에서 EC 회원국 전시 주관 부서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참가규모 확정, 신청서 제출 및 전시참가에 따른 제반 기술적 문제를 협의하고, 9월 말경 EC 집행위가 대전 엑스포에 EC 명의 공동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이탈리아의 참가신청서 제출 문제도 9월 중에야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함.

2. 포르투갈

- 주포르투갈대사는 1992.2.25. 상역·관광성 대외무역 담당 국무상(부장관급) Antonio Fernandesde Sousa 대사를 초청하여 대전 엑스포 참가 문제, 서울에서 개최할 투자 관련 세미나 참석차 방한 시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보고함.
 - 동인은 포르투갈의 대전 엑스포 참가는 기결정되었으나, 참가규모 및 방식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4월 세미나 개최 시 대전 조직위와 추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함.

3. EC 회원국

- 주EC대사는 1992.6.11. 포르투갈에서 가진 회원국 전시담당관 회의에서 대전 엑스포 참가 문제를 협의하였다고 하면서 그 결과를 아래 보고함.
 - EC 회원국 및 EC 집행위는 대전 엑스포 국제관지역 남쪽에 위치한 20개 모듈에 공동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회의에서 국별로 모듈 수를 잠정 확정, EC 집행위에 신청함.
 - 프랑스 3, 영국 2~3, EC 집행위 2~3, 벨기에 2~3, 네덜란드, 그리스, 덴마크, 포르투갈 각 1개

1947

대한민국 외교부 역사자료실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구주지역). 전8권 (V.3 중구 I)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2 / 10 / 1-200

1948

1. 그리스의 대전 엑스포 불참

-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1993.3.29. 그리스의 대전 엑스포 불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이를 주그리스대사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그리스는 최근 자국의 전시관이 국제 A구역 내 EC(구주공동체) 국가들이 배정된 지역에 배정되지 않을 경우, 대전 엑스포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직위에 알려온 바 있음.
 - 조직위로서는 기참가를 통보한 EC 국가들 중 어느 국가가 불참을 결정할 경우 그리스에서 요청한 동 지역에 그리스를 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왔으나, 기참가를 통보한 EC 국가들은 불참을 결정한 국가가 없어, 그리스를 A구역 EC 지역에 배정할 수 없는 실정임.
 - 상기 그리스의 입장은 주한 그리스대사를 통해 재확인됨에 따라, 그리스는 대전 엑스포에 불참하게 되었으며, 주한 그리스대사는 상기 입장에 따라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조직위에 통보함.

2. 불가리아

- 주불가리아대사는 1992.4.22. 불가리아의 대전 엑스포 참가신청서를 4.21. 현재 스페인 세비야 세계박람회에 참석 중인 동 센터소장이 휴대하고 있는바, 동 박람회에 참석 중인 한국 측 Commissioner General에게 불가리아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통보해 옴.

3. 오스트리아 국민당 고위간부 면담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92.4.30. 국민당 원내총무 Neisser 의원(한·오스트리아 친선협회회장)을 부임 인사차 예방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동 의원은 4.28. 개최된 내각회의에서 경제성 장관이 제출한 주재국 정부의 대전 엑스포 참가예산 지원안을 승인하였다고 말함.
 - 동 의원은 또한 자신이 1987~89년 각료 재직 시 비엔나, 부다페스트 등 공동박람회 계획추진을 관장한 경험이 있어, 한국의 대전 엑스포에 큰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내년 오스트리아 의원단을 이끌고 직접 대전 엑스포 참관 차 방한할 생각이라고 말함.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구주지역). 전8권 (V.4 중구 II)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2 / 11 / 1-245

1. 슬로바키아

- 주체코대사는 1992.12.9. 슬로바키아공화국은 12.8. 각의에서 대전 엑스포에 슬로바키아 단독관으로 참가하기로 공식 결정하였다고 보고함.
- 슬로바키아공화국은 주재국 루치니자 공연단이 박람회의 문화행사에 참가할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바, 박람회의 단독초청 또는 박람회 공연과 상업공연을 병행한 초청 가능성을 검토하여 위 공연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건의함.

2. 체코

- 주체코대사는 1992.12.31. 체코공화국은 12.30. 각의에서 대전 엑스포에 체코공화국 단독관으로 참가하기로 공식 결정하였다고 보고함.
- 12.8. 슬로바키아공화국이 단독관 참여를 결정한데 이어 체코공화국도 역시 단독관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연방분리에 따라 주재국은 2개 공화국의 별개의 독립관으로 참가하게 될 것이므로 전시관 배정 시 배려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3. 폴란드

- 주폴란드대사는 1992.8.24. 폴란드 정부가 대전 엑스포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함.
- 폴란드 외무성 관계관은 주재국 예산형편 상 참가결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과 스쿠비세프스키 외상의 적극적 추진 및 대한 경제협력 관계를 중요시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함.

1949

대한민국 외교부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구주지역). 전8권 (V.5 발트3국)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2 / 12 / 1-92

1950

1. 발트 3국 출장(1992.7.31.~8.10.)

- 출장자: 외무부 서구2과 김성진 사무관(대전 엑스포 참가 유치교섭단 수행)
- 종합 평가
 - 출장 시 발트 3국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상 기본적으로 서구국가로 인식되었으며, 금후 4~5년 이내 정치 민주화 및 경제개혁이 완만히 이루어질 경우, 서방권의 일원으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이들 3국은 한국과의 우호 협력관계 증진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한국으로서도 대CIS (독립국가연합) 지역 및 동구지역으로의 상품수출 중개기지로서 발트지역의 지리적 이점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후 이들 국가와의 인사교류 및 경험증진 방안을 적극 수립,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2. 에스토니아,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

- 주핀란드대사는 1992.8.26. Priit Pallum 에스토니아 외무부 통상국 참사관이 8.26. 에스토니아 정부가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을 알려왔다고 보고함.
- 동인에 의하면 에스토니아 정부는 상기 결정에 따라 대전 엑스포 참가준비를 위한 국내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조만간 문서로 참가결정 사실을 동 대사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함.

3. 라트비아,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

- 주스웨덴대사는 1992.10.21. 라트비아 정부가 대전 엑스포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대외무역장관을 동 박람회 참가를 위한 정부대표로 임명하였음을 알려왔다고 보고함.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구주지역). 전8권 (V.6 러시아)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2 / 13 / 1-159

1. 소련의 세계박람회 참가 동향

- 외무부는 1991.7.1. 주소련대사관에 관련 동향 통보
 - 소련은 지난 한·소련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회담에서 원칙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6월 초 파리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시 오명 조직위원장이 말케비치 소련 상의회장 및 구디랴 소련 엑스포센터 부소장과 협의하고, 8~9월경 조직위 측이 소련을 방문, 소련 참가 문제를 확정하기로 합의
 - 아울러 조직위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참가의사 공식 통보국 3개국(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불가리아)을 포함 현재 25개국 이상이 참가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11개 국제기구 참가가 예상되고 있어, 60개 국가 및 국제기구 유치 목표달성은 낙관적이라 함.

2. 소련 측 상황

- 주소련대사는 1991.10.23. 손성한 주소련대사관 서기관이 러시아 엑스포센터의 Gudryia 부소장과 접촉, 협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참가 여부는 각 공화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 측이 연방정부에 송부한 초청장과는 별도로 개별공화국에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대전 엑스포 참가에 관심을 보이는 공화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외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발트 3국임.
 - 참가 형태 및 조건(전시장 분배 등)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우선 상기 개별공화국에 초청장을 보낸 후 참석 희망 공화국과 협의해 나가면 될 것으로 봄.
 -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업 활동은 각 공화국 상의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소요되는 경비도 공화국이 자체 부담하는 방향이 될 것임.

3. 러시아,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

- 주러시아대사는 1992.11.3. 러시아 외무성이 러시아의 대전 엑스포 참가를 문서로 공식통보해 왔다고 보고함.

1951

대한민국 외교부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구주지역). 전8권 (V.7 CIS I, 1991-92)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2 / 14 / 1-93

1. 우즈베키스탄,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

- 주러시아대사는 1992.5.5. 주모스크바 우즈베키스탄 전권대표 면담 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전 엑스포에 참가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으며, 내주 중 공식통보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2. 대전 엑스포 참가 공식통보에 대한 관리지침

- 주러시아대사는 1992.8.7. CIS(독립국가연합) 5개국(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대전 엑스포 참가를 통보해왔다고 하면서, 이들 참가 통보국에 대해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감사서한을 발송해 주기를 건의하며, 아울러 국가별 전시관 지정, 참가조건, 구체 협의방법, 일정 등을 포함한 참가 통보국 관리지침을 통보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3. 대전 엑스포 참가 공식통보에 대한 관리지침 통보

- 외무부는 1992.8.12. CIS 5개 참가 통보국에 대해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 명의의 감사서한을 발송하고자 각국 서한 대상자 명단(영문직책 및 성명)을 송부하여 줄 것을 주러시아대사관에 요청함.
 - 또한 상기 참가 통보국 관리지침 문익와 관련, 대전 엑스포 조직위의 러시아 및 기타 CIS 국가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송부
 - 아울러 5개 참가 통보국과의 참가조건 협의 시 기송부한 바 있는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개도국 참가지원 계획을 참고하도록 안내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구주지역). 전8권 (V.8 CIS II, 1993)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2 / 15 / 1-172

1. 대전 엑스포 관련 모스크바 회의

- 주러시아대사는 1993.2.1. 대전 엑스포 조직위가 구소련 구성국 중 대전 엑스포 참가국 11개국의 엑스포 전문가를 모스크바로 초청하여 대전 엑스포 관련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를 외무부에 건의함.
 - 일시: 1993.2월말~3월초
 - 장소: 대사관 회의실 또는 적당한 장소 임차
 - 참석범위: 11개국 Commissioners General 및 전시전문가(참석이 필요한 전문 분야는 조직위 측에서 적시요망)
 - 회의진행: 전체회의와 참가국과의 별도 개별회의
 - 내용: 준비 현황 설명, 세부지원 방안, 전시장 배정, 전시방법, 수송방법, 스폰서 지원 등 구체적인 참가조건과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
 - 비용부담: 여비 및 숙박비 참가국 부담, 회의진행 경비 한국 측 부담
- 주러대사관은 러시아연방 등 11개국은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직면한 예산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러시아연방 제외 10개국은 국제박람회 참가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사전 지도와 조직위 측의 구체적 지원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지지 않고서는 이들 국가의 성공적인 참가가 보장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첨언함.

2. 우크라이나의 대전 엑스포 참가 관련 의견 회신

- 과학기술처는 1993.4.10. 우크라이나가 대전 엑스포에 참가하기 위해 기획하고 있는 전시내용은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주제로 한 것으로, 사고의 전말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향후 한국의 원자력사업 추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전시내용의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외무부장관 및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에게 요청함.
 - 국내 원자력사업 추진여건 및 국민정서 측면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판단
 - 동 사고 내용과 영향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이 세계과학단체 및 원자력기관들에 의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므로 굳이 대전 엑스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국제기구). 전5권 (V.1 유엔 I, 1991-92.4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2 / 16 / 1-202

1. 추진 경위

- 1991.3월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유엔의 대전 엑스포 참가 초청장 발송
- 1991.8월 유엔사무총장은 원칙적인 참가 입장 표명
- 1991.11월 유엔 공보국장이 방한하여 참가 세부사항 협의
- 1991.12월 유엔 측은 대전 엑스포 참가 소요예산 및 참가조건 제시
- 1992.3월 유엔 공보국장은 제1차 대전 엑스포 정부대표자 회의 참가

1954

2. 유엔 측 추진계획

- 1992.3~4월 산하기구 전시계획 의견 수렴
- 4월 전시계획 확정
- 5월 전시물 제작 준비 개시
- 1993.1월 유엔 측 기술담당관의 국내 체류 시작 및 전시물 제작
- 3월 유엔관 완공
- 5월 유엔관 내부시설 및 세부준비 실시

3. 유엔의 대전 엑스포 참가 관련 합의사항

- MOU
 - 유엔의 '국제박람회 참가에 대한 지침서'에 의거, 소요경비는 주최 측 부담
 - 전체 소요경비 중 일부를 전도하여 신탁기금을 조성, 운영경비로 충당
 - 박람회 종료 후 사후 정산(소요예산 추정: 약 196만 달러)
- 교환각서
 - 특권 및 면제 협약 적용
 - 판매된 전시물품에 대한 조세 면제
 - 입국비자 수수료 면제 및 신속한 비자발급 협조
 - 분쟁 발생시 ICJ(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중재인 선임권 부여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국제기구). 전5권 (V.2 유엔 II, 1992.5-93.5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3 / 1 / 1-153

1. 진전사항

- 1992.8월 유엔의 대전 엑스포 참가 MOU 서명
 - 유엔 측에 신탁기금 63만 6천 달러 정도: 전시계획, 인건비, 여비 등
 - 전시품 제작, 장치비, 홍보, 운영비, 보험, 운송비 등은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직접 지불
- 9월 유엔 측 조정관 및 기술담당관 임명
- 1993.3월 유엔 측 전시 기본계획 제출
 - 유엔 Special Day 개최 신청: 1993.10.24.
- 4월 유엔 측과 박람회 조직위원회 간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관련 협의
- 5.1. 유엔 대표 임명 및 조정관 교체
- 5.14. 유엔 측 전시 실시설계 최종안 제출

2. 유엔 참가 개요

- 참가 형태: 1993.4.14. 유엔 및 산하기구, 전문기구 등 21개 기구가 시스템 형태로 합동 참가
- 유엔 전시관: 평화 우정관 내 460㎡(전시실, 영상실, 사무실 등)
- 전시계획
 - 주제: 개발과 환경
 - 내용: 유엔기구 구조, 1990년대 유엔 개발전략, 환경 및 해양, 유엔우표 역사, 유엔의 얼굴, 유엔 회원국 국기, 유엔 선물코너 및 우체국

3. 향후 조치사항

- 실시설계 및 견적 조정·합의
- 장치, 전시물 임차업체 선정
- 장치물, 전시물 제작·임차
- 선적 및 발송(항공)
- 전시장치 및 전시물 설치
- 시운전

1955

대한민국 국제박람회 유치전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국제기구). 전5권 (V.3 유엔 III, 1993.6-8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3 / 2 / 1-217

1956

1. 유엔의 대전 엑스포 참가

- 진전사항
 - 1993.6월 한국 정부와 유엔 간 참가조건에 관한 각서교환
 - 6.22. 엑스포 조직위원장과 유엔대표는 유엔의 참가계약서 체결
- 참고사항
 - 유엔 및 산하기관 등 총 28개 국제기구 참가
 - 유엔 측은 E. Wyzner 전 유엔 공보담당 사무차장을 유엔대표로 임명
 - 유엔은 544㎡ 면적의 전시관을 사용하고, 8.5. 개관식 및 10.24. 유엔의 날 행사 개최
 -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신탁기금 63만 달러를 전도하고, 전시장치 제작비 2백만 달러를 지원

2. 유엔 반입물품 면세 처리

- 한국 정부 입장
 - 박람회 기간 중 판매되는 물건에 한해 직접세 및 관세는 면세
 - 간접세는 구매자인 한국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면세 불가
- 유엔 측 입장
 - 모든 세금에 대해 면세를 요구하며, 특히 간접세의 경우 유엔은 세금 징수 역할 수행 불가
- 결과
 - 기념품 판매 수익금 전액이 유엔 활동 경비로 사용됨을 감안, 모든 물품에 대해 면세하기로 결정

3. 신탁기금 정산

-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유엔의 참가경비 전액을 부담
 - 1992.9월 사전전도경비로 636,314달러를 신탁기금으로 유엔 측에 송금
- 유엔은 정산조치 후 기금 잔액에 대해 미조치
 - 유엔 측은 보고한 기금 잔액 43,738달러의 조직위원회 측 송금 지연
 - 엑스포 조직위원회 청산단의 유엔 방문 시, 청산잔액 52,458달러를 확인하고 5만 달러 수표 수령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국제기구). 전5권 (V.4 유엔 전문·산하기구 참가)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3 / 3 / 1-62

1. 유엔 전문·산하기구의 입장

- 참가에 대한 초기 반응
 - 긍정적: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WHO(세계보건기구), WMO(세계기상기구), GATT(관세 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
 - 부정적: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LO(국제노동기구),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IOC(국제 올림픽위원회) 등
- 진전사항
 - 유엔본부는 유엔 차원에서 시스템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비유엔 기구는 별도 검토)
 - 1991.7월 한국 정부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유엔 시스템 참가를 초청하는 공한을 유엔 측에 전달
- 1993.2월 현황
 - 참가 확정 기구: 유엔, UNDP(유엔개발계획), UNFPA(유엔인구기금), IAEA(국제원자력기구), UNEP(유엔환경계획), 유네스코, 유니세프, WHO, ITU, World Bank, FAO, ICAO, UNU, WFPM
 - 참가 예정 기구: IMO(국제해사기구), UPU(만국우편연합), ILO, IFAD, UNDCP

2. 국제기구별 동향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 1992.1월 엑스포 참가를 통보하고, 유엔 산하기구 자격임을 지적
- IAEA
 - 1992.10월 IAEA 사무국은 엑스포 참가 의사 통보
- 유네스코
 - 1992.10월 엑스포 참가 의사와 함께 한국 관계당국과 협의 예정임을 통보
- ITU
 - ITU 사무총장은 1993.9월 방한하여 엑스포 관람 및 인사면담 주선을 요청

1957

대한민국 국제관계사 연구회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국제기구). 전5권 (V.5 기타 국제기구)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3 / 4 / 1-173

1958

1. ADB(아시아개발은행)

- 협의 경위
 - 1991.3월 대전 엑스포 참가 초청장 송부
 - 1991.10~92.2월 중 문의 및 답변: 조직위원회 측의 지원 확대 요청
 - 1992.3~10월 ADB는 정부대표자 회의 2차례 참석
 - 1992.10.23. 엑스포 조직위 및 ADB 양자협의 개최: 지원 범위, 전시관 면적 및 위치 등
 - 1993.1.5. ADB는 대전 엑스포 불참 통보
- 진전사항
 - 1993.6.8. ADB는 엑스포 조직위 앞으로 참가 및 ADB 대표 임명 통보
 - ADB 전시관은 '평화우정관' 내 총 72㎡를 AfDB(아프리카개발은행)와 절반씩 나누어 사용

2. AfDB

- 1991.3.28. AfDB는 대전 엑스포 참가 초청에 대하여 긍정 회신
 - 엑스포 참가신청서는 1993.1.19. 발송
- 1992.5월 및 1993.4월 엑스포 조직위 교섭단이 AfDB 사무국을 방문하여 참가조건 협의
 - 전시관 면적 35㎡, AfDB의 날 1993.10.12.

3. 여타 국제기구

- 국제기구별 반응
 - 참가 통보: IOC(세계올림픽위원회)
 - 불참 통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DB(중남미개발은행),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 결정 미정: LRCS(적십자연맹), ISO(국제표준화기구), IUNC(국제자연보존연맹),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BE(국제교육국), WAITRO(세계산업기술연구기관연합회) 등
- 반응 평가
 - 불참 결정 국제기구 대부분은 엑스포 조직위의 지원을 과다 기대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1 미국 I, 1991-92.1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3 / 5 / 1-195

1. 교섭 활동

- 개별 접촉
 - 1991.4.5. 상공부장관, 미 상무장관 면담
 - 4.22. 상공부 제1차관보, USIA(미공보처) 기획실장 접촉
 - 6.1. 엑스포 조직위 국제협력부장,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 및 USIA 전시국장 초청 오찬
 - 7.29. 주미국대사, USIA 부처장 비공식 접촉
 - 12.5. 알래스카 주정부 경제통상장관, 주앵커리지총영사 방문
- 그룹 접촉
 - 1991.9.2.~4. KUSEC(한·미 경제협의회) 개최
 - 1991.10.10.~12. 한·미 동남부 7개주 경험위 총회(경주) 개최(200여 명 참석)
 - 11월 엑스포 조직위원장 명의 서한을 미국 주지사들 앞으로 각각 발송
- 엑스포 조직위 활동
 - 1991.5.31. 조직위 국제국장,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행사에서 강연
 - 6.10. 조직위원장, Korea Society 주최 뉴욕 오찬에서 강연
 - 9.30.~10.1. 이경훈 정부 부대표, USIA 방문
- 유치사절단 파견(10개주 및 3개 도시)
 - 태평양 연안(1992.1.19.~2.4.): 워싱턴, 캘리포니아, 하와이
 - 중부지역(1992.1.21.~2.5.): 뉴욕,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알래스카
 - 남부지역(1992.1.25.~2.10.): 텍사스, 조지아, 플로리다
 - 3개 도시(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 기타
 - 11.18. 아칸소 주지사 관저에서 KUSEC 사절단 초청 조찬 개최

2. 참고사항

- 미국은 주정부 및 기업 중심으로 엑스포 참가 전망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2 미국 II, 1992.2-4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3 / 6 / 1-238

1. 미국 각 주의 검토 동향

- 참가 결정: 알래스카, 미시건
- 참가 검토: 하와이, 일리노이, 미네소타, 시카고, 앨라배마, 미주리, 조지아, 샌프란시스코,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 불참 확실: 매사추세츠, 워싱턴, 미시시피,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칸소, 루이지애나, 뉴욕

2. 교섭 활동

1960

- 주시카고총영사관: 1992.3.2. AMOCO 그룹 회장 면담/3.13.~14. 네브래스카 주지사 대리 면담/3.24. Soyland Powercooperative사 개발담당 이사 면담/3.23.~24. 미네소타 주지사 면담/4.6. 일리노이 주정부 상무장관 면담/4.15. 모토로라사 회장 면담/4.16.~17.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주정부 통상장관 면담
- 주미국대사관: 3.13., 4.9. 참사관, USIA(미공보처) 전시국장 면담/3.18. 주미국대사, 버지니아 주지사 주최 만찬 참석/4.24. 공보공사, USIA 부처장 면담/4.9. 경제공사, 상무부 해외교역청장을 오찬에 초청
- 미국 주재 공관: 4.10. 워싱턴 주정부 경제국 담당관, 주시애틀총영사관 방문/4.28. 주애틀랜트 총영사, 앨라배마 주정부 국무장관 및 개발청 차장 면담

3. 참가방안 협의

- 알래스카 주정부, 엑스포 조직위 배정 전시장의 확대 요청
 - 1992.4.3. 주앵커리지총영사 주최 오찬에 알래스카 관광 진흥기관 대표 및 주정부 담당 국장 참석

4. 참고사항

- 엑스포 조직위는 미국 주별 유력 한국진출 기업 및 현지 기업 활용방안 본격 검토
- 1992.7월까지 국별 전시관 배정 등을 결정해야 하므로 미국의 참가 여부 조기 확정 필요
 - 연방정부는 주정부 의사를 취합하여 국가의 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운용사항을 조율
- 1992.2월 주한 미상공회의소 산하 대전 엑스포 지원 분과위 구성
- 엑스포 홍보
 - 한국: (주)제일기획
 - 미국: Burson&Marteller사
- 주한 USIS 원장은 유럽 전시물의 한국 이송 가능성 및 운송업체인 암웨이의 협조 의사 제시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3 미국 III, 1992.5-9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3 / 7 / 1-175

1. 미국 각 주의 참가 검토 동향

- 참가 결정: 알래스카
- 참가 검토: 미네소타, 시카고, 앨라배마, 미주리, 조지아, 샌프란시스코, 오클라호마
- 불참 확실: 매사추세츠, 워싱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시피, 하와이, 텍사스, 아칸소, 루이지애나, 뉴욕, 일리노이, 미시간

2. 교섭 활동

- 주시카고총영사관: 1992.5.1. 일리노이주 상무장관 오찬 초청/5.29.~31. 오하이오주 경제인 초청 간담회, 주요인사 초청 리셉션 등 개최/8.6. 아이오와 주지사 면담/11.12.~15. 미네소타 주지사 방한
- 주미국대사관: 5.1. 경제참사관, 버지니아 주정부 경제개발부 차관 및 수출개발국장 면담/5.7.~9. 경제공사, 시애틀 TDA 상근부위원장 및 워싱턴주 경제개발장관과 시애틀 시청 국제과장 면담, 시애틀 시의원, 워싱턴 주의원 재계 인사 등 초청 만찬 개최, 보잉사 방문/6.22. 주미국대사, 워싱턴주 총무장관 및 보잉사 국제부사장 오찬 초청
- 기타 공관: 4.30. 주시애틀총영사, 워싱턴 주지사 관저 행사 참석/5.18. 몬태나주 담당 국장, 엑스포 조직위 방문/5.20. 주휴스턴총영사, 오클라호마 주지사 면담/6.1. 주뉴욕영사, AT&T 국제사업개발부장 및 극동담당 부장 면담/6.16. 주뉴욕총영사, 코네티컷 주지사 면담/7.21.~23. 주뉴욕총영사,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 및 찰스톤 시장 면담/9.26.~10.3. 오클라호마주 부지사 방한

3. 참고사항

- 미국의 각 주정부는 엑스포 참가 예산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
- 엑스포 조직위는 주한 미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대사관 등을 수시로 접촉하여 미국의 참가 문제 협의
 - 상공부장관의 1992.5월 미국 방문 포함 관계부처도 각자 참가유치 노력
- 주미국대사관 및 미국 주재 총영사관은 엑스포 홍보 및 설명 자료를 수시 배포

1961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4 미국 IV, 1992.10월-1993)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3 / 8 / 1-153

1962

1. 교섭 활동

- 주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은 1992.10.5. USIA(미공보처) 전시국장 및 엑스포 사업 매니저, 12.16. USIA 처장보, 1993.2.8. USIA 엑스포 담당부장 면담/2.16. 미국 정부의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 접수
- 기타 공관: 1992.9.28. 주시애틀총영사, 시애틀 시장 면담/12.8. 주앵커리지총영사,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찬에, 주정부 무역사무소장을 오찬에 초청/1993.1.22. 알래스카 주정부, 암웨이사와 공동으로 참가 결정/3.3. 알래스카 주정부, 엑스포 불참 통보
 - 미국 엑스포 조정자인 암웨이는 알래스카 주정부의 요청사항을 고려하지 않아 불만 초래
- 엑스포 조직위: 1992.12.1. 엑스포 조직위원장, 워싱턴을 방문하여 암웨이 측 주선 오찬 참석/12.8. 방한한 암웨이 측 인사, 엑스포 조직위원장 면담/12.14. 엑스포 조직위원장, 주한 미국대사 면담

2. 참가방안 협의

- 1993.4.28. 주미국대사관 경제담당 서기관, USIA 엑스포 매니저를 면담하여 참가방안 협의

3. 참고사항

- 1993.2.22. 주한 미국대사관, 미국의 엑스포 참가를 공식 통보
 - 2.23. 조정자 역할을 하는 암웨이의 엑스포 담당 사장 방한
 - 3.19. 미국 엑스포 대표로 재계 인사 T. McAuliffe를 임명
 - 알래스카의 참가 철회로 인해 미국 내 참가하기로 한 주는 전무
- 7.29. L.A. 한인상공회의소는 '대전 엑스포 홍보의 밤' 행사 개최
- 9.5.~8. 마이클 잭슨이 한국을 방문하여 인도적 활동 전개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5 캐나다 및 멕시코)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3 / 9 / 1-128

1. 캐나다

- 검토 동향
 - 기본적으로는 참가에 대해 긍정적이며, 긴축예산 기조를 감안하여 추진
 - 주정부를 중심으로 업계 측과 협의 중이며, 컨설팅회사가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
 - 캐나다 정부,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 발표(1992.6.19.)
 - 정부대표로 C. Guilbault 퀘벡 주수상 상임고문 임명
- 교섭 활동
 - 주재국 관계관 등 접촉
- 참가 협의
 - 1992.8.11. 캐나다 엑스포 담당 부처는 선호하는 위치 배정을 요청
 - 1993.3.26. 캐나다 통신부는 'Canada Day'로 9.11. 지정 요청

2. 멕시코

- 검토 동향
 - 멕시코는 양국 간 무역불균형 문제 등으로 부정적 경향
 - 검토 과정에서는 긍정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멕시코가 내세울만한 특별한 분야가 없고 기업도 주저
- 교섭 활동
 - 1991.4.12. 제1차 한·멕시코 공동위 개최
 - 1991.5월 및 1992.5월 유치 교섭단 파견
 - 1992.3.16. 멕시코 상공부차관, 유득환 상공부차관 면담
 - 주한 멕시코대사관에서 대통령실, 외무부, 상공부 고위인사 수시 면담

1963

대한민국 외교부 역사자료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6 카리브)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3 / 10 / 1-281

1. 도미니카공화국

- 1991.7.25. 주도미니카대사 및 엑스포 조직위 사절단, 도미니카 무역진흥공사 사장 면담
- 1993.1.18. 대전 엑스포 참가 공식 발표

2. 바하마

- 1992.6.9. 워싱턴 주재 바하마대사관, 주미국대사관에 대전 엑스포 참가 방침 통보
- 1993.4.13. 동 대사관, 참가 철회 통보

1964

3. 아이티

- 1991.7.23. 주아이티대사대리, 아이티 외무부 경제국장 면담 시 대전 엑스포 참가 긍정 검토 요청

4. 자메이카

- 1992.4.23. 주자메이카대사관, 대전 엑스포 소개자료를 자메이카 외무부에 전달
- 8.5. 주자메이카대사관, 자메이카의 참가 통보 접수

5. TNT(트리니다드토바고)

- 1991.11.25. 엑스포 조직위 사무국장, TNT 외무장관대리 면담
- 1993.2.16. 대전 엑스포 참가 공식 통보

6. 기타 국가 교섭 동향

- 1992.7.25.~8.4. 유치사절단의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그레나다, 앤티가바부다 등 방문
- 1992.11.27. OECS(동카리브국가기구) 사무국, 회원국들의 대전 엑스포 공동참가 통보
 - OECS회원국: 앤티가바부다,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몬트세랫,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등 7개국
 - 1993.3.25. OECS 사무국, 엑스포 불참을 재통보해 옴에 따라 유치사절단은 4.17.~27. 그레나다, 도미니카연방, 앤티가바부다, 세인트키츠네비스/6.21.~24. 바베이도스/6.24.~7.2.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몬트세랫 등을 방문하여 불참 결정 반복 유도
- 1992.12.17. 바베이도스 정부, 참가 결정 통보
 - 1993.5.4. 바베이도스 정부, 불참 재통보, 6.7. 불참 철회 통보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7 중미)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3 / 11 / 1-253

1. 교섭 활동

- 다수국가들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대전 엑스포 조직위의 지원 없이는 참가가 불가한 상황
 - 관할 공관은 조직위의 지원 범위를 설명하면서 참가를 독려

2. 국별 동향

- 과테말라
 - 1992.5.27. 과테말라 대통령 비서실장, 주과테말라대사에게 대전 엑스포 참가를 구두 통보하고 8.7. 참가신청서 제출
 - 6월 유치사절단 방문, 1993.3월 실무 협의팀 방문
 - 1993.3.17. 전시관 축소 및 적대적인 벨리즈와 공동사용 등 이유로 불참 결정 통보
- 니카라과
 - 1992.8.13. 니카라과 외무부, 주멕시코대사관 앞 공한으로 대전 엑스포 참가 통보
 - 1993.6~7월 주코스타리카대사관을 통해 각종 서류를 엑스포 조직위로 송부
- 벨리즈
 - 1992.8.7. 멕시코 주재 벨리즈대사관은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을 현지 공관에 통보, 11월 참가신청서 송부
- 엘살바도르
 - 1992.9.18. 주엘살바도르대사관 앞 공한으로 대전 엑스포 불참 통보
- 온두라스
 - 1993.1.6. 주한 온두라스대사는 외무부 미주국 심의관 면담 시 대전 엑스포 불참 통보
- 코스타리카
 - 1991.10.13. 코스타리카 대외무역장관, 주코스타리카대사 앞 서한으로 대전 엑스포 참가 통보
 - 1992.6.17. 코스타리카 정부, 대전 엑스포 참가신청서를 현지 공관 앞으로 송부
 - 1993.1.20. 코스타리카 정부대표, 재원 조달 문제로 불참 통보
- 파나마
 - 1992.5월 파나마 각료회의, 대전 엑스포 참가를 최종결정, 8.7. 파나마 외무차관, 주파나마대사 앞 서한으로 엑스포 조건부 참가 통보

1965

대한민국 외교부 역사자료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8 남미 I)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3 / 12 / 1-154

1. 교섭 활동

- 다수국가들은 어려운 경제 사정하에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 지연
 - 관할 공관은 조직위의 지원 범위를 설명하면서 참가를 독려
- 1992.6.4.~22. 엑스포 조직위,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과테말라 등에 유치사절단 파견
 - 11월 유치사절단,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방문

2. 국별 동향

1966

- 베네수엘라
 - 관심은 표명하면서 대전 엑스포 참가에 대한 확답은 지연
- 볼리비아
 - 1992.7.28. 볼리비아 상공부차관, 주볼리비아대사 대리에게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 통보
 - 8.13. 볼리비아 수출진흥청 명의 엑스포 참가신청서를 주볼리비아대사관에 제출
- 브라질
 - 1993.1.12. 브라질 외무부 담당과장, 현지 공관 참사관에게 구두로 대전 엑스포 참가 통보
 - 1.14. 주한 브라질대사관, 외무부 앞 공한으로 참가 공식 통보
- 아르헨티나
 - 1992.4월 외무부 미주국장, 5월 조직위 사무차장, 6월 국무총리, 11월 전 상공부장관 등 한국 측 고위인사 다수가 아르헨티나 방문
 - 1992.7.22. 아르헨티나 외무부 통상국장이 대전 엑스포 참가 불가를 구두 통보한 이후 진전사항 별무
- 에콰도르
 - 1992.8.6. 주에콰도르대사관, 에콰도르 상공부로부터 대전 엑스포 참가 공한 및 신청서 접수
 - 이후 정부대표 임명, 참가계획서 송부, 전시계획 상세 협의 등 진전
- 우루과이
 - 1992.4.16. 대전 엑스포 조직위, 주한 공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진전사항 별무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미주지역). 전9권 (V.9 남미 II)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3 / 13 / 1-155

1. 지역차원 교섭 활동

- 정부의 미온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지 공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치 노력이 성과를 거양
 - 배정된 전시 면적의 확대로 불만 해소
- 유치사절단, 콜롬비아(1992.6월), 칠레(11월) 방문

2. 국별 동향

- 칠레
 - 1992.2.5. 칠레 정부, 현지 공관 앞 공한을 통해 대전 엑스포 불참 결정을 통보
 - 1993.2.2. 칠레 정부, 업계 희망에 따라 정부 명의 참가를 공한으로 현지 공관에 통보
 - 지연 통보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칠레 기업들의 열정을 감안하여 전시 면적 확대 배정
- 콜롬비아
 - 1992.10.13. 콜롬비아 대외무역은행, 현지 대사 앞 서한으로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을 통보
 - 1993.4월 콜롬비아 경제사절단,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4개국 방문
- 파라과이
 - 주파라과이대사, 파라과이의 정권 이양, 업계의 관심 미흡 및 경비부담 등으로 파라과이의 대전 엑스포 불참을 전망
- 페루
 - 1991.8.2. 페루 정부, 주페루대사관에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을 구두 통보
 - 1992.8.5. 참가신청서 송부

1967

대한민국 지역발전 기여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주지역). 전6권 (V.1 동북아 I)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3 / 14 / 1-143

1. 몽골

-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2.7월)
- 몽골 문화재 전시 및 문화예술단 파견 관련 전시면적 및 행사요원 지원 협의

2. 일본

-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1.7월 이전)
- 일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일본지역 특별 공관장회의 개최
 - 1993.2월 주일본대사관, 일본지역 총영사 등
- 오명 엑스포 조직위원장, 한·일 친선협회 회장 등 방일 활동
- 대전 엑스포 개최식 일본인 참관단 방문 지원

3. 북한

- 외무부, 북한 초청을 위한 초청장 형식 및 전달방법 등 검토
 - 초청장 수신인, 초청자 명칭, 전달시기 및 방법
- 자료: 대전 세계박람회 북한유치 기본계획(1991년,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주지역). 전6권 (V.3 동남아 I)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4 / 2 / 1-203

1. 말레이시아

- 대전 엑스포 불참 결정(1992.3월)
 - 동 결정 철회를 위해 범정부적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하여, 말레이시아는 동년 6월 대전 엑스포 불참 결정을 철회함.

2. 베트남

-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2.12월)에 따른 후속조치 협의

3. 브루나이

-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3.2월)에 따른 후속조치 협의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주지역). 전6권 (V.4 동남아 II)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4 / 3 / 1-158

1. 싱가포르

- 대전 엑스포 불참 통보(1992.6월)에 따른 참가종용 교섭 시행

2. 인도네시아

- 대전 엑스포 참가에 따른 전시관 모듈 추가배정, 경험 세미나 개최, 예술공연단 등 지원문제 협의

3. 캄보디아

- 캄보디아의 대전 엑스포 참가의사 통보(1992.8월)
 - 당초 대전 엑스포 측은 국제관계를 고려, 캄보디아는 초청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태국 거주 교민의 프놈펜 방문 시 박람회 참가의사 여부를 타진한 바 있음.

4. 필리핀

- 대전 엑스포 불참 통보(1992.9월), 민간단체의 참가(12월 신청) 문제 검토
 - 대전 박람회는 정부자격의 참가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민간단체 등 비정부기관의 공식 참가는 불가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주지역). 전6권 (V.5 서남아)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4 / 4 / 1-208

1. 네팔

-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2.8월) 및 전시관 설치에 따른 지원 범위 협의

2. 미얀마

-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2.8월) 및 전시관 설치 관련 협의

3. 방글라데시

-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3.2월) 및 공동전시관 설치에 따른 지원 범위 협의

4. 인도, 스리랑카 및 겐임국(몰디브, 부탄 등)

- 인도: 대전 엑스포 참가 전시관 설치 지원 문제 협의
- 스리랑카: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3.7월)에 따른 전시관 설치 협의
- 부탄, 몰디브: 참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5. 파키스탄

-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2.7월) 및 후속조치(운영자 사증발급 등) 협의
- 겐임국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교섭 어려움 등

1971

대한민국-아주지역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주지역). 전6권 (V.6 대양주)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4 / 5 / 1-209

1. 뉴질랜드, 통가

- 뉴질랜드: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2.12월)
 - 마오리 예술단 파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메달 증정행사 등
- 통가: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3.1월)
 - 문화공연단(12~15명) 파견경비 지원문제 협의

2. 파푸아뉴기니 및 겐임국

- 파푸아뉴기니: 대전 엑스포 불참 결정에 따른 남태평양 공동관 운영
 - 피지,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연방 등
- 솔로몬제도: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2.8월)
- 바누아투: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3.3월)

3. 피지 및 겐임국

- 피지: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2.5월)
- 마셜제도 및 미크로네시아연방: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2.6월)
- 투발루, 키리바시: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3.6월)
- 남태평양 Forum: 대전 엑스포 참가 협의(불참 결정)

4. 호주

-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1991.11월)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프리카지역). 전4권 (V.1 북서아프리카 I)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엑스포

MF번호 2023-124 / 6 / 1-210

1. 리비아

- 주리비아대사관 보고(1991.7.29.)
 - 당관이 그간 수차에 걸쳐 리비아 관계 당국과 접촉한바, 관계자들은 1993년까지 아직 시일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박람회 참가 여부 회답을 미루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리비아는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전시품도 거의 없고, 국제박람회에 참가한 경험도 없어서 대전 박람회 참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2. 나이지리아

- 나이지리아 외무성은 1991.9.23.자 공한으로 대전 박람회 Subtheme 2개 분야에 모두 참가 하겠다는 내용을 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 통보해 옴.

3. 가나

- Kewsi Ahwoi 가나 수출진흥공사 사장은 1992.4.27. 주가나대사를 면담, 가나는 대전 박람회의 원칙적인 참가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항공료 및 기타 경비 등 예산상 문제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바, 항공료 등 참가경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를 문의함.
 - 한국 측은 정부대표 1인에 대해 왕복항공권과 숙박료 지원이 가능함을 설명
- Akyea 가나 수출진흥공사 사장서리는 1993.4.14. 가나 National Day에 참석하는 가나 인사들의 명단 등 박람회 참가와 관련된 서한을 조직위원회 앞으로 송부함.

4. 가봉

- Posso 가봉 상공부장관 비서실장은 1993.6.24. 주가봉대사관 관계자 면담 시 대전 박람회 유치교섭단의 가봉 방문 시 검토 약속한 바 있는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문제 관련 진전사항에 대해 문의함.
 - 상기 관련 6.29. 관련 내용 전달
- 가봉 측은 8.11. 가봉이 대전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서한 사본을 주가봉 대사관에 송부함.

197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프리카지역). 전4권 (V.2 북서아프리카 II)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엑스포

MF번호 2023-124 / 7 / 1-161

1. 시에라리온

- 주시에라리온대사대리 보고(1991.7.22.)
 - 시에라리온 외무부 경제국장에게 따르면 주재국 정부는 예산 사정상 참가가 불가능하며, 민간 업체도 참가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으므로 주재국은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 희망

2. 세네갈

- Diop 세네갈 CICES(대외교역센터) 섭외국장은 1992.8.3. 세네갈 정부의 대전 박람회 참가 결정 사실을 일차 구두로 통보하고, 수일 내로 Ndiaye 세네갈 상공장관 명의의 공식문서를 발송할 예정임을 주세네갈대사관에 통보함.
- Ndiaye 상공장관은 8.7. 주세네갈대사 앞 공한을 통해 세네갈의 대전 박람회 참가를 공식화함.

3. 알제리

- 알제리 외무성은 1992.10.11.자 공한을 통해 대전 박람회에 원칙적으로 참가를 통보해 오면서, 제2차 정부대표자 회의에 주한 알제리대사관 직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통보함.
- 대전 박람회 조직위 실무단은 1993.3.17. 알제리 국영전시공사 사장 측과 협의를 가진바, 알제리 측은 조직위 측 안대로 중동 공동관에 참가하는 방안에 합의함.

4. 카메룬

- Patrice 카메룬 상공장관은 1993.7.26. 주카메룬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카메룬 정부의 재정난으로 신회계연도 이후 일체의 예산이 재무부로부터 영달되지 않고 있어, 엑스포 참가를 위한 전시품 구입 및 수송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함.
- Firman 카메룬 상공부 상역국장은 대전 박람회 참가차 8.5. 서울 도착 예정임.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프리카지역). 전4권 (V.3 남동아프리카 I)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엑스포

MF번호 2023-124 / 8 / 1-159

1. 나미비아

- 나미비아 정부는 1992.7.16.자 공한을 통해 대전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해옴.
- 나미비아 상공회의소는 동 회의소 발간 'BUSINESS'지 1992.7월호에 대전 박람회에 대한 상세내용을 게재하고, 많은 업체가 동 박람회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게재함.

2.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

- 에스와티니 외무부는 1992.7.24.자 공한으로 대전 박람회에 참가할 것임을 통보해 옴.

3. 보츠와나

- 보츠와나 정부는 1992.7.27.자 주나미비아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보츠와나가 대전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옴.

4. 남아공

- 주나미비아 남아공대표부는 1992.9.11. 주나미비아대사 앞 공한을 통해 남아공 정부가 대전 박람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옴.
- 주나미비아대사관은 남아공에 박람회 참가를 공한으로 정식 제의하고 수차례 참가를 권유한 바 있으나, 양국 간 수교 이전에는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자제하고자 하는 남아공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함.

5. 레소토

- 대전 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는 1993.4.13. 레소토를 방문하여 레소토 상공부 교역국장 등을 면담한바, 레소토 측의 참가 의사를 재확인함.
- 레소토 측은 4.20.까지 정부대표를 임명하고, 동 사실을 팩스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정식 통보를 약속

1975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정리함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아프리카지역). 전4권 (V.4 남동아프리카 II)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엑스포

MF번호 2023-124 / 9 / 1-224

1.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및 겐임국

-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의 1991.8.12.자 보고에 의하면 르완다 및 부룬디는 국내 사정 등으로 대전 박람회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콩고민주공화국 외무성은 1992.7.31. 대전 박람회의 참가를 공식 통보해 옴.

2. 잠비아

- 잠비아 측은 1991.11.26. 대전 박람회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오면서, 한국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잠비아 측 박람회에 참가하여 주기를 희망함.
- 잠비아 측은 1993.2월 대전 박람회 전시계획서를 주잠비아대사관에 송부함.

3. 케냐

- Magugu 케냐 상무장관은 1991.12.18. 나이로비에서 오명 대전 박람회 조직위원장 면담 시 케냐 정부는 커피, 차, 공산품 등 많은 교역 품목을 대전 박람회에 출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대전 박람회 참가 초청을 수락함.

4. 우간다

- 주우간다대사는 1992.7.10. 우간다 상무부로부터 대전 박람회 참가신청서를 접수함.

5. 짐바브웨

- 1993.6.18. 짐바브웨 담당 부처인 Zim Trade가 대전 박람회 불참 통보를 한 바 있으나, 유치교섭단의 짐바브웨 방문 중 관계 부처(외무부, 상공부, 관광부 등) 간 협의 후 대전 박람회 참가를 결정함.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중동지역). 전4권 (V.1 중동 I)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4 / 10 / 1-130

1. 레바논

- 외무부, 레바논의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2. 바레인

- 1990.10.28. 바레인 외무부, 불참 통보

3. 사우디

- 1991.7.27. 주사우디대사관, 사우디가 검토 중임을 보고
- 1992.6.27. 사우디 외무장관, 참가 의사 표명
- 7.11. 사우디 상무부차관, 대사관 상무관에게 불참 결정 통보
- 7.16.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 주한 사우디대사를 초치하여 참여 요청
- 11.15. 사우디 외무장관, 이상옥 외무부장관 앞 서한으로 사우디 참여 통보
- 1992.12.13.~17. 사우디 엑스포 실무협의단, 방한

4. 수단

- 1992.3월 수단 상공부, 참가 통보

1977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작성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중동지역). 전4권 (V.2 중동 II)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4 / 11 / 1-126

1. 아랍에미리트

- 1991.10.29. UAE 문화부 부국장, 단독 참가는 어려우나 GCC(걸프협력회의) 공동관 참여는 검토 중이라 언급
- 1992.6.7. UAE 정부, 참가 공한 송부
- 1993.3.7. UAE가 박람회장의 더 큰 모듈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1개 모듈 배정
- 3.30. UAE 정부, 사우디 규모의 모듈을 확보하지 못해 불참 통보

1978

2. 예멘

- 1992.7.25. 예멘 정부, 공한으로 참석 잠정 결정 통보
- 8.8. 주예멘대사관, 박람회 참석 시 지원내역 설명
- 9.12. 예멘 정부, 참가신청서 송부
- 1993.6.23. 예멘 정부, 불참 공한 송부

3. 오만

- 1992.11.1. 오만 정부, 참가 결정을 통보하면서 박람회장 내 2개 모듈 요청
- 12.29. 조직위 측, 오만에 2개 모듈 배정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중동지역). 전4권 (V.3 중동 III)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4 / 12 / 1-150

1. 이란

- 1991.7.27. 이란 정부, 정부 기관 협의 후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최종 결정 대기 중
- 1992.5.11. 이란 정부, 공한으로 참가 결정을 통보해오면서 개도국 지원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
- 1993.3.20. 조직위, 이란에 안내요원 2명 등 지원 결정

2. 요르단

- 1991.8월 주요르단대사관 명의로 초청 공한 발송 및 상공장관 면담 시 참가 협조 요청
- 1992.1.13. 요르단 상공장관은 원칙적으로 참가를 결정했다고 알려오면서, 참가 관련 모든 경비 지원요청
- 9월 대전 조직위, 지원방침 전달
 - 전시관은 1개 모듈 잠정 배정, 국외 수송 등 스폰서 지원사항 설명

3. 이라크

- 1992.1.15. 이라크 정부, 참가 통보

1979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외교부에서
외교부에서
외교부에서

93-1888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참가국(중동지역). 전4권 (V.4 중동 IV)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4 / 13 / 1-94

1. 카타르

- 1992.6.4. 카타르 정부, 국왕 지시로 참가 문제 검토 중
- 1993.6.9. 카타르 정부, 참가 준비 미비로 불참을 결정한바, 한국 측은 번복을 요청
- 6.16. 카타르 정부, 주카타르대사관에 최종 불참 통보

2. 이집트

- 1992.6.24. 이집트 정부, 참가신청서를 조직위에 송부

3. 쿠웨이트

- 1992.9월 쿠웨이트 정부, 참가 통보

4. 이스라엘

- 1992.12.29. 이스라엘 정부, 참가 통보
- 1993.1.21. 외무부, 조직위에 이스라엘 참가로 제기될 문제점 통보

1980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1 홍보 I: 협의회 구성·운영 및 명예홍보위원 위촉)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24 / 14 / 1-182

1. 홍보지원협의회 구성

- 외무부는 1992.9.24. 전 재외공관에 엑스포 홍보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지시
- 목적
 - 1993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하여 해외에서의 효율적인 박람회 홍보 및 지원체제 확립 목적
- 기능
 - 정부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의 해외홍보 및 지원업무를 각 재외공관별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정
 - 정부지원위원회와 산하 해외홍보대책협의회 등 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
 - 현지 자체행사 계획 및 수행 등
- 구성
 - 위원장: 재외공관장 혹은 필요시 공사급 공관원
 - 위원: 경제담당 참사관, 상무관 등 공관직원 및 무역관장,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장
 - 명예홍보위원: 재외국민(혹은 동포)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박람회조직위원장이 위촉하는 1~2인

2. 명예홍보위원 위촉

- 외무부는 1993.6.2. 주요 해외 공관에 대전 엑스포 명예홍보위원 추천 지시
- 목적
 -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해외관객(교민 포함)의 참여 분위기 조성
 - 대전 엑스포 명예홍보위원을 해외 주요지역별로 선정, 활용함으로써 해외홍보의 파급효과 기대
- 기본방향
 - 외국거주자(외국인 포함) 중 명망 있고 대전 엑스포의 해외 홍보에 적합한 인사 선정
 -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추진하되, 교표밀집지역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명예홍보위원 선정 기준, 명예홍보위원 선정 상황, 명예홍보위원 예우 및 활용 방안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2 홍보 II: 해외홍보실무협의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25 / 1 / 1-252

1982

1. 제4차 대전 엑스포 홍보대책 분과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993.6.8. 해외공보관 회의실
- 주재: 해외공보관장
- 토의내용
 - 미국 및 일본지역 대상 홍보강화
 - 엑스포 개막 직전 세계 유력매체 엑스포 특집 지속 추진
 - 엑스포 참여 유도 및 관광객 유치 홍보 전개
 - 각국 주요도시 순회 엑스포 설명회 등 행사 개최

2. 제5차 해외홍보실무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993.7.15.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실
- 주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3. 제6차 해외홍보실무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993.8.3. 공보처 해외공보관 회의실
- 주재: 해외공보관장

4. 제7차 해외홍보실무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993.8.31. 공보처 해외공보관회의실
- 주재: 해외홍보관장
- 안건: 엑스포 개막초기 해외홍보 상황 점검

5. 제8차 해외홍보실무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993.11.2. 공보처 해외공보관 회의실
- 주재: 해외홍보관장
- 안건: 엑스포 후속 해외홍보 대책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3 홍보 III: 홍보활동, 1992.12-93.6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25 / 2 / 1-244

1. 외무부 지시사항

- 1993.2.6. 대전 엑스포 해외 홍보 관련 아래 지시
 - 1992년 중 해외공관에 지원된 엑스포 홍보자료(간행물, 영상자료 등)의 현지 반응 및 문제점, 개선사항 등 파악 보고
 - 엑스포 취재를 위해 방한 예정인 언론매체의 매체명, 방한시기, 인원 등 보고
- 1993.6.1. 대전 엑스포 관련 공관 주요 홍보활동 실적 요지 보고 지시

2. 주요 공관 보고사항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주요인사 접촉 결과 및 자료 배포 보고
 - 건의: 엑스포 소개 영화, 비디오 필름 및 행사 개요서(독일어 판) 제작 송부
- 주스웨덴대사관
 - 1993.4.29. 한국의 날 행사 개최
- 주일본대사관
 - 홍보용 전화카드 발행
 - 오명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 방일 계기 홍보

1983

대한민국 외교부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4 홍보 IV: 홍보활동, 1993.7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25 / 3 / 1-188

1. 외무부 지시사항

- 1993.7.13. 전 재외공관에 공관별 기구성된 대전 엑스포 홍보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주재국 국민의 엑스포 참관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지시

2. 홍보실적 보고 및 건의

- 주EC(구주공동체)대사관
 - 대전 엑스포 소개 비디오의 프랑스어 및 네덜란드어 제작 건의
- 공관별 홍보실적 보고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5 홍보 V: 홍보활동, 1993.8.2.-15.)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25 / 4 / 1-194

1. 외무부 지시사항

- 1993.8.3. 엑스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30분) 수신을 희망하는 해외 TV방송국의 연락처 통보 지시
- 8.9. 엑스포 개막식 위성중출 프로그램 등 해외방송 보도 현황 파악 보고 지시

2. 공관별 홍보 실적

- 주인도대사관
 - 1993.8.1. 인도 Economic Times, 엑스포 특집기사 게재
- 주영국대사관
 - 7.29. 영국 Nature지, 대전 엑스포 및 한국과학기술 소개 기사 보도
- 주말레이시아대사관
 - 8.4. 말레이어 신문인 Utusan Malaysia와 중국어 신문인 성주일보, 대전 엑스포 기사 게재

1985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처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6 홍보 VI: 홍보활동, 1993.8.16.-10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25 / 5 / 1-137

1. 외무부 지시사항

- 1993.9.27 해외 언론매체의 엑스포 보도기사 원문 송부 지시

2. 공관별 홍보 실적

- 주멕시코대사관
 - 1993.8.22. 시사월간지 Nuevo Siglo, 엑스포 특집기사 게재
- 주헝가리대사관
 - 8.24. 헝가리 국영 MTV, 엑스포 관련 특집 대담 프로그램 보도
- 주일본대사관
 - 10.8. 일본 마이니치신문, 엑스포 특집 기사 게재
- 주독일대사관
 - 10.18. 독일 NDR-TV, 엑스포 특집 프로그램 보도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7 홍보 VII: 홍보활동, 1993.11-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25 / 6 / 1-123

1. 외무부 지시 사항

- 외무부는 1993.11.4. 대전 엑스포 폐막(11.7.)을 전후하여 공관 실정에 맞도록 대전 엑스포 개최 성과 및 의의 중점 홍보 지시

2. 공관별 홍보 실적

- 주태국대사관
 - 1993.10.31. 태국 TV CH3, 엑스포 특집 프로그램 방영
- 주러시아대사관
 - 11.7. Ostankino 1TV, 엑스포 특집 프로그램 방영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 11.16. 엑스포 참관 의원사절단 및 엑스포 '오스트리아의 날' 행사 참석차 방한한 의원단 초청 만찬 개최

1987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처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8 홍보 VIII: 제작·취재 협조)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25 / 7 / 1-50

1. 주후쿠오카총영사관

- 1992.7.31.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엑스포 특집기사 제작 관련 자료 요청

2. 대전 엑스포 조직위

- 1992.10.27. 프랑스 언론인 방한 초청 계획 통보
 - 1992년 4/4분기 또는 1993년 1/4분기 중 A2 TV 기자 2명
 - 1993년 2/4분기 중 기자 1명

1988

3. 엑스포 취재 지원단 지원

- 일본 나고야의 CBS TV(중부 일본방송) 방송 예정인 엑스포 특별프로그램 제작팀 방한 시 편의 제공
- 1993.10.27.~11.1. 태국 주요 언론매체 기자단 방한 취재 지원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9 홍보 IX: 해외유치단 활동)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25 / 8 / 1-109

1. 김태희 홍보사절, 베를린 방문(1993.3.6.~11.)
2. 정기옥 외무부 의전실장, 동남아 방문(1993.4.7.~20.)
3. 이대순 엑스포 교육위원장, 북미 방문(1993.5.15.~27.)
4. 이대순 위원장, 일본 방문(1993.6.2.~10.)
5. 서정욱(전 과기처장관) 엑스포 자문위원, 구주 순방(1993.6.19.~30.)
6. 오명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 일본 방문(1993.7.4.~6.)
7. 이경훈 엑스포 정부 부대표, 말레이시아 및 태국 방문(1993.7.13.~17.)
8. 강병창 엑스포 총무부장, 독일 및 미국 방문(1993.7.20.~31.)
9. 대전시 의회 홍보사절단, 동남아 순방(1993.7.28.~8.3.)
10. 정근모 전 과기처장관, 미국 방문(1993.8.3.~17.)

1989

대한민국 의정문화유산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홍보. 전10권 (V.10 홍보 X: 관람단(참관단) 유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홍보과 / 통상3과

MF번호 2023-125 / 9 / 1-183

1990

1. 일본 기타규슈 시장 방한(1993.6.30.~7.3.)
 - 방한단 120명
2. 일본 효고 민단지방본부 방한(1993.8.6.~9.)
 - 민단 간부 및 조총련 모국 방문단 200여 명
3. 일본 구마모도현 지사 방한(1993.8.23.~28.)
4. 미국 시애틀 통상사절단 방한(1993.9.22.~24.)
5. 일본 요코하마 상공회의소 참관단 방한(1993.10.5.~9.)
6. 일·한 문화교류사절단 방한(1993.10.6.~10.)
 - 대전 엑스포 견학 및 엑스포 전시회장에서의 일본 전통무용 및 음악 발표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정부대표자 및 기술전문가 회의. 대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5 / 10 / 1-186

1. 외무부는 1993.2.15. 각국 재외공관에 제2차 대전 엑스포 기술전문가회의 개최 예정을 아래와 같이 알리면서 엑스포 참가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 가능한 많은 실무자가 동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지시함.

- 일시: 1993.3.30.~31.
- 목적
 - 해외참가자에 대한 대전 엑스포 전시장, 시설 및 기타 기술적 문제에 관한 정보 제공
 - 대전 엑스포 참가에 따른 권리, 의무 협의
- 초청 대상
 - 대전 엑스포 참가 결정 국가
- 참가 조건
 - 항공료, 체재비 등 전액 참가자 부담

2. 제3차 정부대표자 회의(1993.8.3.)

- 목적
 - 해외참가자와 주최 측 간 박람회장 운영에 대한 협의
 - 해외참가자 간 정식 운영위원회 구성
- 참가자
 - 79개국 및 7개 국제기구 대표 등 151명
- 회의 내용
 - 홍보필름 상영, 전반적 준비 현황 보고, 의전 영접 및 개막식 행사 브리핑, 회장 운영 브리핑, 운영위원회 구성, 차기회의 구성, 보도자료 채택 등

1991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정부대표자회의, 제1차. 서울, 1992.3.3.-5. 전4권 (V.1 1991.11-92.1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5 / 11 / 1-148

1992

1. 제1차 정부대표자 회의(안)

- 개최 목적
 - 해외 참가자와 주최측 간 대전 엑스포 참가 협의를 위한 상설협의체 설립
 - 해외참가자 및 참가유치 대상국에 대한 대전 엑스포 진전 상황 및 계획 설명
- 일시 및 장소: 1992.3.3.-5. 서울, 대전
- 참가대상
 - 대전 엑스포 참가를 결정 혹은 유치할 국가나 국제기구 대표
- 회의 일정
 - 3.3. 1차 회의: 의사일정 채택, 경과보고, 대전 엑스포 목적 및 추진 경위, 참가국을 위한 제반 안내, 의제별 설명 및 질의응답
 - 3.4. 대전 엑스포 회장 방문
 - 3.5. 2차 회의: 의제별 토의 계속 및 폐회, 기자회견, 운영위 및 분과위 개최
 - 국별 개별면담

2.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상기 회의 개최 관련 외무부에 아래 내용의 협조를 요청함.

- 참가대상 국가에 대한 초청장 전달 및 결과 회보
- 박람회 관련 인사, 대전 엑스포 정부대표가 동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장에게 교섭 지시 요망
- 이에 따라 재외공관은 각국 박람회 관계자 등에게 참석 권유 및 결과 보고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정부대표자회의, 제1차. 서울, 1992.3.3.-5. 전4권 (V.2 1992.2.3.-20.)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5 / 12 / 1-179

1.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992.2월 재외공관들은 주재국 정부에 정부대표자 회의 참석 관련 적극 교섭하고 아래 진전 상황 등을 외무부로 보고함.

- 본국 인사 참석, 주한 대사관대사 혹은 직원 참석
- 등록신청서
- 국별 참가조건 등 관련사항 협의 희망
- 참가경비 지원요청 등

2. 추진 현황

- 회의 초청장 발송(1992.1.15.)
 - 105개 국가, 5개 국제기구
- 회의 참가 현황(1992.2.18.)
 - 42개 국가: 본국 인사 참가 19개국, 주한 공관원 참가 23개국
 - 주요 고위급 인사: 인도 박람회청장, 파푸아뉴기니 외무부 부차관, 러시아 경제·재무성 차관, 케냐 상공부 사무차관, 이집트 국제박람회 회장
 - 2개 국제기구: EC(구주공동체), BIE(국제박람회기구)
- 조치 계획
 - 가능한 많은 국가 참석 유치를 위한 교섭 지속 추진
 - 외무부장관 주최 리셉션 초청장 기발송

1993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기록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정부대표자회의, 제1차. 서울, 1992.3.3.-5. 전4권 (V.3 1992.2.21.-5월)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5 / 13 / 1-190

1992.3.3.~5. 대전 엑스포 제1차 정부대표자 회의가 개최됨.

1. 참가자

- 공식 대표: 76개 국가 및 4개 국제기구 대표 등 142명
- 옵서버 대표: 참가기업 대표 등 50여 명

2. 회의 주요 내용

- 홍보 동영상 VTR 상영
- 의제 채택
- 추진 경위 등 경과 보고
- 대전 엑스포 주제·이념
- 해외 참가 관련 참가국 현황, 개도국 참가지원 방안, 전시구역 정부대표 우대
- 회장 내 동선, 시설배치, 출입문, 국제관 배정·규모
- 전시관 건설 건축, 모듈
- 정부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 구성
- 수송, 통관, 지식재산권
- 출입구, 입장권, 출입증, 관람객·장애인 서비스, 보험
- 공식 참가자의 영업 범위, 납부금 요율, 판매 품목 제한 여부
- 교통, 숙박 대책
- 홍보 방안
- 각종 행사

3. 기타 일정

-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리셉션, 정부대표 오찬,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정부대표 주최 만찬, 대전 엑스포 박람회장 시찰 등
- 제2차 정부대표자 회의는 1992년 가을 개최 예정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정부대표자회의, 제1차. 서울, 1992.3.3.-5. 전4권 (V.4 리셉션, 1992.3.2.)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5 / 14 / 1-75

1. 외무부장관 주최 리셉션 개최(안)

- 일시: 1992.3.2. 18:30~20:00, 인터콘티넨탈호텔
- 초청장 발송
- 참석 예상자: 약 250명
- 소요경비: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 부담

2. 참고자료

- 대전 엑스포 제1차 정부대표자 회의 장관 주최 리셉션 참고자료(1992.2.27., 외무부 통상국)
- 주요 참석 예정인사 명단
- 연회장 평면도 및 배치도

1995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처

93-1904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정부대표자회의, 제2차. 서울 및 대전, 1992.10.20.-22. 전2권 (V.1 8월-10.13.)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5 / 15 / 1-219

1.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1992.8.25. 제2차 정부대표자 회의 개최계획을 관계부처에 알리고, 9.2. 외무부에 동 회의 개최를 위하여 참가대상 국가 및 국제기구 앞으로 한국 정부 명의 초청장 발송을 요청함.

2. 제2차 정부대표자 회의(안)

- 일시 및 장소: 1992.10.22.~22. 서울
- 주요 일정
 - 10.19. 리셉션
 - 10.20. 정부대표자 회의 개최, 정부대표 주최 만찬
 - 10.21.~22. 정부대표자 회의 속개
 - 10.22. 대전 엑스포 회장 시찰 및 기술전문가회의 개최
 - 10.22.~23. 양자협의
- 초청에 따른 지원
 - 항공료는 원칙적으로 자비 부담, 체재비는 참가국 1인 대표에 대해 조직위 부담

1996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정부대표자회의, 제2차. 서울 및 대전, 1992.10.20.-22. 전2권 (V.2 10.14.-11월)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6 / 1 / 1-222

1. 외무부는 1992.10월 각국 재외공관을 통해 대전 엑스포 제2차 정부대표자 회의에 각국 정부 대표의 회의 참가를 교섭함.

- 재외공관은 참가 여부 확인, 항공예약 및 일정 보고

2. 제2차 정부대표자 회의(1992.10.20.~22.) 결과

- 참가자
 - 84개국 대표 및 6개 국제기구, 총 194명
- 주요 일정
 - 1992.10.20.~21. 오전 제2차 정부대표자 회의
 - 10.22. 대전 엑스포 회장 시찰 및 기술전문가회의
- 회의 내용
 - 조직위는 각국 대표들에게 분야별 준비 현황과 계획을 설명, 관심사항 토의
 - 대전 엑스포 현장 시찰 및 건축·전시에 관한 기술전문가회의
 - 모듈전시관 배정, 참가지원 문제 등 협의
- 제3차 정부대표자 회의는 1993.7월 중 BIE(국제박람회기구)와 협의하여 개최하기로 함.

1997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 유치를 위한 정보수집, 1990-91)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6 / 2 / 1-170

1. 1990.6.14. 정부는 국제박람회 조직위 총회에서 엑스포에 대한 공인을 획득함.

2. 1990.8.27. 외무부는 미국, 일본 등 102개 공관에 아래 정보 수집 등을 지시함.

- 주재국 정부의 대전 엑스포 참가 관심도 및 참여 가능 분야
- 주재국 유치 교섭에 영향력 있는 한국 인사, 기업 및 활용 방안 등

3. 1990.9.6. 이후 상기 지시에 따라 많은 공관이 관련 정보를 보고함.

- 영국, 아이티, 일본, 카타르, 북예멘, 아르헨티나, 네팔, 미국, 필리핀, 인도, 수리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캐나다,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태국, 핀란드, 칠레, 미얀마,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덴마크, 그리스, 독일, 파라과이, 페루, 이탈리아,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프랑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스페인,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브루나이, 몽골, 벨기에, 파푸아뉴기니, 과테말라,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모리타니, 바레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피지, 가봉, 엘살바도르, 가나, 알제리, 뉴질랜드, 나미비아, 방글라데시, 스웨덴, 튀니지, 멕시코, 말라위, 오만, 스리랑카, 세네갈, 체코슬로바키아, 중국, 호주, 카메룬, 리비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스위스, 수단, 파키스탄, 요르단 등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2 초청장 송부 I, 1990-91.3.8.)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6 / 3 / 1-154

1. 대전 엑스포 조직위, 주한 대사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 일시: 1990.11.21., 신라호텔
- 주최: 조직위원장
- 참가자: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한국 주재 대사 22명 및 조직위 관계자 8명
- 설명 내용
 - 해외 참가 절차
 - 대전 엑스포 참가 조건, 홍보 팸플렛 배포 등

2. 대전 엑스포 초청장 발송 문제 검토

- 발송 시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 발송 대상: 정부 및 국제기구(공식 초청), 민간 기업 및 연구소(비공식 초청)

3. 초청장 발송

- 1991.2.12. 외무부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초청대상 확정
 - 수교국 전부(146개국), 미수교국 19개국 등 총 165개국
 - 국제기구(59개), 민간 기업 및 연구소 80여개
- 2.21. 외무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초청장 발송

1999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3 초청장 송부 II, 1991.3.11.-92.2월)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6 / 4 / 1-130

1. 1991.3월 각국 재외공관은 주재국에 대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초청장을 전달함.

- 카타르,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나미비아, 튀르키예, 일본, 스웨덴, EC(구주공동체), 피지, 핀란드,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브라질, 세네갈,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홍콩, 인도네시아, 미국, 페루, 인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제네바, 도미니카공화국, 아일랜드, 멕시코, 이집트, 시에라리온, 태국, 모로코, 프랑스, 스페인, 가봉, 코스타리카, 헝가리, 트리니다드토바고, 스위스, 노르웨이, 잠비아, 나이지리아, 우간다, 인도네시아, 케냐, 모리타니, 수리남,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2000

2. 초청 국가들의 초기 반응

- 호의적 검토 표시 국가
 - 포르투갈
- 참가 불투명(경비 등 문제)
 - 코스타리카
- 참가 불가
 - 카타르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4 참가촉구 공한 발송 및 회신, 1992)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6 / 5 / 1-84

1. 대전 엑스포 조직위는 1992.1.19. 외무부에 초청대상국의 참가 촉구 공한 발송을 요청함.

- 발송 대상국: 참가 통보 16개국과 불참 예상 24개국을 제외한 126개국
- 공한 형식: 외무부장관 명의 정식 공한
- 공한 주요 내용
 - 초청 공한 발송 사실 언급, 참가 반응 현황 소개, 참가의사 조기 통보 촉구

2. 국별 참가 반응(1992.3.19. 기준)

- 참가 통보국(34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페루, 파라과이, 불가리아,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
- 참가 확실(11개국): 미국, 코스타리카, 벨기에,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 적극 검토 중(12개국): 필리핀, 싱가포르, 멕시코, 독일, 그리스, 오만 등
- 긍정 검토국(21개국): 브루나이, 베트남,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UAE,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알제리 등

3. 외무부는 1992.3.20. 대전 엑스포 참가 권유 공한을 발송함.

- 대상국가: 참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36개국
 - 아주(8):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등
 - 미주(10):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등
 - 구주(11): 그리스, 독일, 덴마크, 아일랜드 등
 - 중동아(7): 오만, 콩고민주공화국, 알제리 등

2001

대한민국 외교부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5 유치 교섭지시 및 현황, 1991-93)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6 / 6 / 1-155

1. 외무부는 1991.7.18. 대전 엑스포 참가 유치 노력 강화를 지시함.

- 현황
 - 유치 목표(60개 정부관, 20개 국제기구관) 대비, 현재 30여 개국과 20여 개 유엔 산하기구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
- 지시 내용(대통령 지시사항): 94개 공관에게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참가 유치 활동에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지시

2002

2. 참가국 유치 현황(1991.8.7. 기준)

- 국가
 - 참가 통보(7), 참가 확실(11), 참가 적극 검토 중(16), 참가 긍정 검토 중(13), 불투명(32), 불참 예상(81)
- 국제기구
 - ADB(아프리카개발은행), 유엔 및 20여 개 산하기구가 유엔 시스템 형식으로 참가 확실
- 외국기업: IBM, Fujitsu 참가계약 체결
- 대전 엑스포 조직위는 공관별 접촉 반응 및 조치사항 작성

3. 유엔환경개발회의 시 대전 엑스포 홍보

- 일시 및 장소: 1992.6.6. 브라질 리오
- 대상국: 참가 통보국, 참가 확실시 되는 국가, 긍정검토 국가에서 20여 명 참석
- 행사 내용: 브로셔 배포, 비디오 상영, 오찬 설명회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6 해외유치교섭단 파견, 1992)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6 / 7 / 1-193

1. 파견 기간

- 1992.4~5월 중

2. 파견 국가(20개국)

- 구주지역
 - 오명 조직위원장, 독일, 오스트리아 방문(1992.4.19.~28.)
 - 한승수 조직위 고문, 폴란드, 아일랜드 방문(1992.5.23.~6.3.)
- 동남부아프리카
 - 이경훈 조직위 정부부대표, 케냐, 모리셔스 등 5개국 방문(1992.5.6.~25.)
 - 조직위 사무차장, 스페인, 남아공,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등 4개국 방문(1992.8.2.~17.)
- 중남미지역
 - 홍성원 조직위 차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4개국 방문(1992.5.12.~28.)
 - 김석규 외교원 연구위원 등, 브라질, 볼리비아 등 4개국 방문(1992.6.4.~22.)
- 서부아프리카
 - 박삼규 조직위 차장, 케냐, 가봉 등 4개국 방문(1992.5.7.~22.)
- 동남아시아지역
 - 손종석 조직위 사무총장,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2개국 방문(1992.5.4.~13.)

3. 오명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 구주(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방문(1992.4.19.~28.)

- 스페인: 세비아 박람회 개막식 행사 참석(4.20.)
- 오스트리아: 경제부장관 면담
- 독일: 박람회 사무총장 및 관련 고위인사 면담

2003

대한민국 외교부

93-1912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7 참가 통보 및 수락서, 1991-92.4월)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6 / 8 / 1-158

1991~92.4월 중 대전 엑스포 참가 통보 등에 관한 내용임.

- 스리랑카, 불가리아, 태국, 헝가리, 페루, 몽골, 루마니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호주, 교황청, 나이지리아, 도미니카공화국, 프랑스, 이탈리아, 쿠웨이트, 일본, 이집트, 인도, 케냐, 수단, 파키스탄, 파라과이,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우간다, 그리스, 코스타리카, 오스트리아, 피지 등 초청 국가들은 대전 엑스포 참가 통보를 알렸음.

2004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8 참가신청서 및 계약서, 1991-93)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6 / 9 / 1-134

1. 참가신청서 접수(1991.10월 이후)

- 외무부는 1991.12월 참가국에게 참가신청서를 송부하면서 신청서 제출을 요청함.
- 신청서 제출 국가: 대만,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나이지리아, 프랑스, 인도, 도미니카공화국, 잠비아, 우즈베키스탄 등

2. 해외참가계약 추진계획

- 대전 엑스포 공식 참가자의 전시구역 정부대표는 조직위의 참가계약서에 서명해야 함.
 - 참가국의 전시관 참가 위치 및 면적 확정
- 참가계약 추진계획
 - 체결 현황: 1993.2월 초 현재 프랑스, 스위스 등 4개국과 체결
 - 체결 시기: 선진국(1992.2~3월), 개도국(1993.3~5월)
 - 1993.2월 외무부는 참가국에 계약 체결 안내
 - 체결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폴란드, 도미니카공화국, 카메룬,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팔, 에티오피아, 말레이시아, 핀란드, 이집트, 에스토니아 등

2005

대한민국 외교부

93-1914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9 참가국 실무기관 파악, 1993)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6 / 10 / 1-176

1. 1993.3월 외무부는 83개 참가국의 대전 엑스포 참가 준비 기관 파악을 각국 재외공관에 지시함.
2. 참가국 실무기관 파악 보고(1993.3월 이후)
 - 스리랑카, 루마니아, 케냐, 잠비아, 일본, 말레이시아, 볼리비아, 튀니지,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가나, 나이지리아 등

2006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0 개도국 참가지원(공동관), 1991-93)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6 / 11 / 1-215

1. 대전 엑스포 공식 참가자 지원내용 통보(1991.8.7.)

- 공통 지원사항
 - 표준 전시관 제공, 영업활동 허용, 운영요원을 위한 숙박시설 제공(유료)
- 개도국 및 국제기구 특별 지원
 -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냉방사용료, 전시품 국내 수송비 일부를 부담하고 전시관 운영요원 지원
 - 지원 시 현금 지원은 피하고, 현물 및 용역 위주로 지원

2. 참가국 지원 요청

- 지원 요청 국가
 -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모로코, 피지, 인도, 카메룬, 파나마

3. 대전 엑스포 조직위는 1991.10.9. 외무부에 공동관 유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면서 관련 교섭 활동을 요청함.

- 목적: 단독 참가가 어려운 국가를 위한 공동관 참가를 추진
- 공동관(4개 공동관에 80개국 수용): 남아프리카(9개국), 카리브(13개국), 중동(9개국), 북아프리카(6개국), 블랙아프리카(32개국), 중남미(11개국) 등
- 참가조건: 참가국은 전시품 및 수송비(한국 내 일정 항구 또는 공항까지)만 부담하며, 공동관 내부 장치 및 전반적인 전시 연출은 조직위가 주관

4. 개도국 참가국에 공동관 기본 설계 송부(1993.2.18.)

2007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작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1 개도국 공동관 지원 스폰서, 1991-92)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6 / 12 / 1-114

1. 외무부, 1991.12월 대전 엑스포 참가 개도국을 위한 스폰서 발굴을 31개 개도국 공관에 지시
 - 목적: 조직위 요청으로 참가 개도국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스폰서 발굴을 추진

2. 회신 공관

- 니카라과, 벨리즈,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잠비아, 중국, 도미니카공화국,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헝가리, 브라질,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피지, 불가리아, 스리랑카, 자메이카, 페루, 태국, 인도, 러시아, 코스타리카, 케냐 등 31개 공관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2 개도국 공동관 유치 출장 I, 1992-93.3월)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6 / 13 / 1-171

1. 오명 조직위 위원장, 개도국 공동관 유치 출장

- 기간: 1993.5.27.~6.7.
- 출장국: 호주, 뉴질랜드, 통가
- 활동 내용
 - 뉴질랜드: 박람회장 시찰, 통상장관 면담
 - 통가: 노동상공부 차관 및 박람회 관련 고위인사 면담
 - 호주: 브리즈번 박람회장 시찰

2. 조직위, 남태평양지역 해외 유치단 출장

- 기간: 1992.8.2.~20.
- 출장국: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등 5개국
- 활동 내용: 5개국의 공동관 참여 협의

3. 엑스포 공동관 참가국과의 협의회 개최

- 기간: 1993.2~3월
- 대상국
 - 중미(1993.3.4.~16.): 과테말라, 멕시코,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 아프리카(1993.2.22.~3.6., 3.2.~11.): 카메룬, 나이지리아 등 9개국
 - 남태평양(1993.2.24.~3.3.): 피지,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등 4개국
 - 발트 3국(1993.2.4.~3.5.):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3국
- 활동 내용: 공동관 참여 협의

2009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3 개도국 공동관 유치 출장 II, 1993.4-5월)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6 / 14 / 1-190

2010

1. 아프리카공동관 및 개별관 출장(1993.4.3.~16.)

- 출장자: 박종남 해외참가2부장, 박동원 전시총괄과
- 출장국: 가나,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모로코, 튀니지 4개국
- 주요 활동 내용
 - 아프리카공동관 전시 기본설계 및 전시 내용 설명
 - 전시품 결정 및 제공 가능성 토의
 - 전시품 수송 관련사항 협의
 - 해당국별 지원 범위 확인 및 토의
 - 각 참가국별 N/D의 조속 결정 협의
 - 참가계약서 관련사항 토의 및 전달
 - 기타 엑스포 운영 정보 및 자료 제공

2. 아프리카B반 출장(1993.4.10.~23.)

- 출장자: 김우종 국제국 아중동과장, 장진 전시본부 전시부 직원
- 출장국: 레소토,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 우간다, 짐바브웨
- 출장 목적
 - 대전 엑스포 참가 움직임이 소극적인 국가에 대한 참가 독려 및 참가에 따른 지원사항 실무 절차 안내 및 협의
 - 아프리카공동관 전시 설계 및 장치에 필요한 제반 정보 및 자료 수집
- 평가 및 건의
 - 전체적으로 금번 출장은 각국에 대한 지원사항 확정 설명 및 전시계획 설명 등을 통해 엑스포 참가 경험이 없거나, 적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시기적으로 전시 품목 확정 및 전시품 수송이 제 때에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4 단독관 기본계획서)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6 / 15 / 1-56

1. 대전 엑스포 조직위는 1993.2.19. 단독관 참가국에 대해 기본계획서 설계도면 제출 요청

- 외무부는 49개 단독관 참가국에 대해 아래 포함한 계획서 제출을 요청함.
 - 배치도, 각종 평면도, 동선 계획도, 외부 입면도 등 건축과 구조, 기계 설비 등 포함

2. 기본계획서 제출 국가

- 베트남, 이집트 등

2011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처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5 전시계획서 제출 요청 및 승인, 1992-93)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6 / 16 / 1-116

1. 대전 엑스포 조직위는 1992.11.20. 참가 통보국을 대상으로 전시계획서 제출을 요청함.

- 외무부는 60개 참가 통보국과 공동관 참여국에 제출을 요청함.
- 관련 일정
 - 1993.2월 전시계획서 심사 및 승인 통보
 - 1993.3월 기본계획서 심사 및 승인 통보

2. 조직위의 전시관 배정 통보

2012

- 1/2 모듈 배정: 쿠웨이트, 브루나이, 카타르 등
- 3개 모듈: 나이지리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등

3. 박람회 전시계획서 승인 통보(1993.2월 이후)

- 대상국: 파나마, 페루 등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6 지역별 전시계획서 제출 I)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7 / 1 / 1-169

1. 전시계획서 제출국(아시아)

- 중국,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2. 전시계획서 제출국(미주)

- 볼리비아,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3. 전시계획서 제출국(구주)

- 프랑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스위스, 폴란드

2013

대한민국 지역발전연구원

93-1922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7 지역별 전시계획서 제출 II)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7 / 2 / 1-128

1. 전시계획서 제출국(중동)

-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2. 전시계획서 제출국(아프리카)

- 탄자니아, 우간다, 가나,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 베냉, 에티오피아, 세네갈, 나미비아

2014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8 전시품 수송계획서)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7 / 3 / 1-60

1. 대전 엑스포 조직위는 1993.4월 참가국의 전시품 수송계획서 제출을 요청함.

- 외무부는 5월 전시품 수송 관련 안내자료를 73개 참가국에 송부

2. 수송계획서 제출국가

- 요르단, 탄자니아, 나미비아, 우간다, 파나마,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93-1924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19 운영요원)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7 / 4 / 1-140

1. 외무부는 1993.1월 박람회 자료를 70개 공관을 통해 참가국에 제공함.

- 참가 관련 정보(엑스포 숙박, 운영요원, 내셔널데이 행사 등)를 제공하고 필요시 신청 요청

2. 관련 신청서 접수 국가

- 내셔널데이 참가신청서 접수: 탄자니아
- 운영요원 숙소신청서 접수: 벨기에,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파나마,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 우간다, 탄자니아
- 박람회 참가인사 명단 접수: 노르웨이, 도미니카공화국, 잠비아, 나미비아, 칠레, 이집트

2016

대전 세계박람회(EXPO '93, 8.7.-11.7.). 전20권 (V.20 참가준비 및 안내자료, 1993)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7 / 5 / 1-93

1. 대전 엑스포 조직위는 1993.3.4. 공식 휘장 상품 안내자료를 외무부로 송부함.
 - 외무부는 3.11. 공식 휘장 등 영문 카탈로그를 87개국 공관을 통해 참가국에 송부함.
2. 외무부는 1993.3.17. 참가국의 준비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참가국에 아래 내용을 안내하도록 67개국 공관에 지시함.
 - 기본계획서 참고자료: 3.26.까지 제출
 - 통신수요 조사: 3.26.까지 제출
 - 공식 가이드북 수록 자료: 4.7.까지 제출
 - 휘장 사용 신청: 희망 시 회신 요청 등

2017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1993년도 바르셀로나(스페인) 한국상품전시회, 1993.5.17.-28.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27 / 6 / 1-59

제2회 바르셀로나 한국상품전시회가 1993.5.17.~25. 바르셀로나 보세지역(Consorcio 공단) 내 전시장에서 개최됨.

1. 개최 목적

- 중소기업에게 생소한 스페인 및 안도라 시장에 대한 소개를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저변 확대
- 1992년도 제1회 전시회 개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
- 국내업체의 바르셀로나 등 남유럽 시장 진출 확대 및 대EC(구주공동체) 진출 기반 조성

2018

2. 참가업체(총 11개 업체)

- 국내업체: 8개 업체(100여 품목)
- 현지 참가: 3개 업체(2개 교포업체 및 코트라 무역관)

3. 개최 결과

- 총 참관인원: 현지 수입업자 200여 명
- 계약액: 424,100달러
- 상담실적: 3,030,500달러
- 전시회 개최 직전 단행된 스페인 화폐 페세타의 평가절하(8%) 조치로 인하여 시장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환경에서 많은 수입업자들이 상담을 망설이는 최악의 조건 하에 전시회 개최
- 참가업체로서는 최초의 현지 방문 상담을 통해 시장구조나 수입상들의 상담 태도 등을 분석, 향후 수출 상담에 큰 도움 평가

77그룹 회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지구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127 / 7 / 1-209

1993년 중 개최된 77그룹의 연례회의, 외무장관회의 등 관련 내용임.

1. 비엔나 77그룹 의장으로서의 한국 활동

- 이시영 비엔나 77그룹 의장(주오스트리아대사)은 제1차 비엔나 77그룹 회의(1993.1.21.)를 주재하고, 각 국제기구별 Task Force 의장,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고별사 준비 등 활동
- 제2차 회의(1993.2.19.)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의제에 관해 협의하고, 제3차 회의(1993.4.27.) 결과, UNIDO 장래 및 개편에 관한 문제 등 토의
- 비엔나 77그룹 회의가 1993.6.8. 및 6.25. 각각 개최되어 IAEA 안전조치협정 체계의 효과강화 등이 협의되었고, 이어서 개최된 회의에서 IAEA 이사회 및 총회 관련 협의 지속

2. 제5차 77그룹 연례회의 및 제17차 77그룹 연례 외무장관회의 준비

- 77그룹 전체회의(1993.9.13. 및 9.24., 뉴욕)
 - 동 연례회의 선언문 초안에 관해 의견교환
 - 개발을 위한 과제(Agenda for Development) 추가, 유엔 개편, 남남협력 등 관련 내용 강화
- 외무부는 동 초안 관련 내부 검토, 개도국의 외채 문제, 환경과 개발, 국제무역, 유엔 개편 문제 등에 관한 부서 의견 취합
- 77그룹 고위 실무급회의(1993.10.1.)
 - 비엔나 및 파리지역 의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77그룹 외무장관회의 최종선언문 확정
 - 동 회의 시 북한대표가 비엔나 의장 보고 중 IAEA 북한 핵 관련 활동이 포함되는데 이의 제기

3. 제17차 77그룹 외무장관 연례회의(1993.10.5., 뉴욕)

- 정부대표: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 제5차 77그룹 연례회의 보고서 및 각료선언문 채택
- 동 제5차 연례회의 보고서 채택 시 북한 측의 삭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관련 부분이 동 보고서에 포함
 - 북한 및 IAEA 간 안전조치협정 이행문제가 그간 회원국들의 특별 관심사항이며, 이에 따라 본 건을 IAEA 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 동 각료선언문은 개도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제경제 환경 개선 필요, 공업화, 유엔의 조직 개편 등 내용으로 구성

2019

대한민국 외교부

93-1928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 77그룹 의장직 수임 및 제16차 의장단 회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기구조

MF번호 2023-127 / 8 / 1-222

1992~93년 중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의 77그룹 의장직 수임 관련 내용임.

1. 비엔나 소재 아시아그룹 회의(1992.11.23.)

- 개최 경위
 - 비엔나 소재 국제기구 77그룹 의장직은 1993년 중 아시아그룹 수임 차례
 - 인도 제안하에 아시아그룹 국가 중 한국대사의 수임 가능성 거론
- 회의 결과
 -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의 1993년도 77그룹 의장직 수임 결정
 - 한국의 유엔가입 이후 다자 외교에서 최초의 사례

2020

2. 제16차 77그룹 의장단 회의(1993.4.22.~23., 제네바)

- 정부대표: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
- 주요 의제
 - 각 지역별 77그룹 활동보고
 -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결과
 - 경제·사회 분야 유엔의 활성화 및 구조 재조정을 위한 유엔총회 속개회의
 - 국제경제환경 및 77그룹에 대한 영향 등

3. 77그룹 의장직 인계

- 1994.1.18. 77그룹 대사급 본회의 개최
- 순번에 따라 만장일치로 임명된 주오스트리아 베네수엘라대사에게 의장직 인계

77그룹 ECDC(개도국간경제협력)/ IFCC(정부간후속조치및조정위원회) 회의, 제8차. Panama City(파나마), 1993.8.30.-9.4.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23-127 / 9 / 1-137

정부는 1993.8.30.~9.4. 파나마에서 개최된 제8차 77그룹 ECDC(개도국간경제협력위원회)/IFCC(정부간후속조치및조정위원회) 회의에 최상진 주파나마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 1981년 77그룹은 남남협력에 관한 카라카스 행동계획을 채택, 동 계획 추진실적 및 실천방안 협의를 위한 IFCC 회의를 개최
- 동 행동계획은 무역, 농업, 금융, 기술 등 8개 부문에서의 개도국 간 경제협력 종합계획
- 제8차 회의는 원래 나이지리아에서 1991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어 파나마에서 개최

2. 정부 훈령

- 한국의 77그룹 내 위치가 공여국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회의 참석을 통해 국력에 상응하는 지위 확보 노력
- 카라카스 행동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향후 대책, ECDC 신탁기금 운영 관련 실질성과 제고를 위한 각국의 적극 참여 요망 등

3. 회의 결과

- 무역, 기술, 식량 및 농업, 에너지, 금융, 산업화, 기술협력, 원자재 등 8개 분야 행동계획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협력방안 모색
-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에 대응, 신규협력 분야 검토(환경 및 인적자원 등)
- 동 행동계획과 비동맹 경제협력 계획의 조정 필요성 강조
- 동 행동계획 추진상의 계속성 및 활력 부여를 위해 회기 간 메커니즘 설치 제의 등

2021

대한민국 외교부

77그룹 TCDC(개도국간기술협력) 고위급위원회 회의, 제8차. New York, 1993.5.25.-28.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127 / 10 / 1-89

1993.5.25.~28. 뉴욕에서 개최된 제8차 77그룹 TCDC(개도국간기술협력) 고위급위원회 회의에 소병용 주유엔대사가 정부대표로 참석함.

1. 토의 주제

- 개도국 간 기술협력증진 전략 개발

2. 토의 내용

2022

- TCDC에 대한 관심 고조와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TCDC 활용 검토'라는 중요한 결정을 높이 평가함.
- TCDC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
 - 선진국
 - 남남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국가정책이 특히 중요하며, UNDP(유엔개발계획), 유엔전문기구, 개발은행 등 역할이 중요
 - EC(구주공동체)는 훈련기술지원 등을 통해 TCDC를 지원
 - 개도국
 - TCDC의 원만한 성과를 위해서는 유엔 모든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아울러 국제사회 및 선진국의 TCDC 활동지원이 필요
- TCDC 진흥을 위한 프레임에 관한 결정문(decision) 채택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9차. 동경, 1993.7.7.-9. 전2권 (V.1 1월-6.2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27 / 11 / 1-259

제19차 선진국 경제정상회담(1993.7.7.~9., 도쿄) 개최에 앞서 개최된 G7(서방선진7개국) 재무장관 회의 등 준비회의 관련 내용임.

1. G7 재무장관 회의(1993.2.27., 런던)

- 회의 목적
 - 제19차 G7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세계 경제 성장 방안(금리, 환율, 통상정책 등)에 대한 사전 입장 조정
- 주요 내용
 - 미국은 클린턴 미 행정부의 경제회복 정책을 설명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경기 활성화 정책을 촉구함.
 -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재정지출 확대, 독일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

2. G7 외무·재무장관 합동회의(1993.4.14.~15., 도쿄)

- 회의 목적
 - G7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의 정치, 경제개혁 지원 방안 사전협의
- 참가자
 - G7, 러시아 외무장관·재무장관, EC(구주공동체) 대표
- 주요 결과
 - 열친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 및 경제개혁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약속
 - 러시아에 다자 간 지원 434억 달러 및 양자 간 90억 달러 제공 합의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3. G7 재무장관 회의(1993.4.29., 워싱턴 D.C.)

- 논의 내용
 - 세계 경제 문제 논의, 공동성명서 발표
- 성명서 내용
 - 인플레이션 없는 건실한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성 강조
 - G7 국가별로 기시행 중인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지속적 추진 합의
 - 엔화 환율 문제, 자유무역 촉구, 러시아의 경제개혁 지지 및 지원

2023

대한민국 외교부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9차. 동경, 1993.7.7.-9. 전2권 (V.2 6.24.-9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27 / 12 / 1-185

1993.7.7.~9. 도쿄에서 개최된 제19차 G7(서방선진7개국) 경제정상회담 관련 내용임.

1. 회의 의제

- 경제 분야
 - 세계 경제 부양, 무역 문제, 대러시아 지원, 대개도국 지원, UR(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등

2. G7 경제 선언 주요 내용

- 세계 경제
 - 성장 정책 및 노동시장 효율화 등 구조적 정책 병행,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G7의 정책 협조 강조
- 무역
 - UR의 연내 타결 의지 재확인
- 환경
 - 연말까지 환경 보호를 위한 국별 실천계획 수립 촉구
- 러시아 지원
 - 민영화 및 구조조정 계획 촉진을 위한 30억 달러 추가지원 등
- 기타
 - 개도국 지원, 유엔 기능 강화, G7 정상회담의 실질화 및 효율화 추진

3. 후속조치

- 오와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방한(1993.7.12.~15.)
 - 제27차 해양법 연례회의 참석, 외무부장관 및 차관을 면담하고 G7 정상회담 결과 설명

콜롬보플랜(Colombo Plan) 분담금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경제기구조

MF번호 2023-127 / 13 / 1-72

1990~93년 중 콜롬보플랜 분담금 관련 내용임.

1. 콜롬보플랜 분담금

- 콜롬보플랜 회원국 기여금
 - 1989년도 10,988달러
 - 1990년도 10,988달러
 - 1991년도 11,508달러
 - 1993년도 11,054달러
- 마약자문위 기여금
 - 1990년도 5,000달러

2. 콜롬보플랜 기술자 교육대학 운영

- 콜롬보플랜 기술교육대학 연도별 분담금(경제력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 한국은 B그룹)
 - 1990년도 54,966달러
 - 1991년도 58,169달러
 - 1992년도 64,004달러
 - 1993년도 68,155달러
- 콜롬보플랜 기술교육대학 기부금 조성 관련 협의
- 기타
 - 한국인 교수 근무 기간 연장, 신규 교수요원 파견
 - 콜롬보플랜 기술대학장 방한(1992.4월)
 - 콜롬보플랜 기술대학장 모집 공고 등

2025

대한민국 외교부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5차. Seattle, 1993.11.17.-19. 전4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27 / 16 / 1-238

1993.11.17.~19.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의 사전준비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APEC 15개 회원국 외무장관 및 경제장관 포함 약 400여 명, 3개 옵서버국 대표

2. 대표단(수석대표)

- 한승주 외무부장관,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교체수석대표)

3. 잡정 의제

- 의제 채택
- 행정사항
- 역내 경제동향 및 현안
- EPG(저명인사그룹) 보고
- UR(우루과이라운드) 및 역내 무역자유화
- APEC 무역, 투자 기본 틀에 관한 선언 채택
- 공동협력 사업
- 회원국 확대 문제
- 공동성명 채택

4. APEC 각료회의 양자 외무장관회담 추진

-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5차. Seattle, 1993.11.17.-19. 전4권 (V.2 결과 및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28 / 1 / 1-248

정부는 1993.11.17.~19.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에 한승주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경과

- 시애틀 주변 Blake 섬에서 배석자 없이 정상 간 자유토론행식으로 개최

2. 회의 주제

- 아태지역의 비전
- 정책 우선순위
- 역내협력 증진방안

3. 회의 결과

- 무역·투자 기본 틀
 - 무역·투자 기본 틀에 대한 선언 채택
 - 무역투자위원회 신설에 합의하고, 한국이 의장국이 됨.
- UR(우루과이라운드) 선언 채택
 - 1993.12.15. 시한 내 타결을 촉구하는 정치적 의지를 담은 선언문 채택
- 멕시코 및 파푸아뉴기니의 연내 가입 결정, 내년도 칠레 추가 가입 결정
- 조직 개편: 한·캐나다가 공동 제출한 비전 페이퍼를 향후 조직개편의 기본 문서로 채택

4. 의의 및 성과

- APEC 창설 주도국으로서 아태지역 최초의 정상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 역할 수행
 - 정상회의 정례화를 위한 적극적 기여
 - 무역투자위원회 의장국으로 피선
- 북미와 동아시아 연결고리 강화로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외교의 기반 공고화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체) 등 지역주의 대두를 APEC 강화를 통해 극복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5차. Seattle, 1993.11.17.-19. 전4권 (V.3 APEC/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 선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28 / 2 / 1-132

2028

1. UR(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1993.11.15.)

- 시장접근 관련 종이, 과학 장비, 완구는 참여하기로 하고, 목재 및 수산물에 관세인하를 추가 제안한 일본의 의도를 확인한 후 대처
 - 농산물 관련 '그리고 가능한 분야에서, DFA 최소 요구사항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 이란 문항은 가급적 삭제하도록 할 것
 - 예외 없는 관세화 문제 관련 '...포괄적 관세화와 관련된 문제와 기타 관련사항의 효과적 해결'의 범위 내에서 타결하도록 함.

2. UR 관련 APEC 각료선언문 채택

- 2개 선언문
 - UR 협상의 연내 타결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선언문
 - APEC 회원국의 관세인하, 조화 또는 철폐합의 발표문: Quad Package, Quad plus Package 참여
- 한국의 관심 분야
 - 최초안에 포함되었던 농산물 관세화 언급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농산물의 교역 자유화를 촉구하는 일반적 표현으로 대치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제5차. Seattle, 1993.11.17.-19. 전4권 (V.4 APEC 각료회의 계기 양자회담)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28 / 3 / 1-160

1. 한·인도네시아 외무장관회담(1993.11.16.)

- 차기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관련 인도네시아 입장 문의
- 신규 회원국 가입 관련 멕시코, 칠레 등의 가입 신청 협의

2. 한·호주 외무장관회담(1993.11.16.)

- APEC 기능 활성화 방안 협의,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에 대한 한국 입장 설명

3. 한·일본 외무장관회담(1993.11.20.)

- 미래를 위한 양국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
- 북한 핵 문제 관련 공조체제 유지
- APEC의 지속발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지속

4. 한·태국 외무장관회담(1993.11.20.)

- 아세안 PMC(계획관리위원회) 관련 일정 협의
-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정세 협의
-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지지 요청

2029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93-1938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2차. Williamsburg, 1993.3.30.-4.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8 / 4 / 1-265

정부는 1993.3.30.~4.1. 미국 윌리엄스버그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제2차 APEC-SOM(고위실무회의)에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역내 경제 동향 및 현안
- 역내 무역자유화
- 1993년도 예산안 최종승인
- 1994년도 예산안 절차 확정
- 공동협력사업 진전사항 검토

2. 참고자료

- 제2차 APEC 고위실무회의 회의자료

2030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3차. Seattle, 1993.6.30.-7.2.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8 / 5 / 1-269

정부는 1993.6.30.~7.2.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제3차 APEC-SOM(고위실무회의)에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역내 경제 동향 및 현안 그룹 보고
- 10개 W/G 진전사항 보고
- APEC 조직 구조 문제(합리화 방안)
- 비회원국 및 민간부문 참여
- 1993년도 APEC 예산 중 미결사항

2. 회의 결과

- APEC 정상회담 개최
 - APEC 무역투자 기본합의서 채택 문제 등 구체적 논의
- 미국의 APEC 지도자 경제회의 개최 제의
- 미국 APEC 무역투자 기본합의서 추진
- 한국의 APEC 조직합리화 제안
- 회원국 확대 문제 논의 등

3. 참고자료

- 제3차 APEC 고위실무회의 자료

2031

대한민국 외교부 역사자료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4차. Honolulu, 1993.9.22.-24.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8 / 6 / 1-151

1993.9.22.~24.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제4차 APEC-SOM(고위실무회의) 관련 주요 의제 내용임.

- 주요 의제
 - 1993.11월 APEC 정상회담의 일정, 의제, 진행 방안
 - 11월 각료회의 공동성명 내용
 - APEC 무역투자 기본합의서 문구 확정
 - 1994년도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사업 추진계획
 - APEC 조직개편, 예산안 확정, 신규회원국 확대 문제 등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4차. Honolulu, 1993.9.22.-24. 전2권 (V.2 결과 및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8 / 7 / 1-145

정부는 1993.9.22.~24.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제4차 APEC-SOM(고위실무회의) 및 RTL(역내무역자유화) 그룹회의에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결과

- APEC 무역투자 기본문서 문안 및 1994년도 추진사업 마련
 -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추진을 위한 회원국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
- 1994년도 예산안(잠정) 마련
 - 예산 총액 200만 달러(1993년도 동일 수준)
- 신규회원국 미정
- 조직 합리화
 - 일단 10개 실무그룹을 6개로 나누어 유관 W/G 간 회의 개최
- 저명인사그룹 보고서 검토
- 각료회의 결정 사안 선정
- APEC 정상회담 일정, 진행구상 등에 대한 의견 교환

2. 참고자료

- 제4차 APEC-SOM 국·영문 자료

2033

대한민국 외교부 역사자료

93-1942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APEC-SOM(고위실무회의), 제5차. Seattle, 1993.11.14.-16.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8 / 8 / 1-73

정부는 1993.11.14.~16.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 준비 고위실무회의에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현안그룹 보고서, 경제 동향, 역내 무역자유화, 민간기업 참여, 비회원국 참가 기준 등

2. 회의 결과

- 현안그룹 보고
 - 당장 실천이 가능한 사안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기로 함.
- UR(우루과이라운드) 선언
 - UR 선언 범위와 관련, UR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야 한다는 데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
- 무역투자위원회
 - 내년도 개최 합의
- 민간기업 부문 참여
 - 회원국들은 학계, 재계의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각료회의에 민간기업의 참여방안을 건의하기로 함.

APEC(아태경제협력체) 협력사업 간사국 회의. 전2권 (V.1 Washington D.C., 2.18.-1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8 / 9 / 1-223

정부는 1993.2.18.~19.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APEC(아태경제협력체) 협력사업 간사국 회의에 최영진 외무부 제1정책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1993년도 공동협력사업 예산안 재검토 등 예산 관련 논의
- 각료회의 시 제출될 정책사안 논의
- 10개 협력사업의 합리화 방안 논의
- APEC 데이터베이스 설립 논의
- 민간 부문 참여 문제 논의
- 비회원국의 협력사업 참가 방안 검토

2. 회의 결과

- 예산 지출 절차(안) 마련
 - 고위급 회의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해 사무국에서 지출하는 지침 및 절차 마련
 - 최종 채택은 1993.3월 고위급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1993년 예산안 재검토
 - 1992.12월 고위급 회의에서 잠정 승인된 3개 실무그룹에 대한 예산안 재검토
- 1994년 예산 요청 절차(안) 마련 및 예산 요청양식(안) 채택
- 사업 합리화 방안 논의
 - 한국이 제출한 유관 사업을 묶는 방안이 회의 문서로 채택되었고, 차기 고위급 회의에 제출하기로 함.
- 비회원국의 실무그룹 참여 문제
 - 비정부 간 기구의 참여는 실무 그룹별로 협의하되, 비회원국 정부 관리의 참여는 고위급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

2035

대한민국 외교부 역사자료

APEC(아태경제협력체) 협력사업 간사국 회의. 전2권 (V.2 Singapore, 8.25.-2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8 / 10 / 1-253

정부는 1993.8.25.~27.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PEC(아태경제협력체) 협력사업 간사국 회의에 김의택 외무부 정책총괄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1994년도 예산안 심의
- 10개 실무그룹 활동 점검
- 실무그룹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정책사항 검토

2. 정부 훈령

- APEC의 공동협력사업이 역내 아태 국가에 공동의 경제적 실익 제공과 함께 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강화 발전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APEC 내 한국의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둘 것
- 1994년도 예산 총액이 금년도 기금 총액인 2백만 달러에서 30% 이내 범위에서 증액 책정되도록 의견을 개진할 것
- 각 실무그룹에서 제출한 예산 소요사업이 예산지출 원칙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

3. 회의 결과

- 1994년 예산 규모
 - 1993년 수준인 2백만 달러 선에서 동결하고, 1백만 달러는 실무그룹의 사업예산으로, 나머지는 사무국 행정예산으로 책정함.
- 상기 결정을 1993.9월 고위급 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각 실무그룹별 사업예산 규모를 재조정하기로 함.
- 조직구조 관련 현안
 - 회의문서 사전 배포 기한을 2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함.
 - 실무그룹 의장의 기능을 정형화함으로써 의장 교체 시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함.
 - 사무국이 고위급 회의와 실무그룹 간 교량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 제기

APEC(아태경제협력체)/EWG(에너지실무그룹) 회의, 제6-7차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8 / 11 / 1-138

1993년 중 개최된 제6~7차 APEC(아태경제협력체)/EWG(에너지실무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6차 회의(1993.6.15.~16.,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 참가자
 - APEC 15개 회원국 중 11개 회원국 대표단 및 옵서버 42명
 - 한국대표: 김열 상공자원부 자원협력담당관, 유지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의제 및 주요 결과
 - 에너지 수급: APEC 국가들의 에너지통계 발간사업 추진 합의
 - 에너지와 환경: CCT(청정석탄기술)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 정기 개최에 합의
 - 에너지 효율 및 절약: 10월, 11월 전문가회의에서 에너지정책 편람 초안 및 절약 실천조치 편람 검토 예정
 - 에너지 R&D 및 기술이전: 에너지기술 세미나, 역내 기술 평가수용 작업
 - 1994년 에너지 Working group 예산: 총 24만 달러
 - 민간 부문 참여 및 APEC Net, Vision Statement와 정책 사항, 차기회의 일정 등
- 한국 관련사항
 - 에너지 효율 및 절약 그룹의 주관으로 1992.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전력 분야의 Demand Side Management Workshop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이 평가됨.
 - 에너지기술개발지원센터에서 작업 중인 APEC 역내 기술 수요평가 작업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
 -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994년 APEC 예산사업으로 요구한 에너지절약 상용화 전략조사사업이 반영됨.

2. 제7차 회의(1993.10.20.~21., 하와이 호놀룰루)

- 참가자
 - 12개 회원국 대표단 및 옵서버 등 52명
 - 한국대표: 양봉렬 외무부 자원협력과장, 김열 상공자원부 자원협력과장, 이우영 상공부 전력 수급과 사무관
- 회의 결과
 - 역내 에너지 수급 통계집 발간 사업 점검 및 사업 계속 시행 확인
 - CCT 관련 태국(1993.9월), 인도네시아(1994년)에서 세미나 개최 예정

2037

대한민국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 절약편람, 에너지기술 관련 문서 D/B, DSW 워크숍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건물산업 분야, 식음료 산업의 에너지 절약실태 편람 초안 검토 예정
- R&D 및 기술이전 관련 일본 후원 제2차 에너지기술 세미나를 1994년 상반기 대만에서 개최
- 1994년도 APEC 예산사업 우선순위 및 부족재원 조달방안 협의
- 에너지 정책 이슈 Paper가 11월 각료회의에 제출될 예정 등

● 평가

- 한국 측이 제안한 사업이 시행 가능해짐으로써 한국이 APEC 내 선진·개도국 간 에너지 분야 기술이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동 회의 사무국에 외무부 자원협력과를 대표기관으로 등록, APEC 그룹 내 자원협력 분야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APEC(아태경제협력체)/WGT(전기통신실무그룹) 회의, 제7-8차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8 / 12 / 1-114

1993년 중 개최된 제7~8차 APEC(아태경제협력체)/WGT(전기통신실무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7차 회의(1993.3.22.~24., 호주 퀸즐랜드)

- 참가자
 - APEC 15개 회원국 정부 및 민간 통신 분야 관계자
 - 수석대표: 이교용 체신부 통신협력과장
- 회의 일정
 - 과제별 분과회의(1993.3.22.), 전체회의(1993.3.23.~24.)
- 회의 결과
 - 기추진 중인 섬유, 철강 등 전자문서교환(EDI)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의견 교환
 - 일본이 텔레포트 구축을 위한 실무지침을 제안하였으나,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이 텔레포트를 전기통신 하부구조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앞으로는 전기통신 하부구조발전분과로 개칭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인력개발에 관한 방안 논의
 - 비회원 민간기구의 참여 확대 합의

2. 제8차 회의(1993.9.14.~16., 마닐라)

- 참가자
 - APEC 14개 회원국 통신관계자 143명(브루나이 불참)
 - 수석대표: 신용섭 체신부 연구기술과장
- 회의 의제
 - 전기통신환경 자료집 발간, 전자문서교환, 전기통신 하부구조개발, 인력자원개발
- 회의 결과
 - 한국이 주관하고 있는 전기통신환경 자료집 발간 관련, 1993.10.1.까지 취합하여 사무국이 출간하도록 함.
 - 전자문서교환 관련,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5개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 진행
 - 태국이 제안한 인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합의함.
 - 각료회의에 제출할 정책 권고안을 준비하기로 함.

2039

대한민국 외교부

APEC(아태경제협력체)/FWG(수산실무그룹) 회의, 제3-4차. 전2권 (V.1 제3차. Bangkok, 2.10.-12.)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8 / 13 / 1-178

정부는 1993.2.10.~12. 방콕에서 개최된 제3차 APEC(아태경제협력체)/FWG(수산실무그룹) 회의에 김경용 수산청 국제협력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싱가포르를 제외한 14개 회원국

2. 주요 의제

- 선정된 APEC 사업기금 요청 대상 사업
- 역내 자원관리 대상 어종 선정 및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및 기구의 역할
- 어획 및 어획물 처리에 관한 기술이전협력
- 협력사업 합리화 방안

3. 회의 결과

- 미국 대표는 경계 왕래 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해서는 작년 리우환경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주관회의가 개최됨을 환기하면서, 'APEC 회의가 이러한 유엔의 노력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APEC 회의가 국제 현안 문제에 대한 논쟁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한 경계 입장 개진
- 일본 대표도 APEC 활동이 기존 국제기구 활동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회원국 상호 간의 양자 교섭이 필요한 사안이나 기존 기구의 소관사항에 대해 'dictate'하는 형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수산그룹 회의가 자국 원양어업에 대한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포럼으로 변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 방지적 태도를 취함.

APEC(아태경제협력체)/FWG(수산실무그룹) 회의, 제3-4차. 전2권 (V.2 제4차. Wellington(뉴질랜드), 10.11.-1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8 / 14 / 1-99

정부는 1993.10.11.~13.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제4차 APEC(아태경제협력체)/FWG(수산실무그룹) 회의에 최병효 주뉴질랜드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12개국,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FFA(남태평양도서국어업기구) 등 옵서버 기구

2. 주요 의제

- 각국 기초연설
- 어족자원 및 관리협약
- 어획 및 가공 기술협력
- 수산 제품 판매
- 수산양식 등

3. 회의 결과

- 동 회의는 수산협력 분야에 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장기적 측면에서 신중한 대처가 요구됨.
 - 연안국들의 실질적 주요 세력인 미국, 캐나다 등은 국별 기초연설에서 동 회의의 논의가 실질적 내용으로 수렴할 것을 강조
 - 특히 미국 등이 회의에서 공해상 어족자원 보존에 관하여 취한 입장을 검토할 때, 향후 공해 및 여타 수역에서의 수산자원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 시 동 회의의 토의내용을 지렛대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 각 회원국은 굳이 Umbrella 그룹이라는 것을 구성하여 조직을 비대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그룹들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연속회의를 개최하자는 반응임.

2041

대한민국 어업관리청 어획량

APEC(아태경제협력체)/MRC(해양자원보존) 실무그룹회의, 제5차. Seattle, 1993.5.18.-21. 전2권 (V.1 3-5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29 / 1 / 1-153

정부는 1993.5.18.~21.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MRC(해양자원보존) 실무그룹 회의에 노부호 환경처 수질보전국 해양보전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APEC 회원국 중 캐나다, 중국, 홍콩, 일본, 미국 등 11개국
- 옵서버: APEC 사무국,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멕시코

2. 의제 및 결과

- 적조/독성조류 프로젝트
 - 실무 작업반 구성, 각국의 적조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인터뷰 및 자료정리
- 통합 연안지역관리 프로젝트
 - 육상기인 오염원 조사평가 및 연안지역 관리, 정책 분석, 역내의 연안지역 통합관리협력 방안 마련
- 해양환경보호의 장기목표, 정책과제, 민간부문 참여 제고,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해양부문 (제17장) 후속조치
 - UNCED 해양부문 후속조치의 역내 실행계획: 지역 내 해양보전을 위한 지침
 - 해양자원보전 W/G의 UNCED 후속조치 작업계획: 태평양지역 내 활동 중인 주요 해양과학, 자원 및 환경관련 기구와의 협력관계 정립
- APEC 각료회의 선언문
 - W/G 활동 사항을 확인·지원하기 위하여 1993.11월 예정인 각료회의 선언문에 반영하기로 함.
- 1994년 소요예산: 3만 7천 달러
- 차기회의: 1994.1~2월 개최 합의
 - 뉴질랜드 대표는 본국과 협의 후 주최 여부 검토 약속

3. 평가

- 금번 회의에서 MRC 실무작업반이 적조 및 독성조류 사업을 구체적 사업으로 선정, 합의한 것과 관련, 한국의 경우 APEC 회원국 중 적조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동 사업 실시로 일본 및 캐나다 등으로부터 적조처리기술 이전이 기대됨.

APEC(아태경제협력체)/MRC(해양자원보존) 실무그룹회의, 제5차. Seattle, 1993.5.18.-21. 전2권 (V.2 8-11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29 / 2 / 1-134

1993.5.18.~21.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MRC(해양자원보존) 실무그룹 회의 관련 8~11월 중 후속조치 및 관련 문서가 수록됨.

1. 태국 외무부는 1993.6.16. 제5차 APEC/MRC 실무그룹 회의 시 합의한 바에 따라 '해양오염 문제에 초점을 둔 연안 수역 관리'에 관한 회원국별 National Report 제출을 10.1.까지 요청함.
2. APEC 사무국은 1993.7.19. 상기 회의에서 합의된 '적조 및 독성조류사업 실시'를 위한 Project Coordinator 및 3개 Task Team에 참여할 한국 전문가 추천을 요청해옴.
 - 한국 측은 8.11. 김학균 국립수산진흥원 환경과장을 추천함.
3. APEC 사무국은 상기 회의에서 '통합연안 관리사업'을 MRC 작업반의 1994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바, 간사국인 캐나다가 작성한 제의서(1993.7.29.)를 회원국들에게 배포함.
 - 외무부는 동 제의서에 관한 환경처의 검토 의견을 8.5.까지 요청함.
4. 제5차 회의 보고서(영문) 수록

2043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APEC(아태경제협력체)/TWG(관광실무그룹) 회의, 제3-4차. 전2권 (V.1 제3차. Queensland(호주), 3.24.-25.)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9 / 3 / 1-92

제3차 APEC(아태경제협력체)/TWG(관광실무그룹) 회의가 1993.3.24.~25. 호주 퀸즐랜드에서 개최됨.

1. 참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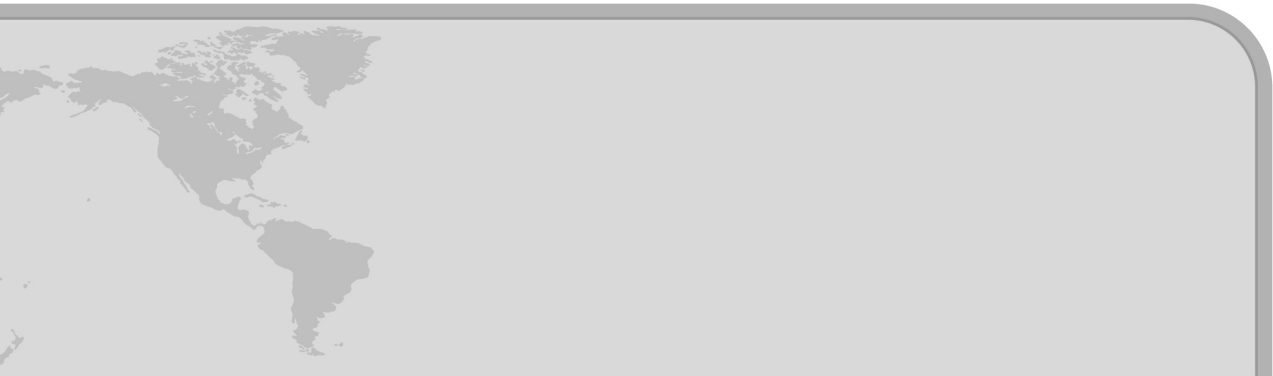
- 홍콩, 브루나이를 제외한 APEC 13개 회원국 대표, APEC 사무국,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대표 등 총 27명
- 한국대표: 임기모 외무부 정책총괄과 사무관

2. 회의 결과

- Vision Statement 채택
 - 역내 관광분야 협력 중요성 재확인, 관광과 경제발전 연관성 파악, 관광과 장벽 제거, 역내 관광정보교환, 관광분야 인력개발 등
- 관광과 환경
 - 역내 관광과 환경 간 연계성 검토를 위한 연구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본이 회원국 협조 하에 수행하기로 함.
- 관광 인력자원 개발
 - 관광 HRD사업이 정부 주도하에 여객수송, 호텔운영 등 관광 관련 제반 산업에서 이루어져야 함.
- 협력사업 합리화
 - 한국은 협력사업 합리화 방안을 설명하고 동 유용성을 강조한바, 다수 회원국이 실현가능한 분야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 데이터베이스
 - 호주 측은 관광통계 및 APEC D/B에 관한 논의 자료를 차기 회의에 제출하겠다고 언급
- 민간분야 및 비회원국 참여 문제
 - 일반화된 원칙과 규정의 확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

3. 평가

- 관광분야 실무그룹회의는 각국의 관심이 부족하고 민간기업 참여도 없으며, 홍콩, 브루나이 지속 불참
- W/G 간 합리화를 동 실무그룹회의에서 우선 검토함이 필요하고, 한국이 W/G회의 적극 참여를 위해서는 교통부의 관심, 연구기관 인사의 회의 참여 지속이 필요



4. 참고자료

- 제2차 회의(1992.9.17.~18., 캐나다 밴쿠버) 결과보고서
- 제3차 회의 결과보고서(1993.3.30., 정책총괄과)

2045

대한민국 미래발전연구원

APEC(아태경제협력체)/TWG(관광실무그룹) 회의, 제3-4차. 전2권 (V.2 제4차. Pattaya(태국), 9.27.-3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9 / 4 / 1-254

제4차 APEC(아태경제협력체)/TWG(관광실무그룹) 회의가 1993.9.27.~30.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됨.

1. 참가자

- APEC 12개 회원국(브루나이, 홍콩, 필리핀 불참) 대표,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및 PATA 대표
- 한국대표: 김도형 주태국대사관 재무관

2046

2. 회의 결과

- 회원국 간 관광정보 공유
 - 싱가포르가 수집, 배포하기로 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함.
 - 호주가 제안한 관광정보 전산네트워크 연구, 캐나다가 제안한 여행 동향 조사사업은 더 검토해 보기로 함.
- 관광실무그룹 사업 추진
 - 환경 관련 사업에 대하여 입찰서류안을 작성하였으며, 회원국의 수정의견을 1993.10.8.까지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함.
 - 인력개발 사업은 입찰서류를 더 검토하기로 함.
- 각료회의 준비
 - 각료회의에 제출할 Statement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회원국 수정 의견은 10.8.까지 사무국으로 제출
- 차기회의
 - 1994.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예정

3. 후속조치

- 동 회의 시 일본 측 제의로 아태지역의 관광환경에 대한 자료집 발간이 합의되나, 동 자료집 발간을 담당하는 일본 측은 설문서를 송부해오면서 한국 측이 설문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해옴. 이에 외무부는 1993.10.12. 교통부에 동 설문서를 송부함.

APEC(아태경제협력체)/TWG(수송실무그룹) 회의, 제4차. Seattle, 1993.7.20.-2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9 / 5 / 1-126

제4차 APEC(아태경제협력체)/TWG(수송실무그룹) 회의가 1993.7.20.~23. 시애틀에서 개최됨.

1. 참가자

- APEC 회원국 대표, APEC 사무국 요원 및 옵서버 등 참가
- 한국대표: 조용하 주시애틀총영사관 영사, 김선태 교통부 사무관

2. 토의 내용

- 화물 및 여객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세미나를 포함하여 1992년 도쿄 개최 TWG 회의 이후 진전사항 점검 및 향후 TWG 사업 관련 논의
- 여객 및 화물처리 원활화
 - 미국, 호주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간 컴퓨터를 이용한 사전 여객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입국과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 설명 등
- Work Project 발표
 - 일본의 아시아 주요 항만과 공항의 공급부족 추세 분석
 - 캐나다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여러 국가의 수송 관련 자료 수집 내용 보고
- 옵서버 발표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은 교통 및 통신시설 개발 등 최근 활동내용과 인력개발, 복합운송 발전, 교통통신의 산업화 등 설명
- Vision Statement and Policy Issues
 - SOM(고위실무회의)(1993.6.30.~7.2., 시애틀)에서 작성한 문건 관련 추가 의견 수렴

3. 한국대표 발언 내용

- 경부고속전철, 영종도 신공항건설, 항만개발에 관한 향후 계획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

2047

대한민국 여객처리시설

APEC(아태경제협력체)/RTL(역내무역자유화) 회의. 전4권 (V.1 그룹회의. Williamsburg, 3.29.-3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29 / 6 / 1-268

1993.3.29.~30. Williamsburg에서 개최된 APEC(아태경제협력체)/RTL(역내무역자유화) 그룹회의 관련 내용임.

1. APEC/RTL 시장접근 행정규제 관련 대책반 회의(1993.1.29.)

- 참가자: 경제기획원(제1협력관 주재),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환경처 과장 또는 실무 직원
- 회의 결과
 - RTL 그룹 추진 4개 단기과제 중 시장접근 행정규제에 관한 자료 제출 관련 내용 검토
 - 시장접근 행정규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내용, 범위 시기 등에 관한 협의
 - 현 단계에서는 국별로 역내 무역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우선 발굴하는 단계이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APEC/RTL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는 논의가 필요
 -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관해 경제기획원으로 2.6.까지 제출하고, 경제기획원은 필요시 외무부, 상공부 등과 협의하여 한국 측 안을 수정, 보완 예정

2. APEC 회원국 간 관세율 데이터베이스 구축 설명회(1993.2.23.)

- 개최 배경
 - APEC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뉴질랜드 측이 연구하도록 함.
 - 이에 따라 뉴질랜드 관세 전문가가 APEC 회원국을 순회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설명
- 설명회 내용
 - APEC 회원국 간 관세자료 데이터베이스(전산망) 구축 설명회 및 실제 가동

3. APEC 역내 무역자유화 관련 관계부처 실무회의(1993.3.16.)

- 참가자: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담당 과장
- 의제
 - APEC/RTL 그룹회의(1993.3.29.~30., Williamsburg) 의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 정리
- 회의 결과
 - 제1차 EPG 회의
 - 제1차 회의 결과 긍정적 평가
 - 역내 자유화 관련 보고서 작성 등 한국 대표의 활동을 RTL 차원에서 적극 지원
 - APEC(Community)로의 지향, 역내 정상회담 추진 문제에 대하여는 SOM(고위실무회의) 대책회의에서 입장 마련



- 4개 단기과제
 - 관세자료 전산망 구축, 통관절차 간소화 부문 한국 측 발언 자료는 재무부에서 준비
 - 시장접근 관련 행정규제 문제는 필리핀의 취합 내용을 보아 대응하되, APEC이 협상의 장이 아님을 감안, 제기된 문제점의 해소방안으로 Code 제정 등의 형태가 바람직
- APEC 차원의 무역·투자협정 체결 문제
 - 기본적으로 구상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현재로서는 APEC 차원의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각국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4. APEC/RTL 그룹회의(1993.3.29.~30.) 결과

- 대표단(수석대표)
 - 김광동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 토의 내용
 - 무역정책 일반: UR, Globalization,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 제1차 EPG 회의 결과 보고
 - 4개 단기과제 토의 및 기타(업계참여 문제, RTL의 금후 논의과제)
- 회의 결과
 - 15개 APEC 회원국 대표 및 옵서버 참석하에 개최되어 SOM 회의에 보고할 회의록 작성 후 종료
 - 금번 회의는 1992.11월 워싱턴 회의 이후 분야별 진전사항이 반영된 점 등 이외에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

2049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정책
연구

APEC(아태경제협력체)/RTL(역내무역자유화) 회의. 전4권 (V.2 관세 및 무역전문가회의. Singapore, 5.16.-1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29 / 7 / 1-190

1993.5.16.~19.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PEC(아태경제협력체)/RTL(역내무역자유화) 관세 및 무역전문가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정부대표

- 이인원 재무부 국제관세과장
- 최찬주 무역협회 정보기획과장

2050

2. 회의 결과

- 관세율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세율 데이터베이스의 경제성
 - 관세율 데이터베이스의 시험제작 사업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및 자료갱신
- 통관절차 간소화
 - APEC과 역내 관세협력기구와의 관계
 - 5개 분야별 보고서의 제안 검토

3. APEC/RTL 관세율 설명자료

- 역내 외국인 투자환경(미국은 역내 투자 지침서 발간작업 담당)
- 미국 측 초안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1993.6.2.), 한·미국 간 협의 전문 등

APEC(아태경제협력체)/RTL(역내무역자유화) 회의. 전4권 (V.3 그룹회의. Seattle, 6.28.-29.: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29 / 8 / 1-272

APEC(아태경제협력체)/RTL(역내무역자유화) 그룹회의(1993.6.28.~29., 시애틀, 1993.9.20.~21., 호놀룰루) 관련 내용임.

1. APEC/RTL 관련 협조 요청사항(1993.5.28., 주필리핀, 주미국대사 보고)

- 필리핀 측: 여타 회원국이 한국 측 행정규제 목록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미국 측: APEC/RTL 관세율 설명자료 관련 한국 측 검토의견 요청

2. APEC/RTL 그룹회의(1993.6.28.~29., 시애틀)

- 참가자
 - APEC 15개 회원국 대표
- 대표단(수석대표)
 - 김광동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 의제
 - 통상정책협약: UR(우루과이라운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 4개 과제: 관세자료 전산망 구축, 통관절차 간소화, 시장접근 개선, 투자규정집 발간
- 회의 결과
 - 무역정책 일반에 관한 토의: UR 협상 연내 타결 희망
 - NAFTA: 캐나다는 국내법 절차 완료, 미국은 멕시코와의 보완협정이 7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연말경 의회 통과를 목표로 NAFTA 이행법안 작성에 착수함.
 - AFTA: 아세안 사무국은 CEPT하의 회원국 의무와 관련된 최근의 진행상황 설명
 - EPG: Pirie 사무국장은 1995년도 새로운 무역협상을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자유무역실현을 목표로 노력함을 설명하고 APEC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표명
 - 단기추진과제
 - Tariff Database 관련 금번 SOM에서 13만 달러를 받으면 11월 말까지 호주 Tapin System을 모형으로 한 타당성조사 실시 후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여부 결정 예정
 - 한국 측이 추진 중인 Tariff Manual 작업은 1994.1월 완성 목표로 추진
 - 통관절차 관련 각료회의 이전에 전문가회의 개최 예정
 - 미국은 10월 중순까지 투자지침서 1차 보고서를 각료회의에 제출 예정
 - 시장접근 행정규제 관련 필리핀이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종합한 문서 제출 예정 등

2051

대한민국 무역면접시험



3. APEC/RTL 그룹회의(1993.9.20.~21., 호놀룰루)

- 참가자
 - APEC 15개 회원국 대표
- 대표단(수석대표)
 - 김광동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 회의 결과
 - 무역정책대화
 - 12.15.까지 UR 타결 지지
 - NAFTA, AFTA 진전 현황 관련 보고 및 질문, 의견개진
 - 캐나다는 세계화 관련 역내 및 세계경제 통합 및 성장에 있어 현안사항을 투자환경, 시장의 구조적 측면, 기술혁신, 사회조정, 환경 등 5가지 분야 제시
 - Action Agenda
 - 관세율 데이터베이스 및 통관절차에 관해 협의하고 11월 'APEC 관세·무역 심포지엄' 개최 예정
 - 투자규정 가이드북 및 민간분야 Survey 현황 보고
 - 아·태 투자규칙(안)에 대한 각국 의견 개진
 - 필리핀이 작성, 배포한 시장접근 행정규제 문서에 관한 각국 의견 개진 등

APEC(아태경제협력체)/RTL(역내무역자유화) 회의. 전4권 (V.4 그룹회의. Seattle, 6.28.-29.: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29 / 9 / 1-179

1993.6.28.~29. 시애틀에서 개최된 APEC(아태경제협력체)/RTL(역내무역자유화) 그룹회의 관련 자료임.

- Expanded Paper on Grouping Relevant Working Groups for the Rationalization of APEC Work Projects; Presented by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Third SOM June 30-July 2, 1993 in Seattle
- APEC-SOM(고위실무회의)(1993.6.28.~7.2.) 각국 대표단 명단(영문)
- RTL Report to the SOM
 - 아세안 사무국, 호주, 미국, 한국, 필리핀, 뉴질랜드 등이 제출한 관련 보고서
- APEC/RTL 회의 각국 참가자 명단(6월)

2053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국

APEC(아태경제협력체)/TID(교역 및 투자데이터) 검토 실무그룹회의, 제4차. Singapore, 1993.5.27.-28.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9 / 10 / 1-136

정부는 1993.5.27.~28. 싱가포르에서 제4차 APEC(아태경제협력체)/TID(교역및투자데이터) 검토 실무그룹회의에 이상규 주싱가포르대사관 직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홍콩 및 브루나이 제외 13개 회원국, APEC 사무국,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Guest)

2054

2. 주요 의제

- 정책 문제
 - Vision Statement, Policy Objectives
- 공동협력사업 합리화 방안
-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채택 문제
 -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데이터 일치(화) 방안
- 차기 회의 개최

3. 주요 결과

- 정책 문제
 - APEC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 데이터가 상호 상충되어 경제현황 분석 및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혼선이 있음을 인식, 동 Working Group이 'Comparable' 또는 'Near-Comparable'한 데이터베이스의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천명
- 합리화 문제
 - Working Group 간 일부 중복이 있음을 인정하며 회원 각국의 참여도 제고 및 경비절약 차원에서 Working Group의 합리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추후 재거론하기로 함.
- 데이터베이스 문제
 - APEC 통신·데이터베이스 운용을 위한 Task Force의 작업 결과 보고
- 차기 회의는 1994.5.4.~6. 인도네시아 개최로 잠정 결정

5. 관찰 및 평가



- APEC Working Group 간의 합리화 방안 관련, 각 참가국은 업무 중복문제 등을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이며, 미국 등 회의 주도국들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동 Working Group 회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의 통계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회원국 간 비교 가능한 교역 및 투자통계자료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동 자료가 금후 APEC 회원국 간 경제 및 통상 정책의 조정자료로서 활용될 것임에 비추어 한국으로서도 관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2055

대한민국
외교관계
연표

1993

APEC(아태경제협력체)/TIF(무역·투자기본문서) 선언 채택. 전2권 (V.1 1-4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29 / 11 / 1-177

1993.1~4월 중 APEC(아태경제협력체)/TIF(무역투자기본) 선언 채택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2.12.1. Eagleburger 전 미국 국무장관, APEC 협정 체결 구상 제안
 - 투자협정, 행정조치에 관한 Code of Conduct 채택, 지식재산권협정, 분쟁해결 메커니즘, 영공개방협정,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무역협정 등 관련 논의 필요성 제기
- 1993.2.8. 호주 수상,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개방경제협력체 설립을 위한 기본협정 제안
- 1993.3.31. 미국 측, APEC 내 다자 간 TIFA(무역투자구조협정) 체결 제의
- 1993.9.22. 제4차 APEC-SOM(고위실무회의) 및 RTL(역내무역자유화)회의에서 TIF 초안 합의
- 1993.11.18. 제5차 APEC 각료회의에서 APEC/TIFA 선언 공식 채택
 - CTI(무역·투자위원회) 설치: 한국 의장국 선출

2. 주요 내용

- APEC은 아태지역 자유무역지대화 추진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
 - 이를 위해 회원국의 관계자로 구성되는 APEC 무역투자위원회 설치
 - 동 위원회는 무역·투자 확대 방안 추진: 무역 이슈의 Management 및 무역·투자 관련 제반 협정 체결 포함
 - 동 위원회의 매년도 작업계획은 APEC 각료회의에서 결정
- 미국 측은 상기 TIFA를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EC(구주공동체)를 견제하는 레버리지로 이용하면서 UR 협상 실패 시 대비한 보험책으로 활용할 가능성
- 금년 3월 말 APEC-SOM에서 각국은 APEC/TIFA 구상에 대체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
- 한국 정부도 동 구상 적극 검토 중. 다만 TIFA 협상이 UR 타결 의지를 약화시켜서는 안되며, UR 협상의 우선적 타결 희망

3. APEC/TIFA 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1993.4.21., 외무부)

- 다자무역체제의 보완적 장치로서의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 지지 입장에 따라 APEC/TIFA 안 원칙적 지지
- 단, APEC 차원의 별도 협정체결이 UR 타결 의지 약화로 나타나지 않도록 UR의 우선 타결 강조 필요

APEC(아태경제협력체)/TIF(무역·투자기본문서) 선언 채택. 전2권 (V.2 5-11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23-129 / 12 / 1-203

1993.5~11월 중 APEC(아태경제협력체)/TIF(무역투자기본문서) 선언 채택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93.5.1.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파악한 미국의 TIFA(무역투자구조협정) 체결 현황과 운영 실태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로 송부함.

2. APEC 역내 무역자유화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3.5.14.)

- 의제
 - TIFA 제안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 결과
 - 미국이 6월 APEC/SOM(고위실무회의) 회의 시 공식 제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지의사 표명
 - TIFA의 구조, Wording, Work Program 작성 등에 대하여는 분야별로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응
 - 여타 APEC 회원국의 반응을 탐문, 입장 정립에 참고 등

3. 미국 측은 1993.8.4. APEC/TIF Work Program 검토의견을 요청한바, 한국 정부는 8.20. 아래와 같이 한국 측 의견을 송부함.

- 금년 11월 TIF가 체결되는 경우 1994년도 Work Program으로서는 우선 현재 RTL(역내무역자유화) 그룹이 추진 중인 업무를 인수하되, TIF의 성격이나 구조에 대해 유보적 입장인 일부 국가들의 컨센서스를 확보하고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본 후, 필요시 Work Program을 추가할 것을 제의함.

4. APEC/TIF 선언 초안 합의(1993.9.27.)

- 주요 내용
 - 전문 12개조
 - 개방적 지역주의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원칙에 입각하여 아태지역 내 및 세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
 - 각 회원국의 상이한 발전 정도와 다양성 존중
 - 컨센서스에 의한 모든 참가국의 의견 반영
 - 무역·투자 관련 문제의 우호적이고 신속한 해결 촉구

2057

대한민국 무역투자 기본문서



- 본문 4개조
 - 각료회의 산하에 각국의 경제통상담당으로 구성되는 무역투자위원회를 설치
 - 역내 무역·투자 확대와 장벽해소 추구
- 작업계획
 - 매년 각료회의에서 채택, 진전사항 검토
 - 1994년도 작업계획으로는 현재 역내 무역자유화 그룹에서 추진 중인 사항을 인계(UR,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및 역내투자안내서, 통관간소화, 관세전산망구축, 표준조화 등 5개 작업), 중소기업 활동 진흥
- 의의 및 전망
 - 본격적으로 아태지역 내 무역·투자를 협의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금년 중 UR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 내년부터 APEC 차원의 무역자유화 논의 활성화 예상
 - 11월 각료회의 시 본 선언 공식 채택

5. 제6차 APEC 각료회의(1993.11.17.~19., 시애틀) 결과

- APEC/TIF 마련, UR 선언 채택
- 신규 회원국으로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가입, 내년에 칠레 가입 결정
- EPG(저명인사그룹) 보고서 검토
 - 세계무역자유화, 역내무역자유화, 무역·투자활성화, APEC 제도화 등 EPG가 제시한 비전을 역내 협력의 기반으로 채택
- APEC 조직개편
 - 한국, 캐나다가 공동 제출한 'APEC 조직에 관한 Vision Paper'를 APEC 조직개편의 기본문서로 채택
 - 예산·행정위원회 신설, 비공식 그룹이던 '경제동향 및 현안 그룹'을 내년 각료회의 이전에 경제위원회로 승격 등

APEC(아태경제협력체)/TPWG(무역진흥실무그룹) 회의, 제5차. Victoria(캐나다), 1993.6.24.-25.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9 / 13 / 1-77

1993.6.24.~25.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아태경제협력체)/TPWG(무역진흥실무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14개 회원국
 - 한국대표: 상공부, 주밴쿠버총영사관 직원

2. 주요 협의내용

- 제4차 실무그룹회의 후 진전사항 검토
- 민간 부문 및 기타 국제기구 참여 문제
 - 민간기업 단체의 참가 필요성 언급
- 아태 무역 증진 세미나(1993.10.26.~28.)에 회원국의 참석 요청
- APEC 국제무역전시회 개최 관련 지원
 - 제3차 APEC 무역촉진 교육과정(1994.6월, 베이징) 및 제1차 국제무역박람회(1994.10월, 오사카) 관련 APEC 예산지원 논의
- 차기 회의는 1994.2월 인도네시아 개최 예정

2059

대한민국 무역면접 영어자료

APEC(아태경제협력체)/투자 및 기술이전 실무그룹회의, 제4차. 서울, 1993.5.18.-2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9 / 14 / 1-130

정부는 1993.5.18.~20.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APEC(아태경제협력체)/투자 및 기술이전 실무그룹회의에 조건호 재무부 국제금융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15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57명

2. 개최 목적

- 아·태지역 회원국 간 투자·기술이전 촉진

3. 주요 결과

- 실무그룹회의의 중장기 방향 및 정책과제
 - 회원국 간 투자 장애 제거
- 정보망 및 D/B구축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의 Trade Net 등 기존 정보망과 중복투자 방지에 합의
- 과학기술발전 선도 역할
 - 역내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중요. 투자 및 기술이전사업에 과학 분야도 추가

4. APEC 산업과학 및 기술특별회의(1993.9.13.~14., 일본 시미즈) 개최

- 참가국
 -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등 APEC 14개 회원국
 - 한국대표: 김영욱 생산기술연구원장
- 의제
 - APEC 각 회원국의 산업과학기술정책 발표
 - 아·태지역 산업과학기술협력 증진방안 논의
- 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 공동연구 수행과제 도출 및 일본·싱가포르 '금속주형합금재료' 공동연구사업에 참여 희망기관 도출
 - APEC 공동연구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담팀을 국립공업기술원 내에 구성
 - 차기 회의 준비: 1994.5월 베이징에서 아·태지역 과학기술산업 단지를 위한 전략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

APEC(아태경제협력체)/HRD(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 제7차. 동경, 1993.1.26.-27.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9 / 15 / 1-296

정부는 1993.1.26.~27. 도쿄에서 개최된 제7차 APEC(아태경제협력체)/HRD(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 및 제1차 APEC 교육포럼에 박동선 외무부 정책총괄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APEC 교육포럼 추진사업 검토 및 회의운영 방식 협의
- HRD 사업의 재정문제
- HRD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협의

2. 주요 결과

- 예산사업 확정
 - 1993년도 인력개발 그룹에서 추진하는 예산소요 사업으로 한국 안 2개((KDI, 서울대), 호주 안 1개가 확정됨.
- 제10차 그룹회의 유치
 - 차기 제8차 회의는 미국 호놀룰루, 제9차 회의는 캐나다에 이어 제10차 회의를 1994.5월 한국에서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함.

3. 첨부자료

- APEC 제7차 인적자원개발 실무회의 참가 보고서
-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회의 한국(KDI), 미국, 캐나다 측 토의 자료(영문)
-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회의 주최 측 자료(영문)

2061

대한민국 외교부

APEC(아태경제협력체)/HRD(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 제8차. Honolulu, 1993.5.25.-26.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29 / 16 / 1-177

정부는 1993.5.25.~26.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8차 APEC(아태경제협력체)/HRD(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에 박동선 외무부 정책총괄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회의 구성
 - 본회의 전 3개(경제개발, 기업경영, 산업기술) 네트워크별 회의, 제2차 교육포럼 개최
- 주요 의제
 - 실무그룹의 중장기 목표설정
 - 대표간사국 선임
 - 네트워크 조정관 교체
 - 1994년도 예산소요 사업 선정

2. 사전 준비회의

- APEC/HRD 사업 관련 회의(1993.3.26., 경제기획원)
 - 참가자: 경제기획원 협력정책과장(주재), 외무부, 교육부, 상공부, 노동부, 과기처 담당관, KDI, 서울대, KIST, KOIC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자
 - 토의사항: APEC/HRD 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협의
- APEC/HRD 실무대책반 회의(1993.5.6., 경제기획원)
 - 참가자: 경제기획원 협력정책과장(주재), 관계부처, 관계기관 담당자
 - 주요 안건
 - 교육포럼 및 APEC/HRD 협력사업 추진계획 점검
 - 제8차 HRD 실무그룹회의 의제 검토
 - 제10차 HRD 실무그룹 회의 개최 준비 등
- 제8차 APEC/HRD 회의 참가 사전 대책회의(1993.5.21., 외무부)
 - 의제: 회의별, 의제별 한국 입장 정립

3. 주요 결과

- 한국 제안 '산업환경기술' 프로젝트 사업승인 획득
- 한국 코디네이터(KDI 소장) 유임
- 제10차 APEC/HRD 실무그룹 회의 1994.5월 서울 개최 결정

APEC(아태경제협력체)/HRD(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 제8차. Honolulu, 1993.5.25.-26.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30 / 1 / 1-157

1993.5.25.~26.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8차 APEC(아태경제협력체)/HRD(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 관련 자료임.

- 제8차 HRD 회의 의제별 입장(외무부)
- 회의 일정, 의제, 국별 참가자 명단(영문, 주최 측)
- 제8차 APEC/HRD 실무그룹 회의 결과 요약(영문, 주최 측)
 - 개회사, HRD 회의 요약
 - 교육포럼 진전사항 요약
 - 네트워크 사업 3건(NEDM, BMN, HURDIT) 진전사항 요약
 - 기타 개별 사업, 제안, 전망 등 요약 11건

2063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처

APEC(아태경제협력체)/EPG(저명인사그룹) 회의. 전2권 (V.1 제1-3차 회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30 / 2 / 1-237

1993년 중 개최된 제1~3차 APEC(아태경제협력체)/EPG(저명인사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APEC/EPG 회의(1993.3.6.~7., 싱가포르)

- 참가자
 - 8개국 대표, APEC 사무국 간사
 - 한국대표: 김만제 전 부총리
- 주요 합의사항: APEC 정상회담 개최 건의, '아·태 경제공동체' 개최 건의

2064

2. 제2차 APEC/EPG 회의(1993.6.6.~8., 도쿄)

- 주요 결과: 'APEC의 향후 협력방향'에 관한 건의문 채택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안 제시 및 '새 무역라운드' 출범 건의
 - '아·태 경제공동체' 및 '자유무역지대' 추진 건의
 - 상기 건의사항의 공식적 추진을 위해 APEC 정상회담 개최 건의

3. 제3차 APEC/EPG 회의(1993.8.11.~12., 발리)

- 주요 의제: '아·태 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4개 보고서 초안 검토
 - 역내 무역자유화 방안, 기능 분야 협력 방안, 자원의 공동개발 및 활용 방안, 아·태 경제공동체 선언문
- 참가자
 - 12개 APEC 회원국에서 지명한 저명인사
 - 한국대표: 김만제 전 부총리
- 주요 결과
 - 보고서 내용: 제1,2차 회의를 통해 마련된 초안에 큰 변화가 없음. 3년 후 아·태 자유무역지대화 달성시기를 설정함.
 - 향후 계획: 제5차 APEC 각료회의(1993.11월)에 전 EPG 구성원 참석하에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

APEC(아태경제협력체)/EPG(저명인사그룹) 회의. 전2권 (V.2 저명인사그룹 보고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30 / 3 / 1-143

APEC(아태경제협력체)/EPG(저명인사그룹) 회의가 1993년 중 3차례 개최되어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함.

1. APEC/EPG 보고서 요지

- 제목: A Vision For APEC: Towards an Asia Pacific Economic Community
- 내용
 - APEC의 장기 목표 설정
 - 자유무역을 내용으로 하는 아·태 경제공동체를 설정함.
 - 목표 달성을 위한 4가지 추진 건의
 - 세계 무역자유화 추진,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 역내 무역투자촉진화 추진, APEC 제도화 추진

2. 첨부자료

- EPG 1차 보고서(1993.9월)
 - A Vision for APEC: Toward an Asia Pacific Economic Community
- EPG 보고서(10월)
 - A Vision for APEC: Toward an Asia Pacific Economic Community
- APEC/EPG 보고서 건의사항별 입장(11월, 외교정책기획실)
- EPG 의장의 외무부장관 면담요록(11월, 외교정책기획실)
- APEC/EPG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11월, 경제기획원 협력정책과)

2065

대한민국 역사문화유산

93-1968

APEC(아태경제협력체)/ETI(경제동향 및 현안그룹) 회의. Honolulu, 1993.9.19.-2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30 / 4 / 1-122

정부는 1993.9.19.~20.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APEC(아태경제협력체)/ETI(경제동향및 현안그룹) 회의에 최영진 외무부 외교정책실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15개 APEC 회원국 대표

2. 주요 의제 및 결과

- 아태지역 경제의 비전
- 아태지역 경제 현황 및 전망
- 역내 직접투자 동향
- 경제 통계 교류
- ETI 향후 진로는 이후 SOM(고위급회의)에서 추가 논의 예정
- 1994년도 ETI 작업과제
- 차기 회의는 1993.11월 SOM 이전에 개최하기로 결정

2066

APEC(아태경제협력체) 사무국 개설 및 운영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30 / 5 / 1-149

1992~93년 중 APEC(아태경제협력체) 사무국 개설 및 운영 관련 내용임.

1. APEC 사무국 소재지 선정

- 제4차 APEC 각료회의(1992.9.10.~11.)에서 싱가포르가 APEC 사무국 소재지로 결정

2. APEC 사무국 협정안

- APEC 사무국의 법적 지위, 사무국 및 사무국 직원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사무국 협정안이 1993.3.4. APEC 사무총장과 싱가포르 간에 서명, 발효됨.
 - APEC 고위실무위원회(1992.12.1.~4., 워싱턴 D.C.)에서는 협정 초안에 대한 각국 수락 여부를 의장국에 통보하기로 함.

3. APEC 사무국 직원 파견

- 박진호 서기관
 - 파견기간: 1993.2.15.~94.2.14.

2067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처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30 / 6 / 1-87

2068

1.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1993.1.6.~7., 쿠알라룸푸르)

- 참가자: 이재성 KOPEC 사무국장, 김기환 박사, 박동선 외무부 정책총괄과장
 - 동 회의에는 정부대표가 KOPEC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함.
- 주요 의제
 - PECC와 APEC(아태경제협력체)와의 협력강화 방안
 - PECC 전문위원회 활동 보고 및 PECC 운영 방향
- 주요 토의사항: 금년도 APEC 상설사무국 설립 등 APEC의 부상과 관련 PECC의 활성화 방안

2. PECC 상임위원회(1993.7.9., 발리)

- 참가자: 이재성 KOPEC 사무국장, 김기환 박사
- 주요 의제: 쿠알라룸푸르 성명, PECC의 역할, PECC 활동의 성격과 범위
- 주요 토의사항: APEC 현황 보고, 재무소위원회 보고, 제10차 PECC 총회 준비, PECC 산하 연구기관 설립에 관한 제의

3. KOPEC(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활동

- 1993년도 제1차 이사회(서면) 개최(1993.4월)
- KOPEC 총회(1993.5월) 개최
- KOPEC 1993년도 제1차 집행위원회(1993.6월) 개최
- KOPEC 1993년도 제2차 집행위원회(1993.7월) 개최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제26차. 서울, 1993.5.24.-26.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30 / 7 / 1-309

1993.5.24.~26. 서울에서 개최된 제26차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PBEC 14개 회원국, 러시아, 중국 등 아·태지역 30여 개 국가의 기업인, 전·현직 국가원수, 각료 등 700여 명
- 조직위원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2. 회의 주제

- 개방적 지역주의-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

3. 개최 의의

- 아·태 협력에 관한 기업인의 입장 정립 및 국제여론 환기
- 회원국 기업인 간 사업 기회 확대 모색 및 상호 친목 도모
- 한국의 과학·기술발전 홍보

2069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
지원과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제26차. 서울, 1993.5.24.-26. 전3권 (V.2 연설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30 / 8 / 1-83

1993.5.24.~26. 서울에서 개최된 제26차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관련 연설문 내용임.

1. 김영삼 대통령 연설 요지

- ‘태평양 시대와 한국의 신외교’ 제하
 - 원칙과 이상, 도덕성을 바탕으로 민주, 자유, 복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중시
 -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따른 아·태지역 협력 추구
 - 새로운 통일관으로 남북문제 접근
 - 새로운 경제외교

2070

2. 한승주 외무부장관 연설 요지

- ‘아·태 경제질서와 개방적 지역주의’ 제하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제의 향배와 지역주의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대처 방법에 따라 아·태 경제질서의 방향이 결정
 - 한국은 광역의 태평양경제협력체 지향이 바람직
 - 태평양 동·서 양안의 연결을 강화하고, 상호 의존성을 증대하는 노력 필요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체)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 정책총괄과

MF번호 2023-130 / 10 / 1-258

1993년 중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체) 결성 추진 동향 및 한국 입장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0.12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체 주창
- 마하티르 수상은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 신념과 미국·유럽의 세계경제 주도에 강한 거부감
- 참가국은 아세안 6국,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미얀마, 베트남 등 13개국 상정

2. 추진 경과

- 아세안 경제각료회의(1991.10.7.~8.)에서 동 구상을 EAEC로 개칭, 아세안의 이니셔티브로 공식화
- 아세안 정상회담(1992.1월, 싱가포르) 시 추진방안 토의

3. 전망

- 아세안 일부 국가는 물론 미국 등의 소극적 입장으로 성사 여부 불투명
- 아세안의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추진에 따라 아세안 내부에서도 관심 저하 경향

4. 한국의 EAEC 참여 관련 고려사항

-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반발로 정치 문제화된 사안이고, EAEC 창설 문제로 APEC 회원국 간 갈등 소지가 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아세안과 서방 국가의 중간에 위치한 한국으로서는 양 집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입장 결정 필요
- 아세안 컨센서스로 추진하므로 회의 반대 명분은 미약

5. 참여 시 예상 실익

- 부정적 요소: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불만 발생
- 긍정적 요소: 한국 경제의 동남아 및 중국 진출 확대계기 마련 가능, 한·아세안, 한·말레이시아 관계 긴밀화, 한국의 능동적인 경제외교 수행

6. 향후 대책

- 현 단계에서 적극적인 반대 혹은 적극적인 참여 의사표명은 삼가
- 대외적으로 당분간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필요 시 미국 등 서방국과 의견 교환

2071

대한민국 외교부

AFTA(아시아자유무역지대) 추진

생산업도 1992-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0 / 11 / 1-76

1992~93년 중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창설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1.6월 아난 판아라춘 태국 수상, 공산품 관세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AFTA 창설 제안
- 1992.1월 싱가포르 개최 제4차 아세안 정상회담 시 AFTA 창설 합의
- 1992.12.10.~11. 아세안 AFTA 준비회의 개최
 - CEPT(공동실효유호관세) 적용대상 품목 지정 등 구체사항 협의

2072

2. 주요 내용

- 향후 15년 이내(2008년까지) 역내 관세를 부문별로 0~5% 인하
- 비관세 장벽 제거 노력

3. 한국 입장

- AFTA 창설에 대비하기 위한 아래 정책 방향 검토
 - 대아세안 직접투자 확대
 - 부품산업 이전
 - 아세안의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전3권 (V.1 1-5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통상과 / 중남미지역협력과

MF번호 2023-130 / 12 / 1-231

1993.1~5월 중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보완협상 관련 주요 동향임.

1. 미·멕시코 간 정상회담(1993.1.8., 미국 오스틴)

- 주요 의제
 - 국제 정세 및 양국관계, NAFTA 보완 문제
- 협의 결과
 - 미국 측 발표: NAFTA에 대한 지지 입장과 함께 노동과 환경 문제를 포함, 미해결 현안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향후 현안을 교섭할 예정
 - 멕시코 측 발표: NAFTA 관련 현 상황을 검토하였으며, 협정문을 재교섭하지 않을 것이나 미국이 관심을 가진 이슈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2. 캐나다, 미국, 멕시코의 NAFTA 보조협정 협상 동향

- 1993.3월, 4월, 5월에 각 1회씩, 그간 3차례 실무협상 지속
 - 단일 협상안 합의에 실패하여 1993.6월 초 워싱턴 D.C.에서 회의 개최 예정
- 협상 동향
 - 3국은 북아메리카 환경위원회나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구성 및 업무추진 방안에 대해 이견
 - 결렬 원인은 미국이 노동 환경기준의 불이행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하자는 입장이나, 멕시코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타결이 어렵다는 전망

2073

대한민국 무역면접 인터뷰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전3권 (V.2 6-10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통상과 / 중남미지역협력과

MF번호 2023-130 / 13 / 1-163

1993.6~10월 중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보완 협상에 관한 주요 동향임.

1. 제5차 NAFTA 보완 협상(1993.7.8.~10.)

- 노동, 환경 분야 3국 위원회에 초국가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함.
- 제3국 위원회의 권고 기능 관련 미국은 동 권고가 제재적 성격을 가질 것을 주장한 반면, 멕시코는 권고적 성격을 강조함.

2074

2. NAFTA 보완협정 교섭 타결(1993.8.12.)

- 협상 경위
 - 노동자 보호 및 환경보호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한 클린턴 미 행정부의 보완협정 체결 입장에 따라 1993.3월부터 집중 교섭
- 타결 내용
 - NAAEC(북미환경협력협정)과 NAALC(북미노동분야협력협정) 2개 협정 합의
 - 환경 및 노동 분야 기준 준수방안: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간 별도 방식 적용

3. NAFTA 관련 법안 통과 문제

- 미국 및 캐나다 동향
 - 미국: 총 435명 하원의원 중 공개 지지 의원 수는 130명 수준으로 하원 통과가 관건
 - 캐나다: 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은 재협상 의사 표명
- 향후 전망: 현재로서는 미 의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음.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전3권 (V.3 11-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통상과 / 중남미지역협력과

MF번호 2023-130 / 14 / 1-248

1993.11~12월 중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보완 협상 관련 주요 동향임.

1. 미국 하원 표결(1993.11.7.)을 앞둔 NAFTA 관련 동향

- 미 의회 통과 관련 동향
 - 통과 여부는 클린턴 미 행정부가 개별 의원 설득에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달림.
- NAFTA 회원국 동향
 - 캐나다: 신정부의 재교섭 입장이 미 의회 표결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입장
 - 멕시코: NAFTA 통과를 위한 대미 의회 로비를 low-key로 진행

2. NAFTA 이행법안, 미국 하원 통과(1993.11.18.)

- 표결 결과
 - 찬성 234, 반대 200으로 통과
- 평가
 - 차주 중 상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원 통과는 낙관 시
 - 상·하원 통과 시 당초 예상대로 1994.1.1.부로 발효 예정

3. NAFTA 발효 예정과 중남미 대응 동향

- 중남미 국가 반응
 -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일부 부정적 영향(단기적으로 멕시코에 비해 불리한 입장 등)에 대해 우려 제기
 - 중남미 국가의 대응 유형은 NAFTA 가입을 추진하거나, 멕시코를 통한 NAFTA와의 연계 추진 모색
- 한국 관련 영향
 - 중남미 진출 한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와 협력하여 북미 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방안 모색 필요

2075

대한민국 지역발전위원회

MERCOSUR(남미공동시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30 / 15 / 1-77

1993년 중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주요 동향임.

1. 제5차 MERCOSUR 경제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1993.4.23., 파라과이 아순시온) 개최

- 회의 의의
 - 경제장관회의는 MERCOSUR의 조직상 공식기구는 아니나, 정상회의에 앞서 실질적으로 MERCOSUR의 정책 결정
- 회의 결과
 - 회원국 간의 거시경제정책 조정과 교역상 문제 협의
 - 회원국 국내의 투자보장, 지식재산권, 불공정상행위 등에 관한 규정 조정에 대한 협상 촉진 합의

2. MERCOSUR 정상회담(1993.7.1., 파라과이 아순시온) 개최

- 회의 결과
 - 역외 공동관세율을 12.31.까지 확정하기로 합의
 - 브라질의 제의로 환율 변동폭의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합의
 - 회원국 간의 가축위생협정 및 불공정경쟁방지법 채택

CARICOM(카리브공동시장)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31 / 1 / 1-207

1993년 중 CARICOM(카리브공동시장)의 주요 동향임.

1. 미국의 대중미·카리브지역 관세특혜 추진 동향

- 법안 추진 개요
 - 미국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로 멕시코가 미국시장 진출에 있어 누리게 될 관세상의 특혜를 중미·카리브지역 국가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추진 중
 - 동 조치는 중미·카리브지역 투자 및 무역에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 업계의 주도 하에 추진
 - 5개 분야(섬유, 피혁, 신발, 설탕, 석유제품)에서의 대미 수출관세 특혜 제공, 반면 수혜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유치, 근로조건 상의 개선의무를 부담
- 평가 및 전망
 - 멕시코에 비해 임금이 저렴한 중미·카리브지역 국가로서는 동 법안통과 시 외국인 투자유치, 대멕시코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동 법안 통과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나, 관련 국가들이 미국 측의 보완조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시

2. 제14차 CARICOM 정상회담(1993.7.5.~8. 바하마) 개최

- 회의 결과
 - 경제 분야에서 CARICOM의 역내 경제통합 증진과 대외경제무역 부분에서 교섭능력 강화
 - NAFTA 및 EC(구주공동체)에 대해 공동보조
 - 정치 관계에서 CARICOM 의회를 조속 구성함으로써 CARICOM 및 카리브지역의 통합을 가속화시키기로 합의하고, 중남미지역과의 관계 증진을 추구하기로 합의
 - 가이아나 소재 CARICOM 사무국의 기능강화가 통합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동 사무국 및 관련 기구를 개편하기로 합의

2077

대한민국-외국관계사-외환

EEA(유럽경제지역) 창설. 전2권 (V.1 1988-91)

생산연도 1988-1993

생 산 과 통상3과 / 서구1과 / 서구2과

MF번호 2023-131 / 2 / 1-194

1988~91년 중 EEA(유럽경제지역) 창설에 관한 내용임.

1. 1990.6월 EC(구주공동체)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간 EEA 창설을 위한 공식협상 개시

2. 1991.10.22. 개최된 EC와 EFTA 간 합동각료회의, EEA 창설 합의

- EEA 법규 제정, EC 단일 시장 관련 법규를 EFTA 국내법으로 수용 등에 합의

2078

3. 1991.12.14. ECJ(구주재판소), EEA 법규가 EC 조약과 병립 불가하다고 판결

4. 1991.12.15. EC 집행위, 조기 보완하겠다고 발표

- 동 판결로 1993년 내 가서명은 어려울 전망

EEA(유럽경제지역) 창설. 전2권 (V.2 1992-93)

생산연도 1988-1993

생 산 과 통상3과 / 서구1과 / 서구2과

MF번호 2023-131 / 3 / 1-139

1992~93년 중 EEA(유럽경제지역) 창설에 관한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2.4.14. EEA 조약 가서명 및 각국 비준 절차 개시
- 1992.5.2. EEA 협정 서명
- 1992.10.28. 유럽의회, EEA 협정 비준
- 1992.12.6.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동 조약 부속의정서 비준안 부결
- 기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에서는 비준 완료

2. 부속의정서 주요 내용

- EC(구주공동체) 역내 4개 빈국 지원을 위한 EFTA 국가의 결속기금 규모를 당초대로 유지

3. 부속의정서 서명

- 1993.3.17. 브뤼셀에서 개최된 EC와 EFTA 회원국 간 회의에서 정식 서명됨.

4. 1994.1.1. EEA 출범

2079

대한민국-외국관계사-외교편

OPEC(석유수출국기구)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23-131 / 4 / 1-62



1993년 중 OPEC(석유수출국기구) 관련 내용임.

1. OPEC 관심사항

- 산유국 간 국제유가 안정방안 협의
- 1993년에는 유가급락 방지를 위한 감산, 환경 보호, 에너지세 도입 등으로 논쟁
 - 이라크·쿠웨이트 간 전쟁 복구를 위해 쿠웨이트의 감산 예외 인정을 둘러싸고 이견 노정

2080

2. OPEC 의장 활동

- 1993.1월 회원국 순방: 감산 설득
 - 쿠웨이트 방문 시 전쟁 복구를 위한 감산 유예 시사
- 7월 회원국 순방: 감산 이행 강조
 -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UAE 방문

3. 협의 동향(1993년도)

- 2.13.~16. OPEC 감시위원회 비엔나 개최
- 3.14. GCC(걸프협력회의) 석유장관회의 사우디 제다 개최
- 4.4.~5. GCC 외무장관회의 사우디 리야드 개최
 - 유가 안정에 추가하여 중동문제와 역외 협력방안 논의
- 4.12. OPEC 석유장관회의 오만 무스카트 개최
- 4.13. 세계 석유장관회의 오만 무스카트 개최
- 4.18. GCC+이집트, 시리아 재무장관회의 카타르 도하 개최
- 6.8.~10. OPEC 각료회의 제네바 개최
- 9.25.~29. OPEC 감시위원회 제네바 개최
- 11.23.~24. OPEC 각료회의 비엔나 개최
 - Al-Attiah 카타르 동력산업장관이 의장으로 선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관련 국내법규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1 / 5 / 1-174

1991~93년 중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관련 국내법규 개정 관련 문서임.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환경처 주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입 관련 조항을 CITES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보완

2. 조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 농림수산부 주관
- 야생조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

2081

대한민국 자연환경보전법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상임위원회, 제29차. Washington D.C., 1993.3.1.-5.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1 / 12 / 1-120

제29차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상임위원회가 1993.3.1.~5.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1. 국제사회 동향

- 미국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불법교역 국가로 지정된 국가로부터 관련 품목의 수입 금지 규정
 - 한국 및 대만 등이 의심국가
- 영국은 교역금지 동물제품 교역 묵인국가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규정한 규제법안 통과
- WWF, FOA, EII 등 국제 환경보호단체들은 선진국을 상대로 보복조치 채택 강화 압력 증대
- CITES 회원국들은 상임위에서 강력한 보복 결의 추진

2. 주요 결과

- 규제 대상국가: 한국, 중국, 대만, 예멘
- 코뿔소 뿔의 거래 금지, 기보유 코뿔소 뿔의 폐기 및 불법거래 근절대책 강화 촉구
- 상기 조치 불이행 시, 1993.9월 개최 예정인 제30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를 CITES 당사국들에게 촉구 예정

3. 한국 정부의 조치

- 관계부처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대책 강구 노력
 - 약사법 및 자연환경보호법 등 개정
 - 조류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개정 추진
-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명 자료 전달
 - 1993.1.21. 워싱턴 D.C. 개최 공청회에 보사부 및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입장 설명
 - 1.31. 한국의 입장 설명 자료를 미국 정부에 전달
- 1993년 상반기 중 CITES 가입 추진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발효 후속조치 및 이행준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2 / 3 / 1-189

1993년 중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발효 후속조치 및 이행 준비 문서임.

1. 기술 자문단 방한(1993.12.2.~5.)

- 자문단 구성
 - 미국, 호주, 남아공 CITES 담당관 등
- 주요 활동
 - 코볼소 불 거래 규제 및 CITES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 점검
 - 코볼소 불 거래 관련 실태조사
 - CITE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자문

2. CITES 고위급 대표단 방한 계획

- 기간: 1994.1.24.~27.
- 대표단 구성
 - Murray Hosking 상임위원장, Izgrev Topkov 사무총장 등 6명
- 방한 목적
 - 코볼소 불과 호골의 관리상황 개선 여부 평가

WWF(세계야생동물기금) 코뿔소 보존 청원문제 및 대책. 전2권 (V.1 미국정부 공청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1 / 6 / 1-176

1992~93년 중 한국의 코뿔소 보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 동참 관련 내용임.

1. 배경

- 1992.11.12. WWF(세계야생동물기금) 등이 미국 내무장관 앞으로 코뿔소 보존을 위한 청원서 제출
 - 한국 포함 4개국을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 국제거래가 금지된 코뿔소 볼 불법거래국으로 적시
 - 동 4개국으로부터 수산물 및 야생동식물 등 수입 금지 청원
- 1992.10월에는 UNEP(유엔환경계획) 코뿔소 볼 특사가 방한했으며, 여러 외신에서 한국의 의혹 보도
- 한국은 1983년부터 코뿔소 볼 수입을 금지하고, 국내제조 의약품 처방 및 사용을 금지
 - 국내입법 및 강제조치는 미흡
- 한국은 1993년 중 CITES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 필요성 인식

2. 진전사항

- 1992.11.23. 외무부는 국내 관계부처의 주의를 상기시키고 필요 조치 독려
 - 보건사회부, 환경처, 농림수산부, 산림청, 내무부, 경찰청, 관세청 등
- 12.2. 미국 및 케냐 주재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조치 현황 및 대책 등 자료 송부
 - 미 국무부, 내무부 및 WWF 지부, 케냐 소재 UNEP 담당관을 대상으로 설명

WWF(세계야생동물기금) 코뿔소 보존 청원문제 및 대책. 전2권 (V.2 결과 및 대책)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1 / 7 / 1-128

1992~93년 중 한국의 코뿔소 보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 동참 관련 내용임.

1. 진전사항

- 1993.1.21. 미국 정부 주관 공청회에 한국 보건사회부 및 경찰청 관계자, 학계 인사 참석
 - 미국 국무부 및 내무부, WWF(세계야생동물기금) 등에 별도 설명
- 9.7. 내무부는 WWF 규제대상국 확인 및 무역규제조치 청원에 대해 최종 결정
 - 불법거래국 확인대상에서 한국은 제외
- 1993년 중 한국 유관부처는 조치사항 및 단속 실적 등을 수시로 외무부에 통보
 - 경찰청, 법무부, 산림청, 관세청, 보건사회부

2. 일부 국가 및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 1993.1월 네덜란드 소재 세계자연보호재단은 현지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 1월 TRAFFIC International 동남아프리카 지부는 한국에서 새로운 조사연구 희망 표명
- 4월 영국 외무장관은 주한 영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조치를 희망하는 Non-Paper 전달

3. 참고사항

- 1993.6.23.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안 국무회의 통과
 - 7.9. 스위스 정부에 기탁 추진
 - 사향노루, 곰 등 동식물에 대해서는 3년 유보 후 철회 추진

2085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
국
사무국

WWF(세계야생동물기금) 코뿔소 뿔 보존협의 및 관련 인사 방한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1 / 8 / 1-176

1991~93년 중 WWF(세계야생동물기금) 코뿔소 뿔 보존협의 및 관련 인사 방한 내용임.

1. Martin Bradley UNEP(유엔환경계획) 특사 방한(1992.10.8.~31.)

- 코뿔소 뿔의 불법거래 문제 협의
- 보건사회부, 대한의약품수출입협회 관계자 면담

2. WWF 소속 거래감시 관계관 방한(1993.5.2.~6.)

- 코뿔소 뿔의 국내거래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확인 및 시장 현황 파악

3. I. Topkov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사무국장 방한 (1993.5.6.~9.)

- 한국의 CITES 가입 관련사항 협의

지구환경 관계장관 대책회의

생산연도 1993-1994

생 산 과 환경협력과

MF번호 2023-131 / 9 / 1-137

1993~94년 중 개최된 제2~3차 지구환경 관계장관 대책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제2차 대책회의(1993.6.2.)

-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
- 안건
 - 지구환경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대응방안
 - 제1차 CSD(지속개발위원회) 본회의 참가대책
 - 국제 환경협약 가입과 관련한 주요 국제동향과 한국 측 기본방향
 - 기후변화협약 가입 대책
 -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런던뎀핑협약,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 대책

2. 제3차 대책회의(1994.4.11.)

- 참가자: 국무총리(주재), 경제부총리, 외무부장관 등 16개 관계부처 장(차)관
- 안건
 - 국제 환경협상 동향과 대응방안
 - 1994 환경외교 추진방향 및 계획
 - 지구환경 관련 산업대책 및 ISO 환경경영 표준화 대응방안
 -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대책
 - 지구환경 관련 홍보계획

2087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지구환경대책기획단 회의, 제1-14차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1 / 10 / 1-170

1993년 중 개최된 제1~14차 지구환경대책기획단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취지

- 1992.6.3.~14.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지구정상화회담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 및 의제 21'에 의거한 구체적 실천방안 수립대책 마련

2. 제1차 회의(1993.3.26.)

- 참가자: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주재), 총리실, 외무부,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

3. 제2차 회의(1993.4.8.)

4. 제3차 회의(1993.4.20.), 제4차 회의(1993.5.14.), 제14차 회의(1993.12.30.)까지 개최

- 지구환경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등 협의

한·일본 환경문제 Task force 합동회의, 제2회. 서울, 1993.2.8.-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31 / 11 / 1-84

1993.2.8.~9. 서울에서 한·일본 환경문제 Task Force 합동회의가 개최됨.

1. 회의 결과

- 일본의 환경문제 현상과 기업의 대응
 - 폐기물 대책에 대한 일본 산업계의 대응 현황
 - 유통산업의 폐기물 리사이클링 시스템 및 공해방지 협정 현황
- 한국의 환경문제 현상과 기업의 대응
 - 한국 수질환경 현황과 전망
 - 한국 중소기업의 환경문제 대응 사례
 - 한국의 폐기물 리사이클링 시스템
- 한일 간 환경 협력에 관한 검토
- 동아시아 환경문제(산성비)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 검토

2. 향후 추진 방향

- 금년 가을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중간보고서 작성 예정
- 발굴된 공동협력 사업은 한·일 경제협회가 추진 예정

93-1992

GEF(지구환경금융) 참가국 회의, 제5차. 북경, 1993.5.26.-28.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1 / 13 / 1-245

정부는 1993.5.26.~28.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GEF(지구환경금융) 회의에 최석영 외무부 과학환경과 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파견 목적

- GEF의 조직·운영체계 개편 및 기금 확대에 관한 중간평가

2. 참가자

- 60여 개국 대표

3. 참가국 관심 사항

- 지원대상 사업 및 범위
- 정책결정체제
- 제도적 장치
- 자원
- 여타 국제기구 및 NGO와의 관계

4. 주요 결과

- GEF 개편방안 및 기금 확대계획이 구체화되고, 핵심 쟁점사항 이외 전반적 합의도출
- 정책결정 방식 관련, 개도국의 확고한 레버리지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용인 전망
- GEF 개편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여, 당분간 정책적 협의 치중 예상
- 세계환경신탁기금 출연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협동 재원으로 출연에 대한 비율 제한 추진

2090

GEF(지구환경금융) 최종회의. Cartagena(콜롬비아), 1993.12.8.-1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1 / 14 / 1-124

정부는 1993.12.8.~10.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GEF(지구환경금융) 최종회의에 임홍재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한국이 잠재적 공여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점을 염두에 두고 GEF 참여방식, 예상 부담액 및 참여시기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파악
- GEF가 주공여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 등에서 한국이 공여국으로 분류되지 않은바, GEF Constituency 분류 시 한국을 개도국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2. 회의 결과

- GEF 개편 관련, 최종 타결에 실패
 - 향후 GEF 운영 주도권 장악을 위한 선진·개도국 간 대립으로 타결에 실패
 - 재원 집행의 효율성 및 민주성 여부, 사무국과 이사회 관계, 표결방식 등에서 현격한 입장차
- 최종 개편안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선진·개도국 모두 조속한 협상 재개 입장 표명 (1994.1월 중 GEF II 출범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3. 전망

- 선진·개도국 모두 금번 회의의 결렬이 GEF 구조변경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금번 협상의 실패로 정치적 당혹감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
- 한국은 금번 회의 결렬로 GEF 참여에 따른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데 시간적 여유는 얻었으나, GEF II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감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2091

대한민국 외교부

GEF(지구환경금융) 특별회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1 / 15 / 1-247

1993.9.23.~24. 세계은행사무국에서 개최된 GEF(지구환경금융) 특별회의의 관련 내용임.

1. 회의 결과

- GEF 개편 관련, 지난 3차례 GEF 특별회의의 논의를 기초로 선진·개도국 간 쟁점에 대한 이견을 목록화하여 의견 수렴 시도
- 선진·개도국 간 이슈별 이견에도 불구하고 1993년 말까지 GEF 개편안을 마련, 1994년부터는 GEF II (Restructured GEF)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 형성

2092

2. GEF 참여 및 개편 관련 한국의 대응

- GEF 참여 시기
 - 개도국의 환경 문제 관련 투자사업 및 기술지원 목적으로 1991년 중반부터 3년간 시범운영
 - 무상공여 또는 장기저리의 양허성 자금 형식으로 운영(기금 규모는 총 13억 달러로 구성)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게 될 경우 대개도국 ODA(공적개발원조) 및 GEF 참여 압력이 거세질 전망임을 고려하여, GEF 참여(시범 기간 종료 이후)로 인한 재정 부담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 참여 시기 판단
- GEF 개편
 - 선진·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큰바, 한국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 위상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최종적 입장 정립

UNEP(유엔환경계획) 코뿔소 보존 재원조달에 관한 회의. Nairobi(케냐). 전2권 (V.1 예비회의, 1992.12.16.-18.)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1 / 16 / 1-176

정부는 1992.12.16.~18.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UNEP(유엔환경계획)의 코뿔소 보존 재원조달에 관한 회의를 위한 예비회의에 이인수 주케냐대사관 환경관을 수석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28개국 및 IUCN(국제자연보존연맹), WWF(세계야생생물기금) 등 13개 비정부간 기구

2. 의제

- 남부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의 코뿔소 현황, 중동 및 극동아시아에서의 코뿔소 볼 거래 현황 등
- IUCN/SSC 아프리카 코뿔소 전문가그룹 회의 결과 검토
- IUCN/SSC 아시아 코뿔소 전문가그룹의 코뿔소 보호계획 및 우선순위 대책 검토
- 코뿔소 분포국가들이 작성한 실행계획 초안 검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원조국가들의 코멘트
- 권고사항 채택

3. 회의 결과

- 회의는 1993.6월 개최되는 '코뿔소 보호 재원조달을 위한 분포국가, 소비국가 및 원조국가 회의'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회의임.
- 특히 한국 관련사항으로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비가입 문제, 코뿔소 볼의 국내 불법거래 규제조치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소극적 자세 등이 광범위하게 지적됨.
- 일부 분포국가 및 환경단체에서 코뿔소 볼의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지적함.

2093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UNEP(유엔환경계획) 코뿔소 보존 재원조달에 관한 회의. Nairobi(케냐). 전2권 (V.2 본회의, 1993.6.28.-7.1.)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2 / 1 / 1-95

정부는 1993.6.28.~7.1.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UNEP(유엔환경계획)의 코뿔소 보존 재원조달에 관한 회의에 이인수 주케냐대사관 환경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37개국, UNEP 등 6개 국제기구, SWAN, ICUN, WWF(세계야생동물기금) 등 26개 비정부간 기구

2094

2. 의제

- 코뿔소 보존 UNEP 특사의 보고
- 각국의 코뿔소 보존 실행계획, 우선순위 프로젝트 발표 및 토의
- 코뿔소 보존 관련 조정
- 코뿔소 보존 재원조달 관련 원조국의 반응
- 권고사항

3. 회의 결과

- Martin 특사는 분포 국가 및 소비 국가들의 실태를 보고하면서,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함.
 - 동 특사는 최근 한국 정부가 코뿔소 볼의 불법거래에 대해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취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
- 환경보호단체의 하나인 TRAFFIC도 한국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6개월간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함.
- 차기 CITES 상임위원회, 1993.9.6.~8. 브뤼셀 개최 결정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 회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2 / 2 / 1-210

1993년 중 개최된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 회의 내용임.

1. 제9차 당사국 실무회의(1993.8.30.~9.3., 제네바)

- 참가자
 - 80여 개 국가 및 20여 개 국제기구 대표
 - 수석대표: 이석조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 주요 결과
 - 다자기금 관련사항: 1994~96년간 다자기금 규모가 5억 1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1993년 말에 기금 미납 상황을 검토하고 미납액 납부 방안 마련
 - 할론의 필수용도 인정 여부 및 국제 할론뱅크 문제: UNEP(유엔환경계획) IE/PAC가 국제 할론뱅크의 클리어링 하우스 역할을 수행하며, 할론기술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함.
 - 규제물질을 이용하여 제조된 물질에 대한 무역제재 실시는 불가능
 - 메틸 브로마이드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 문제 관련 결론 미합의
- 평가 및 건의사항
 - 금번 회의는 1994~96년 중 다자기금액을 제4차 당사국 회의에서 합의한 범위(3억 4천 만~5억 달러)를 초과한 5억 1천만 달러로 잠정 추정함으로써 향후 기금 보충에 낙관적인 방향을 제시함.
 - 한국 측 관심 의제에 대하여 제기된 반대의견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정리하고, 회의 참가 전에 EC(구주공동체), 영국, 호주 등 반대국가와의 사전협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2095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제5차 이행위원회 회의(1993.3.9., 제네바)

- 참가자
 -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카메룬, 칠레, 태국, 우간다, 미국, 한국 9개국 대표
 - 정부대표: 최재철 외무부 과학환경과 사무관, 유기혁 상공부 정밀화학과 화공사무관
- 회의 목적
 -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들의 의정서 의무 조항 이행 상태 점검
 - 가입국 제출 자료 검토: 1991년도 생산 및 소비량, 제5조 비적용국들의 규제물질 감축 실적, 대개도국 연구·기술지원 실적
- 주요 결과
 - EC 및 일부 EC회원국들의 자료 보고 위반 관련 결정사항: 오존사무국에서 이행위원회 결정을 EC 측에 서면 통보 및 자료 보고 독촉
 - 제5조 적용국들의 자료 보고 위반 관련 결정사항: 사무국에서 미보고국에 보고 필요성 및 제공가능한 지원사항 서면 통보
 - 이행위원회 참가대표의 연속성 보장

- 평가 및 건의사항

- 한국은 1992년도 규제물질 1인당 소비량이 0.3kg 초과가 분명한 만큼(0.6kg 예상), 제6차 이행위원회에서의 의정서 위반국에 대한 제5차 가입국회의 권고사항을 검토 후 자료 보고 제출시기 결정이 바람직함.

3. 제6차 이행위원회 회의(1993.8.26., 제네바)

- 참가자

-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카메룬, 미국, 태국, 우간다, 한국 등 7개 이행위원국 대표
- 정부대표단: 최재철 외무부 과학환경과 서기관

- 주요 토의사항

- 이행 기구 및 MP 다자기금에 의한 의정서 제5조 적용국(개도국) 지원활동 검토
- 자료 미보고국에 대한 토의
- 의정서 미가입국이나 자료를 보고한 국가에 대한 토의
- 의정서 제5조 적용 당사국으로서의 개도국 지위
- 이행위 참가대표들의 연속성 보장

- 평가 및 건의사항

- 1992년도 한국 규제물질의 1인당 소비량이 0.3kg을 초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1994.3월경 개최 예정인 제8차 이행위원회 회의 이전까지 1인당 규제물질 소비량을 0.3kg 이하로 감축한 1993년도 자료와 1992년도 자료 보고를 동시에 사무국에 제출함이 바람직할 것임. 사무국은 한국이 1993년도 소비량을 0.3kg 이하로 감축하지 못할 경우 제5조 비적용국의 감축 스케줄을 준수해야 할 것임을 밝힘.

4. 제5차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회의(1993.11.15.~19., 방콕)

- 수석대표

- 이상팔 주태국대사관 참사관

- 주요 결과

- 1994~96년간 '오존기금' 총액을 5억 1천만 달러로 확정
-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규제물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반조치 확인
- 소비수준의 변화에 따른 개도국으로의 재분류 문제에 대한 일반지침 확인

- 재분류 국가의 지위문제(한국 측 관심사항)

- 소비수준을 1인당 0.3kg 이하로 낮추는 개도국은 당해연도부터 제5조 1항(개도국 조항) 적용국의 권리의무를 향유 주장
- 선진국은 한국이 아직 소비수준을 낮춘 자료가 없고, 한국이 오존기금의 수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 논리 전개

Northern Forum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32 / 4 / 1-97

1. Northern Forum 가입 추진

- 북극지역 경제발전, 과학, 기술 및 환경보호 협력을 위해 1991.11월 창립된 북반구 국가 간의 지방정부 협의체인 Northern Forum에 한국은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
- 1993.7월 외무부는 동 Forum에 경기도의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향후 Forum 활동(북극 해운항로, 환경조사 및 모니터링, 북극관광, 야생동식물 관리 등)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 다만, 내무부는 경기도의 정회원 가입 문제는 여타 관계부처의 공동참여가 전제되어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 소극적 입장 견지
 - 환경처, 과기처 등은 예산상 제약을 이유로 회의 참석에 소극적 입장
- 외무부는 제1차 Northern Forum 총회(1993.10월)에 주노르웨이대사관 관계관을 옵서버로 파견

2. 제1차 Northern Forum 총회(1993.10.1.~3., 노르웨이 트롬쇠)

- 미국 알래스카, 일본 홋카이도, 중국 흑룡강성, 러시아 마가단주, 캄차카주, 핀란드 라피지역, 노르웨이 북부지방 당국, 남트론헬라그주 등 참가
- 트롬쇠 선언 채택
 - 생태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생태계 관리 및 북극지역 개발에서 환경 고려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원 강화
 - 8대 우선사업 계획(환경 모니터링, 야생 생태계 관리, 북극항로, 북반구에서 자금형성, 인간생태, 환경 건전성과 비상시 대응, 우회 항공로, 해양자원 관리), 5대 중장기 우선사업(주택여건, 관광, Northern Forum 과학아카데미, 여성, 교육) 채택

2097

대한민국 지역발전 연구원

미국의 대아시아 환경협력 구상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2 / 5 / 1-168

1992~93년 중 부시 미 대통령이 발표한 대아시아 환경협력 구상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2.1.4. 부시 대통령, 싱가포르 방문 중 대아시아 환경정책을 구상 중임을 발표
- 아시아지역 환경 보호와 개발의 균형 유지를 위한 창조적 협력방안의 일환
- 1992.1.7. 미 대외원조처, 상기 구상의 세부내용 발표

2098

2. 기본 목적

- 미국 환경기업의 아시아 진출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미국의 경제적 이익 도모
- 산업공해와 천연자원 고갈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보존 노력 지원
- 미국의 경험, 기술 및 자본을 활용하여 아시아 국가 지원

3. 관장 및 참여 기관

- 관장: 대통령 직속 무역촉진조정위원회의 실무그룹
- 참여 기관: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환경보호처, 대외원조처 등 19개 기관

4. 사업 개요

- 초기 협력사업: 전문가 훈련 및 교환 사업, 양국 환경업계 간 교류 추진사업
- 추후 환경기술 교류나 업계 간 합작투자(제3국 진출 포함) 모색

환경 관련 국제회의 및 세미나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2 / 6 / 1-95

1990~93년 중 환경 관련 국제회의 및 세미나에 관한 내용임.

1.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회의원 회의(1992.11.23.~28., 브라질리아)

- 대표단: 박정훈 의원, 입법 조사관 1인
- 회의 결과
 - 각국 기조연설: Agenda 21의 실천 중요성과 차세대에 환경 교육 필요성 강조
 - 한국대표: 총리가 주관하는 환경위원회 설치 설명,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심포지엄 (1992.9월, 서울) 결과 보고 및 1993년 중 유엔과 한국이 공동주최하는 동북아 환경회의의 서울 개최를 홍보함.
 - 브라질리아 최종 문안 채택: 리오 환경 협약 시 채택된 협약에 미가입한 국가에 대한 서명 촉구 등

2. EAPCED(동아시아환경개발의원회의)(1993.6.7.~8., 서울)

- 참가 대상국
 -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6개국
- 회의 주제
 - EAPCED 창설 문제

2099

대한민국 의회도서관

한·일본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6차. 동경, 1993.2.2.-3.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2 / 7 / 1-95

1993.2.2.~3. 도쿄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본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관련 기본문서 내용임.

1. 회의 준비내용

- 한·일본 간 과학기술 협력과제에 대한 과기부의 검토의견
- 의제에 대한 기상청, 교육부, 산림청, 농진청, 상공부 등 참여 부처의 검토의견

2. 한·일본 과기협력위 회의(안)(외무부)

- 회의 일시 및 장소: 1993.2.2.~3. 일본 외무성
- 회의 일정
 - 2.2. 수석대표 회의, 개회식, 의제 1, 2, 3 협의
 - 2.3. 의제 4 협의, 한국 수석대표 주최 오찬
- 수석대표: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의제 및 한국 입장
 - 양국 과학기술정책: 핵심 선도 기술 중점 개발지원, 과기인력 양성 등
 - 양국 간 협력 현황: 제5차 회의 시까지 합의된 123개 기존사업 현황에 대한 개괄적 평가
 - 신규과제 협의: 한국 측이 제안한 신규과제 45건이 합의되도록 노력

한·일본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6차. 동경, 1993.2.2.-3. 전2권 (V.2 의제 및 자료)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2 / 8 / 1-236

1993.2.2.~3. 도쿄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본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일본 측: 스토 다카야 외무성 과학기술 심의관

2. 회의 성과

- 한·일본 정상회담 후속 협력과제 협의
 - 일본 주도의 고도 첨단 과학기술 분야 국제 공동사업 참여 확대에 합의
 - 양국 간 과학기술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협의
- 사립대학 등 민간 기관의 협력사업 참여 허용
 - 당초 정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참여만 허용이 되어 왔으나, 문호개방 확대에 합의
- 협력과제 검토
 - 기합의(101건), 신규 제안(44건) 등 총 145건 협력과제 수행에 합의
- 차기 회의: 1993.12월 또는 1994.1월 중 서울 개최 추진 합의

2101

대한민국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한·말레이시아 기술협력회의, 제6차. 서울, 1993.7.5. 전2권 (V.1 1992.12-93.6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32 / 9 / 1-107

1993.7.5.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말레이시아 기술협력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주요 의제

- 연수생 사후관리
- 한국어교육센터 발전계획
- 청소년 교류사업

2102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말레이시아 측: Dat'o Mahmud bin Taib 수상실 인사원장

3. 관계부처 대책회의(1993.6.28.)

- 참가자: 외무부, 총무처, 교육부, 문체부 관계자 등
- 의제별 한국 측 입장 검토
 - 말레이시아 한국어 교사 요원 5명 학위코스 교육
 - 말레이시아 대학생들 국내 대학교 사범대학 국문과 또는 국어교육과에서 교육하는 방안 검토 예정
 - 사회과학 분야 유학생 10명 추가 파견
 - 1994년도 사회과학 분야 유학생 10명의 파견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 예정
 - 청소년 교류사업
 - 청소년 교환 방문단의 규모, 방문기간, 프로그램의 구체적 일정 및 경비부담 등에 대하여 검토 중

한·말레이시아 기술협력회의, 제6차. 서울, 1993.7.5. 전2권 (V.2 1993.7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32 / 10 / 1-82

1993.7.5.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말레이시아 기술협력회의 결과 내용임.

1. 회의 결과(의제별 주요 합의사항)

- 한국어 교사 요원 학위코스 교육
 - 말레이시아 측은 현지인 한국어 교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한국어 교사 요원 5명을 말레이시아 측 경비부담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을 시킬 것을 제의한바, 한국 측은 원칙적으로 수락함.
- 사회과학 분야 유학생 10명 추가 파견
 - 말레이시아 측은 1994~97년간 매년 사회과학 분야 말레이시아 유학생 10명을 말레이시아 측 정부 지원으로 파견할 것을 제의한바, 한국 측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공계 유학생(매년 10명) 외에 추가로 사회과학 분야 유학생 10명 접수에 동의함.
- 청소년 교류사업
 - 말레이시아 측은 1994~98년간 매년 약 30명을 1개월 이내 기간으로 교환 방문하는 것을 제의한바, 한국 측은 원칙적으로 수락함.
- 한국어센터 건립 계획
 - 말레이시아 마라 공대 내 한국어센터를 1994.4월 준공 예정으로 양측은 향후 동 센터의 활동 영역을 한국어에서 한국학을 포함, 확대하기로 합의함.
- 연수생 사후관리
 - 양측은 한국에서 수학한 말레이시아 유학생 동창회를 지원하기로 합의함.

2. 평가

- 금번 회의에서는 주로 한·말레이시아 양국 간 문화협력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바, 금후 양국은 기술협력 못지 않게 양국민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협력 관계의 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의 중요성을 감안, 아세안의 주요 조정자인 말레이시아와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하여 동 회의를 계속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2103

대한민국-말레이시아

한·러시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제3차. 서울, 1993.5.29.-6.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2 / 11 / 1-129

제3차 한·러시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1993.5.29.~6.3.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시중 과학기술부장관
- 러시아 측: B. G. Saltykov 과학기술부장관

2. 주요 일정

- 한·러시아 과학기술부장관회담
- 러시아 첨단기술 전시회 및 세미나
- Saltykov 과학기술부장관의 한국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예방
- 대덕연구단지, 대전 엑스포, 삼성전자, 포항제철, 삼성전자 등 방문 및 시찰

3. 주요 의제

- 첨단기술 이전 기업화 과제 추진
- 과학기술 인력교류
- 러시아 첨단기술 전시회·세미나 후속조치
-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및 러·한 기술협력센터 활성화
- 군수산업 민수화 참여 등

4. 주요 합의 내용

- 러시아의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한국에 이전·기업화하는 과제와 관련, 신규 과제 20개를 추가하여 기합의 과제 등 총 79개 과제를 수행하기로 함.
- 1993년 중 러시아 과학기술자 200여 명의 한국 산업체, 연구소, 대학 내 공동연구 및 기술 자문, 한국 측 연구원의 러시아 파견을 추진함.
- 한·러, 러·한 과학기술협력센터의 활동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함.
- 러시아 군수산업 민수화 프로그램에 한국 측 참여시 적극 지원하고, 과학기술 정보 및 통계자료의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러시아 연구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시설, 장비,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러시아 내 연구개발 중심지에 한국 측의 연구기지를 설립하여 러시아 기술의 국내이전을 가속화하기로 함.

한·미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93.12.9.-1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2 / 12 / 1-162

1993.12.9.~10.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미국 측: Boright 국무부 과학기술 부차관보

2. 주요 의제

-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설명
- 과학기술협력 현황 검토 및 증진방안
- 지역 및 다자 간 협력

3. 회의 결과

- 양국 간 공동연구 추진
 - 한국 측의 40개 연구과제 제시에 대해 미국이 추후 검토 결과를 통보 예정
- 기관 간 약정 체결 문제
 - 환경처와 미 환경보호처 간 양해각서 발효 확인 및 세부 시행약정 체결 원칙 합의
- 미국 에너지부 내부규정 시정 문제
 - 미국이 검토 중인바, 1994.1월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 개최 시 결과를 통보하기로 함.
- 한·미 기술개발재단 설립 문제는 한국이 구체적인 안을 작성해 계속 검토하기로 함.

4. 회의 평가

- 미국 측에서 다수의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공동연구, 협력약정 체결 등 기관 간 협력에 높은 관심과 열의를 반영

한·미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93.12.9.-10.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2 / 13 / 1-114

1993.12.9.~10.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 관련 자료임.

1. 의제 선정

-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설명, 과학기술협력 현황 검토, 양국 과학기술협력 증진
- 지역 및 다자 간 협력 문제, 차기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와 장소

2. 정부 훈령

- 기본 훈령
 - 제1차 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과거 분야에서의 중심적 정례회의임을 인식하고, 양국 간 건실한 협력기반 조성에 주력할 것
 - 미국과의 상호 보완적 과기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발전하여 21세기를 향한 진전된 한·미 과학기술협력 관계 수립에 기여할 것
- 세부 훈령
 - 한국의 과학기술 기본 과제와 중점 사업 설명
 - 새로운 과기협정 발효로 상호 협력 증진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설명
 - 공동연구 과제 제시
 - 미국 에너지부 규정 중점 관리대상국(민감 국가) 목록에서 한국 삭제 요청

3. 주제별 토의자료

한·미국 과학기술협력포럼, 제1차. Washington D.C., 1993.1.11.-14.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 북미2과

MF번호 2023-132 / 14 / 1-100

1993.1.11.~14.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국 과학기술협력 포럼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91.9월 김진현 과기처장관 미국 방문 시 A. Bromley 미 대통령 과학고문과 포럼 개최 합의
- 1992.12월 워싱턴 D.C. 개최 PEI(한미영환경개선협의) 작업반 실무회의에서 미국 측에 공식 통보
 - Gregg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 측 참가자에게 동 포럼 초청 서한 발송

2. 참가자

- 한·미 양국 의회, 행정부, 재계, 학계 등 주요인사 350여 명
 - 한국 측: 과기처장관, 주미국대사, 삼성전자 회장, 대우중공업 사장, KIST 원장, 항우연 소장 등
 - 미국 측: 하원 우주과기위원장, 대통령 과학고문, 상무부 기술정책국장, GTE 사장 등

3. 주요인사 연설내용

- 김진현 과기처장관
 - 한·미 기술개발재단 설립 제안
- Brown 미 하원 우주과기위원장
 - 재단 설립을 통해 한·미 과학기술협력을 체계적 협력관계로 발전 제안
- 현홍주 주미국대사
 - 한·미 간 상호보완적 기술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
- Schneider 미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 클린턴 미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설명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4. 주요 협의사항

- 한·미 기술개발재단 설립
- 한·미 과학기술공동위 구성
- 첨단산업기술 연구협력 추진
- 원자력 분야 협력 추진

2107

대한민국 과학기술 협력

한·미국 기술실무위원회, 제2차. Washington D.C., 1993.6.16.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32 / 15 / 1-59

1993.6.16.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 기술실무위원회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92.1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추진된 PEI(영업환경개선협약) 마련을 위해 4개 T/F 구성
 - 4개 T/F(작업반): 투자, 통관, 표준, 기술
 - 4개 T/F 실무작업 결과는 양측 경제협의회 의장(외무부차관, 미 국무차관)에게 보고
- 1992.12.9. 워싱턴 D.C. 개최 제1차 한·미 기술실무위는 매년 개최에 합의

2108

2. 대표단

- 한국 측: 장지종 상공자원부 통상협력과장 외 관계부처 실무자
- 미국 측: J. Richardson 국무부 한국과 부과장 외 관계부처 실무자

3. 주요 협의내용

- 한·미 Techno-Mart 개최
 - 미국 측: 업계 목록 제공, 상무부 지방사무소 및 간행물 활용 약속, 미국 내 전시회 정기적 개최, 박람회 연계 개최방안 강구 추진 설명
- 코트라-FCS 간 MOU 체결
 - 미국 측: 정책결정자 임명 후 본격 협의 제안
-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연수 및 상주 협력관 파견
 - 최고경영자 연수사업 확대, 한국 중소기업 기능인력의 미국 내 연수과정 신설, 미국 산업기술 협력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파견에 합의 및 검토
- 투자협력 확대
 - 미국 측: 한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노동법 개정 등 조치 선행 지적
- 산업협력기금 조성
 - 한국 측: 정부 및 경제단체가 1천만 달러 기금 조성 예정
 - 미국 측: TDA 자금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측의 미국 TDA와 협의 시도 권유
- KFTC 규정 개정 설명
 - 한국 측: 신고대상 범위 축소, 사후심사제 전환, 기준 간소화 등 설명

4. 후속 협의

- 한·미 Techno-Mart 개최(1993.10.4.~8.) 협의
 - 미국 측에 참가 기업 및 연사 추천 요청

과학기술협력 관련 주요인사 국제회의 참석 및 교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2 / 16 / 1-108

1992~93년 중 과학기술협력 관련 주요인사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교류 동향임.

1. 김진현 과기처장관, 벨기에 방문(1992.9.22.~24.)

- 목적: 한·벨기에 간 과학기술협력 강화
- 주요 일정
 - EC(구주공동체) 집행위 방문, 브리핑 청취 및 부위원장과 조찬, 벨기에 과학기술부장관 면담
- 주요 결과
 - 양국 과기부장관 면담 시 과학기술협력 확대에 합의하고 과기협정 체결에 대해 추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함.
 - EC 집행위 부원장 면담 시 한·EC 과학기술협정이 조기에 서명되도록 상호 노력하고, 구체적인 분야별 협력을 위해 분야별 합의문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EC가 제시하여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함.

2. 아태지역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ASCA(고위행정가회의)(1993.3.9.~11., 도쿄)

- 대표단: 과기부 기술협력국장 외 1인
- 주요 의제
 - ASCA 협력사업 논의
 - ASCA 운영체제의 개편과 상설 사무국 설치 문제
- 주요 결과
 - 차기 회의(1994년 필리핀 개최)에 권고할 사항 합의: 고위급 회의를 2년마다 개최, 개별 사무국 체제 채택 등 합의

2109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

한·호주 과학기술협력

생산연도 1989-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2 / 17 / 1-133

1989~93년 중 한·호주 간 과학기술협력 관련 내용임.

1. 호주 과학기술협력단 방한(1989.11.7.~10.)

- 방문단: 호주 과학산업연구원 단장 등 대표단 9명
- 주요 일정
 - 과기처장관 예방
 - KIST, KAIST, 한국에너지연구소, 천문우주과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등 방문

2110

2. 한국 과학기술협력조사단, 호주 파견(1991.6.19.~27.)

- 조사단: 과기처 및 유전공학센터, KIST, 화학연구소 등 7개 연구소 8명
- 방문 목적: 1989년 호주대표단 방한 시 합의한 양국 간 협력과제의 구체적인 협의
- 방문 기관: 유전공학, 정보, 해양, 정밀화학 등 상호 관심 분야 연구기관

3. 한국 과학재단과 호주 과학아카데미, 공학아카데미 등과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1992.3.3.)

- 목적: 양측 기관 간 과학기술협력 제도화 추진

4. 호주 상공·기술성 장관 방한(1992.4.5.~9.)

- 주요 일정: 과기처장관 예방

한·캐나다 과학기술협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2 / 18 / 1-240

1992~93년 중 한·캐나다 과학기술협력 관련 내용임.

1. 제1차 한·캐나다 경제공동위원회(1992.10.1.~2., 서울) 개최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
 - 캐나다 측: Howard Balloch 캐나다 외무통상성 아태담당 차관보
- 회의 결과
 - 한국 측의 제의로 경제공동위 산하에 과기실무위 구성 합의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한국의 대북미 경제 진출 및 무역 등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우려 표명 등 한국 입장을 공식전달하는 계기가 됨.
 - 캐나다 측은 방위산업협력 양해각서를 제시하고, 금후 한·캐나다 공동위에서 협의할 것을 제의함.

2. 제1차 한·캐나다 과학기술 실무위원회 및 조사단 파견(1993.7.10.~18., 캐나다)

- 대표단(수석대표)
 - 유희열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 회의 결과
 - 양측은 R&D 투자현황, 각종 연구소 설치현황 등 자국의 과학기술정책을 설명하였으며, 캐나다는 한국의 선도기술 개발사업(HAN Project) 11개 분야 참여에 깊은 관심을 표명함.
 - 캐나다 측은 제1차 양국 간 경제공동위에서 한국 측이 검토를 요청한 공동연구 22개 과제에 대한 검토현황을 설명하였으며, 추후 캐나다 측 입장을 정리하여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제공하기로 함.

2111

대한민국-외국관계사-외국관계

한·중국 과학기술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3 / 1 / 1-184



1. 황병태 주중국대사, 송건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임 겸 국무원 국무위원 면담(1993.9.10.)

- 자동차와 TDX의 중국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 승인 촉구 및 과학기술협력 방안 협의

2. 김시중 과학기술처장관, 중국 방문(1993.11.3.~7.)

- 제1차 한·중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참가, 한·중국 센터 베이징사무소 개소식 참가, 베이징대학 생물연구센터 방문, 중국·한 대기과학연구센터 개소식 참가, 국가 광전공예중심(임업대학원 내) 및 원자력연구소 방문 등

2112

3. 제1차 한·중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1993.11.5., 베이징) 개최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시중 과학기술처장관
 - 중국 측: 송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임 겸 국무위원
- 주요 합의사항
 - 한·중국 공동연구과제 5개 과제 수행 조기 착수
 - 첨단과학기술 인력 교류
 - 과학기술조사단 교류
 - 한·중국 과학기술협력센터 및 동 센터 베이징사무소 운영 지원
 - 한·중/중·한 대기과학연구센터 운영지원
 - 과학기술정보 교류
 - 기초과학, 항공우주 및 농업기술 분야 협력
 - 산업기술협력
 - 제2차 한·중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서울)

4. 1993년도 한·중국 과학기술 분야 합의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단 파견

- 제3차 조사단(화공기술조사단) 방중(1993.12.8.~15.)
 - 단장: 박경배 KIST 국제협력센터장
 - 활동 내용: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북경 화공기술연구원, 베이징대학 국가생물연구중심 등을 방문하여 화공·생물 분야의 중국 기술조사 및 협력방안 등을 협의함.
- 제4차 조사단(S/W, 자동화 기술조사단) 방중(1993.12.19.~27.)
 - 단장: 송봉현 과학기술처 기술개발과장



- 활동 내용: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상관리국 등 정부기관과 기술시장중심, S/W 연구소, 청화대 CIMS 중심, 사통기업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중국의 동 분야 기술 현황을 조사하고 GAME, S/W, 공장 자동화 등 관련 협력사업을 협의함.

2113

대한민국
외교부의
역사

1993

한·쿠웨이트 과학기술협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3 / 2 / 1-63

1992~93년 중 한·쿠웨이트 간의 과학기술협력 관련 내용임.

1. Adnan Al-Naqueel 쿠웨이트 KISR(과학기술연구소) 소장 방한(1992.11.16.~21.)

- 쿠웨이트 연구소의 전후 재건사업 추진의 일환
- KIST와의 연구사업 협력체제 부활 및 개발
- KIST의 운영관리, 연구사업 등 시찰
- 한국 측이 주선하는 관련 연구소 및 기관 시찰

2114

2. 한국해양연구소 연구원 파견(1993.4.11.~26.)

- 쿠웨이트 KISR 측 요청
- 한국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 파견

한·러시아 과학기술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과학환경과

MF번호 2023-133 / 3 / 1-142

1993년 중 한·러시아 간 주요 과학기술협력 동향임.

1. 첨단기술 전시회 및 세미나 추진 배경

- 제1~2차 한·러시아 과학기술장관회담에서 합의
 - 1993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제3차 과학기술장관회담과 러시아 첨단기술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2. 첨단기술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 한·러시아 과학기술협력 의정서 체결(1993.2.3.)
- 개최 일정
 - 1993.5.29. 한·러시아 과학기술장관회담(개회식)
 - 1993.5.31.~6.2. 전시회 및 세미나, 연구기관 및 산업시찰
 - 1993.6.3. 한·러시아 과학기술장관회담(본회의)
- 본회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의제
 - 첨단기술 이전 및 기업화 공동연구
 - 첨단 과학기술 인력교류
 -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
 - 군수산업 민영화 참여
 - 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정보교류
 - 러시아 첨단기술 전시회 및 세미나 후속조치
 - 러시아 현지 연구소 설립
 - 기초과학 및 원자력 분야

3. 기타 한·러시아 과학기술협력 동향

- 러시아 극동폴리텍연구소, 투명 크리스털 합작생산을 제안하면서 관심있는 한국기업 물색
- 러시아 실무작업반 방한(1993.10월)
 - 제3차 한·러시아 과학기술공동위에서 합의된 공동과제 협의
- 1993년 중 한국 정부, 4개 기술 분야 기술조사단을 4차례 러시아 파견
 - 첨단기술 전시회, 세미나 후속사업, 조선기술 컨소시엄, 제도 분석, 원천기술 이전
- 1993년 러시아 정부,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수중작업 국제기금 설치 추진

2115

대한민국 과학기술 협력

한·일본 지식재산권 협의. 전8권 (V.1 제1차 협상)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33 / 5 / 1-232

제1차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협의가 1992.7.31. 서울에서 개최됨.

1. 일본의 지식재산권 보호 요청

- 1991.5.7. 일본 특허청장은 물질특허 보호와 관련, 일본에 대한 차별적인 적용에 유감을 표시하고, EC(구주공동체)와 동등한 보호조치를 요구

2. 외무부의 대응 방안 검토(1991.10월)

- 1안: 일본과의 별도교섭 거부
- 2안: EC 조치에 준하는 교섭
- 3안: EC 보호내용 중 일부만 일본에 제시
- 4안: 별도의 타협 방안 검토

3. 관계부처 대책회의(1992.4.22.)

- 동등보호 시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대책 검토

4. 제1차 한·일본 지식재산권 협의(1992.7.31.)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정영구 외무부 통상국 통상1과장
 - 일본 측: 시모코지 슈지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 협의 결과
 - 의견 접근 분야: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소급보호 협의는 상무적 교섭사항, 일본 측은 EC 수준의 보호 요망
 - 한국 측 발언: 지식재산권 소급보호는 최혜국대우의 대상이 아니며 양자교섭의 대상임을 강조, EC와 타결 시 한국 측이 모든 나라가 혜택을 보는 신약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일본이 반사적 수혜를 받음.
 - 일본 측 발언: EC와 동등한 대우 요망 등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전8권 (V.2 제2차 협상)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33 / 6 / 1-163

제2차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협의가 1992.9.1.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정영구 외교부 통상1과장
- 일본 측: 무토 외무성 동북아과장

2. 협의 결과

- 일본 측 요청
 - 한·EC(구주공동체) 간 합의와 매우 유사한 요청을 담은 합의문서(안) 제시
- 한국 측 대응
 - 귀국 후 검토 방침 표명
 - 한국 제약업계 등의 어려운 상황과 반발을 설명하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반대급부 제공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차기 회의: 1992.10월 중순 개최 추진

3. 조치사항

- 일본 측 요청을 검토 후, 한국의 대응 방안 및 일본 측에 요청할 반대급부 확정 계획

2117

대한민국 외교부 서약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전8권 (V.3 제3차 협상)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33 / 7 / 1-160

제3차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협의가 1992.10.28.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정영구 외교부 통상1과장
- 일본 측: 니시다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2. 주요 결과

2118

- 한국 입장
 - 일본 측의 대EC(구주공동체) 동등보호 요청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대EC 소급보호에 준하는 보호를 부여할 방침이나, 한·일본 간 만성 무역적자 상황임을 감안할 때, EC 소급보호 중 일부 사항의 보호 수준이 변경되어야 함을 설명
 - 일본 측도 반대급부(제약업계의 방일 연수, 1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를 제공해야 함을 지적
- 일본 반응
 - 지식재산권 문제를 관세인하 등과 같은 반대급부와 연계시킴은 부적절하다는 인식 표명
 - 한국 측 제시 내용은 대EC 보호내용과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
- 차기 회의
 - 1992.11월이나 12월 중 개최를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함.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전8권 (V.4 제4차 협상)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33 / 8 / 1-231

제4차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협의가 1992.12.3.~4.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정영구 외무부 통상1과장
- 일본 측: 무토 외무성 동북아과장

2. 협의 결과

- 한국 측 입장
 - 한국 측이 제시한 소급 보호 내용은 본질적으로 EC(구주공동체)에 대한 보호와 동등한 수준임을 설명
 - EC와 비교 시, 타결 시점과 상대가 다르다는 점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소급보호 내용 중 일부(보호 품목 수의 하향 조정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측이 요청한 반대급부는 최소한의 것으로, 업계 설득을 위해서는 일본 측의 수용이 불가 결함을 강조
- 일본 측 입장
 - 한국 측 안대로 할 경우, EC보다 보호대상 품목이 제한된다고 하면서, EC와 단순한 동등보호 요청
 - 한국 측이 성의 있게 대응할 경우, 일본 관련 업계와의 반대급부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
- 향후 일정
 - 1992.12.28. 서울 개최 추진

2119

대한민국 외교부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전8권 (V.5 제5차 협상)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33 / 9 / 1-90

제5차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협의가 1992.12.28.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정영구 외무부 통상1과장
- 일본: 무토 외무성 동북아과장

2. 주요 결과

- 쟁점 사항
 - 시판 중인 품목의 소급보호 문제: 한국 측은 제외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 측은 포함하자고 주장
 - 반대급부 제공 규모: 일본 측은 소급보호 대상 품목의 한국 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반대급부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한 반면, 한국 측은 일본 측 산정 방식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 저작권 분야
 - EC(구주공동체)와 동등한 소급보호 부여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합의 문안 작성과 관련하여 이견이 드러남.

3. 관찰

- 일본 측은 시판물질에 대한 보호는 극히 어렵다는 것을 이번 회의를 통해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임.
- 시판물질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반대급부 규모도 재조정될 것으로 감지됨.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전8권 (V.6 제6차 협상)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33 / 10 / 1-149

제6차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협의가 1993.2.9.~10.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정영구 외무부 통상1과장
- 일본 측: 무토 외무성 동북아과장

2. 주요 결과

- 특허권 분야
 - 한국 측: 이미 시판된 물질은 소급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원만한 타결을 위해 한·EC(구주공동체) 간 타결 내용에 비례하여 일본 측의 시판물질을 일부 (3개 정도)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
 - 일본 측: 일본 측이 고려 중인 시판물질 수량(24개)과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
- 저작권 분야
 - 기본적으로 EC에 대한 것과 동일한 소급보호를 부여하기로 합의
 - 영화, 음반 등 관련사항은 제외하는 문제를 추가 협의 예정
- 반대급부
 - 일본 측은 보호대상에서 시판물질 숫자가 감소될 경우 반대급부 규모도 감소될 것이라는 입장 표명

3. 관찰

- 핵심사항인 시판물질 소급보호 문제는 일본 업계와 일본 정부 간 협의 결과 후 대처함이 바람직

2121

대한민국 외교부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전8권 (V.7 비공식 협상)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33 / 11 / 1-211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비공식 협의가 1993.10.12.~13.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준규 외무부 통상1과장
- 일본 측: 나카무라 외무성 동북아과장

2. 주요 결과

2122

- 미시판 여부 판정 시점 및 기시판 품목 보호 범위
 - EC(구주공동체)의 경우와 동일하게 미시판 판정시점을 1987.7.1.으로 하되, 기시판 품목은 10개에 한하여 보호 대상에 포함
- 행정지도 보호 개시 시기
 - 적격 여부가 판명된 시점을 행정지도 보호 개시 시점으로 함.
- 반대급부
 - 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축소 조정하여 의약분야 연수는 매년 20명으로 하고 농약분야 연수는 철회함.
 - 16개 품목의 관세인하 철회

3. 전망

- 한국의 입장이 이전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인바, 일본 측의 전향적인 반응이 있기를 기대함.

한·일본 지적재산권 협의. 전8권 (V.8 제7차 협상)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33 / 12 / 1-200

제7차 한·일본 간 지식재산권 협의가 1993.12.9.~10.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준규 외무부 통상1과장
- 일본 측: 나카무라 외무성 동북아과장

2. 최종 합의 내용

- 소급보호 품목 수
 - 당초 일본 측이 요청한 30개를 17개로 축소하면서도, 한국 측의 동 품목에 대한 선의의 기 투자는 최대한 인정받는 유리한 내용으로 타결
- 저작권 보호
 - EC(구주공동체)에 대한 보호보다 일부 축소된 내용으로 합의
- 반대급부
 - 일본 측은 한국의 제약 산업을 위해 3년간 20여 명의 연수를 실시하기로 합의

3. 평가

- 한국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타결됨으로써 소급보호에 따른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양국 간의 큰 현안이 타결됨으로써 양국 경제관계 긴밀화에도 기여 예상

2123

대한민국 외교부

한·스위스 지적재산권 협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33 / 13 / 1-255

2124

1. 제1차 한·스위스 지식재산권협의회 회의(1993.6.15.~16.,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김광동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 스위스 측: Thomas Cottier 연방 특허청 차장
- 주요 논의내용
 - 한국 측: 원칙적으로 대EC(구주공동체) 동등대우를 부여하되, 시판되지 않은 품목을 보호한다는 미시판 물질 보호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미시판 기준일을 1993.6.16.로 할 것을 제의(EC와 미시판 기준일은 1987.7.1.로 합의)
 - 스위스 측: 1987.7.1. 미시판 기준일이 대EC 동등대우의 핵심사항임을 주장하면서 미시판 기준일을 1993.6.16.로 할 경우 보호대상에 기시판 물질이 최소한 5개는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 향후 조치계획
 -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호대상에 포함될 기시판 품목수를 축소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 예정
 - 대일본 지식재산권 협의 추진 경과에 따라 스위스와의 최종 타결 추진 예정

2. 제2차 한·스위스 지식재산권협의회 회의(1993.11.16.~17.,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정의용 외무부 통상국장
 - 스위스 측: Thomas Cottier 특허청 차장
- 보호대상 품목수: 20개 이내(의약품 및 농약품)
- 보호기준
 - 1980.1.1. 이후 스위스에서 특허를 받고, 1987.7.1. 현재 스위스 및 한국에서 시판되지 않은 품목(단, 1987.7.1. 이후 시판된 품목은 5개까지만 보호)
 - 1987.7.1. 이후 특허 출원된 품목 및 농약조성물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보호절차
 - 1994.1.1.까지 스위스 측은 보호대상 품목리스트 제출
 - 리스트 제출 이후 양국은 동 품목이 보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2개월 내 심사
- 제2차 회의 결과, Agreed Minutes 및 Annex I(Record of Understanding) & II(List of 26 products)에 가서명하여, 보호 품목수, 보호기준 등에 대해 합의함.



- 평가

- 1987년 이래 미시판 물질 보호와 관련, 대미국, 대EC 차별적 성격에 따라 한·스위스 양국 간 최대 경제관계 현안으로 발전되었는바, 동 문제의 원만한 타결로 향후 양국 경제협력, 특히 제약 분야의 협력강화가 예상됨.
- 보호대상 품목수의 축소(20개) 및 기시판 품목의 제한(5개)으로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2125

대한민국-미국 자유무역협정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1 1.4.-26.)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33 / 14 / 1-236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비공식 협의 및 대응에 관한 내용임.

1. 한·미 간 IPR 비공식 협의(1993.1.14.~15., 워싱턴 D.C.)

- 대표단
 - 한국 측: 경제기획원, 외무부, 법무부, 문화부, 상공부, 과기처, 공보처, 특허청, 관세청 등 담당 과장
 - 미국 측: USTR(미통상대표부) 부대표, 국무부, USTR, 상무부 관계자
- 의의
 - 양국 간의 IPR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문제의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양국 간 제도 운용에 대한 이해 증진 목표
- 성과 및 평가
 - 음반 및 비디오의 수입 및 복제허가 절차, 위조상품 수출입 단속, 상표등록제도 개선, 유선방송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 및 프로그램 편성 제한 등 문제가 집중 논의
 - 종래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소극적이던 일부 관계부처에 IPR 문제의 심각성 인식 환기
 - 미국 측 요구의 중점을 한국 법제상 수용 불가능한 사항(예: 친고제 폐지)에서 현실적인 사항(법 집행 및 단속)으로 변경하도록 유도

2. 한·미 간 IPR 문제 대책 추진

- 외무부, 1.25. 법무부에 IPR 침해단속 활동 강화에 대한 특별 요청
- 경제기획원, 1.26. 한·미 IPR 협의 대응방안 작성 및 추진
 - 불법상표, 불법복제 등 IPR 침해에 대해 철저한 단속실시
 - 음반저작권 소급보호 기간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2 1.27.-2.9.)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34 / 1 / 1-230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한·미 간 협의 및 한국 측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한·미 간 IPR 관계장관 회의(1993.1.28.)

- 참가자: 경제부총리, 외무부차관, 법무부장관 등 관계장관
- 주요 내용: 1993.3월 한·미 IPR 협의 대책 논의
- 회의 결과
 - 각 부처가 1993.2.15.까지 소관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 제출
 - 위반사범에 대한 강력한 합동단속반 가동, 적시에 가시적 단속성과 거양 추진
 - IPR 침해 단속 임시특례법 제정 검토

2. IPR 단속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3.2.1., 대검찰청)

- 대검 형사부장 주재
- 검찰의 단속강화 방안 설명
 - 대검찰청에 IPR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설치, 지방에는 지역합동수사반 설치
 - 1993.2.~4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집중 단속
 - 적발된 침해사범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

3. 미국의 한국에 대한 IPR 관련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우려

- 1993.2월 외무부는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주제네바대표부 및 주미국대사관에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 접촉 및 법률자문사 검토를 통해 미국의 특별법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관련 통상정책 및 법률적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

2127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17조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3 2.10.-18.)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34 / 2 / 1-198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한·미 간 협의 및 한국 측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의 IPR 보호 개선방안, 미국 측에 전달

- 1993.2.11. 음반 및 비디오 관련 문화부의 개선방안을 미국 측에 전달하도록 주미국대사에게 지시
 - 1987년 이후 수입·복제가 된 1987년 이전 저작물을 소급보호하고 최초 허가 물량 이외 복제에 대해서는 유효한 권리관계가 없는 제품의 추가 복제 불허 등 개선방안 제시
- 2.12.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도널드 그레고 주한 미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의 IPR 보호를 위한 최근 제반조치에 대해 설명
 - 미국 측은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IPR 보호를 위한 분위기 개선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동 서한을 업계에 배포할 계획 설명
- 2.16. 경제기획원, 한·미 IPR 관련 Non-Paper(안) 작성
 - 전반적인 단속 강화방안, 음반 및 신발류의 불법 수출입 단속 강화, 음반에 대한 절차적 보호 및 저작권법 개정, S/W 침해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등 개선방안 검토

2.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관련 동향

- 1993.2.12. 국내 언론을 통해 IIPA(국제지식재산권협회)는 한국을 IPR 보호가 미흡한 나라에서 제외함.
 -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바, IIPA의 코멘트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 미국 업계의 한국에 대한 IPR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청원 제출
 - IIPA 등 2개 단체 및 1개 업체, 한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
 - 미 상표권협회, 한국을 우선관심대상국 지정 요청
 - 미국 업계의 청원 제출은 미 통상법에 따른 연례적 절차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4 2.19.-3.2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34 / 3 / 1-251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한·미 간 협의 및 한국 측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의 IPR 보호에 대한 미국의 평가

- 1993.2.19.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개선조치에 관한 미 정부의 평가서 송부
 - 한국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 정부 고위층의 직접적 관심을 갖는 것이 긴요
- 미국 측의 문의 및 요청
 - 합동단속반 설치에 긍정적 조치이며, 업계가 검찰에 관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 요청
 - 수사 및 단속 관련 고발이 없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위반의 기준 등 제시 요청
 - 1987년 이전 음반 등 저작물보호제도에 관해 명료한 해석 요청
- 리복 및 닌텐도사는 한국의 IPR 침해단속에 대해 회의적 입장에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 불가 피하다는 독자적인 코멘트를 USTR(미통상대표부)에 제출

2. 한·미 간 무역실무위원회 대비 조치

- 외무부는 미국 측의 IPR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의 개선조치 개요를 미국 측에 우선 제시하여 반응을 보고 1993.3월 중순에 개최되는 동 실무위원회에서 본격 협의 추진
 - 2.25. 주미국대사관 측은 USTR 측에 상기 내용 설명
- 3.4. 대검찰청에서 IPR 침해사범 단속방안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 그간 단속 결과 분석 평가
 - IPR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1993.10월까지 6개월 특별단속기간 연장
 - 1993.2월 단속 결과 746명 입건, 129명 구속 등 전년 동기 비교 2배 단속실적
- 한·미 간 IPR 협상 관련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1993.3.11.)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피할 수 있도록 IPR 단속 및 제도 개선 최대 노력
 - 유선방송 관련 프로그램 쿼터 문제 등 관계부처 입장과 미국 측 요구 강도를 감안해 협상 대응

3. 한·미 간 무역실무위원회 IPR 협의 결과

- 1993.3.16. 미국 워싱턴 D.C.에서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과 Cassidy USTR 아태담당 대표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고, 양국 통상관계 최대 현안인 IPR 문제 협의
- 한국 측은 그간 IPR 침해사범 단속 및 처벌, 법제도 개선 등 조치 설명
- 미국 측은 한국 측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 업계의 관심사항 관련 가시적 성과 요구

2129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12조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5 3.22.-4.15.)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34 / 4 / 1-259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한·미간 협의 및 한국 측의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미국의 한국에 대한 IPR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회피 노력

- 한·미 무역실무위원회에서 한국의 IPR 보호 노력 평가
 - 1993.3.22. USTR(미통상대표부) 측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회피를 위한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1987년 이전 음반 및 비디오 저작권의 기제작 물품의 매각 시한을 1개월로 단축 및 S/W 침해 강제단속 등 제의
- 김영삼 대통령, 3.22.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IPR 침해 철저 단속 지시
- 3.26.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 1987년 이전 음반·비디오 매각 시한, 수입 복제 신청 절차, S/W 강제단속 실시 등 협의
- 4.6. IPR 관계부처 차관회의(1993.4.6.)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관련 4월 중 적극적인 개선조치가 중요한바, 검찰의 지속적 단속 강화
 - 1987년 이전 음반에 대해 6개월 매각시한 절충 추진, 반도체칩의 강제 실시권 발동요건 제한 등 각종 조치 실시 및 이를 미국 측에 전달
- 과학기술처, 3.31. 공공기관의 불법 S/W 추방 운동 실시
- 외무부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회피를 위한 최종 방침으로 지난 2.12. 외무부장관 서한 이후 제도 개선, 단속강화 등 제반 개선조치 자료를 미국 측에 4.15.경 제시 추진

2. 한·미 간 협의

- 4.15. 주미국대사관 법무협력관, 미국 리복 본사 측에 신발 위조사범 단속 현황 설명
- 4.16.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IPR 관련 개선조치 및 성과를 설명하는 서한을 Kantor USTR 대표에게 송부
 - 4.30. 미 통상법상 IPR 보복조치대상국 지정 시한을 앞두고 막바지 교섭의 일환으로 한국의 입장 설명
 - 집중적인 단속 및 제도 개선으로 IPR 보호의 뚜렷한 개선 시현 설명 및 향후 지속적 노력 전개 다짐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6 4.16.-5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34 / 5 / 1-242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한·미 간 협의 및 한국 측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IPR 침해 방지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 및 한·미 간 협의

-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불법 S/W 단속정보 유출에 대한 해명, 1987년 이전 음반·비디오의 단시간 매각의 문제점 등을 USTR(미통상대표부)과 지속 협의
 - 검찰의 IPR 침해사범 단속지침을 미국 관계 업계에 배포, 특히 IPR 중 저작권법, S/W 관련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강제수사 가능한 점 설명
- 1993.4.17.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Strengthen IPR Protection" 미 측에 배포
- 4.21.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주재 한·미 IPR 대책회의 시 1987년 이전 음반의 매각 시한을 4.30.기점 3개월로 하는 방한 채택
- 4.26. 외무부,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5개월 매각 시한(sell-off period)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동 계기에 미국의 IPR 국별 평가 시 한국에 대한 호의적 고려 요청
 - USTR Cassidy 대표보는 Kantor 대표에게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지 말라고 건의할 예정임을 언급

2. 한국의 IPR 보호 관련 미국 내 동향

- 1993.4.19.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무역소위에서 스페셜 301조 청문회 개최, 한국 등 미국의 IPR 침해국가 현황 및 조치 등 토의
 - 동 소위 Baucus 위원장은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 올릴 것을 주장
- 4.23. 월스트리저널은 국별 IPR 평가 시한을 앞두고 한국 등 IPR 개선조치 실시 평가

3. 미국, 한국을 IPR 보복조치대상국에서 제외

- 1993.4.26. 미국 측은 한국의 IPR 보호 관련 개선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한국을 보복조치 대상국 지정에서 제외하고 전년과 마찬가지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임을 비공식 전달 (최종 발표는 4월 말)

2131

대한민국-미국 자유무역협정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7 6-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34 / 6 / 1-326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한·미 간 협의 및 한국 측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IPR 침해방지를 위한 한국의 후속조치

- 경제기획원 대외정책조정실장 주재 한·미 IPR 이행점검 회의(1993.6.9.) 개최
 - 1993.9월 말 판매 가능 기간이 경과된 이후 1987년 이전 음반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 종합유선방송법 개정, 영상물 배타적 대여권 인정, 반도체칩보호법 시행령 제정, 관세법·특허법·상표법·의장법 개정, IPR 침해에 대한 지속적 단속 등
- 미국 측은 IPR 관련 일방적 수색 명령 절차(Inaudita Altera Parte Order)의 IPR법 등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은 부정적
- 문화부는 7.2. 저작권법 개정안 회람,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대여권 인정 추진
- 상공부는 IPR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1개 관련 기업과 13개 경제단체 임원들이 참석하여 IPR 홍보대책회의(1993.7.22.) 개최
-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세관의 단속 및 처벌 근거를 규정한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
 - 11.15. 재무부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회람
- IPR 침해 단속 관련 월례 관계부처 회의(1993.8.18.)를 검찰청 주최로 개최, 각 기관별 단속실적 점검

2. 한·미 간 협의

- 1993.7.28. 주미국대사, 미국 하원의원단과 IPR 관련 비공식 협의, 리복사 위조신발 문제 협의
- 6.9. 주한 미국대사관 측, 한국 측에 직물디자인 보호에 관해 문의
 - 외무부는 의장법 및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가능하다고 답변
- 9.16. 미국 측, 한국의 관세법 개정안이 당초 합의와 다르다고 입법 연기 요청
 - 9.22. 한국 측은 USTR(미통상대표부)에 관세법 개정안 우려에 대해 해명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8 IPR 단속실적 I)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34 / 7 / 1-313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한국 측의 단속조치에 관한 내용임.

1. 한국 정부, 미국 측에 단속실적을 주미국대사관 및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수시 통보

- 1993.1.1.~2.4. 주요 단속사례 전달
 - 각 지역별 단속실적 통계표 작성
- 2.5.~11. 검찰청별 IPR 침해사범 특별단속 주간 현황
- 2.12.~18. 단속 통계, 1.1.~2.18. 금액별 단속실적 통계 통보
- 2.19.~25. 단속통계, 금액별 단속실적 통계
- 3.5.~11. IPR 침해사범 단속실적 통계자료
- 3.12.~18. IPR 침해사범 단속실적 통계자료
- 3.25.까지의 IPR 침해사범 단속실적 통계

2. 단속실적 집계

- 1993.2.13., 2.20., 3.9., 3.13., 3.20. 및 3.27. 검찰청, 각 청별 IPR 침해사범 특별단속 주간 현황을 외무부에 통보

213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한·미국 간 지적재산권 문제. 전9권 (V.9 IPR 단속실적 II)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34 / 8 / 1-241

1993년 중 한·미국 간의 IPR(지식재산권) 문제 관련 한국 측의 단속조치에 관한 내용임.

1. 한국 정부, 미국 측에 단속실적 수시 통보

- 1993.4.8.까지의 단속실적 통계
- 4.9.~15. 및 4.16.~22. 단속실적 통계 및 1.1.~4.22. 단속실적 누계
- 1993.4월 말까지의 단속실적
 - 총 2,787명 단속(323명 구속)
- 1993.5월, 6월 및 7월 중 단속실적
- 1993.9월 말까지의 신발류 위조상품 단속실적

2. 단속실적

- 1993.4.3., 4.23., 5.1. 검찰청, 각 청별 IPR 침해사범 특별단속 주간 현황을 외무부에 통보
- 4.29. 특허청, 위조상품 근절 활동 대외홍보용 자료 관계부처 회람
 - 위조상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반 활동과 IPR 교육 및 지도 활동 자료 송부
- 7.7. 검찰청, IPR 침해사범 1993.6월 중 특별단속 현황 외무부 등 통보
- 7.13. 특허청, 1993년도 2/4분기 위조상품 추방 활동 누계실적을 영문으로 외무부 등에 통보
- 8.4. 검찰청, 1993.7월 중 IPR 침해사범 특별단속 현황 외무부 등 통보
- 10.26. 관세청, 1991~93.9월 말까지 유명신발류 위조상품 적발 실적을 외무부 등에 통보
 - 위조상품 수출 방지를 위해 리복 코리아 등 국내 유명신발 상표 사용권자와 12개 단속팀과 정보 교환을 위한 Contact Points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

U Soe Tha 미얀마 체신장관 방한, 1993.1.25.-30.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2023-134 / 9 / 1-35

U Soe Tha 미얀마 체신장관이 1993.1.25.~30. 방한함.

1. 방한 초청 경위

- 체신부는 1992.10.8. 미얀마 체신부장관을 초청, TDX 교환기 등 한국 전자통신 산업을 소개하여 연내 TDX 수출계약 체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U Soe Tha 미얀마 체신장관을 송연종 체신부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하고자 한다며 외무부의 검토의견을 요청함.
- 외무부는 10.20. 상기 의견에 이의 없음을 체신부로 송부함.

2. 방한 목적

- 한·미얀마 통신 분야 협력방안 논의 및 대우통신(주)의 TDX 등 통신기기 수출지원

3. 주요 일정

- 체신부장관 예방, 한국통신 사장 및 대우그룹회장 면담
- 대우통신 공장 방문, 엑스포 홍보관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찰 등

4. 주요 성과

- 한국의 전기통신 발전상 홍보
- TDX 등 한국 전기통신기기의 수출기반 조성
- 한·미얀마 통신 분야 협력방안 논의
 - 미얀마 통신시설 근대화, 국산화 및 한국의 관련 경험 이전 문제 협의
 - 미얀마 통신근대화 지원을 위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지원 교환각서 서명 시기 협의

2135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처

한·중국 통신분야 협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경제협력2과

MF번호 2023-134 / 10 / 1-133

1993년 중 한·중국 통신 분야 협력에 관한 문서임.

1. 제1차 한·중국 통신장관회담(1993.7.23., 중국 우전부)

- 수석대표
 - 한국 측: 윤동윤 체신부장관
 - 중국 측: 오기전 우전부장
- 주요 성과
 - 한·중 우편 및 전기통신협정 서명 및 양국 간 협력방안 협의
 - 우전부장 방한 초청 및 양국 체신부 관리 및 기술진 교류 촉진 합의

2. 한국 통신기술 설명회 대표단, 중국 방문(1993.10.13.~19., 베이징, 상하이)

- 대표단 구성
 - 박성득 체신부 통신정책과장, 체신부, 한국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관계자
- 통신교류 내용
 - 한국의 통신 정책방향, 한국 통신망운용 현황 및 진화계획, 한국의 통신기술 개발 현황, TDX 개발현황 및 주요 기능, 향후 교환기술 개발 방향

3. 제2차 한·중국 통신장관회담(1993.11.24.,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윤동윤 체신부장관
 - 중국 측: 오기전 우전부장
- 주요 협의내용
 - 한국은 국산 전자교환기 TDX의 중국 진출 관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지원 등 제안
 - 한·중 해저 광케이블 건설공사의 조기개통 추진 합의
 - 1994년도 한국통신수련원 연수과정에 중국기술자 50명 초청 등
 - 국제기구에서 상호협력
 - 통신장관회담 및 고위급 실무회담 정례화 합의

한·EC(구주공동체) 통신 협의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23-134 / 11 / 1-271

1992~93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 통신시장 개방 협상 관련사항

1. 한·EC 간 협상 배경

- 1990.2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통신 분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미국 간 합의
 - 적용대상: 정부조달(일반 통신기기, 통신망 장비), 통신서비스, 상호인증 등
- 1992.2월 한·미국 통신협상이 타결되자, EC 측은 동등한 시장개방을 요구
 - 1992년부터 미국에 대한 통신시장 개방에 대해 EC 측은 차별조치라고 한국 측에 항의

2. 진전사항

- 한국 측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통신시장 개방을 EC 측에 요구
 - EC 공공조달 지침에 따르면, 50% 이상 역내제품 사용 및 3% 이상 가격 차별 요구
 - 역외국가의 통신기기 인증에는 상당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차별이 존재
- 통신 분야 실무협약(1992.7.28.~29. 및 11.9.), 한·EC 고위협의회 실무회의(11.10.~11.) 개최
 - 추후 통신 분야 고위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조율
- 협의가 진전되면서 EC 측은 한국 측의 상호주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기 시작

2137

대한민국 외교부

한·이란 통신협력위원회, 제2차. 서울, 1993.10.5.-6.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134 / 12 / 1-102

1993.10.5.~6. 서울에서 제2차 한·이란 통신협력위원회가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경상현 체신부차관
- 이란 측: M. K. Nasser Sarraf 체신부 국제담당차관

2. 회의 결과

- 우정분야 협력
 - 양국 간 항공우편 송달 속도 측정 합의 등
- 전기통신분야 협력
 - 양국 간 광전송, 설계자동화 분야 기술협력 시작, 전화 중계시설 상호이용 합의
- 민영화 정책 실무회의
 - 한국의 전기통신정책 및 민영화 현황 소개 등
- 양국 간 우정 및 전기통신 협력위원회 양해각서 서명

한·미국 통신 협의. 전3권 (V.1 1992.11월-93.3.24.)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35 / 1 / 1-235

1992~93년 중 한·미국 간 통신 협상 동향임.

1. 한·미국 통신회담(1993.2.4.~5., 워싱턴 D.C.)

- 대표단
 - 한국 측: 이종순 체신부 통신협력단장 외 주미국대사관 및 관계부처 실무자 10명
 - 미국 측: N. Adams USTR(미통상대표부) 부대표 외 관계자 14명
- 주요 결과
 - 1992.2월 타결된 한·미 통신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 점검: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조달
 - 무선통신 관련사항: 제2이동통신 사업 허가, PAGING, TRS, PCN, 무선통신세미나
 - 형식 승인의 상호인정 협상
- 평가 및 전망
 - 미국 측은 통신회담이 종합통상법 제1377조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 점검 성격임을 설명하고 합의사항 이행 관련 한국 측의 진지한 협상 태도를 높이 평가, 정부조달 관련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의사항 이행에 만족을 표시함.
 - 한·미국 간 통신 분야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신 관련 통상 현안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망 장비 공급자격자 인증 절차,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한국산 제품 우선구매, 무선통신 관련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
 - 미국의 표준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표준 전문가 간 별도 협의를 통해 형식승인 등 상호인정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

2. 한·미국 통신협정 불이행 논란

- 1993년 초 USTR은 한·미 통신협정에 따른 통신시장 개방 불이행 문제 제기
 - 미국 AT&T는 과거 한국업체를 통해 통신망 장비를 공급하여 문제가 없었으나, 단독으로 입찰 참여를 시도하면서 공급자격 인증이 필요
 - 공급자격 인증 절차를 따르는 경우, 한국통신의 통신망 장비 입찰시한인 1993.5월이 지나게 되어 AT&T의 입찰 참여는 불가능
- 한국 정부는 과거 한국업체를 통한 장비공급 실적을 감안하겠지만 우선 공급자격 인증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 견지

2139

대한민국 무역면담서 요약본

한·미국 통신 협의. 전3권 (V.2 1993.3.25.-6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35 / 2 / 1-205

1993년 중 한·미국 간 통신 협상 동향임.

1. 한·미 통신협정 불이행 논란

- 1993.1월 미국 측이 한·미 통신협정 불이행 문제를 제기하면서 2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 지속
 - 미국 AT&T 공급자격 인증에 과거 GSIC(금성정보통신)에 대한 공급 실적 인정 여부
 - 한·미 통신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국통신의 조달규정 공개 여부

2140

2. 진전사항

- 1993.3.16.~19. 개최된 한·미 무역 실무회담에서 미국 측은 한·미 통신협정 위반 주장을 견지
- 한국 측은 3.26. 미국 측 장관급 면담 등 접촉을 통해 조달규정 및 인증 절차에 대한 진전 입장 전달
 - AT&T가 과거 GSIC에 공급한 장비에 대해서는 인증 절차를 1개월로 단축 제시
 - 한국통신 조달 관련 규정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3.31.까지 관련사항을 국내 일간지에 게재
- 한국 측은 또한 조달자격 인증에 상당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 최소 2개월 입찰 연기도 시사
- 3.31. 그동안 한국 측 제안을 확인하는 주미국대사 명의 서한 발송을 최종 타협안으로 제시
 - 이에 미국 측은 제재조치 발동 계획을 철회한다고 통보
- 5.26. 과거 GSIC에 공급한 동일기기 여부를 중점 평가한 후 AT&T는 공급자격 인증에 성공
- 5.27. Cassidy USTR(미통상대표부) 대표보의 체신부 방문 시 통신망 장비 조달 관련 규정과 자료 전달

한·미국 통신 협의. 전3권 (V.3 1993.7-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23-135 / 3 / 1-190

1993년 중 한·미국 간 통신 협상 동향임.

1. 한·미국 통신협정 불이행 논란 이후 진전사항

- 1993.8.10. 한국통신은 대형 전자교환기 구매 입찰 실시
 - 미국 AT&T가 전체의 19.2%인 8만 회선 낙찰
- 미국 측은 10월 통신회담에서 무선통신 문제를 4개 분야 의제로 하자는 입장 견지
 - 1992.2월 한·미 통신회담 이후 미국 측은 한국의 무선통신 방식에 관심 표명

2. 한·미국 통신회담(1993.10.18.~19.,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임정재 체신부 통신협력단장 외 관계부처 관계관
 - 미국 측: P. Collins USTR(미통상대표부) 한국과장 외 관계관
- 주요 내용
 - 무선통신: 미국 측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공용통신사업의 주파수 허가 등에 관심 표명
 - 합의사항 이행 점검: 미국 측은 관련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 폐지, 등록 절차 폐지 등에 만족
 - 표준 관련 문제: 형식승인 및 EMI 검정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지속 합의
 - 차기 회담: 1994.1월 워싱턴 D.C. 개최 합의
- 결과 평가
 - 무선통신 분야가 현황 논의에 그쳤으나, 통상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

2141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135 / 4 / 1-74

1992~93년 중 UAE(아랍에미리트연방)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UAE, 수단 외교관 전원 추방(1992.1.15.)

- 이유: 수단의 UAE 대사 및 직원 2명 추방에 대한 보복 조치
- 전망: UAE 외교노선은 온건 보수적이어서 단교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

2. UAE, 대만과의 대외관계 유지

- UAE는 대만과 수교한 적이 없으나, 두바이는 대만과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상업대표기구 설치를 허용
- 대만은 연방 외교부와 거의 접촉이 없으나, 면담은 가능함.

3. UAE·오만 관계 강화

- 1992.5.6. UAE는 오만과 대사급 외교사절을 교환한다고 발표
- 양국관계는 1976.1월 국경 문제로 오만 주재 UAE 대사의 철수 이후 소원해진 바 있음.

4. 1992년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UAE 반응

- UAE 언론에 따르면 걸프지역 지도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패배를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클린턴 당선자의 향후 대아랍정책을 우려함.

5. UAE, 프랑스 무기 구입(1993.2월)

- UAE는 아부다비 무기 전시회에서 프랑스제 탱크 436대 구매(약 210억 프랑)
- 잠재적 위협인 이란에 대한 방위 강화 차원에서 구매

아프가니스탄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135 / 5 / 1-116

1993년 중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라바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정식 취임(1993.1.2.)

- 슈라 회의에서 동인이 2년 임기의 대통령에 취임
 -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관련국들은 축전 발송도 보류한 채 관망 중

2. 이란의 대아프가니스탄 지원

- 이란 정부는 1992.9월 라바니 대통령을 이란에 초청, 5천만 달러 차관 제공

3. 라바니 대통령, 파키스탄 방문(1993.3.1.)

- 방문 목적: 파키스탄의 지지 확보와 무자헤딘 각 파벌과의 타협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
- 현재 카불에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대사관 정도만 잔류

4.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체결(1993.3.7.)

- 라바니 대통령은 향후 18개월 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Hekmatyar가 수상직에 취임
- 향후 2주 내 내각 구성
- OIC(이슬람국가기구) 및 아프간 각 정파 대표로 구성된 휴전감시단 설치 등

2143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처
국제협력과
국제협력팀

알제리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3-135 / 6 / 1-173

1993년 중 알제리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부분 개각 단행(1993.2.3.)

- 알리 카피 알제리 국가평의회 의장은 외무, 광공업, 노동·사회, 교통, 상무담당 국무장관 등 5명을 임명
 - 친미 성향의 말렉 외무장관을 임명하고 경제, 민생 분야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

2144

2. 12개월 기한부 비상사태를 재연장(1993.2.7.)

- 1992.2.9. 선포된 비상사태를 재연장
 -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한 테러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특히 이란에 의한 이슬람 혁명 수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데서 기인

3. 프랑스 재무장관, 알제리 방문(1993.2.13.)

-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12억 달러 상당의 정부차관과 상업차관 공여협정에 서명

4. 알제리 수상, 프랑스 방문(1993.2.18.~20.)

- 프랑스에 적대적이었던 압데슬람 수상은 미테랑 대통령 및 경제지도자들과 면담하면서 양국관계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의지를 표명
 - 프랑스는 알제리에 60억 프랑의 신규 차관 제공을 약속하고, 금년부터 시작되는 알제리 경제 5개년 계획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EC(구주공동체)와 IMF(국제통화기금) 내에서 알제리 정부를 대변할 것이라고 언급

5. 알제리, 대이란 단교 발표(1993.3.27.)

- 이란과의 단교를 발표하면서 수단 주재 알제리대사를 소환 조치
 - 이란이 이슬람 극단 테러분자를 지원하면서 알제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단교 이유

6. 최고회의 과도기 관리정책 대안 발표(1993.6.21.)

- 최고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12월까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가 어려워 과도기가 필요
 - 과도 기간은 2~3년으로 하고, 어떤 경우도 3년을 초과하지 않음.

앙골라 사태. 전2권 (V.1 앙골라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135 / 7 / 1-161

1993년 중 앙골라 내전 관련 동향임.

1. 앙골라 내전 관련 정세

- 1992.10월 내전이 재연되어 반군인 UNITA(앙골라 완전독립연맹)가 동부와 중부 이남을 대부분 재장악
- 1993.2.10. 유엔, EC(구주공동체), 미국, 러시아, 포르투갈 등의 압력과 중재노력으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평화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
- UNITA 측이 정부의 특수경찰군 해체 요구와 신변불안을 이유로 2.26.로 예정된 협상에 불참
- UNITA는 유엔이 중재하는 협상 추진 관련, 4.12. 아비장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
 - 4.30. 협상 결과, 정부와 UNITA가 연정하는 과도정부를 수립한다는 권력분점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5.21. 최종 협상 결렬

2. 미국, 앙골라에 대사관 개설

- 1993.6.21. 미국은 앙골라 수도 루안다에 대사관을 신설
- 미국은 산토스 앙골라 정부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 개혁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

3. 유엔안보리, 앙골라 반군에 제재조치 결정(1993.9.15.)

- UNITA가 9.25.까지 평화협상에 불참하면 무기 및 석유 금수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

2145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앙골라 사태. 전2권 (V.2 유엔안보리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135 / 8 / 1-155

1993년 중 앙골라 사태 관련 유엔안보리 동향임.

1. 안보리 비공개 회의(1993.1.29.)

- 비동맹 그룹이 제안한 결의안 채택
 - 정부군과 반군 UNITA(앙골라 완전독립연맹)의 즉각적인 휴전 및 아디스아바바 협상 조속 재개

2. 안보리 본회의(1993.3.12.)

- 본회의는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4.30. 이전에 앙골라 정부와 UNITA 간 고위급 회담을 주선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3. 안보리 본회의(1993.6.1.)

- UNAVEM II 임무기간을 7.15.까지 45일간 연장하고, 정부군과 반군에게 유엔 중재하에 평화회담 조기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4. 안보리 본회의(1993.7.15.)

- 반군인 UNITA가 평화협상에 불응하고 무력행사를 계속할 경우, 무기 금수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결의안 채택

5. 안보리 본회의(1993.9.15.)

- UNITA 점령지역에 대해 무기 및 원유 금수조치를 담은 결의안 채택

6. 안보리 본회의(1993.11.1.)

- 반군에 대한 무역제재 및 UNITA 요원의 여행을 제한하는 결의안 채택

알바니아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135 / 9 / 1-54

1992~93년 중 알바니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2.3.22. 총선 실시
 - 민주당(야당) 압승
 - 선거 압승은 현 정부의 개혁 의지 미흡, 경제 파탄과 이에 따른 사회 혼란에 대한 국민의 불만, 민주화 분위기가 1년 동안 농촌지역까지 파급된 점 등에서 기인
- Ramiz Alia 알바니아 대통령 사임(4.3.)
 - 알바니아 총선 결과 민주당의 압승에 따라 전 공산당 출신 알리아 대통령 사임
- Sali Borisha 신임 알바니아 대통령 선출(4.8.)

2. 대외 관계

- 1992.12.27.~28. 세레치 알바니아 외상, 그리스 방문
- 1993.7.11.~13. 말레이시아 수상, 알바니아 방문
- 1993.11.14.~15. 파풀리아스 그리스 외상, 알바니아 방문

2147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아르헨티나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35 / 10 / 1-55

1993년 중 아르헨티나의 대내외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영국과의 관계

- 1993.4.5. 영국이 남대서양의 Georgias 섬의 통제수역을 현 12해리에서 200해리로 확대 추진한다는 국내언론 보도와 관련, 아르헨티나 외상 대리는 강경조치 예고
- 5.1.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은 영국의 남대서양 2개 섬(South Georgia 및 South Sandwich)에 대한 관할권 확대에 대해 항의하는 공한을 외무부에 송부
- 5.7. Petrella 아르헨티나 외상 대리는 아르헨티나 주재 영국대사를 초치, 영국에 의한 상기 2개 섬에 대한 관할권의 200해리 확대를 인정하지 않으며 동 도서에 대한 자국의 주권 주장

2. 국내정치 상황

-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993.8.18. 수도 시장 직접선거, 비례대표제의 강화 등 정치개혁 법안을 의회에 송부하고, 10월 중간선거 이후 중임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추진
- 10.3. 아르헨티나 하원의 절반을 선출하는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정의당이 승리함으로써 메넴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 고루
- 10.21. 아르헨티나 상원은 헌법개정안 승인, 대통령 연임제한 삭제 등 개정안 국민투표 추진
- 11.4. 아르헨티나 메넴 대통령과 알폰신 전 대통령 간 여야 합의로 개헌안 확정 및 하원을 통한 개헌 추진 합의
 - 12.29. 동 개헌안 상하원에서 의결 및 통과

3. 대외관계

- 아르헨티나 경제성은 일본 마쓰다 자동차 측과 5천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합작생산 공장 허가 신청서를 검토 중인바, 마쓰다 생산 공장은 1994년 중 픽업 1만 5천 대 생산 추진
- 메넴 대통령은 1993.11.30. 일본을 공식 방문, 일본의 수출입은행 신용 3억 달러 제공, 수출신용 보증 4억 달러 제공 등 성과 확보
 - 아르헨티나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가능성 시사 및 트라텔볼코 조약(중남미비핵지대조약) 서명 언명

서부사하라 문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2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135 / 11 / 1-63

1993년 중 서부사하라 분쟁 관련 동향에 대한 내용임.

1. 최근 동향

- 1993.3월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
 - 1993년 중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유엔사무총장의 노력 촉구
- 6월 초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모로코, 알제리를 방문해 서부사하라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 폴리사리오, 모로코 양측에 새로운 중재안 제시(구체안 아직 미확인)
- 10.25. 양측 간 제2차 직접 협상이 뉴욕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폴리사리오 측이 모로코대표단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여 무산됨.

2. 분쟁 경위

- 1988.8월 유엔사무총장은 모로코와 폴리사리오에 '휴전 후 유엔 감시하에 주민투표 실시'라는 중재안 제시
 - 1992년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유엔이 활동했으나, 주민 투표 참가자 범위를 둘러싸고 양측 간에 이견 발생

3. 주요 쟁점

- 분쟁의 쟁점은 주민투표 참가자의 범위 문제로 귀결

4. 전망

- 모로코는 연내 서부사하라를 자국에 귀속시킨다는 목표하에 주민투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폴리사리오 측은 모로코의 양보를 받을 지연작전을 구사 중

2149

대한민국 외교부

호주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35 / 12 / 1-267

1993년 중 호주의 총선거 등 주요 정세 동향임.

1. 호주 총선 동향

- 1993.3.13. 총선 실시 확정, 하원 전체(147석) 및 상원의 절반(40석) 선출
 - 지지도 평가는 초기 열세 여당 노동당이 야당 보수계와 격차를 좁혀 백중세 시현
- 선거 결과, 여당인 노동당이 재집권에 성공
 - 하원 총 147석 중 노동당이 79석, 상원의 경우 76석 중 37석 노동당 차지
 - 야당 측이 제의한 15% 부가세 등 급진적 개혁안에 대한 거부감 및 야당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초반 열세를 딛고 노동당 재집권
- Keating 수상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축전 발송
 - 호주의 기본 외교정책, 특히 대한민국 중시정책 불변 예상

2. 공화제 채택 논의

- Keating 수상은 총선을 통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호주의 미래가 유럽보다는 아시아지역과 결부되어 있으며 아태지역의 일원으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영국 여왕을 국가 원수로 삼는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 검토 추진
- 동 수상은 국가원수제도만 교체하는 최소한도의 접근방식으로 기존 각 주 및 제도는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공화제 도입 추진
 - 호주의 공화제 자문위원회는 1993.10.5. 2001년 이전에 공화제 도입을 추진하는 안을 골자로 한 보고서 제출

3. 기타 동향

- 1993.5.27. 호주를 방문한 Kiet 베트남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베트남에 대해 향후 4년간 1억 호주달러 경제원조 제공
- 1993.8.9. 호주·나우루 정상회담에서 호주의 나우루 인삼염 채취로 인한 피해보상(5천 7백만 호주달러) 합의
- Keating 수상, 1993.9.11.~24. 미국, 영국 및 프랑스 방문, 정상회담 개최
- Keating 수상, 11.22.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을 '고집쟁이'라고 언론에 표현, 양국관계 악화

방글라데시 총선 및 민주화 시위 사태

생산연도 1989-1993

생 산 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35 / 13 / 1-286

1989~93년 중 방글라데시의 헌법개정, 민주화시위, 총선거 등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대통령 임기제한 헌법 개정 추진 등 국내정치 상황

- 1989.7.6. 에르샤드 방글라데시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현행 부통령 임명제도 선거제로 수정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출, 가결
 - 야당 및 재야 측은 동 대통령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로 비난, 대규모 연좌시위 및 총파업으로 대응
- 1990.3.13.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에 야당 측은 불참을 선언하고 정권의 퇴진과 공정선거 실시를 위한 과도중립내각 제의

2. 시위 사태 격화

- 1990.10.10. 반정부 시위 중 경찰 발포로 시위대 5명 사망, 파업 등 충돌 격화 등 정정 불안
 - 10.31. 통금령 실시
- 국가비상사태 선포에도 시위 확대
 - 모든 정치활동 및 집회 금지, 신문 검열, 각급 학교 폐쇄 등 조치에도 시위대 및 여당 지지자 간 충돌, 경찰발포 사상자 등 피해 발생
 -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주방글라데시대사관 교신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방글라데시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공관 및 재외국민 안전 현황 보고
- 11.28. 에르샤드 대통령은 특별선언으로 1991년 중 대통령선거 및 총선 동시실시 및 중립적 인물을 부통령에 임명, 선거관리 이양을 표명하고 12.4. 사임, Ahmed 대법원장이 권한대행 취임
 - 6명의 대통령 자문위원 임명, 평화와 안녕질서회복 추진

3. 총선(1991.2.27.) 결과 및 신정부 출범

- BNP(방글라데시민족당) 전체 298석 중 101석, AL(아와미연맹) 68석 등 과반정당 미달, 연정으로 BNP의 Zia 총재가 수상으로 임명되어 정부 구성
- 동 수상은 7.1. 대국민 성명을 통해 내각제 개헌을 천명하고, 내각제 개헌, 8.7. 의회 통과, 9.15. 국민투표로 확정
 - 내각제 헌법하에서 전 국회의장 Rahman Biswas를 대통령으로 선임
- 신정부의 출범에도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욕구 미충족 및 물가상승, 각료들의 무능 등 정부 불신감 상존

2151

대한민국외교부자료

1993

불가리아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135 / 14 / 1-120

1993년 중 불가리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3.6.23. 불가리아 대통령의 부분 개각 실시
 - 신임 외무, 법무, 교통, 과학교육, 문화장관 임명

2. 대외 관계

- 1993.2.1.~4. 일본 경제사절단, 불가리아 방문
 - 불가리아 사유화조치 진행과 관련한 일본기업의 투자 가능성 검토
- 1993.2.24.~25. 제레프 불가리아 대통령, 폴란드 방문
 - 양국 간 10년간 유효한 우호협력조약 체결
- 1993.3.11.~12. 그리스 수상, 불가리아 방문
- 1993.4.20.~22. 제레프 대통령, 미국 방문
- 1993.6.3.~4. 영국 외상, 불가리아 방문
- 1993.6.10.~11. 콜 독일 수상, 불가리아 방문
- 1993.12.5.~7. 제레프 대통령, 이스라엘 방문

미얀마 정세, 1992

생산연도 1992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23-135 / 15 / 1-228

1992년 중 미얀마의 대내외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내각 확대 개편 등 군사정부 동향

- 1992.1.29. 미얀마 군사정부는 7명의 장관 및 11명의 차관을 새로 임명, 경제회복을 위해 전문가 민간인 대폭 기용
 - 군부는 1988.9월 쿠데타 이후 1990.5월 총선에서 NLD(민주국민연맹당) 압승에도 군사강제통치
- 3.5. 추가 내각개편 단행, 농업산림부가 농업부 및 산림부로 분리
- 3.20. 탄쇄 국가질서회복위원회 부의장(육군사령관)이 소동 의장이 맡던 국방장관직에 임명, 소동 의장의 퇴진 등 군부 내 세대교체 움직임
 - 소동 의장은 4.23. 동 위원회 의장직도 사퇴함에 따라 탄쇄 국방장관이 의장직 승계, 수상 및 국방장관직 겸임
- 4.24. 탄쇄 정권은 정치범 석방,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회의 소집 일정, 아웅산 수치 여사가족 방문 허용, 일부 정치인 가택연금 해제 등 발표
 - 외무부는 미얀마 정치발전과 인권향상의 측면에서 환영논평 발표
- 6.23. 미얀마 신헌법 제정 준비회의 개최에 이어 2차례 회의 개최, 1993.1월경 신헌법 기초를 위한 국민회의 개최 추진

2. 대외 관계

- 1992.2.24.~27. 라오스 수상, 미얀마 방문
- 탄쇄 의장, 미얀마 주재 캐나다 및 일본대사 접견
 - 미얀마 정치발전 문제 의견 교환
- 1992.7.13. 일본 외무성 정무차관, 미얀마 방문
 - 군부 측과 협의
- 1992.8.29.~30. 자카르타 개최 비동맹회의
 - 미얀마 재가입 결정, 아세안 옵서버 지위 확보 추진
- 1992.10.15.~17. 우웅조 미얀마 외무장관, 일본 방문
 - 와타나베 외상 회담

3. 인권 상황

- 미얀마 반정부 무장 학생단체가 카친주의 캠프에서 15명의 청년을 군사정부의 스파이로 처형한 것으로 보도되어 미얀마 반정부 그룹에 대한 국제적 동정여론에 악영향 우려

2153

대한민국 외교부서 영사관



- 카렌족 반군 거점인 Maneplaw지역에 대한 미얀마 군대의 공격으로 카렌족 소수민족 반정부 세력에 대한 타격 예상
- 1992.9.26. 미얀마 계엄령 해제
 - 점진적인 통제완화정책 및 이미지 개선작업의 일환

미얀마 정세, 1993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5 / 16 / 1-172

1993년 중 미얀마의 대내외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신헌법 요강 마련을 위한 국민회의 개최

- 1993.1.9. 동 국민회의가 정당대표, 1990년 총선 당선자대표, 소수민족대표, 노동자, 농민, 지식층, 공무원 등 직능대표 총 70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동 회의에 참석한 대표가 민의의 반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회식에 EC(구주공동체) 국가, 미국 호주 등 대사 불참
- 1.11. 이후 속개회의에서 국가체제, 기본권, 입법, 사법, 행정부, 지방, 공무원, 군의 역할, 선거 등 헌법 기본요소 토의 개시, 그룹별로 나누어 각 분야 토론 진행, 18개 장(Chapter) 마련
 - 특히, 군의 정치참여 허용 관련 일부 이견 노정
- 6.7. 이후 회의 재개, 다당제 민주정치, 군의 정치 참여 등 국가 기본원칙을 토의해 확정

2. 대외 관계

- 1993.2.1.~3.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 미얀마 방문
 - 중국과 선린 우호관계 확인
- 2.16. 방콕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8명이 미얀마의 유엔회원국 자격 정지 촉구
- 1993.3.29.~31. 인도 외무차관, 미얀마 방문
 - 마약단속협정 서명
- 서방의 정치 외교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미국 관계 개선 적극 시도, 미국 비난 자제, 마약 단속 협력, 미국 유력인사 초청 등 유화정책 시행
- 1993.5월 온조 미얀마 외무장관, 필리핀 방문
 - 1993.5.19. 로물로 필리핀 외무장관과 외무장관회담 시 아세안 가입 희망
 - 미얀마의 정치 및 인권문제로 인한 미국 등 서방국들의 우려로 상당기간 아세안 가입은 난망
- 1993.5.24. 킨윤 국가질서회복위원회 제1서기 등 대표단, 싱가포르 방문
 - 투자 등 경제협력 협의
- 1993.6.17. 온조 외무장관, 비엔나 인권회의 참석
 - 미얀마 인권문제 방어
- 9.21. 온조 외무장관, 브루나이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성명 발표
- 11.5. 미얀마와 UNHCR(유엔난민기구) 간에 로힝야 난민귀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UNHCR 사무소 설치 MOU 서명
- 1993.12.20.~24. 킨윤 국가질서회복 제1서기 등 대표단, 인도네시아 방문
 - 우호관계 및 통상투자증진 활동

2155

대한민국 외교부



3. 국내 정세

- 1993.2.4. 외환증명서제도 시행, 달러 등 외화획득 수단으로 외화예치 유도
- 2.17. 부처 개편 및 일부 개각: 기획재무부의 경제기획부와 재무부로 분리
- 11.3. 미얀마 국방부는 KIO(카친독립기구) 축과 KIO 자치구역 인정을 요지로 하는 휴전합의를 발표하고, 기타 소수민족 반군세력과 평화협상 적극적 추진

브라질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36 / 1 / 1-132

1993년 중 브라질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브라질 국민투표 실시(1993.4.21.)

- 투표 내용: 국가 형태(공화정 또는 군주정)와 정부 형태(대통령제 또는 의회제) 결정
- 결과: 공화제와 대통령중심제 채택

2. 카르도스 브라질 외무장관의 대아시아 정책에 관한 발언(1993.4.18.)

- 취지: 21세기 태평양 시대에서 아세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시대적 요청임.
- 내용: 중점협력국(일본, 인도, 중국, 호주, 한국 등)을 언급하고, 국가 간 경제협력은 조인트 벤처가 이상적이며, 이를 위해 아시아 여러 나라와 투자협정을 체결할 예정임.

3. 카르도스 외무장관, 미국 방문(1993.5.10.~11.)

- 브라질 내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브라질 외채상환 문제 등 협의

4. 주용기 중국 부수상, 브라질 방문(1993.5.28.~6.3.)

- 브라질 광산개발 참여 확대, 브라질 발전소 건설 참여, 이타마르 브라질 대통령 방중 초청

5. 브라질 정부, 비상경제조치안 발표(1993.6.15.)

- 탈세자 단속, 민영화 가속, 국회 계류 중인 금융거래법 조기 통과 추진 등

6. 강택민 중국 주석, 브라질 방문(1993.11.22.~28.)

- 철광석 교역 확대와 우주협력 합의, 이타마르 대통령의 방중 초청 수락

2157

대한민국 외교부

브루나이 정세

생산연도 1991-1992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6 / 2 / 1-203

1991~92년 중 브루나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1.1월 천주교 신부 불법체류 명목으로, 현지 필리핀대사 등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방
- 11.2. 반정부 활동 정치범인 Awangomar가 특사로 석방

2. 대외 관계

- 1991.1월 걸프전쟁 발발 관련 사우디, 오만 및 이집트 체류 공관원 가족 철수 및 원유 70만 배럴 증산 및 아세안 석유안전협정에 따라 비산유 회원국에 최우선 수출 추진
 - 2.25. 브루나이 외무성은 성명으로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철수를 요구한 유엔 결의 지지 표명 및 평화·외교적 노력 촉구
- 1991.4.10.~14. 서든신 중국 외교부 차관보, 브루나이 방문
 - 중국 측은 평화공존 5원칙 및 유엔헌장의 기본정신하에 브루나이 측과 외교관계 수립 희망 피력
- 1991.4.30.~5.1. 고촉동 싱가포르 수상, 브루나이 공식 방문
 - 브루나이 국왕 등과 협력 증진 협의
- 1991.4.29.~30. 가이후 일본 수상, 브루나이 공식 방문
 - 개발협력 등 협의
- 브루나이, 중국 및 소련과 수교 검토
 - 1991.7.20. 브루나이 외상, 소련 부수상 및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 중국과는 9.30.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소련과는 10.2. 수료합의서 서명 및 외교관계 수립
- 멕시코 및 카타르(10.4.), 세네갈(11.26.), 가나(12.10.), 온두라스(12.20.)와 외교관계 수립
- 1992.1.18.~20. 후세인 요르단 국왕, 브루나이 비공식 방문
 - 요르단에 대한 재정지원 협의
- 부르키나파소 및 헝가리(1.22.), 기니(2.29.),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3.3.), 콜롬비아(3.24.), 아르헨티나(4.24.),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5.11.), 몽골(5.18.), 솔로몬제도(5.21.)와 외교관계 수립
- 1992.2.14. 브루나이 국왕, 말레이시아 방문
 - 양국 간 방위, 정보, 교육 및 항공에 관한 4개 양해각서 체결
- 2.29. 베트남 수상, 브루나이 공식 방문 중 베트남과 외교관계 수립
- 1992.7.17. 전기침 중국 외상, 10명의 대표단과 함께 국교수립 이후 최초로 브루나이 공식 방문

볼리비아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36 / 3 / 1-121

1993년 중 볼리비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볼리비아 외채 현황(1992년 말 현재)

- 볼리비아의 외채 총액은 37억 7,400만 달러이며, 1993년 중 동 외채 감축을 위해 IMF(국제통화 기금) 등 국제기구와 다각적 협상을 계획 중
 - 1993년 중 지불해야 할 외채 이자는 3억 달러를 상회하며, 공공기업 이익금에서 충당할 예정

2. 스페인의 대볼리비아 경제원조

- 1990년부터 시행된 스페인의 대볼리비아 무상원조는 총 3억 달러이며, 이 중 1992년까지 2억 달러 지원
 - 미집행된 1억 달러는 추후 볼리비아의 긴급사업 계획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짐.

3. 주볼리비아대사, 주재국 외무장관 면담(1993.11.3.)

- Aranibar 장관, 최근 북한이 주페루대사관을 통해 볼리비아 측에 외교관계 수립을 요청해왔으나,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언급
 - 특히, 지난 8월 Sanchez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당시 한국 특사와 동 대통령 간 대화에서 확인된 것처럼 볼리비아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관심이 크다고 강조

4. 세계은행, 볼리비아에 10억 달러 차관 제공

- 1993.12.10. Illanes 볼리비아 경제기획장관은 세계은행 자문그룹이 10억 달러 차관 제공에 동의하였다고 발표
 - Illanes 장관은 볼리비아·브라질 가스운송관 건설을 위한 8억 달러 차관도 세계은행에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

2159

대한민국 외교부

캄보디아 정세. 전2권 (V.1 1.1.-6.1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6 / 4 / 1-219

1993년 중 캄보디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총선 이전 동향

- 베이징에서 1993.1.28. 개최된 특별 SNC에서 총선일(1993.5.23.~28.) 결정
 - 당초 총선 2, 3주 전에 대통령 선거 실시를 검토하였으나, 시아누크의 반대로 총선 후에 실시하기로 함.
- 크메르루즈의 총선 방해
 - 시엠립 거주 베트남인 33명 살해(3.10.): 이후에도 민간인과 외국인에 대한 공격 지속
 - 크메르루즈 프놈펜 철수(4.13.): 총선 방해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의 이탈 징조로 보임.
- 캄보디아 주요 정당
 - FUNCINPEC(민족통일전선): 시아누크 아들 Norodom Ranariddh이 당수, 중국이 배후
 - CPP(캄보디아인민당): 훈센 현 총리가 당수, 베트남 공산당과 연결
 - BLDP(불교자유민주당): 손산이 당수, 불교계 정당

2. 총선 결과

- 20개 정당 참여, 총 유권자 470만 명 중 약 89% 투표 참여
- 개표 결과(총 120석, 90% 개표율)
 - FUNCINPEC 58석(득표율 47.5%)
 - CPP 51석(득표율 38.1%)
 - BLDP 10석
- 야당 승리 배경
 -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화해정부 구성 공약이 주요 원인
 - 인민당 계속 집권 시 내전 재발 우려(인민당은 선거기간 중 크메르루즈 소탕 의지 천명)
 - 캄보디아인의 뿌리 깊은 반베트남 감정 표출(현 프놈펜 정부는 친베트남 성향)
 - 현 정부의 집권 14년간 만연한 부정부패에 일반국민 염증

3. 향후 정치일정

- 제헌의회에서 신헌법 채택
- 신헌법에 따른 신정부 구성
- UNTAC(유엔평화유지군) 단계적 철수

캄보디아 정세. 전2권 (V.2 6.11.-12.20.)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6 / 5 / 1-275

1993년 중 캄보디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총선 후 동향

- 캄보디아 제헌의회 활동 개시(1993.6.14.)
 - 시아누크를 국가원수로 추대하며, 1970년 이전의 모든 권한을 환원
 - 1970년 론놀의 쿠데타는 불법임을 선언
- 유엔안보리, 캄보디아 총선 결과 승인 및 제헌의회의 헌법제정 활동 지지(6.15.)
- 집권 CPP(인민당)은 선거 결과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6.20. 총선 결과 승복 발표
- 주요 3개 정파동향
 - FUNCINPEC(민족연합전선), CPP, BLDP(불교자유민주당)는 임시연립정부 수립 합의
 - 라나리드 FUNCINPEC 당수와 CPP의 훈센 전 수상이 과도 연립정부 공동의장, 손산 BLDP 당수가 제헌회의 의장을 맡음.

2. 헌법 제정(1993.9.23.) 및 신정부 출범(10.24.)

- 입헌군주제 채택, 시아누크가 왕, 노로돔 라나리드가 제1수상, 훈센이 제2수상, 채심이 국회의장
- 신정부 출범 및 신내각 명단 발표
- 신정부에서 배제된 폴 포트파는 점차 고립되고, 크메르루즈는 투항 등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됨.

3. UNTAC(유엔평화유지군)의 철수

- 유엔안보리, 유엔사무총장에게 UNTAC의 임무종료 후의 역할에 대해 1993.7월까지 보고하도록 결의(1993.6.15.)
- 유엔대변인, 캄보디아 UNTAC 16,000명의 단계적 철수 발표(7월)
- 유엔안보리, 사무총장이 제출한 UNTAC 철수계획 승인(8.27.)
 - 1993.11.15.까지 철수 완료
 - 지뢰 제거 및 군사훈련 요원은 11.30.까지, 군 경찰은 12.31.까지 철수하도록 연기
 - 20명 규모의 군사 연락장교단은 6개월간 추가 잔류

2161

대한민국 외교부

대만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136 / 6 / 1-167

1993년 중 대만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이등휘 총통, 1992.5월 헌법 개정에 따라 1993.1.4. 제2차 국민대회 2차 임시회의에서 국정보고
 - 헌정개혁, 경제건설, 외교 및 양안관계, 국방안전, 중화문화 부흥 및 재창조 강조
- 1.30. 학백촌 행정원장 내각 총사퇴, 2.10. 연전 대만성 주석을 행정원장으로 지명, 2.26. 신임 내각 명단 발표
- 연전 행정원장은 3.12. 입법원 보고를 통해 중국의 대만 고립화에 대응, 해외 원조 및 대만 방문 초청 예산 할당 등 외교정책을 발표
- 4.9. 이등휘 총통, 대만의 유엔 및 국제기구 가입 추진 의사 천명
 - 유엔가입 시 대만의 명칭을 Republic of China on Taiwan으로 고려
- 8.10. 대만 국민당 내 비주류파 입법위원 7명이 신당 창당 발표, 이등휘 총통을 중심으로 한 대만출신과 본토출신 비주류파 간 내분
- 8.16.~22. 대만 국민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 개최, 1개 중국정책 건지, 대중국정책에 순리적인 양안관계 추진, 이등휘 총통 주도 대만출신 주류파 주도권 확립 추진 등 결과
- 11.27. 타이베이시와 고웅시를 제외한 대만 전역 23명의 현·시장 선출
 - 국민당이 15명, 민진당 6명, 무소속 2명 당선되고, 득표율은 국민당 47.5%, 민진당 41% 등 기록

2. 대외 관계

- 재대만 미국협회 측은 1992.11월 북한의 무역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한 것과 관련 미국의 우려를 전달한바, 대만 측은 북한과 관계발전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확인
- 1992.11월 칼라 힐즈 미국 무역대표가 1979년 단교 이래 최초의 각료급 인사로 대만 방문
- 125억 마르크 상당 잠수함의 대만 수출과 관련,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수출 포기
- 1993.1.27.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과 임추산 대만 국민대회 대표 면담
 - 단교 이후 대만 대표부 명칭, 국호 및 국기 사용 문제 등 협의
- 2.11. 전복 대만 외교부장, 인도네시아 및 일본 방문차 출국
 - 인도네시아와 바탄도 섬 개발 문제 협의
 - 일본과는 사적방문으로 친대만 일본 국회의원 접촉을 통해 1992년도 13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역조 시정 등 일본·대만 관계 협의
- 2.18. 말레이시아, 4.21. 베트남과 투자보장협정에 서명
- 7.12. 모스크바 대표처 개설, 40년간 동결된 관계 개선

중국·대만(양안)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136 / 7 / 1-130

1993년 중 중국·대만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양안 교류

- 1993.2.27. APEC(아태경제협력체) 중소기업세미나 참석차 중국대표단(4인) 대만 방문
- 3.11. 해기회(대만해협 양안교류기금회)는 구진익 대만 총통부 부비서장을 비서장으로 임명, 동인은 이등휘 총통의 측근으로 양안관계 활동 수준 제고를 기대
 - 대만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3불정책(불접촉, 불담판, 불타협)을 조정할 예정임을 표명
- 3.26. 해기회와 해협회(중국해협 양안관계 협회)는 베이징 개최 회담에서 양안 공증서 사용 검증 합의서 및 양안 등기우편 조사 및 보상업무 합의서 합의
- 4.6., 6.24., 8.10., 9.30., 11.8., 12.9., 12.13. 등 9차례 중국 피랍여객기가 대만에 착륙, 대만 측은 기체 및 탑승인원의 중국 귀환에 협조했으나, 납치범의 중국 인도는 거절
- 1993.4.27.~28. 싱가포르에서 해협회와 해기회 회장 간 고위급회담 개최
 - 동 회담에서 중국·대만 대화채널 구축, 경제교류증진, 에너지공동개발과 청소년·언론교류 협의
 - 동 회담은 중·대만 정부 간 최초 대리회담이며 향후 중·대만 관계 발전의 중요한 의미
 - 중·대만 간 교류강화를 위한 공동합의문, 양 기관 회담 일정 및 협정 서명, 상기 합의된 두 개의 합의서 서명
- 8.30. 상기 합의에 따라 해기회와 해협회는 베이징에서 양안관계 업무협상을 개시한바, 협상 의제와 일정에 관한 이견으로 결렬

2. 대만의 지위 문제

- 1993.3.7. 전복 대만 외교부장은 유엔가입 문제 검토를 위한 T/F 설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 주목
-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9.1. 대만문제 백서를 발간하고 대만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문제로서 한반도와 독일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주장
 - 이에 대만 총통부는 양안이 두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비판
 - 9.16.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대응성명으로 국제사회에 대만문제가 아닌 무력위협, 기본인권 및 자유박탈 등 중국문제 존재 지적

2163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중앙외교정보센터

칠레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36 / 8 / 1-151

1993년 중 칠레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호네커 전 동독 공산당 서기장, 칠레 입국

- 독일 법원이 호네커 전 서기장에 대한 재판 절차 중단 및 구속 해제를 결정하고, 호네커 자신이 칠레 거주를 희망함에 따라 칠레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동인의 입국을 수용
 - 1993.1.14. 호네커가 칠레에 입국한바, 이에 대해 Silva Cimma 칠레 외상은 1992.12월 주칠레 소련대사관의 손님자격으로, 또한 인도적 견지와 국제법에 따라 동인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언급
 - 호네커 입국 관련, 칠레 일반여론은 인도적 견지에서 수긍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

2. 칠레 군부, Aylwin 칠레 대통령 정부에 불만 표출

- Aylwin 대통령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금년 들어 1994.3월 출범하는 신정부가 과거 청산 문제의 부담이 없도록 군정의 잔재 청산 및 각종 민주개혁 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서 군부의 불만이 점증되어 왔는바, 군부는 Aylwin 대통령이 북구 4개국 및 러시아를 순방 중이었던 지난 1993.5.28. Pinochet 육군사령관 주재로 돌연 육군장성 전체협의회를 개최하고 동 회의 개최 중 중무장한 육군 특전부대를 동원, 동사령부 건물 외곽경계를 삼엄히 하는 무력시위를 감행하여 주재국 조야를 긴장시킨 바 있음.
- 정부와 군부 간의 불편한 관계는 6.9. Aylwin 대통령과 Pinochet 육군사령관 회담을 계기로 일단 해소되었는바, 당시 언론 및 관측통은 정부가 군부의 불만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관측됨.
 - 군 조직법 개정은 일반 안건으로 처리
 - 인권관련 사건 재판절차를 신속히 하며 특히 군부인사의 증언 등은 비공개로 추진하는 방법 모색 및 신규 사면조치 검토
 - 군사행정 신속처리, 군수부품공장 구매사건 종결조치 등

3. 총선 및 국회의원 선거(1993.12.11.)

- 대통령 선거 집계 결과(12.12. 정오)
 - 유권자: 8,085,439명, 투표자: 7,314,890명(투표율 90.47%)
 - 여당연합의 Frei 후보가 58.01% 득표로 신임 대통령에 당선
- 국회의원 선거 결과
 - 상원: 여당연합(9석), 중도우파연합(9석)
 - 하원: 여당연합(70석), 중도우파연합(50석)

콜롬비아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36 / 9 / 1-127

1993년 중 콜롬비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콜롬비아 비상조치령 내용 추가 선포(1993.1.6.)

- 1992.11.8. 선포된 비상조치령에 유류 등 연료 도난범을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 추가
- 1993.5.5. 추가로 90일 비상조치령을 연장하기로 국회에서 결의

2. 콜롬비아 외무부, 외교단에 테러 조심 경고(1993.1.22.)

- 콜롬비아 외무부는 전일 폭탄 차량 테러 발생을 알리면서 외교단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
- 외교단 담당 경찰대 신설 운영

3. 대통령 선거 관련 동향

- 1994년도 대통령 선거 관련 파스트라나 보수계 당수가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

4. 주콜롬비아대사관과 콜롬비아 외무부 간 업무 협의(1993.6.25.)

- 콜롬비아 외무부는 북한의 공관 설치에 부정적 입장 표명

5. 콜롬비아 대통령, 영국 방문(1993.7.27.)

- 마약사범 협조 등에 대해 합의하고, 영국의 콜롬비아 광산에 대한 투자 협의

2165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처

캐나다·미국 관계

생산연도 1988-1993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3-136 / 10 / 1-125

1988~93년 중 캐나다·미국 간 관계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5대호 관련 양국 간 분류

- 극심한 북미지역 한발로 인해 미국 미시시피강의 수위 하강으로 각종 선박의 운항 차질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 남부 주 상원의원들은 미시간 호수물을 미시시피강 상류에 방류하는 계획을 미국 행정부에 건의함.
- 1988.7.8. 캐나다 정부는 미시간 호수물의 방류로 인해 인접호수 수위 하강 등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캐나다 천연자원에 대한 포괄적 통제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함.
- 미국 일리노이주 정부에서 검토 중인 미시간 호수물의 방류계획은 5대호 인접 미국 중북부 8개 주의 동의와 1909년 캐나다·미국 간 Boundary Water Treaty에 의거하여 캐나다의 동의도 필요함.
 - 동 조약에 따르면 호수물의 방류를 위해서는 캐나다·미국 간 합동위원회를 구성, 동 위원회에서 호수물 방류로 인한 산업(전력 발전 및 운항 등) 및 각종 생태적 변화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미국·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입법 동향

- 1988.8.31. 캐나다 하원은 정부안 대로 법안을 통과
- 12.30. 캐나다 수상이 서명하여 1989.1.1.부로 법안 시행

3. 캐나다·미국 정상회담(1989.2.10.)

- FTA 이행, 동서관계 전반, 산성비(Acid Rain) 문제, 중미문제,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의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등 합의

4. 캐나다·미국 정상회담(1993.6.2., 미국 백악관)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보스니아 문제 등 협의
-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멀로니 수상의 주요 언급내용



- NAFTA
 - 클린턴 대통령은 동 협정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명
 - 캐나다는 NAFTA 제19조(분쟁해결조항)과 캐나다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미국이 원하는 부속협정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
- 보스니아 문제
 - 미국 단독에 의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집단적인 해결만이 가능함. 새로운 해결은 유엔안보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앞서 이미 동 지역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캐나다군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사전 검토되어야 함.
 - 캐나다는 미국 지상군의 보스니아나 마케도니아 파견에 반대하지 않음.
- 동 회담은 클린턴 대통령 취임 후 갖는 양국 간 세 번째 정상회담이며, 멀로니 수상 사임에 앞서 캐나다 수상으로서 가진 마지막 정상회담임.

2167

대한민국 외교부의 역사

코스타리카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36 / 11 / 1-184

1993년 중 코스타리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코스타리카 정세(1993.1월)

- 코스타리카는 대통령 중심제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강하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어 사실상 4권 분립에 가까우며, 헌법상 군 창설이 금지되어 있어 군대가 없다는 점이 특징
-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국가로서 100년 이상의 민주주의 경험, 높은 교육수준과 시민의식을 중심으로 대내 안정 유지
 - 대외적으로 비무장 영구 중립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정치 이념적으로 친서방 노선을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중시
 - 앞으로도 정치적 안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군대 미창설, 치안경찰 및 장비 부족, 중남미의 마약기지화 추세로 인해 코스타리카의 강력범죄 증가 및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소지가 큰 상황

2. 주코스타리카 니카라과대사관 점거사건 발생(1993.3.8.)

- 코스타리카 정부 협조하에 니카라과 정부는 양측의 중재자인 니카라과 추기경 Miguel Obando Y Bravo와 무장그룹 간 협상으로 13일 만에 사태 종결

3. 미국 노조의 대코스타리카 경제제재 요구

- 1993.6.1. 미국 노조 AFL-CIO는 노조 활동 및 노동인권 보장 미흡을 이유로 미 상무부에 코스타리카에 대한 제재를 요구
- 이와 관련 코스타리카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10.20. 코스타리카 국회는 노동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 11.17. 미국 AFL-CIO는 코스타리카에 대한 제재 요구를 철회
 - 다만, 코스타리카 측이 노동법 개정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고 제재 요구를 재개할 권리는 유보한 것으로 알려짐.

중국 정세. 전2권 (V.1 1-4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136 / 12 / 1-188

제8기 전인대 제1차 회의(1993.3.15.~31., 베이징) 평가 및 전망임.

- 등소평 사후를 대비한 강택민체제 공고화
 - 강택민은 당정군의 최고책임자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중국의 정국은 등소평이 생존해 있는 한 안정 유지 예상
 - 양상곤, 만리 등 원로는 은퇴하고 신진세력 대거 등장
 - 50세 전후의 경제·기술 관료를 국무원의 41개 부서 중 19개 부서장에 새로이 임명
-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자유시장경제체제 구축
 - 헌법 개정 및 경제기술 관료의 대거 등용으로 개혁개방정책의 가속화 예상
- 경제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따라 정치적 개혁 요구 수용 및 부정부패 척결이 향후 과제
- 한·중 수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에 대해 형식적으로 언급

중국 정세. 전2권 (V.2 5-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136 / 13 / 1-150



1993.5~12월 중 중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1993.9.10., 장관 보고사항)

- 개관
 -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과거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신봉을 대체하는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정착하고 있음.
 - 다만 개혁개방의 성공적 수행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해소 등 개혁개방의 관리문제를 둘러싼 갈등 표출 가능성
- 주요 문제점
 -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부유층이 출현하면서 사회계층 간의 갈등구조가 심화
 -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권력부패가 확대
- 정국 전망
 - 중국이 추진 중인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향후 시장경제체제가 근간을 이루고, 사회주의는 공산당 독재체제를 합리화하는 이념 정도로 기능하며, 경제사회 부문은 점차 자본주의 사회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 예상
 - 당분간 정치적 권위체제와 경제사회적 자유체제가 이원적으로 양립하는 중국식 특유의 국가체제 유지 예상

2. 올림픽 유치 실패 이후의 중국 정세(1993.9.27., 장관 보고사항)

- 중국 반응
 - 중국은 올림픽 유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 대응지침을 미리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의 지도부와 언론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감정적이거나 총동적인 반응을 처음부터 억제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올림픽 유치 성공 혹은 실패 상황을 미리 준비
- 정세 전망
 - 올림픽 유치 실패가 권력변동을 수반하는 사태는 없을 것임.
 - 미국 의회의 중국 올림픽 개최 반대 결의안 채택, 허드 영국 외상이나 언론들의 공개적인 중국 올림픽 개최 반대 등으로 앞으로 서방 국가들에 대한 감정적 앙금은 더욱 축적될 전망
 - 중국은 앞으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서방 국가보다는 인접국가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

중국·일본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 동북아2과

MF번호 2023-136 / 14 / 1-137

1993년 중 중국·일본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중·일 고위급 교류

- 1993.3.17.~24. 오방국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일본 방문
 - 미야자와 수상 및 와타나베 외상 면담
- 1993.5.29.~6.1. 전기침 중국 외상, 일본 방문
 - 미야자와 수상 및 무토 외상 면담
 - 일·중 안보대화 개최 합의, 캄보디아 정세 등 협의
- 1993.9.28. 유엔총회 계기 중·일 외상회담 개최
 - 전기침 중국 외상과 하타 일본 외상은 국교수립 15주년을 맞아 양국관계 한층 발전 희망
 - 미국의 대중국 MFN(최혜국대우) 연장 문제, 중국의 북한 핵 문제 해결 기여 등 협의
- 1993.11.19.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시애틀에서 일·중 정상회담 개최
 - 양국관계 일반, 양국 안보대화, 북한 핵 문제, 홍콩 문제 등 협의

2. 중·일 안보대화(1993.12.20., 베이징) 개최

- 수석대표: 양국 외무부 아국국장
- 양국 쌍방의 안보정책을 설명하고, 지역안보 문제로 일본 측은 역내 미군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하며, 중국 측은 아태지역에는 유럽형 CSCE(구주안보협력회의)를 도입할 상황이 아니며 개별분쟁은 2국간 대화 내지 직접 관계당사국 간의 소지역적 대화에 의한 해결 찬성
- 북한 핵 문제에 관해 일본 측은 중국 측 북한 설득 요청에 중국 측은 대북한 영향력에 한계 설명

3. 기타 양국관계 및 교류

- 1993.6.20. 베이징에서 제1차 중·일 해상안전회담 개최
 - 황해 공해상 선박안전 확보 방안 협의
- 10.5. 중국의 핵실험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유감의 담화문 발표
- 1993.11.29. 도쿄에서 제2차 중·일 해상안전회담 개최
 - 공해상 밀수선 조사와 관련 구체적 협력방안 협의
- 1993년도 중국의 대일본 교역 총액이 전년 대비 30.9% 급증한 378억 달러에 달해 일본의 제2 무역상대국으로 부상(JETRO 발표)

2171

대한민국 외교부

중국·러시아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 동구1과

MF번호 2023-136 / 15 / 1-60

1993년 중 중국·러시아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93년도 중국과 러시아 관계 평가

- 주중국대사관 및 주러시아대사관은 양국이 상호인접 대국으로서의 중요성과 상호보완적 관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급격한 개혁에 따른 국내 정치·경제적 난관, 친서방적인 정책에 대한 중국의 냉담함과 중국의 핵실험에 대한 러시아의 만류 거부 등에 따른 실망감 등으로 다소 소원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평가
- 중국·러시아 국경무역을 위주로 한 무역증대, 강택민 주석의 러시아 방문 추진, 러시아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 등을 통한 관계회복의 긍정적 측면도 기대
- 국경문제 해결 추진
 - 1991.5월 중국·소련 국경협정 체결 이후 잔여 국경문제로 우수리 섬과 아르군 강 3개 도서의 귀속 관련 양국 간 교섭(1993.4월), 중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간 국경 문제는 러시아가 3개국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국과 협상 중(러시아가 자료 및 전문 인력 보유)
- 7.12. 모스크바에 타이베이·모스크바 경제·문화조정위원회 설치, 대만과 비정부 차원 교류 개시

2. 중국·러시아 군사 분야 협력

- Zhang 중국 해군참모총장, 러시아 방문(1993.4.7.~11.)
 - 그로모프 러시아 해군사령관 등 예방, 북양함대의 함정 방문 등
 - 러시아 방문 기간 중 중국의 러시아 함정 구매 관련 토의 가능성

3. 중국·러시아 고위급 교류

- 1992.12월 열린 러시아 대통령 방중 시 초청에 대해, 강택민 주석이 1993.10월 러시아 방문 추진
 - 러시아의 국내사정으로 연기, 러시아 측은 1994년도 상반기 러시아 방문 실현 희망
- 1993.12월 말로 예정된 중국·러시아 공동위원회 연기, 개최시기 불확정 상황 지속
- 코지레프 러시아 외상은 1994.1.26.~30. 중국 공식 방문 추진
 - 강택민 주석의 러시아 방문 및 경제협력 증대 협의 예상

중국·미국 관계. 전2권 (V.1 1-8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 북미1과

MF번호 2023-136 / 16 / 1-144

1993.1~8월 중 중국·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미국·중국 관계 현황

- 주중국대사는 1993.4.16. 조종표 주중국대사관 참사관이 미국 국무원 산하 미국연구소의 Zi Zhong Yun 전 소장을 면담, 미·중 관계에 대해 청취한 내용을 아래 보고함.
 - 최근 중국외교의 특징
 - 개혁개방 시대의 중국외교는 과거와 달리 이념적 요소를 강조하지 않고, 실용주의를 중시하면서 평화공존 5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
 - 중국의 현대화 및 경제발전 과정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한·중 국교수립 시에도 이러한 요소가 크게 작용함.
 - 미·중 관계 현황
 -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중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미국이 중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음. 그러나 그 후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며, 실제로 중국의 외교는 대미 관계를 매우 신축성 있게 다루어가고 있음.

2. 중국의 미사일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1993.8.28., 장관 보고사항)

- 최근 중국의 대파키스탄 미사일 수출 및 이에 따른 미국의 제재조치 관련,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미사일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검토결과를 아래 보고함.
 - 제재조치의 근거
 - 1991.11월 베이커 미 국무장관 방중 시 중국은 MTCR 지침 준수에 합의하였으며, 1992.1월 대외적으로 동 의사를 표명한바, 미국 측은 중국의 대파키스탄 미사일 수출은 이러한 약속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
 - 한국 관련 배경 분석
 - 중국의 미사일 수출에 대한 제재조치는 중국과 함께 국제적 미사일 비확산 활동에 비협조적인 북한에 대한 간접적 경고로 해석할 수 있음.
 - 미국이 금번 조치를 계기로 미사일 비확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MTCR 가입 권유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

2173

대한민국 외교부

중국·미국 관계. 전2권 (V.2 9-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 북미1과

MF번호 2023-137 / 1 / 1-109

1993.9~12월 중 중국·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조치

- 외무부 동북아2과는 최근 중국의 대파키스탄 미사일 수출 및 이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 조치가 미·중 관계 및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1993.9.2.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미국은 중국의 대파키스탄 M-11 미사일 수출을 MCTR(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 미국 국내법에 의거하여 대중국 경제 제재조치 실시를 결정한바, 향후 2년 동안 미사일 관련 품목의 대중국 수출 금지
 - 중국은 동 조치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전기침 외교부장은 MCTR 규정 준수 방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
 - 미국 측 조치에 대해 중국 측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레토릭 성격이 강하며, 미국 또한 동 문제에 대한 협상 희망을 시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동 조치가 미국·중국 관계를 전면적인 외교전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대중국 경제 제재조치로 인한 미·중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

2. 올림픽 유치 실패 후의 중국 정세

- 주중국대사는 1993.9.24. 올림픽 유치 실패가 향후 중국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중국은 올림픽 유치에 실패할 것에 대비하여 수일 전부터 대응지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강택민 국가주석은 9.21. “승패는 병가상사로서 중국은 승패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이기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지더라도 실망하지 않는다. 금번에 실패할 경우 향후 재 시도하면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중국 지도부와 언론은 올림픽 유치 성공 시와 실패 시를 미리 준비해 온 만큼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냉정은 중국의 현실 이해계산에서 연유하고 있는 점에서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은 처음부터 억제하려고 하고 있음.
 - 중국은 인민일보 사설에서 암시한 바와 같이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는 표현 속에 서방권, 특히 미국과 영국에 의한 “중국 위해론”을 앞세운 견제를 악마(Devil)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생각되어 있는 미·중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아주지역 국가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3-137 / 2 / 1-90

1993년 중 중국·아시아 국가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관심 사항

- 영토분쟁
 - 중·베트남 국경선, 통킹만, 남사군도
 - 중국·베트남 전문가 회의(1993.2.14.~18., 하노이)
 - 제6차 중국·인도 국경 실무그룹회의(1993.6.25.~28., 뉴델리)
- 캄보디아 평화 프로세스
 - 캄보디아 정파 간 회의(1993.5.6., 베이징)
 - 5.23.~28. 총선
 - 크메르루즈의 학살사건
- 아태지역 안보
 - 하나의 중국 원칙: 대만 문제
 - 중국 미사일 수출: 1992.12.4. 파키스탄 언론은 중국제 M-11 미사일의 카라치 반입 보도
 - 아세안 국내 거주 화교, 홍콩 정치개혁 법안, 중국내 일본의 화학무기 등
- 경제협력
 - 통상 및 투자 증진, 아시아개발 차관공여, 국경통과 도로 건설 및 수로 이용
 - APEC(아태경제협력체), EAEC(동아시아경제협력체),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2. 중국·아시아 간 교류

- 중국 인사의 아시아 방문
 - 1992.11.30.~12.4. 리펑 총리, 베트남 방문
 - 1993.4.19.~20. 첸지천 외교부장, 태국 방문
 - 1993.5.14.~15. Chi 국방장관, 베트남 방문
 - 1993.7.20.~8.11. 교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방문
 - 1993.7.21.~22. 첸지천 외교부장, 싱가포르 방문
 - 1993.7.23.부터 첸지천 외교부장,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참석
 - 1993.10.19. 탕자첸 외교부 부부장, 베트남에서 영토분쟁 조기해결 원칙 서명

2175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 아시아 및 기타 인사의 중국 방문
 - 1992.12.7.~15. 베트남 국방장관
 - 1993.2.27.~3.2. 태국 외무장관
 - 1993.4.19.~28. 싱가포르 총리
 - 1993.4.25.~30. 필리핀 대통령
 - 1993.4월 베트남 과기장관
 - 1993.5.14.~17. 뉴질랜드 총리
 - 1993.6.13.~22. 말레이시아 총리
 - 1993.6.23.~27. 호주 총리
 - 1993.7.8.~9. 영국 외무장관
 - 1993.7.15. 캄보디아 국가수반
 - 1993.8.25.~9.3. 태국 총리
 - 1993.9월 인도 총리
 - 1993.11.9.~15. 베트남 국가주석

중국·구주지역 국가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 서구1과

MF번호 2023-137 / 3 / 1-53

1993년 중 중국·구주지역 국가 간의 고위급 방문 등 관계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양측 간 고위급 교류

- Rexrodt 독일 경제장관 방중(1993.3.27.~30.)
 - 25명의 경제인 대동
 - 하이테크, 통신, 에너지, 수송, 원자재, 농업, 환경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및 투자 협의
- Vrantzky 오스트리아 수상 방중(1993.4.2.~7.)
 - 강택민 주석 및 이봉 총리와 회담, 차관제공 등 경험분야 협의 및 국제정세 논의
-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및 독일 4개국 순방(1993.5.2.~13.)
 - 네덜란드 여왕 및 수상, 스웨덴 수상 및 국회의장, 이탈리아 대통령 및 수상, 독일 대통령 및 수상 예방, 양자관계 및 국제문제를 협의
 - 킨켈 독일 외상은 중국의 국제사회 내 책임 있는 역할을 희망하고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철회 관련 영향력 행사를 부탁
- Hurd 영국 외상 방중(1993.7.8.~9.)
 - 캄보디아 문제 등 국제문제, 한반도 문제, 홍콩문제 등 협의
- 영의인 중국 부주석, 포르투갈 방문(1993.9.12.~16.)
 - 포르투갈 수상 및 대통령과 회담, 마카오 이양 문제 등 협의
- 콜 독일 수상 방중(1993.11.15.~20.)
 - 독일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에 감사, 양자관계 및 인권문제 협의, 16억 5천만 달러의 계약 체결 등
- 강택민 중국 주석, 포르투갈 방문(1993.11.29.)
 - 마카오 반환 문제 및 대포르투갈을 통한 EC(구주공동체) 관계 개선 협의

2. 프랑스의 미라주 전투기 대만 판매로 인한 관계 악화

- 1992.11.18. 미라주 전투기의 대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해 중국이 주광저우 프랑스총영사관 폐쇄 등 압박
- 1993.5월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 및 프랑스 정부특사 방중, 양국 간 관계 악화 회복 시도

3. 독일과의 관계

- 1992.11월 킨켈 독일 외상의 방중 이후 관계 완전 정상화
-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단된 원조계획의 제한 해제, 대만의 잠수함 및 함정 구매 거절 등을 통해 광대한 중국시장을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

2177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한 자료임

중국·미주지역 국가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 중미과

MF번호 2023-137 / 4 / 1-38

1993년 중 중국·미주지역 국가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전기침 외교부장, 중남미 순방(1993.3.1.~12.)

- 중국 외교부 측은 1993.3.19. 표제 관련 면담을 요청한 중국 주재 한국, 미국, 일본, 폴란드 대사관 관계관에게 순방 결과를 아래와 같이 브리핑함.
 - 전기침 외교부장은 각국 외상의 초청으로 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를 방문 하였으며, 5개국의 대통령을 예방, 양상곤 주석의 문안을 전달함.
 - 금번 방문의 목적은 양방 대화채널 강화, 상호이해 증진, 우호 협력관계 강화에 있는바, 매우 성공적인 방문이었음.
 - 방문 5개국은 중남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이들 국가의 인구 및 국민생산액이 중남미 전체의 65%와 76%를 점하고 있는바, 전기침 외교부장의 방문은 그 의의가 큼.
 - 비교적 폭넓은 분야에 걸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경제 및 무역방문에 관한 것이 많았음.
 - 상기 5개국은 아·태지역의 경제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고, 아·태지역과의 경제무역협력 강화를 희망함. 또한 최근 중국 경제의 놀라운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중국과의 경제무역관계를 가일층 강화하기를 희망함.

2. 중국·중남미 관계

- 조종표 주중국대사관 참사관은 1993.5.12. Zhang 외교부 중남미국 부국장 면담 시 중국·중남미 관계 현황을 문의한바, 동 부국장의 언급요지는 아래와 같음.
 - 중국은 중남미 33개 국가 중 17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음. 중국이 1971년 유엔가입 이전에는 수교 관계가 쿠바, 칠레 양국뿐이었으나, 중국의 유엔가입 이후 우루과이와 수교 등 중남미 다수국가와 외교관계를 갖게 됨.
 - 중남미지역의 경제가 최근 호전됨에 따라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바, 1992년도에는 왕복 무역액이 30억 달러에 달함.
 - 중남미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20여 명의 대통령 또는 부통령, 10여 명의 총리가 중국을 방문함. 1992년에는 칠레 및 볼리비아 대통령과 에콰도르 부통령, 금년 4월에는 우루과이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금년 중에 멕시코 대통령 등 중남미 주요 지도자들의 방중을 협의 하는 중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세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37 / 5 / 1-86

1991~93년 중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3.8.22. 대통령 선거 실시
 - 제2차 투표(9.19.)
- 최고법원, Patasse 후보의 당선 발표(9.27.)

2. 대외 관계

- 1991.7.8. 중국·중앙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 간 양국 복교성명 서명
 - 중앙아프리카공화국·대만(구 중화민국) 간 외교관계 재개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 중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 외교단절 통보(7.15.)

2179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정책국

쿠바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37 / 6 / 1-127

1993년 중 쿠바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헌법 개정

- 쿠바 국가인민회의가 1992.7.10.~12. 개최되어 헌법을 일부 개정
 - 사유재산제도 및 외국인 투자보장의 제한적 도입
 -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자유·직접·비밀투표에 의한 선출) 및 종교자유 보장
 - 카스트로의 권한 강화

2180

2. 대외정책

- 1993.1.5. Alarcon 쿠바 외상은 새로 출범하는 클린턴 미 행정부가 기존의 대쿠바정책에 변경을 모색하지 않는 한 쿠바로서도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1993년도 쿠바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발표함.
 - 블록화 현상에 대한 투쟁 계속(대미 투쟁 계속)
 - 비동맹 외교 적극 추진
 - 내정 불간섭, 평등주의에 입각한 독자노선 추구 등

3. 주멕시코대사, 주멕시코 쿠바대사 접촉

- 1993.6.25. 이상진 주멕시코대사, Fernandez 주멕시코 쿠바대사 방문
 - 한반도 문제, 한·멕시코 관계, 미국·쿠바 관계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Fernandez 대사는 이상진 대사의 한반도 문제(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북한이 중국 모델의 경제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남북한 격차를 가능한 좁혀서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언급함.

4.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치 1년 연장

- 클린턴 대통령은 1993.9.13. 쿠바 국민이 카스트로 독재체제하에서 고통 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쿠바 금수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
 -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및 발트 국가에 대해서도 적성국 교역법상 제재조치를 1년간 연장 결정

CIS(독립국가연합)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137 / 7 / 1-300

1993년 중 CIS(독립국가연합)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CIS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1993.1.4., 타슈켄트)

- 참가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타지키스탄 5개국
- CIS 체제 내에서 중앙아시아 역내국가 간 협력강화 추진

2. CIS 정상회담

- 1993.1.22. 민스크 개최 회의
 - 참가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10개국
 - 아제르바이잔은 옵서버 참가
 - 러시아 등 7개국이 CIS 회원국 간 관계 등을 규정하는 헌장에 서명하고, 경제문제 등 협의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주도 경제, 몰도바는 루마니아와 통합 관련 자주권 확보,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문제 등으로 헌장 미서명
- 1993.4.17. 민스크 개최 회의
 - 참가국: CIS 10개국
 - 열린 러시아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공동제안으로 CIS 체제 강화를 위해 단일화폐, 경제동맹 형성 문제, 평화유지군 활성화를 통한 집단안보 문제 등 협의
- 1993.9.24. 모스크바 개최 회의
 - 참가국: CIS 11개국
 -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는 준회원국으로 가입
 - CIS 11개국 간 CIS 경제동맹협정 서명, 공동경제권역 창설 추진
- 1993.12.24., 투르크메니스탄 아쉬하바드 개최 회의
 - 'CIS 신뢰 양성과 협력 증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경제공동체조약 실행협정', 'CIS 경제법정의 조직·재정에 관한 결의' 등 합의
 - CIS는 금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점차 EC(구주공동체)형태로 접근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함.

3. 중앙아시아 회교권 국가 간의 ECO(경제협력기구) 외상회의(1993.2.6.~7., 파키스탄 퀘타)

- Quetta Plan of Action 채택, 교통, 통신, 에너지, 농업 등의 분야에서 인구 3억 명의 거대 자원보유그룹 내 협력 강화 추진

2181

대한민국 외교부



4. 러시아·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1993.8.7., 모스크바)

- 국경불가침 선언,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정상화 조치, CIS 경제동맹 창설 개최 제의 등 논의

5. 기타 정세

- 1993.9.7. 러시아와 5개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신루블권협정 체결, 러시아 루블을 법정통화로 인정

사이프러스 정세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3-137 / 8 / 1-114

1990~93년 중 사이프러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1.5.19. 총선
- 대통령 선거(제1차(1993.2.7.), 제2차(2.14.) 투표)
 - Glafcos Clerides 사이프러스 대통령 취임(2.28.)
 - 주요 공약: 사이프러스 통합을 위한 유엔 중재안 수정 필요, 사이프러스의 EC(구주공동체) 가입 추진
- 1993.12.12. 북사이프러스공화국 총선

2. 대외 관계

- 1990.7.4. 사이프러스, EC 가입 신청
- 1991.6.7.~9. 그리스 수상, 사이프러스 방문
- 1993.7.6.~8. 페레즈 유엔사무총장, 사이프러스 방문
- 1993.9.2.~3. 게오르게 바실리우 사이프러스 대통령, 그리스 방문

2183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처

체코 및 슬로바키아 정세. 전2권 (V.1 1-5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137 / 9 / 1-217

1993.1~5월 체코연방 해체로 분리 독립된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정세 관련 문서임.

1.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 두 개의 공화국으로 분리

- 1992.12.31.자로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분리
- 헌법 채택
- 의회(양국은 1992.6~7월 선출된 각 공화국 의회가 승계)
 - 체코: 상·하원 양원제(하원은 임기 4년 200석, 상원은 임기 6년 81석으로 2년 마다 1/3씩 교체)
 - 슬로바키아: 단원제로 의석 임기 4년 150석
- 대통령
 - 체코: 의회에서 선출, 임기 5년 재선 가능, 1993.1.26. Vaclav Havel 대통령 당선
 - 슬로바키아: 임기 5년, 2.15. Michal Kovac 대통령 선출
- 수상(양국 모두 대통령 지명 의회 승인)
- 헌법 채택
- 연방의 재산 배분

2. 유엔 등 국제기구 가입 신청

- 1990.12월 EC(구주공동체)와의 제휴협정을 각 공화국에 승계 연장하는 방식으로 EC와 협의
- 1993.1.1. IMF(국제통화기금) 별개 회원국
- 1993.1.4. 양 국가는 유엔가입 신청
- 1993.3.1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별개 가입

3. 경제 동향 및 대외 관계

- 외화준비금 배분, 별다른 제한 없이 인적·물적으로 국경통과를 자유롭게 이동(사전 준비 미흡) 하다가 이후 약간의 통제
- 외화준비금 90억 달러를 체코와 슬로바키아 간 2:1로 배분
- 화폐 분리(양국 간 거래는 유럽통화단위 ECU)
-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간 Gabcikovo 댐 건설 분규
- 두 개의 공화국으로 각각 대외관계 형성 시작

체코 및 슬로바키아 정세. 전2권 (V.2 6-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137 / 10 / 1-186

1993.6~12월 체코연방 해체로 분리 독립된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정세 관련 문서임.

1. 체코공화국

- Autosalon Praha 93 자동차 전시회(1993.6.19.~27.) 개최
 - 11개국 27개 업체가 자동차를 전시
 - 각국의 참여 업체 수: 이탈리아 3, 독일, 5, 프랑스 3, 일본 8, 미국 2, 한국 1, 영국 1, 스웨덴 1 등
 - 한국 측: 현대자동차 참가
- Zieleniec 외무장관의 인도, 중국 방문(1993.6월)
 - 체코 기업의 인도 송유관 건설사업 참여, 중국과의 무역·경제협력 가능성 확대 추진
- 헌법재판소 설치법 발효(7.1.)
- 체코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 추진
-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셰그라드그룹 4개국의 안보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 자국의 안보 확보 희망
 - 유럽 자체 역량으로 안보 실현은 불확실
- 체코, EC(구주공동체) 준회원국 협정 서명
- 공산정권 붕괴 이후 사유재산 반환 추진(교회 재산 반환)
- 주데텐지역에서 추방된 독일인 요구사항 관련 대화 개시(나치 정권 영토 강탈의 산물)

2. 슬로바키아공화국

- 다뉴브 수자원 관련 헝가리와의 분쟁 지속
 - EC 권고안이 제시되었으나 슬로바키아는 유보적인 입장
- 슬로바키아·러시아 간 무역·부채청산협정 체결(1993.6.4.)
 - 슬로바키아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양측 간 합의
-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 K-Mart는 체코, 슬로바키아에 약 1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총 13개의 백화점 구입 예정으로 유통업 진출 확대 도모
- IMF(국제통화기금) 차관 도입을 통한 균형예산 유지, 사유화 정책 가속화, 외화자산 확대 등 추진
- Moravcik 슬로바크 외무장관, 일본 방문(1993.11월)
 - 일본의 대슬로바키아 경제지원 협의
- 북한의 슬로바키아 상주공관 설치 가능성 타진 정보 파악(11.23.)

2185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 국제기구 가입 등 동향

- EBRD(유럽부흥개발은행)(1.15.) 가입, 유엔 재가입(1.19.), IMF·IBRD(국제부흥개발은행)(1.2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4.16.), 유럽이사회(6.30.) 가입
- EC와 무역협정 가서명(7.19.), EC와 제휴협정 재체결(10.4.) 등

지부티 정세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3-137 / 11 / 1-70

1991~93년 중 지부티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91.11월 AFAR 반란군, 북부지역 장악 중

- 11.20. Gouled 지부티 대통령은 프랑스군의 개입을 공식 요청
- 11.24. 프랑스는 양측 간 중재 역할 제의

2. 1991.11.27. 지부티 대통령, 국민투표 시행 발표

- Gouled 대통령은 가까운 시기에 국민투표 방식으로 정치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

3. 1991.11.29. 지부티 정부, 프랑스 군 자국 내 배치

- 지부티 정부는 지부티와 에티오피아 간 북부 국경지대에 프랑스 군을 배치할 것임을 발표

4. 1992.1.20. 프랑스 중재

- 프랑스는 외무담당 국무장관을 지부티에 파견하여 지부티 정부인사에게 즉각적인 민주화 요구 등 반정부 세력과 정치적 협상을 중용
- 중재에 나선 예멘도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 정치적 타협을 중용

5. 1992.4.5. 지부티 정부,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 발표

- 복수 정당제를 수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확정하겠다고 발표
- 총선이 연내 실시되면 현 1인 통치체제를 대체할 신 정부 수립도 가능

6. 1993.2.4. Gouled 대통령, 개각 단행

- AFAR족 출신 포함 12개 부처 장관 경질

7. 1993.5.8. 대통령 선거 결과, 현 Gouled 대통령 4선 당선

2187

대한민국 외교부

덴마크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3-137 / 12 / 1-106

1993년 중 덴마크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정세 불안
 - 1993.1.14. 술루터 덴마크 총리가 1989년 의회 위증 사건으로 사임함에 따라 보수 연정이 붕괴
 - 1.25.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가 주도하는 '사민당+우파3당' 연정 출범
 - 11.16. 지방선거에서 우파정당 약진
- 관심사항
 - 신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재정 및 통화 확대
 - 중·동유럽 및 중국으로부터의 저가상품 유입
 - 코펜하겐-말뫼 해상교량 및 해저터널 공사

2. 대외 관계

- 관심사항
 - 발칸 정세 안정/중동평화 정착/동북아 핵확산 우려/유엔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역할 조정
 - (구)공산권 유럽의 정치·경제개혁
- EC(구주공동체) 통합 진전
 - 덴마크가 EC 의장국임을 감안, 보수 연정의 붕괴는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 추진에 차질 가능
 - 1993.5.18.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을 56.8% 찬성으로 통과, 이는 유럽통합 가속화 기반 마련
 - EC의 환율 변동폭 확대에 의해 덴마크 통화의 안정성 침해
- 대외 활동
 - 덴마크 외무장관, 러시아(1993.3.26.) 및 중국(1993.10.18.) 방문
 - 중·동부 유럽 경제개발회의(1993.4.13.~14.), 마드리드 중동지역 경제 W/G 회의(1993.11.8.~9.) 개최
 - 아라파트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 덴마크 방문(1993.11.28.)

도미니카공화국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37 / 13 / 1-48

1993년 중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정부 고위직 인사 이동

- 1993.1.1. 국방장관, 정보처장, 대통령실 기술장관 등 6명
- 4.5. 경제고문, 우정청장 등 부패혐의자 해임
- 6.16. 대통령 비서실장, 정보국장 등 임명
- 9.7. 재무장관, 상공장관, 농림장관 등 일부 개각

2. 주요인사 활동, 해외 방문, 방문 접수 동향

- Guzman 외무장관, OAS(미주기구) 총회(1993.6.7.~12.) 참석
- Trocoso 부통령, 제3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1993.7.13.~16., 브라질) 참가
- Ford 파나마 대통령, 도미니카공화국 방문(1993.10.20.~23.)

2189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정책

에콰도르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37 / 14 / 1-78

1993년 중 에콰도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대에콰도르 수재 의연금 지원

- 계속되는 장마로 1993.4.8. 에콰도르 La Josefina지역에서 대형 산사태 발생
 - 사망(70명), 농경지(300헥타르), 화력발전소, 국도(40km), 철도(43km) 등 침수 피해
- 주에콰도르대사 건의에 따라 1만 달러 상당 지원 결정
 - 미국(2만 5천 달러 및 트랙터), 일본(15만 달러), 독일(5만 달러), 프랑스(2만 7천 5백 달러), 이탈리아(2만 5천 달러), 중국(1만 5천 달러) 등 지원

2190

2. 에콰도르의 국가 현대화법 통과

-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발전의 근본적인 문제가 국가기관의 비효율성, 비생산성에 있다고 판단
 - 1993.2월 동 법안 국회 상정, 9.23. 국회 통과
- 1992.8월 집권한 Duran Ballen 에콰도르 정부는 Borja 전 정권의 경제 실정을 일소하기 위해 대외개방, 국영기업 민영화, 부정부패 척결에 전력투구

3. Weizacker 독일 대통령, 에콰도르 방문(1993.11.6.~10.)

- 에콰도르 측
 - 향후 2년간 바터 형식(에콰도르의 바나나 vs 독일의 벤츠 버스)으로 바나나 1억 달러 상당의 대독일 수출판로 확보
 - 에콰도르 대독일 외채(2억 5천만 달러)의 정부 간 상환 재협상 가능
- 독일 측
 -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 강화 및 중남미·동구권 경제 간 중개자 역할 모색이라는 데 의미가 있음.

이집트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3-137 / 15 / 1-145

1992~93년 중 이집트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외교관계 수립

- 이집트·아제르바이잔(1992.1.22.)
- 이집트·우즈베키스탄, 리투아니아(1.23.)
- 이집트·우크라이나(1.25.)

2. 주요 동향

- 이집트 외무장관, 오만 방문(1992.4.22.)
 - 아랍문제 전반, 걸프지역 정세, 다마스쿠스 선언, 아랍권의 최근 정세 및 아랍세계가 당면한 도전 등 협의
- 이집트 대통령, 시리아 방문(1992.6.3.)
 - 중동평화 문제 협의
- 이집트 대통령, 리비아 방문(1992.8.11.)
 - 카다피 지도자와 회담: 현 국제 정세 및 신국제 질서에 대한 의견 교환
- 이스라엘 외무장관, 이집트 방문(1992.11.15.)
- 카자흐스탄 대통령, 이집트 방문(1993.2.13.~15.)
 - 양국 간 통상 분야에서의 관계 증진방안과 CIS(독립국가연합) 최근 동향 협의
-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이집트 방문(1993.3.27.~30.)
-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미국 방문(1993.4.3.~6.)
 - 중동평화회담 개최 문제, 지역안보 문제, 테러리즘 대처 문제 등 협의
- 이스라엘 수상, 이집트 방문(1993.4.14.)
- 이집트 대통령, 쿠웨이트 및 GCC(UAE, 카타르, 사우디) 방문(1993.5.9.~17.)
 - 걸프전후 지역안보 문제와 아랍 내 이견 해소방안 협의
 - 중동 아랍권 내에서의 이집트의 지도적 위치를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아랍권의 단결, 그리고 이란에 대한 경계심을 재강조하여 이집트와의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할 필요성 설득
- 무바라크 대통령 3연임
 - 10.5. 주카이로총영사관은 김영삼 대통령 명의 축전을 이집트 외무부 의전차장을 통해 전달

2191

대한민국 외교부

에리트리아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37 / 16 / 1-230

1992~93년 중 에리트레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대외 관계

- OAU(아프리카단결기구) 부사무총장, 에리트레아 방문(1992.9.28.)
 - 에리트레아, 내년 주민투표 감시에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참가를 요청한 바 있음.
 - OAU 부사무총장은 현 에리트레아 임시정부 지도자를 만나 주민투표 관련 문제 협의
- 에리트레아 Asmara 주지사, 이탈리아 방문(1992.10.12.~16.)
 - 이탈리아 여러 지방 자치 단체장 면담
- 에리트레아 관련 유엔사무총장의 총회 보고서(10.22.)
 - 1993.4월 예정된 에리트레아 주민투표 감시를 위해 유엔감시단 240명 파견
 - 선거 시 각각 2명씩 구성된 60개의 감시조에 의해 감시 임무 수행
- 이집트의 대에리트레아 지원
 - 이미 상주대사를 파견한 이집트는 특사를 파견, 에리트레아 주민투표 관련 기술적 지원 약속
- 프랑스, 주에리트레아 프랑스대사 임명
- 독일, 에리트레아 구호복구기관에 의료기기 지원
 - 15만 마르크 상당 의료기기 기증

2. 에리트레아 독립 주민투표 실시(1993.4.23.~25.)

- 에리트레아 임시정부 수반은 1993.4.27. 주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TV,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5.24.자로 정식 독립국가임이 선포될 예정이었지만 4.27.자로 주권국가가 되었음을 선언함.
- 에리트레아 선관위에서 발표한 투표 결과
 - 유권자 1,173,706명 중 98.52%가 투표 참여, 투표자의 99.8% 찬성
- 외국 정부, 에리트레아 독립 승인 발표
 - 미국, 이탈리아, 이집트, 수단, 지부티, 예멘, 이란, 캐나다, 에티오피아, 스위스 등
- 유엔총회, 1993.5.28. 에리트레아 유엔가입 결정 결의 채택
- 1993.6.4. 에리트레아, OAU 가입

엘살바도르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37 / 17 / 1-161

1993년 중 엘살바도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

- 1991.1월 유엔 중재하에 평화협상이 재개되어 1992.1.16. 멕시코에서 평화협정 체결
- 1992.2.1. 교전중지 및 부대 격리
- 1992.10.31. 반군의 무장해제 및 제도권 복귀
- 정부는 각종 개혁조치 포함 평화정착 일정 수립
- 합의사항 이행은 유엔감시단이 검증하며, 각 정당대표로 구성된 평화정착위원회가 실무조정

2. 진전사항

- 1992년
 - 각종 개혁조치 합의 및 반군의 무장해제와 사회복귀가 차질을 빚으면서 진행
 - 12.15. 유엔사무총장 및 미국 부통령 참석하에 1단계 평화과정 종결 기념식 개최
- 1993년
 - 1992년 말 정부는 군 숙정을 단행하였으나, 국방장관 등 숙정대상자 일부가 제외되어 논란
 - 반군의 보유 미사일 해체, 내전 기간 중 인권유린 조사가 미진한 가운데 유엔 관여하에 진행
 - FMLN 무기고 추가 발견, 선거유세 중 FMLN(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 인사 피살, 여당 주요인사의 인권유린 연루 등 지속
 - 1994.3.20. 확정된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정세 불안 점증

2193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에티오피아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37 / 18 / 1-194



1993년 중 에티오피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기본조약 서명

- 1993.7.30. 양국 대통령이 기본조약에 서명
- 합의사항
 - 아사항을 에티오피아 자유항으로 제공
 - 양국민의 자유 이동 및 출입국법 조정
 - 경제, 사회, 농업, 에너지, 교통, 통상, 과학 분야의 협력 추진
 - 양국의 통합: 양국 간의 신중한 노력이 필요

2. 가뭄과 개발 국제회의(1993.9.6.~7., 아디스아바바) 개최

- 참가국: 에티오피아, 우간다, 수단 등 6개국
- 합의 사항: 1992~95년간 5개년 행동계획 채택

3. 제1차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합동 각료회담(1993.9.27., 아디스아바바) 개최

- 공동성명서 내용
 -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양국 경제정책의 조정 강화
 - 양국 간 점진적 경제 통합 추진 가능

4.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정상회담(1993.10.16.~18., 아디스아바바) 개최

- 공동성명 내용
 - 1993년 우호협력협정 이행 강화, 소말리아 평화에 대한 관심 강화 등

프랑스 정세. 전3권 (V.1 국내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1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38 / 1 / 1-257

1993년 중 프랑스의 국내 정세(정치, 경제) 주요 동향임.

1. 정치 정세

- 프랑스 총선 실시(1993.3.21.~28.)
 - 제1차 투표(3.21.), 제2차 투표(3.28.)
- 총선 결과
 - 우파연합(공화국연합과 프랑스민주연합)이 총 577석 중 80%에 달하는 460석 차지
 - 집권 사회당은 70석
- 1993.3.30. 발라뒤르 신임 수상 취임 및 신내각 발표
 - 각료수 29명으로 대폭 축소
 - 연정 간 각료수 안배로 협조체제 강화 의지
 - 여성 각료수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 신임 외상에 외교경험이 전무한 알랭 주페 공화당연합 사무총장 임명
- 총선 패배 이후 프랑스 사회당의 내분 심화
 - 5.1. 베레고브와 전 수상(사회당 당수) 자살
- 7.19. 프랑스 의회, 프랑스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4개조의 헌법개정안 확정 가결

2. 경제 동향

- 1992년 경제성장 1.6%
- 1992년 4/4 분기 마이너스 성장 배경
 - 수출 감소 및 기업 재고 감축, 제조업 생산 감축, 기업투자 위축
 - 가계 소비지출 0.7%
- 4.29. 프랑스 중앙은행, 금리인하 단행
 - 성장 위주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선회
 - 독일 측의 금리인하로 유럽 내 주요국들의 금리인하 여건 조성
- 5.27. 신정부,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 법안 발표
- 10.19. Air France 지상 근로자 파업
- 11.18. 프랑스 상·하원, 5개년 고용법안 심의·가결

2195

대한민국 의정방송 연구회

프랑스 정세. 전3권 (V.2 대외관계(1-5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1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38 / 2 / 1-179



1993.1~5월 중 프랑스의 대외관계 동향임.

1. 부시 미국 대통령, 프랑스 방문(1993.1.3.)

- 구유고 사태 협의

2.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독일 방문(1993.1.21.)

- 독일·프랑스 우호협력조약 30주년 기념행사 참석

3. 미테랑 대통령, 베트남 방문(1993.2.9.~11.)

- 베트남 전쟁 종식 이래 프랑스 대통령의 첫 방문

4. 시리아 외무장관, 프랑스 방문(1993.2.24.)

5. 러시아 외상, 프랑스 방문(1993.3.2.)

6. 미테랑 대통령 주재 유고평화회의(1993.3.11., 파리) 개최

7. 미테랑 대통령, 러시아 방문(1993.3.16.)

- 양국 간 기체결된 33개 협력협정 이행사항 토의
- G7 긴급회담 개최 추진
- 구유고 사태 등 협의

8. 발라뒤르 프랑스 수상, 영국 방문(1993.5.4.)

- 영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유럽통합 문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협상, 구유고 사태 등 협의

9. 프랑스 국방상, 프랑스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기구 복귀 가능성 시사(1993.5.15.)

- NATO 기구 재편을 촉구하면서 프랑스의 대NATO 정책 변화 시사

프랑스 정세. 전3권 (V.3 대외관계(6-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1과 / 경제협력1과

MF번호 2023-138 / 3 / 1-122

1993.6~12월 중 프랑스의 대외관계 동향임.

1. 제61차 독일·프랑스 정례 정상회담(1993.6.1.~2.) 개최

- 유고 사태 해결 문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협상, EC(구주공동체) 통합, 대러시아 지원 문제 등 협의

2. 베트남 수상, 프랑스 공식 방문(1993.6.23.~26.)

- 동년 2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양국관계 강화 시사

3. 프랑스 외상, 사우디 방문(1993.7.3.~4.)

4.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 핵실험 유예 연장 발표(1993.7.4.)

5. 제10차 영·프랑스 정상회의(1993.7.26., 런던) 개최

- EC 통합 문제 및 GATT 문제 협의

6. 베트남 원조그룹 회의(1993.8.31., 파리) 개최

7. 프랑스·독일 정상회담(1993.8.26., 본) 개최

8. 이스라엘 외상, 프랑스 방문(1993.9.3.)

9. 콜 독일 수상, 프랑스 방문(1993.10.13.)

10. 달라이 라마, 프랑스 방문(1993.10.24.~11.14.)

- 미테랑 대통령 예방, 파리 시장 및 외무장관 면담

11. 프랑스 수상, 러시아 방문(1993.11.1.~2.)

- 러시아 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방안 논의
-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러시아 정치·경제개혁 전폭 지지 등

2197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

독일 정세.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3-138 / 4 / 1-199

1993.1~6월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갈리 유엔사무총장, 독일 방문(1993.1.10.~12.)

- 콜 수상, Kinkel 외무장관 등 면담
 - 독일군의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문제, 국제적 분쟁지역의 문제 해결 등에 관한 의견 교환
- Kinkel 외무장관과 회담 시 주요 언급 내용
 - 갈리 사무총장은 독일군의 UNTAC(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문제 관련, 독일이 유엔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분담금을 지출하는 나라인 만큼 유엔헌장에 따른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함.
 - Kinkel 장관은 현재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UNDP(유엔개발계획) 본부 및 유엔 산하기구인 남북문제 본부의 Bonn으로의 유지 지원을 요청하고, 국제해상재판소의 함부르크 유치 문제도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2198

2. 독일·프랑스 우호협력조약 30주년 기념

- 1993.1.21.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외무장관, 국방장관, 유럽장관을 대동하고 독일·프랑스 우호협력조약 3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독일을 방문함.
 - 프랑스 의회 외무위원 소속 의원들, 경제계 및 문화계 인사 등 참석
- 미테랑 대통령과 콜 수상은 1.21. 저녁 TV 공동인터뷰를 가진바,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언급함.
 - 유럽 통화 문제: 양국은 EC(구주공동체) 내의 유럽 공동통화 도입이 1997년 이전에 시작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만약 모든 회원국이 공동통화 도입을 동시에 시작할 수 없을 시에는 독일·프랑스 양국은 공동통화 도입이 가능한 국가와 함께 먼저 통화 도입을 시작할 수도 있음을 시사
 - 유고사태 및 발칸지역 분쟁: 유럽의 공동외교정책과 공동안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함.
- 양국 국방장관은 1.21. 브뤼셀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군사령관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총사령관 간에 유럽군단(EUROKORPS)과 NATO와의 협력관계에 관한 협정 체결과 관련, 다른 유럽 국가들도 유럽군단에 가입하도록 촉구함.

3. 외국인 적대행위 규제 관련 콜 수상 성명 발표(1993.6.16.)

- 콜 수상은 최근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 증가 문제와 관련, 하원에서 아래 요지의 정부성명을 발표함.



- 독일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
- 1992년도 독일 내 외국인 망명신청자는 44만 명으로, 이는 EC 전체 외국인 망명신청자의 79%가 독일에 망명신청을 한 것임.
- 독일의 현행 국적 취득법은 1980년 전에 결정된 법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은 개정 필요
- 특히 청소년층의 폭력행위 증가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든 관련 분야가 공동 노력해야 하며, 언론의 폭력행위 보도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2199

대한민국
외국인
여권
법

독일 정세.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9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23-138 / 5 / 1-154

1993.7~12월 중 독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독일군, 소말리아 파병

- 독일 하원은 1993.7.2. 독일군의 소말리아 파병에 대한 결의안을 참석 의원 535명 중 찬성 337, 반대 185, 기권 13으로 가결함.
- 독일군의 소말리아 파병 관련, 기본법 위배 여부에 대한 논란은 종결되고 독일군은 7월 말까지 소말리아에 파견될 예정임.

2200

2. 폰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 핀란드 방문(1993.7.8.~11.)

- Mauno Koivisto 핀란드 대통령 면담(7.8.)
 - 발칸 사태, 동구 정세, 유럽통합 등 의견 교환

3. 킨켈 독일 외무장관, 1993.10.30. EC(구주공동체) 특별정상회담(1993.10.29.) 및 마스트리히트 조약(1993.11.1. 발효) 관련 성명문 발표

-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되고 유럽중앙은행이 프랑크푸르트로 유치되는 것에 대하여 독일 정부는 대단히 만족함. 특히 독일은 EC로부터 140억 ECU가 구동독에 투자지원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EC 특별정상회담은 지금까지의 EC 통합에 대한 토론에 종지부를 찍고 EC 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할 새로운 전기가 되었음. 12.10. 개최될 EC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성장, 경쟁력 강화, 실업자 감소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임.
- 새로운 '유럽정치'를 위하여 아래 4개 과제가 해결되어야 함.
 - 경제발전과 고용기회 창출
 - 유럽과 전세계의 평화 및 안정성 강화
 - 통합유럽 내의 안보강화
 - 통합유럽의 민주적 절차 강화

그루지야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138 / 6 / 1-190

1993년 중 조지아(구 그루지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3.3.29. 고치리제 조지아 경제담당 부총리, 현행 루블화 폐지 및 신화페(라리) 도입 시까지 잠정적으로 쿠폰제 실시를 발표
- 8.6. 시구아 조지아 수상이 이끄는 조지아 내각 총사퇴 결정
- 11.26. 조지아 대통령, 신헌법 제정 및 신의회 구성 발표

2. 압하지야 사태

- 1993.1.29.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 1993.5.14. 러시아·조지아 간 정상회담 개최
- 7.7. 압하지야 분쟁 해결을 위한 모스크바회담 결렬
- 1993.7.9. 유엔안보리 본회의, 조지아 사태 관련 결의안 채택
- 7.27. 압하지야 휴전협정 합의
- 9.27. 조지아 반군, 압하지야 수도 수후미 점령

3. 대외 관계

- 1993.1.19.~20. 세바르드나제 조지아 대통령, 이란 방문
- 1993.5.14. 러시아·조지아 정상회담 개최
- 1993.6.2.~4. 조지아 대통령, 중국 방문

2201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관계정보센터

가나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38 / 7 / 1-198

1992~93년 중 가나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롤링스 가나 국가원수, 1992년 신년사 발표

- 신헌법에 관한 국민투표는 4월 초 실시할 계획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4/4분기 중 실시할 예정

2. 1992.3.5. 롤링스 국가원수, 정치일정 발표

- 4.28. 신헌법안 국민투표
- 5.18. 정당 결성 허용 등 정치활동 재개 허용
- 11.3. 대통령 선거
- 12.8. 국회의원 선거
- 1993.1.7. 제3공화국 출범

3. 1992.4.28.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신헌법안 92.7% 지지로 통과

4. 1992.5.12. 가나 정부는 정당 등록 및 활동에 관한 법률 공포

5. 1992.11.3. 대통령 선거 실시

- NDC의 롤링스 후보가 58.7%로 승리
- 야당 측은 부정선거라 비난하고, 야당지역에서 폭력사태 발생
- 11.7. 외무부,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
 - 12.1. 롤링스 대통령, 감사 답전 송부

6. 1992.12.29. 국회의원 선거 실시

- 집권당인 NDC가 200개 선거구 중 190개 구에서 당선

7. 1993.1.7. 롤링스 대통령 취임식 거행

- 한국을 포함 78개국 경축 특사 참석

그리스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3-138 / 8 / 1-186

1992~93년 중 그리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2.4.13. 미초타키스 그리스 수상, 대유고 정책 관련 사마라스 그리스 외상을 해임하고 자신이 외상직을 겸임할 것을 발표
- 1993.10.10. 조기 총선
 - 9.9. 그리스 수상, 현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 실시 발표
 - 사회당 승리,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당수 재집권

2. 대외 동향

- 1992.3.1. 미초타키스 그리스 수상, 이란 방문
 - 이란 원유 도입 및 천연가스의 유럽 수출 시 수송관의 그리스 통과 문제 등 논의
- 1992.6.19. 그리스, 쉥겐조약 가입
- 1992.12.30. 그리스, 알바니아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정서 서명
- 1993.3.11.~12. 그리스 수상, 불가리아 방문
- 1993.5.16. Meksi 알바니아 수상, 그리스 방문
 - 발칸 문제 및 양국관계 토의
- 1993.6.10.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외상회의(그리스) 개최
- 1993.6.29.~7.1. 옐친 러시아 대통령, 그리스 방문
- 1993.11.18.~19.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 이민관계 장관회의(그리스) 개최

2203

대한민국 외교부

과테말라 정세. 전2권 (V.1 1-5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38 / 9 / 1-154

1993.1~5월 중 과테말라의 대내외 정세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과테말라 평화협상 추진

- 1960년대 이래 과테말라 국내 무장분쟁의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위해 세라노 과테말라 대통령은 1993.1.14. 국회연설 및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URNG(게릴라반군) 측과 협상 재개 용의 표명
- 한국 정부는 세라노 대통령의 평화협상 제안에 대한 지지 공한을 과테말라 측에 수교
- 3.10.~20. 멕시코시티에서 과테말라 정부대표와 URNG 간 평화협상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함.

2204

2. 대외 정세

- 과테말라 외상은 1993.2.2. 남미 7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 순방국에 대해 과테말라 인권상황 호전 및 평화협상 제안 설명 등 성과 보고
- 1993.2.3. 멕시코시티에서 과테말라와 멕시코 경제장관 간 무역회담 개최, 과테말라 측은 멕시코의 소고기 및 설탕 수입 확대 요청
- 과테말라 및 엘살바도르 간의 자유무역협정 2.5. 및 2.6. 각각 비준, 양국 간 관세통합 추진
- 1993.2.5.~10. 미국 인권조사단, 과테말라 방문, 인권상황 재검토 필요 제기
- 1993.3월 유엔인권위원회 회의, 과테말라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 지속을 이유로 인권자문대상 국가로 지정
- 1993.3.23. 과테말라에서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와 함께 정상회담 개최, 중미통합 문제 등 협의
- 1993.4.19. 과테말라와 벨리즈 외상 간 회담을 마이애미에서 개최, 양국 간 불가침 및 국경관리협정 서명

3. 국내 정세(비상조치 선포)

- 과테말라 정부의 전기료 인상 결정 등 영향으로 1993.5월 중 노조 및 학생들의 대규모 폭력시위가 계속되고, 보건, 체신, 도로 등 관련 공공기관 공무원 파업 발생 등 정정 불안이 지속되자, 세라노 대통령은 5.25. 비상조치 선포로 기본권 제한 및 헌정 중단
- 비상조치를 통해 신헌법 마련을 위한 제헌의회 소집 추진
- OAS(미주기구) 및 미국 등 미주지역 국가들의 동 조치에 대한 우려 표명 및 헌정 복귀 촉구 등 국내외 반발 초래
- 미국 정부는 5.27. 과테말라에 대한 원조 및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혜택 중단 검토
- 5.29. 동 대통령은 각 정당 및 민간지도자 등과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헌정 복귀를 위해 헌법 개정안 작성 등 4개항 발표

과테말라 정세. 전2권 (V.2 6-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38 / 10 / 1-214

1993.6~12월 중 과테말라의 비상조치 선포 등 대내외 정세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비상조치 선포에 따른 헌정 중단 사태 및 신정부 수립

- 1993.6.1. 과테말라 헌법재판소의 5.25. 비상조치의 위헌 선포 및 군부 등 압력에 의한 세라노 과테말라 대통령 사임(6.6. 파나마 망명), 에스피나 부통령의 승계 주장으로 사태 혼미
 - 6.4. 헌법재판소는 에스피나 부통령의 헌정 중단 가담으로 승계 자격 부인
- 6.5. 과테말라 의회는 데 레온 전 인권감찰관을 대통령으로 선출,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 예정
 - 취임연설을 통해 민주제도 발전 노력, 치안강화, 반부패 및 국민단합 강조
 - 의회, 대법원 등 해산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 그러나 미진한 개혁으로 비판 및 지지도 하락

2. 대외 동향

- 1993.6.2. 미국 백악관 및 국무부 브리핑에서 세라노 대통령 축출 언급 및 합헌 정부 회복 입장 표명
- 1993.6.3. OAS(미주기구) 특별외상회의 개최, 조속한 민주헌정 회복 관련 OAS 역할 협의
- 6.7. 과테말라 정세의 안정화에 따라 미국은 대과테말라 경제군사원조 재개, 유럽 및 중남미 국가의 데 레온 대통령 지지 표명
- 1993.6.8. 마나agua 개최 OAS 총회에 데 레온 대통령 참석, 민주헌정 회복 약속
- 1993.6.17. 과테말라 개최 비공식 중미정상회담에서 역내 민주주의 강화 선언 채택
- 6.25. Fajardo 외무장관은 벨리세의 독립승인과 관련, 미국 측이 이를 지지함에 따라 벨리세와 외교관계 수립 인정
- 7.21. Atwood 미국 대통령 특사, 과테말라를 방문하여 클린턴 미 행정부의 데 레온 정부 지지 표명, 1993년도 총 1억 3천만 달러를 원조를 통하여 지원 약속
- 1993.10.29. 제14차 중미정상회담 개최, 중미경제통합 일반조약인 과테말라 의정서에 서명

3. 국내 정세

- 1993.6.20. 데 레온 대통령은 신정부 정책 발표, 빈곤퇴치, 인권 및 치안 강화, 부정부패 일소, 정부예산 재원 확보 등 추진 및 7.1. 신임 경제각료 등 내각 명단 발표
- 동 대통령은 10.4. 정부의 URNG(게릴라반군)와의 평화협상안 발표, 그러나 반군 측은 이를 거부
- 동 대통령은 의회 및 대법원 해산 관련 국민투표를 추진한 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를 중단, 11.16. 가톨릭 중재로 정부·의회 간 협상 결과 국가 재구성을 위한 협약으로 헌법개정 추진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1994.1.30. 실시 결정

2205

대한민국 의회도서관

가이아나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38 / 11 / 1-40

1992~93년 중 가이아나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총선 전 동향

- 1992.8.29. H. Desmont 가이아나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일을 10.5.로 확정 공포
 - 선거인 명부 문제로 인해 소요사태가 있었으나, 공정선거 기조 유지
 - 기본적으로 집권당 PNC 후보(흑인계)와 야당 PPP 후보(인도계) 간 인종 대결 양상
- 총선을 통해 65명의 의회를 구성하며, 다수당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

2206

2. 총선 결과

- 1992.10.7. 76% 개표에서 C. Jagan PPP 후보가 유효투표의 54%를 획득하여 당선 확정
- PPP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자본주의 개혁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향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대서방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평가

3. 진전사항

- 1992.10.9. C. Jagan 신임 가이아나 대통령은 외빈 초청 없이 간편 취임식 거행
 - 10.12. 노태우 대통령은 축전 발송
- 10.13. Jagan 대통령은 내각을 구성하고, 11.13. 공석을 유지하던 외무장관 임명

4. 참고사항

- 가이아나에는 북한공관이 상주하며, 국제무대에서는 비동맹 노선에 따라 친북 성향 우려
- (주)선경이 5천 4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산림개발 사업에 참여 중

헝가리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138 / 12 / 1-128

1993년 중 헝가리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헝가리 민영화 정책 추진 실태(1993.11월)

- 단계별 추진
 - 정부 주도(1990.5~91.9월) → 제도 정비 및 확대(1991.9~92.11월) → 수요 창출(1992.11월 이후)
- 자율적 민영화 방식이 주류
- 현재로서는 전반적 경기침체, 실업증가,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생활수준 하락으로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
- 향후 전망
 - 국영기업의 경영상태 악화, 여타 동구권의 민영화 추진으로 공급과잉, 세계경제 실패로 인한 투자 여력 부족 등으로 헝가리 민영화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내국인 참여 증대를 위한 유도책 강화가 예상되는 반면, 외국인의 민영화 참여 폭은 더욱 제한될 전망

2. 헝가리 총리 서거 및 신임 총리 선출

- Antall 헝가리 총리가 1993.12.12. 지병으로 서거
 - 김영삼 대통령 명의 조전 발송
- 헝가리 의회에서 12.21. 찬반투표 실시 결과, 현 Boross 총리 대행을 신임 총리로 선출
 - 김영삼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

2207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정책연구실

홍콩 장래문제 및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138 / 13 / 1-197

1993년 중 홍콩의 장래문제 등 홍콩 관련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홍콩 장래문제

- 1993.1.8. 주홍콩총영사관, 홍콩 장래 및 화남경제권 관련 아래 내용 보고
 - 홍콩의 민주화 관련 영·중국 간의 1997년 홍콩 반환을 둘러싼 마찰 현황
 - 3.12. 홍콩총영사관은 홍콩 주민들의 1997년 이후 장래문제에 대한 불안 및 이로 인한 해외이주 등 현황 보고
- 3.12. 패튼 홍콩 총독이 홍콩 정치개혁안을 관보로 발표한 데 대해 이봉 중국 총리는 강경 비난
 - 중국 측은 영·중국 외상회담(1993.4월) 연기 등 협상 거부
- 3.17.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처는 홍콩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 경고하고, 홍콩 문제와 대중국 MFN(최혜국대우) 연장의 연계 시도 비판
 -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은 3.30. 미 상원 외교소위 청문회에서 홍콩문제를 중국의 MFN 지위 연장과 연계시켜 패튼 총독의 민주개혁안에 대한 지지 표명
- 홍콩문제 관련 영·중국 외상회담(1993.4.22.~25., 베이징) 재개, 11차례 추가 회담을 통해 직선의원 수 조정문제 등 홍콩 입법의회 선거문제 집중 교섭
 - 중국 측은 양보가 없는 경우 영국은 일방적으로 홍콩의 선거 개혁을 추진할 방침 및 동 방안 입법위원회 회부 등 조치
- 영·중국 간 외상회담(1993.7.9.) 시 홍콩의 선거제도 등 주요사항 협의
- 9.24. 중국 인민일보 등 관방매체는 홍콩에 중대한 혼란 발생 시 홍콩주권 회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과거 등소평 발언 집중 보도, 영국에 대해 압박 시도

2. 홍콩 정세

- 홍콩 정청은 1994.5월부터 중국은행(홍콩)을 홍콩달러 발권은행으로 추가, 홍콩경제와 중국경제 간의 결합 가속화 계기
- 제26차 영·중국 공동연락위원회 회의(1993.6.21.) 개최, 홍콩 방위용도 토지사용 문제, 화물터미널 부두 개발 등 협의
- 7.1. 중국 정부는 홍콩의 중국반환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에 주둔할 규모와 주둔지 등 설명
- 10.6. 패튼 총독은 홍콩입법위원회에서 '홍콩, 오늘의 성공과 내일의 개혁' 제목의 93/94 시정 연설 및 시정 보고

온두라스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38 / 14 / 1-68

1992~93년 중 온두라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92년

- 역내 관심사항
 - 민주주의 증진, 평화정착, 교역증진, 투자유치 및 경제개발, 역내 통합 등
- 온두라스 정부의 활동
 - 대통령 및 각료들이 과테말라 및 엘살바도르 등 인근국가들과 교류하면서 관심사항 소통

2. 1993년

- 국내외 정세
 - 1.4. 각료 전원 사표 제출, 3.2. 각 정당대표 및 주요 국가기관장 참여하에 국가안보회의 개최
 - 온두라스 대통령은 중미지역 순방을 통해 공통 관심사항 논의
 - 일본 및 대만 등 온두라스 내 외국인투자 비중 증대
- 대통령 선거전 동향
 - 전통적으로 양당정치의 관행에 입각하여 여당인 PN(국민당)과 야당인 PL(자유당) 후보가 경쟁
 - 양당 후보 모두 친미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농민을 중시하는 좌파노선 경향도 상존
 - 부정부패, 경제정책, 이념 논쟁, 선거인 명부 논란 등으로 선거 과열 조짐 노정
- 11.28. 대통령 및 의원 선거 실시
 - 대통령 선거에서는 PL의 Reina 후보가 당선
 - 총선에서는 PL이 128석 중 71석 확보
 -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우선순위에 변화가 있으며, 대외정책은 현재 기조 유지 전망
 - 1994.1.25. 의회 구성 및 1.27. 신임 대통령 취임 예정
- 한국 정부 조치
 - 1993.12.4. 김영삼 대통령 축전 발송
 - 1994.1.27. 대통령 취임식 축하사절 파견 검토

2209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아이티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38 / 15 / 1-135

1993년 중 아이티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동향임.

1. 아이티 사태 개요

- 1991.9월 쿠데타 발생으로 Aristide 아이티 대통령 망명
 - 미국 및 유엔은 군사정부를 비난하며, 1993.6월 유엔은 대아이티 제재조치 결정
- 미국 정부의 관심사는 아이티 난민의 확산 방지 및 사태 조기타결을 위한 협상

2210

2. 국제적 노력

- 1993.1.17. 유엔사무총장 특사는 아이티 군부와 협상
 - 쿠데타 세력이 동의하는 경우: 유엔감시단 파견, 금수조치 해제, Aristide 대통령 귀환 추진
 - 전제조건: 쿠데타 관련자 사면 및 반대세력이 추천하는 인사를 총리로 임명
- 3.16. 클린턴 미국 대통령, Aristide 대통령과 회담
 - 동 대통령의 조속한 귀환, 유엔 협상 지원, 국제기금 조성, 난민 문제 해결 등 협의
- 유엔 특사와 아이티 군부 간 합의에 따라 유엔감시단의 아이티 입국 전개
- 6.17. 유엔안보리는 아이티 사태 진전이 없는 경우 6.23. 발효되는 제재 결의 채택

3. 진전사항

- 1993.7.3. 동 대통령 측과 아이티 군부 측은 민주질서 복구에 합의
 - 10.30.까지 동 대통령 귀환, 쿠데타 주도 군부 퇴진과 사면 등
 - 동 합의에 따라 동 대통령이 지명한 R. Malval이 아이티 의회에서 총리 인준
- 8.27. 유엔안보리 및 OAS(미주기구)는 대아이티 제재조치 철회 결정
 - 9.23. 유엔안보리는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아이티 파견 결의 채택
- 10월 초 아이티 소요사태 발생으로 민주질서 회복 과정이 불투명
 - 아이티 무장단체는 동 대통령 복귀 반대 시위에 이어 PKO 입국 저지

아이슬란드 정세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3-138 / 16 / 1-105

1990~93년 중 아이슬란드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주요 정세

- 1990.5.26. 지방선거 실시
 - 우파 독립당 압승
- 1991.4.20. 총선 실시
 - 우파 독립당이 총 63석 중 26석(38.6%)을 확보하여 1당 지위 획득
 - 4.30. 독립당·사민당 연립정부 구성
- 1992.7.31. 여타 입후보가 없어 V. Finnbogadottir 현 아이슬란드 대통령의 무투표 당선
- 1993.1.12. 아이슬란드 의회, EEA 비준안을 찬성 33표, 반대 23표, 기권 7표로 가결
 - 1.13. Finnbogadottir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EEA 가입 절차 완료
- 6.15. 사민당의 당직 개편으로 사민당 소속 각료 3명 교체

2. 관심사항

- 경제난 해소: 어획량 감소 추세
- 주둔 미군 철수
- 발트해 공화국의 독립 지원

2211

대한민국 외교부서 업무지침

인도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39 / 1 / 1-175

1993년 중 인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봄베이 테러 폭발사건

- 주인도대사는 1993.3.15. 봄베이 테러 폭발사건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Rao 수상은 3.13. 기자회견을 통해 금번 테러사건이 인도의 경제개혁 정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평가하고, 인도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테러분자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힘.
 - 사건 당일 오후 Chavan 내무장관은 상원에서의 답변을 통해 테러에 사용된 폭발물질이 인도 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고성능 물질임을 밝히고, 외국단체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함.
 - 봄베이가 인도의 최대 상업도시로 경제활동의 중심지임에 비추어 금번 테러사건은 아요디야(Ayodhya) 사태와 지난 1월 봄베이 소요사태 시 회교도 측이 입은 피해를 보복하기 위해 국제회교 테러단체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2. 영국 수상, 인도 방문(1993.1.23.~27.)

- 주인도대사는 1.27. Major 영국 수상의 인도 방문 관련, Major 수상이 라오 인도 수상과 단독회담(2회) 및 확대회담(1회)을 갖고 대통령 주재 오찬, 수상 주재 만찬 등에 참석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에 관해서는 양국 간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이나, 카슈미르 문제, NPT(핵확산금지조약)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영국 수상이 인도 독립기념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함으로써 아요디야 사태 이후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라오 수상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한 것으로 보임.

3. 독일 수상, 인도 방문(1993.2.18.~22.)

- 주인도대사는 2.23. Kohl 독일 수상의 인도 방문 관련, 라오 수상과의 회담, 대통령 예방, 수상 주재 만찬 등에 참석하였다고 하면서 주요 방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아요디야 사태 이후 국내 정치 안정 회복과 경제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할 인도의 입장에서 세계 경제 강국인 독일 수상의 방문을 계기로 합작투자 등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유럽의 주요국(영국, 러시아, 스페인, 독일) 수상들의 잇따른 방문을 계기로 경제 개방화 지속과 국내 정치의 안정이 절대 필요하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계기로 활용한 것으로 보임.

인도·파키스탄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39 / 2 / 1-183

1993년 중 인도·파키스탄 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카슈미르 문제 유엔 논의에 대한 반응

- 주인도대사는 1993.9.30. 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카슈미르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인도 언론은 사실, 논평 등을 통해 동 문제는 인도·파키스탄 양국 간 해결할 문제이지, 다자회의에서 논의될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는 인도 정부의 기존입장을 옹호하면서, 미 대통령의 카슈미르 문제 본질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비판조의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함.
- 인도 유력 일간지 Economic Times지는 아래의 9.30.자 기사에서 동 문제의 국제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외무성 분위기를 전하고 있음.
 - 유엔사무총장의 유엔보고서상의 카슈미르 문제 언급, 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의 카슈미르 문제 언급, 카슈미르 인권에 대한 세계 언론의 부정적 반응 등은 동 문제 국제화 가능성의 조짐이라고 외무성은 불안해하고 있음.

2. 제47차 유엔총회 1위원회 결의안 중 “남아시아 비핵지대” 관련사항

- 토의배경 및 경과
 - 1974년 제29차 유엔총회 시 파키스탄 측 요청에 따라 남아시아 비핵지대 문제가 최초로 총회 의제로 포함됨.
- 주요 내용
 - 남아시아 국가의 비핵지대 설치를 위한 노력 계속과 비핵지대 설치 시까지 동 목적에 반하는 행동 삼가 촉구
 - 핵보유국이 남아시아에서의 비핵지대 설치노력에 필요한 협조 제공을 촉구
- 채택방법: 투표
 - 찬성: 144
 - 반대: 3(인도, 부탄, 모리셔스)
 - 기권: 13(한국, 브라질, 쿠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북한은 불참)
- 한국 입장
 - 비핵지대 설치를 위한 핵심요소인 역내 당사국 간의 합의 결여
 -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비핵지대화로 전환시키려는 책동 가능성

221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간

인도네시아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39 / 3 / 1-157

1993년 중 인도네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일본 총리, 인도네시아 방문(1993.1.11.~13.)

- 미야자와 일본 총리는 1993.1.12.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바, Moerdiono 일본 관방상이 아래와 같이 회담 요지를 발표함.
 - 일본·인도네시아 관계
 - 수하르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상품에 대한 일본 시장의 개방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미야자와 총리는 최근 일본의 인도네시아 상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함.
 - 미야자와 총리는 양국 간 이해증진을 위해 문화교류협의회 설치를 제의하였으며, 제1차 회의가 금년 하반기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임.
 - G7 정상회의 및 남북대화
 - 동 대통령은 비동맹의장 자격으로 금년 6월 도쿄 개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G7과 비동맹 간 대화 등 남북협력에 관한 비동맹의 입장 전달을 희망함.
 - 동 총리는 동 제의에 관해 G7 회원국과 협의하겠다고 하였으며, 일본은 외채 등 개도국 문제를 G7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2. 정·부통령 선거

-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93.2.9. 수하르토 대통령의 임기(1988.4~93.3월)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관련 주재국 내 동향을 보고함.
 - 선거 일정: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과 향후 5년간 국가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본 회의를 1993.3.1.~11. 개최 예정
 - 전망: 수하르토 대통령이 컨센서스에 의해 차기 대통령에 재선출될 것으로 전망
 - 동 대통령의 고령 및 장기집권으로 차기 임기 중 권력이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차기 부통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MPR(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3.10. 컨센서스에 의해 투표 절차 없이 동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 (1993~98년)으로 선출함.
- 주인도네시아대사는 동 대통령이 3.11. MPR에서 선서식을 갖고 정식 취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한국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을 건의함.



3. 수하르토 대통령 국정 연설

- 수하르토 대통령은 1993.8.17. 제48주년 독립기념일에 즈음하여 8.16. 국회에서 아래 요지의 국정 연설을 행함.
 - 인도네시아의 건국 5원칙인 Pancasila 이념(신앙, 인본주의, 민족적 및 국제적 단합 등)을 발전시켜 선진사회로 도약해야 함.
 - 정치 분야에서는 개방성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며, 경제 분야에서는 규제 및 관료주의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임.

2215

대한민국 외교부
2015년 8월 17일

이라크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139 / 4 / 1-98



1993년 중 이라크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3.5.4. 이라크 정부, 고액권 지폐 무효화 조치 발표
- 9.5.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부분 개각 발표
 - 총리를 비롯한 농업, 석유, 산업 등 8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 단행
 - 안보·치안 관련 핵심 각료는 유임, 경제 각료를 대폭 경질하여 경제난 타개에 중점
- 9.21. 이라크 혁명평의회, 국유산업 민영화 결정
 - 유엔 경제제재로 인해 침체된 경제 회생 목적

2. 대외 관계

- 1993.3.1. 후세인 대통령 기자회견 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향 표명
- 8.4. 유엔사찰단 사찰 결과 발표
 - 이라크 내 두 곳에 감시카메라 설치 완료
- 10.31. 유엔특별위 이라크 무기사찰단, 한 달간 사찰 후 철수
 - 대량살상무기 미발견 발표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 전3권 (V.1 1.6.-15.)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 북미1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139 / 5 / 1-122

1993.1월 중 연합군의 1차 대이라크 공습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관련 내용임.

1. 배경

- 1993.1.5. 이라크는 국제사회가 설정한 남부 비행금지구역 인근에 대공 미사일 배치
 - 걸프전 종전 이후 1992.8.27. 연합군은 남부 시아파 회교도 보호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 1992.12.27. 연합군에 의해 이라크 전투기가 격추된 이후 이라크는 위협용으로 미사일 배치
- 1993.1.6. 미국은 기지 공습을 위협하면서 48시간 이내 이라크의 대공 미사일 철수 촉구
- 최후통첩 시한 직전, 이라크는 배치 미사일 철수
 - 반면, 1.10. 이라크는 병력을 쿠웨이트 북부로 침입시켜 미사일 탈취

2. 이라크 공습

- 1993.1.13. 미국 중부사령관은 대이라크 공습이 시작되었다고 발표
 - 이라크 군 기지 및 미사일 발사대 등이 공습 대상
- 영국, 러시아, 일본,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연합군의 공습 지지
 - 중국, 요르단, 예멘, 아랍연맹 등은 유감 표명

3. 한국 정부의 관심사항

- 이라크 및 쿠웨이트 거주교민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태 진전 주시

2217

대한민국 외교부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 전3권 (V.2 1.16.-31.)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 북미1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139 / 6 / 1-129

1993.1월 중 연합군의 2차 대이라크 공습 및 국제사회 반응 관련 내용임.

1. 미국의 이라크 재공습

- 1993.1.17.~18. 미국은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투기를 출격시켜 2차 이라크 공습을 감행
 - 이라크의 추가적 도발 지속 및 유엔 무기사찰단의 입국 거부 등에 대한 조치
 - 남부 비행금지구역을 넘어서 바그다드 주변지역 공격

2218

2. 진전사항

- 1993.1.18. 취임 축하 리셉션에서 클린턴 미 대통령 당선자는 전 정부의 대이라크 정책 지지를 재천명
- 1.19. 이라크 정부는 비행금지구역에서의 휴전을 선언하고, 유엔 무기사찰단의 입국을 수락 표명
 - 이후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입국이 차질 없이 진행
- 1.26. Tareq Aziz 이라크 부총리는 CNN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언급
 - 유엔 결의사항 저촉 여부, 지역세력 균형유지, 국제에너지 수급 등 지적

3. 국제사회 반응

- 아랍권 다수국가들은 서방의 이중 잣대를 거론하며 연합군의 2차 공습을 비난
 - 요르단, 이란, 수단, 예멘,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아랍연맹 등
- 연합군 측 일부 국가들도 2차 공습에는 비판적 입장 표명
 - 러시아는 2차 이라크 공습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 프랑스는 2차 공습은 과도한 조치이며 후세인 정권 및 대서방 경계심을 강화시켰다고 평가
- 튀르키예는 자국 내 쿠르드족 동향을 우려하여 자국 내 미국 공군기의 이라크 공습 이용에 반대 입장 표명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 전3권 (V.3 2-8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 북미1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139 / 7 / 1-156

1993.2~8월 중 미국의 3차 이라크 공습 및 국제사회 반응 관련 내용임.

1. 2차 이라크 공습 이후 동향

- 1993.1월 2차 공습 이후 이라크 정부는 미국에 대해 유화 분위기 지속
 -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3.1.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향 표명
 - 이라크 공보부 대변인은 3.1. 남부 시아파 주민 탄압 의혹 해소에 협조 의사 표명
 - 유엔 무기사찰단은 3.2. 이라크에 입국하여 활동
- 아랍권 국가들을 동원하여 경제제재 해제를 지속 시도
 - 서방국가는 야당 정치인들을 이라크로 초청하여 호소하는 시도 병행

2. 군사적 충돌 재발

- 이라크 북부 및 남부 비행금지구역 순찰비행 중 미국 전투기에 대한 공격이 간헐적으로 발생
 - 미국 전투기는 해당 방공시설을 폭격함으로써 대응
- 이라크는 1993.4.12. 남부 비행금지구역에서 군사 기동훈련 실시

3. 3차 이라크 공습 및 국제사회 반응

- 1993.6.26. 미국은 바그다드 소재 이라크 정보부 건물에 대해 미사일 공격 단행
 - 4월 부시 미 전 대통령의 쿠웨이트 방문 시 발생한 암살음모 사건은 이라크 정보당국의 소행으로 판단
- 1차 공습 때와는 달리 영국 및 일본 등을 제외하고는 전폭 지지 국가는 감소하는 경향
 - 다수국가는 2차 공습에 대한 반응과 유사

2219

대한민국 의회도서관

이란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139 / 8 / 1-191

1993년 중 이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견제와 균형
 - 1992.5월 총선으로 개혁파(관료 출신)와 보수파(성직자)가 2/3를 차지하여 강경파 입지 약화
 - 예상과 달리 보수파가 라프산자니 이란 대통령 정부의 개혁정책을 견제
- 라프산자니 정부의 약화
 - 1993.6.11. 대통령 선거에서 라프산자니 대통령이 재선되었으나 과거에 비해 인기 하락
 - 경제정책 실패, 관료의 부정부패, 행정 비능률 등으로 불만이 증대하여 지방에서 소요사태 발생
 - 8월 개각을 단행했으나, 의회는 경제개혁 정책의 입안자인 경제·재무장관을 불신임
 - 하메네이 지도자와 라프산자니 대통령 간 불화설이 있기도 하나, 협조체제 유지

2. 대외 관계

-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 역내 아랍 국가들과 우호관계 유지, 외세개입 배제 안보체제 주장, 이란 불참 안보체제 반대
 - 이란의 군비증강 및 아랍에미리트공화국과의 영토분쟁 등으로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의 경계심 증대
- 인접국 및 중앙아시아 관계
 - 기존의 우호관계 긴밀화를 추구하나, 튀르키예 및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불신이 한계로 작용
 - 러시아와는 협력증진을 도모하며, 중앙아시아 내 영향력 확보를 시도하나 여의치 않은 실정
 - EC(구주공동체) 국가들과는 반목하면서도 실질협력을 추구하며, 일본 및 중국과는 협력관계 유지
- 중동평화회담
 -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이스라엘 관계 개선에 반대하나, 외교적 고립이 우려되어 신중한 행보 지속

이스라엘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3-139 / 9 / 1-120

1993년 중 이스라엘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제7대 대통령 선출(1993.3.24.)

- 외무부는 와이즈만 이스라엘 대통령 취임(5.13.)에 맞추어 김영삼 대통령 명의 축전 전달
- 이스라엘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로서 대부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업무를 수행함.

2. 연립정부 붕괴 위기

- Deri 내무장관은 Aloni 문교장관의 반(反)종교적 발언에 반발하여 동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동 해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993.5.9. 장관직 사퇴서 제출 및 Shas당 소속의원(6석)의 연정 탈퇴 의사 표명
- Deri 내무장관과 Aloni 문교장관을 향후 1주일간 무임소장관으로 임명하며 동 기간 중 정국 위기해소를 모색하기로 5.11. 각 정파 간 합의

3. 리비아 성지순례단(192명), 동예루살렘 방문(1993.5.31.~6.2.)

- 리비아 측
- 사적인 방문이라고 발표했으나, 아랍 및 이스라엘 관측통들은 양국 간 막후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함.
- 이스라엘 측
- 이스라엘 치안장관은 국영라디오 회견에서 양국 간 비밀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시인
- 성지순례단을 주선한 사람은 카다피가 금년 중 이스라엘을 승인하고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
- 아랍 및 서방 측
-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를 비롯한 아랍국가들, 대리비아 제재에 가담해 온 서방국가들은 성지순례단의 방문을 비난함.
- 리비아 내 카다피 추종세력 중에서도 이번 사태에 반발하는 인사가 많은 것으로 보임.
- 관찰 및 평가
- 이스라엘 건국 이래 아랍국가로부터 최초의 방문으로 카다피의 강경노선을 감안할 때 극히 이례적인 사태임.
- 카다피가 8월 유엔의 대리비아 제재 검토를 앞두고 미국의 대리비아 적대정책 완화를 기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2221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작

이스라엘 점령지 내 팔레스타인인 문제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중동2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139 / 10 / 1-120

이스라엘 정부는 1992.12월 팔레스타인인 415명을 강제 추방하였으나, 국제사회의 압력 및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측과의 협상 등 과정을 거치면서 1993.12.15. 전원 귀환시키는 조치를 취함.

1.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강제추방 사태

- 1992.12.12.~13. 회교과격단체 하마스 주도로 저항운동(인티파다) 5주년 계기 폭력소요 발생, 이스라엘 병사 1명이 납치·살해됨.
- 이스라엘 정부는 1992.12.18. 하마스에 대한 보복조치로 단체소속 팔레스타인인 415명을 남부 레바논 접경지역으로 강제추방

2. 관련 당사국 및 국제사회의 반응

- 유엔안보리, 1992.12.18. 만장일치로 안보리 결의 제799호 채택
 - 팔레스타인인 추방 결정 비난 및 피추방민의 즉각 귀환 허용을 촉구
 - 아랍권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대이스라엘 제재를 요구하고,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도 추방조치에 반대 입장 표명
- 팔레스타인의 10여 차례 대이스라엘 무력시위 및 테러 등 사태로 이스라엘인 사상자 16명 발생, 이스라엘군의 강경진압으로 팔레스타인인 46명 사망, 220여 명 부상

3. 팔레스타인 피추방민 귀환

- 이스라엘 정부는 1993.2.1. 추방민 중 101명의 귀환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추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 5.10. 추가로 25명 귀환 허용 등 유화적으로 전환하고, 12.15. 잔여 인원 214명을 귀환시킴.
- 이스라엘의 추방민 전원 귀환조치는 이스라엘 정부의 단계적 귀환방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나, 이스라엘·PLO 간 팔레스타인 자치협정 이행 추진과 관련하여 하마스 과격파의 입지 약화, 이스라엘·PLO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이탈리아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3-139 / 11 / 1-120

1993년 중 이탈리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이탈리아 국민투표(1993.4.18.~19.)

- 상원 선거제도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로 81.3% 지지로 가결
 - 70일 내 의회는 현행 비례대표제 위주의 선거법 개정 불가피
- 비례대표제 의석이 축소될 경우 정치권 부패 요인이 제거되고, 정치 안정에 기여할 전망

2. Ciampi 정부 정책 프로그램(1993.5.6. 하원에서 발표)

- 정치개혁 및 부패척결
 - 하원 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새 선거법에 의한 조기 총선 실시
 - 부패방지 및 척결을 위한 노력 경주
 -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 집행 추구(현행 의원 면책특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 경제정책
 - Amato 내각의 재정적자 감축기조 계속 유지
 - 공기업 민영화 계속 추진
 - 국내경기 회복 후 EMS(유럽통화시스템) 복귀 검토

3. Ciampi 내각 출범(1993.5.7.)

- 좌파 민주당을 포함한 기민당, 사회당, 사민당 등 7개 정당 거국 연정내각 출범
 - 4.18. 국민투표에서 정치개혁 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됨으로써 4.22. Amato 내각 총사퇴
 - Ciampi 총리(무소속)는 연정내각이 조기 총선에 대비한 과도정부 성격임을 명확히 함.

4. 의원 선거법 개정(1993.8.7.)

- 소선거구제 도입(종전은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제)
 - 하원은 소선거구제 475명, 비례대표제 155명으로 구성
 - 상원은 소선거구제 232명, 비례대표제 83명으로 구성
- 26개 대선거구의 비례대표 후보는 각 정당이 추천하되(여성 후보 추천 의무화) 지지 정당에 투표
- 전국 집계 4% 미만 획득 정당은 의석 배분에서 제외
- 의원 20명(상하원 각 10명)은 해외체류자가 선출

2223

대한민국 의회도서관

일본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139 / 12 / 1-172

1993년 중 일본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미야자와 독트린

- 미야자와 일본 총리는 1993.1.11.~18. 아세안 4개국 순방 중 1.16. 방콕에서 소위 '미야자와 독트린'을 발표한바,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음.
- 미야자와 독트린의 요지
 - 아시아태평양의 새로운 역할
 - 일본은 아세안 간의 정치안보 대화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
 - 일본은 과거사의 반성 속에서 군사대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아세안과의 협의 과정을 중요시 해나갈 것임.
- 미야자와 독트린의 분석과 평가
 -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정치대국 지향 의욕을 선명히 내세움.
 - 일본의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역할 부각에 따른 관련 국가의 경계감, 거부감 해소에 유의
 - 종합적으로 일본은 대외적으로 냉전의 유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헌법 개정 논의

- 개헌 논의 대두 배경
 - 국제사회에서 인적공헌의 증대를 통한 정치 대국화 지향
 - 1991년 걸프전쟁 시 130억 달러의 전쟁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인적기여'를 하지 못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인식
 - 일본 헌법 제9조와 자위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존재
 - 일부에서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위헌이라는 의견 대두
- 분석 및 전망
 - 헌법 개정 논의의 '터부' 완화 추세
 -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정치 대국화'를 향한 분위기 조성
 - 장기적으로 자민당은 헌법 개정의 시한으로 7년을 제시, 금후 개헌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
 - 여론형성 노력 예상

일본 총선 및 호소카와(細川護熙) 내각 연립정부 출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139 / 13 / 1-245

1993년 중 일본 총선 및 호소카와 내각 연립정부 출범 관련 내용임.

1. 총선거(1993.7.18.)

- 총선 결과
 - 전체 의석 511(과반수: 256) 중 각 정당 획득 의석(괄호 안은 선거전 의석)
 - 기존 정당: 자민 223(222), 사회 70(135), 공명 51(45), 공산 15(16), 민사 15(14), 사민연 4(4), 무소속 30(17)
 - 신 정당: 신생당 55(36), 일본신당 35(0), 신당선구 13(10)
- 결과 분석
 - 신 정당의 약진은 지난번 선거에서 사회당을 지지한 부동층(전유권자의 20%) 다수의 변화추구 심리로 신 정당을 지지한 결과
 - 자민당의 선전은 사회당 퇴조에 따른 반사이익, 실권 위기에 따른 조직표 결속, 일부 부동층 유권자의 안정추구 심리 등에 기인
- 신 내각의 대외정책 전망
 - 자민당 내각이 구성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일본 정부 정책을 그대로 계승
 - 야당 연립내각이 구성되는 경우에도 각 당의 현격한 노선차이 때문에 기존 정책으로부터의 전환가능성 희박

2. 호소카와 내각 출범

- 호소카와 총리는 1993.8.9. 오전 신내각을 구성, 동일 오후 일왕 주재 '인증식'을 거쳐 연립정부 정식 발족
- 내각 구성
 - 연립정당 당수, 대표 전원 입각하였으며, 의석수에 따라 각료직 안배
- 평가
 - 연립정부의 참신성 부각에 역점
 - 내외의 불안해소, 정책연속성 과시를 위해 집권경험 있는 신생당 인사를 주요 대내외 정책 부처에 배치(외무, 대장, 농수산 통산, 방위)

2225

대한민국 의정방송 아카이브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139 / 14 / 1-90

1992~93년 중 일본의 북방영토 관련 각종 언론 보도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1. 연합뉴스(1993.8.18.자) 기사

- 빅토르 체르노미딘 러시아 총리, 8.17.자로 쿠릴열도의 주권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일본 반환 가능성을 일축

2. 연합뉴스(1993.8.27.자) 기사

- 그레고리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러시아는 일본과 영토문제를 협상할 태세가 되어 있다며 8.27. 후쿠다 히로시 일본 외무차관과 회담을 위해 도쿄에 도착하였음을 밝힘.

일본·러시아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 동구1과

MF번호 2023-139 / 15 / 1-150

1993년 중 일본·러시아 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러·일 관계 및 G7+1 회의(1993.7.12.)

- 러·일 정상회담
 - 미야자와 총리가 G7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G7+1 회의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옌친 러시아 대통령의 동의를 구함.
 - 양국관계와 관련, 옌친 대통령이 양국 간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방일 시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하자 미야자와 총리가 동의함.
 - 미야자와 총리가 방일 시기에 관해 문의한 바, 옌친 대통령은 일본 측의 편리한 시기를 묻고, 7.18. 총선 후면 언제나 좋다는 동 총리의 답에 대하여 실무준비를 위해서 10월 중순 정도면 러시아 측으로서도 적당하겠다고 자신의 방일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함.
- 평가
 - 옌친 대통령은 도착 직후 공항에서 일본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하였으며, 동 메시지가 일본 언론 및 지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으로 평가됨.
 - 옌친 대통령이 방일 시기를 1993.10월 중순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러·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됨.

2. 일·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및 평가(1993.10.13., 장관 보고사항)

- 옌친 대통령은 국내정세 장악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자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일한 것으로 분석
- 북방영토 문제는 옌친 대통령의 어려운 국내 입지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구소련 협정의 러시아 승계와 '법과 정의'에 따른 해결 원칙을 확인한 점에서 1991년 가이후·고르바초프 공동 선언보다 일보 전진으로 평가 가능
 - 러시아 측(구 소련 포함) 정상으로는 일본인의 시베리아 억류 문제에 대한 최초의 사죄 표명으로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만 무마
- 한반도 핵 확산 방지에 관한 일·러 공동성명은 지역안전보장에 관한 양국 간 최초의 합의문서로서 양국관계를 지역안보문제까지 확대한 데 의의

2227

대한민국 외교부

미국·일본 관계. 전2권 (V.1 1-4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 북미1과

MF번호 2023-139 / 16 / 1-168

1993.1~4월 중 미국·일본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와타나베 일본 외상, 미국 방문(1993.2.11.~14.) 중 클린턴 대통령 예방(2.11.)

- 클린턴 대통령은 “미·일 관계는 21세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국관계”라고 강조하고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일본을 존중하고, 미·일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
- 클린턴 대통령은 또한 미야자와 수상과의 회담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미야자와 수상과 업무 면에서 좋은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으며 정상회담을 위한 방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함.
- 와타나베 외상은 대러시아 지원 문제와 관련, 일본은 러시아 문제에서 공헌하고 있다고 하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지원도 분담하고 있고, 1억 달러 추가지원도 결정하였다고 설명한바, 클린턴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음.

2. 미국·일본 정상회담(1993.4.16., 워싱턴 D.C.)

- 클린턴 대통령은 미·일 관계가 과거 안보협력 관계, 국제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 경제 관계의 3개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냉전시대가 종식된 만큼 이제는 경제 문제가 가장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함.
- 미야자와 수상은 기자회견 시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중대한 요소라 말하고,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이 G7 정상회담 외에도 최소한 연 1회씩 만나기로 했다고 밝힘.
- 공동기자회견 시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의 시장개방 정도에 불만을 표명하고 일본의 경제 활성화 계획이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기여해야 함을 강력히 역설함. 이에 미야자와 수상도 통상 문제가 일방적 위협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미·일 관계는 Zero-Sum이 아닌 Plus-Sum이 되어야 하며, 미국도 수출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함.

미국·일본 관계. 전2권 (V.2 5-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 북미1과

MF번호 2023-140 / 1 / 1-204

1993.5~12월 중 미국·일본 관계에 관한 내용임.

1. 미국·일본 통상 Framework 협의(1993.6.11.~12.) 결과

- 양측은 향후 개최될 통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본 무역흑자 감축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음.
- 미·일 양측은 일본 무역흑자 감축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음.
 - 미국 측은 일본 무역흑자의 근본원인이 일본시장의 폐쇄성에 있다고 보고, 일본의 대외시장 개방 진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일정한 수량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 중의 하나임을 주장하고, 무역흑자의 이면에는 양국의 투자 및 저축의 불균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음을 강조함.
- 또한 미국 측은 기체결된 협정 이행상태 점검, 정부 조달구매, 자동차 산업 및 자동차 부품이슈, 정부규제 문제 그리고 기술 및 외국 자본투자 문제 등을 5대 주요 의제로 하여 일본과의 통상회담을 6개월 내지 1년간 지속시킬 계획을 하고 있음.

2. 일본·미국 건설 협의(1993.9.17.~18., 하와이)

- 미국 정부가 이번 협의에서 지명경쟁입찰제도의 근본적인 폐지와 일반경쟁입찰제의 도입을 제안한 것은 일본의 호소가와 신정부 수립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도 건설 관련 독직사건으로 지명입찰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일반경쟁입찰제 도입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이 기회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일본 건설시장 개방 문제는 실제 공사 운영을 둘러싼 국제화, 자재의 국제조달, 외국인 노동자 수용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대일본 건설시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2229

대한민국 외교부

일본의 대중남미 외교정책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40 / 2 / 1-133

1993년 중 일본의 대중남미 외교정책 관련 내용임.

1. 일본의 대중남미 외교 적극화 동향

- 일본 언론보도 요지(1993.1.5.자 산케이 신문)
 - 일본의 대중남미 외교 적극화
 - 중남미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경제 정착 추세
 - 클린턴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대중남미 인권외교 강화 가능성
 - 일본의 대유엔 외교와 관련 중남미 국가의 지지 확보 필요성
 - 주요 관련 동향
 - 역내국 외상 방일 초청 계획(5개월간 23개국)
 - 관련국 지원추진: 대페루 지원 국제회의 주최(1993년 봄, 도쿄)
 - 엘살바도르 전후 복구지원: 공공개발원조 제공
 - 외무성 중남미국장, 중남미 순방(1993.8월): 페루 포함
- 조치 계획
 - 일본의 중남미 외교 적극화가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검토
 - 금년 방일하는 중남미 외상 급증에 따라 이들의 방한희망 시 대책 검토

2. '중남미로 눈을 돌리는 일본 외교'(1993.5.17.자 요미우리신문)

- 최근 일본의 중남미 외교가 적극화되고 있음.
- 중남미는 군정과 외채로 상징되던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화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제개혁의 길을 가고 있으며 지금은 아시아 다음으로 고성장지역으로 일컬어짐.
- 일본의 대중남미 외교 적극화는 중남미의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개발을 측면 지원하는 의미
- 중남미도 일본과 아태지역을 협력파트너로 고려 중이며, 중남미를 미국의 '뒷마당'으로 보는 것은 시대적 착오인바, 17일부터 개최되는 리오그룹과의 도쿄회담도 이러한 맥락에 따른 것임.

자메이카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40 / 3 / 1-234

1992~93년 중 자메이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신임 총리 취임(1992.3.30.)

- Manley 총리 사임(3.15.)에 따라 자메이카 집권당 PNP 당수 Patterson이 후임 총리로 선출되어 취임
 - Patterson 신임 총리는 1991년 말까지 부총리 겸 재무장관으로 재임하였으며, Manley 총리 후계자로 거론되어온 인물

2. 자메이카 총선(1993.3.30.)

- Patterson 총리가 국민에 대한 수권 지지 여부를 묻는 성격의 조기 총선
 - 여당인 PNP가 전체 의석 60석 가운데 54석을 차지(Patterson 총리 재집권 성공)
- 군경 합동 범죄 진압조치 등 강력한 치안정책, 기존 우방들과의 관계 강화 및 CARICOM(카리브 공동체) 내 주도국 역할 견지 등 전망
- 김영삼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4.2.)

2231

대한민국 외교부 서무국

요르단 정세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140 / 4 / 1-72

1990~93년 중 요르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개각(1991.10.5.)
 - 2.17. 요르단 내각 국회 신임 획득
 - 6월 신임 투표 시, 마스리 내각이 의회 내 다수 및 정치권으로부터 지지 획득
 - 10.2. 마스리 수상 유임
 - 평화회의를 앞두고 요르단 입장 통일을 위한 내각 결속에 큰 의의가 있음.
- 후세인 요르단 국왕 연설(1991.10.12. 국민회의)에 대한 각계 반응
 - PETRA 통신 언론조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요르단의 책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환영함.
 - 정계: Talhouni 상원 부의장(전 수상)은 국왕의 연설이 공명정대한 평화구현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42호의 수행을 위해 1967년부터 계속해온 요르단의 노력을 요약한 것이며, 평화추구 및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회복을 갈망하는 요르단 국민들의 내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
 - 종교계: 국왕의 노력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확실하며 Peace Process는 그들의 권리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제계: 국왕의 연설은 이성, 객관성 및 현실주의의 구체적 표현임.
- 요르단 국왕 암살음모 혐의자, 특별보안 재판에 회부 예정(1993.8.16.)
 - 6.26. Mutah 육군대학 졸업식 석상에서 후세인 국왕의 암살음모 혐의로 이슬람 해방당 소속 군인 및 민간인 10명을 체포한바, 이들을 군 특별보안 재판에 회부 예정임.
- Majali 수상의 내각(12월)
 - 12.8. 하원에서 내각 신임문제 토의 결과, Majali 수상이 이끄는 현 내각이 41표의 단순다수 찬성을 얻어 신임 확보하였으나, 정치적 비중이 큰 하원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절대 다수 획득하지는 못함.
 - 지방분권화, 행정개혁을 계속 추구하고, 중동평화 관련 팔레스타인 난민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천명함.

2. 대외 관계

- 요르단 국왕, 구주 순방(1990.9월)
 - 걸프위기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북아프리카 5개국 순방 후 유럽을 방문하여 스페인, 영국,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과 의견 교환



-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시 후세인 국왕의 주요 발언 내용
 - 걸프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이 지역은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전면적인 파국이 도래할 것인바, 전쟁 발발이 임박하지 않기를 기도함.
 -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이를 보장할 수 없고 전망할 수도 없음.
 - 걸프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사태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이며, 곧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를 기대함.
 - 자신의 제의에 대한 유럽국가의 반응에 대해서 자신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함.
 - 요르단은 지금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난민 대량 유입에 따라 그들을 최대한 도와야 한다는 난제를 안고 있음.
- 요르단 국왕, 바그다드 방문(1990.12.4.)
 - 이라크 대통령, 아라파트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 Al-Beedh 예멘 부통령과 걸프 위기 해결방안 논의
 - 동 회담 내용은 상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정계에서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위요, Aziz 이라크 외상의 방미에 앞서 협상에 임하는 입장 정립이 주목적으로 분석됨.
- 요르단 국왕, 시리아를 방문하여 ASSAD 대통령과 회담(1991.3.25.)
 - 양측은 이스라엘과의 직접대화 거부, 이스라엘의 점령지역 반환 요구, 중동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및 유엔결의안에 근거한 미국의 중동지역 평화안 등에 관한 동일한 입장임을 확인
- 이봉 중국 수상, 요르단 방문(1991.7.6.~7.), 국왕과 중동평화 관련 회담
 - 양국은 유엔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큰 노력이 필요하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들이 적절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함.
 - 양국은 중동문제의 핵심은 팔레스타인 문제인바, 팔레스타인의 국민적 권리가 회복되어야 하며 아랍·이스라엘 분쟁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42호 및 제338호에 의거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 요르단으로서는 중국을 중동문제 해결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열강의 하나로 보고 있어 양국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있고, 최근 중국 국방상, 외상 등이 방문한바 있음.
 - 중국으로서도 요르단을 중동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양국의 제반 관계 증진을 위해 협의함.
- Abdullah 왕자, 북한 방문(1993.12.5.)
 - 8월 후세인 국왕의 중국, 북한, 일본 방문이 취소된데 따른 방문인 것으로 분석
 - 태국, 중국 방문에 이어 북한을 방문, 최광 인민군 참모총장 회담 및 국방상 주최 리셉션에 참석함.

케냐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40 / 5 / 1-73

1993년 중 케냐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총선 결과(1993.1.4.)

- 케냐 선관위는 1.4. 아침 Moi Kanu 후보를 대통령 당선자로 공식 발표, 대통령궁에서 정부요인과 주재 외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을 가짐.
 - Moi 대통령은 차점자인 FORD-A당 후보 Matiba 보다 50여 만 표가 많은 193만 표를 획득함.
- 한편, FORD-A, FORD-K 및 DP 등 야당 3당 대통령 후보들은 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금번 선거가 부정선거이므로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선거를 주장함. 그러나 언론, 경제계, 외교계 및 외국참관단 등의 일반 여론과 야당 내에서조차 선거 결과 불수용 선언을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2. 경제개혁 시도

- 경제개혁 단행(1993.2.19.)
 - 외환통제 자유화, 금융시장 자유화, 가격통제 완화 등의 경제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경제개혁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함.
- 경제개혁 조치 철회(3.22.)
 - IMF(국제통화기금) 및 원조국들이 케냐의 성실한 원조조건 이행에도 불구하고 원조재개를 거부함에 따라 경제적 위기가 온 것을 비난하면서 2.19. 단행한 경제개혁 조치를 전면철회(외환관리, 가격통제 환원)하고 경제안정화 정책을 채택함.
- 평가
 - 경제정책 급선회로 단기적으로는 물가급등 및 화폐가치 폭락을 막을 수 있어 최근의 경제 불안정을 다소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는 대외 신뢰도 실추로 인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외환 부족 현상 심화로 경제 악화가 우려됨.

3. 대케냐 원조공여국 회의(1993.11.22.~23., 파리)

- 결과
 - 1994년도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 1991.11월 이래 중단된 대케냐 원조 재개에 합의함.
- 원조 재개 결정 배경
 - 1991.11월 파리 원조공여국 회의에서 원조 재개 조건으로 제시된 제반 사항에 대해 케냐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정치, 경제개혁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종족분규 문제, 인권문제, 언론문제, 관료의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일부 공여국은 상기 문제에 대한 케냐 정부의 조치를 주시하면서 최종 원조제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취함.
- 케냐 경제에 미칠 영향
 - 원조 재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누적된 외채 미상환액이 7억 달러에 달함에 따라 공여국 측과 Rescheduling 등 동건 처리를 위한 후속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과의 관계
 - 금번 원조 재개 결정은 금년 5월 수입자유화 및 외환통제 완화조치와 함께 대케냐 수출 촉진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직물 및 화섬원료)의 수출 전망이 밝아질 것으로 예상됨.

2235

대한민국-아프리카경제협력

쿠웨이트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140 / 6 / 1-192

1993년 중 쿠웨이트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3.4.26. 외무부, 이라크 전범 처벌기구 설립법안 제출
- 6.7. 이스라엘에 대한 간접 보이콧 폐지 방침 발표
- 7.30. 이라크와의 국경지대에 고성능 감시탑 5개 설치 결정
- 9.4.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암살범 12명에 대한 사형 구형
- 10.10. 지방자치 의원 16명 중 임명제 6명 각의 승인

2. 대외 관계

- 1993.1.25. 데미렐 튀르키예 총리, 쿠웨이트 방문
- 1993.1.30. 쉐이크 아바 쿠웨이트 외무장관, 아시아·중동지역 13개국 순방
- 1993.2.15.~16. 그라체프 러시아 국방장관, 쿠웨이트 방문
- 1993.4.17.~20. 쿠투마 우크라이나 총리, 쿠웨이트 방문 기간 중 양국 수교합의서에 서명
- 5.2. 우크라이나 정부, 구소련 10개 공화국과 수교 결정
- 6.29. 대아랍 화해 조건 발표
- 1993.11.21. 우크라이나 정부, 남아공에 대한 경제 보이콧 해제 결정
- 1993.11.21.~22. EC(구주공동체) 의회 대표단, 쿠웨이트 방문

레바논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140 / 7 / 1-143

1993년 중 레바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3.7.25. 이스라엘, 남부 레바논 게릴라 기지(헤즈볼라 거점, 팔레스타인 게릴라 기지 및 시리아군 기지) 공습
 -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래 11년간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
 - 7.8.~9. 양일간 팔레스타인 및 친이란계 게릴라들의 공격으로 발생한 이스라엘군 사망(6명)에 대한 보복성 작전
 - 이스라엘 정부의 유화적인 대아랍정책에 대한 군부의 반발
- 7.31. 이스라엘, 대레바논 군사작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판단하에 공습작전 중단 발표
 - 미 국무장관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레바논·시리아 등 관련 당사국과의 집중적 협의를 통해 레바논 내 게릴라의 대이스라엘 공격 중단 설득
- 7.31. 미국 측 중재로 이스라엘·시리아·레바논 간 휴전협정 체결

2. 대외 관계

- 1993.9.7.~8. Hariri 레바논 총리, 사우디 방문
 - 레바논 복구사업 원조 확보를 위한 걸프 순방의 일환
- 1993.9.28. 레바논 총리,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회담
 - 레바논·이스라엘 양자 협상 및 양국관계 특히 미국의 대레바논 여행금지조치에 대해 논의

2237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정책기획처

라이베리아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40 / 8 / 1-306

1993년 중 라이베리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라이베리아 사태

- 배경
 - 1847년 독립 당시의 특수성에 따른 원주민과 이주정착민 간의 이종구조 및 정치적·사회적 마찰 심화
 - 장기간에 걸친 농촌지역의 극빈 상태와 몬로비아 거주민의 혜택 사이에서 인식되는 상대적 박탈감 누적
 -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Doe 군사정권의 제반 실정에 따른 국가체제 이완
- 국제 결의
 - 1990.10월 ECOWAS 평화안 채택
 - 1992.11.19.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788호 채택
 - 1993.3.26.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813호 만장일치 채택
 - 7.25. Cotonou 평화협정 채택
 - 8.10.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856호 채택
 - 9.9.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866호 채택
 - 9.22. 유엔안보리 UNOMIL 창설 관련 결의안 채택

2. 한국 관련사항

- 1990.9월 주라이베리아대사관 임시 철수
- 1991.4월 주한 라이베리아대사관 잠정 철수
- 1992.7월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라이베리아 겸임

리투아니아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3-140 / 9 / 1-47

1992~93년 리투아니아 정세 관련 문서임.

1. 1992년 정세

- 1월 폴란드 외무장관, 리투아니아 방문
- 3월 리투아니아 총리, 스웨덴 방문
- 5월 국민투표는 대통령제 채택 부결
- 7월 총리 교체
- 10~11월 총선(결선투표 포함)
 - 동시에 실시된 국민투표로 대통령제 채택
- 12월 신임총리 선출

2. 1993년 정세

- 2월 대통령 선거
 - A. Brazauskas 국회의장이 대통령으로 당선
 - 노태우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
-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가입
- 8월 리투아니아 주둔 러시아 군대 완전 철수
- 10월 미국·발트3국 외무장관회담 개최

2239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관계처
외무정책과

라오스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40 / 10 / 1-80

1993년 중 라오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경제개방정책(1993.1.29., 주미국대사관)

- 주요 내용 및 목표
 - 1986년부터 민간부문의 역할강화 및 국영기업의 자율성 증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
 - 거시경제정책상 투자증대에 초점
 - 민영화, 보조금철폐, 금융제도 개혁, 환율안정, 인플레이율 감축, 정부 재정적자 축소 등
- 주요 성과
 - 라오스 정부의 개혁의지와 성과에 대해 IMF(국제통화기금), UNDP(유엔개발계획) 등도 높이 평가
 - 실업률 감소, GDP 지속 증가, 수출 증가 추세

2. 정치 동향

- 라오스 국회, 대통령 재선 및 신내각 인준(1993.2.22.)
 - 누hak 품사반 라오스 대통령을 대통령에 재선출
 - 시판돈 총리 등 19명의 신내각을 만장일치로 인준
- 라오스 고위사절단, 베트남 방문(1993.4.1.~4.)
 - 베트남의 Doi Moi 정책 성공사례 및 경험 학습
- 라오스 인민혁명당 대표단, 북한·중국 방문(1993.4.5.~23.)
- 한·라오스 관계(라오스 외교관 평가)
 - 북한에 대한 설득 문제로 양국 간 수교 지연
 - 국교에 관계없이 대우의 수력 댐 공사 계약 체결 및 현대자동차 부품공장 건설 교섭 진행

라트비아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3-140 / 11 / 1-40

1993년 중 라트비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3.3.5.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라트화 통용 시작
 - 1라트 = 1.33달러
- 1992년 50만 m² 면적의 1만여 개 아파트를 민영화
 - 2천여 개 정부소유 건물을 원소유주에게 반환
- 1993.6.5.~6. 총선 실시
 - 총 투표율 89.4%
 - Gorbunovs 라트비아 대통령 정파정당인 Latvian Way 당이 36석(32.38%)을 확보하여 1당 지위 확보
 - 7.7. 임기 3년인 라트비아 의회는 G. Ulmanis 라트비아 대통령 선출
 - 7.20. 신정부 각료안 통과
- 10.26. 라트비아 의회는 신국적법 채택
- 10월 공산주의계 조직의 활동 금지

2. 대외 정책

- 1993.3.2. 프랑스와 우호협력조약 체결
- 3.22. 신사증 규정 제정
- 3월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라트비아에 2억 2천만 달러 지원 결정
- 1993.4.8. 라트비아 외무장관, 미·라트비아 외무장관회담 참석
- 4.16. 핀란드 의회, 라트비아·핀란드 간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및 발효
- 1993.4.17. 라트비아 총리, 발트 3국 총리회담(빌니우스 개최) 참석
- 1993.4.20.~21. 라트비아 외무장관, 독일 방문
 - 라트비아·독일 기본조약에 대한 공동성명, 본 주재 라트비아대사관 개관
 - 양국 간 투자증진협정, 문화협정, 경제지도자 교육에 관한 정부 간 협정 체결
- 4.28. 라트비아 주둔 러시아군 및 친척 등에게 1년간 임시체류 허용 법령 공포
- 5.21. 라트비아, 러시아와 주둔 러시아군 관련 3개 협정 체결
 - 러시아군 철수, 러시아 군시설 운영, 구소련군 및 가족의 출입국 등
- 9.13. 발트 3국 총리, 탈린에서 3국 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 1993.12.8. 라트비아 개최 러시아 철군협상 결렬

2241

대한민국 외교부

말레이시아 정세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40 / 12 / 1-298

1991~93년 중 말레이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91년

- 2.9.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 외무장관을 포함한 일부 개각 발표
 - 외무부, 재무부, 문교부장관 등 교체
 - 신임 외무장관에 대한 장관 명의 축전 발송
- 1991.2.28.~3.5. 마하티르 수상, 인도네시아 방문
- 1991.4.27. 일본 수상, 말레이시아 방문
- 1991.5.17.~19. 체코 수상, 말레이시아 방문

2. 1992년

- 1992.1.7.~14.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방문
- 1992.2.25.~28. 켈리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말레이시아 방문
 - 미 태평양 함대 소속 함정들의 말레이시아 루무트 군항 사용 원칙에 합의
- 1992.4.13. 말레이시아 상원은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Vadivloo 신임 상원의장 선출
- 1992.4.19.~24. 마하티르 수상, 베트남 방문
- 1992.8.23.~27. 말레이시아 외상, 방글라데시 방문
- 1992.10.7.~19. 말레이시아 외상, 중국 방문
- 1992.10.15.~21. 마하티르 수상, 일본 비공식 방문

3. 1993년

- 1993.1.27.~30.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 말레이시아 방문
- 1993.3.1.~3. 러시아 부통령, 말레이시아 방문
- 1993.6.13.~20. 마하티르 수상, 중국 방문
 - 양국 경험증진 및 동아시아경제협력회 구상 등 역내 외 문제에 대해 논의 예정
- 6.29.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러시아로부터 18대의 미그 29기 수입결정 발표
- 1993.8.19.~22. 마하티르 수상, 태국 방문

모로코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3-140 / 13 / 1-77

1993년 중 모로코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3.6.25. 모로코 총선 실시
 - 제4대 총선 이후 9년 만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 9.17. 총선(간접선거) 실시
 - 국회의원 정원의 1/3 선출 선거
- 10.18. 국회 개원
- 11.9. Hassan 2세 국왕, 람라니 현 모로코 수상 재임명 및 신내각 구성 지시

2. 대외 관계

- 1993.2.3.~6. 모하메드 모로코 왕세자, 프랑스 방문
- 1993.7.22.~23. 프랑스 수상, 모로코 방문
- 1993.9.21.~24. 모로코 국왕, 포르투갈 방문
- 1993.12.3.~4. 람라니 수상, 스페인 방문

224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말라위 정세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40 / 14 / 1-90



1990~93년 중 말라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0.1.31. 반다 말라위 대통령 내각 해체 발표
- 1992.1.8. 말라위 신내각 발표
- 1992.5.6.~7. 말라위 대통령 축출 시위 및 폭동 발생
- 1993.6.14. 말라위 다당제 선택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 유권자의 63%가 다당제 채택에 찬성
 - 국민의 민주화 의지와 서구의 원조 중단이 배경
- 11.2. 말라위 대통령위원회, 내무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및 정무차관 재임명
- 11.16.~18. 국회 헌법 개정 의결
 - 1971년 채택되어 1당 독재와 종신 대통령제를 유지해온 헌법을 폐기하고 개혁입법 의결

2. 대외 관계

- 1990.4.16.~22. 반다 대통령, 짐바브웨 방문
- 1990.8.26.~29.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 말라위 방문
- 1991.9.10.~11. 미국 부통령, 말라위 방문

멕시코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40 / 15 / 1-134

1993년 중 멕시코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클린턴 미국 대통령 당선자 간 회담(1993.1.8., 텍사스)

- 세부적 실무차원의 회담은 아니었으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및 주권 문제 등 주요 문제에 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주요 내용
 - NAFTA 관련, 클린턴 당선자의 지지 표명으로 재협상을 하지 않기로 함. 노동 및 환경 문제는 별도처리 예상
 - 마약거래범 납치사건(Machain case) 관련, 클린턴 당선자는 미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고 외국에서의 범인 납치행위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살리나스 대통령의 요청대로 타국의 주권 존중 의도를 확인함.
 - 클린턴 당선자는 취임 즉시 통상관계 인사를 임명하여 미국·멕시코 간의 통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미주 전체의 경제통합을 위한 미주연합(AMERICAN UNION, 북미3국·카리브·중남미) 추진 구상을 언급하면서 과거 케네디의 발전 동맹 및 루즈벨트의 선린정책에 입각한 중남미와의 유대 결속 의도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 멕시코 측 평가
 - 상호존중과 이익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기반조성, 클린턴의 NAFTA에 대한 지지 및 주권 존중 표명 등 큰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

2245

대한민국 외교부

2. 살리나스 대통령, 일본 방문(1993.12.19.~22.)

- 방일 경위
 - 1993.4월 국민 자격으로 공식 방일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사정으로 연기된바 있음. 이후 멕시코 측이 12월 중 제의한 방일에 대하여 일본 측이 국민 영접 준비 사정상 12월 중 접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시했으나, 멕시코 측은 의전에 구애받지 않고 방일을 희망해 비공식 방문 성격으로 방일함.
- 멕시코·일본 정상회담(1993.12.21.) 시 주요 논의사항
 - 양국관계
 - 호소가와 수상: 멕시코가 금년에 NAFTA 및 APEC(아태경제협력체)에 가입한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일본·멕시코 간 관계 강화를 희망함.
 - 살리나스 대통령: 멕시코로서는 북미지역만이 아닌 모든 국가와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APEC 가입을 위한 일본의 지지에 사의를 표함.



- 일본·멕시코 21세기위원회
 - 호소가와 수상이 동 위원회 제출 보고서의 제언 관련 회의를 내년도 개최할 것을 제안한바, 살리나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 중 도쿄 개최를 희망함.
- 일본계 은행의 멕시코 진출
 - 하타 외상: 일본은행들이 미국 내 자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멕시코에 자은행을 설립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협력 요청
 - 살리나스 대통령: 현재로서는 NAFTA 틀 내에서만 대응가능하여 일본은행의 직접 진출 허용이 곤란하지만, 차츰 멕시코 금융시장 개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
- 이중과세방지협약
 - 호소가와 수상이 내년 봄부터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협의를 제안한바, 살리나스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며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를 언급
- 일본 측 평가
 - 살리나스 대통령은 금번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주로 경제인과의 교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 멕시코 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기업인들의 멕시코 진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려고 노력한바, 특히 NAFTA 결성 및 APEC 가입으로 멕시코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음을 배경으로 금후 일본과의 경제교류를 보다 촉진시키려는데 방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일본은행가들과 회합을 가진 것과 관련, 내년도부터 멕시코 채권이 도쿄시장에서 판매되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은행의 협조를 위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방문이 비공식 방문인 것을 고려하여 정상회담에 소수(멕시코 측 9명, 일본 측 8명)만 참석한바, 정치적으로 양국 간 특별 현안도 없었고, 멕시코 측도 일본 정부 보다는 민간 경제인과의 교류에 보다 비중을 둔만큼 정상회담에서는 부담 없는 협의가 이루어짐.

나이지리아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40 / 16 / 1-179

1993년 중 나이지리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3.6.12. 대통령 선거
 -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 실시
 - 선거 결과 발표 지연으로 정국 불안 야기
- 6.23. Babangida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무효 및 선관위 기능 정지 발표
 - 아부자 고등법원, 친군부 민간단체의 선거 부정 제소에 의거하여 선거 결과 발표 중지 판시
 - 동 대통령, 국가안보위 성명을 통해 선거무효 및 선관위 기능 정지 발표
- 7.31. Babangida 대통령, 재선거 포기 및 임시정부 구성 발표
- 8.17. Babangida 대통령 사임 의사 표명
 - 국민 반발을 고려하여 대통령직과 군 총사령관직 사임 발표
- 8.27. 군부가 후견하는 임시 국민정부 출범
 -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여 정세 악화
- 11.17. Shonekan 임시 국민정부 수반 퇴진(군부 압력) 및 Abacha 과도정부 수반 취임
 - 아바차 나이지리아 국방상이 주도하는 군부가 정권 장악
- 11.23. Abacha 과도정부 수반, 최고통치기구 구성 및 각료 경질
 - 민간인 4명 및 군 장성 경찰 11명을 위원으로 한 임시 집권 평의회 구성

2. 대외 관계

- 1993.12.22. 아바차 수반, 남아공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발표
 - 나이지리아, 유엔 반아파르트헤이트위원회 의장직 수임 중

2247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네팔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40 / 17 / 1-42

1992~93년 중 네팔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1992년

- 코이랄라 네팔 총리, 중국 방문(1992.3.16.~22.)
 -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 티베트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 재확인
- 라오 인도 수상, 네팔 방문(1992.10.19.~21.)
 - 코이랄라 수상과 회담에서 아래 주요사항을 협의함.
 - 교역증진을 위한 조치(주로 네팔산 상품의 대인도 수출증진을 위한 조치)
 -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 확대
 - 합작 투자, 수자원개발협력 합의 등

2. 1993년

- 1993.6.13.~26. 코이랄라 총리, 유럽(독일(비공식), 핀란드, 오스트리아) 및 이스라엘 공식 방문
 - 독일(비공식 방문): 유럽 주재 공관회의 주재, 경제인과의 간담회
 - 핀란드(6.16.~18.)
 - Fsko Aho 수상과 회담
 - 상공회의소 연합 및 핀란드 중앙상공회의소 간에 '정보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 네팔 정부, Nardic Development Fund와 전신전화 개발사업을 위한 신용제공협정 서명 (총 7천만 달러 규모)
 - 오스트리아: 세계인권회의(1993.6.21., 비엔나)에 참석하여 인권, 민주주의 및 개발은 상호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에 관한 네팔의 기본입장을 밝히는 기조 연설을 행함.
 - 이스라엘(6.22.~25.): Rabin 수상과 회담
- 1993.11.22.~24. B. K. Zia 방글라데시 수상, 네팔 공식 방문
 - 국왕 알현, 코이랄라 수상과의 회담, 여성 및 가족 건강에 관한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각료회의에서의 연설 등
- 1993.11.25.~29. Li Ruihuan 중국 인민정치협의회 국가위원회 의장, 네팔 방문
 - B. B. Karki 상원의장 초청으로 53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공식 방문함.
 - 국왕 알현, 코이랄라 수상, Karki 상원의장 및 Dhungana 하원의장과의 면담 등

노르웨이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3-140 / 18 / 1-72

1993년 중 노르웨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3.9.13. 총선 실시, 집권당인 노동당이 총 165석 중 67석을 확보하여 1당 지위 유지
- 브룬트란트 노르웨이 총리가 계속 집권하며, EC(구주공동체) 가입 추진 강화 전망

2. 대외 관심사항

- 중동평화 중재, 발칸지역 평화정착, PKO(유엔평화유지활동) 강화,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강화, 중·동유럽 불확실성 해소
- EC 가입, 바렌츠협정

3. 대외 활동

- 1993.1.1. 체코 및 슬로바키아 분리 승인
- 1.7. 700명 규모 마케도니아 파견 PKO 참여 결정
- 발칸지역 PKO 파견 지지
- 2.23. 대남아공 경제재제 해제 결정
- 3.24. EC 집행위, 노르웨이의 EC 가입신청 승인
- Stoltenberg 노르웨이 외무장관, 유고슬라비아 분쟁 중재자 수락
- 이에 따라 Holst 국방장관이 외무장관으로 임명
- 9월 Holst 외무장관, 이스라엘 및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간 협상 중재
- 9.13.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 및 PLO 간 상호인정협정 서명
- 1993년부터 팔레스타인에 대해 5년간 총 1억 5천만 달러 지원 추진
- 1993.11.5. 팔레스타인 자치 국제지원 조정 제1차 AHLC 회의(파리) 개최
- Holst 노르웨이 외무장관 주재
- 1993.11.25.~26. 아라파트 PLO 의장, 노르웨이 방문

2249

대한민국 외교부

니카라과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41 / 1 / 1-202

1993년 중 니카라과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차모로 정권의 대외노선 및 정책 변화 가능성 여부

-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1993.1.25. 최근 차모로 대통령의 산디니스타와 제휴 강화조치 관련, 산디니스타의 사실상 권력 장악이라고 논평
- 주코스타리카대사(니카라과 겸임)는 1.21. 상기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990.4.25. 출범한 차모로 정권은 산디니스타 사회주의 이념추구 외교를 지양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관계 발전에 주력(소련, 쿠바 등 사회주의권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되 과거 밀월 관계로부터는 이탈)
 - 니카라과의 경제재건을 위해 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관계 발전 필요성, 최근 중남미 블록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차모로 집권기간 중 기존 대외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희박

2. 1993년 하반기 니카라과 주요 정세

- 차모로 대통령 주도로 추진되어온 범국민 대화는 각 당사자들 간 입장 차로 총체적 위기 상황 타개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주니카라과 미국대사가 대화 진행에 깊이 관여한 가운데 최근 재개됨.
- 지난 8월 열대돌풍 피해, 9월 대중교통 운수노조의 전국적인 폭력데모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됨.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외국인 투자환경은 좋지 못하나, 수출자유지역은 정부의 지원으로 호조세
- 삼성전자가 TDX 교환기 설치를 위해 현지 공사 중

니제르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41 / 2 / 1-94

1992~93년 중 니제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2.12.27. 신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 최초의 다당제하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신헌법안 확정
- 1993.2.27. 대통령 선거(제1차 투표)
- 3.27. 대통령 선거(제2차 투표)
 - 사회민주당 등 9개 야당연합 후보로 나선 Ousmane가 니제르 대통령에 당선
- 4.16. Ousmane 첫 민선 대통령 취임
 - 1960년 독립 이후 최초의 다당제하 선거에서 야권 후보 당선에 의한 민선 대통령 정부 출범
 - 1980년대 말 국민적 자각 및 역내 민주화와 개혁 여파 유입에 따른 정치 일정 추진 결과
- 4.16. Issoufou 수상 임명
 - 4.23. 신내각 구성 발표

2. 대외 관계

- 1992.6.22. 니제르·대만(구 중화민국) 간 외교관계 재수립
- 6.28. 대만과의 외교관계 재수립 취소 발표
 - 국내 정당과 국가 최고평의회가 강력한 반대가 원인
- 7.22. 대만과의 복교 최종 결정
- 7.30. 주니제르 중국대사, 니제르에 대한 단교 공식 표명

2251

대한민국-외국관계사-외교편

뉴질랜드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41 / 3 / 1-120

1993년 중 뉴질랜드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마오리계 Winston Peters 의원, 신당 창당
 - 뉴질랜드를 외국 자본 및 이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국수주의자
- 1993.7.20. 뉴질랜드 정부, 국영 철도회사를 매각
- 11.6. 총선 실시
 - 집권 국민당이 99석 중 50석을 획득, 재집권
 - 당초 원내 과반수에 실패하였으나 부재자 투표 결과 1석을 추가, 정부 구성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 확보

2. 대외 관계

- 1993.2.18.~3.7. Don McKinnon 뉴질랜드 외무장관, 해외(케냐, 소말리아, 지부티, 이란, 네덜란드, 덴마크, 크로아티아 및 유엔) 방문
 - 방문 목적: 뉴질랜드가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후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
- 1993.3.7.부터 2주간 Jim Bolger 뉴질랜드 수상, 유럽(영국, 아일랜드, 폴란드, 러시아) 방문
 - 방문 목적: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망과 EC(구주공동체) 통합 상황을 점검하고 상기 4개국 정상들과 만나 상호 경제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표명하고자 함.
- 1993.3.31.~4.1. 독일 외상, 뉴질랜드 방문
- 1993.5.1.~2. 미야자와 일본 수상, 뉴질랜드 방문
- 1993.5.14.~17. 뉴질랜드 수상, 중국 방문
- 1993.5.24.~26. 베트남 총리, 뉴질랜드 방문
- 1993.8.30.~9.3. 독일 대통령, 뉴질랜드 방문

오만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141 / 4 / 1-60

1993년 중 오만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3.6.28. 파리에서 오만·인도 간의 가스파이프라인 건설협정 서명
- 9.19. 오만·예멘 간의 항공협정 체결
- 12.27. 오만 최초 인구조사 실시 결과 발표

2. 대외 관계

- 1993.1.15.~16. 중국 외무장관, 오만 방문
- 1993.1.16. 요르단 국왕, 오만 방문
- 3.2. 오만·체코 간 외교관계 수립
- 1993.4.26. 오만·UAE 간 정상회담 개최
- 1993.6.14. 라오 인도 수상, 오만 방문
- 10.13. 오만·과테말라 간 외교관계 수립

2253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관계협력과

파키스탄 정세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서남아대양주과

MF번호 2023-141 / 5 / 1-36

1991~93년 중 파키스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파키스탄 정부, 심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과의 협력하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 중국과 300MW 규모 발전소(중수형 원자로) 건설을 추진 중이나 내자조달 문제로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1991.10.17. 하원의장 경선에서 Gilani 의원이 신임 하원의장으로 선출

2. 파키스탄 언론 대표단, 북한 방문(1991.7.6.~8.2.)

-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면담(8.2.)
 - 나와즈 샤리프 수상의 서남아 비핵지대화 제안: 김영남은 서남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샤리프 수상의 미국, 소련, 중국, 파키스탄, 인도 5개국 회의 개최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북한도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
 - 북한 핵 개발 문제
 - 대파키스탄 관계: 김영남은 파키스탄·북한 간 친선 관계에 만족을 표명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나와즈 정부의 자립정책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
- 평가 및 관찰
 - 동 회견 중 김영남이 샤리프 수상의 서남아 비핵지대화 제안을 전폭지지 발언한 것이 주목되는바, 동 제의를 인도 측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인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파키스탄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인지는 불확실함.
 - 그러나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7.30.자 제안과 샤리프 수상 제안의 형식적 유사성과 제의 배경(파키스탄·북한 양국 모두 핵 개발 관련하여 현재 미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이를 모면하기 위한 의도도 있음)에 비추어 북한 측이 파키스탄 입장 동조는 주목할만함.

파라과이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41 / 6 / 1-92

1993년 중 파라과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파라과이 군사쿠데타 움직임

- 1992.12월 집권당 정·부통령 후보지명 선거 결과, 현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지지하는 와스모시 후보가 탈락하고, 아르가냐 전 외상이 지명된 가운데 군사쿠데타 발생 가능성 대두
- 한국 정부의 대응방침
 - 1만 명 이상의 교민 상주지역으로서 파라과이에서 쿠데타 발생 시 교민 안전을 고려하여 미국과 같은 적극적인 의사 표명은 자제하되, 정상적인 헌정 복귀를 희망하는 선에서 입장 개진
 - 매년 제공하고 있는 무상원조(20만 달러) 및 현재 협의 중인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1천 5백만 달러) 공여 등 일시 중단

2. 파라과이 대선(1993.5.9.)

- 집권당인 홍당의 와스모시 후보가 41%를 득표하여 당선
 - 주지사, 상하의원 선거도 홍당이 압승
- 군정종식과 안정을 희구하는 민심이 집권당의 압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
- 한국 정부, 5.27. 김영삼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

2255

대한민국 외교부

필리핀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41 / 7 / 1-164

1993년 중 필리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3.1.18. 야당 소속 에드가르도 양가라 의원, 신임 상원의장 취임
- 4.5. 의회, 전력난 해소를 위한 대통령 비상 대권 승인
- 4.25. 라모스 대통령, 국립경찰에 대한 대규모 숙정 단행
- 5.7. 공산회교 반군과의 충돌로 60여 명 사망
- 5.19. 필리핀 집권당, 야당인 국민당 합당 발표
- 11.7. 필리핀 정부와 모로 민족해방전선 간 2주간 잠정 휴전협정 서명

2. 대외 관계

- 1993.1.27.~30. 라모스 대통령, 말레이시아 방문
 - 1964년 국교 수립 후 최초 국빈 방문
 - Sabah 영유권 평화적 해결
 - 경제교류 확대 및 양국 간 지역 영사관 추가 설치 합의
- 2.3. 필리핀 외무부, 주폴란드, 쿠바, 스리랑카 등 9개 대사관 및 미국 내 3개 영사관 폐쇄 결정 발표
- 1993.3.9.~13. 라모스 대통령, 일본 방문
 - 대필리핀 투자 증진 및 경제협력 방안 협의
- 1993.4.25.~30. 라모스 대통령, 중국 방문
- 6.15.~25. 필리핀·싱가포르 합동 군사훈련 실시
- 1993.9.20.~24. 라모스 대통령,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 1993.11.10.~23. 라모스 대통령, 미국 방문
 - 시카고, 뉴욕 등 8개 도시 방문
 -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참석
 - 양국 정상회담 개최

파나마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41 / 8 / 1-271

1992~93년 중 파나마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노리에가 재판 결과

- 미 연방법원은 1992.7.10. 마약거래 죄명으로 노리에가에 대해 40년형을 선고
 - 해당 재판장은 파나마 관련 정치 문제는 동 재판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시
 - 노리에가 측은 전쟁포로에 대해 미국은 재판관할권이 없으나 조만간 항소할 것임을 표명
- 한편, 파나마 정부는 미국 연방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5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노리에가의 해외도피 재산 환수를 추진한다는 입장

2. 부시 미국 대통령, 파나마 방문

- 1992.6.11. 파나마 시내 Porras 광장에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반정부 반미 시위로 무산됨.
 - 일각에서는 소규모 시위대에 대해 파나마 경찰이 성급하게 최루탄을 발사한 것은 경찰이 오히려 시위대에 동조하여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방해하려는 의도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
 - 부시 대통령의 여타 일정(정상회담, 대통령궁 오찬 등)은 예정대로 진행

3. 파나마 대테러조직 창설

- 파나마 일간지는 1992.10.6. 파나마 정부가 테러 진압을 구실로 반정부 인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안보기구로 FCT를 비밀리에 창설한 것으로 보도
 - FCT는 노리에가 집권 시 G-2 조직과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시설보호위원회의 지휘를 받으며, 경찰과는 다른 정보망을 갖고 있음.

4. 파나마 국민투표 실시(1992.11.15.)

- 군대 폐지, 의회기능 강화, 국민기본권 신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반대 67%로 부결됨.
 - 개헌을 추진해온 현 Endara 정권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확고한 지원에 힘입어 정권 붕괴에는 이르지 않을 전망

2257

대한민국 외교부

포르투갈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3-141 / 9 / 1-68

1992~93년 중 포르투갈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대외 정세

- 포르투갈, 최초로 EC(구주공동체) 의장국 수임(1992.1.1.~6.30.)
- Soares 포르투갈 대통령, 인도 방문(1992.1.25.~2.4.)
- 이붕 중국 총리, 포르투갈 방문(1992.2.2.~4.): Cavco Silva 수상과 회담 시 마카오 장래 문제 관련, 포르투갈·중국 양국 간 협정(1987년 공동선언) 기본원칙에 따라 마카오 기본법 제정에 의견 합치
- 포어 사용국(5+1, 앙골라,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카보베르데, 기니비사우 및 포르투갈) 외상 회담(1992.4.14.~15., 리스본): 5개 포어 사용국에 대한 사회경제개발 지원방안 협의
- Rutskoi 러시아 부통령, 포르투갈 방문(1992.7.25.~28.): Silva 수상 등 면담, 구주안보협력 등 협의
- Silva 포르투갈 수상, 이스라엘 방문(1992.10.25.~28.): Rabin 이스라엘 수상과 정상회담
- Amato 이탈리아 수상, 포르투갈 방문(1993.3.2.): Silva 수상과 모잠비크 평화협상 등 협의
-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 포르투갈 방문(1993.5.12.): Soares 대통령 등과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 협의
- 영의인 중국 부주석, 포르투갈 방문(1993.9.12.~16.): Silva 수상 등과 마카오 이양 문제 등 협의
- 아라파트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지도자, 포르투갈 방문(1993.11.10.~11.): 경제지원 요청

2. 국내 정세

- 포르투갈 재무장관, 1992년도 정부예산 발표(1992.1.20.)
 - 세입이 5조 2천억 에스쿠도로 전년 대비 25% 증가, 세출은 5조 7천억 에스쿠도로 전년 대비 22% 증가
- 포르투갈 정부는 2.20. EC 역내 국경을 개방하는 쟁건조약 발효에 대비, 불법 이민자 처리 및 비EC 국민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방침 발표
- 포르투갈 의회는 10.15. 개회,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필요한 현행 헌법의 국제관계, 외국인 투표권, 중앙은행 권한 등 조항의 개정 검토, 11.17. 헌법개정안 채택
- 1993.11.30. 포르투갈 의회, 1994년도 예산안 통과

페루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41 / 10 / 1-53

1993년 중 페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페루 쿠데타설

- 워싱턴발 AFP(1993.5.6.)
 - 미 국방부는 쿠데타를 기도한 것으로 알려진 페루의 로블레스 장군이 가족 6명과 함께 리마 주재 미국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고 발표
- 페루 대통령궁은 쿠데타 기도설을 부인하고 현 정부(후지모리 대통령)가 정상상태에 있다고 확인
- 주페루대사관은 동 쿠데타설이 반정부 인사에 의해 조작·유폐된 것으로 판단
 - 리마 시내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페루 육군사령부도 공식성명에서 쿠데타설을 부인

2. 페루 국민투표(1993.10.31.)

- 대통령의 연임 허용, 의회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 테러분자 사형, 국립대학 등록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 52%로 어렵게 가결됨.

3. 페루, APEC(아태경제협력체) 가입

- Goldenberg 페루 외무장관이 1993.11.18. 주페루대사를 긴급 면담한 자리에서 페루의 APEC 가입에 대한 지지 요청
 - 동일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멕시코, PNG의 가입이 의결되고, 칠레는 1994년 가입시키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설명
 - 페루의 APEC 가입 문제를 일본이 제기한 데 대해 회원국 간 입장 개진이 없었으나, 1994년 칠레와 함께 페루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

2259

대한민국 외교부

카타르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141 / 11 / 1-96



1993년 중 카타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카타르·베트남 간 수교

- 1993.2.8. 양국 수교 합의
 - 냉전 종식 이후 다변화하는 국제질서를 배경으로 왕정 국가인 카타르와 사회주의권 베트남의 외교 다변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
 - 특히, 카타르로서는 사우디 및 바레인과의 국경분쟁으로 인해 GCC(걸프협력회의) 중심 외교로부터 탈피와 천연가스 및 석유시장 확보 필요성이 크게 작용

2260

2. 카타르 수교 및 상주공관 설치 현황

- 수교
 - 북한(1993.1.11.), 베트남(2.8.), 조지아(구 그루지야)(3.17.), 우크라이나(4.13.)
- 카타르 주재 상주공관 설치
 - 루마니아(4.27.), 스페인(1993년 중)

3. Hamad Al-Thani 카타르 외상, 이란 방문

- Velayati 이란 외상 면담(1993.7.11.)
 - GCC 내 지역 안보 및 안정을 위해 걸프 국가들 간 상호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존중 강조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및 기타 아랍영토 점령지로부터 철수 촉구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대한 무기금수 해제 등 회교주민들의 자위권 행사 및 독립주권을 위한 유엔안보리조치 촉구
 - 카타르 내 양국 통상증진을 위한 무역지대 설치
 - 중동지역 안정을 위해 GCC·이란 간 협력관계의 중요성 강조
- Rafsanjani 이란 대통령 예방(11.21.)
 - 걸프지역에서 이란의 역할, 양국관계 증진방안, 유가안정을 위한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의 단결 등 강조

러시아 국내정세. 전6권 (V.1 1-3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141 / 12 / 1-223

1993.1~3월 중 러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민투표(1993.4.11. 예정) 실시 동향

- 국민투표 쟁점(국민투표 설문(안) 작성을 두고 대립)
 - 개혁파: 엄격한 권력분립에 기초한 대통령제 헌법 추진
 - 보수파: 의회 권한의 약화 방지 및 조기총선 실시 반대
-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의회 내 개혁파와 연대 모색, 지방정부 및 자치공화국의 지지 확보 노력
 - 보수파는 의회와 대통령 선거 동시실시를 주장하며 보수파 세력 규합에 노력
-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임도가 낮아 예상 투표율은 40%에 불과

2. 정세 불안의 원인

- 경제상황 악화
 - 옐친 대통령의 1992년 급진 경제개혁의 실패 결과 GDP 20% 감소 및 인플레이션 2,600%
- 권력분립규정이 모호한 구소련 헌법에 따라 정부와 의회 간의 정국 주도권 다툼 초래
- 구공산당 세력 및 군 일부가 대정부 비판에 가세, 2.23. 퇴역군인 등 2만 명 반정부 시위

3. 정치 상황

- 제8차 임시 인민대의원회, 국민투표 계획 취소 및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문 채택(1993.3.13.)
- 옐친 대통령, 국민 신임 및 신헌법 채택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4.25.)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헌법적 비상통치령 선포(3.20.)
 - 최고회의, 동 조치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3.21.)
 - 헌법재판소, 비상통치령 위헌 판결(3.23.)
- 옐친 대통령, 헌법안, 의회선거법안 및 대통령 신임투표 실시 발표(3.24.)
- 최고회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거, 옐친 대통령 탄핵결의를 위한 인민대의원 회의 소집
- 제9차 인민대의원 회의(1993.3.26.~29.) 개최
 - 옐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불채택, 옐친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이 확보됨.
 - 헌법 수호를 위한 결의안 및 옐친 대통령 신임 및 조기선거 실시에 관한 국민투표 결의안 통과

226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러시아 국내정세. 전6권 (V.2 4-8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141 / 13 / 1-266

1993.4~8월 중 러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민투표(1993.4.25. 실시) 관련 동향

- 국민투표 내용(4가지 설문)
 - 열친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신임 및 사회경제개혁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
 -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조기실시 여부
- 국민투표 결과
 - 투표율 약 65%로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 및 관심 표출, 열친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
- 국민투표 이후 헌법채택 동향
 - 정부 및 의회는 각각 독자적인 헌법안을 제시, 지방정부 및 자치공화국의 지지 확보 경쟁

2. 제헌헌법 제정

- 열친 대통령, 제헌회의 소집 대통령이 제시한 헌법안 토의 요구(1993.6.5.)
- 제헌회의 전체회의,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안 확정(7.12.)
 - 연방제, 대통령의 국민투표 실시, 하원 해산, 비상사태 및 전쟁상태 선포 등 권한 보유
- 열친 대통령, 9월 중 헌법 강행 검토(8.10.)

3. 기타 정세

- 러시아, 일본 북방도서에 주둔한 전투기 철수(1993.6월 상순)
- 스베르들롭스크주, 블로그다주, 연해주 등 3개주, 공화국으로 일방적 승격 선포(7월)
- 러시아최고회의, 대정부 공세 강화(7월)
 - 개혁파 인사 퇴진요구, 정부 외교정책 반대, 민영화 촉진 포고령 중단 의결 등
- 러시아연방 내 20개 공화국 수뇌회의(1993.8.13.) 개최
 - 연방회의 구성과 9월 제헌회의. 의회 헌법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합의

러시아 국내정세. 전6권 (V.3 9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141 / 14 / 1-195

1993.9월 중 러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반옐친 세력 간의 대립 격화

- 반옐친 루츠코이 부통령과 친옐친 슈메이코 부수상에 대한 직무 정지(1993.9.1.)
 - 양인이 부정부패 혐의로 상호비난을 가함으로서 조사기간 동안 직무를 일시 정지
- 옐친 대통령, 상원격의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 창설 추진(9월)
- 88개 지역대표자 회의(1993.9.18.) 개최
 - 연방회의 설립 문제, 대통령 조기선거 실시 등 논의

2. 의회 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

- 옐친 대통령, 의회 권한 정지 및 조기총선(1993.12.11.~12.) 실시 발표(9.21.)
 - 최고회의는 이 조치가 위헌임을 선언하고, 루츠코이 부통령을 대통령 서리에 임명
 - 헌법재판소도 옐친 대통령의 조치를 무효로 선언
 - 러시아군은 중립을 표명하고 있으나, 국방부, 보안부, 내무부장관은 옐친 지지
 - 미국, 영국 등 주요 서방국은 옐친 대통령 조치를 지지
 - 한국은 '개혁추진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조치'로 지지한다는 성명 발표
 - 헌법재판소장과 일부 지방의회는 총선 및 대선 동시실시를 타협안으로 제시
- 옐친 대통령, 대통령 조기선거(1994.6.12.) 실시 발표(9.24.)
 - 지방정부는 옐친을 지지하는 반면, 지방의회 상당수가 최고회의를 지지
 - 모스크바 시민 1만 5천 명 옐친 대통령 지지 시위
 -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해산 및 총선 실시는 기정사실화되어 감.
 - 의회 인사들의 이탈 및 옐친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 확대에 따라 사태가 마무리단계에 진입

2263

대한민국 의회도서관

러시아 국내정세. 전6권 (V.4 10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141 / 15 / 1-237

1993.10월 중 러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반옐친 의회파의 의회 농성 및 시위

- 최고회의 강경파 의원 100여 명, 의회 점거 및 경찰의 의회 봉쇄(1993.9월 하순)
 - 의회 측, 500명의 자원수비대에 무기지급
- 옐친 대통령, 10.4.까지 무장해제 및 해산 명령(9월 말)
- 국회의사당 앞 대규모 반옐친 시위로 유혈사태 발생(10.3.), 국가 비상사태 선포(10.3.~10.)
- 옐친 대통령, 대국민 담화(10.3.) 및 진압 작전 개시(10.4.)
 - 루츠코이 부통령 등 보수파 지도자 체포,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 49명, 부상자 다수 발생

2. 무력진압 이후 동향

- 옐친 대통령 조치
 - 향후 정치일정(1993.12월 의회선거, 익년 6월 대선) 예정대로 실시 천명
 - 보수세력 정리, 주요 경제조치 시행, 민심 수습책 발표 등
- 대외 관련사항
 -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일관되게 옐친 대통령 지지 입장 표명
 -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의약품 제공
 - 한국 대통령 명의 격려 메시지 전달
- 기타 동향
 - 신헌법 채택 시까지 헌법재판소 기능 정지(1993.10.7.)
 - 국가 비상사태를 10.18.까지 연장 및 지방의회 해산(10.9.)
 - 중앙선거위원회, 상·하 의원 선거(1993.12.11.~12.) 실시계획 발표(10.11.)
 - 국가비상사태 해제(10.18.)
 - 총선 대비 정당 창당
 - 농지 사유화 실시 및 토지매매 규제 철폐 등

러시아 국내정세. 전6권 (V.5 11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141 / 16 / 1-195

1993.11월 중 러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러시아 총선 동향

- 1993.12.12. 연방의회(상, 하원) 선거, 지방의회 선거 및 신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동시 실시
 - 상원(178명): 연방구성공화국 및 지방 등 총 89개 지역에서 각 2명씩 선출
 - 하원(450명): 225명을 소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 225명은 비례대표제로 선출
- 러시아 총선 후보 등록(11.9.)
 - 친엘친 정당(4): 러시아의 선택, 야블린스키연합, 러시아 단결과 화합, 민주개혁운동
 - 중도 정당(6): 여성당, 시민동맹, 민주당 등
 - 반엘친 정당(3): 공산당, 자유민주당, 농민당
- 러시아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11.29.)
 - 러시아의 선택(22%), 야블린스키연합(9%), 러시아 단결과 화합(6%), 공산당(5%), 민주당(5%), 시민동맹(3%), 자유민주당(2%)

2. 기타 동향

- 신헌법안 국민투표를 총선(1993.12.12.)과 동시 실시 발표(1993.11.3.)
 - 제헌회의 확정안(7.12.)보다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 지방정부의 권한 축소
 - 연방의회는 상원인 연방회의와 하원인 국가두마로 구성
 - 러시아를 민주연방 법치국가로 규정, 인권 및 자유를 최고 가치로 설정
 - 사유재산제, 토지사유화, 다당제 인정
- 신군사독트린 발표(11.2.)
 - 냉전종식으로 특정국을 가상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러시아의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나라는 파트너로 간주
 - 군사력 사용을 방어적 목적으로 한정
- 우크라이나 의회, START- I 조건부 비준(11.18.)

2265

대한민국 의회도서관

러시아 국내정세. 전6권 (V.6 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141 / 17 / 1-225

1993.12월 중 러시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러시아 총선(1993.12.12.) 결과

- 하원선거
 - 친엘친계 '러시아의 선택'이 96석(전국구 40석, 지역구 56석)을 확보하여 하원 제1당 확정
 - 제2당인 '자유민주당' 70석(전국구 59석, 지역구 11석) 확보
 - 정당별 하원의석 분포: 개혁파(164석), 보수파(112석), 중도파(68석), 극우파(70석), 무소속(30석)
- 상원선거: 무소속이 140명으로 80% 이상, 나머지는 개혁파 정당 및 구공산당 계열 정당
 - 행정기관장(50%), 경제계(10%), 예술계(8%), 언론계(4%) 등
- 국민투표
 - 투표율 54.8%, 찬성 58.4%, 반대 41.6%로 신헌법이 1993.12.24.자로 발효됨.

2. 평가 및 전망

- 신헌법 채택은 열친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 표시
 - 개혁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개혁정책 계속 추진 전망
- 극우 민족주의 정당의 급부상은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만 표출
 - 구공산 계열 정당이 예상 밖의 다득표를 한 것은 기존조직 기반이 큰 역할을 수행
- 개혁파 정당이 부진한 것은 열친 대통령 측근 간의 알력 및 안이한 대처 결과
- 하원에서 개혁파의 과반수 확보 실패에도 불구하고, 보수·혁신파 간의 극한 대립 가능성은 낮음.
- 대외정책면에서 친서방 외교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실리외교 추구 전망

러시아 대외관계. 전2권 (V.1 1-6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142 / 1 / 1-242

1993.1~6월 중 러시아의 대외관계 동향임.

1. 러시아의 동·서 균형외교

- 옐친 대통령은 한국(1992.11월), 중국(1992.12월) 방문에 이어 인도(1993.1.27.~29.)를 방문하는 등 아시아지역 국가 순방을 통해 대아시아 외교노력을 증대시키면서 동·서 균형외교 정책을 표방

2. 동·서 균형외교 정책 배경 및 최근 동향

- 러시아는 친서방 정책에 주력, 1993.1월 미국과 START II에 합의하고, 1992.4월 서방국가로부터 240억 달러의 원조공약을 얻어내는 등 외교적 성과를 거둠.
- 그러나 러시아 내 민족주의, 보수주의 세력은 서방국가의 원조 이행 부진과 러시아 국내정세 악화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빌미로 러시아 정부의 친서방 외교노선을 비난
- 또한 소련 해체 이후 CIS(독립국가연합) 각국에 거주하게 된 2천 4백만 명의 러시아 사용 인구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CIS 기능 활성화 및 CIS 국가와의 협력관계 정립이 주요 외교과제로 대두됨.
- 최근 중국, 인도와의 유대강화가 아시아지역 내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인도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의사를 표명함.

3. 동·서 균형외교 정책 평가

- 러시아는 최근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 공격, 세르비아에 대한 제재정책에 유보적 입장 표명 등 서방의 국제문제 처리에 비판적 태도
- 러시아 국내의 친서방 비판 여론 무마의 방편이기도 함.
- 러시아 개혁 정책에 대한 지원은 G-7 등 경제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 외교의 관심은 아직 서방 측에 편중된 경향을 보임.
- 중국, 인도, 아세안 등과의 관계 강화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 인도, 중국과의 3각 외교체제를 통해 대외적으로 러시아 외교를 과시하고, 대서방 외교입지 회복을 추진

4. 코지레프 외무장관, 1993.1.26. 의회 외교분과위원회에서 러시아의 대외정책 관련 연설 주요 내용

- 군축 START II 협정 비준 환영, 군축보다는 핵의 비확산 특히 구조련 3개국 비핵화 중요
- 크로아티아 도발행위는 유엔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받아야 하며, 이라크 사태 관련 미국 등 일방조치 거부
- 대미국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는 것은 아니며 긴밀히 협력 예정
-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과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이념을 청산하고 실용주의적 접근 중시
- 일본이 쿠릴 문제 등을 고압적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는다면 현안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며, EC(구 주공동체)와도 협력협정을 체결할 예정
- CIS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CIS 헌장체제 내에서 국가 간 관계를 설정하게 됨.
- 구조련 내 러시아인 인권 보호를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국제기구에 주의 촉구 예정

2267

대한민국 외교부

러시아 대외관계. 전2권 (V.2 7-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142 / 2 / 1-140

2268

1993.7~12월 중 러시아의 대외관계 동향임.

1. 러시아·독일 정상회담(1993.7.10.~11., 러시아 바이칼호)

-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콜 독일 수상은 G-7 정상회담 참석 후 귀로에 정상회담을 가짐.
- 주요 의제
 - 독일 주둔 러시아군 철수 문제
 - 대러시아 지원문제
 - 러시아의 대EC(구주공동체) 통상협력 관계
 - 발틱 거주 러시아계 소수민 문제
- 옐친 대통령은 회담 후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양국관계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며, 독일 주둔 러시아 군대의 철수 문제는 당초 양국 간 합의한 대로(1994.8월 말까지 철수 완료) 진행될 것임을 상호 확인함.
 - 발트 3국 주둔 러시아 군대 철수 문제는 동 지역 거주 러시아인들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콜 수상이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독일 언론 평가
 - 지난 7개월 동안 3번째의 정상회담으로, 이는 독일의 옐친 개혁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도함.

2. 러시아 외무부, 1993.8.22. 리투아니아 철군 중단 발표

- 리투아니아는 8월 말로 예정된 러시아군의 완전철수 문제 교섭 과정에서 지난 50년간 러시아의 리투아니아 병합으로 발생한 보상 문제가 철군협정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단호히 거절하는 입장 표명

3. 라트비아·러시아 철군협상(1993.12.8., 라트비아)

- 러시아군 철군 문제 관련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 철군협상이 결렬됨.
 - 러시아 측은 라트비아 주르말라지역에 설치된 러시아 레이더기지의 잔류유지를 희망하면서, 라트비아 측이 레이더기지 잔류를 반대하지 않으면 러시아 측은 1994.8월까지 라트비아 주둔 러시아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라트비아 측은 자국 내 러시아 레이더기지 철수를 강력히 주장한바, 러시아 측은 레이더기지 잔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철군 문제는 지연될 것이라고 언급함.

러시아·미국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142 / 3 / 1-144

1993년 중 러시아·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러시아·미국 주요인사 간 방문 또는 회담

- 러시아·미국 외무장관회담(1993.2.25.)
 - 양국 국내정세 설명, 양자관계, 유고 및 중동사태, 군축·핵비확산, 러시아의 G-7회담 참가 문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및 EC(구주공동체)와의 관계, 유엔을 통한 평화안전 유지 등
 - 미국 신행정부는 대러시아 정책에 있어 옐친 대통령의 개혁 및 민주화를 지지
- 러시아·미국 정상회담(1993.4.3.~4.)
 - 러시아 국내적으로 옐친 대통령의 국내적 입지를 강화하고 대러시아 경제 지원 협의가 주요 의제
 - 옐친 대통령의 개혁이 실패하고 러시아 경제파탄 시 핵 대결의 가능성이 재연될 가능성
 - 미국 국민들은 대러시아 지원에 못마땅해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대러시아 지원을 미래 투자로 인식
 - 미국은 무상원조 6억 9천만 달러, 차관 9억 3천만 달러
 - 국제 문제 해결에 러시아 참여 필요성 공동 인식
 - 전략무기 감축 협력강화
 -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유지(북한 NPT 탈퇴 재고 촉구)
 - 러시아에 대한 무역·투자 제재조치 재검토
- 러시아·미국 국방장관회담(1993.9.8.)
 - 핫라인설치, 평화유지 작전 대비 합동훈련 등

2. 러시아·미국 대외정책 발표 및 조치

- 1993.1.14. 주러시아대사관은 1.13. 주러시아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접촉하여 START 협정 이행, CWC(화학무기금지협약) 등 관련 의견을 교환한바, 동인의 주요 언급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START 협정 이행: 러시아 최고회의는 START II 협정 비준 전에 우크라이나가 약속한 전략 핵무기의 대러시아 이관 선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측은 반대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보유 핵무기 폐기 및 전략 핵무기 이관을 위해 15억 달러의 원조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1억 7천 5백만 달러만 지원 의사 표명함.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START I도 비준하지 않음.
 - CWC: 러시아는 러시아 보유 화학무기(약 4만 톤 추정)를 폐기할 경비조달에 어려움 예상
 - 북한 관련사항: 북한은 핵무기나 핵 운반수단 개발을 위해 러시아의 과학·기술자 초청 시도 가능성이 농후함. 러시아 측은 핵 관련 기술자의 해외여행을 통제하고 있으나 사회기강의 해이로 밀출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269

대한민국 외교부



- 4.23. 주한 미국대사관은 백악관이 미·러 안보협력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래 주요 내용을 전달해옴.
 - 미국은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 추구
 - 전략 핵무기 조기 감축 및 핵실험 금지 협상 조기 실시
 - 미·러 군사협력 강화
 - 대러시아 경제 제한조치 조속 철폐

루마니아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142 / 4 / 1-108

1993년 중 루마니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주요 관심사항

- 정치 및 경제
 - 정치 안정,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 부정부패 수사, 공산주의자와의 협력 중단
 - 경제 활성화, 인플레이 억제, 조세부담 완화, 보조금 폐지, 임금인상, 노조 파업 진정
- 외교 및 국방
 - EC(구주공동체) 및 역내 경제협력, 에너지 확보, 투자유치, EC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발칸지역 평화 정착

2. 국내 정세

- 1993년 중 루마니아 의회는 야당이 두 차례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 부결
- 지역별 분야별 노조 파업이 지속 및 확산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정세 불안
 - 임금인상 등이 주요 요구사항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효과 미흡
- 루마니아 의회는 경제구조 개선, 부패 방지, 정치발전을 위한 다수법안을 통과
- 루마니아 정부는 다양한 불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개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무기력 노정

3. 대외 활동

- 루마니아 대통령 및 외무장관 등은 인근 국가, 구공산권, 서유럽, 중동, 중남미, 일본 등 지역 순방, 국제기구 방문,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서 역내 정세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교 전개
- 유럽 인사들이 다수인 가운데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및 국제기구 인사들이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다양한 정세안정 및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
- 소비재 박람회 개최 등 국제행사 유치도 일부 시도

2271

대한민국 의회관리처

르완다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42 / 5 / 1-36

1993년 중 르완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르완다 평화정착 노력

- 르완다 평화협정(아루샤협정) 체결
 - 1993.8.4.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르완다 정부대표와 반군 FPR(르완다애국전선) 간에 서명
 - 협정에는 종전, 과도정부의 설치 및 과도정부 내 권력배분, 군대통합, 피난민 본국귀환 및 재정착 등 내용 포함
 - 협정 서명식에 탄자니아 대통령, 우간다 대통령, 부룬디 대통령,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 등이 입회
- 르완다의 유엔 MINUAR(르완다지원단) 활동
 - 1993.11.1 유엔 MINUAR 발대식, 과도정부 지원활동 임무 개시

2. 첨부 자료

- 르완다 평화협정문 사본(영문, 불문)

스웨덴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3-142 / 6 / 1-106

1993년 중 스웨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3.3.17. 스웨덴 의회, 칼 빌트 스웨덴 수상이 제출한 대정부 신임안 가결
 - 예산안 통과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조기 총선을 전제로 대정부 신임안을 스웨덴 의회에 제출

2. 대외 관계

- 1993.1.26.~27. 북구 5개국 외상회의 개최
- 1993.2.4.~7. Carl Bildt 스웨덴 수상, 러시아 방문
- 1993.4.23. 스웨덴 수상, 그리스 방문
 - 유럽 정치인 기업인 100인 회의 참석
- 1993.4.27.~29. Carl Gustaf 스웨덴 국왕 부처, 독일 방문
- 1993.9.3.~4. 콜 독일 수상, 스웨덴 방문
- 9.13. 대남아공 무역제재조치 해제 발표
- 10.5. 스웨덴 정부, 중국 핵실험 비난 성명 발표
- 1993.11.28. 스웨덴 수상, 러시아 방문
 - 러시아 의회 선거 준비과정 참관
- 12.1. 스웨덴·남아공 간 국교수립 합의

2273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싱가포르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42 / 7 / 1-129

1993년 중 싱가포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정세

- 1993.8.28. 대통령 선거 실시
 - 독립 이래 처음으로 직선 대통령 선거 실시
 - 웅 텅 청 전 부수상이 당선
 - 9.1. 취임

2. 대외 관계

- 1993.2.11.~13.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 싱가포르 공식 방문
 - 양자위원회(Bilateral Commission)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동 기구를 통해 통상, 투자, 국방, 노동,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양국 간 합동군사훈련 실시 합의
 - 경제 관련 협정 체결: 필리핀 수빅만 내 냉동 및 식품가공공장 합작 설립 등 수빅만 활용을 위한 협정 체결, 통신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재싱가포르 필리핀 근로자(약 5만 5천 명)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장치 수립 합의
- 2.4.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군사협력위원회 설치 합의
- 1993.2.22.~23. 콜 독일 수상, 싱가포르 방문
- 1993.4.7.~10. 싱가포르 외무장관, 일본 방문
- 1993.4.19.~28. 고촉동 수상, 중국 방문
- 5.7.~21. 싱가포르 등 태평양 6개국 합동 군사훈련 실시
- 1993.5.10.~11. 고촉동 수상, 일본 방문
- 1993.11.6.~8. 고촉동 수상, 인도네시아 방문
 - 고촉동 수상은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APEC(아태 경제협력체)이 아세안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바, 인도네시아 언론은 고촉동 수상의 발언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도함.
 - 아시아가 APEC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남미와 북미지역에서 무역 파트너를 찾고자 할 것이며, 그럴 경우 아세안은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고촉동 수상과 수하르토 대통령은 APEC이 모든 회원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에 자유무역과 경험을 촉진시킬 포럼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

세네갈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42 / 8 / 1-61

1993년 중 세네갈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3.2.21. 대통령 선거
- 3.13. 세네갈 헌법위원회, Abdou Diouf 현 세네갈 대통령 당선 확정 발표
- 4.18. 카스망스지역 교전 발발
- 5.9. 총선
 - 집권당인 사회당, 안정적인 다수당 위치 고수
- 6.2. 세네갈 대통령, 신정부 각료 명단 발표
- 7.8. 세네갈 정부와 MFDC(카스망스 분리운동세력) 간 휴전협정 체결

2. 대외 관계

- 1993.1.13. 세네갈 정부, 라이베리아 파견군 철수 발표

2275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관계협력과

소말리아 사태. 전3권 (V.1 소말리아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142 / 9 / 1-233

1993년 중 소말리아 사태의 주요 동향임.

1. 소말리아 관계 회의(1993.1.4.~5.)

- 참가자: 갈리 유엔사무총장, Meles 에티오피아 대통령, Salim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 14개 정파 지도자 등
- 14개 정파 지도자들은 아래 협정서에 서명
 - 각 정파 상호 간 적대적 선전활동 중지 및 민족화합 및 평화 분위기 조성
 - 모든 정파 간 민족화합회의의 준비를 위한 추가 장치 확립
 - 모든 국제원조기구와의 협력증진 도모
 - 소말리아인들의 자국 내 자유이전 촉진 등

2. 소말리아 민족화합회의(1993.3.15.~27., 아디스아바바)

- 참가자: 300여 명의 소말리아 각계 지도자
- Meles 대통령, Salim OAU 사무총장, Yakereca 사무총장, Kouyate 소말리아 문제 담당 유엔 부대표 등은 개막식 연설에서 소말리아의 평화, 치안확보 및 복구를 위한 소말리아인 스스로의 노력과 참여를 강조
- 합의서 채택
 - 1993.1월 합의한 무장해제 및 휴전합의의 재확인 및 완전 이행
 - 과도관리체제 수립
- 상기 합의에 의하여 소말리아의 평화 및 안전, 복구재건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무장해제 이행, 휴전준수 및 남북 소말리아 간 관계에 각 정파 간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이들 문제의 해결이 소말리아 장래의 주요 변수가 될 것임.

3. 소말리아 사태 동향

- 소말리아 최대군벌 아이디드의 USC(연합소말리아회의)는 UNOSOM(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 유엔평화유지군(파키스탄, 미군, 이탈리아 등 합동) 및 미군 주축 다국적군(23개국 3만 7천 명)과 무장대치 지속
 - UNOSOM은 1993.5.4.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1995.4월까지 소말리아 국가 재건이 목표

4. 소말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 1993.11.29.~12.1. 유엔 주관하에 아디스아바바에서 소말리아 지원 국제회의 개최
- 1993.12.2.부터 에티오피아 대통령 주선하에 소말리아 정파 간 정치대화

소말리아 사태. 전3권 (V.2 안보리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142 / 10 / 1-144

1993년 중 소말리아 사태 관련 유엔안보리 주요 동향임.

1. 소말리아 사태 관련 유엔사무총장 보고서(1993.3.4.)

- UNOSOM(유엔소말리아활동) 사령부 강화, UNITAF(유엔다국적군)로부터 UNOSOM II (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로의 업무 이관에 관한 권고사항 등

2. 소말리아 15개 정파 간 합의한 “Addis Ababa Agreement” 주요 내용(1993.3.27.)

- 90일 내 무장해제 완료 및 이를 위한 UNITAF/UNOSOM의 지원 요청
- 소말리아에로의 무기반입 금지 이행 철저
- 소말리아 경찰군 재건 합의
- 잠정기간(2년) 동안 Transitional National Council 등 4개 행정기구 설치, 운영

3. 아디스아바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이디드파는 수도 모가디슈 남부에서 유엔군에 대한 적대 행위 지속

- 1993.6~8월에도 유엔군의 무기수색 거부, 미군·파키스탄군 등 공격행위 발생
- 유엔군의 아이디드 체포 작전과 아이디드파의 게릴라식 저항 지속
- 1993.9월 부족 간, 군벌 간 무력충돌 사건 발생

4. 1993.10.14. 카이로에서 개최된 유엔사무총장, 이집트 대통령,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 아랍연맹 사무총장, 이슬람회의 기구 사무총장 간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 내용

- 소말리아 지도자들에 대한 평화, 화해 및 재건 촉구
- 소말리아 장래에 관한 해결책을 찾는 데 광범위한 접근 추구
- 소말리아에서의 유엔의 업적 인정, UNOSOM II에 인원을 제공한 국가에 감사
- OAU, LAS, OIC(이슬람협력기구) 회원국에게 UNOSOM II 임무수행 지원 호소 등

2277

대한민국 외교부

소말리아 사태. 전3권 (V.3 보고 및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 국제연합1과

MF번호 2023-142 / 11 / 1-155

1993년 중 소말리아 사태 관련 자료 내용임.

1. 소말리아에서 반미 데모 및 난동 사건 발생(1993.2.26.)

- 사건 경위
 - 1993.2.22.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요에서 Hersi Morgan 장군이 동지역 군벌인 Omar Jess 대령을 공격, 키스마요시 일부를 점령(동 사건으로 7명 사망, 21명 부상)
 - 상기 사건 관련 아이디드 장군은 2.22.자 라디오 방송을 통해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이 Morgan 장군의 키스마요시 점령을 허용했다고 격렬히 비난
 - 상기 방송을 청취한 젊은 군중들은 2.23. 밤부터 2.24.까지 반미 데모
- 사건 분석
 - 1992.12월 다국적군의 소말리아 개입 이래 미국은 소말리아의 무장세력 권한을 약화시키고 보다 온건한 지식인들을 내세우려고 노력하였음.
 - 키스마요시에서의 반군 간 5시간 가량의 전투를 다국적군이 방치한바, 이 기회를 포착한 아이디드 장군은 방송을 통해 군중을 동원, 반미 데모를 하는 실력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이 민간 주도의 통치 분야에서도 실력자임을 은연중에 과시
- 사건 결과
 - 다국적군은 키스마요시 일부를 장악한 Morgan 장군 휘하 병력을 2.25.까지 철수하도록 명령
 - 수도 모가디슈의 데모, 약탈 사건에서 9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미 국무부는 부인
 - 1992.3월 예정된 다국적군의 UNOSOM II(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로의 임무 이양 및 1만 7천 여 명의 미군 철수계획에 차질 우려

2. 소말리아 교전사태 발생 및 향후 전망(1993.6.7.)

- 전란 재개 상황
 - 1993.6.5. 유엔평화유지군이 아이디드 장군파 군벌이 장악 중인 수도 모가디슈의 방송국과 무기 저장소 2곳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에 도착하자 매복 중이었던 아이디드파 병력이 공격을 개시, 교전상황 발생
 - 이로 인해 유엔평화유지군의 파키스탄 병사 22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소말리아인도 2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태 발생
- 유엔 조치
 - 6.6. 유엔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 소말리아에 파견된 유엔 관리들을 소개시키고 무장 군벌세력에 대한 제재 결의안 채택
 - 소말리아 유엔대변인은 6.6. 하오 유엔 민간요원 250여 명을 케냐로 소개시킬 예정이라고 발표



- 전망 및 대책

- 소말리아에서는 평화유지활동 작전권이 5.4.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에서 유엔으로 이관된 뒤 유엔평화유지군과 소말리아 무장세력 간의 긴장 상태가 지속
- 6월 중 소말리아에 파견 예정인 한국 공병대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자위능력을 제고하도록 조치

3. 미국의 대소말리아 정책

- 희망회복작전

- UNOSOM II에 대한 미국의 지원

- 안전 문제

- 소말리아 통치권 회복에 있어 두 가지 장애요인은 소말리아인 특히 민병대와 도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량의 무기와 사법제도 및 경찰의 부재
- UNITAF는 소말리아 경찰을 조직하는 데 협조
- 미국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타국과 유엔에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요청

- 통치권 문제

- 2년간의 내전은 소말리아 정부와 국가기관을 모두 파괴
- 미국은 1993.3월 아디스아바바 합의사항의 범주 내에서 모든 국가가 소말리아의 민주화 과정을 지지할 것을 희망

- 경제적·인도적 지원

- 완벽한 국제협력

- 희망회복작전과 그 후속작전인 희망유치작전은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완벽한 인도적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

2279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
지원

수단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3-142 / 12 / 1-164



1992~93년 중 수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제2차 수단 평화회담(1993.4.26.~5.3.) 개최

- 개최 경위
 - 제1차 수단 평화회담이 사실상 결렬되어 내전이 지속되던 중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주선으로 성사
 - 수단 정부대표와 반군대표 간에 1993.2.22.~23. 제2차 Abuja 평화회담 개최 합의
 - 1993.3월 예비회담에서 제1차 Abuja 회담(1992.5월) 합의사항 준수, 제2차 회담 무조건 참가 합의
- 성과
 - 휴전을 잠정기간 지속 합의 및 휴전이행 및 증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합의
 - 이슬람법 시행 문제에 관해서는 미합의, 연방제 및 임시적 휴전 등 과도조치에만 합의

2. 수단의 테러지원국 지정

- 미국 정부는 수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1993.8.18.)
 - 인도적 구호를 제외한 미국의 대수단 대외원조 중단 및 무기 수출통제 등 실시
- 테러지원국 지정 배경
 - 미국은 수단 정부의 명백한 승인하에 Abu Nidal, Hezbollah 등 테러리스트에게 은신처 및 편의 제공이 허용된다고 봄.
 - 이란을 중심으로 한 회교 근본주의자들의 위성국화 및 그들의 반미 입장
- 수단의 반응
 - 바시르 수단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결정은 근거 없다고 반박
 - 수단 외무성은 수단의 이슬람화 정책에 대한 미국의 반감이 동 결정의 유일한 이유라고 비난하고 팔레스타인 문제 등에 있어 미국의 이중기준정책을 비난

3. 수단남부 문제

- 수단남부는 전 인구의 약 25%이며 종교는 기독교와 원시종교, 인종은 흑인으로 수단북부의 아랍, 회교권과는 이질적임.
- 수단 문제의 본질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의 강력한 중앙 정부와 비이슬람적인 남부 반군 간의 갈등임.

수리남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42 / 13 / 1-23

1993년 중 수리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수리남 정세(1993.3월)

- 수리남 군사혁명 기념일(2.25.)의 공휴일 폐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NDP는 금품을 살포하여 3천여 명의 군중을 동원, 기념행사 및 시가행진 거행
 - 수리남 국방부는 Granoogst 군 총사령관 직무대리 등 다수의 군 간부들이 동 집회에 참석, 헌화 및 군악대를 동원한 것을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하고, 4주 내 군 총사령관 임명 및 Granoogst 직무대리 전역 조치 등 계획
- 최대 원조국가인 네덜란드, 미국 등의 수리남 현 정권에 대한 확고한 지지, 군 동요 시 원조중단 등 경제파탄 우려로 군이 무력을 행사하여 정권을 탈취할 개연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
 - 다만, 군 고위간부 대다수가 야당 NDP 총재인 Bouterse 추종자들로서 누가 차기 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든 군의 NDP 지지를 막기는 어려운 전망

2. 수리남의 환율제도 변경

- 수리남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20년간 시행되어온 고정환율제도를 1993.6.8.부터 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
 - 수리남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EC(구주공동체)에서 파견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제구조 조정계획(SAP)을 1993.1.1.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동 환율제도 변경은 SAP 일환으로서 1994.6월부터 시행 예정인 단일환율 도입을 위한 전 단계 조치임.

2281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슬로베니아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142 / 14 / 1-44

1992~93년 중 슬로베니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Dimitri Rupel 슬로베니아 외상, 방일(1992.2.25.~28.)

- 슬로베니아·일본 외상회담(1992.2.27.)
 - 와타나베 외상은 슬로베니아 국가승인에 장애가 될 큰 문제는 없으며,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다면서 전향적인 자세를 표명
- 일본 외무성은 독립을 선언한 4개국(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 EC(구주공동체)가 이미 승인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먼저 승인할지, 4개국을 일괄 승인할 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2282

2. 국내 정세

- 슬로베니아는 1992.1.15. EC 국가의 승인을 계기로 대외적으로는 일단 성공적이나, 분리 독립에 따른 제반 문제로 과도기 진통에 직면함.
 - 1990.4월 총선에서 집권한 6개 정당 연합체(DEMOS)가 분리 독립 달성을 계기로 내부 분열에 직면해 있고, 시장경제 이행에 관해 확연한 노선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 경제적 어려움이 핵심적인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바, 신화페 Tola의 인플레이션이 월 15%에 이르고, 경화기준 소득 격감(1991년 초 기준 월 1,000 → 300 독일마르크)이 심각함.
 - 집권 연합정당 DEMOS에서 일부 정파 이탈로 현 정부입지가 계속 악화 추세

3. 대선·총선(1992.12.6.)

- Milan Kuchan 현 슬로베니아 대통령이 63.6%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
 - 총선에서는 Drnovsek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23.3%를 득표하여 최대 다수당으로 부상
 - 기독교민주당(14.5%) 및 여타 소수당과의 연정이 불가피한 상황

스위스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23-142 / 15 / 1-69

1993년 중 스위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스위스의 EEA(구주경제지역) 국민투표 부결 이후 대응시책 결의

- EEA 비준이 1993.1.20. 국민투표에서 부결됨으로써 스위스연방 각의는 아래 시책(EEA 역외국으로서 손실 최소화) 추진을 결의
 - 대EEA 19개국 대상 양자협정 체결 추진(항공운수 협상, 농산물시장 개방 등)
 - 카르텔금지법 강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간소화
 - 교육연구시설 확충
 - EEA 시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국내시장 개방
 - 50개 Eurolex(유럽법 데이터베이스) 중 36개를 Swisslex로 일괄 수용

2. 스위스·EC(구주공동체) 간 관계 강화 방안 협의

- 스위스 Delamuraz 경제장관 및 Cotti 외상은 1993.6.28. EC 집행위를 방문, Delors 집행위원장 및 Van Den Broek 대외정치관계 집행위원과 회담
 - 스위스 측은 EEA 부결로 인해 EC와의 관계가 단순한 제3국 관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 육상운송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양자협정 체결과 1972년 자유무역협정을 수정·보완(원산지 규정, 가공농산물, 공공조달, 동식물 검역규정 등)하는 문제를 EC 측에 제의
 - EC 측은 일단 동 제의를 환영하나, 양자 간 협정으로 EEA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오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으로 다자적 접근이 다시금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

3. 스위스의 1990년대 외교정책 구상(1993.12.2., Cotti 외상 기자회견 발표)

- 5대 외교정책 목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촉진, 인권, 민주 및 법치 추구, 복지증진, 사회적 적대 해소, 자연 생활기반의 보호
- 외교정책 기초: 국가이익 보호, 독립, 안전보장
- 주요 외교정책 영역: 서유럽 통합, 동유럽 발전 및 전 유럽적 구조 구축, 강소국으로서 세계적 역할
- 외교정책 우선순위: 유엔, EC 등 국제기구 가입 추진, 외교목표 달성을 위한 능력개발, 특정영역(경제개방,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강구, 군비통제기구 활성화, 빈곤 및 환경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 집중

2283

대한민국 외교부

토고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42 / 16 / 1-116

1992~93년 중 토고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2.9.27. 헌법 개정 국민투표
- 11.16. 노조 및 야권 세력, 무기한 총파업 시작
- 1993.1.25. 반정부 시위 발생
 - 사망 16명, 40여 명 부상 발생
- 1.26. EC(구주공동체), 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한 항의로 원조 중단 검토 발표
- 8.25. 대통령 선거
 - Eyadema 토고 대통령 당선
 - 9.24. 취임

2. 대외 관계

- 1993.2.8. 프랑스에서 토고 사태 관련 콜마르 회의 개최
 - 프랑스·독일의 외교적 중재를 통한 토고 소요사태 해결 및 민주화 추진 협의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일정 확정
- 1993.3.3. 가나 외무장관, 토고 방문

태국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42 / 17 / 1-37

1993년 중 태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쌀값 하락
 - 1993.5월 현재 태국 내 쌀값은 공급과잉에 따른 국제 쌀값 하락으로 톤당 7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바,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정책 부재 및 쌀값 하락에 불만을 가져옴.
 - 5.7. 농민시위 진압 과정에서 농민 1명 사망. 추안 수상은 농민대표를 접견하고 톤당 112달러 선에서 쌀 수매를 약속
 - 그러나 야당은 농민 사망 사건이 시위대의 가두점거를 방지하라는 수상의 지시에 따라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국회에서 정치쟁점화 시도하고 있음.
- 증권가 조작
 - 증권위원회는 불공정 증권거래 근절을 통한 건전한 투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바, 불공정 거래 및 투기혐의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던 회사 및 혐의자 명단이 언론에 누출되어 동 명단에 포함된 아콘 의원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함.
- Chart Thai 당은 쌀값 하락 및 증권파동과 5.10. 나콘파툼주에서 발생한 장난감 공장의 화재로 2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금번 회의(1993.5.4. 개원, 90일간 회기) 중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등 개별 각료를 상대로 불신임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7.11. 제1선거구 보궐 선거 실시
 - Prachakorn Thai당의 Lalita Rerksamran 여사 당선
- 9.10. 태국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행동당이 야당과 통합 선언
- 11.12. Chavalit 내무장관, Uthai 상무장관, 재신임 획득
 - 상기 재신임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당이 내부적인 마찰에도 불구하고 현 연정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강력히 결속, 5개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처한 결과라고 분석됨.

2. 대외 관계

- 1993.1.6.~8. 추안 수상, 말레이시아 방문
 - 취임 후 아세안 순방의 일환으로 공식 방문
 - 아세안 결속 및 상호협력 다짐

2285

대한민국 의정관계 어휘집

튀니지 정세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중동2과

MF번호 2023-142 / 18 / 1-129

1991~93년 중 튀니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튀니지 개각(1991.2월)
 - 외무부장관 등 장관 7명 및 차관 4명, 전문경영인 및 친서방 인사 기용
- 튀니지 제8차 5개년 계획 발표(1993.5월)
- 튀니지 부분 개각 실시(6월)
- 튀니지 집권당(RCD) 전당대회 개최(7월)

2. 대외 관계

-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튀니지 방문(1992.4월)
- 튀니지 군인 850명 UNTAC(유엔평화유지군), 캄보디아 파병(5월)
- 양상곤 중국 주석, 튀니지 방문(1992.7월)
- 제8차 튀니지·리비아 혼성위(1993.1월, 트리폴리) 개최
- 튀니지 외무부장관, 포르투갈 방문(1993.1월)
- 벨기에 외무부장관의 튀니지 방문, Arafat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지도자 면담(1993.2월)
- 알제리 대통령, 튀니지 방문(1993.2월)
- 리비아 사태 관련 아랍연맹 7국 회의(1993.3월, 튀니스)
- 벤 알리 리비아 대통령의 포르투갈(1993.2월), 모리타니 방문(1993.4월)
- 제10차 튀니지·알제리 혼성위(1993.4월) 개최
- 독일 대통령, 튀니지 방문(1993.4월)
- 갈리 유엔사무총장, 튀니지 방문(1993.6월)
-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사무총장, 튀니지 방문(1993.6월)
- Ben Ali 대통령, 구주의회 방문(1993.6월)
- Ben Ali 대통령, OAU 정상회의(카이로) 참석(1993.6월)
- 인도네시아 대통령, 튀니지 방문(1993.11월)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23-142 / 19 / 1-79

1992~93년 중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트리니다드토바고 총선 후 신내각 구성(1992.1월)
- 대통령 선거 실시(2.18.)
 - Noor Hassanali 현 트리니다드토바고 대통령이 단독 출마, 상·하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만장일치 당선
- 미국, 유엔 등 주요 재외공관장 인사(7월)
- 지방의회 선거에서 집권당 압승(투표율 20%)(9월)
- 정부의 감원 및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공무원 및 교원 시위(1993.2월)
- Manning 수상의 대외활동 동향
 - 바하마 개최 제2, 3차 Caricom Bureau 회의 참석(1993.2월, 6월)
 - 영국 공식 방문,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협의(1993.5월)
 - 자메이카 개최 카리브 4개국 정상회의(1993.9월) 참석
 - 사이프러스 개최 영연방 정상회의(1993.10월) 참석
-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 중남미 7개국과 외교관계 수립(12월)

2. 한·트리니다드토바고 간 교류

- N. Hassanali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 명의 축전 발송(1992.2월)
- Manning 수상의 국무총리 앞 신년인사 메시지 접수(1993.1월)

2287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우크라이나 정세. 전2권 (V.1 1-7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142 / 20 / 1-195

1993년 중 우크라이나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3.3.19. 우크라이나 최고회의, NPT(핵확산금지조약) 불가입 천명
- 6월부터 도네츠크 석탄 광부 파업 단행
 - 대통령 및 의회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요구
 - 6.16. 크라브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동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하여 경제 비상 사태 선언
 - 최고회의, 동 포고령에 반발하여 대통령과 최고회의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9.26. 실시하는 안 가결

2. 대외 관계

- 1993.1.15.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 개최
 - 양국 간 군사·경제 분야에서의 마찰에 의한 불편한 관계 해소 및 구소련연방체제에서 형성된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다지는 계기
- 1993.2.26.~27. 크라브추크 대통령, 헝가리 방문
- 1993.4.13. 우크라이나·조지아(구 그루지야) 간 정상회담 개최
 - 대러시아 공동 대응방안 중점 협의 및 우호 협력조약 등 20여 개의 상호협력협정 체결
- 1993.6.17.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 개최
 - 흑해함대 분할 합의, START-1 비준 등 핵안전보장, 경제협력 방안 등 협의
- 7.9. 러시아최고회의, 우크라이나 영내 흑해함대 모항인 세바스토폴시가 러시아 영토임을 공식 선언하는 결의안 채택
 - 우크라이나 정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강력 비난
- 7.27. 미·우크라이나 간 방위협력협정 체결
 - 영국 국방장관 연례교환 방문, 합동군사훈련 실시 등 군사 교류 증진

우크라이나 정세. 전2권 (V.2 8-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142 / 21 / 1-145

1993년 중 우크라이나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93.9.21. 우크라이나 의회, 쿠츠마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 및 신내각 구성 요청
- 9.22. 쿠치마 수상 사임 발표
- 9.29. 크라브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신내각 발표
- 12.21. 우크라이나 의회, '국가 경제의 비독점화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계획' 채택

2. 대외 관계

- 1993.9.6.~8. 전기침 중국 부수상 겸 외상, 우크라이나 방문
- 1993.11.18. 우크라이나 의회, START-1 조건부 비준
 - 핵무기 해체량 축소,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유보, 국제사회에 핵무기 해체를 위한 재정지원, 해체 핵무기 부품 보상 요구 등을 조건으로 제시

2289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관계정보

우간다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23-143 / 1 / 1-120

1992~93년 중 우간다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우간다, 소말리아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결정

- 1992.12.17. Museveni 우간다 대통령, 비공개 회의에서 소말리아 PKO 참여를 결정
- 우간다군 파견 경비는 유엔이 부담하며, 역할이 있는 한 소말리아에 계속 주둔할 것으로 알려짐.

2. 우간다, 라이베리아에 평화유지군 파견 결정

- San Nanyumba 우간다 육군참모총장은 1개 대대병력(1천여 명)을 라이베리아 내전 평정을 위해 1994.1월부터 6개월간 파견할 것이라고 1993.12.28. 발표
- 동 파견은 1993.8월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경비는 ECOWAS(서아프리카공동체)가 부담

영국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3-143 / 2 / 1-179

1993년 중 영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메이저 영국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1993.7.23.)

- 마스트리히트 구주동맹조약 비준 관련, 메이저 총리 요구로 실시된 자신에 대한 상하원 신임 투표에서 신임을 재확인(찬성 339, 반대 299)
- 1993년 중 영국의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 가시화 예상
 - 이로써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에 따른 구주 정치·경제 통합도 가속화될 전망

2. 영국 내 인종분규 재연 동향

- 영국 내 유색인에 대한 백인 청년들의 집단폭행과 유색인들의 보복성 폭력사태 등이 연달아 발생
 - 1988년 이래 웨일즈, 잉글랜드 지방에서 유색인에 대한 백인들의 폭행(1991년 7,780건) 및 1993.9월 들어 아시아계와 백인 청년들 간 집단폭행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 경제침체에 따른 실업 심화(10.4%)로 백인 저소득층과 이민족 간 일자리 쟁탈이 배경

3. 영국·미국 간 특수협력 관계 악화 조짐 노정

-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
 - 미국이 1992.4월 독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제안한 데 대해, 영국은 유엔 내 입지약화를 우려하여 이에 대해 소극적
- 미국의 이라크 공격
 - 미국의 이라크 정보부 건물에 대한 미사일 공격(6.27.)에 대해 영국은 미국이 부시 행정부와 달리 사전협의를 없었던 점을 문제시
- 미국의 핵실험 동결조치
 - 미국이 1994.9월까지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체결 추진을 표명한 데 대해 그 동안 미국 네바다주에서 핵실험을 해온 영국은 미국 측 조치로 신형 트라이던트 핵미사일 개발이 지연될 것을 우려

4. 영국·일본 정상회담(1993.9.20.) 시 제2차 세계대전 영국군 포로 보상 문제

- 영국 측이 동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일본 측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
 - 다만, 일본 측은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내면서 민간차원에서의 보상에 준하는 조치 고려 시사

2291

대한민국 외교부

Clinton 미국 대통령 후보 및 진영 주요인사 인적사항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3-143 / 3 / 1-200

1992~93년 중 클린턴 미 대통령 후보와 진영 주요인사의 인적사항 관련 내용임.

1. 클린턴 대통령

- 생년월일: 1946.8.19.
- 출생지: 미 아칸소주 Hope
- 학력: 조지타운대학 졸(1968), 옥스퍼드대학 수학(1968~70, 로드 스컬러십), 예일대학 법대 졸(1973년 법학 박사)
- 주요 경력: 아칸소주 법무장관(1977~79), 아칸소 주지사(총 5회, 1979~81, 1983~92)
- 한국 관계: 아칸소주 통상사절단을 인솔하여 방한(1988.8.29.~9.1)
 - 대통령,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경제계 주요인사 면담

2.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

- 생년월일: 1947.10월
- 학력: Wellesley College 우등 졸업(1969), 예일대학 졸(1974)

3. 외교자문 인사

- Tony Lake 교수, Madeline Albright, Michael Mandelbaum,
- Mickey Kantor 선거대책 본부장, James Carvill 정치 자문, George Stephanopolous 선거 본부 차장, Warren Christopher 전 국무차관, Lee Hamilton 하원의원 등

4. 경제자문 인사

- Robert Shapiro, Robert Reich 등

5. 클린턴 주지사의 한국과 관련된 자료

- 주지사 시절 통상사절단 인솔 방한, 미국 태권도 협회 관련사항, 공관과의 관계, 클린턴 주지사를 면담한 한국인사 목록 등

미국 Clinton 신 행정부 조직개편 및 고위직 임명. 전3권 (V.1 1992)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북미1과 / 통상2과

MF번호 2023-143 / 4 / 1-194

1992년 중 미 클린턴 신행정부의 조직개편과 고위직 임명 관련 내용임.

1. 미국 신행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보고서

- 미국 국제경제연구소가 카네기재단과 공동 작성, 클린턴 당선자에게 제출한 내용(1992.11.11. 발표)
 - 백악관: 정책 수립만 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위, 경제위, 국내문제위 설치
 - 경제관련 부처: USTR(미국통상대표부)에 대외통상교섭권 집중, 상무부의 최우선 임무로 경쟁력 강화를 지정
 - 국무부: 주요 정책 결정을 차관보선에서 관장, 5명의 차관에게 특정 분야 정책 결정을 위임

2. 국무부 개편 보고서(1992.11.30.)

- 민주주의, 이민 문제 담당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차관보직 신설
- 국무부 내 부서 및 관련 독립기관 숫자 축소

3. 차기 행정부 경제 각료 인선 및 이력사항

- Bentsen 재무장관, Panetta 예산국장 등

4. 국무부 고위인사 인선 및 이력사항

- Christopher 국무장관, Wharton 국무부 부장관, Albright 유엔대사 등

2293

대한민국 외교부

미국 Clinton 신 행정부 조직개편 및 고위직 임명. 전3권 (V.2 1993.1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북미1과 / 통상2과

MF번호 2023-143 / 5 / 1-189

1993.1월 중 미 클린턴 신행정부의 조직개편 및 고위직 임명 관련 내용임.

1. 미 국무부의 경제, 통상조직 개편 동향(1993.1월)

- 국무부의 역할: 경제 활력 회복이 가장 큰 도전인바, 이런 변화를 정책 및 활동계획과 인력수급에 반영해야 함.
- 경제부분 조직개편
 - '경제·농업차관'을 '경제 및 환경담당 차관'으로 변경하여 경제, 환경, 산업진흥활동 조정역할 수행
 - 마약, 테러, 난민 등 범세계적 이슈를 담당할 차관직 신설
- 재외공관의 경제통상기능 보완

2. 신임 각료 임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 관련 문서

- 상무장관, 국방장관, 노동장관, 재무장관, 환경장관, 농무장관, 국무장관, 보건후생성장관, USTR(미국통상대표부) 대표, 유엔대사 등

3.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1993.1.13.)

-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임.
- 한국의 통일과정은 촉진되어야 하지만 미국의 역할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한국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 강한 외교적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 언급
 - '한국 정부가 새로운 쌀 시장 장벽을 구축한다면, 쌀 시장 개방문제가 비공개 외교 협상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언

4. 클린턴 당선자의 백악관 참모, 국무부 고위직 인선 결과 발표(1993.1.14.)

- 15명의 대통령실 참모, 부통령실 참모 4명 및 13명의 국무부 인선

미국 Clinton 신 행정부 조직개편 및 고위직 임명. 전3권 (V.3 1993.2-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북미1과 / 통상2과

MF번호 2023-143 / 6 / 1-287

1993.2~12월 중 미 클린턴 신행정부의 조직개편 및 고위직 임명 관련 내용임.

1. 신행정부 고위직 후보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 관련 문서

- Woolsey CIA 국장(1993.2.2.), 타노프 국무부 차관(3.4.), 위스너 국방부 차관(3.4.), 관세청장(5.6.) 및 국무부 차관보급 인사 등
 - 타노프 차관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또한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는 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

2. 국무부 조직개편 계획(1993.2.5.)

- 배경: 탈냉전 시대에 비확산, 환경, PKO(유엔평화유지활동) 등 새로운 이슈에 적절하게 대처
- 개편 요지
 - 업무를 차관급 6명을 중심으로 집행, 범세계 문제 담당 차관직 및 구소련 담당 대사직 신설, 부차관보급 최대 40% 감축, 대외원조처 개편

3. 행정부 고위인사 임명 관련 문서

- Weise 관세청장, 주이스라엘 미국대사, FBI 국장, Laney 주한 미국대사

4. Laney 대사 청문회(1993.3.9.)

-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유엔안보리에 회부'한다고 발언

2295

대한민국 외교부서 역사

미국 의회 동향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3-143 / 7 / 1-194

1992~93년 중 미국 의회의 주요 동향임.

1. 쟁점사항 심의

- 균형예산
 -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1985년 예산균형법을 제정하였으나, 1990년에도 2,200억 달러 재정적자
 - 재정적자의 지속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나, 1992.6월 미 하원에서 부결
 -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의회 권한 축소를 이유로 균형예산에 반대
- 해외영토 대표에게 하원 전체회의 투표권 부여
 - 소수당인 공화당은 사실상 민주당 의석수 증가라고 반대
- Clinton 행정부의 정책기조
 - 1993년 출범 클린턴 행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및 경제 활성화 기조하에 1994년도 예산안 제출
 - 정책기조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 확대, 연방지출 삭감,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범죄 방지, 선거자금 개혁 등 역점
 - 1993.8월 미 상·하원에서도 신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예산 균형법안 통과

2. 선거 동향

- 1992.11월 연방, 주, 지방 단체장 및 의원 선출
 - 연방에서는 행정부와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
 -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은 원내 지도부 및 상임위 구성
 - 김창준 미 공화당 후보가 L.A.에서 당선됨으로써 최초 이민자 하원의원 탄생
- 1993년에도 연방, 주, 지방 단위의 보궐선거 실시
- 의원 임기 제한 국민투표
 - 15개주에서 의원 임기를 최대 12년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

3. 한국 관심사항

- 대미국 의회 외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한국계 의원 당선자 파악
 - 미 상·하원 동아태소위 구성에 각별한 관심
- 주미국대사는 주요 상·하원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표명하고, 수시 동참

미국 의회 청문회 개최 동향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2023-143 / 8 / 1-250

1993년 중 미국 의회 청문회 개최 동향임.

1. 논의 동향

- 안보 강화 및 경제 활성화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집중 논의
 - 안보 강화, WMD(대량살상무기) 비확산,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일본과 중국 평가, 해외 주둔 미군, 구소련 민주화
 - 불공정 무역 축소, 교역 확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APEC(아태경제협력체), 무역 및 재정 적자,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 한국 관련, 주한미군 유지 및 북한 핵 문제 대처 등에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일치하는 경향

2. 외교안보 분야 청문회

- 1993.2.17. K. Courtis Bakcapital Maket 부회장, H. Harding 부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D. Zagoria Hunter대학 교수, E. Lottak CSIS 연구원 등 출석 하원 위원회
- 1993.3.2. D. Abshire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소장 출석 하원 외교위 국제안보·국제기구·인권 소위원회
- 1993.3.9. R. J. Woolsey CIA 국장 출석 하원 정보위원회
- 1993.3.10. W. Christopher 국무장관 출석 하원 세출위원회 상무·법무·국무 소위원회
- 1993.3.11. L. Eagleburger 전 국무장관 출석 하원 외교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 1993.4.20. L. Aspin 국방장관 출석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 1993.4.21. Riscassi 주한미군 사령관, Larson 태평양함대 사령관 출석 상원 군사위원회
- 1993.5.6. W. Lord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출석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 1993.5.18. W. Christopher 국무장관 출석 하원 외교위원회, 5.18. G.E. Luck 중장 출석 상원 군사위원회의 주한미군 사령관 인준 청문회
- 1993.9.22. J. Shalikashvili 장군 출석 상원 군사위원회의 합참의장 인준 청문회
- 1993.11.3. P. Wolfowitz 전 국방부 차관보, W. Clark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S. Harrison 카네기재단 연구원, W. Taylor CSIS 연구원 출석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 1993.11.15. J. Spero 국무부 경제차관, W. Lord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출석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3. 국제경제 분야 청문회

- 1993.1.27. F. Bergsten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M. Greenberg 미국 국제협회장 출석 하원 외무위원회
- 1993.3.10. M. Kantor 무역대표 출석 상원 재무위원회
- 1993.3.11. M. Kantor 무역대표 출석 하원 세입위원회

2297

대한민국 의회도서관

미국 정세. 전2권 (V.1 1992.7-93.5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3-143 / 9 / 1-229

1992~93년 중 미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신정부 출범

- 국제 문제
 - 분쟁지역 평화 정착 및 분쟁 예방, 인권, 민주화, 기후변화 등이 관심사항
 - 공정한 무역 질서를 추구하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추진
 - 국방예산 감축, 전략 핵무기 감축 협상, WMD(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추진
 - 한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통일, 북한의 핵 포기, 안보공약 유지, 민주화 정착, 시장개방 등에 관심
- 국내 문제
 - 시장원칙을 존중하면서 경제성장, 투자유치, 직업 창출, 소득증대, 의료 확대, 적자감소 등 추구
 - 공화당 및 주요 언론 등은 증세 기조에 대한 불만 표명, EC(구주공동체) 등은 장기적으로 효과 기대

2. 주요 정치 동향

- 대통령, 각료 등은 각종 연설, 기자회견, 청문회, 정상 및 각료회담 등에서 상기 정책기조를 표명
- 클린턴 미 대통령, 지방 순회 및 주요 단체 접촉을 통해 정책기조 설득 노력 지속
- 1993.5월 복지혜택과 연계한 유권자등록법안이 미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 상·하원 통과
- 1993.5월 세수 증대 및 세출 삭감을 통한 적자 감축 예산안 미 하원 통과

3. 대외 교류(1993년)

- 1993.2월: EC 의장국 덴마크 외무장관 방미, Major 영국 총리 방미
- 1993.3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방미, 스페인 외무장관 방미
- 1993.4월: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워싱턴 D.C.), 이란 대표단 입국 거부
- 1993.5월: 독일 대통령 방미

4. 특이사항

- 1992년 중 이란·콘트라 사건이 정치 쟁점화
 - 1980년대 중반 미 행정부는 이란 내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불법무기거래 시도
 - 1992.12.24. 부시 미 대통령은 동 사건 관련 인사 6명에 대한 사면조치를 단행하면서, 정치적 책임 문제로 규정

미국 정세. 전2권 (V.2 1993.6-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3-143 / 10 / 1-235

1992~93년 중 미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동향

-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 및 역할 유지'와 '국내경제 회복 및 국방비 감축' 간 논쟁
 - 정부 내 인사들이 상반된 의견 표명으로 혼란 야기
 - 목표와 기용수단 간 균형을 위해 가급적 다자적 행동으로 의견 수렴하는 경향
- 고용 창출, 경제성장,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국가적 동참 분위기 형성
 - 6.25.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예산균형법안이 미 의회 통과
 - 6.30. 미 행정부의 무역협상 권한 1년 연장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입지 강화
 - 9.7 연방 공무원 감축 등 정비지출 억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행정 개혁보고서 발표

2. 대외 관계

- 기본 방향
 - 시장경제, 새로운 민주주의, 공격 대응, 인도적 의무 등 원칙하에 개입 범위 확대 추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실리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며 다자적 개입을 선호
 - 이로 인해 발칸, 소말리아, 아이티 등 대외정책의 적절한 수행에 차질 발생 비판에 직면
 - 대아시아 정책기조는 개방 시장 및 사회, 기존동맹 유지, 군사력 전진배치, 비확산 정책 등
- 대외 동향
 - 1993.6월: 미국의 대이라크 미사일 공격
 - 1993.9월: 이탈리아 총리 방미
 - 11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미 의회 통과

3. 특이사항

- 김창준 한국계 미 하원의원의 회사자금 유용사건 발생
 - 1993.7월 L.A. Times 등 미국 언론은 김창준 의원의 공금 유용사건 보도

2299

대한민국 의회도서관

미국 주요인사 연설 및 정책 건의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3-143 / 11 / 1-91

1993년 중 미국 주요인사의 연설 및 기관의 정책 건의 동향임.

1. 관심사항 및 정책 방향

- 경제 우선/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및 공정무역/냉전 종식과 미국의 지도력 발휘/군사력의 재조정/중동 및 발칸지역 평화정착/인권 및 민주주의 신장/PKO(유엔평화유지활동)
- 한국, 일본, 중국 평가 및 미국의 역할/아시아 중요성 점증/양자관계 기반 위에 지역안보협력/북한 핵 문제/아시아 주둔 미군 유지

2300

2. 주요인사 연설 및 기고

- 1993.1.5. 부시 미 대통령,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연설
- 1.7. Eagleberger 국무장관,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연설
- 2.8. C. Johnson 교수, 대아시아 정책 관련 NYT 기고문
- 3.23. R.D. Fisher 정책분석관, 헤리티지재단 Backgrounder 기고문
- 5.3. A. Lake 백악관 NSC 보좌관, 브루킹스연구소 연설
- 6.30. R.D. Fisher 정책분석관, 헤리티지재단 Backgrounder 기고문
- 7.10. 클린턴 대통령, 한국 국회 연설
- 8.31. W. Lord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국무부 정책 브리핑
- 9.20. W. Christopher 국무장관, 컬럼비아대학 포럼 연설
- 9.21. A. Lake 백악관 NSC 보좌관, 존스홉킨스대학 연설
- 9.23. M. Albright 주유엔 미국대사, 국방대학 연설

3. 주요기관 정책 건의 보고서

- 1993.1.8. 전직 국무장관회의 논의 결과
- 1.18. 헤리티지재단의 대아시아 정책 건의서
- 3.29. 통일교 지원 제2차 "Summit Council on World Peace" 세미나
- 6.1. 헤리티지재단의 외교 국방정책 보고

미국·베트남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 동남아과

MF번호 2023-143 / 12 / 1-149

1993년 중 미·베트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관계 개선 협의 동향

- 1993.1.26.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 조건 없는 미·베트남 관계정상화를 천명
 - 실종 미군 문제 해결에 협력 의사 표명
- 3.22.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 베트남과 관계정상화 희망 표명
- 3.25. 베트남 총리, 일본 방문 중에 미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희망 표명
- 7.2. 클린턴 미 대통령, IMF(국제통화기금)의 대베트남 차관 재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성명 발표
- 1993.7.15.~18. 미국 고위대표단, 베트남 방문
 - 미 국무부 직원 3명 하노이 상주 합의

2. 양국 관심사항

- 경제협력 재개
 - 1993.1.14. 미 재무부, 바이코의 베트남 내 영업 허가
 - 1993.2.8.~12. 미 경제사절단, 베트남 방문(투자환경 조사)
 - 1993.4~5월 베트남 경제사절단, 미국 방문
 - 1993.9.27. 베트남 지원그룹회의(워싱턴 D.C.), 베트남의 IMF 연체금 상환을 위한 경험에 합의
 - 1993.10.7.~8. 미국 경제사절단(전 은행가 및 전 상무장관 포함), 베트남 방문
- 실종 미군 송환: 양국 간 관계정상화에 있어 주요 현안
 - 1.13. 미 상원 실종 미군 특위, 베트남전 실종 미군 존재 제기
 - 2.25.~3.23. 미·베트남 실종 미군 합동조사 실시
 - 1993.4.18.~19. Vessey 미 퇴역장군, 미군 유해 송환 협의차 베트남 방문
 - 1993.5.6.~8. 미국, 베트남, 라오스 3국 정부 간 회의(하노이) 개최, 미송환 미군 포로 누락 의혹을 협의
 - 1993.5.31.~6.1. J. Kerry 상원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대표단, 베트남 방문, 실종 미군 문제 협의
 - 1993.7.15.~18. 미 고위대표단(국무부 동아태차관보 포함), 베트남 방문
 - 1993.8.9.~10. 미국, 베트남, 라오스 3국 정부 간 회의(하노이) 개최, 실종 미군 수색작업 협의
 - 1993.12.15.~16. Lord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베트남 방문

2301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

베트남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23-143 / 13 / 1-148

1992~93년 중 베트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도이 모이의 개혁정책 가속화
 - 1992.9월 대통령(보수 군부 지도자) 및 수상(경제 개혁파) 선출로 보수·개혁 간 세력균형 유지
- 1992년도 경제 호전 등 개혁정책 효과 가시화

2302

2. 대외 관계

- 1992.4.19.~24.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 베트남 공식 방문
 - 각료 5명(외무장관 포함), 무역사절단 100여 명
 - 3개 협정 체결
 - Accord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 Accord on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echnical Assistance to the Vietnamese Rubber Industry
 - 양국은 동 협정의 원만한 이행 및 사업 촉진을 위해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바, 말레이시아의 대베트남 재정지원을 위해 Malaysian-Incorporated Bank의 하노이지점 설치 및 양국 중앙은행 간 약 5천만 달러의 신용보증 구좌 개설에 합의
 - 남사군도의 영유권 문제 관련,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Boat People(현재 말레이시아에 약 10만 명 수용 중) 문제는 본국 강제송환에 앞서 말레이시아 측이 기술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
 - 동 방문은 현재 아세안 각국(특히 싱가포르)의 대베트남 경제협력에 선두적 역할을 해나감과 동시에 이를 통해 안보적 차원에서도 베트남과의 선린 우호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평가됨.
- 1992.7.24.~26. Vo Van Kiet 베트남 수상, 인도네시아 비공식 방문
 -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 양국 간 Natuna 군도 근해의 영해 분장 문제, 비동맹 정상회담 준비 및 양국 간 경험 문제 협의
 - Natuna 군도 근해의 영해 경계선 획정 문제로 발생한 국경분쟁은 동 부근 대륙붕에 천연가스 및 대규모 광물자원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양국 간 분쟁이 계속되어 1970년대 말 이해 협상을 계속해왔는바, 금번 정상회담에서 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고 자원 공동탐사 등 양국 간 공동이익을 위한 실무적 협의를 계속하기로 함.



- 1992.10.19.~21. 싱가포르 외무장관, 베트남 방문
- 1993.2.9.~11.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베트남 방문
 - 1945년 베트남의 독립 이래 서방 국가 원수로서 최초의 방문
 - 미테랑 대통령 방문 계기로 베트남·프랑스 간 아래 협정 체결
 - 마이크로칩 생산 합작공장 설립 합의서
 - 이종과세방지협정
 - 사법공조협정
 - 베트남·프랑스 법률회관 하노이 건립에 관한 합의서
 - 호치민 소재 소아병원 개·보수에 관한 의정서
 - 의료훈련에 관한 합의서
 - 프랑스 극동연구학교의 하노이 사무소 설립 의정서
 - 베트남항공과 프랑스항공 간의 국제기 우대에 관한 양해각서
- 1993.3.24.~28. Vo Van Kiet 수상, 일본 방문
- 1993.4.1.~4. 라오스 총리 겸 인민혁명당 의장, 당정 고위사절단을 인솔하여 베트남 방문
- 7.1. 베트남, 대만과 상호 경제문화사무소 교환설치에 합의
- 7.12. 이스라엘·베트남 간 외교관계 수립
 - 베트남·이스라엘 간 수교에 미국의 협력 요청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으며, 베트남 정부의 기본 외교정책 및 1986년부터 강력 추진 중인 대외개방정책 차원에서 베트남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나, 양국 간 수교가 결과적으로 대미국 관계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됨.

베네수엘라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43 / 14 / 1-131

1993년 중 베네수엘라의 국내 정세 및 대외 관계에 관한 내용임.

1. 국내 정세

- Perez 베네수엘라 대통령 탄핵심판 피소
 - 1993.5.21. 베네수엘라 양원합동회의는 Perez 대통령을 공금 유용 및 횡령 혐의로 탄핵 심판 회부 의결
 - 동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의결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Octavia Lepage 상원의장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선출
- 6.4. 베네수엘라 양원합동회의는 임시대통령으로 Ramon J. Velasquez 상원의원을 선출, 6.5. 임시대통령으로 취임
 - 임시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1994.2월까지 직무수행 예정
 - Velasquez 대통령은 6.15. 개각을 단행, 내각 발표
 - 의회가 동 대통령에게 당면한 경제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경제 및 재정 등에 관해 특별권능을 입법으로 부여한바, 동 법이 8.23. 발효함에 따라 조세, 금융, 국영기업 민영화 등 조치 발동 가능
- 대통령 선거 동향 및 전망
 - 11.11.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무소속 Caldera 후보와 Paz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누가 집권하든 국민단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부쿠데타 재발설 등 악성루머가 유포 되고 있다고 보고

2. 대외 관계

-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멕시코 및 중미 6개국 대통령 회동(1993.2.11.~12., 카라카스)
 - 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G-3의 대중미·카리브에 대한 정치경제협력 방안 협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카라카스 선언을 채택
- Cheddi Jagan 가이아나 대통령, 베네수엘라 방문(1993.2.17.~18.)
 - 양국 우호관계 공동성명 채택
- 콜롬비아 재무장관, 베네수엘라 방문(1993.3.3.)
 - 양국 간 경제통합 강화를 위해 금융재정 등 거시경제 조정 협력, 에너지 수급 등 협의
- 콜롬비아 외무장관, 베네수엘라 방문(1993.3.17.), 양국 간 공동성명 발표
- Antich 베네수엘라 외상, 칠레 공식 방문(1993.3.31.)
 - 아옌데 전 대통령 축출 및 피노체트 정권수립 이래 20년간 동결되어온 양국 간 외교관계 정상화 추진
- 무토 일본 외상, 베네수엘라 방문(1993.4.29.~5.1.)
 -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에 대해 사의 표명

아프리카 민주화 동향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44 / 1 / 1-67

1991~93년 중 아프리카 민주화 동향 관련 내용임.

1. 아프리카지역 분쟁에 따른 비상사태 시 공관조치 계획(1991.2월, 외무부)

- 기존 비상철수 계획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이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
 - 동 계획에 따라 최근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르완다 사태 시 무난하게 대응
- 보완 필요사항
 - 인근국가 주재 공관과 교신이 가능한 독자적인 통신망 확보(소말리아, 르완다 사태 시 주재국 통신시설 마비로 교신두절 경험)
 - 아프리카지역에서 구종주국이 군사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국지전 발발 가능지역에서 평소 해당 구종주국 공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라이베리아·미국, 소말리아·이탈리아, 르완다·벨기에)
 - 피해 공관원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최근 아프리카 민주화 동향(1993.4월, 외무부)

- 민주화 추세 배경
 - 30여 년간 독재체제하에서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 제고
 - 사회주의권 몰락에 따른 개혁 여파 유입
 - 동·서 진영으로부터의 원조 격감에 따라 독재체제 국가 유지 곤란
- 민주화 주요 양태
 - 다당제 헌법 도입 등으로 야당세력 규합 및 조직화
 - 기득권을 인정하되 장기집권 봉쇄를 위한 제도적 실험
 - 이념적 색채 탈피
 - 근대적 조직체인 군의 지지 확보 모색
- 민주화 장애요인
 - 인적·물적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층 반발
 - 경제구조 취약에 따른 재정 압박이 정치일정 이행에 부담으로 작용
 - 부족주의 전통에서 기인한 국가적 소속감 미약, 불안요인의 국경 간 전이 현상 등

2305

대한민국 외교부

중동평화협상. 전4권 (V.1 1-4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 중동2과

MF번호 2023-144 / 2 / 1-204

1.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 중동 6개국 순방(1993.2.17.~24.)

- 목적: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415명 추방조치로 인해 중단된 중동평화협상 재개 모색
- 방문국가: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 및 쿠웨이트

2.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상, 스트라스부르 방문(1993.3.9.)

- 구주의회 외교안보위원회, 대외경제관계위원회 등을 접촉하고 중동평화회담 재개 협의

2306

3. 아랍당사국 회의(1993.3.28.~29., 시리아 다마스쿠스)

- 팔레스타인 문제 및 중동평화협상 재개 관련 논의
- 공동입장 마련에 합의하지 못함.

4. EC(구주공동체) TROIKA(영국, 덴마크, 벨기에) 외상과 Van Den Broek EC 집행위원회 대외 정치관계 담당 집행위원, 중동 국가 순방(1993.3.31.~4.2.)

- 중동평화회담이 1993.4.20.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예정
 - 동 외상들은 상기 방문국 정부지도자 외에 팔레스타인 대표단도 접촉할 예정
- 방문 결과 및 중동문제에 대한 EC 측 평가
 - EC TROIKA 외상과 Van Den Broek 집행위원은 라빈 이스라엘 수상, 알사하라 시리아 외상, Jaber 요르단 외상, Hariri 레바논 수상 등과 면담한바, 이스라엘과 아랍 측은 중동문제 해결을 위한 EC 측의 역할 강화를 희망하고, 특히 아랍 측은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EC 측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희망함.
 - 중동평화협상 문제점 평가
 - 평화협상에서 이스라엘·시리아 간 관계가 가장 큰 걸림돌임. 특히 아랍 측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 캠프데이비드 협상식의 부분적 평화안을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
 - 중동문제의 해결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관건임.
 - EC는 향후 중동평화협상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희망하는바, 방문외교 외에 중동 관계국과 각급 수준에서의 정기적인 접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5.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미국 방문(1993.4.3.~6.)

- 방문 목적(미국 언론 분석)
 - 중동평화회담(1993.4.20.) 개최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추방민 문제 해결 방안 협의
 - 이란, 이라크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문제 협의
 - 연간 23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이집트 군사·경제원조 삭감 움직임 대처
 - 이집트 내 회교도 소요와 관련된 뉴저지 거주 이집트 반체제 회교지도자에 대한 미국 측의 방관적 태도 지적
- 미국·이집트 정상회담(1993.4.6.) 결과
 - 양국 대통령은 주로 중동평화회담 개최, 지역안보, 테러리즘 대처 문제에 관해 협의함.
 - 기타 문제: 보스니아, 대리비아 제재 강화, 이집트 국내 소요 및 미국의 대이집트 경제원조 문제
 - 양국 대통령은 합동 기자회견에서 금년이 중동평화를 이룩할 역사적 기회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4.20. 중동평화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는 데 대한 확신을 표명함.

6. 아랍 관계국 외상회의(1993.4.21., 시리아 다마스쿠스)

- 1993.4.27. 워싱턴 D.C. 개최 중동평화회담에 참여하기로 결정
-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4.21. 기자회견을 통해 동 회의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중동평화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함. 특히 팔레스타인 측이 내부적 이견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여의 어려운 결단을 내린바, 동 회의를 통해 이스라엘 내 점령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이 가능 시 된다는 희망을 표명함.

중동평화협상. 전4권 (V.2 5-8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 중동2과

MF번호 2023-144 / 3 / 1-233

1993.5~8월 중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9~10차 중동평화회담 관련 내용임.

1. 제9차 중동평화회담(1993.4.27.~5.12.)

- 주요 쟁점
 - 팔레스타인 자치문제(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상), 골란고원 반환 및 평화보장 문제(이스라엘·시리아 협상), 기타 팔레스타인인 추방 문제, 남부레바논 안전지대 철수 문제 등
- 중동평화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 중동문제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
 -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은 중동문제의 정당하고 항구적인 해결에 필수적
 - 유엔 결의로 확인된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을 포함한 제반 합법적인 권리는 존중
 -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 이후 점령한 예루살렘을 포함한 아랍영토로부터 철수
- 평가
 - 미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협상 태도 감안 시 6월 중 회담 재개 가능성 지대

2. 제10차 중동평화회담(1993.6.15.~7.1.)

- 개최 배경
 - 1991.10월 마드리드 중동평화회담 이래 9차례의 양자회담과 3차례의 분야별 다자회담 개최
- 참가자
 - 이스라엘과 아랍 측 4당사자(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대표)
- 회담 결과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회담(팔레스타인 자치협상)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및 요르단 서안 내 일부 권한의 즉각적 이양 및 잠정적 자치기간의 최소화 제의,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적 완전 자치를 주장
 - 팔레스타인 측은 자치협상 대상에 동예루살렘 포함을 주장, 이스라엘 측은 고려 불가 강경 입장
 - 이스라엘·시리아 회담(골란고원 반환문제)
 - 선 안전보장 요구와 선 반환 주장 대립 불변
 - 기타 이스라엘·요르단, 이스라엘·레바논 회담도 개최
- 평가
 - 동예루살렘 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 미 국무장관의 중동 순방 후 회담 재개 낙관
 - 미국이 양측의 양보를 얻어낼 실질적인 중재안을 내지 않고, 당사국들 간 분리 타결한다는 이스라엘 측 전략을 옹호하는 한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렵다는 우려

중동평화협상. 전4권 (V.3 9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 중동2과

MF번호 2023-144 / 4 / 1-246

1993.9월 개최된 제11차 중동평화회담 진전사항 관련 동향임.

1. 이스라엘·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간 가자지구 및 요단강 서안지구 제리코시 자치부여 합의 (1993.9.13.)

- 경과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양측은 팔레스타인 자치합의안 도출을 위해 10여 차례 비밀접촉한 후, 8.20. 오슬로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에 관한 잠정 합의안 채택
 - 이스라엘 총리실은 8.31. 팔레스타인 자치 허용을 위한 잠정합의안이 각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
- 평가
 - 이스라엘의 점령지 부분자치 허용은 향후 중동평화 정착에 전환점이 될 것
 - 팔레스타인 강경파는 물론 일부 온건파의 반발과 이란을 위시한 범회교권의 반응이 자치 시행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각국 반응
 - EC(구주공동체) 및 서방 국가는 전폭적인 환영을 표시
 - 이집트, 요르단은 적극적인 지지, 대부분의 중동국가는 동 협정 체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 미국 의회는 초당적인 지지를 보이며, 팔레스타인 재건을 위한 국제적 원조 및 잔여 중동지역 현안 타결에 관심 표명

2. 이스라엘·요르단 간 평화협정 기본합의서 서명(1993.9.14.)

-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향후 양국 간 궁극적인 평화협정의 토대가 될 기본합의서에 서명
- 양국의 합의서 서명으로 국경설정은 물론 수자원의 공동이용, 난민문제의 해결, 환경보호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발판 마련

3. 이스라엘·시리아 간 협상(골란고원 문제)

- 1993.9.13. 폐막된 제11차 중동평화회담에서 골란고원 문제에 관한 양측 간 기존 입장 고수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2309

대한민국 외교부

중동평화협상. 전4권 (V.4 10-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 중동2과

MF번호 2023-144 / 5 / 1-117

1993.10.13. 이스라엘·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자치협정 발효 이후 시행위원회 개최 및 외교협상 등 주요 동향임.

1. 연락위원회(1993.10.13., 카이로) 개최

- 페레스 이스라엘 외상과 압바스 PLO 집행위원 참석

2. 가자·제리코 위원회(1993.10.13.~11.2., 타바) 개최

- 기간 중 4차례 개최
- 아몬 샤락 이스라엘 군참모부장과 나빌 샤스 아라파트 PLO 의장 정치고문 참석
- PLO 측은 이스라엘군 철수문제 관련 협상 종단을 선언

3. 이스라엘 수상과 아라파트 PLO 의장 회담(1993.12.12., 카이로)

-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문제 논의

4. 제14차 GCC(걸프협력회의) 정상회담(1993.12.20.~22., 사우디 리야드) 개최

- 주요 결과
 - 안보: GCC 국가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이라크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걸프전 후 창설한 6개 GCC 합동군(Peninsula Shield)의 병력 증강에 합의
 - 중동평화문제: 지난 9.13. 합의된 이스라엘·PLO 평화원칙 선언을 지지하면서 완전한 중동평화를 위해 이스라엘의 1967년 점령지역 철수가 전제조건임을 언급
- 주쿠웨이트대사관 관찰 주요 내용
 - 회원국 간 영토 분쟁 및 이견이 잠재하고 있으며, 아랍국가의 이슬람 문화에서 오는 폐쇄성은 GCC 회원국 간에도 인적 및 물자교류를 저해하고 있는바, 통합군 운영 및 다마스쿠스 선언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실천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임.
 - GCC 각 회원국은 지역안보에 있어서 미국 등 서방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PLO·이스라엘 평화원칙선언 지지의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보이콧' 해제는 GCC 국가에서 먼저 완화된 바 있지만 차후 GCC 국가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함.

구주 의회 정세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3-144 / 6 / 1-56

1992~93년 중 구주 의회의 주요 동향 및 북한의 시도 관련 내용임.

1. 의회 동향

- 1992.1.14. 구주 의회는 Egon Klepsch 기민당 그룹 대표를 의장으로 선출
 - 박준규 국회의장, Klepsch 의장 앞으로 축하 서한 발송
- 본회의
 - 1~2월: 유럽통합 진전, 지역분쟁 해결, 인권문제 등 논의
 - 3월: 유럽의회 선거제도, EC(구주공동체) 경제 활성화, 산업구제정책 등 논의
 - 11월: 의장국 외무장관과 대외관계 집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EC 확대 교섭 목표 및 진전사항, EC 기구 개편 등 논의
- 2.25. EC 집행위 대외관계 집행위원이 외교안보위에 참석하여 관심사에 대해 질의응답
 - 발칸 사태, EC·시리아 관계, EC 확대, EEA(유럽경제지역) 문제 등
- EC 회원국을 대상으로 소통 활동 시도
 - EC 12개국 국회의장 회의(1992.2.20.~22., 스트라스부르) 개최
 - 유럽 사회당 지도자 회의(1992.9.4.~5., 리스본) 개최
- 1993.12.13. 아라파트 PLO 의장, 유럽의회를 방문하여 연설
 - 12.1. 이스라엘 총리, 유럽의회를 방문

2. 북한의 시도

- 1992년 중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유럽의회 대외정책 및 안보분과위 방문을 시도
 - 의회 일정상 1월 방문 제의는 거부되고, 2월 방문 제의는 분과위원장이 거부 결정

2311

대한민국 의회도서관

서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44 / 7 / 1-57

1993년 중 서부아프리카지역 국가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말리 Toureg 반군 문제

- 말리 북부지역 유목민 세력은 식민세력의 동화정책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해오다가 주변 국가(말리, 니제르, 알제리, 부르키나파소)의 민족해방 투쟁을 계기로 Toureg 세력 중심으로 1960.9월 반란 주도
- 동 반란이 무력에 의해 진압된 후, 지역주민들이 인근 알제리, 리비아, 니제르 등으로 이주했다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귀환·결집하면서 1990.7월 2차 반란을 시도
- 1992.4월 말리 정부, 알제리 정부와 반군 간 평화협정 서명
 - 12월 말리·알제리 간의 Toureg 난민 귀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실질적인 진전 시작
 - 다만, 동 지역 분쟁의 근본 문제인 말리 북부지역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리비아의 Toureg 반군에 대한 교사 책동이 차단되지 않는 한 불안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2. 기니비사우 민주화 동향

- 1984.3월 정권 장악 후 9년간 통치해온 Conte 기니비사우 대통령의 군부세력이 기득권 포기를 거부
 - 야권이 지도력 부재로 공동전선 구축이 쉽지 않고 분열상태 지속
- 프랑스, IMF(국제통화기금) 등이 정치개혁과 원조 제공을 연계하면서 최소한의 개혁조치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
 - 동시에 오랜 강권 통치하에서 체제의 비효율성 부각
- 주요 개혁조치 일정
 - 1991.3월 신헌법안 공포
 - 1992.4월 야당 합법화
 - 1993.4월 4/4분기 중 대선 및 총선 실시 결정

3. 기니비사우 대통령 선거(1993.12.22.)

- 독립 이래 최초의 복수 정당제하 대통령 선거에서 Conte 현 기니비사우 대통령이 유효 득표 51.7%를 획득하여 당선
 - 야당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4.1월 대법원이 동 무효 소송을 기각

신유고연방 정세. 전3권 (V.1 1-4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144 / 8 / 1-177

1993년 중 신유고연방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미국 정부, 보스니아 관련 대책 발표(1993.2.11.)

-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 유고 사태 해결을 위한 아래 6개항 발표
 - 보스니아 평화협상에 직접 참여
 -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한 해결원칙 재확인
 - 내전 확산 방지를 위해 신유고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
 - 유엔의 잔학행위 처벌을 위한 형사재판소 설치
 - 평화적 해결안 확정시 동 이행 강화를 위해 미군 파견
 - 사태 해결안 모색 및 이행을 위해 러시아 포함 동맹국과 협조

2. 유고 평화회의(1993.3.11., 파리)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주재
 - 미테랑 대통령은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가 뱅스·오웬 평화안을 수락하도록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보스니아 내전이 계속될 경우 세르비아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 등 경고
 -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서방권의 대세르비아 경제제재 해제를 재요구하고, 추가적인 제재의 도입 가능성을 우려하여 카라지치 세르비아계 지도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요구를 수락
 - 뱅스, 오웬 양 의장은 향후 보스니아 자치주 분할안에 관한 3인중 계파 간 타협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

3. 보스니아 사태 관련 미국의 조치

- 1993.4.25. 클린턴 미 대통령은 미국 내 구유고연방 자산을 동결하고, 유엔 결의에 따라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행 명령에 서명

2313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신유고연방 정세. 전3권 (V.2 5-7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144 / 9 / 1-167

1993년 중 신유고연방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보스니아 사태 및 세르비아계의 평화안 거부

- 1993.5.15.~16.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는 뱀스·오웬 평화안을 압도적으로 거부
 - 동 평화안이 세르비아계의 일방적인 점유지 포기를 규정하고 있어서 원래부터 불만 팽배
 - 금명간 미국, 러시아, EC(구주공동체) 간 공동 대응책 마련 예상(신유고에 대한 제재 이행 강화, 신유고와 보스니아 간 국경 봉쇄, 부분 공습 등)
- 신유고 측은 평화안 수락을 촉구함으로써 세르비아계와의 차별성 부각
 - 반면, 세르비아계 강경파의 입지강화로 사태의 조기 해결이 더욱 어려워짐.

2. 서방권 공동성명 발표(1993.5.22.)

- 서방 5개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보스니아 사태 관련 공동성명 발표
 - 뱀스·오웬 평화안에 기초한 평화협상 강조
 - 6개 지역에 포위된 회교계를 위해 안전지대 설치
 - 기존 안보리 제재조치(대세르비아 압력) 이행 강화
 - 분쟁 확산 방지(코소보지역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국제감시 강화 등)

3. 회교권 7개국, 보스니아 사태 직접개입 결의

- 1993.7.12.~13.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OIC(이슬람협력기구) 특별각료회의는 보스니아 회교도 정부 지원을 위한 행동계획을 결의
 - 사태 해결을 위한 유엔의 기본원칙 설정 및 휴전보장 결의 추진
 - 회교도 보호지역 확대(6→11), 동 지역에 회교권 7개국 병력 2만 명을 UNPROFOR(유엔 보호군)으로 파견
 - 보스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런던회의 긴급 소집
 - 보스니아 정부에 대한 1991.9월 안보리의 무기금수조치 해제

신유고연방 정세. 전3권 (V.3 8-12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23-144 / 10 / 1-194

1993년 중 신유고연방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보스니아 사태 관련 미 국무부 담당관 연쇄 사임

- Marshall Harris 미 국무부 보스니아담당관의 사임을 비롯하여 클린턴 미 행정부의 소극적인 대보스니아 정책에 반대하여 사표를 제출한 국무부 내 사직자 수가 1993.8월 현재 4명으로 증가
- Stephen Walker 담당관(사직자)의 대보스니아 정책 권고안 요지
 - 보스니아 회교 정부의 무장화를 통한 자위력 확보 허용
 - 단일 민주국가로서 보스니아 보존(분할 반대)
 - 보스니아 내 모든 주민의 권리 보장
 - 유엔헌장에 따른 전범 처벌

2. 미국,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에 대해 공습 경고(1993.11.10.)

- 클린턴 미 대통령은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가 사라예보 내 회교도에 대해 포격할 경우 세르비아계 거점을 공습할 것이라고 경고
- 동 경고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공습안 승인(1993.8.9.) 이후 두번째로 대세르비아 강경 대응을 촉구해온 국내외 여론을 등에 업고 회교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중점
 - 사라예보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영토 분할안을 강요하려는 세르비아계 전략을 무력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2315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

예멘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중동1과

MF번호 2023-144 / 11 / 1-124

1993년 중 예멘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남북예멘 통합(1990.5월) 후 최초 국회의원 총선(1993.4.27.) 실시
 - 4.6. 현재 301개 선거구에서 총 4,814명 입후보, 유권자 299만 명 중 269만 명이 유권자 등록
 - 정당별 의석: 국민의회당(121석), 예멘사회당(56석), 예멘개혁당(62석), 바스당(7석), 나세르당(3석), 알하크당(2석), 무소속(47석)
- 북예멘계 국민의회당과 남예멘계 예멘사회당 간 통합 추진(5.10.)
- 신정부 출범(5.30.)
 - 국민의회당, 예멘사회당, 예멘개혁연합 3개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 공식 출범
- 예멘 정부 시정방침 발표(7.4.)
- 예멘 의회, 대통령위원회 선출(10.11.)
 - 살레 예멘 대통령 등 5명, 임기 5년, 위원은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임명
 - 대통령위원회는 남북예멘 통합을 계기로 양 지역 간 권력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예멘 지도자 3명, 남예멘 지도자 2명으로 구성된 통일예멘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 구남북예멘 군 간의 무력충돌 발생(11.18.)

2. 대외 관계

- 남북한 관련
 - 예멘·북한 간 영사협정 체결 및 북한대사 최인섭의 Saleh 대통령 이임 예방(1993.1.9.)
 - 주예멘대사관, 팀스피리트 훈련 홍보자료 배포(2.7.)
 - 예멘 언론, 북한대사관 외교관 주류거래 혐의 보도(4.11.)
- 제3국 관련 동향
 - GCC(걸프협력회의)·예멘 간 관계 개선 추진(4.6.)

자이르 정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44 / 12 / 1-133

1993년 중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야당연합, 모부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축출을 위한 불복종 운동 전개(1993.1.12.)
- 군인 무장 소요 사태 발생(1.28.)
 - 급료에 불만을 품은 군인들, 1.28. 킌샤샤 시내 무차별 약탈 자행
 - 프랑스대사 피살 등 외국인 피해 발생, 프랑스군 150명 킌샤샤 파견대기
 - 1.31. 이후 사태 진정, 2.1. 현재 사망 120명, 중상 250명
- 모부투 대통령, 치세케디 총리 해임(2.5.)
- 미 국무부, 모부투 대통령 조기 사임 촉구(2.19.)
- 모부투 대통령, Birindwa 내각 임명(4.3.)
 - 개혁세력 및 서방의 지지를 받는 치세케디 정부와 대립
 - EC(구주공동체) 및 회원국, 신임내각 불인정 성명 발표
 - 미국, 콩고민주공화국 반민주 인사의 미국 입국 금지조치
- Birindwa 정부, 헌법안 국민투표(7.31.), 대통령 선거(10월), 총선 및 지자체 선거(연말) 실시 발표
- 모부투 대통령, 야당 간 정치협상(1993.9.10.~18.) 개최
 - 과도정부 수상 지명 문제 합의에 실패, 협상이 3개월 이상 교착 상태

2. 화폐개혁 단행

- 내용
 - 화폐단위를 Zaire에서 Nouveaux Zaire로 변경
 - 1NZ를 300만 Z 교환비율로 조정(1993.10.21.)
- 결과
 - 신화폐를 활용하여 체불된 공무원 및 군인 보수를 지불하였으나, 환율 및 물가가 500% 폭등함에 따라 실패

2317

대한민국 외교부서 업무지침

한·자이르 관계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23-144 / 13 / 1-69

1993년 중 한·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콩고민주공화국 화폐 발주

- 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모부투 대통령, 콩고민주공화국 화폐를 한국에 발주할 가능성 제기
 - 벨기에의 화폐 금수조치에 대항

2318

2. 경제 관계

- 1993.11.21.~25. 콩고민주공화국 중소기업 사절단, 방한
 - 사절단 구성: Mayaka Esongama 기업연합회 중소기업위원장을 단장으로 20~25명
 - 주요 일정: 중소기업진흥공단 방문, 삼성전자 수원공장 방문, 대우 방문

공산권 거주 동포 국적 처리 문제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재외국민2과

MF번호 2023-144 / 14 / 1-173

1991~93년 중 공산권 거주 동포의 국적 처리 문제 관련 내용임.

- 러시아연방 등 동구 수교국가 동포의 국적 처리 방침
 - 러시아연방, 동구 수교국가 국적 동포
 - 비공산권 동포와 동일하게 재외공관을 통하여 법무부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한 후 국가안전기획부 등 의견조회를 거쳐 사상 및 독립 생계유지 능력을 검토한 후 선별적 허가
 - 수교국의 북한 국적 소지자 및 무국적자
 - 본인 의사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아 사상 등을 검토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 조치한 후 국민대우
 - 호적 정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취적, 호적 정정 및 정리 후 본인에게 통보
 - 미수교 중국 동포
 -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영주귀국 범위를 국내 직계 존비속과의 결합 희망자와 저명한 과학자 또는 기술자 등으로 확대하여 영주귀국 허가 후 국적 판정
 - 외무부가 영주귀국 허가에 대한 별도 지침 준비

2319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권리

재외국민정책 방향 수립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재외국민1과

MF번호 2023-144 / 15 / 1-229

1993년 중 제14대 대통령 취임 및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재외국민정책 방향 수립 관련 내용임.

1. 남북화해공동위 재개에 대비한 외무부의 '해외동포 권익옹호 및 화해 도모방안' 마련(1993.3월)

2. 1993년 재외국민정책 방향(1993.6월)

- 1993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재외국민 분야 회의에서 토의 결과 및 재외공관장 건의를 토대로 작성
- 연해주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 추진

3. 민자당 '해외동포특별위원회'(1993.7월) 개최

- 해외동포 현황과 정부의 정책자료(외무부)

4. 정부의 새교민 정책 방향 보고(1993.9월, 외무부)

- 문민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교포정책을 유관 13개 부처가 협의한 후 작성

제2차 세계 한민족 대표자 회의(사전준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23-144 / 16 / 1-191

1. 임용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의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1988.11.10.자)

- 노 대통령의 1988.10월 방미 시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세계 한민족 대표자회의에 대한 깊은 관심에 사의를 표명
- 동 대회는 미주 한인 총련이 주관하여 주미국대사관 및 관계부처와 협의,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대통령의 교민청 신설 필요성에 대한 각별한 배려 요청
- 대통령이 1988.10월 뉴욕 교포와 간담회에서 준 금일봉은 동 대회 개최 비용과 총연합회 건물구입 자금 및 세계 한민족 발간에 사용할 예정임.

2. 제2차 세계 한민족 대표자회의 개요 및 주미국대사 건의(1989.5.8., 외무부 영사교민국)

- 회의 개요
 - 일자: 1989.6.22.~25.
 - 장소: 워싱턴 D.C.
 - 대회장: 임용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 참가 인원: 동구권 및 중국을 포함한 세계 40여 개국에서 교민대표 300여 명 참석 예정
 - 주제: 한반도 통일 문제, 교포 2세 교육 문제, 전통 및 민족문화 보존, 한국과의 협력 방안, 이민사회 조기적응 방안 등 협의
- 주미국대사의 동 회의 지원 관련 건의
 - 대통령 치사, 외무부장관 격려사 전달
 - 대통령 명의 기념품 전달
 - 대사 주최 리셉션 및 만찬, 회의 관련 교포지도자, 미 행정부 유관인사 접촉 등 경비 지원
 - 외무부 영사교민국장 등 간부 참석 및 교민지도자와의 간담회 개최

2321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교민국

재외국민 정책심의위원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재외국민1과

MF번호 2023-145 / 1 / 1-216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재외국민 정책심의위원회가 1993.7.19. 외무부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심의 안건: 새로운 재외국민 정책방향, 재외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 참가자(총 19명)
 - 위원장: 외무부차관
 - 위원: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상공자원부, 노동부, 공보처, 병무청 국장급 공무원
 - 참관인: 청와대, 서울대, 해외교포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관계자 등

2. 회의 결과

- 신청부의 교포정책 방향 수립
 - 교포사회의 비정치화 및 자립생활 기풍 함양
 - 교포의 민족교육 지원과 모국과의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증진
 - 교포들이 모국에서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추진
 - 재외공관 중심의 교포행정 강화

3. 참고자료

- 재외국민 정책심의위원회의 자료(1993.6월, 외무부)
- 부처별 재외국민 정책심의위원회 회의안건 검토 자료
- 재외국민 정책심위원회의 안건(7월, 외무부)
 - 새로운 재외국민정책 방향
 - 재외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 재외국민 정책심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7월, 재외국민영사국)

중국지역 독립유공자(신규식 외 5인) 유해 봉환. 전2권 (V.1 1992-93.6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145 / 2 / 1-227

1992~93년 중 중국지역 독립유공자(노백린, 신규식, 박은식, 안태국, 김인전) 5인의 유해 봉환 관련 자료가 수록됨.

1. 노백린, 박은식, 김인전, 안태국, 신규식의 약력 수록
2. 동아일보(1993.4.13.자) 기사 〈신규식 선생 묘소 상하이에서 발견〉
 - 관계자 증언 및 안치 관련 내용 수록
3. 1993.6.4. 상하이총영사관 발신 문서
 - 박은식 등 4인 지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관련 이장 경위, 비용 등 기재
 - 신규식 지사 유해 관련 1922.9월 만국공묘안창(1967년 비석파괴) 사실과 관련 비용 기재
4. 1993.6.8. 상하이총영사관의 외무부 및 국가보훈처 앞 발신 문서
 - 별첨자료: 한국 박인식 등 5인의 이장 정황에 관한 회고록 포함
 - 각종 비용 기재(운수비, 계획측량 토지, 제도, 시멘트·도로, 식수룩화, 묘혈 비석 건립, 안장 정비, 묘 일상관리비 등)

2323

대한민국외교부사외안

중국지역 독립유공자(신규식 외 5인) 유해 봉환. 전2권 (V.2 1993.7-12월)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23-145 / 3 / 1-225

1993년 중 중국지역 독립유공자(노백린, 신규식, 박은식, 안태국, 김인전) 5인의 유해 봉환 관련 자료가 수록됨.

1. 유해봉환 약정서

- 대한민국 광복회가 상하이시 만국공묘에 안장되어 있는 박은식, 노백린, 신규식, 김인전, 안태국 등 대한민국 5위 선열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봉환함에 있어 위임을 받아 만국공묘관리처와 체결한 약정 내용

2324

2. 1993.7.16. 주중국대사관 앞 발신 문서

-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관련 준비 목록, 사전준비반 일행 명단

3. 1993.8.5. 유해봉환단 행사 일정

4. 이장협의회서

- 대한민국 광복회가 만국공묘관리처와 체결한 약정 내용

5.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후속조치

- 1993.9.30. 만국공묘측 5위 선열 묘지에 기념비석 설치

세계 한민족 축전. 전2권 (V.1 2-4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재외국민1과

MF번호 2023-145 / 4 / 1-147

1993.2~4월 중 제3차 세계 한민족 축전 개최 준비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88년 '한민족 대회'는 해외동포 체육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건의
 - 해외동포로 하여금 금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동질성 확인 및 연대감 조성
- 체육부 및 대한체육회는 주관기관으로 재단법인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를 발족
- 1989.9월(제1회) 및 1991.9월(제2회) 한민족 체전 개최
- 체육 행사 이외 문화·학술 행사를 망라함으로써 제3회 대회부터는 '세계 한민족 축전'으로 변경

2325

2. 제3차 축전 개요

- 주관: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
- 행사계획
 - 청소년 행사(1993.7.23.~30.): 민속놀이, 도자기 빚기, 예절 배우기 등
 - 체육·문화·학술 행사(9.17.~24.): 씨름, 널뛰기, 한민족예술제, 가요제, 학술회의, 통일문제 토론 등
- 장소: 서울, 대전 등
- 대상: 해외동포 또는 후손
 - 해외 주재 한국 공관에서 122개국에 배정된 1,300명을 선발하여 초청
 - 주최 측에서 체재 경비 및 항공료 일부 부담

3. 특이사항

- 지원자가 많아 다수 공관에서 초청대상 규모를 늘려줄 것을 건의
 - 참가하지 못하는 동포를 중심으로 위화감 조성
-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의 지위와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부정적 입장
 - 주중국대사관에서는 개인 명의로 친지방문 목적 초청이 바람직하다고 평가

세계 한민족 축전. 전2권 (V.2 5-9월)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재외국민1과

MF번호 2023-145 / 5 / 1-283

1993.5~9월 중 제3차 세계 한민족 축전 개최 관련 내용임.

1. 축전 참가자 선정

- 해외 주재 한국 공관에서 주재국에 배정된 인원의 해외동포를 선발하여 본국에 명단 전달
 - 각국 사정으로 신청서 접수에 문제가 발생되고 외교행랑 일정 등으로 절차 지연
-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해외 공관은 참가자 선발과정을 계속 진행하여 결과를 본국에 전달

2326

2. 문제점에 대한 논의

- 1993년 공관장회의에서 문제점 제기
 - 예산낭비 요소가 있고, 해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 유발
 - 일부 교민행사로 변질되고, 참가자 선정 문제 등으로 위화감 조성
- 공관장회의에서 제기된 개선방안을 문화체육부에 전달
 - 해외동포 본인 부담의 자율참여 원칙하에 가급적 많은 인원 참가 유도
 - 매 2년에서 매 3~4년으로 개최
 - 동포 2세 중심으로 민족교육의 계기로 전환
 - 일부 공관은 폐지 또는 전국체전과의 통합을 건의

해외 한민족 대표자 회의, 제4회. 서울, 1993.5.11.-13.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재외국민1과

MF번호 2023-145 / 6 / 1-121

1993.5.11.~13. 서울에서 개최된 제4회 해외 한민족 대표자 회의 관련 내용임.

1. 해외 한민족 대표자 회의 개요

- 1987.11월 재일본 및 재미 동포를 중심으로 해외동포의 유대강화 및 지위향상을 위해 발족
-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매 2년 총회 겸 해외 한민족 대표자 회의 개최
- 제1회 회의(1987.11월, 도쿄), 제2회 회의(1989.6월, 워싱턴 D.C.), 제3회 회의(1991.6월, 베를린) 개최

2. 개최 준비

- 1993.5월 서울 개최 추진
- 한국 내 총선 및 신정부 출범 등 고려
- 회의 주제는 “평화공존시대를 향한 해외 한민족의 역할”로 결정
- 회의 종료 시 관행대로 결의문 및 대정부 건의사항 채택
- 한국 정부에 대통령 치사 및 외무부장관 격려사 요청

3. 참가자

- 약 450명

4. 주요 일정

- 회의 일정: 개·폐회식, 전체회의, 분과회의, 공동기자회견
- 정부 협조: 대통령 예방, 개회식 총리 치사,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 회의 주제와 결의문 및 대정부 건의사항 채택은 계획대로 진행

2327

대한민국 의정망루

재일본 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23-145 / 7 / 1-190

1993년 중 재일본 한국인 지방참정권 등 지위에 관한 동향임.

1.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 지위 관련 동향

- 일본의 외국인등록법 개정에 따른 지문날인 폐지,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 등 현지 언론보도
- 재일본 외국인 등록 현황 자료: 재일본 한국인은 1992년 말 688,144명(주일본대사관 보고)
- 제49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일본 인권보고서에서 재일본 한국인 등 일본 내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대우가 인권규약에 위반됨을 지적(주제네바대사관 보고)

2328

2. 재일본 한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지자체 결의 등

- 일본 지자체 최초로 오사카부 기시와다시 일·한 우호친선의원 연맹 주도로 1993.9.9.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 및 인권보장 확립에 관한 결의가 동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 시의회는 동 결의안을 중앙정부에 발송하여 국정에 반영 요청
- 가와사키시는 외국인 지위 향상 차원에서 재일본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실현 시 직원으로 채용, 복지 혜택 부여 등 검토
- 시가현 요카이치 시의회도 10.1. 정주 외국인의 참정권과 인권 보장에 관한 결의 통과
- 니가타현 민단지방본부는 현 의회에 정주 재일본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 (12월)
- 교토부 의회는 12.17. 정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의 결의 채택
- 후쿠오카현 오무타 시의회는 12.17.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등 인권보장에 관한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3. 기타 재일본 한국인 관련사항

- 일본 내 한국인 소매치기 범죄 현황 및 대책 보고(주일본대사관)
- 외무부는 일본 내 소매치기단의 국익손상 문제와 관련하여 여권발급 심사절차를 보다 강화
- 참고자료
- 재일교포 실태조사 출장보고서(1993.12월, 외무부 재외국민영사국장)

미국(Los Angeles시) 흑인 폭동 재발방지 대책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3-145 / 10 / 1-143

1993년 중 미국 로스앤젤레스 로드니킹 사건 재판 결과 관련 흑인 폭동 재발방지를 위한 공관의 조치 내용임.

1. 로드니킹 사건 재판 현황(1993.4.9.~17.)

- 1992년 L.A. 폭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로드니킹 사건 재심이 1993.4.9.부터 평결작업 개시

2. 미국 주재 각 공관 조치사항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로스앤젤레스 시장, 캘리포니아 주지사, 기타 고위간부를 접촉하여 한국 교민 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 요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관계자와 한인회 간 간담회 개최, 교포 단체와 비상연락망 확립
- 기타 공관: 관할지역 관계 당국과 접촉하여 한인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조치를 요청하고, 폭동 재발 시 대비책 마련

3. 재판 평결 결과 및 로스앤젤레스 현지 동향

- 평결 결과: 유죄 2명, 무죄 2명으로 결과 발표(1993.4.17.)
- 미국 각계 반응
 - 클린턴 미 대통령, 월슨 캘리포니아 주지사, 브래들리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적절한 평결이라고 평가
 - 로스앤젤레스 흑인 과격단체장은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언급
- 로스앤젤레스 현지 동향
 - 한인타운도 평온한 가운데 정상 활동
 - 경찰, 주방위군 등은 비상대기 상태이나, 특별한 사건은 없음.
- 공관 조치사항
 - 미 국무부로부터 평결 발표계획을 사전에 연락 받고, 한인사회에 전파하여 사전 대비하도록 조치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평결 직후 소요에 휩싸이지 않도록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표

2329

대한민국 외교부

대중국 동포정책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재외국민2과

MF번호 2023-145 / 11 / 1-144

1.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관 동포정책 세미나(1993.9.15., 서울) 개최

- 주제: 해외동포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
- 사회: 유재건 변호사
- 주제 발표: 이광규 박사(서울대 교수)

2.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영주귀국 문제

- 현황
 - 1988.7.7. 선언 이전에는 한·중국 이산가족 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국내 거주 직계 존·비속 신병 인수 및 재정보증의 경우 영주귀국 허가
 - 7·7 선언 및 후속조치로 국적회복, 영주귀국을 원칙적으로 금지
- 정부 대책
 - 당분간 현행 지침대로 시행
 - 중국동포 실태 파악을 위한 정부합동조사단 파견은 보류

3. 중국 국적 동포의 한국 국적 취득 문제

- 한국 입장
 - 1990.6월 중국 거주 독립유공자 영주귀국지침을 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에 대하여 영주귀국 인정
 - 1993.8월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덕적인 측면과 제반 대내외적 요인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영주귀국 문호를 확대한다'는 원칙적인 방침 수립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 진행

타지키스탄 내전에 따른 한인난민 지원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재외국민2과

MF번호 2023-145 / 12 / 1-199

1992.8월 타지키스탄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거주 한인 보호를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함.

1. 타지키스탄 내전 동향

- 1992.8월 이후 타지키스탄 내 다수인 이슬람교도로 구성된 반정부 야당세력과 소수의 구공산주의 세력 간의 권력투쟁으로 유혈사태 지속
 - 반정부 이슬람 세력은 아프가니스탄의 지원하에 구공산주의자를 몰아내고 이슬람 정부 수립을 추구
 - 이재민 50만 명 발생, 국내 생산 23% 감소 등
 - 1993.1월 이후 이슬람 교조주의 반군들의 세력 약화

2. 타지키스탄 내 한인 지원 활동

- 타지키스탄 내 한인 현황
 - 한인 13,000여 명 중 약 6,000명이 모스크바, 연해주로 이동, 나머지는 잔류
- 한국 정부의 타지키스탄 한인 지원활동
 - 1992.12월 교민단체에 지원금 및 타지키스탄 정부에 담요, 의료 등 전달
 - 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선명회,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한 인도적 지원
 - 1993.2월 난민수용소에 매트리스 1,500매, 의약품 등을 타지키스탄 정부에 전달
 - 5.30.~6.6. 안무혁, 이부영 국회외무통일위원, CIS(독립국가연합) 내 고려인 실태조사를 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방문

3. 타지키스탄 정부, 1993.3.10. 한국의 의약품 지원에 대한 감사공한 전달

2331

대한민국 외교부

러시아 거주 무국적자의 영주귀국 신청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재외국민2과 / 국제연합2과

MF번호 2023-145 / 13 / 1-205

1992~93년 중 러시아 거주 무국적자 동포의 영주귀국 신청 처리 관련 내용임.

1. 영주귀국 규정 및 절차

- 구사회주의권 거주 무국적 교포는 법무부의 관련 방침에 따라 영주귀국 가능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자격 취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거주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영주귀국 신고
- 반면, 영주귀국 신고 급증을 우려,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신고 접수
 - 영주권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거주여권 사본 제출이 필수
 - 재외국민등록 신청—취적 신청—거주여권 신청—영주귀국 신고—거주여권 무효 신청—신규 주민등록 신고 등 절차 완료 필요

2. 서울 태생 무국적자 '김윤종' 사례

- 1992.6.5. UNHCR(유엔난민기구) 도쿄 사무소는 서울 태생 무국적자 '김윤종'의 희망사항 긍정 처리를 요청
 - 김윤종은 체류비자 연장 및 국적 회복 희망
- 1993. 4.25. 김윤종은 귀국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취적 허가 결정에 따라 구로구청으로 부터 취적

3. 황해도 태생 무국적자 '황익걸' 사례

- 1992.6.18. 영주목적으로 귀국한 '황익걸'은 정부합동민원실에 영주귀국 허가 신청
 - 신청 이전에 국적 취득 관련 민원을 대통령비서실에 기제출
- 1993.4.16. 외무부는 황익걸의 신규 주민등록 관련 민원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고 회신
 - 4.27. 외무부는 서울시를 관할하는 내무부에 주민등록 취득이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

재사할린 무연고 동포 영주귀국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재외국민2과

MF번호 2023-146 / 3 / 1-216

1993년 중 사할린 거주 무연고 동포 영주귀국 관련 내용임.

1. 추진 배경

- 1992.2월 사할린 고려인협회 등은 사할린 거주 무연고 동포 1세의 영주귀국을 청와대에 건의
- 관계부처 대책회의는 무연고 동포 1세의 영주귀국에 합의
- 외무부는 사할린동포 1세 중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무연고 동포 77명을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1992.9.29. 영주귀국시켜 광림교회가 운영하는 '사랑의 집'에 수용
- 1993.2월 대한적십자사는 잔류 무연고 동포 1세 45명의 영주귀국 추진

2. 진전사항

- 1993.3.20. 사할린 잔류 무연고 동포 1세 42명이 영주귀국하여 광림교회 '사랑의 집'에 입주
- 이로써 사할린 거주 무연고 동포 1세는 전원 영주귀국
- 4월 외무부는 법무부, 거주 지자체와 함께 영주귀국 동포의 국적 및 주민등록 문제 처리
- 귀국자 전원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6.23. 대한적십자사는 추가로 사할린 무연고 동포 82명의 영주귀국을 외무부에 신청
- 재검토 결과 무연고자는 58명으로 확인
- 12월 외무부는 58명을 영주귀국하도록 하고, 전원 동일한 양로원에 입주 추진
- 대한적십자사와 보건사회부는 입주시설을 점검하고 무연고 동포의 선택 여부 결정

3. 무연고 동포 영주귀국 사후 평가

- 일제 강제징용 보상을 위한 집단행동 가능성 대두
- 영주귀국 동포의 30%가 무연고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
- 일부 유연고 동포는 사할린 재귀환 희망
- 사할린에 남겨진 재산 환수 및 국내 취업 알선 요청

2333

대한민국 외교부

재러시아 한인의 강제이주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재외국민2과 / 동구1과

MF번호 2023-146 / 4 / 1-166

1992~93년 중 러시아 거주 한인(고려인)의 명예회복 추진 관련 내용임.

1. 고려인의 명예회복 진전사항

- 1991.4.26. 러시아는 '피압박 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포
- 1992.8월 국제고려인협회는 '재러시아 고려인 권리회복에 관한 결의안'을 최고회의에 제출
- 1993.3.31. 러시아 최고회의 민족원에서 결의안 통과
- 1993.4.9. 결의안 공포 및 발효

2334

2. 결의안 주요 내용

- 고려인의 1937년 강제이주 및 탄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복권 부여
- 러시아 및 구소련공화국 거주 고려인의 원거주지로의 귀환을 허용하고 지원
 - 토지 제공, 특별신용 공여 방안 마련, 구소련 거주 고려인에게 러시아 국적 부여
- 고려인의 민족문화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마련

3. 참고사항

- 1993.1.27.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최고회의의 심층적 검토를 요청하는 서한 발송
 - 한국 언론은 옐친 대통령이 결의문의 심층 검토를 요청 대신 반대한 것으로 보도
- 7.29. 옐친 대통령은 '피압박 민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보완 개정법 공포
 - 개정법은 7.1.자로 소급 서명
 - 탄압받은 민족과 개인에게 적용하며, 보상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보상 금액은 제외

CIS(독립국가연합) 거주 동포 모국 방문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재외국민2과

MF번호 2023-146 / 5 / 1-259

1993년 중 CIS(독립국가연합) 거주 동포의 모국 방문 관련 내용임.

1. 대한적십자사 주관 사할린동포 모국 방문사업 추진

- 1993년 제38차~48차 방문 추진 및 각 회차별 계획서
 - 제38차 방문: 3.2.~11. 103명(연고자 39명, 무연고자 64명)
 - 제39차 방문: 3.11.~20. 109명(연고자 7명, 무연고자 102명)
 - 제40차 방문: 4.12.~21. 104명(무연고자)
 - 제41차 방문: 4.21.~30. 115명(연고자 13명, 무연고자 102명)
 - 제42차 방문: 5.17.~26. 109명(연고자 5명, 무연고자 104명)
 - 제43차 방문: 5.26.~6.4. 106명(연고자 12명, 무연고자 94명)
 - 제44차 방문: 7.1.~11. 145명(연고자 및 무연고자 구분 없음)
 - 제45차 방문: 9.3.~14. 108명(연고자 10명, 무연고자 98명)
 - 제46차 방문: 9.14.~23. 113명(연고자 7명, 무연고자 106명)
 - 제47차 방문: 10.11.~20. 116명(무연고자)
 - 제48차 방문: 10.20.~29. 112명(연고자 1명, 무연고자 111명)

2. CIS 내 중앙아시아지역 거주 동포 한국 방문

- 기간: 1993.11.3.~10.
- 방문단: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거주 동포 30명 및 러시아 거주 국제고려인협회 인솔자 2명 등 32명
- 초청자: 해외동포 모국방문위원회(회장: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 주요 일정
 - 통일 연수, 독립기념관, 경주고적 관람, 망향의 동산 참배
 - 대전 엑스포, 삼성전자,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등 산업시찰

2335

대한적십자사
국제고려인협회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경제자치구 설립 추진문제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동구1과

MF번호 2023-146 / 6 / 1-98

1991~93년 중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경제자치구 설립 추진 문제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과

- 1991.9월 전소련고려인협회는 '재소련 고려인 권익옹호 및 이주문제 위원회'를 구성,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이주에 대한 공개사과, 국가보상 및 고려인 자치지역 설립 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9.2. 러시아 최고회의 민족원 내 민족문제위원회(위원장: 메드베제프 의원)에 제출
- 전소련고려인협회는 1992.1월 고려인 경제특구를 연해주지역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열린 러시아 대통령, 연해주 주지사 및 나홋카 시장에게 각각 제출
 - 연해주 나홋카 북방지역에 약 2만 평방킬로미터의 경제자치구역을 설립, 한인 20만 명 집단 거주
 - 러시아는 자원·원료, 한국은 자본·기술, 고려인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합작형식으로 운영

2. 문제점

- 러시아 내 소수민족의 자치 확대 및 독립운동이 대두됨에 따라, 자치지역 허용 시의 문제점 등을 고려한 러시아 중앙정부의 부정적 태도
- 이주 대상지역인 러시아 극동 현지 주민들의 반발
- 구소련 붕괴에 따라 CIS(독립국가연합) 내 거주 교민들 간의 연대감 와해
- 이주운동에 필요한 경비조달 어려움

재중앙아프리카공화국 한인회

생산연도 1989-1993

생 산 과 북서아프리카과

MF번호 2023-146 / 7 / 1-23

1989~93년 중 재중앙아프리카공화국 한인회 관련 문서임.

1. 한인회 결성

- 1989.11.1. 결성
- 초대 회장에 신장곤 정부파견 의사를 선임

2. 현안

- 중앙아프리카 태권도 사범, 보석상 개업 관련 분쟁
 - 1991.11.30.자로 김 사범의 근무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추후 계약 연장 불허 조치
- 교민 보조금 지원 건의
 - 주카메룬대사관, 겸임국 교민회에 대해서도 교민 보조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조치 건의

2337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

해외이주정책 관련 자료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해외이주과

MF번호 2023-146 / 9 / 1-68

1993년 중 해외이주정책 관련 자료 내용임.

1. 해외이주정책 관련 보고서 목록

- 역이주 대책
 - 해외이주 현황 및 정책, 해외이주 형태의 변화, 역이주 현황 및 증가 원인, 대책
- 해외이주 정책
 - 해외이주 확대 대책, 역이주 대책, 민간이주 알선업체 신규 허가,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이주 업무, 남미농장 처리대책
- 해외이주정책 검토(1993.10월, 외무부 해외이주과)
 - 해외이주 현황 및 정책 추이, 해외이주 여건 변화, 해외이주 문제점 검토

2. 해외이주 알선업체 신규 허가 문제(1993.11월, 외무부 해외이주과)

3. 한국국제협력단 업무 협의 회의록

- 일시 및 장소: 1993.11.30. KOICA
- 참가자: KOICA 해외이주 담당 이사, 외무부 해외이주과장
- 회의 목적: 해외이주 관련 업무 협의(알선업 및 알선수수료 관련 현황 검토, 남미농장 관리, 역이주 현황, 알선업체 허가 관련 등)

4. 병역의무자 해외이주 신고 실태 분석(1993.12월, 한국국제협력단)

김포공항 경유 제3국인의 캐나다 불법 입국 방지

생산연도 1988-1993

생 산 과 영사과 / 북미1과

MF번호 2023-146 / 10 / 1-48

1988~93년 중 김포공항을 경유하는 제3국인의 캐나다 불법 입국 방지 관련 내용임.

1. 캐나다 정부의 요청(1989.1.13.)

- 김포공항을 경유하는 제3국인의 캐나다 불법 입국자 수가 증가되고 있음.
 - 서류위조를 하거나 마약 관련자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김포공항 구역 내에서 캐나다 담당자가 캐나다에 입국하는 제3국인에 대해 사증 심사 및 관계서류를 검색할 수 있도록 요청함.

2. 외무부 조치사항(1992.2.1.)

- 주한 캐나다대사관 측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사 측과 협조하여 검문 하는데 대해 법무부 측이 배려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

2339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

재독일 한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문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23-146 / 15 / 1-54

1993년 중 재독일 한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문제 관련 내용임.

1. 문제 경위

- ‘독일 유학 100여 명 차별대우 시정 촉구’(1993.3.1.자 중앙일보), ‘한국유학생 차별 말라 독일 유학생 102명 성명’(3.2.자 한겨레신문) 기사 보도 및 ‘독일 정부의 주재 한국인에 대한 부당성 시정 요망’(4.22.자) 내용의 민원이 정부합동민원실로부터 외무부로 이첩되어, 한국 유학생 중도 귀국문제 제기

2340

2. 독일 정부 입장

- 유학 목적 10년 이상 체류 불가는 법령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별 외국인의 체류 사실에 비추어 취해지는 주정부의 행정적인 조치임.
- 10년 제한 방침은 그 취지가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여 실제로는 학업을 하지 않고 취업 등의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10년 제한의 취지, 운용에 비추어 이 문제를 정부 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체류연장 문제는 외국과 교섭사항이 아니라 독일 측이 건별로 검토, 결정할 사항임.
- 제한 조치는 어느 국가 국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

3. 해당 재외공관 조사 보고

- 주함부르크총영사관이 파악한 유학생들에 대한 독일 당국의 체류허가 현황 보고(1993.5.21.)
- 주독일대사관 교육관이 파악한 청원인 유학 실태와 주장, 동인이 재학 중인 쾰른대학 관계자 의견, 대사관 검토의견을 외무부로 보고(5월)

재아르헨티나 동포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문제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23-146 / 16 / 1-64

1. 아르헨티나 거주 교포의 불법체류자 고용사태

- 사태 현황
 - 아르헨티나 언론은 한인사회가 인근 국가 출신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여 노동을 착취하는 것으로 보도
 - 아르헨티나 당국은 1993.3.31. 컴퓨터·자수공장을 운영하는 교포 김씨를 구속
 - 내무부, 노동부 및 국세청 조사관 등 80여 명으로 구성된 관계관들이 4.20. 한인 밀집지역 봉제공장 및 식품점 등을 급습하여 노동조건 및 탈세 혐의를 조사 실시함.
- 현지 반응
 - 언론 및 방송 등은 한인사회의 부정적 측면 확대 보도
 - 노동 착취면에서 주재국 노조개입 태세
 - 인권문제 차원에서 일부 종교계 인사들 문제 제기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조치
 - 주재국 언론과의 인터뷰 통해 현지 언론보도의 편파성 지적
 - 한인공장 실태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현지 한인회, 언론과 대책 협의
 - 동 사태에 대한 교민사회 대처방향 관련 공관 담화문 발표 등

2. 외무부, 중남미 및 캐나다 투자이주 실태조사 출장(1993.6.26.~7.7.)

- 출장 목적
 - 한국 국민의 대베네수엘라 투자이주 진출 타당성 조사
 - 아르헨티나 및 캐나다 투자이주자의 현지정착 실태 파악
- 출장 국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캐나다 토론토
- 조사 내용
 - 교민 정착 실태 파악, 한국 국민의 해당국 이민 진출에 대한 현지 의견, 이주알선, 기관에 의한 이주자 사후관리 등
- 종합 평가 및 건의
 - 베네수엘라: 중소기업형 제조업 분야 이민사업 추진 바람직
 - 아르헨티나: KOICA에 스페인어 강좌 개설, 현지 정착에 1~2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1~2년 이내 이주자에 대하여는 현지 KOICA 소장 재량으로 현지 담보물에 의거한 사업자금 융자,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지도 과정 신설 필요
 - 캐나다 토론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교민의 업종 다양화 시급

2341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 업무 개선(반납·훼손·재발급)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여권1과

MF번호 2023-146 / 17 / 1-44

1990~93년 중 여권 업무 개선 방안 관련 내용임.

1. 분실 및 훼손 여권 재발급 요건 강화

- 1990.3.15.부터 분실 및 훼손 여권의 경우 1회에 한해 재발급하고, 이후에는 1년간 재발급 불허
 - 해외 불법취업 등 부정한 의도로 여권 분실 및 훼손사례 증가에 대처
- 분실 및 훼손 여권 재발급 시 합리적 신원조사 방안
 - 유효기간 및 여권번호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새로운 신원조사 불요
 - 이전 신원조사 실시가 3개월 미경과이거나, 새로운 여권번호 부여 시 신원조사 재 실시

2. 1년 단수여권 발급 요건 강화

- 1년 단수여권 발급 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여권 재발급 불허
 - 해외 불법취업 내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증 취득 목적으로 악용사례 빈번

3. 유효 여권 반납 요건 명시

- 유효 여권 반납사례 증가에 따라 반납 요건 명확화
 - 소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 구여권에서 신여권으로 교체
 - 3년 유효기간을 5년으로 변경
 - 상용 목적 복수여권의 소지자가 소속 회사 퇴직 시

4. 보관 여권 처리지침 정리

- 다양한 경우로 보관 중인 여권이 증가하여 조치 필요
 - 무효 조치된 여권은 수령 즉시 폐기
 - 국내 습득 여권은 재발급 시 반환, 공관 습득 여권은 수령 즉시 폐기
 - 일본대사관 반송 여권은 접수 1년 경과 후 직권 폐기

5. 여권 업무 개선조치

- 1993년 신정부 출범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일환으로 1993.4.26.부터 실시
 - 여권반납제한제도 폐지, 훼손 여권 재발급제한제도 폐지, 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 5년 부여
 - 훼손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간소화, 국내체류 이민자의 거주여권 재발급 절차 개선

여권 업무 실무편람 개정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여권1과

MF번호 2023-146 / 18 / 1-124

1993년 중 여권 업무 실무편람 개정 관련 내용임.

1. 추진 배경

- 지속 및 대폭 개선된 여권발급 업무를 반영한 실무편람 필요
 - 1992.7월 실무편람 개정 이후 여권발급 업무 꾸준히 개선
 - 1993년 신정부 출범으로 추진된 행정쇄신정책의 일환으로 여권발급 업무를 대폭 개선

2. 주요 개선내용

-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 재발급 및 반납 제한제도 폐지
- 특정국가 여행제도 개선
- 시·군 여권 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 항목 신설
- 수수료 항목 신설
-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항목 폐지
- 주민등록 오류정정 재발급 항목 신설
- 중국동포에 대한 여행자증명서 발급 항목 신설
- 거주여권 무효 확인 항목 신설

3. 여권 업무 실무편람 개정안

- 개정안 상세 첨부

2343

대한민국 여권관리처 여권과

여권발급 취급기관 확대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여권1과

MF번호 2023-146 / 19 / 1-215

1992~93년 중 일반여권 발급신청 접수기관 확대 관련 내용임.

1. 시험적 실시

- 1992.1.6. 경상북도는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를 도와 함께 시·군에서도 허용할 것을 건의
 - 1.13. 외무부는 경상북도 시·군에서 시험적 실시를 결정
 - 2.15. 경상북도는 접수기관 확대를 시험 실시
- 여타 지자체 사례
 - 경기도는 한강이북출장소, 강원도는 동해출장소 설치를 건의

2. 전국적 실시

- 1993.3.26. 외무부는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기관 확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방침 결정
 - 시·군청에서 여권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도청에서 여권을 제작하여 시·군청으로 송부
 - 실시 및 문제 해결방안은 각 도청과 지속 협의
- 5.12. 외무부는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기관을 7.1.부터 시·군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
 - 다만, 1시간 생활권인 제주도는 제외

1993년도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전2권 (V.1 1992)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 국유재산과

MF번호 2023-147 / 1 / 1-296

1992년 중 재외공관의 국유화 사업 관련 내용임.

1. 1993년도 국유화 사업 추진 협의 대상 공관(안)

- 1993년 계속 사업
 - 주캐나다대사관 청사 신축
 - 주벨기에대사관 청사 신축
 - 주미국대사관 구청사 수리
- 임차료 과다소요 공관(공관원 5인 이상)
 - 청사: 주EC(구주공동체)대표부, 주스웨덴대사관, 주체코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관저: 주폴란드대사관, 주체코대사관, 주루마니아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 국유화 사업 건의 공관
 - 주영국대사관 청사 이전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청사 매입
 - 주마이애미총영사관 관저 매입

2. 1993년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조정 내역

- 계속 사업
 - 주캐나다대사관 청사 신축
 - 주벨기에대사관 청사 신축
 - 주이란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 신규 사업
 - 주뉴질랜드대사관 관저 신축
 - 주영국대사관 청사 매입
 - 주EC대표부 청사 매입
 - 주폴란드대사관 청사 및 관저 신축
 - 주콜롬비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 매입
 - 주방글라데시대사관 청사 신축부지 매입
 - 주나고야총영사관 청사 신축부지 매입

2345

대한민국 외교부

1993년도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전2권 (V.2 1993)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 국유재산과

MF번호 2023-147 / 2 / 1-143

1993년 중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관련 내용임.

1. 외국의 국유재산관리 현황 파악

- 외무부는 1993.1.19.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추진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유재산 취득 업무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강구에 참고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파악하여 1.31.까지 보고하도록 주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벨기에,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대사관에 지시함.
 - 외무성 내 재외공관 국유재산 매입, 신축, 증·개축, 관리 업무를 관장(전담)하고 있는 부서 또는 별도기구 및 구성인원·직종별 현황
 - 해외공관 신축 또는 매입 시 건축시공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파견, 계획, 설계, 시공 등 공정을 담당하게 하는지 여부(파견인원 구성과 예산 등 기타)
 - 해외 국유재산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보수전담 기구의 설치, 순회점검 운영 여부
 - 기타 해외공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외무성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 등

2.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수정계획(1993.7.19.)

- 당초 계획
 - 1991~94년간 청사 28동, 관저 15동 국유화 추진 목표
- 수정 필요성
 - 1994~97년간 국유화 사업은 주요 공관 중 미 국유화 공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임차료가 청사(연 15만 달러), 관저(연 10만 달러) 초과 공관, 직원주택은 참서관급 이상 주택 중 연 5만 달러 초과 공관 중심으로 추진 예정
- 수정 방향
 - 기본원칙: 청사 및 관저 국유화는 주요 공관 중 미 국유화 공관, 임차료 과다지불 공관 우선 추진
 - 세부 추진계획: 당초 1994년에서 1997년까지 3년 연장

주블라디보스톡(러시아)총영사관 관저 및 직원주택 신축 검토

생산연도 1993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147 / 3 / 1-8

1.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총영사 관저 및 직원 주택 신축 건의(1993.2.12.)

- 대지
 - 규모: 3천여 평
 - 임차 기간: 50년
 - 소유 주체: 블라디보스토크 시청
- 관저 및 직원들의 주택임차료를 매월 건축비로 지불
- 주택 소유 주체: 대한민국 정부
- 현지 물가 급등추세 및 적정주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불가피한 대안으로 제시

2. 외무부 검토의견

- 1993년도 예산에 미반영으로 조속한 추진은 어려우나, 연말 국유화 사업 계획 변경 검토 시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
- 다만, 대지 임차기간은 50년에서 90년 이상으로 교섭하도록 공관에 지시

2347

대한민국 외교부서 업무지침

주태국대사관 신축 청사 및 관저 입주

생산연도 1992-1993

생산과 국유재산담당관실

MF번호 2023-147 / 4 / 1-86

1992~93년 중 주태국대사관 신축 청사 및 관저 입주 문제 관련 내용임.

1. 주태국대사관 이전

- 추진 경위
 - 1991.12.10. 주태국대사관, 하자 조사 요청
 - 1992.1.21. 외무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조사
 - 하자 보수 처리
- 시설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290평
- 이전 문제점
 - 구관저 매각 지연
 - 신관저 실내 보완공사(인테리어) 요청 경비 과다(약 30만 달러)
 - 일부 하자 공사 진행
- 추진 방향
 - 신관저 이전 조속 추진
 - 구관저 매각 적극 추진
 -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 추가 인테리어 공사 가급적 차후 추진

2. 신관저 입주

- 1993.9.5. 신관저 입주
- 구관저 매각 문제
 - 방콕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조기 매각 불리
 - 부동산 경기 동향을 주시한 후 매각 결정이 바람직

주Toronto(캐나다)총영사관 청사 매입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유재산과

MF번호 2023-147 / 5 / 1-274

1992~93년 중 주토론토총영사관 청사 매입 관련 내용임.

- 건물 개요
 - 규모: 대지 684평, 연건평 501평
 - 건축 연도: 1923년 건축
- 소요예산: 497만 달러
 - 건물 매입가: 475만 달러(570만 캐나다달러)
 - 부대 경비: 22만 달러
 - 감정가: 518만 4천 달러
- 매입 경위
 - 1992.9.3. 외무부는 3백만 달러 범위 내에서 추진 지시
 - 1992.10.21. Bloor에 소재한 대상건물의 가격인상 요구로 현 청사 구입을 재건의
 - 1992.10.22. 외무부는 현 청사 구입 지시
 - 1992.12.30. 계약 체결
 - 1993.3.28. 현 청사 입주

2349

대한민국 외교부
외국관계처
외국관계

주독일대사관 청사 매입 검토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 국유재산담당관실

MF번호 2023-147 / 6 / 1-254

1990~93년 중 외무부는 동독과의 수교, 통일 독일의 베를린 수도 이전 등에 대비하여 베를린 시내에 주독일대사관 청사·관저용 건물 매입 또는 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검토함.

1. 1990년 검토

- 2월 주독일대사는 독일 통일에 대비하여 주독일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
- 6월 동베를린지역 내 서방국가들의 주동독대사관 청사 보유 현황, 동독 내 공공건물 현황, 동베를린 부동산 매매 현황 등을 조사
- 외무부는 서베를린 내 적정건물 또는 신축용 부지 매입을 우선 추진하되, 수도 이전 시 문제는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수립
- 10월 주독일대사관은 베를린 시내 및 인근의 대사관 신축 후보지 2건을 검토하였으나, 부적합 판정

2. 1991년 검토

- 6.20. 독일 연방하원은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법안 채택
 - 연방정부는 늦어도 10~12년 이내, 연방하원은 4년 이내에 베를린에서 활동 개시 등
 - 독일 외무부, 베를린 시정부 등은 외국공관의 수요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
- 주독일대사관도 2년 내 건물 또는 부지 확보를 위한 준비 작업 개시
 - 1992년도 예산안에 주독일대사관 청사매입 국고채 예산 1천만 달러 계상
 - 주독일대사관은 지가 양등을 이유로 3천만 달러로 증액 건의
 - 주독일대사관은 전 주독일 유고총영사관 건물 등 동베를린지역 내 다수의 부동산 등을 물색 하였으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

3. 1992년 추진 동향

- 4월 주독일대사관은 주독일대사관 국유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서베를린시 주택가 지역 내 건물 2동에 대한 세부 활용도 조사 및 가격 교섭 개시
 - 국유화 사업의 초과예산 확보 방안 검토를 외무부에 건의
- 12월 주독일대사관은 베를린 부동산시장 여건상 주독일대사관 청사로 적정수준의 매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유주가 적정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1992년도 내 실현이 어려울 것인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건의

주스웨덴대사관 청사 매입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147 / 7 / 1-178

1. 주스웨덴대사관 청사 매입 승인(1993.4.23.)

- 건물 개요
 - 스톡홀름 소재
 - 규모: 대지 618평, 건평 729평, 단독 3층
 - 소요예산: 약 6백만 달러
- 자금 차입처
 - 한국 외환은행 암스테르담지점
- 상환 조건
 - 원금은 1년 거치 후 10년 균등 분할

2. 청사 이전 완료(1994.1.28.)

주스리랑카대사관 매입 청사 수리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국유재산담당관실

MF번호 2023-147 / 8 / 1-138

1992~93년 중 주스리랑카대사관의 매입 청사에 대한 수리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1.12.23. 주스리랑카대사관 청사 매입계약 체결
 - 건물가: 110만 달러
- 1992.1.8. 주스리랑카대사관은 매입 청사 수리를 위한 계약 추진 건의
- 1992.1.10. 외무부, 수리계약 승인
- 1992.2.10. 주스리랑카대사관, 수리계약 체결
 - 수리비: 14만 8천 달러
 - 시공업체: 동영랑카

2. 수리 개요

- 공사 기간: 4개월
- 수리 내용
 - 외부 출입구 및 진입로 신설, 현관 변경, 주변 담장 증축, 방문자 면담실 신축 등

주유엔대표부 청사 신축 부지 매입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국유재산과

MF번호 2023-147 / 9 / 1-151

1991~93년 중 주유엔대표부 청사 국유화(신축 부지 매입) 관련 내용임.

1. 부지 물색

- The Boys and Girls Club
 - 6층 건물, 대지 210평, 건평 1,050평(독립건물 6층), 구조변경, 내부 수리비용 큰 경비 불요, 주차장 없음
 - 건물가 3천만 달러(가격 과다)
-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 대지 280평, 건평 1,235평(독립건물 4층)
 - 건물가 1,500만 달러, 예상 수리비 1,000만 달러
- Care 건물
 - 대지 365평(지상 7층, 지하1층, 1904년 건축), 주변이 공장지대이고 맨해튼 남쪽이라 주변환경 부적절
 - 매입비 1,500만 달러, 개수 공사비 500만 달러

2. 외무부 의견

- 물리학회 건물 매입 시 신축 문제와 Care 건물 매입 시 대수선 문제를 감안하여 상기 두 건물의 장·단점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서울대 이광노 교수)를 현지에 파견하고, 동 공관으로 하여금 양자택일하여 건의하도록 지시함.

3. 결과 보고

- 물리학회 건물을 830만 달러에 구입, 1992.12.15. 명의 이전, 1993.11.30. 건물 인도, 매입 부대경비(변호사, 감정사, 건물 진단비, 자문비 등) 별도 30만 달러, 총 860만 달러
- 신축 경비: 15,969,499달러
- 합계: 24,569,499달러

2353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처

주콜롬비아대사관 관저 매입

생산연도 1992-1993

생 산 과 재외공관2과

MF번호 2023-147 / 10 / 1-257

1992~93년 중 주콜롬비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 이전 관련 내용임.

1. 추진 배경

- 주콜롬비아대사관은 청사 및 관저가 협소하고 외관도 부실하여 이전 필요성을 제기
 - 관저의 경우 주변지역이 상가화되어 관저 기능 수행이 곤란

2. 진전사항

- 1992.4월 대사관 건의에 따라 외무부는 청사 및 관저 이전을 긍정 검토
- 대사관 보고를 바탕으로 외무부는 청사는 신축하고, 관저는 매각하는 구매·이전 추진 방침
 - 청사는 인근부지 매입 및 신축 비용에 대한 검토 지속
 - 관저는 후보 건물 및 구관저 매각 가격을 중심으로 검토와 협상 지속

3. 추진 결과

- 청사: 인근부지 구입 및 기존 대지에 추가하여 신축하는 방향으로 정리
 - 대지(1,404㎡)와 지하 1층 및 지상 3층(1,600㎡) 신축
 - 한국업체 시공
 - 총 231만 달러 소요 예상
- 관저
 - 현지 평가액 1,339,800달러 이하, 규모는 250평 이하 주택 매입 방침
 - 건물주의 입장 변경으로 방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새로운 상황에 직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저 이전. 전2권 (V.1 1990-91)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147 / 11 / 1-84

1990~91년 중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의 관저 이전 관련 내용임.

1. 사업 개요

- 1990.2월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74년도에 구입한 기존 관저가 노후화되고, 규모 및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새로운 관저를 매입하여 이전할 것을 건의
- 정부는 1991.10월 신관저 매입을 공식 결정

2. 관저 매입 경과

- 한·인도네시아 간 관계 강화, 인도네시아의 아시아 및 비동맹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아세안 Full Dialogue 체제 전환, 남북한 유엔가입 등 다각적 외교활동의 강화를 위해 여건이 양호한 신관저 후보 물색 및 건의
- 신관저 후보 소유자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측이 직접 교섭을 통해 건물 및 부지 포함 매입조건 타결
- 정부는 총 390만 달러 소요예산이 당초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1991년도 국고채 예산 중 타 사업 예산을 전용해서 조달
 - 한국 외환은행 싱가포르지점을 통해 동 소요예산 차입

3. 신관저 후보

-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 소재 1988년 건축된 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
- 대지: 728평
- 건평: 488평
- 건축연도: 1988년

2355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저 이전. 전2권 (V.2 1992-93)

생산연도 1990-1993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23-147 / 12 / 1-234

1992~93년 중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저 매입계약 체결 및 이전, 구관저 매각 등 관저 이전 집행 관련 내용임.

1. 신관저 매입계약 체결 및 이전 추진

- 1991.12.20. 관저 후보 매입계약 체결, 계약금으로 2백만 달러 지급
- 외환은행 싱가포르지점을 통해 국고채 관련 차입금 390만 달러 매입자금 조달 및 송금 영수

2356

2. 신관저 매입에 따라 구관저 매각

- 구관저 개요
 - 규모: 대지 326평, 건평 292평
 - 매입연도: 1974년
 - 매입가: 44만 달러
- 매각 현황(매각 계약일: 1992.4.14.)
 - 매각 방식: 입찰 회부 및 최고가 낙찰
 - 감정가: 84만 달러
 - 낙찰가: 105만 달러
- 매각 대금 사용
 - 신관저 매입 관련 국고채 원리금 상환에 총당(105만 달러)

주고오베(일본)총영사관 관저 기부채납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국유재산과

MF번호 2023-147 / 13 / 1-150

1991~93년 중 주고베총영사관 관저의 기부채납 관련 내용임.

1. 기부자

- 재일동포 박장복(1926년생)

2. 기부 재산

- 일본 니시노미야시 소재 대지 419평, 건평 78평의 2층 목조건물로 1988.5월 건축
- 재산 가격: 5억 8천만 엔(450만 달러)

3. 기부 목적

- 주고베총영사 관저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조국에 기여하고자 함.

4. 경과

- 1990.10월 재일동포 박장복은 한국 정부에 자택 기증의사를 밝힘.
- 1991.8월 한국 정부는 박장복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 1993.10.26. 동인은 본인 소유재산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했다는 기부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 제증서'를 공관에 제출함.

2357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협력
국
여
민
국
사
무
국

주모리타니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 부지 매각

생산연도 1989-1993

생 산 과 국유재산과

MF번호 2023-147 / 14 / 1-60

1989~93년 중 주모리타니아대사관 청사 및 관저 부지 매각 관련 문서임.

1. 부지 개요

- 면적: 3,040평
- 1985.9월 매입(매입가 약 5만 2천달러)
- 1992.5월 외교망 정비계획에 의거 주모리타니아대사관 부지 매각 방안 지시

2358

2. 추진 방안

- 부지를 주재국 정부에 반납, 구입대금을 기한 내 회수하도록 추진

3. 매각 결과

- 매각 방법
 - 수의계약
 - 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처분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때)
- 매각 예정가
 - 부지가: 95,652달러
 - 차량 등 비품: 52,174달러
- 매각대금 사용계획
 - 접수입으로 세입 조치

주말라위대사관 관저 매각

생산연도 1991-1993

생 산 과 국유재산과

MF번호 2023-147 / 15 / 1-56

1991~93년 중 주말라위대사관 관저 매각 관련 문서임.

1. 매각 사유

- 외교망 정비계획에 의거, 공관 폐쇄 대상

2. 건물 개요

- 건평 320평, 대지 6,000평
- 구입가: 547,984달러
- 구입년도: 1990.1.15.
- 매각 예정가
 - 60만 달러(비품 매각대금 5만 달러 포함)
- 매각대금 사용계획
 - 동 관저 매입 관련 국고채 차입금 상환

3. 매각 결과

- 수의계약
 - 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 매각일
 - 1992.2.6.

2359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관리처

해양법 대책위원회 규정 제정, 1976.12.30.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23-148 / 6 / 1-222

1. 해양법대책위원회 발족 경위

- 외무부는 정부차원의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강화 방침하에 해양법대책위원회 발족계획 검토 및 추진
 - 정부 법령, 국내 각종 위원회 사례, 외국의 참고사례 검토
 - 10.25. 외무부 방교국장 주재하에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 개최
 - 11월 해양법대책위원회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 11.12. 총무처에 해양법대책위원회 규정 제정을 의뢰

2360

2. 해양법대책위원회 발족

- 1976.12.30. 대통령령 제정으로 해양법대책위원회 발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
 - 간사: 외무부장관
 - 위원: 경제기획원,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농수산부, 상공부, 교통부, 과기처, 통일원 등 장관 및 중앙정보부장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국무위원
- 자문위원단 구성
 -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단체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개인위원과 단체위원
- 실무 작업반 구성
 -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실무자
- 위원회 개최 및 임무
 - 위원장이 수시 소집하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실무 작업반의 건의를 심의
 - 위원회 심의를 거친 의안은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
- 자문위원단 활동
 - 위원회 회부 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각자 전문 분야의 정책건의서 제출
- 실무 작업반 업무
 - 간사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며, 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유엔안보리 대책 및 조치, 전6권 (V.2 1988.2.5.-12.)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3-148 / 8 / 1-174

1. 주유엔대사, 오찬 간담회(1988.2.10.)

- 주유엔 한국특파원을 대표부에 초청, 안보리 소집 공한 제출과 배경을 설명한 후 오찬 간담회를 개최
- 관련자료 유엔 출입기자들에게 배포
 - 로이터 등 4대 통신 관련기사 송고 확인

2. KAL기 사건 안보리 토의 관련 신임장 건의(1988.2.11.)

- KAL기 폭파사건 유엔안보리 토의 관련, 외무부는 안보리 의사규칙 제14조에 의거 외무부장관 명의 신임장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안을 건의
 - 수석대표를 장관 혹은 차관 혹은 주유엔대사로 각각 지정하는 3개안 중 1개안 채택 건의

3. KAL기 사건 관련 일본의 안보리 소집 요청안 배포(1988.2.11.)

- 한국측 문서는 2.12. 아침 배포
- 북한측 문서는 2.12. 아침 영문 배포, 타 공용어 번역본은 2.13. 배포 예정

2361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국제법적 검토 및 외교적 대응방안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50 / 1 / 1-180

1987~88년 중 외무부는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관련 아래 목록의 국제법적 검토 보고 및 참고자료를 작성함.

- 대한항공 858기 실종사건에 따른 관할권 및 범죄인 인도문제 검토(안)(1987.12.1.)
- 민간항공기 안전에 관한 3개 국제협약 비교(12.1.)
- 대한항공 858기 실종사건 대책 II(12.3.)
- 대한항공 858기 실종사건 관련 대책(안)(12.4.)
- 대한항공 858기 실종사건에 따른 한·일간 수사공조 또는 협력 문제 검토(안)(12.8.)
- 대한항공 858기 실종사건에 따른 한·일간 사법공조 문제 검토(안)(12.10.)

미국 Bush 신정부 수립에 따른 대책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북미1과

MF번호 2023-151 / 7 / 1-299

1. 부시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초

- 부시 행정부는 대외정책에 있어 기본적으로 레이건 행정부의 안보 및 통상정책 근간을 계승할 전망
- 레이건 행정부가 보수주의 이념의 기초하에 총체적인 외교구도의 성취를 추구해 온 반면 부시 행정부는 현안별로 합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모색할 전망
- 부시 행정부의 최대 과제인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상품의 수출확대 및 우방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에 역점을 둘 전망
- 동·서 관계에 있어서는 유럽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저해할 성급한 전략핵무기 감축보다는 동·서 간 재래군비 균형 달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전망

2. 부시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 전망

- 한·미 안보협력 관련 정책
 - 미군의 한국 주둔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 및 동북아시아 안정유지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인식임에 비추어 부시 행정부가 자진하여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을 고려할 가능성은 희박
 - 재정 사정상 국방예산이 불가피하게 감축될 경우 미 행정부로서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 위축을 초래할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보다는 우방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 한·미 통상관계 관련 정책
 - 미국은 누적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한 수출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환율절상 및 시장개방 요구를 강화할 전망

3. 대책방안

- 기본방안
 - 안보 및 통상현안 등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한·미 간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 이견의 조기 조정
 - 전통적으로 한·미 우호 협력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한국 내 반미감정의 해소를 위한 국내·외적 조치를 전향적으로 추진
- 부시 행정부 접촉방안
 - 공식 외교경로 및 대통령 특사 방미를 통한 부시 행정부 요인 접촉
 - 한·미 정상회담 조기개최 추진
 - 주요 상·하원 의원들에 대한 접촉 강화
 - 부시 행정부 요인 및 의회, 학계, 언론계 인사 접촉 저변 확대

2363

대한민국 의회도서관

미국 관련 주요사항 청와대 보고서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3-152 / 5 / 1-215

1988년 중 외무부의 미국 관련 청와대 보고서임.

1. 미·일 정상회담 결과

- 다케시다 일본 수상은 1988.1.13. 미국에서 레이건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미·소 간 군축문제, 경제문제, 미·일 간 안보협력, 경제현안 등에 대해 협의함.
- 양 정상은 한국의 정치발전을 평가하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언급함.

2364

2. 레이건 대통령 국정연설 보고

- 레이건 대통령은 1988.1.25. 상하양원합동회의 연설에서 균형예산, 교육개혁 등 국내문제 및 SDI(전략방위계획) 등 대외정책에 관해 밝힘.

3. 솔츠 미 국무장관의 외교시책 보고

- 솔츠 국무장관은 1989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1988.2.2. 하원 외무위에서 외교정책 전반에 관해 설명함.
- 외교 분야의 주요 업적과 1988년도 주요 과제를 언급함.

4. 미국 하원 한국 관련 청문회

- 미국 하원 아태소위는 1988.2.4.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함.
- 미 국무부 증언을 청취하고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함.

5. 미국 대통령 선거 동향

- 대통령 선거 관련 아이오와주 당대회(1988.2.8.) 및 뉴햄프셔주 예비선거(2.16.) 결과 및 전망을 보고함.

6. 기타 보고사항

-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에 대한 1988.2.16.~17. 유엔안보리 토의에 대한 미국 측 평가
- 1988.2.21.~23. 모스크바 개최 미·소 외상회담 시 한반도 문제 논의 동향
- 1988.3.22.~23. 워싱턴 개최 미·소 외상회담 시 한반도 문제 논의 동향
- 3.29. 부시 부통령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사실상 확정
- 1988.4.25.~26. 파리 개최 미·소련 간 동아태지역 협의회 개최 결과
- 5.12. 미 하원 아태소위의 한국 국내정세 관련 청문회 개최 결과
- 5.24. 미 하원의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청문회 개최 결과



- 7·7 대통령 특별선언 관련 미국에 대한 후속조치 설명
- 7.18. 국무장관의 한국 민주주의에 관한 프레스센터 연설
- 미국 의회의 올림픽 결의안
- 공화당 전당대회
- 레이건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2365

대한민국 외교부의
역사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유엔 방문, 1988.10.17.-21. 전9권 (V.4 한·미 정상회담)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북미과 / 국제연합과 /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23-155 / 8 / 1-170

노태우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1988.10.20.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함.

1. 정상회담 진행

- 배석자
 - 미국 측: Shultz 국무장관 등 각료 5명 및 Powell 안보보좌관
 - 한국 측: 외무부장관, 통일원장관 등

2366

2. 정상회담 개최 의의

- 레이건 대통령 초청에 대한 답례
- 격의 없는 협의의 일환
 - 복잡한 의전절차와 격식에 구애 받지않고 상호 간 편리한 방법과 시기에 이루어짐.
 - 한·미 양국 정상 간 필요시 수시로 만나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게 된 계기 마련

3. 회담 내용

- 한국의 정치, 경제발전 및 서울올림픽
- 세계 정세 및 한반도 주변 정세
- 한·미 안보협력 관계
- 남북한 관계
- 북방정책
- 경제·통상 문제
- 한·미 관계의 동반자적 발전

4. 성과

- 전통적 한·미 우호 협력관계의 확인
- 한·미 동반자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인식
- 한·미 양국 정부 간 효율적 협조체제 확인

전두환 전 대통령 미국 방문, 1988.3.22.-4.10.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3-156 / 1 / 1-357

전두환 전 대통령(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1988.3.22.~4.10. 미국을 방문함.

● 주요 일정

- 레이건 대통령 면담(3.23.)
- CIA(중앙정보국) 방문(3.23.)
- 국방성 방문(3.24.)
- 미국 주요인사 초청 리셉션(3.24.)
- 닉슨 전 대통령 면담(4.5.)
- 록펠러 총재 주최 오찬(4.5.)
- 키신저 전 국무장관 주최 오찬(4.8.)

● 기타 자료

- 외교협회 전두환 전 대통령 연설문(4.7., 뉴욕)
- 외교협회 연설 예상 질의응답 자료(4.7., 외무부)
- 국가원로자문회의 전두환 의장 내외분 뉴욕 방문 일정(주뉴욕총영사관)

2367

대한민국 대통령기록관

미국의 대북한 제재 완화 조치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23-161 / 7 / 1-131

2368

1.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미국 측(시거 차관보) 기자회견(1988.10.20., 백악관)

- 배경 및 분위기
 - 노태우 대통령의 금번 워싱턴 방문은 취임 이래 최초의 공식 방문
 - 한·미 정상회담은 시의 적절하게 개최됨.
 - 회담 분위기는 매우 우호적, 협의는 실질적
- 협의 내용
 - 레이건 미 대통령: 서울 올림픽의 성공과 유엔 연설 축의 표명
 - 대북 제의의 성공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동일 의견
 - 한·러, 한·중 접촉 현황 등 제반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 남북한 간 문제해결의 1차적 역할은 한국이 담당, 미국은 이를 지원

2.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조치 발표 관련 외무부 당국자 논평(안)(1988.11.1., 미주국)

- 1987.11.29.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관련, 미 행정부가 1988.1.20.자로 취한 대북한 제재 조치 중 일부를 완화시행하기로 발표
- 노 대통령의 7·7 선언과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서 밝힌 한국 정부의 건설적 제안들이 배경
- 북한 측이 기존 남북대화 및 노 대통령의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제의에도 적극 호응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
- 미국 측 배경 설명
 - 북한 측이 한국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추진하며, 국제 테러행위에 대한 지원 또는 고무행위를 포기한다는 보장, 북측에서 발견한 유엔군 유해 송환 등을 실천한다면 미·북한 관계의 진전 가능

남북대화 관련 계기별 자료

생산연도 1987-1988

생 산 과 정보2과

MF번호 2023-162 / 1 / 1-104

1987~88년 중 남북 대화와 관련하여 외무부가 작성한 각종 계기별 자료 현황임.

1.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의 통일문제 관련 발표 내용 및 추진 방향(1987.12월)

- 대통령 당선자가 천명한 통일의 원칙
- 통일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및 평가

2.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의 통일 관련 공약사업 실천 방안(1988.1.8.)

- 민족 화합, 민주 통일에 입각한 단일정부 수립 및 3단계 통일정책 추진
- 남북한 수뇌 상호방문
- 4대국 교차승인

3. 남북대화(1988.1.21.)

- 1970~80년대 남북대화 내용
- 1980년대 후반 이후 남북한 양측의 남북대화 관련 제의 내용 및 남북대화 전망

4. 남북대화 현황 및 향후 대책(1988.2.9.)

- 한·일 정상회담 준비자료
- 정부의 노력 설명 및 북한 측의 태도 분석

5. 남북한 간 긴장 완화, 신뢰 조성을 위한 정부방침(1988.2.10.)

- IPU(국제의원연맹) 회의 대표단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
-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 및 북한 측의 반응 분석

6. 기타 자료(1988.3~6월)

- 한국의 통일정책과 북방외교
- 남북대화
- 남북한의 통일 방안 비교표
- 통일문제 연구활동 강화 방안

2369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

한·미국 간의 안보협력 관련 고위실무자회의

생산연도 1986-1988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3-164 / 8 / 1-58

한·미 양국은 1982년 이후 안보협력 관련 고위실무자회의(SWM)를 매년 2~3회 개최하여 양국 간 SCM(연례안보협의회) 관련사항을 협의함.

1. 제17차 SWM회의(1986.6.4.)

- 정부대표
 - 한국 측: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 미국 측: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 제18차 SCM 후속조치 계획 및 제19차 SCM 예상의제 개괄 토의

2. 제19차 SWM 회의(1987.2.11.)

- 정부대표
 - 한국 측: 국방부 정책기획관
 - 미국 측: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 제18차 SCM 합의사항 후속조치 상호 확인 및 제19차 SCM 예상의제 개괄 토의

3. 제20차 SWM 회의(1987.8.12.)

- 정부대표
 - 한국 측: 국방부 정책기획관
 - 미국 측: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 제19차 SCM 후속조치 계획 및 제20차 SCM 준비 협의

4. 제21차 SWM 회의(1988.1.13.)

- 제19차 SCM 후속조치 사항 및 기타 의제 토의
- 워싱턴 D.C.에서 2.24. 개최 예정인 제7차 정책검토위원회 회의에 앞서 SCM 주요 의제에 대한 양측 입장 확인

Taft, William H. 미국 국방부 부장관 방한, 1988.5.10.-11.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23-165 / 16 / 1-76

Taft, Willaim H. 미국 국방부 부장관의 1988.5.10.~11. 방한 시 기자회견 내용이 수록됨.

1. 개요

- 일시: 1988.5.11. 13:50~24:20
- 장소: 주한미군 영내 기자회견실
- 참가자: 내외신기자 30여 명

2. 주요 언급내용

- 외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회담 시 방위비 분담문제를 협의함.
- 미국은 공동방위를 위한 한국 측의 실질적 노력과 기여를 잘 이해하고 있음.
- 미국은 CDIP 등 분야에 한국 측의 지원 증대를 제의하고 있으나 금번 방문은 확정 답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며, SCM(연례안보협의회)에 참석하는 Garlucci 장관 방한 시 한국 측 답변 청취 예정
- 필리핀 및 걸프지역에서의 활동지원에 대해 일반적 관점에서는 협의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한반도 내에서의 활동지원 뿐임.
-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사가 전혀 없음.

2371

대한민국 외교부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대북한 지원사업

생산연도 1982-198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23-183 / 11 / 1-188

1. 1980.11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영문 가이드라인 수록
2. 1983.2.3. 주이탈리아대사관 발신 문서
 - FAO 수원 과정 조사 관련 프로젝트 Layout, 협상승인 과정 등 영문 별첨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고문문제 관계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23-167 / 4 / 1-170

1. 유엔 인권위원회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보고서

- 인권위원회 결의 1987/29에 따른 Kooijmans 특별보고관의 1988.1.12.자 보고서

2. 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명단

- 제1차 고문방지위원회(1988.4.18.~22., 스위스 제네바)에서 선출된 10명의 위원 명단

3. 제1차 고문방지위원회 보고서

- 1988.5.25. 발간된 제1차 고문방지위원회(1988.4.18.~22., 스위스 제네바) 보고서

2373

대한민국 인권법정서

해양법대책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77-1978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23-183 / 13 / 1-147

1. 제1차 해양법대책위원회 회의(1977.1.28.)

- 해양법대책위원회 구성 등 보고

2. 제2차 해양법대책위원회 회의(1977.2월)

- 영해 및 경제수역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대책 논의

3. 제3차 해양법대책위원회 회의(1977.8.3.)

- 영해 선포 문제 토의

4. 제4차 해양법대책위원회 회의(1978.4.18.)

5. 제5차 해양법대책위원회 회의(1978.12.8.)

- 회의 진행: 국무회의 후 외무부장관의 제안 설명 및 참석 대책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
- 안건: 해양법대책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건
 - 1978.12.30.부터 2년간 연장

한·캐나다 간의 원자력협정에 따른 기속정보 지정문제

생산연도 1988-1988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3-173 / 17 / 1-46

1.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7.8.18. 외무부에 한·캐나다 원자력협정 제3조 2항 및 제8조에 의거하여 동 협정의 기속을 받을 정보 지정에 관한 교환각서안을 송부함.
 ● 1986~87년 월성 Candu형 중수로 관련 한국 측에 제공된 정보 대상
2. 외무부는 1988.3.31.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캐나다 측이 제공한 기술자료(Technical Data)에 대한 총괄 목록을 한·캐나다 원자력협정상 기속을 받을 대상 정보로 간주하자는 제안 및 동 총괄 목록 시스템 수립에도 동의함을 통보함.
3.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8.3.31. 캐나다 정부는 한국의 다목적 연구로의 설계, 생산, 운영 및 시험에 사용될 기술자료를 한·캐나다 원자력협정상 정보로 간주할 것이라고 외무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88.9.9. 상기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공한에 대해 한국 정부도 동의함을 통보하는 한편 1988.6월 제6차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다목적 연구로와 관련하여 캐나다에 제공하는 기술자료도 동 양국 간 원자력협정상 기속정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5.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8.11.18. 한국 측이 캐나다에 제공하는 기술 자료도 동 협정상 기속 정보 대상이 됨을 외무부에 통보함.
6. 외무부는 1988.12.2. 양국 간에 상호 이전되는 다목적 연구로 관련 정보가 한·캐나다 원자력협정의 기속을 받는 정보로 간주되는 데 동의함을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2375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작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제6차. Ottawa(캐나다), 1988.6.2.-3.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23-173 / 18 / 1-124

1988.6.2.~3.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6차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관련 내용임.

1. 한국대표단은 제6차 한·캐나다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에 앞서 1988.5.31. 미국 국무부, NRC(핵규제위원회), 연방 재해관리청을 방문한바, 기관별 협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무부

- 제11차 한·미 원자력 공동조정위 준비회의 및 본회의를 1988.11월 초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한국 측 입장 전달
- 한국 국회 개원 전 과거처장관 방미 타진, 미국 측은 사정상 어려울 것임을 시사
- 미국 측은 제11차 한·미 원자력 공동조정위 회의에 P. Benthall 국무부 해양·대기·과학기술 담당 차관보 참석 가능성 시사

● NRC

- 영광 3, 4호기(원전 11, 12호기) 안전성 문제 관련 NRC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 지원요청
- 미국 측은 전반적 안전성 검토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표명

2. 제6차 한·캐나다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1988.6.2.~3., 오타와) 개최

● 대표단

- 한국 측: 권갑택 과기처 안전심사관 등
- 캐나다 측: P. Gosselin 외무성 특별통상국장 등

● 핵물질 이전 각서교환

- 캐나다 측 각서안의 일부 수정에 관해 비공식 협의
- 캐나다 측은 수정안을 한국 측에 송부하기로 약속

● 한·캐나다 원자력협정 기속정보 지정

- 캐나다로 부터 도입 예정인 MRR(다목적 연구로) 관련 양측 간에 교환된 정보를 기속정보로 지정하기로 합의
- 한국 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의견 회신을 약속

● KAERI(한국원자력연구원) 요원의 아래 분야 캐나다 파견훈련에 합의

- Pickering 원전 압력관 교체(2인)
- Candu 사용 후 핵연료 관리(1인)
- 원자로 제염 및 해체기술(1인)

● 차기 회의

- 1989.5월 서울개최 합의



부 록

| 1993년 |

- 1.1. 주한 체코대사관 개설
- 1.1. 주한 슬로바키아대사관 개설
- 1.1. 한·슬로바키아 외교관계 수립
- 1.6.-9. 제13차 한·프랑스 어업회담(서울)
- 1.7. 안응모 특사(전 내무부장관), Rollings, Jerry John 가나 대통령 취임식 참석
- 1.8. 주한 베트남대사관 재개설
- 1.13.-15.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회의(Paris)
 - 수석대표: 이상옥 외무부장관
 - 1.13. 한·중국, 1.13. 한·독일, 1.13. 한·러시아, 1.14. 한·프랑스 외무장관회담
 - 1.14. 협약 서명 및 기조연설
- 1.14.-15. 한·미국 지식재산권 실무자회담(Washington D.C.)
- 1.14.-27.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국회대표단, 스위스(제네바) 방문
 - 단장: 정시채 국회 농림수산위원장
- 1.19.-20. 제3차 한·일본 원자력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스토 다카야 외무성 과학기술심의관
- 1.19.-20. 한·태국 항공회담(Hua Hin, 태국)
- 1.19.-22. 국회대표단, Clinton, Bill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 단장: 정재문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 1.2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7항에 대한 유보철회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1122호)
- 1.26. 한·미국·일본 고위실무회의(Washington D.C.)
- 1.28.-29. 한·베트남 항공회담(Hanoi)
- 1.29.-30.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 두만강개발계획 제1차 통신전문가회의(서울)
- 2.1.-3. 유엔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축회의(Katmandu, 네팔)
 - 수석대표: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
- 2.1.-4. 한·필리핀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교섭회담(Manila)
 - 수석대표: 이창호 외무부 조약국장 / Liwag, Ramon 법무부 차관

- 2.1.-5. Nguyen Manh Cam 베트남 외무장관 방한
 - 2.2. 외무장관회담, 경제·기술협력협정 서명
 - 주호치민총영사관 설치 합의
- 2.1.-6. 제32차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AALCC) 총회(Kampala, 우간다)
 - 수석대표: 이정빈 주인도대사
- 2.1.-3.12. 제49차 유엔 인권위원회(Geneva)
 - 수석대표: 박수길 주제네바대표부대사
- 2.2. 제1차 한·베트남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Hanoi)
- 2.2.-3. 제6차 한·일본 과학기술협력위원회(도쿄)
 - 수석대표: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스토 다카야 외무성 과학기술심의관
- 2.3. 제15차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서울)
 - 수석대표: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Morford, Richard A.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
- 2.3.-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KAL기 사건 조사단 방한
- 2.4. 한·파키스탄 간의 대파키스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
각서 발효(조약 제1162호)
- 2.5.-6. 한·말레이시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교섭회담(Kuala Lumpur)
 - 수석대표: 이창호 외무부 조약국장 / 노라이니 검찰청 국제국부국장
- 2.7. 한·중국 간의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발효(1.8. 서명, 조약
제1123호)
- 2.7.-9. Holbrooke, Richard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방한
- 2.8.-10. 김시문 수산청차장, 캐나다 방문
- 2.8.-11. 제1차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급회의(서울)
- 2.8.-12. 화학무기 금지를 위한 기구(OPCW) 설립에 관한 국제회의(The Hague)
 - 수석대표: 임인조 주네덜란드대사
- 2.9.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이사회(Geneva)
 - 수석대표: 박수길 주제네바대사
- 2.9.-10. 제6차 한·일본 지식재산권 실무회의(도쿄)
- 2.11.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외무부고시
제221호)

- 2.11.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조약 제1163호)
- 2.11.-13. 제3차 한·미국 소고기 협상(과천)
- 2.12.-14. Haig, Alexander 전 미국 국무장관 방한
- 2.15. 한·미얀마 간의 대미얀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조약 제1164호)
- 2.15. 정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의료단 소말리아 파견
- 2.15.-16. 한·튀니지 항공회담(Tunis)
- 수석대표: 오행겸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 Ben Miled, Kamel 운수부 항공국장
- 2.15.-17. 한·중국 통신실무협의회(베이징)
- 수석대표: 박영일 체신부 통신정책 심의관 / 조신통 우전부 외사국장
- 2.16.-17. 제2차 한·중국 해운회담(서울)
- 수석대표: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한문경 교통부 운수관리국장
- 2.18.-19. 아태경제협력체(APEC) 간사국회의(Washington D.C.)
- 수석대표: 최영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 제1정책심의관
- 2.18.-19. 한·몰타 항공회담(Valletta, 몰타)
- 수석대표: 오행겸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 Fenech, S.V. 교통통신부 민항공장
- 2.2 주한 남아프리카대사관 개설
- 2.24.-28. Ackerman, Gary L. 미국 하원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방한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25.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
- 2.25. 간주 사토 일본 사회당 부총재 방한(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26. 제172차 한·미국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서울)
- 2.26. 한·스웨덴 지식재산권 회의(서울)
- 수석대표: 오행겸 외무부 통상국 심의관 / Wik, Curt 외무부 본부대사
- 2.26.-27. 제3차 한·뉴질랜드 소고기 협상(과천)
- 2.27.-28. 외무부·국방부 합동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조사반, 소말리아 방문
- 3.1.-3. Kohl, Helmut 독일 수상 방한
- 3.2. 정상회담

- 3.2. 한·리히텐슈타인 외교관계 수립
- 3.2.-5. 고위 통상실무대표단, 미국 방문
 - 단장: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
- 3.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1166호)
- 3.4. 한·베트남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2.2. 서명, 조약 제1161호)
- 3.5. 주남아프리카대사관 개설
- 3.5. 체코, 북한의 [판문점] 체코 중립국 감독위원회 지위 승계 거부 관련 주체코 북한외교관 축출 발표
- 3.6.-7. 제1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저명인사그룹 회의(Singapore)
 - 수석대표: 김만제 전 부총리
- 3.7.-10. Weinberger 전 미국 국방장관 방한
- 3.8.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개정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1168호)
- 3.8.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1165호)
- 3.10.-12. KAL기 사건 관련 제2차 관련국(한·미국·일본·러시아) 회의(Moscow)
 - 수석대표: 김창근 주러시아대사대리
- 3.12.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 3.15. 제5차 한·프랑스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차관 / Boidevaix 외무차관
- 3.15.-19. 제20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Rome)
 - 수석대표: 이태식 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 3.16.-19. 제14차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Cassidy, Robert 미국 통상대표부(USTR) 아·태담당차관보
- 3.17. 제30차 미·북한 참사관급 접촉(베이징)
- 3.17.-26. 제3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Vienna)
 - 수석대표: 김정숙 정무제2장관실 보좌관
- 3.18.-19.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Vienna)
 -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대북 핵사찰 문제 논의

- 3.18.-21. Carias Zacha, Mario 온두라스 외무장관 방한
- 3.19. 외무장관회담
- 3.19. 제9차 한·일본 마약 대책회의(서울)
- 3.19.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 북한 송환
- 3.19. 제31차 미·북한 참사관급 접촉(베이징)
- 3.21. Glysteen, William 전 주한 미국대사 방한
- 3.21.-24. Sigur, Gaston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방한
- 3.22. 한·미국·일본 고위실무회의(New York)
-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 논의
- 수석대표: 신기복 외무부 제1차관보 / Clark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 이케다 다다시 외무성 아주국장
- 3.23.-4.2. 한승주 외무부장관, 미국(유엔) 및 일본 방문
- 미국(3.23.-30), 일본(3.31.-4.2.)
- 3.26.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 규정 제6조 제1항 개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 (외무부고시 제225호)
- 3.27. 노영찬 특사(주프랑스대사) Zafy, Albert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
- 3.29.-4.7. 제36차 유엔마약위원회(Vienna)
- 수석대표: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
- 3.30.-4.5. Ganev, Stoyan 제47차 유엔총회 의장 방한
- 3.31.-4.1.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Vienna)
- 3.31.-4.2. 제5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준비 제2차 고위실무회의 (APEC/SOM)(Williamsburg)
- 수석대표: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
- 4.4.-7. Kimimasa Tarumizu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방한
- 4.5.-5.11. 유엔안전보장이사회(New York)
- 북한 핵 문제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문제 논의
- 5.11. 대북한 결의안 채택
- 4.6.-7. 제27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하성환 수산청 차장 / 시마 가조오 수산청 차장

- 4.6.-8. Bildt, Carl 스웨덴 수상 방한
- 4.7. 정상회담
- 4.7. 정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건설공병대 소말리아 파견 통보
- 4.7.-9. Hurd, Douglas 영국 외무장관 방한
- 4.8. 남흥우 제17대 주홍콩총영사 임명
- 4.8. 황부홍 제7대 주가나대사 임명
- 4.9.-14. 1993년도 재외공관장회의(서울)
- 4.13. 한·미국·일본 고위실무회의(New York)
- 수석대표: 장재룡 외무부 미주국장 / Havard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 다카노 외무성 아주국 심의관
- 4.13.-22. 제4차 한·미국 소고기 협상(Washington D.C.)
- 수석대표: 김동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Collins, Peter 미통상대표부(USTR) 한국담당관
- 4.15. 1992년 국제사탕협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1169호)
- 4.15.-20. 제89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New Delhi)
- 수석대표: 박정수 의원
- 4.16. 한·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소급 발효(외무부고시 제223호)
- 4.16.-23. 한승주 외무부장관, 동남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순방
- 싱가포르(4.16.-18.), 말레이시아(4.18.-20.), 태국(4.20.-23.)
- 4.17. 한·싱가포르, 4.19. 한·말레이시아 외무장관회담
- 4.19. 제16차 한·미국 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서울)
- 수석대표: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Morford, Richard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
- 4.19.-5.10. 유엔군축위원회(UNDC) 회의(New York)
- 수석대표: 유종하 주유엔대사
- 4.20. 한·일본 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외무부고시 제222호)
- 4.20.-21. 제2차 한·영국 원자력공동위원회(서울)
- 4.21. 한·중국 외무장관회담(Bangkok)
- 한승주 외무부장관 / 전기침 외교부장

- 4.21.-22. 한·호주 항공회담(서울)
- 4.21.-23. Tarnoff, Peter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 4.21.-29. 제49차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Bangkok)
- 수석대표: 한승주 외무부장관
- 4.22.-26. 제2차 한·태국 군수공동위원회(서울)
- 4.23.-24.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회의(아와시마, 일본)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4.26.-27. 한·뉴질랜드 항공회담(Queenstown)
- 4.26.-30. 제2차 한·중국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교섭회담(서울)
- 수석대표: 엄낙용 재무부 세제심의관 / Hao Zhao-Cheng 국가세무국
외국인세국장
- 4.26.-5.7. 유니세프 집행이사회(New York)
- 수석대표: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 4.28.-29. 제1차 한·중국 무역실무회담(베이징)
- 수석대표: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Wei Xiaorong(위소영) 대외무역 경제합작부
아주사장대리
- 4.29.-30. 제2차 한·튀니지 문화공동위원회(Tunis)
- 수석대표: 권순대 외무부 문화협력국장 / 벨라로나 문화부 대외관계국장
- 4.30. 한·케냐 간의 대케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
(조약 제1171호)
- 4.30. 제3차 한·일본 외무부 조약국장회의(서울)
- 5.3. 제1차 한·일본 정책기획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 / 스즈키 외무성 정보조사국장
- 5.3.-4. 한·알제리 문화협정 체결교섭회담(Algies)
- 수석대표: 권순대 외무부 문화협력국장
- 5.3.-5. 제9차 한·프랑스 원자력공동위원회(Paris)
- 5.3.-14. 제46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Geneva)
- 수석대표: 송정숙 보건사회부장관
- 5.4. 제1차 한·일본 원조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카와카미 타카오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 5.4.-6. 제2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Manila)
- 수석대표: 홍재형 재무부장관
- 5.5.-6. 한·핀란드 문화협정 체결교섭회담(Helsinki)
- 수석대표: 권순대 외무부 문화협력국장
- 5.9.-10.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 두만강개발계획 제3차 계획관리위원회(PMC) 회의(평양)
- 수석대표: 이태식 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 5.9.-12. Bolger, James 뉴질랜드 수상 방한
- 5.10. 정상회담, 항공협정 서명
- 5.9.-14. 신기복 외무부 제1차관보 미국 방문
- 5.10.-13. 한·러시아 해상사고방지협정 체결교섭회담(서울)
- 5.10.-14. 핵확산금지조약(NPT) 연장 및 평가문제에 관한 1995년 제1차 회의(New York)
- 수석대표: 유종하 주유엔대사
- 5.11.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회의(PEI) 고위실무자회의(서울)
- 5.11.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한 결의안 채택
- 5.11.-12. 한·구주공동체(EC) 세관협력회의(서울)
- 5.11.-13. 제1차 한·아세안 실무급회담(Kuching, 말레이시아)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5.11.-13. Cheny, Richard 전 미국 국방장관 방한
- 5.12.-14. 한·싱가포르 항공회담(Singapore)
- 5.13.-14. 캐나다지역 총영사회의(Ottawa)
- 5.13.-16. Vo Van Kiet 베트남 총리 방한
- 5.13. 정상회담
- 5.14.-15. 미국지역 총영사회의(Washington D.C.)
- 5.15. 주호치민총영사관 개설
- 허방빈 초대 총영사 부임
- 5.15. 주모리타니대사관 폐쇄(모로코 겸임)
- 5.17.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위한 제1차 실무접촉(New York)
- 수석대표: Kartman, Charles 국무부 한국과장 / 김정수 유엔대표부 부대사

- 5.17. 제5차 한·호주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신기복 외무부 제1차관보 / Smith, Ric 외무통상부 차관보
- 5.17.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인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1170호)
- 5.17.-18. 제4차 한·호주 소고기 협상(Canberra)
- 수석대표: 김동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Gray, Peter 대외무역부 제1차관보
- 5.17.-18. 제3차 한·일본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도쿄)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마쓰우라 고이치로 외무성 외무심의관
- 5.17.-20. 제1차 한·프랑스 방산군수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박웅 국방부 제2차관보 / Retat, Bernard 국방부 대외협력 총국장
- 5.17.-21. 제1차 한·멕시코 이종과세방지협약 체결교섭회담(Mexico City)
- 5.18.-24. Schmidt, Helmut 전 독일 수상 방한
- 5.19. 한·마다가스카르 외교관계 재개
- 5.20.-21. 한·뉴질랜드 소고기 협상(Wellington)
- 수석대표: 김동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Ludbrook, Julian 대외무역부 아시아부국장
- 5.20.-21.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PMC) 고위실무자회의(Singapore)
- 수석대표: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
- 5.21.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위한 제2차 실무접촉(New York)
- 5.21. 제11차 한·뉴질랜드 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울)
- 5.21.-24. Dunkel, Arthur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사무총장 방한
- 5.22.-26. 제26차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총회(서울)
- 수석대표: 구평희 준비위원장
- 5.23.-26.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수상 방한(비공식)
- 5.23.-26. Le Van Triet 베트남 통상부장관 방한
- 5.23.-26. Lee, Michael 호주 관광자원부장관 방한
- 5.23.-26. Romulo, Roberto 필리핀 외무장관 방한(Ramos 대통령 방한 수행)
- 5.25. 외무장관회담,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

- 5.23.-26. Ramos, Fidel 필리핀 대통령 방한
 - 제26차 태평양경제협력회의(PBEC) 총회 참석
 - 5.25. 정상회담
- 5.24.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간의 동 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가입에 관한 교환
 각서 발효(조약 제1172호)
- 5.24. 한·에리트리아 외교관계 수립
- 5.24.-26.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 방한
- 5.24.-27. Cassidy, Robert 미국 통상대표부(USTR) 아시아·태평양담당 대표보 방한
- 5.26.-29.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
 - 5.26.-27. 외무장관회담
- 5.28.-29. 한·러시아 어업실무자회담(Moscow)
- 5.28.-6.1. 오후츠크공해 조업 관련국(한·일본·중국·폴란드·러시아) 회의(Moscow)
 - 수석대표: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5.29.-6.3. 제3차 한·러시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서울)
 - 김시중 과학기술처장관 / Saltykov, Boris 과학기술정책부장관
- 6.1.-22. 제40차 유엔개발계획(UNDP) 집행이사회(New York)
 - 수석대표: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 6.2.-4. Fujimori, Alberto 페루 대통령 방한
 - 6.2. 정상회담
- 6.2.-4. Raygada, Oscar 페루 외무장관 방한
 - 6.3. 외무장관회담, 투자보장협정 서명
- 6.2.-4. 제3차 한·호주 원자력정책협의회(Canberra)
- 6.2.-5. 제9차 한·필리핀 자원협력위원회(Cebu, 필리핀)
 - 수석대표: 박영한 상공자원부 자원개발국장
- 6.2.-11. 미·북한 1단계 고위급회담(New York)
 - 수석대표: Gallucci, Robert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 6.2.-22. 제8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Geneva)
 - 수석대표: 이인제 노동부장관
- 6.3.-8.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카자흐스탄 방문

- 6.5.-10. Wolfowitz, Paul 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방한
- 6.6.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발효 (조약 제1173호)
- 6.6.-8. 제2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저명인사그룹 회의(도쿄)
 - 수석대표: 김만제 전 부총리
- 6.6.-17. 한승주 외무부장관 구주(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순방
 - 러시아(6.6.-8.), 폴란드(6.8.-10.), 프랑스(6.10.-13.), 오스트리아(6.13.-15.), 영국(6.15.-17.)
- 6.9.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73조) 한국에 대하여 발효 (조약 제1177호)
- 6.10.-11. 한·일본 어업회담(서울)
- 6.10.-24. 민·관 혼성경제사절단, 아프리카(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순방
 - 단장: 김봉규 외교안보연구원 아시아·중동연구부장
- 6.11. 일본지역 공관장회의(도쿄)
- 6.11. 제10차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신기복 외무부 제1차관보 / 사이토 외무성 외무심의관
- 6.12. 한·베트남 간의 무역협정 발효(6.13. 서명, 조약 제1174호)
- 6.13.-15. 제6차 한·미국 재계회의(Washington D.C.)
- 6.14. 한·베트남 간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발효(5.13. 서명, 조약 제1179호)
- 6.1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특별이사회(Montreal)
- 6.14.-15. 한·네덜란드 해운회담(Rotterdam)
- 6.14.-16. 제70차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London)
 - 수석대표: 전승규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장
- 6.14.-25. 제1차 유엔지속개발위원회(CSD)(New York)
 - 수석대표: 황산성 환경처장관
- 6.14.-25. 제2차 세계인권회의(Vienna)
 - 수석대표: 한승주 외무부장관

- 6.15.-16. 한·스위스 지식재산권회의(서울)
- 6.15.-18. 제4차 비동맹 공보장관회의(평양)
- 6.16.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간의 실무연석회의(서울)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다니구치 사무차장
- 6.20.-23. Keating, Paul John 호주 총리 방한
- 6.21. 정상회담
- 6.21.-24. 제2차 한·루마니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교섭회담(과천)
- 수석대표: 엄낙용 재무부 세제심의관 / Done, Nicole 재무부 세제국장
- 6.22. 한(상공자원부)·호(상공기술성) 간의 산업기술협력약정 발효(외무부고시 제224호)
- 6.22.-26. 제5차 한·미국 소고기 협상(서울)
- 수석대표: 김동태 농림수산부 축산과장 / Collins, Peter 미국 통상대표부(USTR) 한국담당관
- 6.24. 제7차 한·캐나다 정책협의회(Ottawa)
- 수석대표: 신기복 외무부 제1차관보 / Ballochi 외무부 아시아·태평양차관보
- 6.24. 제11차 한·미국 경제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홍순영 외무차관 / Spero, Joan 국무부 경제차관
- 6.25.-27. Zieleniec, Josef 체코 외무장관 방한
- 6.25. 외무장관회담
- 6.26. 한·중국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발효(5.27. 서명, 조약 제1175호)
- 6.28. 제2차 한·인도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차관 / Haider 외무차관
- 6.28.-29. 한·미국 국방장관회담(Washington D.C.)
- 권영해 국방부장관 / Aspin, Les 국방부장관
- 6.28.-30. Karczewski, Witold 폴란드 국가과학연구위원회 장관 방한
- 6.29. 과학기술장관회담, 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
- 6.28.-7.2. 제11차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이사회(Vienna)
- 6.29. 제1차 한·폴란드 과학기술장관회담(서울)
- 김시중 과학기술처장관 / Karczewski 국가과학연구위원회장관
- 6.29.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1180호)

- 6.29. 제7차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서울)
- 한승주 외무부장관 / 무토 가분(武藤嘉文) 외상
- 6.29.-30. 제4차 한·구주공동체(EC) 모니터링회의(Brussels)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Ziola EC집행위 대외총국 부총국장
- 6.30. 주카자흐스탄대사관 개설
- 6.30. 주수리남대사관 폐쇄(브라질 검임)
- 6.30.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폐쇄
- 6.30.-7.2. 제5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준비 제3차 고위실무회의(SOM)(Seattle)
- 수석대표: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
- 6.30.-7.3. Holbrooke, Richard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방한
- 6.30.-7.3. 제11차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Canberra)
- 7.5. 제6차 한·말레이시아 기술협력회의(서울)
- 수석대표: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Mahmud, Dato 외무부 차관보
- 7.5.-6. Kinkel, Klaus 독일 외무장관 방한
- 7.5. 외무장관회담
- 7.7.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발효(조약 제1178호)
- 7.7.-8. 제3차 한·가봉 혼성위원회(서울)
- 7.9. 한·몽골 간의 대몽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조약 제1183호)
- 7.9.-12. 제5차 한·호주 소고기 협상(과천)
- 7.10.-11. 클린턴 미국 대통령 방한
- 7.10. 정상회담, 한·미국 경제협력대화기구(DEC) 발족 합의
- 7.12.-15. 오와다 히사시(小和田恒) 일본 외무차관 방한
- 7.12.-16. 제2차 한·포르투갈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교섭회담(과천)
- 7.12.-19.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미국 방문
- 7.14. 주상하이총영사관 개설
- 7.14.-16. 제5차 한·일본 문화교류 실무자회의(서울)
- 수석대표: 권순대 외무부 문화협력국장 / 기무라 다카유키 외무성 문화교류부장

- 7.14.-16. Fang Jin-Yan(방금염) 대만 외교부 부부장 방한
- 7.15.-16. 외무차관회담
- 7.14.-19. 미·북한 2단계 고위급회담(Geneva)
- 수석대표: Gallucci, Robert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 7.15. 한·미국 간의 통신보안장비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 발효(외무부고시 제226호)
- 7.15.-16. 한·뉴질랜드 소고기 협상(과천)
- 수석대표: 김동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Ludbrook, Julian 대외무역부 아시아 부국장
- 7.20.-23. 제11차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Canberra)
- 수석대표: 김태곤 상공부 제3차관보
- 7.21.-22. 제1차 한·러시아 해운협력협정 체결교섭회담(Moscow)
- 수석대표: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7.21.-26. 제1차 한·중국 세관협력회의(베이징)
- 7.23.-29. 한승주 외무부장관, 싱가포르 방문
-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 참석
- 7.24. 한·러시아, 한·중국, 7.25. 한·뉴질랜드, 한·필리핀, 한·호주, 7.26. 한·미국, 한·캐나다, 한·말레이시아, 7.27. 한·일본, 한·EC 외무장관회담
- 7.27.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PMC)
- 7.26.-29. 제1차 한·브라질 투자보장협정 체결교섭회담(서울)
- 수석대표: 오갑률 외무부 경제협력2과장 / Gilaberte, Katia 외무부 재정과장
- 7.27. 한·대만 비공식관계 수립
- 민간차원 대표기구 설치 합의
- 7.29. 한·미국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 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1181호)
- 7.29.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1182호)
- 7.30. 정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지원 본대 소말리아 파견
- 8.3. 제3차 대전 엑스포 참가국 정부대표자 회의(대전)
- 8.3.-4. 한·미국연례안보협의회(SCM) 분과위원회(Honolulu)
- 수석대표: 장성 국방부 정책실장 / 로드, 스탠리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

- 8.3.-10. 제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북한 임시 핵사찰단, 북한 방문
- 8.4.-7. Moravcik, Jozef 슬로바키아 외무장관 방한
 - 8.5. 외무장관회담
- 8.6.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1188호)
- 8.7.-7. '93 대전 엑스포
- 8.9. 한·호주 특허청장회의(Canberra)
- 8.10.-11. 제10차 한·태국 통상장관회담(서울)
 -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 Uthai Pimchaichon 통상장관
- 8.11. 한·모잠비크 외교관계 수립
- 8.11. 제11차 한·독일 경제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조규하 한국산업연구원 부원장 / Becker, Gunter 경제협의회 의장
- 8.12. 한·미국·일본 고위실무회의(New York)
 - 수석대표: 장재룡 외무부 미주국장
- 8.16.-18. 제3차 한·중국 항공회담(베이징)
 - 수석대표: 유병우 외무부 아주국장 / Ke Deming(가덕명) 민항총국 부국장
- 8.17. 제2차 한·일본 정책기획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 / 야나이 순지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
- 8.18.-23. Chingisher 키르기스스탄 총리 방한
- 8.20. 한·뉴질랜드 간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발효(5.10. 서명, 조약 제1189호)
- 8.20.-25. 홍순영 외무부차관, 중국 방문
- 8.23. 제17차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과천)
 -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 Burdon, Philip 통상교섭장관
- 8.23. 한·중국 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7.24. 서명, 조약 제1184호)
- 8.23.-24. 제1차 한·중국 해운회담(베이징)
- 8.24.-27. 한·러시아 간의 구러시아 공관부지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자회담(Moscow)
 - 수석대표: 함명철 외무부 조약국 심의관

- 8.24.-27. 제31차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 8.26. 한·미국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 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의 시행절차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조약 제1190호)
- 8.27. 한·몽골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 지원협정 발효(7.28. 서명, 조약 제1185호)
- 8.30. 제2차 한·일본 통상장관회담(과천)
-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 구마가이 히로시 통산상
- 8.30.-31. 한·미국 섬유협상(서울)
- 8.30.-9.3. 제2차 한·뉴질랜드 세관협력회의(Wellington)
- 8.31. 한(통계청)·중국(국가통계국) 간의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발효(외무부고시 제227호)
- 8.31. 제2차 한·루마니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 9.1. 한·모로코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발효(8.2. 서명, 조약 제1187호)
- 9.1.-3. 북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간의 북한 내 핵시설 사찰에 관한 협상(평양)
- 9.1.-4. 제11차 한·인도네시아 임업위원회(Jakarta)
- 9.2. 제21차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총회(서울)
- 9.2.-4. Paredes Pena, Diego 에콰도르 외무장관 방한
- 9.3. 외무장관회담
- 9.3. 제1차 한·중국 통상장관회담(베이징)
-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 Wu Yi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장
- 9.4. 한·베트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발효(5.13. 서명, 조약 제1186호)
- 9.6.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개설
- 9.7.-8. 제1차 한·미국 경제협력대화기구(DEC) 회의(Washington D.C.)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Tarullo, Daniel 국무부 경제차관보
- 9.7.-8.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 두만강개발계획에 관한 국제회의(Vladivostok)
- 9.9.-11. 제5차 한·미국·일본·캐나다·호주 5자 간 정책기획협의회의(제주도)
- 수석대표: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

- 9.9.-11. Rao, Narasimha 인도 총리 방한
- 9.10. 정상회담
- 9.9.-13. Gallucci, Robert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방한
- 9.10. 제2차 한·인도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차관 / Khurshid 외무담당 국무장관
- 9.10. 한(과학기술처)·인도(과학기술성)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발효(외무부고시 제228호)
- 9.13. 한(상공자원부)·프랑스(산업체신대외 무역부)간의 산업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 발효(외무부고시 제229호)
- 9.13.-15. 한·미국·일본 3자 정책기획협의회(시즈오카, 일본)
- 9.13.-18. 제3차 한·호주 세관협력회의(서울)
- 9.13.-18. 제90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Canberra)
- 단장: 박정수 의원
- 9.14.-16. Mitterrand, Francois 프랑스 대통령 방한
- 9.14. 정상회담, 외규장각 도서 반환 합의
- 9.14.-16. Juppe, Alain 프랑스 외무장관 방한
- 9.15. 외무장관회담
- 9.15.-16. 한·호주 항공회담(서울)
- 9.15.-17. 제2차 동북아지역 환경협력회의(서울)
- 9.16. 한·호주 간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외무부고시 제230호)
- 9.17. 제19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과천)
-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 Cook, Peter 통상·산업 및 에너지장관
- 9.2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간의 동 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조약 제1192호)
- 9.20.-21. 제1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Hanoi)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Vu Khoan 외무차관
- 9.20.-24.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 두만강개발계획 실무회의(베이징)

- 9.21.-24. 제5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준비 제4차 고위실무회의(SOM)(Honolulu)
- 수석대표: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
- 9.21.-12.20. 제48차 유엔총회(New York)
- 수석대표: 한승주 외무부장관
- 9.22.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외무부고시 제247호)
- 9.23. [한·미국 간의] 전시지원연합 운영위원회 설립강령 발효(조약 제1193호)
- 9.23.-25. 한승주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 9.24. 외무장관회담
- 9.26.-30. 제48차 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총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홍재형 재무부장관
- 9.27.-10.4. 제3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Vienna)
- 수석대표: 김시중 과학기술처장관
- 10.4.-5. 제2차 한·중국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유향동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조리
- 10.5.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1차 실무접촉(판문점)
- 수석대표: 송영대 통일원차관 / 박영수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 10.6.-7. 제2차 한·스웨덴 지식재산권회의(Stockholm)
- 10.6.-8. 제8차 베링공해 어업 관련국(한·중·일·폴란드·미국·러시아) 회의(서울)
- 수석대표: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10.6.-9. Velayati, Ali Akbar 이란 외무장관 방한
- 10.7. 외무장관회담
- 10.6.-11. 제4차 한·중국 항공회담(서울)
- 수석대표: 유병우 외무부 아주국장 / Ke Deming(가덕명) 민항총국 부국장
- 10.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 (조약1194호)
- 10.7.-8. 제12차 한·영국 경제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Meadway, John 상공부 차관보
- 10.7.-9. Ochoa Antich, Fernando 베네수엘라 외무장관 방한
- 10.8. 외무장관회담, 과학기술협력협정·사증면제협정 서명

- 10.8. 제173차 한·미국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장재룡 외무부 미주국장 / 에스티스, 하웰엠 주한 미군 중장
- 10.8. 제4차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신기복 외무부 제1차관보 / Nottage, Richard 외무무역부 차관
- 10.9.-12. Ackerman, Gary 미국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북한 방문
- 10.10. 한·인도 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9.1.서명, 조약 제1191호)
- 10.10.-15. Clark, William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방한
- 10.14.-16. 제15차 한·미국 무역실무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정의용 외무부 통상국장 / Collins, Peter 미국 통상대표부(USTR) 부대표보
- 10.15. 한·미국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분야 협상(Geneva)
- 10.15.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2차 실무접촉(판문점)
- 10.17.-19. Blix, Hans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방한
- 10.20.-21. 제2차 한·미국 경제협력대화기구(DEC) 회의(서울)
-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Tarullo, Daniel 국무부 경제차관보
- 10.23. 한·몰타 간의 입국사증 상호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조약 제1195호)
- 10.25.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3차 실무접촉(판문점)
- 10.26.-27. 제1차 한·러시아 문화공동위원회(Moscow)
- 수석대표: 이원영 외무부 문화협력국장 / Nikolaevich, Mozel Konstantin 외무부 문화교류국장
- 10.26.-27. 한승주 외무부장관, 홍콩 방문
- 10.27.-29. 제11차 한·캐나다 원자력공동위원회(서울)
- 10.27.-31. 한승주 외무부장관, 중국 방문
- 10.28. 외무장관회담, 환경협력협정 서명
- 10.28.-29. 한·칠레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교섭회담(Santiago)
- 10.30.-11.2. Holst, Johan Jorgen 노르웨이 외무장관 방한
- 11.1. 외무장관회담
- 11.2.-3. 제8차 한·미국 세관협력회의(서울)
- 수석대표: 김경태 관세청장 / 와이저, 조지 관세청장

- 11.3.-4. 한·러시아 동해 핵폐기물 투기문제 협의를 위한 전문가회의(Moscow)
- 수석대표: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코케예프, 미하일 외무부
국제과학기술협력국장
- 11.3.-4. 제25차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SCM)(서울)
- 수석대표: 권영해 국방부장관 / Aspin, Les 국방장관
- 11.4.-6. 제1차 한·중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베이징)
- 수석대표: 김시중 과학기술처장관 / Song Jian(송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임
- 11.6.-7.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일본 총리 방한
- 11.6. 정상회담
- 11.8.-10. Goh Chok Tong(고촉통) 싱가포르 총리 방한
- 11.9. 정상회담
- 11.8.-10. Wong Kan Seng 싱가포르 외무장관 방한(Goh총리 방한 수행차)
- 11.9. 외무장관회담
- 11.9. 한·리투아니아 간의 무역협정 발효(9.24. 서명, 조약 제1196호)
- 11.9. 한·리투아니아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발효(9.24. 서명, 조약 제1197호)
- 11.10.-11. 제1차 한·이스라엘 정책협의회(Jerusalem)
- 수석대표: 신기복 외무부 제1차관보 / 유리 사비르 외무부 정무총국장
- 11.11.-15. Singh 아세안 사무총장 방한
- 11.12.-13. 제9차 한·구주공동체(EC) 간의 고위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한승주 외무부장관 / Brittan, Leon EC 집행위 부위원장
- 11.15.-18. 제1차 한·스페인 방산군수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안병길 국방부 제2차관보 / Arenas Garcia, Juan F. 국방부
군수물자국장
- 11.15.-20. 한·러시아 어업 실무자회담(서울)
- 수석대표: 이희수 농림수산부 국장 / Koreljsky, V.F. 어업위원회 위원장
- 11.16.-17. 한·스위스 지식재산권회의(서울)
- 수석대표: 정의용 외무부 통상국장 / Cottier, Thomas 연방 지적재산부위원장
- 11.17.-20. 제5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Seattle)
- 수석대표: 한승주 외무부장관,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 11.17.-24. 김영삼 대통령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및 미국 방문
- 11.19. 한·중국, 한·캐나다, 한·호주, 11.20. 한·인도네시아, 11.26. 한·미 정상회담

- 11.19.-20. 제1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Seattle)
- 11.22. 제8차 한·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 11.24. 제2차 한·중국 체신장관회담(서울)
- 윤동윤 체신부장관 / 우지추안(吳基傳) 우전부장
- 11.24.-25. 한·노르웨이 섬유[퀵타]회담(서울)
- 수석대표: 정만원 상공자원부 구주국장 / Iversen, Johan 상무해운성 국장
- 11.25. 주대만대표부 개설
- 11.26. 제1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노영욱 상공자원부 통상진흥국장 / 롬바르 산업체신대외무역부 산업전략국장
- 11.27. 한·중국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10.28. 서명, 조약 제1199호)
- 11.27. 한·방글라데시 간의 대방글라데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조약 제1202호)
- 11.27. 한·자메이카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발효(10.28. 서명, 조약 제1198호)
- 11.28.-12.9. 홍순영 외무부차관, 아프리카(코트디부아르,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순방
- 11.29. 제2차 한·일본 사할린 동포문제 실무협의
- 11.29.-12.1. 러시아 핵 폐기물 투기 공동조사에 관한 한·일본·러시아간 회의(Vladivostok)
- 11.29.-12.3. 제9차 베링공해 어업 관련국(한·중국·일본·폴란드·미국·러시아) 회의(Washington D.C.)
- 11.3. 한·미국 간의 우루과이라운드(UR) 양자협상(Geneva)
- 수석대표: 허승 주제네바대표부대사 / 슈로터 해외농업처장대리
- 11.3. 한·미국 간의 쌍무섬유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외무부고시 제231호)
- 11.30.-12.2. 제1차 한·모로코 문화공동위원회(서울)
- 12.1. 제2차 한·폴란드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백낙환 외무부 구주국장 / Pomianowski 외무부 아주국장
- 12.1.-2. 제1차 한·미국 조세 협상(Washington D.C.)
- 수석대표: 엄낙용 재무부 세제심의관 / Samuels, Leslie B. 재무부 차관보

- 12.2. 제1차 한·중국 정책기획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권병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장 / Pei Yuanying 외교부 정책연구실 주임
- 12.2.-3. 고위 정부대표단 구주공동체(EC) 방문
 - 단장: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
- 12.2.-3. 한·오스트리아 섬유 협상(Vienna)
- 12.2.-3.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Vienna)
- 12.3.-17. 고위 정부대표단, 스위스(제네바) 방문
 - 단장: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
- 12.4. 한(건설부)·중국(수리부) 간의 수자원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발효 (외무부고시 제232호)
- 12.4.-5. 한·미국 농림수산장관회담(Geneva)
 -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 / Espy, Mike 농무장관
- 12.6.-7. 제1차 한·일본 포럼(서울)
- 12.6.-10. 한·그리스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교섭회담(Athens)
- 12.7. 한·미국 간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Geneva)
 -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 / Kantor, Mickey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
- 12.7. 한·루마니아 간의 대루마니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 각서 발효(조약 제1205호)
- 12.9. 한·미국 차관보급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Geneva)
 - 쌀 이외 분야별 협상
- 12.9. 제3차 한·방글라데시 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한승주 외무부장관 / Rahman, M. 외무장관
- 12.9.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122조)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1204호)
- 12.9.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81조) 한국에 대하여 발효 (조약 제1203호)
- 12.9.-10. 제7차 한·일본 지식재산권 실무회의(도쿄)
- 12.10.-11. 제1차 한·미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서울)

- 12.12. 한·루마니아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조약 제1200호)
- 12.12.-13. 한·미국 차관보급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Geneva)
- 김광희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 / 오마라 농무부차관
- 12.13. 한·미국 농림수산물장관회담(Geneva)
-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 / Espy, Mike 농무장관
- 12.13.-15. 제1차 한·중국 어업실무회담(서울)
- 12.16. 제4차 한·터키 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울)
- 12.17. 한(외무부)·호주(대외무역부) 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설치를 위한 약정 발효(외무부고시 제233호)
- 12.19.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발효(조약 제1207호)
- 12.2. 미·북한 비공식 실무접촉(New York)
- 12.21. 주우즈베크(우즈베키스탄)대사관 개설
- 12.21. 북대서양 다자 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1206호)
- 12.22.-24. Ghali, Boutros Boutros 유엔사무총장 방한
- 12.24. 한·폴란드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조약 제1201호)
- 12.24.-26. Ghali, Boutros Boutros 유엔사무총장, 북한 방문
- 12.27. 한·일본 〈외무부〉 아주국장회의(서울)
- 12.27. 주이스라엘대사관 개설
- 12.29. 미·북한 실무접촉(New York)

대한민국 외교문서요약집

1993년(II)

인쇄 | 2024년 3월 15일

발행 | 2024년 3월 29일

발행처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기획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사료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편찬위원 권기창, 권해룡, 김응중, 김홍수, 안성국, 이용일,
정태인, 전영욱

감수위원 권태면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